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6년 8월

박사학위 논문

이구집 번역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고전번역학과

김 광 민

이구집 번역연구

The study of translation about Li-Gou' s anthology

2016년 8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고전번역학과

김 광 민

이구집 번역연구

지도교수 최진규

이 논문을 문학박사학위 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고전번역학과

김광민

김광민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u>김성한</u>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u>정길수</u>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u>이철승</u>	(인)
위 원	전남대학교	교수	<u>송한용</u>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u>최진규</u>	(인)

2016년 6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1부> 『이구집』 연구

제1장 서론	1
제1절 이구의 생애와 저작활동	1
제2절 『이구집』 번역 저본	4
제3절 『이구집』 수록 작품	5
제4절 선행연구검토	6
제5절 연구목적	9
제6절 연구방법과 번역원칙	10
제2장 이구의 禮	11
제1절 『禮論』7편 · 『禮論後語』	11
제2절 『周禮致太平論』	17
제3절 『明堂定制圖序』 · 『五宗圖序』	22
제3장 이구의 易學	26
제1절 『易論』13편	26
제2절 『刪定易圖序論』	36
제4장 이구의 富國策	40
제1절 이구의 눈에 비친 북송의 제반 문제	40

제2절 「富國策」에서 이구가 제안한 해결책 46

제5장 이구의孟子비판 51

제6장 결론 59

〈2부〉 『이구집』 번역

제1장 직강이선생문집서·자서 68

제2장 『이구집』 권1 賦 72

제3장 『이구집』 권2 禮論7篇并序·禮論後語 82

제4장 『이구집』 권3 易論13편 128

제5장 『이구집』 권4 刪定易圖序論 200

제6장 『이구집』 권5 周禮致太平論51篇并序·內治
..... 236

제7장 『이구집』 권6 國用1-國用5 256

제8장 『이구집』 권7 國用6-國用10 270

제9장 『이구집』 권8 國用11-國用16 283

제10장 『이구집』 권9 軍衛1-軍衛4 298

제11장 『이구집』 권10 刑禁1-刑禁6 311

제12장 『이구집』 권11 官人1-官人4 330

제13장 『이구집』 권12 官人5-官人8 341

제14장 『이구집』 권 13 敎道1-敎道5	353
제15장 『이구집』 권 14 敎道6-敎道9	368
제16장 『이구집』 권 16 富國策10首	381
제17장 『이구집』 佚文 「常語」	420
참고문헌	436
<부록> 직강이선생연보	440

표목차

「표1」 직강이구선생연보 略表	1
「표2」 『이구집』 목록표	6
「표3」 「예론」 논제표	14
「표4」 「주례치태평론」 논제표	19
「표5」 「역론」 13편 논제표	28
「표6」 「역론」 13편 논제에 대한 이구의 답변표	30
「표7」 왕필 · 이구 · 정이 · 주희의 역해석 비교표	34
「표8」 「산정역도서론」 논제표	37
「표9」 일문 「상어」 논제표	52

ABSTRACT

The study of translation about Li-Gou' s anthology

Kim GwangMin

Advisor: Prof. Choe Chinkyu

Department of Translation of
Sino-Korean Classics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study of translation about Li-Gou' s anthology' is an analysis and a translation about Li-Gou' s anthology. Li-Gou was theorist of North Song(北宋). In Korea, the study about Li-Gou is not animated such as in China. But noticeable result is achieved on some area. This study is based on this result. We are expecting this translation shows Li-Gou' s thought.

keywords : Li-Gou' s anthology, Mencius, The measure of national prosperity(富國策), The rulling system about Ju dynasty, Book of changes.

제1장 서론

『李觀集』은 북송(960~1127) 중기 이구(李觀:1009~1059)의 문집이다. 이구의 字는 태백(泰伯)이요, 북송 건창군(建昌軍) 남성(南城)¹⁾ 사람이다. 이구는 북송의 저명한 사상가이며 유학 공리파(功利派)의 선구자이다. ‘경력신정(慶曆新政)²⁾’의 이론적 지지자이며, 뒷날 왕안석(王安石:1021~1086)변법의 선도역할을 한 사람이기도 하다. 어려서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 두 번에 걸쳐 과거에 실패하고 낙향, 저술과 교육활동에 정진하였다. 우강서원(盱江書院)을 세워 우강선생이라 불리기도 하고, 범중엄(范仲淹:989~1052)의 추천을 받아 태학설서(太學說書)가 된 뒤로 직강(直講)선생³⁾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구가 23세(1031)에 「潛書」 15편을 저술할 무렵의 북송은 건국후 70년이 지난 시점으로 국가적인 개혁의 요구가 점점증하고 있었다. 이민족과의 연이은 전쟁실패와 무능하고 비대한 관료집단에 더해 엄청난 재정압박으로 인하여 백성의 고통은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청년 이구는 이를 목격하고 과거준비를 하면서 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한 구상을 저술로 이어갔는데 곳곳에 그의 ‘나라를 편하게 하고 백성을 살리는(康國濟民)’ 사상이 드러난다. 그리하여 연이은 그의 저작들은 그의 지지자 들을 통해 ‘나라를 고치는 글(醫國之書)’로 추앙받았다.

제1절 이구의 생애와 저작활동

이구의 생애와 저작활동에 대해서 『직강이선생연보(直講李先生年譜)』에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간략히 주요사항만을 표로 보이고, 전체 번역문을 뒤에 제시한다.

「표1」 직강이구선생연보 略表

-
- 1) 오늘날 江西省 南城縣이다.
 - 2) 慶曆은 북송 仁宗의 연호(1041-1048)로 재정압박과 연이은 전쟁실패로 인한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참지정사 范仲淹의 주도로 시도된 개혁정책을 경력신정이라 한다.
 - 3) 『이구집』은 『盱江文集』 또는 『直講李先生文集』으로 불려왔다.

서기	나이	연호	간지	행력 및 저작
1009	1	祥符2년	己酉	출생.
1015	7	祥符8년	乙卯	6,7세에 聲韻을 맞추고, 字書를 익힘.
1022	14	乾興1년	壬戌	부친상.
1030	22	天聖8년	庚午	진씨부인과 결혼.
1031	23	天聖9년	辛未	「潛書」 15편.
1032	24	明道1년	壬申	「禮論」 7편. 「陳仲溫進士墓誌」.
1034	26	景祐1년	甲戌	「邵氏神祠記」.
1036	28	景祐3년	丙子	「明堂定制圖並序」, 「平土書」, 「上聶學士書」, 「上李舍人書」, 「上宋舍人書」, 「太平院住持記」, 「冬至夜酒醒詩」, 「甘露亭詩」, 「野記」.
1037	29	景祐4년	丁丑	鄆陽에 가서 范文正公을 만남. 鄉學에서 떨어짐.
1038	30	寶元1년	戊寅	「廣潛書」 15편, 「命箴」, 「野記」, 「鄧公儀傷辭」, 「緣概師詩」, 「惜雞詩」.
1039	31	寶元2년	乙卯	「富國」, 「疆兵」, 「安民」 30策.
1040	32	康定1년	庚辰	득남. 吳越을 유람하고 돌아옴.
1041	33	慶曆1년	辛巳	과거보러 상경하여 1년간 머움. 「建昌郡集賓亭記」, 「重修麻姑殿記」, 「麻姑山重修三清殿記」, 「修梓山寺殿記」, 「上吳舍人書」, 「上王內翰書」, 「上富舍人書」, 「上劉集賢書」, 「上慎殿丞書」, 「日出詩」, 「感事詩」, 「和慎史君出城見梅詩」.
1042	34	慶曆2년	壬午	과거 낙방후 귀향. 「寄小兒詩」, 「送余疇若南豐掌學序」, 「與章祕校書」, 「上楊屯田書」, 「麻姑山賦」, 「寄周寺丞詩」, 「惜才詩」, 「送侯殿直知吉州詩」.
1043	35	慶曆3년	癸未	득녀. 「退居類稿」 12권, 「慶曆民言」 30편, 「周禮致太平論」 50편, 「撫州菜園院記」, 「雪中贈柳枝」, 「柳枝答詩」, 「寄周寺丞詩」, 「送錢寺丞知白州詩」, 「三賢詠」, 「上蔡學士書」, 「寄祖祕丞詩」.
1044	36	慶曆4년	甲申	「麻姑山眞君殿記」, 「李子高墓表」, 「陳伯英墓表」, 「寄祖祕丞書」, 「除夜感懷詩」, 「南塘觀魚詩」.
1045	37	慶曆5년	乙酉	「與胡先生書」, 「寄祖祕丞詩」, 「南城縣署記」, 「處士陳君墓誌銘」, 및 「祭文」, 「白石暹師塔銘」.

1046	38	慶曆6년	丙戌	「長江賦」, 「上王刑部書」, 「和王刑部遊仙都觀詩」, 및 「唱和詩序」, 「進士傅君墓銘」. 信州유람 후 「弋陽縣學銘」, 「聞女子瘡疾寄示」, 「弋陽縣學北堂見夾竹桃」 2詩, 「題靈陽宮」, 「龜峰精舍」, 「葛陂懷古」詩, 「葛陂逢何道士」詩.
1047	39	慶曆7년	丁亥	부인 진씨 죽음. 「禮論後語」, 「刪定易圖序論」, 宋屯田 「延平集序」, 「亡室墓誌」, 「處士饒君墓表」, 「建昌知軍廳記」, 「景德寺重修大殿并造彌陀閣記」, 「邵武軍學置莊田記」, 「小女詩」, 「謝宋屯田見示永平錄海南編詩」, 「題韓偓詩後」, 「答黃著作書」.
1048	40	慶曆8년	戊子	딸 죽음. 「建昌軍儀門記」, 「太平院浴室記」, 「寄祖祕丞詩」.
1049	41	皇祐1년	己丑	범중엄이 조정에 천거함. 「宋中舍」 및 「夫人江氏墓碣銘」, 「送李山甫詩」.
1050	42	皇祐2년	庚寅	범중엄이 다시 조정에 천거, 將仕郎太學助教를 제수받음. 「周醫博士墓表」, 「迴向院記」, 「謝授官表」, 「謝范咨政啓」, 「怡山長慶寺詩」
1051	43	皇祐3년	辛卯	모친상. 「廣文陳生墓銘」, 「承天院記」, 「麻姑山仙都觀御書閣後記」, 「新城院記」, 「送知軍曹比部移虔州詩」.
1052	44	皇祐4년	壬辰	「皇祐續稿」 8권, 「周禮致太平論」 10권간행, 「上孫寺丞書」, 「酬陳屯田詩」.
1053	45	皇祐5년	癸巳	「常語」 상중하3권, 「承天院羅漢閣記」, 「柏林溫氏書樓記」, 「進士傅君墓銘」.
1054	46	至和1년	甲午	「常語後序」, 「袁州學記」, 「清話堂詩」, 「送嚴介序」, 「聶夫人」, 「徐夫人」, 「張都官」墓誌, 「袁州雜詩」 3수
1055	47	至和2년	乙未	「寄祖祕丞詩」, 「送春2絶」, 「送陳司理序」, 「江屯田墓誌」, 「陳都官墓碣銘」, 「鄒夫人墓誌銘」, 「鄭助教母陳氏墓銘」, 「陳府君夫人聶氏墓誌銘」.
1056	48	嘉祐1년	丙申	「鉛山縣尉陳君墓銘」.
1057	49	嘉祐2년	丁酉	國子監에서 太學說書로 추천.
1058	50	嘉祐3년	戊戌	通州海門主簿 太學說書에 제수됨. 「太學議」 1편, 「景德寺新院記」.
1059	51	嘉祐4년	己亥	胡瑗의 병가로 임시 太學을 管掌함. 한달 휴가를 얻어 귀향. 8월 집에서 죽음.

제2절 『이구집』 번역 저본

본 연구의 저본은 中華書局에서 발행한 1981년판의 2011년 2판 인쇄본 『李觀集』 王國軒 點校本으로 한다.

참고로 아래에 1980년 5월 왕국헌의 點校說明을 번역하여 붙인다.

『이구집』은 예전에 『直講李先生文集』 또는 『盱江文集』이라고 불렀다. 『이구집』이구 생존 당시 스스로 『退居類稿』 12권, 『皇祐續稿』 8권을 엮어 함께 출간하여 세상에 돌아다녔다. 경력3년(1043)에 그의 친구 祖無擇이 『퇴고유고』의 서문을 지었고, 이구 또한 自序를 하였다. 그 서문에 “20살 무렵부터 지금까지 15년, 초고 233수를 얻었다. 망실되고 흩어질까 염려되어 우선 분류하여 12권을 만든다.” 라고 하였다. 宋史 李觀傳에 “熙寧중 문인 鄧潤甫가 『퇴거유고』, 『황우속고』와 『後集』을 조정에 올렸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만 송사에는 권수를 표시하지 않았다. 宋 陳振孫의 『直齋書錄解題』에서 이구의 저작이 『퇴고유고』 12권, 『속고』 8권, 『常語』 3권, 『周禮致太平論』 10권, 『후집』 6권, 총계 39권이라 하였고, 아울러 후집은 문인 傅野가 편집한 것이라고 하였다. 남송 理宗 景定 2년(1261) 張淵微가 「李觀年譜後記」에서 말하길 “魏時가 이구의 글을 읽고서 연보에 빠진 곳이 있고 오탈자가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여 다시 우강의 선비들과 더불어 참고하여 수정하였다.” 라고 하였다. 이로 볼 때 송 理宗 이전에 『이구집』은 이미 연보가 있었고, 현재 볼 수 있는 문집의 체제를 갖추고 있었을 알 수 있다.

현재 남아있는 『이구집』은 明 成化연간(1465-1487)에 左贊이 編刻한 것이다. 저 刻本은 『상어』를 볼 때 산삭된 곳이 있는데 없어진 부분은 宋 余允文的 「尊孟辨」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한 淸 黃宗羲의 『宋元學案』에도 몇 조항이 보존되어 있다.

이번에 정리할 때 底本은 商務印書館 『四部叢刊』 影印 明成化左贊刻本이다. 明 正德13년(1518) 孫甫 각본(簡稱 정덕본), 萬曆 孟慶緒 각본(간칭

만력본), 淸 光緒29년(1903) 謝甘棠 각본(간칭 광서본)을 참고하였다. 이 밖에 宋 呂祖謙이 편찬한 『宋文鑑』, 淸 吳之振이 편찬한 『宋詩鈔』에 수록된 이구의 詩文을 참고하였다.

본서에 언급된 『周禮』, 『禮記』, 『周易』 등 書의 文字는 阮元이 校刻한 『13經注疏』본을 가지고 대조하였다. 정리하면서 일반적인 변동사항은 校記가운데 설명하였다. 또한 참고할 가치가 있는 異文도 校記 가운데 제시하였다. 避諱字, 異體字 및 명백한 誤脫字는 상하 문맥에 의거 고쳤으나 표시하지 않았다. 본서에서 인용한 다른 책은 원문 그대로일 경우 골고루 인용부호를 더하였지만 요약하거나 다시 서술한 내용은 인용부호를 쓰지 않았다.

이번 정리에서 문집의 편차를 정리했다. 원본의 「建昌新建李泰伯祠堂記」, 「乞修李觀墓狀」, 「建昌府重修李泰伯先生墓記」, 「直講李先生年譜」 4文은 목록 앞에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外集』과 「先生墓誌」 뒤로 옮겼다. 이 외에 또 「常語」佚文 16조를 첨가했다. 또한 宋史 李觀傳 및 각 판의 序跋, 그리고 書目提要를 뒤에 수록했다. 정리교점과정 중 착오와 타당하지 못한 곳은 독자의 질정을 바란다.

校點者 1980년 5월.

제3절 『이구집』 수록 작품

『이구집』은 본집 37권, 외집 3권으로 되어 있다. 일반적인 시문집의 성격과는 다르게 이구의 독립된 논저들이 대다수를 점하고 있다. 권1부터 수록된 작품을 순서대로 보면 賦 3수, 禮論 7편, 易論 13편, 刪定易圖序論 6론, 周禮致太平論 51편, 明堂定制圖序, 五宗圖序, 富國策 10수, 強兵策 10수, 安民策 10수, 平土書, 潛書15편, 廣潛書15편, 野記2편, 慶曆民言 30편, 記 22, 序 7, 表 1, 啓 2, 書 28, 雜文 13, 墓碑 27, 常語 上中下, 古體 44제(67수), 近體 253제(267수), 告詞 2수, 箴子 4수, 薦章4수, 名公手書10, 序1, 詩4, 墓銘4 등인데 이를 간략하게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2」 『이구집』 목록표

권1	賦 3수	권 23 ~ 권 24	記 22
권2	禮論 7편	권25	序 7
권3	易論 13편	권26	表 1, 啓 2.
권4	刪定易圖序論 6론	권 27 ~ 권 28	書 28
권 5 ~ 권 14	周禮致太平論 51편	권29	雜文 13
권15	明堂定制圖序, 五宗圖序.	권 30 ~ 권 31	墓碑 27
권16	富國策 10수	권 32 ~ 권 34	常語上, 常語中, 常語下
권17	强兵策 10수	권35	古體 44제(67수)
권18	安民策 10수	권 36 ~ 권 37	近體 253제(267수)
권19	平土書	外集 권1	告詞 2수, 筍子 4수, 薦章4수.
권20	潛書15편, 廣潛書15편, 野記2편	外集 권2	名公手書10
권 21 ~ 권 22	慶曆民言 30편	外集 권3	序1, 詩4, 墓銘4.

수록된 저작은 매우 다방면에 걸쳐 있고, 다양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이구의 왕성한 저작활동을 볼 수 있다.

제4절 선행연구검토

중국에서 이구가 조명받기 시작한 것은 四部叢刊의 일부로 이구집이 공간되

면서, 1919년 胡適이 이구를 ‘江西학파의 대표자’, ‘왕안석의 선구자’ 라고 평가하면서부터였다⁴⁾. 이후 1940년대 蕭公權의 ‘功利주의자’⁵⁾에서 1960년대 侯外廬의 ‘소박한유물주의자’⁶⁾까지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간 이구에 대한 관심은 왕안석, 범중엄 등과 같은 정치사적인 부분에서의 조명이거나 철학사 서술의 과정에 짚고 넘어가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근년에 이구의 출신지인 강서성을 중심으로 이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구의 저작 분야만큼이나 다양한 연구가 논문과 단행본의 형태로 있어왔다⁷⁾. 예를 들면 經濟思想, 禮論思想, 經世思想, 哲學思想, 人才思想, 土地思想, 管理思想, 革新思想, 教育思想, 性命論과 排佛思想, 治國構想, 法學思想, 政治改革思想, 富民思想 등등이다. 이구의 비판정신과 무신론, 기철학, 정치개혁, 토지제 등등의 경향과 주장이 중국 연구자들의 관심과 연구로 이어졌다.

국내에서의 연구는 중국처럼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 그러나 다양한 방면에서 소개되고 있다. 구범진은 이구의 경제사상의 구조와 성격분석을 통해 이구의 경제사상이 단순히 在地 自營地主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상으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송 이후의 중국사회가,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지식인들의 사상이 ‘봉건적’ 사고의 틀을 벗어나서 무언가 새로운 지향, 즉 ‘근대적’ 인 사고의 ‘맹아’ 를 보이기 시작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하였다.⁸⁾

정병석은 이구의 경세론적 易해석을 분석하여, 이구를 ‘순자의 예론을 계승한 정도이며, 자신의 독창적인 철학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한 인물’ 로 간주하는 과소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주역』을 경세론이라는 새로운 차원에서 해석하고 있는 시각의 독창성과 유가의 이념적인 문제를 경세론적인 실천속에서 해결하려는 시도를 주목하였다. 그는 의의를 4가지로 정리했는데 첫째 당시 상수학과 미신에 치우친 역학적 경향을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전환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경세치용적인 관점으로 확대하였다.

4) 胡適, 「記李觀的學說」, 『胡適文存』卷2, 1919.

5) 蕭公權, 『中國政治思想史』, 遼寧教育出版社, 1998.

6) 侯外廬 主編, 「李觀的平均土地思想及其哲學思想」, 『中國思想通史』卷4 上, 北京 : 人民出版社1962 • 1963.

7) 이후 관련 연구는 이구 관련 참고문헌으로 일괄 제시한다.

8) 구범진, 「李觀 經濟思想의 構造와 性格」, 『서울大 東洋私學科 論集』15, 1991.

둘째 만물의 시원을 氣로 보아 경세문제를 氣本論이라는 철학적 근거를 제공하여 기학과 역해석의 기원이 되었다. 셋째 역사와 문화를 계속적으로 발전하여 나아가는 과정으로 간주하여 『주역』의 핵심이 현실에 대한 참여에 있음을 말하고 ‘量時制宜’와 ‘適時應變’을 강조하였다. 넷째 심성학 일변도의 유학을 지양하고 현실사회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경세적인 관점을 강조하였다.⁹⁾

이상선은 이구의 通變사상에 착안하여 앞선 정병석의 연구처럼 ‘權’과 ‘量時制宜’, ‘適時應變’ 등을 주목하였다. 오행의 상생상극원리에 관한 이구의 말을 소개하였다. “‘相生이 반드시吉한 것이 아니고, 相剋이 반드시凶한 것이 아니다. 쓰임이 마땅함을 얻으면 비록 相剋이라도吉하고, 쓰임이 마땅함을 상실하면 비록 相生이라도凶하다.’”는 말을 통변의 기본적인 틀로 제시했다고 보았다. 또한 知人, 知事, 知物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知時할 수 있는 智者가 통변을 알고 이에 성공할 수 있으며, 이는 外王을 또 다른 형태로 실현하려는 시도였다고 생각하였다.¹⁰⁾

안병주와 손정민은 이구의 맹자비판을 다루었다. 두 사람은 『주자문집』 권 73에 있는 「讀余隱之尊孟辨」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는데, 사실 「존맹변」에 나오는 이구의 「常語」는 佚文으로 『이구집』에 있지 않다. 텍스트 상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안병주는 이구의 글을 다루며 주자의 「존맹변」의 의미를 찾고 있다.¹¹⁾ 손정민은 안병주의 연구에서 한 걸음 나아가 송대 맹자 논변을 연구하여 사마광과 이구의 맹자비판을 조목별로 분석하였다.¹²⁾

강길중은 사마광, 구양수, 범중엄, 소식, 진량 등 일련의 이치법(吏治法) 연구의 일면에서 이구의 현실인식과 이치법 개혁론을 다루었다. 이구에 관한 본격적인 접근이 이루어 졌는데 ‘당시 국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한 북송의 정치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근거로 이치법 전반에 걸쳐 현실적이며 실용적인 개혁을 통한 부국강병의 실현을 제창한 개혁정치의 선구자이며, 또한 독특한 경세사상은 양송시기 공리주의 사상의 선구자’라고 결론을 맺었다.¹³⁾

한성구는 이구의 義利사상과 禮論을 분석하였다. 禮가 추상화되고 공허하게

9)鄭炳碩, 「李觀의 經世論의 易解釋」, 『東洋哲學研究』 22, 2000.

10)이상선, 「李觀의 通變思想」, 『東洋哲學』 18, 2002.

11)安炳周, 「朱子の 尊孟辨의 意味」, 『儒敎思想研究』 1, 1986.

12)孫正民, 「李觀의 孟子비판」, 『宋代孟子論辨研究』, 成均館大 碩士論文, 2014.

13)姜吉仲, 「李觀의 現實認識과 이치법 改革論」, 『東洋史學研究』 120, 2011.

변하는 과정에서 이구는 대담하게 공자와 맹자의 ‘貴義踐利’를 비판하였는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禮의 기초에서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는 利를 말함으로써 유가의 전통적인 義利觀을 뛰어넘었다고 보았다. 또한 기존의 유가에서 전통적으로 예를 지키고자 하는 내면적 정신을 특히 더 강조한 것에 반해, 이구처럼 내면적 정신은 외재적 형식이 있어야만 드러날 수 있는 것으로 이 둘을 體用관계로 봐야지만 예의 본모습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예의 의미를 현대에 되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¹⁴⁾

제5절 연구목적

이상 근 백년에 걸친 선행연구를 통해 이구의 사상이 조명되어 가는 과정을 알 수 있었다. 중국에 비해 국내의 관심은 적은 편이지만 국내 연구자들에 의하여 여러 분야에 걸친 분석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아울러 이구의 문집 전반에 대한 분석이 없이 단편적인 원문인용과 개설적인 소개에 그친다는 점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구집』에 대한 번역과 분석을 통해 부분인용과 개설 수준의 소개를 넘어 이구 사상에 대한 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아울러 국내 이구 연구에 대한 원천자료의 제공에 일조가 되기를 기대한다.

제6절 연구방법과 번역원칙

본 연구에서는 『이구집』의 권1부터 순차적으로 번역하였다. 동시에 선행 연구를 토대로 이구사상의 특징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을 분석 정리하여 정확한 해제작업을 병행하며 번역부분에 앞서 소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선행연구에서 간과하였던 부분에 대한 보완을 통해 이구의 주장을 잘 드러낼 수 있게 하

14)한성구, 「李觀의 義利思想 및 禮論과 의의」, 『한국철학논집』 31, 2011.

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번역하였다.

- ※ 번역문은 직역을 원칙으로 삼았다.
- ※ 축자역의 원칙에 의거 원문에 없는 글자를 넣거나 빼지 않았다.
- ※ 부득이한 경우 의역을 하되 최소화하였다.
- ※ 원문에서 원전을 인용할 경우 저본이 인용부분을 혼동하였을 때 해당 원전의 원문에 따라 바로잡았다.
- ※ 표점이나 문장부호는 한국고전번역원 지침을 따랐다.

제2장 이구의 禮

이구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예(禮)’이다. 이구 당시 범중엄의 추천서는 물론 역대 이구 문집 서문과 『宋史』 「李觀傳」 등에서 이구를 언급한 사람들은 으레 이구를 소개할 때 ‘예’와 관련된 저서를 예시하고 있다. 과연 이구는 그의 문집 곳곳에서 ‘예’를 언급한다. ‘예’를 통해 자신의 경세관(經世觀)을 드러내고 있는데, 독립된 저작만해도 권2의 「禮論」7편 · 「禮論後語」, 권5에서 권14까지의 「周禮致太平論」51편, 권15의 「明堂定制圖序」 · 「五宗圖序」 등이 있다. 『이구집』은 ‘예론집’이라 불려도 되고, 이구는 ‘예’ 전문가라 불려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이 장에서는 이구의 ‘예’와 관련된 저작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이구의 ‘예관(禮觀)’ 내지 경세관을 고찰해본다.

제1절 『禮論』7편 · 『禮論後語』

이구 자신의 진술에 의하면 「예론」7편은 24세에 지은 것이다. 저작 동기에 관하여 「예론」7편 서문에서 이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어려서부터 옛것을 좋아하였다. 옛글을 외우고 맛을 들이면서, (옛글이) 가르치려는 뜻을 헤아려보려고 하였으나 끝내 그 대강과 조목을 말할 수 없었다. 올해 24살인데 생각이 무르익었다. 요사이 병치레가 잦아 집에 물러나 있다보니 몸엔 다른 일은 없고, 종이와 붓만 가까이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예론」7편을 지었다. 그 근본을 헤아려 그 말(末)을 보이고, 그 명분을 바로잡아 그 실질을 밝혔다. 앞선 성인들이 남겨놓은 제도를 숭상하고, 후세의 잘못되고 이지러진 것을 바로잡았다. 나라의 귀서(龜筮: 점)와 백성의 이목이 여기에 있다.¹⁵⁾

15) 「禮論」序: 予幼而好古, 誦味經籍, 窺測教意, 然卒未能語其綱條. 至于今茲年二十四, 思之熟矣. 比因多病, 退伏廬下, 身無他役, 得近紙筆. 故作「禮論」七篇. 推其本以見其末, 正其名以責其實. 崇先聖之遺制, 攻後世之乖缺. 邦國之龜筮, 生民之耳目, 在乎此矣.

24세에 무르익은 생각을 「예론」 7편에 담았다는 것인데 본말과 명실을 밝히고, 나라와 백성을 고민하였다는 것이다. 「예론」 7편은 청년 이구의 생각이 무르익어가는 과정을 읽어볼 수 있는 작품이다. 이구는 「예론」 1 첫문장에서 예에 관한 개념을 정의한다.

무릇 예라는 것은 사람 도리의 기준이요, 세상 교화의 주체이다. 성인이 천하국가를 다스리고 몸을 닦으며 마음을 바로잡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 하나일 따름이다.¹⁶⁾

이구에게 예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의 기준이요, 세상을 교화함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몸을 닦으며 마음을 바로 잡는 일과 천하국가도 모두 예에서 나온다. 예는 모든 것이고, 나머지는 지엽이며 다른 이름일 뿐이다.

모든 것이 예(禮)다. 음식(飲食)·의복(衣服)·궁실(宮室)·기명(器皿)·부부(夫婦)·부자(父子)·장유(長幼)·군신(君臣)·상하(上下)·사우(師友)·빈객(賓客)·사상(死喪)·제사(祭祀)는 예의 뿌리다. 악(樂)·정(政)·형(刑)은 예의 가지이다. 그러나 형은 또한 정의 무리이다. 인·의·지·신)은 예의 다른 이름이다. 이 일곱가지는 모두 예이다.¹⁷⁾

이구가 말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예일본주의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이와 같은 예일본의 사고는 「예론」 7편 전편에 나타난다. 이구의 주장은 인(仁) 중심의 인의예지를 주장한 『맹자』의 관점과는 분명 다르다. 그런데 이구의 이와 같은 사고는 이구만의 생각은 아니었다. 일찍이 순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배움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는 것인가? 말한다. 그 순서는 경(經)을 외우는데에서 시작하여 『예』를 읽는데에서 끝이 난다. ¹⁸⁾

16) 「禮論」 第一：夫禮，人道之準，世教之主也。聖人之所以治天下國家，修身正心，無他，一於禮而已矣。

17) 「禮論」 第一：是皆禮也。飲食·衣服·宮室·器皿·夫婦·父子·長幼·君臣·上下·師友·賓客·死喪·祭祀，禮之本也。曰樂，曰政，曰刑，禮之支也。而刑者，又政之屬矣。曰仁，曰義，曰智，曰信，禮之別名也。是七者，蓋皆禮矣。

18) 『荀子』 「勸學」：學惡乎始惡乎終？曰其數則始乎誦經，終乎讀『禮』。

순자에게 예는 배움의 끝이요, 법의 큰 근본이며, 모든 일의 기강이고, 도덕의 준칙이었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순자는 12자를 비판하고, 예악을 논하며, 성악(性惡)을 논하고, 부국(富國)·강국(疆國)·왕패(王霸)·왕제(王制)·군도(君道)·신도(臣道)·의병(議兵)을 말하였다. 따라서 『이구집』에 나타나는¹⁹⁾ 이구의 사상은 맹자보다 순자의 인식과 일치됨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사상의 씨앗은 24세의 무르익은 생각에 기인한다.

이구가 생각이 무르익었다는 1032년은 북송 건국후 72년이 지난 시점으로 13경체제가 성립되기 이전이며 정주학(程朱學)이 싹트기 직전이었다. 국가적인 문제점들이 하나 둘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24세의 청년 이구는 맹자류의 심성론보다 순자류의 경세론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북송은 건국후 이민족과의 끊임없는 전쟁을 치러야했지만 결과는 비참한 것이었다. 1004년 체결된 전연의 맹약²⁰⁾은 북송지식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자존심의 상처로 남았다. 오랑캐인 요나라와 형제의 맹세를 하고, 돈으로 틀어막아 평화를 유지하는 국가는 『春秋』의 대의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황제의 국가가 아니었다. 이후 서하와의 관계는 물론 뒷날 금나라와의 관계도 그러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하에 당면한 문제는 그 과정에서 드러난 국가의 무능과 부패였다. 문치주의의 부작용으로 관료의 수는 당나라에 비해 10배 늘었지만 이 와중에 진입한 무능하고 부패한 관료들의 행태는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고, 이에 더하여 비능률적 군사제도의 모순은 국방부재와 함께 평화유지에 막대한 부담을 증가시켰다. 이는 결국 백성들의 삶을 곤궁으로 몰고가게 되었다. 왕안석 등장 이전에 개혁의 필요성이 증가되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하에 청년 이구의 생각은 무르익어갔다.

예악이 바로선 나라는 질서와 조화가²¹⁾ 잡힌 나라다운 나라를 의미한다. 드

19) 『이구집』의 목차만 훑어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 권1에서 황제가 꼭 보았으면 하는 賦 3수와 권2의 「禮論」 7편·「禮論後語」, 권3의 「易論」 13편, 권4의 「刪定易圖序論」, 권5-권14의 「周禮致太平論」 51편, 권15의 「明堂定制圖序」·「五宗圖序」, 권16의 「富國策」 10수, 권17의 「強兵策」 10수, 권18의 「安民策」 10수. 등등에서 보이는 이구의 관심은 순자와 유사함을 볼 수 있다.

20) 澶淵의 盟約: 1044년 요의 聖宗과 북송 眞宗사이의 평화조약. 송은 형, 요는 아우로서 대등하며, 송은 요에게 매년 은 10만냥·명주 20만필을 세폐로 보내며, 국경은 현상을 유지한다는 내용임.

21) 『논어』 「陽貨」 禮云禮云, 玉帛云乎哉! 樂云樂云, 鍾鼓云乎哉! 주희 집주 속에 인용된 정이의 주: 程子曰: 禮, 只是一箇序, 樂, 只是一箇和. 只此兩字, 含蓄多少義理, 天下無一物無禮樂...禮樂, 無

러내놓고 말하진 못하지만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한 당시의 송나라를 부국 강병하고 백성이 평안한 태평세상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 이구의 무르익어가는 생각이었다. 그는 이러한 생각을 「예론」 7편에서 짚을 띄우고, 「예론」 7편 이후 저작들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주요 논제를 중심으로 「예론」 7편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3」 「예론」 논제표

禮論 1	一於禮而已矣. / 曰樂, 曰政, 曰刑, 曰仁, 曰義, 曰智, 曰信, 是七者, 蓋皆禮矣.
禮論 2	樂·政·刑, 統於禮. / 夫所謂禮者, 爲而節之之謂也.
禮論 3	仁·義·智·信, 繫於禮. / 仁·義·智·信, 果禮之別名也.
禮論 4	禮得而後, 仁·義·智·信, 亦可見矣. / 性之品三, 而人之類五也.
禮論 5	仁·義·智·信者, 實用也. 禮者, 虛稱也, 法制之總名也.
禮論 6	古之言性者四...孟子豈能專之? / 威統於禮...予聞諸聖人矣.
禮論 7	周公攝天子之位, 作禮樂...輔周室致太平. / 所謂經者...孔子述之者也, 六籍是矣.

「예론」 1은 전편의 서론격인데 한마디로 모든 것, 곧 악·정·형·인·의·지·신 일곱 가지는 물론 음식·의복·궁실·기명·부부·부자·장유·군신·상하·사우·빈객·사상·제사 등이 예라는 선언이다. 이구는 「예론」 1에서 모든 것이 예라는 것을 논증하고서 서론 첫 문장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예는 사람이 걸어갈 길의 기준이요, 세상교화의 주체이며, 성인이 천하국가를 다스리고, 몸과 마음을 수양하는 것이 모두 예 하나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온통 예에서 시작해서 예로 끝맺고 있다.

「예론」 2는 고래의 악·정·형이 모두 예의 일부분(禮之三支)임을 논증한다. 그는 예란 만들고 조절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세 가지가 저절로 이루어졌겠

處無之, 學者, 要須識得.

는가?’ 라고 반문하면서 세가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예라고 주장한다.

「예론」 3은 ‘인·의·지·신’ 역시 모두 예라는 것을 논증한다. 이것은 독특한 주장인데 이구에 의하면 ‘인·의·지·신’ 은 예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예론」 4는 「예론」 3을 이어 ‘인·의·지·신’ 을 논하는데, 그는 예를 통해야 ‘인·의·지·신’ 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는 ‘인·의·지·신’ 을 하고자 할 때 먼저 예에서 구하지 아니하면 그 근본을 놓치는 것이라 주장한다.

「예론」 5는 구체적으로 법제(法制)가 등장한다. 성인이 법제를 만들었고 법제가 만들어 질 때 법제의 주체는 당연히 예이고, 인의지신은 그 사이에서 거 느낌을 받는다. 이는 군신의 종류(君臣之類)와 같다. 예와 인의지신은 나란히 나열될 수 없다. 인의예지는 ‘실제 쓰여지는 것(實用)’ 이고, 예는 ‘비어있는 칭호(虛稱)’ 일 뿐이니, 사실은 법제를 총괄하는 이름이다.

「예론」 6에서 인성론을 언급한다. 이구의 주장에 의하면 옛날에 성(性)을 논한 사람이 넷인데, 맹자·순자·양옹·한유이다. 이것이 ‘어찌 맹자의 전유물인가?’ 라고 물으면서, 이구는 한유의 변론이 옳다고 보았다.

「예론」 7에서 이구는 예의 발흥을 추적하면서 주공이 예악을 짓고, 주나라 왕실을 도와 태평을 이루었다고 주장한다. 한나라와 당나라는 신선과 노장에 물 들었고, 기강이 문란했음을 말하면서 낮게 평가하고 있다. 마지막에 사마천의 봉선(封禪)기사를 예로 들면서, 2제 · 3왕의 사실을 조술(祖述)한 공자의 육경 이외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며 평가절하하고 있다. 「예론」 7편의 마지막은 ‘한 · 당의 쇠함으로 귀착되는데 한·당을 ‘송’ 으로 바꾸면 이구가 「예론」 7편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실제 여기에서 거론한 한·당이 쇠한 까닭은 이구의 「周禮致太平論」에서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다루어진다.

이상 「예론」 7편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24세 이구의 「예론」 7편은 경세가로서의 이구의 사상형성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초석이다. 아울러 일반적인 인식과 상당히 다른 독특한 주장들은 이후 논란을 자초하는 단서가 되는데, 당장 「예론」 7편부터 논란이 되어 이구는 「예론후어」를 집필하게 된다.

『이구집』 권2 「예론」 7편 바로 뒤에 편집되어 있는 「예론후어」는 「예론」 7편을 짓고 난 뒤 15년후의 작품인데 글자 그대로 「예론」 7편이후 있었던

논란에 대한 후기로서 단편으로 되어 있다. 이구 자신의 설명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내가 「예론」 7편을 지은 것이 이미 15년전이다. 학자 가운데 장망지(章望之)의 논한편을 가지고 와서는 나더러 ‘괴이한 것을 좋아한다(好怪)’ 하면서 천하의 사람들을 거느려 예를 안에서 구하지 아니하고 밖에서 다투게 하였고, 사람들이 내면은 채우지 아니하고 오직 밖을 꾸미게 하여, 마침내 또한 반드시 혼란하게할 따름이라고 하였다. 22)

「예론후어」는 이구 39세 곧, 「예론」 7편이후 15년째 되던 해에, 그 사이에 있었던 논란에 대하여 작심하고 지었다고 한다. 아마 ‘예의 근본을 모르는 사람의 행동일 것’ 이라고 치부하면서도 ‘호괴(好怪)’ 니 ‘난(亂)’ 이니 운운하다가 『노자』 38장을 들먹거리는데 이르러서는 격앙된 반응을 보인다.

오호라! 장선생은 귀와 눈이 붙어있는가? 아니면 눈이 멀고 귀가 먹었는가? (귀와 눈이) 있다면 왜 내 글을 보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가?²³⁾

감정 섞인 발언이다. 「예론후어」는 단편으로 되어있고, 후기적 성격의 글이라 예와 관련된 발언보다는 장망지의 오해와 비방을 지적하는 선에서 그치고 마는데 어조는 매우 감정적이다.

장망지의 정확한 생몰연대는 알 수 없지만, 이구와 동시대에 활동한 인물이다. 구양수와 그 무렵 사람들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볼 때 이구보다 연하로 추정된다. 의론을 좋아하고, 맹자의 성선설을 종지로 삼아 순자·양웅·한유·이고(李翱)를 배척하여 「구성(救性)」 7편을 지었고, 이구의 「예론」을 바로잡기 위하여 자신의 「예론」 한 편을 지었다고 한다.²⁴⁾ 맹자의 성선설을 종지로 삼았다고 하니, 당연히 이구의 주장에 불만이 있었을 것이다. 마치 맹자가 고자(告子)더러 ‘인내의외(仁內義外)’ 라고 공박한 것처럼 장망지는 이구에게 ‘예외(禮外)’ 라 비난하였고, 이구는 이를 받아 「예론후어」에서 감정 섞인 발언

22) 「禮論後語」: 吾爲「禮論」七篇, 既十五年. 學者有持章望之論一篇來, 以吾爲好怪, 率天下之人爲禮不求諸內而競諸外, 人之內不充而惟外之飾焉, 終亦必亂而已矣.

23) 「禮論後語」: 嗚呼! 章子有耳目邪? 抑矇且聵邪? 有則奚不視吾文, 聽吾言?

24) 『宋史』 권443, 列傳202, 文苑5. 章望之條.

을 하고 있는 것이다. 두 사람의 주장의 시비를 가리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 아니므로 이구의 마지막 발언을 소개하며 이 장을 마친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다.”²⁵⁾는 것은 군자를 말한다. 내가 부득이 (「예론후어」를) 펴는 것은 (장망지의 의론이) 세상사람들을 미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내 말은 여기에서 그치니, 장선생이 비록 다시 말한다해도 나는 성내지 않겠다.²⁶⁾

제2절 『周禮致太平論』

「연보」에 의하면 이구는 35세에 「주례치태평론」을 지었다. 「예론」 7편후 11년이 지난 시점이다. 이해 이구는 과거에 낙제하고 물러나 퇴거하여 「퇴거유고」를 스스로 편집하고, 「경력민언」 30편과 「주례치태평론」 51편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이구집」 권5에서 권14까지 10권으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때, 한 해에 다 작성한 것은 아니고 축적되어온 것을 정리한 것으로 생각된다. 「주례치태평론」을 지은 이구의 주장은 한 마디로 “『주례』를 통해서 태평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런데 ‘주례치태평’이란 말은 이구가 처음 쓴 것은 아니다. 이구 이전에 이미 유흠(劉歆: BC53?-BC23)과 정현(鄭玄: 127-200)에게서 보인다.²⁷⁾

『주례』는 『周官』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일종의 정부조직표와 같은 성격의 책이다. 382직(職)의 이름과 역할·인원 등등이 나열되어 있다. 강유위(康有爲: 1858-1927)가 『주례』를 ‘신대(新代: 왕망)의 학(學)’이라고²⁸⁾ 맹공을 펴기 훨씬 이전부터 경금문학자(經今文學者)들은 『주례』를 부정하였다. 왕망의 집권기에 유흠에 의해 세력을 확장한 때문이기도 하고, 뒷날 왕안석이 『周

25) 남이...않는다: 『논어』 「학이」.

26) 「禮論後語」: 人不知而不愠, 謂之君子. 吾不得已而申之者, 爲其惑衆也. 吾言止是矣, 章子雖復言, 吾不愠也.

27) 당나라 賈公彥의 「周禮正義序」와 「序周禮廢興」에 『周禮』에 관한 설명이 자세하는데, 「序周禮廢興」에서 “唯有鄭玄徧覽羣經, 知周禮者, 乃周公致太平之迹.”이라고 하였다.

28) 강유위, 『新學僞經考』.

『禮新義』를 지어 선비를 발탁하기도 하는 등 논란이 계속된 책이기도 하나, 어찌 되었든 훗날 13경에 포함되어 경의 지위를 잃지 않았다. 이구도 이러한 논란을 모른 것은 아니었으나, 주공의 저작으로 굳게 믿고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한 것이다. 이구의 「주례치태평론」은 본론 50편과 서문1편, 합하여 51편으로 되어 있다. 서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옛날 유자준(劉子駿: 劉歆)과 정강성(鄭康成: 鄭玄)은 둘 다 『주례』를 주공이 태평을 이룬 자취라 하였는데, 임석(林碩)은 말세의 책이라 하였고, 하휴(何休: 129-182)는 6국의 음모라고 하였다. 그러나 정현의 의가 펼쳐져 『周官』이 드디어 행하여졌다. 내가 6전(六典: 周禮)의 글을 가만히 보니 그 마음씀이 지극함을 다하여, 하늘에 상(象)이 있는 것과 같고, 땅에 형(形)이 실려있는 것과 같았다. 옛날 총명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이에 미칠 수 있겠는가? 주공이 태평을 이루었다고한 말은 믿을만하다. 29)

이구를 금고문 논쟁에 끼워넣고자 하는 것은 아니나, 굳이 말하자면 유희과 정현의 고문을 옳게 보고, 임석과 하휴를 ‘비유속사(鄙儒俗士)’로 규정하면서 금문의 공양전을 평가절하하고 있다. 그러면서 임금이 취해야할 법의 기준으로 『주례』를 채택하였고, 서문포함 51편을 기술한다고 하였다. 그 취지는 『주례』에 대한 주석을 달고자함이 아니라 임금이 알아주었으면 해서, 당대에 태평을 이루어주었으면 해서 “『주례』로 태평을 이루자!”는 제목으로 썼다고 밝히고 있다.

후궁과 관련된 「내치」편을 빼고, 오늘날 용어로 바꾸면 경제·국방·사법·행정·교육 전반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선언문이다. 읽어 내려가 보면 90조에 걸쳐 주관(周官)을 예시하고 풀이한 뒤 고래 제왕들의 행적과 경전의 구절들을 섞어 설명하는데, 사실은 이구 자신의 주장을 강한 어조로 토로하고 있다. 『주례』는 이름만 빌려주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 입론의 예로 거론한 주관(周官)을 중심으로 전편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29) 「周禮致太平論」序: 紘曰: 昔劉子駿鄭康成, 皆以周禮爲周公致太平之迹, 而林碩謂末世之書, 何休云六國陰謀. 然鄭義獲伸, 故周官遂行. 觀竊觀六典之文, 其用心至悉, 如天焉有象者在, 如地焉有形者載. 非古聰明睿智, 誰能及此? 其曰“周公致太平”者, 信矣.

「표4」 「주례치태평론」 논제표

1	내치內治1	內宰·九嬪	26	군위軍衛3	宮伯·宮正·諸子
2	내치內治2	天官冢宰·春官	27	군위軍衛4	稟人·弓人·矢人·廬人·函人
3	내치內治3	昏義	28	형금刑禁1	大司寇
4	내치內治4	女御	29	형금刑禁2	小司寇·朝士
5	내치內治5	內宰	30	형금刑禁3	鄉士·遂士·縣士
6	내치內治6	內宗·外宗	31	형금刑禁4	掌囚
7	내치內治7	媒氏	32	형금刑禁5	司救·大司寇·司圜
8	국용國用1	大府	33	형금刑禁6	萍氏·司虺·大司徒
9	국용國用2	玉府·內府	34	관인官人1	閭胥·族師·黨正·州長·鄉大夫
10	국용國用3	太宰	35	관인官人2	司士
11	국용國用4	大司徒·載師	36	관인官人3	大宰·宰夫·司會
12	국용國用5	遂人·稻人	37	관인官人4	考工注
13	국용國用6	遂大夫·里宰·遂師	38	관인官人5	地官序
14	국용國用7	載師·閭師	39	관인官人6	大司徒
15	국용國用8	土均	40	관인官人7	大行人
16	국용國用9	職方氏	41	관인官人8	內小臣
17	국용國用10	司稼	42	교도교도1	大司徒
18	국용國用11	泉府	43	교도교도2	外饗·酒正
19	국용國用12	司市	44	교도교도3	大司徒·黨正
20	국용國用13	遺人	45	교도교도4	大宰
21	국용國用14	司救·賈師·掌客·膳夫	46	교도교도5	小司徒·鄮長
22	국용國用15	鄉師·均人	47	교도교도6	鄉師
23	국용國用16	大司徒	48	교도교도7	典命·大司徒
24	군위軍衛1	小司徒·夏官序	49	교도교도8	大司樂·大胥
25	군위軍衛2	大司馬	50	교도교도9	師氏·保氏

『周官』 전체 382직에 대한 주석(註釋)이 아니라, 자신의 입론에 필요한 구절만(90조)을 옮겨 놓고 풀이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결론에 해당하는 마지막 50번째 「教道」 9 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❶ 사씨(師氏)는 선도(善道)로써 왕에게 고하는 것과 삼덕(三德)으로써 국자(國子)³⁰를 가르치는 것을 관장한다. (삼덕은) 첫째는 지덕(至德)이니 도의 근본이 되고, 둘째는 민덕(敏德)이니 행실의 근본이 되고, 셋째는 효덕(孝德)이니 역악(逆惡)을 (행하

30) 國子: 公卿大夫之子弟(漢鄭玄의 注), 王太子, 王子, 羣后之太子, 卿大夫元士之適子, 國之俊選(唐賈公彥의 疏).

면 안되는 것을) 아는 것이다. 삼행(三行)을 가르치는데, 첫째는 효행(孝行)이니 부모를 친애하는 것이요, 둘째는 우행(友行)이니 어진사람을 존경하는 것이요, 셋째는 순행(順行)이니 스승과 어른을 섬기는 것이다. 보씨(保氏)는 왕의 악행을 간(諫)하는 것과 공경대부의 자제를 도(道)로써 기르는 것을 관장한다. 육예(六藝)를 가르치니, 첫째는 오례(五禮)³¹⁾요, 둘째는 육악(六樂)³²⁾이요, 셋째는 오사(五射)³³⁾요, 넷째는 오어(五馭)³⁴⁾요, 다섯째는 육서(六書)³⁵⁾요, 여섯째는 구수(九數)³⁶⁾이다. 육의(六儀)를 가르치니, 첫째는 제사의 용모요, 둘째는 빈객의 용모요, 셋째는 조정의 용모요, 넷째는 상기의 용모요, 다섯째는 군려의 용모요, 여섯째는 거마의 용모이다.³⁷⁾

② ‘이미조왕(以嫗詔王)’은 왕에게 선도(善道)로써 고하는 것이다. ‘간(諫)’이라는 것은 예의(禮義)로써 바로잡는 것이다. ‘국자(國子)’는 공경대부의 자제이니 사씨가 가르치고, 세자도 또한 학생으로 참가한다.³⁸⁾ ‘양국자이도(養國子以道)’라는 것은 사씨의 삼덕과 삼행으로 깨우친 뒤에 육예와 육의로써 가르치는 것이다. 사씨와 보씨가 왕에게 선으로써 고하고, 왕의 악행을 간했을 때 왕은 허물없는 곳에 이미 서있게 된다. 또한 국자를 가르치고 기르며, 세자까지 참여하게 하니 이는 상책(上策)이다. 『왕제』에 “악정(樂正)이 사술(四術)을 숭상하고, 사교(四敎)를 세워서, 선왕의 『시』·『서』·『예』·『악』을 따라 선비를 키워냈다. 봄·가을에는 『예』·『악』으로써 가르치고, 겨울·여름에는 『시』·『서』로써 가르쳤다. 왕태자와 왕자와 제후의 태자와 경·대부·원사의 맏아들과 일반백성의 준수한 자들이 다 수업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옛날에 사람을 가르칠 때 세자는 있지 아니함이 없었다. 『문왕세자』에 “한 가지 일을 행하여 세 가지 선을 다 얻는 것은 오직 세자일 따름이니, (태)학에 치양(齒讓)함을 이룬 것이다.³⁹⁾ 그러므로 세자가 (태)학에 치양(齒讓)할 때 나라 사람들이 보고 말하기를 ‘장차 우리의 임금님이 되실 분인데 우리와 치양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라고 하면 말하기를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예가 그러하다.’라고 하였다. 그렇게 하여 모든 사람들은 부자의

31) 五禮: 吉, 凶, 賓, 軍, 嘉也.(鄭玄注)

32) 六樂: 雲門, 大咸, 大韶, 大夏, 大濩, 大武也.(鄭玄注)

33) 五射: 白矢, 參連, 剡注, 襄尺, 井儀也.(鄭玄注)

34) 五馭: 鳴和鸞, 逐水曲, 過君表, 舞交衢, 逐禽左.(鄭玄注)

35) 六書: 象形, 會意, 轉注, 處事, 假借, 諧聲也.(鄭玄注)

36) 九數: 方田, 粟米, 差分, 少廣, 商功, 均輸, 方程, 贏不足, 旁要.(鄭玄注)

37) 六儀: 鄭玄의 注에서는 “祭祀之容, 穆穆皇皇. 賓客之容, 嚴格矜莊. 朝廷之容, 濟濟踴踴. 喪紀之容, 涕涕翔翔. 軍旅之容, 闕闕仰仰. 車馬之容, 顛顛堂堂.”이라고 하였다.

38) 齒: 齒讓을 말한다. 序齒相讓. 곧, 나이 순서로 서로 양보한다는 뜻이니, 세자도 일반 학생과 똑 같이 학생자격으로 수업에 참가한다는 말이다.

39) 『禮記正義』 鄭玄注에 “一物, 一事也, 與國人齒讓之一事也. 三善, 謂衆人知父子君臣長幼之道也.”라고 하였다.

도를 알게 된다. 그 두 번째 말하기를 ‘장차 우리의 임금이 되실 분인데 우리와 치양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라고 하면 말하기를 ‘임금이 계실 때는 예가 그러하다.’ 라고 하였다. 그렇게 하여 모든 사람들은 군신의 의에 밝게 된다. 그 세 번째 말하기를 ‘장차 우리의 임금이 되실 분인데 우리와 치양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라고 하면 말하기를 ‘어른을 어른으로 여기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렇게 하여 모든 사람들은 장유의 예절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계시면 아들이 되고, 임금이 계시면 신하라 이른다. 아들과 신하의 자리에 거하는 예절은 임금을 높이고 어버이를 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르치면 부자가 되고, 가르치면 군신이 되고, 가르치면 장유가 된다. 부자 · 군신 · 장유의 도를 얻으면 나라가 다스려진다.” 라고 하였다. 장차 종묘사직을 맡길 것인데 가르치지 아니할 것인가?

㉓ 가의(賈誼; BC200-BC168)가 말하였다.⁴⁰⁾ “천하의 명운이 태자에게 매어 있다. 태자의 선(善)은 일찍 가르치는 것과 좌우에 (바른사람을) 뽑는 것에 있다.” · “3대(三代: 夏商周)가 장구(長久)했던 것은 태자를 보익(輔翼)하는데 이러한 장치가 되어있었기 때문이다.” 문중자(文中子; 王通: 580-617)는 말하였다. “저후(儲后: 세자)를 가르치지 않아 진(晉)이 무너졌다!” 혜제(惠帝: 259-306)가 천하를 잃는 것을 보면 한심(寒心)하지 아니한가? 순경이 말하였다. “성왕(聖王)이 백이 있는데 나는 누구를 범할까? 성왕의 자취를 보고자 한다면 그 찬란한 곳 이어야 할 터인데 후왕(後王: 周王)이 이것이다.”⁴¹⁾ · “도가 삼대를 지나치면 방탕하다 이를 것이요, 법이 후왕을 어기면 바르지 못하다고 이를 것이다.”⁴²⁾ 그렇다면 주나라를 버리고 그 어디로 갈 것인가? 공자는 “심하다! 나의 쇠함이여. 오래 되었다! 나는 다시 주공을 꿈에 보지 못하였다.”⁴³⁾ 라고 하셨다. 아! 오히려 지금 세상에서 바라는 것이 있는가?⁴⁴⁾

40) 『漢書』 권48. 賈誼傳. 두 마디 모두 가의가 한 말인데 이구는 앞 뒤 순서를 바꾸었다. 마치 이구가 당시의 왕에게 직접 말하는 듯 보인다. 이구가 자신의 주장을 펴기위해 인용한 인용문들은 이처럼 앞 뒤를 바꾸어 가면서 전개를 잘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중화서국판 왕국현 교점본 『이구집』 에도 원문인용에 이러한 오류가 간혹 있다.

41) 『순자』 「非相」 편에 있는 말. 훌륭하지만 자료가 빈약한 선왕보다는 가까이 자료가 풍부한 후왕을 따르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후왕은 주나라를 가리킨다.

42) 『순자』 「王制」 편에 있는 말. 올바른 왕의 제도(王制)는 그 도는 삼대를 지나쳐서는 안되고, 그 법은 후왕과 다르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43) 심하다...못하였다: 『論語』 「述而」.

44) 「教道」 第九: 師氏, 掌以嫩詔王, 以三德教國子. 一曰‘至德’, 以爲道本, 二曰‘敏德’, 以爲行本, 三曰‘孝德’, 以知逆惡. 教三行, 一曰孝行, 以親父母, 一曰友行, 以尊賢良, 三曰順行, 以事師長. 保氏, 掌諫王惡而養國子以道. 乃教之六藝, 一曰五禮, 二曰六樂, 三曰五射, 四曰五馭, 五曰六書, 六曰九數. 乃教之六儀, 一曰祭祀之容, 二曰賓客之容, 三曰朝廷之容, 四曰喪紀之容, 五曰軍旅之容, 六曰車馬之容. 以嫩詔王, 告王以善道也. 諫者, 以禮義正之. 國子, 公卿大夫之子弟, 師氏教之而世子亦齒焉. 養

첫 번째 단락 ①은 『周禮』 地官 司徒下的 사씨와 보씨 조의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전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론에 필요한 앞 부분만 끌어왔다. 두 번째 단락 ②는 원문에 대한 이구의 주석인데, 자신이 주석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한나라 정현의 주와 당나라 가공언의 소를 인용하여 풀이하고 있다. 이구 자신의 말처럼 해경(解經)을 위한 주석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夫將以宗廟社稷屬之, 可不教乎?)을 펴기 위한 전초로서 기존의 주소(注疏)를 적절히 인용하고 있다. 세 번째 단락 ③은 『주례』의 내용을 기초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가의 · 문중자 · 순경을 통해 대변시키고 있다.

결국 「敎道」9에서 이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자식교육 제대로 시켜서 한심(寒心)한 임금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송나라가 장구(長久)할 수 있는 상책(上策).” 이라는 것이다. 자신이 대놓고 말하기 꺼끄러운 이야기를 경전의 권위를 갖고 있는 『주례』와 멀리 가의 · 문중자 · 순경을 통해 말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50조에 걸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나서, 이구는 “과거 공자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다시 주공을 꿈꾼다.”고 하면서 「周禮致太平論」을 마친다.

제3절 『明堂定制圖序』·『五宗圖序』

國子以道者, 以師氏之德行審諭之, 而後教之以藝儀也. 師保詔王以善, 諫王之惡, 王者既立乎無過之地矣. 又使教養國子, 而世子與焉, 是策之上也. 「王制」曰, “樂正崇四術, 立四教, 順先王『詩』『書』『禮』『樂』以造士. 春秋教以『禮』『樂』, 冬夏教以『詩』『書』. 王太子, 王子, 羣后之太子, 卿大夫元士之適子, 國之俊選皆造焉.” 則古之教人者, 世子無不在也. 「文王世子」曰, “行一物而三善皆得者, 唯世子而已, 其齒於學之謂也. 故世子齒於學, 國人觀之, 曰: ‘將君我而與我齒讓, 何也?’ 曰: ‘有父在, 則禮然. 然而衆知父子之道矣.’ 其二曰: ‘將君我而與我齒讓, 何也?’ 曰: ‘君有在, 則禮然. 然而衆著於君臣之義也.’ 其三曰: ‘將君我而與我齒讓, 何也?’ 曰: ‘長長也.’” 然而衆知長幼之節矣. 故父在斯爲子, 君在斯謂之臣, 居子與臣之節, 所以尊君親親也. 故學之爲父子焉, 學之爲君臣焉, 學之爲長幼焉. 父子君臣長幼之道得而國治. 夫將以宗廟社稷屬之, 可不教乎? 賈誼有言: “天下之命繫於太子, 太子之善在於早諭教與選左右, 三代之所以長久者, 以其輔翼太子有此具也.” 文中子曰: “儲后不訓而晉業隳矣! 觀惠帝之失天下, 可無寒心也哉?” 荀卿曰: “聖王有百, 吾孰法焉? 欲觀聖王之跡, 則於其粲然者矣, 後王是也. 道過三代謂之蕩, 法貳後王謂之不雅. 然則舍周其何適哉?” 孔子曰: “甚矣! 吾衰也, 久矣! 吾不復夢見周公.” 噫! 猶有望於今之世乎?

신은 삼가 엮드려 생각하옵건대 명당(明堂)이라는 것은 옛날 성왕(聖王)의 큰 의 무입니다. 상제를 섬기고 선조를 높이며 시령(時令)을 펴고 제후를 합하는 곳이니 조정의 의례가 이보다 성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오래되고 멀어 규모를 볼 수 없습니다. 경전에 나오는 것은 들쭉날쭉하여 한결같지 않습니다. 여러 유자(羣儒)들의 허풍은 각각 그 익힌 것을 믿을 뿐입니다. 추락된 것을 닦고 빠진 것을 보충함에 어떤 것을 오로지 따를 것입니까? 신은 비록 어리석으나 일찍이 그욕이 이를 논해 보았습니다. 45)

「明堂定制圖序」의 도입부분이다. 「명당정제도서」는 명당에 대한 고증부분과 고증을 통한 명당의 재현부분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명당도(明堂圖)는 전하지 않고 서문만 문집에 수록되어 있다. 28세때 지은 것으로 이구를 소개할 때 대표적인 작품으로 거론되고 있고, 46) 실제 『송사』 이구전은 거의가 「명당정제도서」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이구는 명당의 제도와 관련하여 고서적들을 비교하여 절충을 시도하면서, 여러 유자들의 허풍을 경계하고 있다. 이하 명당과 관련된 내용은 이구의 서문에 자세하므로 중언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왜 이구가 이렇게까지 명당에 관심을 갖고 철저한 고증을 시도했는가 하는 점이다. 명당의 구조에 관한 건축학적인 관심은 당연히 아니다. 이구는 송상(宋庠)에게 쓴 편지에서 47) “경전의 의미를 밝히고 왕의 성례(盛禮)를 돕고자 하였다.” 라고 그 의도를 직접 밝히고 있는데, 이는 서문에서 “신의 몸은 비록 미천하나 또한 이때 만에 하나라도 도움이 되어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한 말과 일치한다. 결국 이구는

45) 「明堂定制圖序」: 臣伏以明堂者, 古聖王之務也. 所以事上帝, 嚴先祖, 班時令, 合諸侯, 朝廷之儀, 莫盛於此. 然而年世久遠, 規模靡見. 經傳所出, 參差不同. 群儒講張, 各信其習. 修墜補闕, 何所適從? 臣雖顛蒙, 嘗竊議於斯矣.

46) 범중엄은 이구를 조정에 천거할 때 이구의 저작중에 「禮論」·「易論」·「平土書」와 함께 「明堂定制圖序」를 대표작으로 소개하면서, “오늘이 조정에서 이 大禮를 행할 千載一遇의 때입니다. 이 사람의 學古의 마음은 위로 성인이 지으신 것과 합쳐집니다.”라고 하였다. 또한 “이구는 著書와 立言이 맹자와 양옹의 風義가 있습니다.”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실제 이구는 범중엄의 이 薦章에 힘입어 비로소 42세에 ‘將仕郎太學助教’를 제수 받았다. 한편 門人 陳次公이 지은 (李觀)先生墓誌에 “임종하실 때 다른 말씀은 없으셨다. 오직 나의 손을 잡고 ‘明堂定制圖’를 부탁하셨다.”라고 한 것을 보면 죽는 순간 까지도 얼마나 애착을 가졌는지(自託不朽) 짐작할 수 있다. 「直講李先生年譜」 참고.

47) 『李觀集』 권27 「上宋舍人書」: 嘗所著明堂定制圖一道并序, 其意在贊明經義, 以裨益一王之盛禮.

‘성왕의 큰 의무’이며 ‘조정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의례’인 명당을 밝힘으로써 ‘상제를 섬기고 선조를 높이며 시령을 펴고 제후를 회합하는’ 과거 속에 존재했던 위풍당당한 왕의 모습을 현재 송나라에서 이루어 줄것을 원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 자신도 힘을 보태겠다고 한 것이다(自託不朽). 명당에 대한 해경(解經)이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다. 예의 고전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이구의 모습이 드러나는 장면이라 하겠다.

「오종도서」는 오종(五宗)을 고증한 도(圖)와 서(序)인데, 현재 도는 없고 서만 남아있다. 오종은 친형제(同父), 종형제(同祖), 재종형제(同曾祖), 삼종형제(同高祖) 집단을 일컫는 사종(四宗)에 동성동본인 부계친족 전체를 의미하는 대종(大宗)을 더한 것이다. 주나라 종법제의 근간이라 하겠는데, 이구는 『禮記』 권16 「大傳」의 “별자위조(別子爲祖)” 이하 몇 구절에 착안하여 오종에 대한 고증을 시도하고 도를 첨부한 것이다. 저작 시기는 자세하지 않다. 「대전」이라는 말은 부(父)에서 자(子)로 이어지는 전승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종법의 전체가 담긴 것이 아니고, 크게 주목받지 못한 책이었지만 이구는 작은 기록이나마 무시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펴기 위해 고증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비교적 짧은 글인데 마지막 ‘찬(贊)’ 부분만 소개한다.

찬(贊): 나는 삼종에서 효제(孝弟)의 지극함을 보았다. 고조(高祖)이상은 멀어도 수십백세(數十百世)에 그 정체(正體)를 높이는 것은 조상을 잊지 않는 것이다. 효를 어떻게 하는가? 단문(袒免: 五世) 밖은 소원한데도 모여서 먹을 때 소목(昭穆)으로 순서하는 것은 동성(同姓)을 후하게 하는 것이다. 제(弟)를 어떻게 하는가? 선왕이 천하를 다스릴 때 이것이 그 근본이었던 것이다! 주나라가 쇠하여 법이 해이해지니 이 도가 망하였다. 서자(庶子)가 적자(適者)를 대적하려한 것도 있었고, 어린이가 어른을 능멸하려한 것도 있었다. 조상은 세대에 따라 끊어져, 멀어지면 잊혀졌으며, 친족은 오복(五服)으로 다스려 멀어지면 야박해졌다. 골육(骨肉)이 흑 길 가는 사람과 같아졌으니 오히려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는가? 오호라! 서(書)는 타버리고, 간(簡)은 탈락되었다. 다행히 그 약간 남아있는 것을 학자들은 살피지 아니하니 나는 심히 안타까웠다. 그러므로 도(圖)로써 표장(表章)하였다.⁴⁸⁾

48) 「五宗圖序」 贊曰：吾於三宗見孝弟之至焉。高祖以上遠矣，而數十百世尊其正體，不忘祖也。何孝如之？袒免以外疏矣，而合之以食，序以昭穆，厚同姓也。何弟如之？先王之所以治天下，此其本歟！周

짧은 글이지만 이구가 어디서 어떤 예(禮)를 이야기 하더라도 관심은 ‘천하를 다스리는 것(治天下)’ 이었고, 그 기준은 주나라였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衰法弛, 斯道以亡. 庶匹適者有之矣, 幼陵長者有之矣. 祖以世斷, 遠則忘之矣, 族以服治, 疏則薄之矣. 骨肉或如行路, 尙何有於天下乎? 於戲! 書燔簡脫. 幸存其畧, 而學者弗之察, 吾甚病焉. 故表之以圖云.

제3장 이구의 易學

동양의 전통시대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을 보려면 그 출발점은 역학관이라고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역학의 전통은 춘추이후만 계산해도 2,000여년이 넘는데 송대에 이르러서는리학가는 물론 각분야의 지식인들이 역학에 대한 각자의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구도 예외가 아니었다. 역학에 관한 이구의 주장은 그의 문집에 흩어져 있으나 『이구집』 권3의 「易論」 13편과 권4의 「刪定易圖序論」에 집약되어 있다. 「역론」 13편은 『역』에 관한 이구 자신의 주장이며, 「산정역도서론」은 유목(劉牧: 1011 - 1064)이 지은 「易數鉤隱圖」를 산정(刪定)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펼친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이구의 「역론」 13편과 「산정역도서론」을 분석하여 보고, 이를 통해 이구의 역학관을 살펴보려 한다.

제1절 『易論』 13편

「역론」 13편의 정확한 저작연대는 명확하지 않으나 「直講李先生年譜」에 의하면 28세 무렵으로 추정된다. 「역론」 13편을 지은 과정은 이구 자신이 「산정역도서론」에서 밝히고 있다.

나는 일찍이 「역론」 13편을 지었는데 왕필의 주를 원용하여 의미를 풀었다. 대개 천하국가의 쓰임에 급한 나머지 조금이라도 그윽하고 은미한 것을 분석할 겨를이 없었다.⁴⁹⁾

이구는 「역론」 13편에서 『역』의 의미를 풀이할 때 한나라 이래의 상수학을 따르지 않고 왕필의 주를 원용하여 ‘천하국가지용(天下國家之用)’을 주장하려 한 것인데 미처 은미한 이치는 다루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49) 『이구집』 권4 「刪定易圖序論」: 觀嘗著易論十三篇, 援輔嗣之注以解義, 蓋急乎天下國家之用, 毫析幽微, 所未暇也.

「역론」 13편에서 이구는 ‘혹자가 물었다(或曰).’ 에 대한 대답(曰)의 문답형식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혹자가 물었다.

“『역』은 배울 수 없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은미하고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까?”

답하였다.

“배우는 사람들의 잘못이다. 성인이 『역』을 지은 것은 본래 사람을 가르치려는 것인데 세상의 비루한 유생들이 그 떳떳한 도(常道)를 소홀히 하고 다투어 이단을 익혔다.⁵⁰⁾

위 인용구는 이구 「역론제1」의 서두 도입부분인데 「역론」 13편 전체의 서문격으로 이구의 역학관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구에 따르면 세상만사의 모든 것이 『역』에 들어있는데 이러한 『역』을 성인이 지은 이유는 ‘사람을 가르치고자 함(敎人)’이다.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은 ‘임금의 길’, ‘신하의 길’ 등이다. 이는 『역』이 점치는 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석가와 노자의 학문과도 다름을 밝힌 것이다. 이것은 훗날 ‘점치는 책’을 표방한 주희의 견해와 다르고, 상수역내지 도서역과 관련된 언급도 없다. 포희(복희) · 문왕 · 주공 · 공자로 이어지는 성인에 대한 인식은 전통적인 역학관과 일치하지만, 특이한 것은 왕필(226-249)을 높이 인정한 것이다.

왕필의 역학은 실은 도가를 존중하고 유가를 배척하는 경향이기는 하나 역학사에서의 왕필의 영향은 큰 것이었다. 왕필은 『역』이 정치철학을 강론한 책이라 보고, 나아가 득의망상설(得意忘象說) · 취의설(取義說) · 효위설(爻位說)을 주장하여 한역(漢易)의 극히 변쇄한 상수학과 미신을 배척하고 현학(玄學)에 의한 역해석의 새로운 풍조를 열었다고 평가되는데⁵¹⁾ 이구는 이러한 왕필을 ‘현(賢)’으로 인정하고, 「산정역도서론」에서도 밝혔듯이 왕필의 주를 인용하여 『역』의 의미를 풀이하고 있다.

50) 『이구집』 권3 「易論第一」 : 或曰『易』之爲書也, 其不可學邪? 何其微而不顯也? 曰 學者之過也. 聖人作『易』, 本以敎人, 而世之鄙儒, 忽其常道, 競習異端.

51) 료명춘 강학위 양위현 저, 심경호 역, 『주역철학사 : 원제는 주역연구사』, 1994. 예문서원, p287.

이어지는 문답에서 이구는 괘와 효를 자유자재로 인용하면서 논의를 전개 하는데 그 내용은 ‘임금이 되는 길(爲君之道)’, ‘정치를 대신에게 맡기는 것(委之大臣)’, ‘신하가 되는 길(爲臣之道)’, ‘몸가짐(治身)’, ‘제가(齊家;家道)’, ‘대인관계(遇於人)’ 등등이다. 논제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5」 「역론」 13편 논제표

易論第1	易之爲書，爲君之道，威武成命.
易論第2	任官，委之大臣.
易論第3	爲臣之道.
易論第4	治身，家道.
易論第5	遇於人.
易論第6	動而無悔，退避之道.
易論第7	人事之變.
易論第8	常，權，幹蠱之難.
易論第9	慎.
易論第10	文王之囚箕子之奴.
易論第11	時.
易論第12	乾，坤，大過，遯，明夷，剝，否，屯，蹇，困，比，同人，隨，謙，巽，豫，兌，晉，升，泰，既濟.
易論第13	八卦成列.

이상의 논제들을 살펴보면 이구의 「역론」 13편은 괘기(卦氣), 오행(五行), 납갑(納甲), 효진(爻辰), 괘변(卦變), 호체(互體) 등으로, 일반적인 한역과 상수역 내지 도서역에 보이는 이론들과 다르다. 이구가 이 논제들에 대한 답으로 예를 든 괘효만 빼고 보면 이구의 「역론」 13편은 『역』 자체에 관한 논의라기보다 정치에 관한 논의 내지는 자기의 주장을 『역』의 괘효형식을 빌려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자들의 지적처럼 경세론적 역학관이라고 할 수 있겠다.⁵²⁾

52) 鄭炳碩, 「李觀의 經世論的 易解釋」, 『東洋哲學研究』 22, 2000.

다음은 ‘혹왈’에 대한 이구의 답변방식을 살펴본다. 앞에 인용한 「역론 제1」의 다음 구절은 이러하다.

혹자가 물었다.

“그렇다면 임금이 되는 길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말한다.

“무릇 귀함(貴)을 쓰려면 공손함(恭) 만한 것이 없고, 부(富)를 쓰려면 검소함(儉) 만한 것이 없다. 공손하면 군중이 돌아오고, 검소하면 재물이 모인다. 공손함과 검소함이라는 것은 선왕이 사해를 보전한 방법이다. 손(損)과 육오 효사에 ‘혹 더해주되 십봉(十朋)의 거북(龜)으로 하면 능히 어길 수 없을 것이니 원길(元吉)하다.’라고 하였다. ‘거북(龜)’은 의심난 것을 결정짓는 것이니 밝은 지혜를 비유한 것이다. 유(柔=六爻)로써 높은 지위(五位=임금)에 거하여 덜어내는 도(損道)를 하니, 밝고 지혜로운 선비들이 모두 즐겁게 쓰임이 되려한다. 사람이 도와줄 뿐만 아니라 하늘도 또한 도와준다. 그러므로 「상」에 ‘육오의 원길은 위로부터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공손함이 군중을 얻는 것이 이와 같다”⁵³⁾

이후 이구는 賁괘 六五효(儉), 既濟괘 九五효(薄), 益괘 九五효(博愛無私), 屯괘 九五효(博施), 比괘 九五효(執剛莫如體柔, 責人莫如自脩), 同人괘 九五효(使物自歸), 困괘 九五효(修德, 過而能改), 夬괘 九五효(處中而行), 否괘 九五효(救弊之術, 莫大乎通變), 巽괘 初六효(宜用武威, 乃能成命), 革괘 上六효(治國始於齊家, 王化本乎夫婦), 家人괘 九五효(正家而天下定)를 예로 들어 “이것이 임금의 길이다.”라고 설명한 후 ‘위무(威武)’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고 「역론제1」을 마친다.

13개의 효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임금의 길’을 설명하는데, 이구가 말하고자 하는 ‘임금의 길’은 결국 (1)검손하고, (2)검소하며, (3)소박하고, (4)편애없이 모두 사랑하며, (5)널리 베풀고, (6)스스로를 수양하며, (7)사람들이 스스로 이를 수 있게 도와주고, (8)덕을 닦아 잘못된 것을 고치며, (9)중도를 행하고, (10)폐단을 바로잡되 변통할줄 알아야 하며, (11)위엄을 갖추어 명

53) 『이구집』 권3 「易論第一」: 曰 然則請問爲君之道. 曰 夫用貴莫若恭, 用富莫若儉. 恭則衆歸焉, 儉則財阜焉. 恭儉者, 先王之所以保四海也. ‘損六五曰 或益之十朋之龜, 弗克違, 元吉.’ 龜可決疑, 喻明智也. 以柔居尊, 而爲損道, 明智之士, 皆樂爲用矣. 非徒人助, 天且福之. 故「象」曰 ‘六五元吉, 自上祐也.’ 恭之得衆也如此.

령이 서게 하고, (12)가정을 잘 다스리며, (13)천하를 안정케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반대로 말하면 당시 임금은 그러하지 못하였다는 것일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이 당시 송나라 군주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다. 비단 ‘임금의 길’ 뿐만 아니라 「역론」 13편에서 제기한 논제들을 읽어보면 『역』의 이름을 빌리고 괘와 효를 차용하였을 뿐 28세 전후의 저작들, 곧 「明堂定制圖並序」, 「平土書」, 「富國」, 「彊兵」, 「安民」 30策등에서 주장하는 견해와 궤를 같이한다. 다시 말해서 「역론」 13편에서 보이는 이구의 역학관은 『역』 자체에 대한 담론이라기 보다는 이구의 정치적 견해를 『역』의 괘효를 빌어 표방한 것이라 하겠다. “만사의 이치가 『역』에 모두 들어있다.” 고 한 이구의 말에서 보듯 이구가 다수의 저작에서 주장한 것들은 이러한 역학관 속에 싹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문답은 이후로도 계속 이어지는데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6」 「역론」 13편 논제에 대한 이구의 답변표

論次	論題(或曰)	李觀의 答辯(曰)
論1	易之爲書.	聖人作易, 本以教人. 萬事之理, 靡不在其中.
	爲君之道.	損卦 六五爻(恭), 賁卦 六五爻(儉), 既濟卦 九五爻(薄), 益卦 九五爻(博愛無私), 屯卦 九五爻(博施), 比卦 九五爻(執剛莫如體柔, 責人莫如自脩), 同人卦 九五爻(使物自歸), 困卦 九五爻(修德, 過而能改), 夬卦 九五爻(處中而行), 否卦 九五爻(救弊之術, 莫大乎通變), 巽卦 初六爻(宜用武威, 乃能成命), 革卦 上六爻(治國始於齊家, 王化本乎夫婦), 家人卦 九五爻(正家而天下定). -13호.
	威武成命.	同人卦 九五爻(敵剛), 困卦 九五爻(來異方); 勝敵懷遠不可暴. 巽卦 初六爻(行令於吾人); 令善而衆疑, 不濟以威, 是終不可爲. : 蓋所施之異, 胡可結以一言哉. -3호.
論2	任官.	井卦 九五爻(行潔才高), 兌卦 九五爻(小人道長而國有危), 剝卦 六五爻(施寵小人, 勿使害正). -3호.

	委之大臣.	<p>蒙卦 六五爻(委之剛陽), 師卦 六五爻(九二得中, 可以任), 臨卦 六五爻(任得君子), 大壯卦 六五爻(委任於二), 恒卦 六五爻(制斷), 坤卦 初六爻(戒漸), 坤卦 上六爻(辯早). -7爻.</p>
論3	爲臣之道.	<p>否卦 初六爻(執剛用直), 升卦 九二爻(進不求寵, 志在大業), 損卦 初九爻(當自守正), 損卦 九二爻(宜得其中), 小畜卦 上九爻(尚德), 恒卦 初六爻(求深窮底), 節卦 上六爻(政不可以峻刻), 晉卦 初六爻(裕), 兌卦 九四爻(事君盡禮), 履卦 九四爻(謙), 坤卦 六三爻(待命而發), 无妄卦 六二爻(不擅其美), 渙卦 六四爻(不可自專), 坤卦 六四爻(隱其賢德), 隨卦 九四爻(不守以正, 速禍), 益卦 六二爻(義不忘君), 蹇卦 六二爻(執心不回). -17爻.</p>
論4	治身.	<p>性不能自賢. 蒙卦 六四爻(比賢), 觀卦 初六爻(道), 履卦 九二爻(履其中道), 中孚 九二爻(立誠篤至), 晉卦 六二爻(履正不回), 井卦 九三爻(欲不可逞), 震卦 初九爻(修德), 豫卦 初六爻(樂過則淫), 大壯卦 九三爻(觸藩), 益卦 上九爻(過盈), 頤卦 初九爻(躁求), 咸卦 六二爻(與衆雷同), 豫卦 六二爻(不改其操), 咸卦 九三爻(隨人), 小過卦 九三爻(從), 萃卦 六二(獨正). -16爻.</p>
	家道.	<p>蠱卦 初六爻(量事制宜, 以意承考), 蠱卦 九二爻(婦人之性, 難可全正), 家人卦 初九爻(豫防), 家人卦 九三爻(威克厥愛). -4爻.</p>
論5	遇於人.	<p>屯卦 初九爻(以貴下賤), 无妄卦 初九爻(行不犯妄), 困卦 九二爻(尚謙, 心無所私), 頤卦 六四爻(威而不猛). -이상 4爻 ; 上之遇下.</p> <p>大過卦 初六爻(心能謹慎), 訟卦 六三爻(順於上), 頤卦 六三爻(諂), 兌卦 六三爻(邪佞), 巽卦 九二爻(卑巽), 臨卦 九二爻(不可全與), 臨卦 六四爻(處順履正), 剝卦 六三爻(協), 夬卦 九三爻(心貴乎公而量貴乎大), 比卦 初六爻(心無私吝), 同人卦 初九爻(通夫大同), 兌卦 初九爻(說不在諂), 大過卦 九四爻(用心不廣), 蒙卦 九二爻(包而不距), 泰卦 九二爻(用心廣大, 無所朋黨). -이상 15爻 ; 下之遇上.</p>
論6	動而無悔.	<p>時乎時, 智者弗能違矣.</p> <p>蹇卦 初六爻(獨見前識), 歸妹卦 六三爻(待時), 豐卦 上六爻</p>

		(反道), 節 九二 爻(失時之極). -4 爻.
	退避之道.	君子見機而作. 渙 初六 爻(行得其志), 遯 初六 爻(和而不同), 明夷 初九 爻(絕跡匿形), 明夷 六二 爻(不可有所顧), 遯 九三 爻(宜遠小人), 遯 九四 爻(守正), 泰 九三 爻(艱而能貞, 不失其義), 明夷 六五 爻(正不憂危). -8 爻.
論7	人事之變.	屯 六二 爻(十年則反常), 大有 九四 爻(專心), 睽 六三 爻(執志不回), 漸 九五 爻(履正而居中), 漸 九三 爻(備), 既濟 六四 爻(終日戒), 屯 六四 爻(往必見納), 小畜 初九 爻(得義), 隨 六三 爻(志在丈夫), 睽 六五 爻(王必合), 屯 六三 爻(不如舍), 大畜 九二 爻(同患相恤), 睽 九四 爻(無應獨處, 不憂) -13 爻.
論8	常, 權.	事變矣, 勢異矣, 而一本於常, 猶膠柱而鼓瑟也. 履 九五 爻(不喜處盈), 豐 六二 爻(量時制宜), 益 六三 爻(謙沖), 大過 九二 爻(心無係吝), 大過 九三 爻(係心在一). -5 爻.
	幹蠱之難.	大有 九二 爻(健不違中), 鼎 九四 爻(智小謀大), 解 六三 爻(小人而乘君子之器), 井 九二 爻(卑者不可以有爲), 旅 九三 爻(疏者不可以有爲), 履 六三 爻(頑), 同人 九三 爻(貪), 隨 上六 爻(從), 離 九四 爻(履非其位). -9 爻.
論9	慎.	節 初九 爻(慎密不失), 夬 初九 爻(宜審其策), 復 初九 爻(幾悔而反), 需 九三 爻(恭慎防備), 訟 九四 爻(改變), 噬嗑 初九 爻(小懲大誡), 同人 九四 爻(思過), 臨 六三 爻(憂, 修), 復 上六 爻(迷), 噬嗑 上九 爻(惡積不改), 夬 九四 爻(聞言不信). -11 爻.
論10	文王之囚, 箕子之奴.	患非己招, 斯不足患也, 其必免矣. 節 六三 爻(違節), 漸 初六 爻(未傷君子之義), 姤 九三 爻(不遇其時), 蹇 六四 爻(往來皆難), 大過 上六 爻(涉難過甚), 蠱 上九 爻(自高尚其事), 漸 上九 爻(進處高潔, 不累於位), 賁 初九 爻(特立獨行). -8 爻.
論11	時.	否, 泰. -이상 2 卦 以一世爲一時, 時之大. 蒙, 履, 井, 觀, 鼎, 蠱, 訟, 噬嗑, 師, 需, 頤, 復, 節, 豫, 賁, 震. -이상 16 卦 以一事爲一時, 時之小.

<p>論12</p>	<p>乾, 坤, 大 過, 遯, 明 夷, 剝, 否, 屯, 蹇, 困, 比, 同人, 隨, 謙, 巽, 豫, 兌, 晉, 升, 泰, 既 濟.</p>	<p>乾(非承平之時), 坤(非大通之時). 大過(國家之難), 遯(小人得志), 明夷(闇主在上). 剝 · 否(禍之小), 明夷(禍之大). 屯(可爲之世), 蹇(不可爲之世), 困(人之所患, 莫斯之甚). 比(天下之人, 皆親其君), 同人(同志相合, 物各有黨), 隨(莫不從其所爲). 謙(下於物), 巽(情實卑順). 豫(主於逸樂), 兌(喜悅而已). 晉(進見於君), 升(升得位). 泰(物既大通, 多失其節), 既濟(物皆得其所, 事皆得其宜). -21과.</p>
<p>論13</p>	<p>八卦成列.</p>	<p>天地萬物, 存乎說卦矣. 八卦之道, 在人靡不有之也. 乾, 坤, 震, 巽, 坎, 離, 艮, 兌. ; 팔괘의 正 · 偏, 用國 · 用軍. 幽無不貫, 微無不徹, 惟所用之何如耳.</p>

일반적으로 괘효를 풀이할 때 효의 위치는 그 역할을 설명하는 면에 유용한데 여기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아래에서 첫 번째 효(初爻)는 시작을 의미한다. 따라서 좋은 의미의 시작은 격려하는 경향이 있고, 안 좋은 의미의 시작은 경계의 의미를 강조한다. 두 번째 효(二爻)는 『역』에서 중요한 ‘중(中)’을 점하고 있고 ‘하체(下體)’의 중심이기에 아래에 있는 어진 사람(賢者, 賢臣)을 의미한다. 세 번째(三爻)와 네 번째 효(四爻)는 30대 40대의 중요한 위치이지만 위 아래에 끼어 있어 모호한 처지에 있다. 하체에서 상체로 넘어가는 시기라 변화가 많은 위치이다. 이 때가 처신에 중요한 지침이 필요할 때 인데 『역』의 효위에서 진퇴를 설명할 때 자주 이용된다. 다섯 번째 효(五爻)는 임금의 자리인데 이 효에 양(陽)이 오면 강한 리더십을 갖춘 왕이라 좋을 때에는 좋지만 앓을 때에는 너무 강할 수 있어 경계가 필요하고, 음(陰)이 오면 혼자 중책을 감당하기 부족하므로 반드시 아래 어진사람(주로 두 번째 효)의 도움이 필요하다. 마지막 맨 위의 효(上爻)는 풍파를 거치고 은퇴하는 마무리를 의미한다.

이구는 논제에 대한 답을 하면서 이 패턴에 충실한 설명을 하고 있다. ‘임금의 길’에서는 다섯 번째 효를 주로 사용하고, ‘신하의 길’에서는 두 번째 효를 주로 사용하며, 처신 · 진퇴 · 변화 등을 설명할 때는 세 번째와 네 번

째 효를 주로 사용하고 간간히 첫 번째와 마지막 효를 사용한다. 이러한 방식은 이구가 『역』을 이용할 때에 ‘천도(天道)’나 ‘복서(卜筮)’ 보다는 ‘인사(人事)’와 ‘천하국가지용(天下國家之用)’에 주목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이구의 「역론」 13편이 상수역이 아닌 왕필류의 의리역에 기반한다고 하겠다. 하지만 비록 이구가 「역론」 13편에서 왕필의 주를 채택하였다고 하더라도 왕필의 현학적 요소까지 채용한 것은 아니었다. 앞에 예를 든 損괘 六五효사를 예로 들어본다.

「표7」 王弼·李觀·程頤·朱熹의 역해석 비교표

출전	損괘 六五효
왕필(226-249)의 『周易注』	<p>六五，或益之，十朋之龜，弗克違，元吉。</p> <p>以柔居存，而爲損道，江海處下，百谷歸之。履存以損，則或益之矣。朋，黨也。龜者，決疑之物也。陰非先唱，柔非自任，尊以自居，損以守之。故人用其力，事竭其功，智者慮能，明者慮(獻)策，弗能違也，則衆才之用(事)盡矣。或益而得十朋之龜，足以盡天人之助也。</p>
이구(1009-1059)의 「易論第一」	<p>六五，或益之，十朋之龜，弗克違，元吉。</p> <p>龜可決疑，喻明智也。以柔居尊，而爲損道，明智之士，皆樂爲用矣。非徒人助，天且福之。故象曰‘六五元吉，自上祐也。’恭之得衆也如此。</p>
정이(1033-1107)의 『伊川易傳』	<p>六五，或益之，十朋之龜，弗克違，元吉。</p> <p>六五於損時，以中順居尊位，虛其中以應乎二之剛陽，是人君能虛中自損，以順從在下之賢也。能如是。天下孰不損己自盡以益之。故或有益之之事，則十朋助之矣。十，衆辭。龜者，決是非吉凶之物。衆人之公論，必合正理，雖龜筮，不能違也。如此，可謂大善之吉矣。古人曰，謀從衆則合天心。</p>
주희(1130-1200)의 『周易本義』	<p>六五，或，益之十朋之龜，弗克違，元吉。</p> <p>柔順虛中，以居尊位，當損之時，受天下之益者也。兩龜爲朋，十朋之龜，大寶也。或以此益之而不能辭，其吉可知，占者有是德則獲其應也。</p>

이구의 역해석은 기본적인 주제가 왕필을 따르고, 때에 따라 글자까지 그대로 인용하지만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왕필의 주에서 노자를 인용한 부분은 채택하지 않았다.⁵⁴⁾ 물론 훗날 주희의 해석에 보이는 ‘길(吉)’이나, ‘점자(占者)’ 등의 언급은 없다. 정이의 해석은 의리역의 범주에서 이구의 해석과 동일하나 구법이 이구의 해석과 차이가 난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주어진 논제를 답한 뒤, 이구는 「계사전」을 인용하며 「역론」 13편을 마치는데 「역론」 13편의 마지막은 다음과 같다.

아아! 『역』을 지은 사람은 이미 근심(憂患)이 있었는데, 『역』을 읽는 사람은 그 우환이 없겠는가? 진실로 편안할 때(安) 위태로움(危)을 잊지 아니하고, 잘 살고 있을 때에(存) 망(亡)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며, 다스려질 때에(治) 어지러움(亂)을 잊지 아니한다. 근심하는 마음으로써 근심의 연고를 생각하고, 그 변화에 통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게으르지 아니하게 하며 신묘함으로 변화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마땅하게 한다면 하늘로부터 도움이 있어 길하여 이롭지 아니함이 없을 것이다.⁵⁵⁾

이는 「繫辭下」 7장⁵⁶⁾과 5장⁵⁷⁾, 그리고 8장⁵⁸⁾과 2장⁵⁹⁾을 인용한 것인데 이구의 역학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결국 이구가 『역』을 논한 것은 ‘천하국가’ 곧 당시의 복송을 향한 근심(憂患)의 발로였다. 이는 이구의 『역』 이용이 ‘人事’를 위한 것으로, 복송의 ‘安危 · 存亡 · 治亂’에 관한 논변을 통해 복송을 향한 ‘하늘로 부터의 도움’과 ‘吉無不利’를 바라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이구의 「역론」 13편을 분석하여보았다. 이구의 「역론」 13편은 『역』 자체에 관한 저작이 아니었고, 『역』을 이용하여 ‘천하국가지용’을 논한 것이었다. 이것은 이구의 역학관이 상수계열 보다는 의리계열에 있음을 말해

54) ‘江海處下，百谷歸之.’는 『노자』 32장과 61장에, ‘履存以損，則或益之矣.’는 42장에 보인다.

55) 「역론제13」 : 噫! 作『易』者既有憂患矣，讀『易』者其無憂患乎? 苟安而不忘危，存而不忘亡，治而不忘亂。以憂患之心，思憂患之故，通其變，使民不倦，神而化之，使民宜之，則自天祐之，吉無不利矣。

56) 「繫辭下」 7장 : 作易者，其有憂患乎!

57) 「繫辭下」 5장 : 子曰 危者，安其危者也。亡者，保其存者也。亂者，有其治者也。是故 君子安而不忘危，存而不忘亡，治而不忘亂。是以身安而國家可保也。易曰 其亡其亡，繫于包桑。

58) 「繫辭下」 8장 : 又明於憂患與故。

59) 「繫辭下」 2장 : 神農氏沒，黃帝堯舜氏作，通其變，使民不倦，神而化之，使民宜之，易 窮則變，變則通，通則久。是以自天祐之，吉無不利矣。

준다. 곧 이구의 역론은 ‘天道’ 보다는 ‘人事’ 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역론」 13편에서는 ‘氣本論’ 이라거나 ‘소박한 유물론’ 이라고 볼 수 있는 주장의 근거는 보이지 않았다. 『역』에 관한 이러한 인식 위에서 이구는 천하 국가를 향한 여러 가지 개혁방안을 다수의 관련 저작을 통하여 주장하였던 것이다.

제2절 『刪定易圖序論』

『이구집』 권4에 있는 「刪定易圖序論」은 「直講李先生年譜」에 의하면 39세에 지은 것으로 「역론」 13편이후 11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산정역도서론」은 유목(劉牧: 1011 - 1064)이 지은 「易數鉤隱圖」를 산정(刪定)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펼친 것이다. 유목⁶⁰⁾은 이구보다 2살 아래인데 이구처럼 범중엄의 추천을 받았지만 『역』에 관한 입장은 전혀 달랐다. 유목은 『역』에 나온 ‘수(數)’에 착안 ‘수’의 은미한 의미를 찾아 도서로 풀이하여 「역수구은도」를 지었는데 이 「역수구은도」를 가지고 이구는 그의 주장의 오류를 지적하여 이른바 ‘산정(刪定)’을 하고서 자기의 주장을 「산정역도서론」에 펼쳐 놓은 것이다. 「산정역도서론」에서 이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일찍이 「역론」 13편을 지었는데 왕필의 주를 원용하여 의미를 풀었다. 대개 천하국가의 쓰임에 급한 나머지 조금이라도 그윽하고 은미한 것을 분석할 겨를이 없었다. 세상에 유목에게 뿌리를 두고 『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들이 매일

60) 유목(劉牧: 1011 - 1064) ; 북송 구주(衢州) 서안(西安) 사람. 자는 선지(先之) 또는 목지(牧之)고, 호는 장민(長民)이다. 진사 시험에 합격했다. 범중엄(范仲淹)이 천거하여 연주관찰추관(兗州觀察推官)이 되고, 대리시승(大理寺丞)과 광남서로(廣南西路) 전운판관(轉運判官)을 지냈다. 태상박사(太常博士)까지 올랐다. 범중엄과 손복(孫復)의 문하에서 『춘추』를 수학했고, 범악창(范諤昌)에게서 역학(易學)을 배웠다. 학문은 소옹(邵雍)과 연원을 같이 했지만, 송나라 상수학(象數學)의 한 지류인 도서학과(圖書學派)의 개창자가 되었다. 도서학과는 송나라 인종(仁宗) 때 문인 황려헌(黃黎獻)과 오비(吳秘), 정대창(程大昌) 등에 의해 성행했다. 저서에 『역수구은도(易數鉤隱圖)』와 『역해(易解)』, 『괘덕통론(卦德通論)』, 『선유유론구사(先儒遺論九事)』 등이 있다. : 『중국역대인명사전』, 2010. 이회문화사.

같지 아니하다. 유목이 만든 「易圖」 55수를 구득함으로 인하여 보니 중복이 심하였다. 가령 그 말 가운데 좋은 것은 『河圖』·『洛書』·「八卦」 세가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니 저 52수는 다 흑덩어리다. 하물며 힘들여 천착하여 허수아비나 괴이한 것을 따랐으니 자질구레한 것을 고찰하면 믿고 쓸만한 것이 적었다. 배우는 사람들을 그르치고 세상교육을 허무롭게 크게 염려되어 이에 그 圖를 깎아 버리고 세 개만 남겨두었으니, 이른바 『하도』와 『낙서』와 「팔괘」이다.⁶¹⁾

유목의 ‘圖’가 ‘배우는 사람들을 그르치고 세상교육을 허무롭게 크게 염려되어’ 모두 산정해버리고 세 개만 남겼더니 ‘거의 人事가 닳이고 王道가 밝아졌다.’는 것이다. 「역론」 13편이후 ‘天下國家之用’에 급한 나머지 분석할 겨를이 없어 못한 이야기, 곧 상수학에 대한 입장표명이 11년만에 나온 것이다.

「산정역도서론」도 「역론」 13편처럼 ‘혹자가 물었다(或曰).’에 대한 대답(曰)의 문답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총 6론이다.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8」 「산정역도서론」 논제표

論1	河圖, 洛書.
論2	洛書. 六·九·七·八. 勞乎坎. 三畫象三才.
論3	大衍之數五十. 虛其一.
論4	坎生復卦, 離生姤卦. 七日來復. 臨卦 至于八月有凶.
論5	易緯. 元亨利貞.
論6	五行相生相克. 性命.

「산정역도서론」에 보이는 논제는 앞서 살펴본 「역론」 13편의 논제와 확연히 다르다. ‘河圖’, ‘洛書’, ‘六·九·七·八’, ‘大衍之數’, ‘虛一’, ‘易緯’, ‘元亨利貞’, ‘五行’ 등의 논제는 확실히 상수도서학에서 다

61) 『이구집』 권4 「刪定易圖序論」: 觀嘗著『易論』十三篇, 援輔嗣之注以解義. 蓋急乎天下國家之用, 毫析幽微, 所未暇也. 世有治『易』根於劉牧者, 其說日不同. 因購牧所爲『易圖』五十五首, 觀之則甚複重. 假令其說之善, 猶不出乎『河圖』『洛書』『八卦』三者之內, 彼五十二皆疣贅也. 而況力穿鑿以從傀異, 考之破碎, 鮮可信用. 大懼註誤學子, 壞隳世教, 乃刪其圖而存之者三焉, 所謂『河圖』也, 『洛書』也, 「八卦」也.

루는 주제이다. 이것은 「산정역도서론」이 유목의 ‘圖’를 산정하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다.

『사고전서총목제요』에서 역학사의 원류와 변천을 ‘兩派六宗’이라 개괄한 이래 ‘六宗’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兩派’ 곧 ‘義理’와 ‘象數’의 지적은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⁶²⁾ 그러나 『역』 자체에 ‘象 · 辭 · 變 · 占’⁶³⁾과 ‘數’⁶⁴⁾가 모두 들어있으므로 의리를 논한다고 해서 상수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상수를 논한다고 해서 의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주안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구분해보면 그렇게 구별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역론」 13편에서 이구의 역학관은 왕필류의 의리역이었음을 확인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구가 상수역을 도외시한 것은 아니었다. 이구의 말처럼 ‘家’를 세우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유목의 ‘圖’가 ‘배우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상교육을 허무롭게 크게 염려되어’ 상수학의 주제를 논한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유목과 이구의 논변을 하나하나 따져가며 옳고 그름을 논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관점의 차이이므로 맞다 틀리다를 논할 수 없다. 『역』 자체가 갖는 속성이 무수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이구의 「산정역도서론」에서 몇몇 특기할 만한 것을 살펴보기에 앞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유목에 대한 이구의 비평이 상당히 과격하다는 점이다. ‘심하다 가소로움이어!’⁶⁵⁾, ‘착오와 혼란이 이지경에 이를지 생각도 못하였다. 비루하다!’⁶⁶⁾ 등에 보이는 과격한 언사는 유목의 ‘圖’에 대한 역학상의 비평을 넘어 무슨 죽을죄라도 지은 사람 취급을 하는 것인데, 실제 「산정역도서론」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난다.

「王制」에 “좌도(左道)를 잡아 정사를 문란케 하는자는 죽인다. 鬼神 · 時日 ·

62) 료명춘 강학위 양위현 저, 심경호 역. 『주역철학사 :원제는 주역연구사』 1994. 예문서원. p47.
 63) 「繫辭上」 2장 : 是故, 君子居則觀其象而玩其辭, 動則觀其變而玩其占. 是以自天祐之, 吉無不利.
 「繫辭上」 10장 : 易有聖人之道四焉, 以言者尚其辭, 以動者尚其變, 以制器者尚其象, 以卜筮者尚其占.
 64) 「繫辭上」 9장 : 天一地二天三地四天五地六天七地八天九地十, 天數五地數五,...大衍之數五十.
 65) 甚哉! 其可笑也.(論1)
 66) 不虞錯亂之至此, 鄙哉!(論2)

卜筮를 빌려 군중을 의혹되게 하면 죽인다.” 라고 하였다. 윗사람이 되는자는 반드시 「王制」로써 종사한다면 『역』의 도가 밝아지고 임금의 도가 이루어질 것이다.⁶⁷⁾

이러한 인식은 결국 「역론」 13편이 ‘天下國家之用’을 위해 쓴 것처럼, 「산정역도서론」도 ‘君道成’을 이루기 위해 쓰여진 것이다. 이구의 역학에 대한 관심은 그의 다른 저작에서와 마찬가지로 ‘人事’와 ‘天下國家之用’이었던 것이다.

67) 「산정역도서론」 論6 : 「王制」曰, 執左道以亂政, 殺. 假於鬼神, 時日, 卜筮以疑衆, 殺. 爲人上者, 必以「王制」從事, 則『易』道明而君道成矣.

제4장 이구의 富國策⁶⁸⁾

제1절 이구의 눈에 비친 북송의 제반 문제

이구의 「부국책」은 10수로 되어 있는데 도입부분부터 일반적인 유자(儒者)들과 색다른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내가 가만히 보건대, 유자(儒者)들의 논의는 ‘의(義)’를 귀하게 여기고 ‘이(利)’를 천하게 여기지 않은 이가 적으며, 그 말이 도덕·교화가 아니면 입에 올리지 않는다. 그러나 『서경』 「홍범」 8정(八政)에 “첫째가 먹을 것 [食], 둘째가 재물 [貨]” 이라고 하였고, 공자는 “먹을 것을 만족스럽게 하고, 군사를 만족스럽게 하면 백성이 신뢰한다.” 라고 하셨으니 이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실체는 반드시 ‘재용(財用)’에 근본해야 한다는 것이다.⁶⁹⁾—「부국책」 1—

그는 치국(治國)의 실체가 반드시 ‘재용(財用)’에 뿌리를 두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는 공자의 말과 경서에 근거한 것이지 결코 이상한 주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돈이 없으면 [非財]’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한다. ‘재용’의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구는 국고 고갈의 원인을 찾아 나서면서 당시 사회가 처한 문제점을 지적해 나간다.

1. 地力不盡 · 田不墾闢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쌀 [穀米]’이다. 나라가 보배로 여기는 것은 ‘조세’이다. 천하가 오랫동안 편안하고 인구는 많아졌는데도 쌀은 더 많아지지 아니하고 조세가 더 증가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지력(地力)을 다하지 못하였고

68) 부국책의 이하 내용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김광민, 「李觀의 國用論과 富國策」 『歷史學研究』 61, 2016. 참조.

69) 愚竊觀儒者之論，鮮不貴義而賤利，其言非道德教化則不出諸口矣。然『洪範』八政，“一曰食，二曰貨。”孔子曰“足食足兵民信之矣。”是則治國之實，必本於財用。

농토를 개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⁷⁰⁾ 「부국책」 2-

백성이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국가 재용의 근본이 되는 ‘쌀’의 생산이 증가하지 않는 원인을 토지 이용이 합리적이지 못한데서 찾고 있다. 토지소유의 불균형과 토지이용의 불합리를 지적하고 있다.

2. 金不足 · 帛不賤

다음으로 지적하는 것은 ‘화(貨:金)’와 ‘회(賄:帛)’의 부족이다.

금이 부족하면 가격이 뛰고 가격이 뛰면 방포(邦布)를 내서 사들인다. 비용은 날로 증가하는데 그 수를 맞추지 못하면 백성들에게 사들이게 한다. 저 농민들은 금을 쌀아 두지 못한다. 하루 아침에 할당받은 것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재력가 [豪黨]에게 의지해야 하는데 재력가에게 의지하면 혹 가산을 무너뜨리게 된다. 관(官)은 비용이 증가하고 민(民)은 가산이 파괴되니 이는 실로 큰 병폐이다.

비단 가격이 비싸면 가난한 백성은 얻을 수 없다. 가난한 백성이 얻을 수 없으면 솜 [紵絮]으로 겨울을 막을 수 없어 얼어 죽는 사람이 많아진다. 관에서 세금으로 사들이는데 그 가격을 낮출 수 없으니 오직 조악한 물건 [行濫]을 얻을 뿐이다. 비단이 조악하면 군리(軍吏)의 옷이 줄 수 없어 가난한 사람이 많아진다. 관의 가격은 줄어지지 아니하고, 인민은 얼어 죽는 사람이 많고, 군리는 가난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이 또한 큰 병폐이다.⁷¹⁾ 「부국책」 3-

금과 비단은 당시 생활에 꼭 소용되는 것이지만 이용이 왜곡(사치)되어 부족하게 되었다.

3. 逐末 · 冗食

70) 民之大命，穀米也。國之所寶，租稅也。天下久安矣，生人既庶矣，而穀米不益多，租稅不益增者，何也？地力不盡，田不墾闢也。

71) 金不足則價騰躍，價騰躍則出邦布而市之，費日增焉猶不能登其數，則率民而買之，彼農民未嘗蓄金銀。一旦當具，則必資於豪黨，資於豪黨，則或壞其產焉。官增其費，民壞其產，此實弊之大也。帛不賤，則貧民弗可得。貧民弗可得，則紵絮不足以御冬，而凍者多矣。官之稅買，其價弗損，而唯行濫之得。帛行濫，則軍吏之衣莫能完固，而貧者多矣。官價弗損，人民多凍，軍吏多貧，此亦弊之大也。

다음으로 이구가 힘주어 주장하는 문제는 “ ‘말(末)’ 을 쫓는 사람들” 과 “놀고 먹는 사람들” 이다. 이구가 말하는 “ ‘말’ 을 쫓는 사람들” 이란 ‘공(工)·상(商)’ 을 뜻하고, “놀고 먹는 사람들 [冗食] ” 이란 사민(四民)의 범주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을 뜻하는데 치(緇:불교)·황(黃:도교), 아전 [府史·胥徒] , 좌도(左道:方術·巫醫), 악공(樂工:聲伎) 등이다. 이구는 ‘축말’ 보다 ‘용식’ 을 더 문제 삼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옛날에 천신(天神)에 사(祀)를 하고 지기(地祇)에 제(祭)를 하고 인귀(人鬼)에 향(享)을 하였는데 다른 것은 듣지 못하였다. 지금은 ‘석(釋)·노(老)’ 가 권세를 떨쳐서 우리 백성들에게 섬기게 한다. 중이 되거나 도사가 되거나, 적(籍)이 있으면서 도첩받지 아니한 자, 백성중에 부림이 되는 자(신도)가 무려 수 백만이다. 좋은 농토와 집을 널리 차지하고 호의호식 한다. 앉아서 공허(空虛)를 말하여 어리석은 백성들을 속인다. 이는 사민(四民)의 반열에 있지 않았던 것이다.⁷²⁾

4. 釋·老十害

이구는 “놀고 먹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축출해야할 대상으로 불교와 도교를 꼽는데 불교와 도교의 해악 10가지를 들면서 공박한다.

‘치·황’ 이 존재하면 그 해로움이 열 가지이고 치·황이 사라지면 그 이로움이 열 가지이다. 남자가 경작을 알지 못하는데 농부가 먹여주고, 여자가 누에치는 것을 모르는데 직녀가 입혀주니 그 해가 하나이다. 남자는 장가를 안가고 여자는 시집을 안가서 위로는 음양을 느끼고 아래로는 음란을 조장하니 그 해가 둘이다. 어려서는 어린이로 적에 울리지 아니하고 자라서 장정에 등록되지 않으며, 앉아서 요역을 도피하여 나라에 바치지 않으니 그 해가 셋이다. 풍속이 가난을 근심하지 아니하고 베풀지 않는 것을 근심하며, 악행을 근심하지 아니하고 재계하지 않음을 근심한다. 백성의 재물은 고갈되고 국가의 재정은 소모되니 그 해가 넷이다. 남의 자제를 꺾어 (승복·도복을) 입히고 머리를 깎게 한다. 아버이 늙어서 봉양을 못하게 하고 집이 가난해도 구원하지 못하게 만드니

72) 古者祀天神，祭地祇，享人鬼，他未聞也。今也釋老用事，率吾民而事之。爲緇焉，爲黃焉，籍而未度者，民之爲役者，無慮幾百萬。廣占良田利宅，嫩衣飽食。坐談空虛以誑曜愚俗，此不在四民之列者也。

그 해가 다섯이다. 갈지 않는 농토와 심고 가꿀 밭, 큰 산과 습지를 넓게 차지하니 그 해가 여섯이다. (절과 도관을) 경영하고 수선하는 공력이 해와 달을 쉬지 아니하여 우리의 가난한 백성을 몰고 우리 농사지를 때를 빼앗으니 그 해가 일곱이다. 목재와 기와와 돌을 경병하여 거두어 들인다. 시장 가격이 뛰어 백성들은 살 집이 없으니 그 해가 여덟이다. 문과 당을 꾸미고 기물이 호화로워 새기고 그리고 단청을 칠하는데 상공업을 번성하게 하니 그 해가 아홉이다. 게으른 농부의 아들이나 관리를 피하는 교활한 자들이 고용되고 부림을 당하여 이르는 곳에 (자기집) 돌아가는 것처럼 여기니 그 해가 열이다.⁷³⁾
 - 「부국책」 5-

5. 糶 · 糶不當

이구는 고관대작을 지내본 적도 없고 대지주나 부유한 상인이 아니었으며 그 자신이 가난한 사람이었기에 농민의 현실을 잘 알고 있었다. 현실경험에서 우려나오는 국가 경제에 관한 그의 문제 제기는 피상적이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이고 전문적이다. 농민들의 목숨이라고 하는 ‘쌀’ 수급과 관련하여 이구는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상당히 독특한 견해이다.

옛사람이 “곡물가격이 매우 낮으면 농을 상하게 하고 높으면 말을 상하게 한다.” 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농’은 항상 내다 팔고 ‘말’은 항상 사들인다는 것인데 일체의 논의가 그러하다. (그러나) 나는 곡물가격이 낮아도 ‘농’을 상하게 하고 높아도 또한 ‘농’을 상하게 하며, 낮아도 ‘말’을 이롭게 하고 높아도 또한 ‘말’을 이롭게 한다고 생각한다.⁷⁴⁾- 「부국책」 6-

이구는 자본가들 이른바 ‘축말’을 일삼는 부상대고(富商大賈)들의 행태를 지적하고 있다. 이들의 농간에 농민들의 피해는 막심하고 이는 국가 산업기

73) 糶黃存則其害有十, 糶黃去則其利有十. 男不知耕而農夫食之, 女不知蠶而織婦衣之, 其害一也. 男則曠, 女則怨, 上感陰陽, 下長淫濫, 其害二也. 幼不爲黃, 長不爲丁, 坐逃繇役, 弗給公上, 其害三也. 俗不患貧而患不施, 不患惡而患不齋, 民財以殫, 國用以耗, 其害四也. 誘人子弟, 以披以削. 親老莫養, 家貧莫救, 其害五也. 不易之田, 樹藝之圃, 大山澤藪, 跨據畧盡, 其害六也. 營繕之功, 歲月弗已, 驅我貧民, 奪我農時, 其害七也. 材木瓦石, 兼收並採, 市價騰踊, 民無室廬, 其害八也. 門堂之飾, 器用之華, 刻畫丹漆, 末作以熾, 其害九也. 惰農之子, 避吏之猾, 以傭以役, 所至如歸, 其害十也.

74) 古人有言曰“穀甚賤則傷農, 貴則傷末.” 謂農常糶而末常糶也, 此一切之論也. 愚以爲賤則傷農, 貴亦傷農, 賤則利末, 貴亦利末.

반의 붕괴를 초래한다.

6. 水旱無備

장래에 닥칠 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비는 국가의 의무이다. 백성 손에 맡겨만 둘 일은 아니다. 이구는 당시 북송 백성들의 무대책을 고발한다.

백성이 무지하여 좋은 옷과 음식을 탐하여 안일하게 지내 풍년든 해에 곡식이 길 거리에 낭자해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먹는 것이 절제가 없고 쓰는 것이 정도가 없어 흑 싹은 흙에 버려두거나 흑 시루에서 썩히거나(술을 빚음) 혹은 개와 말의 먹이로 주거나 혹은 닭과 오리를 살찌운다. 식구를 계산하여 비용을 논해보면 얼마인가 2배나 5배가 아니겠는가? 흉년이 닥치면 집안에 평소 저축한 것이 없고 사람들은 미리 대비하지 않았으니 집은 텅 빈 것 같고 굴뚝은 검어지지 않는다. 풀과 나무의 뿌리와 열매로는 배부르지 않는다. 이에 강한 자는 도적이 되고 약한 자는 구렁과 골짜기에 구르다 죽으니 부모처자가 서로 보호할 수 없다. 이는 재앙과 혼란의 사다리이다. 나라를 잘 다스리려는 사람은 마땅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⁷⁵⁾ - 「부국책」 7-

7. 惡錢

이구 당시의 화폐유통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악폐(惡幣)’였다. ‘악폐’란 이른바 ‘악전(惡錢)’인데 민간에서 몰래 주조한 동전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무릇 ‘천포(泉布)’는 (샘물처럼) 흐르고 퍼져 상하에 통용되라는 것이니 나라에 부족하다면 백성에게 남아있는 것은 필연의 형세이다. 그런데 지금 민간에 또 돈궤미를

75) 夫民之無知，靡衣偷食，豐歲粒米狼戾有不愛也。食之亡節，用之亡度，或委於糞土，或腐於甑甗，或以飭狗馬，或以肥雞鶩。計口論費，幾何而不倍蓰也？及其凶年，則家不素蓄，人不豫備，室如罄矣，突不黔矣。草木之根實，不足以飽矣。於是強者爲盜賊，弱者轉而死溝壑，父母妻子不能相保。此禍亂之階。善爲國者，所宜留意也。

저장한 집이 적다. 또한 구폐가 이미 훼손되지 않았는데 새로 주조한 날이 많았으니 마땅히 증가해야하는데 도리어 줄어들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화폐는 따뜻한 것이 아니니 입어서 달는 것도 아니요, 취약한 것도 아니니 먹어서 없앤 것도 아니다. 그러면 어디로 갔는가? 이는 간악한 자들이 녹여버린 것이다. 간악한 자들이 녹여버리는 까닭은 ‘악전(惡錢)’이 시장에서 수용되고, 동상과 구리로 만든 기물이 절과 도관에서 수용되기 때문이다.⁷⁶⁾ - 「부국책」 8-

8. 鹽 · 茶專賣

이구가 살았던 강남은 물자가 풍부하였고 상업이 활성화 된 곳이었다. 자연스럽게 이구는 상품유통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이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소금’과 ‘차’이다. 소금은 한나라 때부터, 차는 당나라 때부터 국가의 전매가 이루어졌는데 국부에 크나큰 도움이 되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다.

관에서 처음 소금을 내어 팔 때 남은 이익이 매우 많아 군국(郡國)의 소금 쌓아 둔 것은 항상 팔기에 부족할 지경이었다. 오늘날의 군국은 옛날의 군국이다. 호구의 증가는 두 배에서 다섯 배인데, 내다 파는 것은 더욱 적고 소금이 더욱 적체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는 간사한 모리배들의 개입일 뿐이다.⁷⁷⁾ - 「부국책」 9-

차는 옛것이 아니다. 강좌(江左: 江東)에서 기원하여 천하에 흘러 근대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군자와 소인이 즐기지 않음이 없고, 부자와 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과 천한 사람이 사용하지 않음이 없다. 국가에서 전매하여 한 곳에서 이익이 나오는데, 세간에 귀한 것과 가정에 비축한 것이 ‘공차(公茶)’가 아닌 것은 무엇 때문인가? ‘공차’가 조악하여 맛이 없기 때문이다.⁷⁸⁾ - 「부국책」 10-

76) 夫泉流布散，通於上下，不足於國則餘於民，必然之勢也。而今民間又鮮藏緝之家。且舊泉既不毀，新鑄復日多，宜增而卻損。其故何也？錢非濫也，不可衣而弊之也，非脆也，不可食而盡之也。然而安在哉？是有奸人銷之也。奸人所以得銷者，以惡錢容於市，銅像銅器容於寺觀也。

77) 官初耀鹽時，操其贏甚厚，而郡國鹽積常不足於耀。今之郡國，昔之郡國也。戶口蕃息，則倍蓰矣。而耀益少，鹽益滯者，何也？是奸謀入焉耳。

78) 茶非古也。源於江左，流於天下，浸淫於近代。君子小人靡不嗜也，富貴貧賤靡不用也。有國者從而籠之，利一孔矣。而世之所貴，家之所蓄，則非有公茶者何？公茶濫惡，不味於口故也。

제2절 「富國策」에서 이구가 제안한 해결책

북송 중기 사회의 문제점이 비단 위에 제시한 것 만은 아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한다고 태평이 바로 오는 것도 물론 아니다. 다만 이구는 당시에 급히 힘써야 할 것을 말하려 한 것이다. 실제 이구는 과거 낙방후 출사를 접고 35세(1043, 북송 인종 경력3년)에 퇴거류고 『퇴거류고』 12권을 정리할 때, 순수한 백성의 입장에서 바라본 국가의 문제점을 30편으로 요약 「경력민언」을 편집했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51편으로 묶어 「주례치태평론」을 지었으니 「부국책」 10수는 본편에 앞서 4년 전에 나온 예고편이라 하겠다. 이구가 「부국책」에서 제안한 당면과제 해결책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

1. 明立制度

이구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사회는 주공의 『주례』 79)에 의하여 태평세상을 이루자는 「주례치태평론」에 집약되어 있는데, 핵심은 ‘질서’가 바로 잡히고 ‘육경(六經)’이 바로 선 사회이다. ‘질서’는 곧 ‘예’이고 더 나아가 ‘법’이며, ‘육경’은 공자가 만들어 놓은 질서이다. 따라서 이구의 관점에서 공자가 만들어 놓은 질서에 반한 맹자의 몇몇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⁸⁰⁾, 이는 자연스럽게 이구로 하여금 순자의 주장에 귀 기울이게 한다. 이구는 단언한다.

지금 바로잡으려 한다면 “‘제도’를 밝게 세우는 일” 만한 것이 없다.⁸¹⁾ - 「부국책」 3-

79) 『주례』에 관하여 경학사적으로 문헌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왔고, 정치사적으로 왕망과 훗날 왕안석과 관련되어 폄훼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구는 주공의 『주례』를 적극 신뢰하는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 한다.

80) 이구의 ‘非孟’에 관하여 주)12의 안병주와 손정민의 논문이 참조되나 재론의 여지는 있다.

81) 今將救之, 則莫如“明立制度.”

위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이구는 국가의 강력한 개입을 촉구하고, ‘제도’를 명확히 세워 무질서한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기를 주장한다. 금은과 비단이 부족한 현상에 대한 이구의 처방은 이러하다.

금은을 쓸 때 상하에 등급을 두고, 많고 적음에 수를 두어야 한다. 필부와 서민과 미천한 사람들은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면 금을 이루 다 쓸 수 없을 것이다. 군자와 소인은 복장에 분별이 있다. 백성은 베와 비단이 아니면 옷을 입을 수 없다. 베짜는 공력이 그 근본을 회복한다면 비단은 이루 다 쓸 수 없을 것이다. 이 도를 과연 쓸 수 있다면 해묵은 폐단의 근원을 알아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공자는 “정치를 하는데 예를 먼저 해야하니 예는 정치의 근본이다!”⁸²⁾ 라고 말씀하셨다. 제도는 예의 실제이다. 정치를 잘하려는 자 유의하지 않을 것인가!⁸³⁾ - 「부국책」 3-

한정된 재화인 ‘금’과 ‘비단’에 대하여 생산의 증가 보다는 수요를 감소 내지 억제 시키는 데에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

놀고 먹는 백성을 몰아내는 방법 역시 ‘소박함을 회복하고 사치를 금하는 것’과 ‘도첩을 중지하고 사관수리를 금하는 것’과 ‘법령을 거듭 밝히고 수령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과 ‘법대로 일체금지하는 것’과 ‘민가에서 음역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질서를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2. 節用

이구는 백성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에 앞서 황제 자신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은연중에 황실의 사치를 비판한다. 한나라 ‘문경지치(文景之治)’를 예로 들면

82) 정치를.....다: 『孔子家語』 「大婚解」 편.

83) 其用金銀, 上下有等, 多少有數. 匹庶賤類, 毋得僭擬, 則金不可勝用也. 君子小人, 服章有別. 民非布帛毋得輒衣. 工機之功將復其本, 則帛不可勝用也. 果能此道矣, 是宿弊之源可坐而塞也. 孔子曰 “爲政先禮, 禮其政之本乎!” 制度, 禮之實也. 善爲政者, 得無留意哉!

서 ‘절용(節用)’이라는 말로 포장했다.

『주역』 「소과」괘에 “군자는 씹씹이가 검소함에 지나친다(검소하다).” 라고 하였고, 『논어』에 “사치하면 불손하고 검소하면 고루하니 그 불손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고루해야한다.”⁸⁴⁾라고 하였다. ‘검소함’은 성인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제도는 아니나 그렇게 해야할 때가 있으니 부득이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나라 효문제는 검은 명주 옷을 입고 가족신을 신었으며 장식하지 않은 가죽칼집을 썼다. 총애하는 신부인의 옷도 땅에 깔지 아니하였다. 대(臺)를 하나 만들려다가 백금(百金)이 드는 것을 해아려보고 멈추었다. 귀와 눈을 기쁘게 하고 몸을 편하게 하는데 지존(至尊)의 씹씹이를 다할 수 있다는 것을 어찌 알지 못하였겠는가? 대개 ‘재물을 상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해치지 아니하며’⁸⁵⁾, ‘위를 덜어서 아래를 더하는 도’⁸⁶⁾를 생각한 것이다. 그러므로 (재위) 12년째에 조세의 반을 백성에게 주었고, 다음해 드디어 민전(民田)의 조세를 없앴다. 효경제 때 백성들로 하여금 전조(田租)의 절반만 내게 하였으니 30분의 1세(稅)였다. 무제 초년까지 70년 간 백성의 삶이 풍족하여 서울과 시골의 창고가 가득차고 관부(官府)에 재물이 남아돌았다. 경사(京師)의 돈은 꾸러미가 헤어져 셀 수 없고 태창(太倉)의 곡식은 목고 목었다. 후세의 성왕(盛王)을 말할 때 반드시 문경(文景)을 일컬으니 그 이유는 무엇인가? ‘때 [時]’의 변화에 능히 적응하여 지나치리만큼 스스로 검소하여 그러한 것이다. 1조(송태조)와 2종(태종·진종)이 창업수통(創業垂統)하신 공덕은 지극하다. 우리 임금(인종)에 크게 이르러 근검(勤儉)하지 아니함이 없으셨다. 그러나 지금 강융(羌戎)이 은혜를 저버리고 변경에서 군사를 일으켜 (우리의) 수고로움과 비용지출을 멈출 수 없는 지경이다. 국고가 비었으니 지금은 지나치리만큼 스스로 검약하여 위를 덜어서 아래를 더하여야할 때이다.⁸⁷⁾- 「부국책」 1-

3. 强本抑末

84) 사치하면.....고루해야한다: 『論語』「述而」.

85) 재물을.....아니하며: 『周易』「節」괘 「象傳」.

86) 위를.....도: 『周易』「益」괘 「象傳」.

87) 「小過」曰 “君子以，用過乎儉.” 語曰 “奢則不孫，儉則固。與其不孫也，寧固。” 儉非聖人之中制，有時而然，不得已也。故孝文帝躬衣弋綈，革滌韋帶。所幸慎夫人，衣不曳地。欲爲一臺，度用百金，廢而不爲。夫豈不知說耳目，便身體，極至尊之用哉？蓋念“不傷財，不害民，” “損上益下之道”也。故其十二年而賜民租稅之半，明年遂除民田之租稅。孝景之時，乃令民半出田租，三十而稅一。至武帝之初，七十年間，人給家足，都鄙廩庾盡滿，而府庫餘財。京師之錢，貫朽而不可校，大倉之粟，陳陳相因。語後世之盛王，必稱文景，其故何哉？以能適時之變，過自菲薄而然也。於惟一祖二宗，創業屬統，功德至矣。延洪于我后，靡不動且儉矣。而今羌戎背惠，邊境暴師。勞費不息，帑藏不實，此其過自菲薄，損上益下之時也。

송대 강남 상업 발달을 직접 보고 느낀 이구의 ‘이(利)’에 대한 생각은 일반 유자와 확연히 다르다. 이구 저작 곳곳에 독특한 견해가 드러나지만 「부국책」에 드러난 인식을 들면 다음과 같다.

진실로 이익이 있다면 비록 죽더라도 반드시 구하지만, 진실로 쓸모가 없어진다면 비록 마음껏 하라고 해도 하지 않을 것이다.⁸⁸⁾- 「부국책」 8-

법령이 느슨하거나 가벼운 것이 아니다. 이곳이 유혹하는 곳에는 비록 날마다 사람에게 형벌을 더하여 울부짖는 소리가 천지에 진동하더라도 금지할 수 없다.⁸⁹⁾- 「부국책」 9-

길이 매우 험하고 법이 매우 엄해도 사람들이 다투어 팔려고 하는 것은 이문이 많기 때문이다.⁹⁰⁾- 「부국책」 10-

이익이 있는 곳에는 죽음도 불사하는 ‘축말자들’, 그래서 강한 법령도 어떻게 할 수 없는 [未如之何]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구는 앞서 본 것처럼 강력한 법집행과 합리적인 유인책을 통해 ‘유민(游民)’을 자영농으로 만들어 근본을 두텁게 하고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재용을 국가가 장악하기를 바라고 있다.

4. 通商

이구는 소금과 차의 전매문제에 대하여 자유로운 상거래를 허용하라는 주장을 펼치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축말’과는 다른 내용이다. ‘축말’이 비정상이라면 ‘통상’은 정상적인 상거래를 의미한다. 정상적인 상거래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도 허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 것이다. 당시 상업경제의 발전을 논

88) 苟有利矣, 雖死而必求, 苟無用矣, 雖縱之弗爲.

89) 令非緩也, 法非輕也, 利之所誘, 雖日刑人, 號痛之聲動乎天地, 弗能禁也.

90) 塗有甚險, 法有甚重, 而人爭販之者, 利厚也.

여겨 보고 ‘시장의 원리’에 의해 상행위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오늘날의 마땅함은 ‘통상(通商)’ 만한 것이 없다. 상거래를 통하게 하면 공공의 이익은 줄지 않으면서 소금의 적체도 없어진다. “상거래를 통하게 하면 공공의 이익이 줄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관에서 소금을 팔면 이익은 참으로 많다. 그러나 선박이 파괴될 수도 있고, 창고는 무너질 수도 있으며, 관리에게는 봉급을 주어야 하고 일꾼들에게도 식량을 주어야 하니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만약 관에서 소금을 팔되 상인에게 내다 팔아, (그들) 스스로 돌아다니게 한다면 이미 그 이문을 맞추었고, 거기에 관시(關市)의 세금을 부과하면 비용이 덜어질 것이니 이는 공공의 이익이 줄지 않는 것이다. “상거래를 통하게 하면 소금의 적체가 없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상인이 많아져 팔기에 힘쓰다면 소금에 섞지 않을 것이다. 이르는 곳 마다 또한 시장 사람들에게 외상거래를 할 수 있게 하면 줄지어선 가게들이 저렴하게 파는 곳이 많아질 것이다. 파는 사람이 많고 팔기에 힘쓰다면 소금은 또한 섞지 않을 것이다. 예전 ‘분토’를 먹던 사람들이 오늘 모두 소금을 먹게 되고, 예전 흠쳐팔기를 즐기던 사람들이 오늘 모두 공적으로 팔게 될 것이다. 소금의 용처는 더욱 넓어지니 이로써 적체가 없어질 것이다. 공공의 이익은 줄지 아니하면서도 소금의 적체는 없어져 재용(財用)은 풍족해지고 형벌은 맑아지는 것은 치세(治世)의 아름다움이다.⁹¹⁾ - 「부국책」 9-

아름다운 치세를 위해 전매를 풀라는 주장이다. 차도 마찬가지다. 이구에 의하면 ‘통상’은 ‘통변(通變)’의 시기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다.

91) 今日之宜，莫如通商。商通則公利不減而鹽無滯也。何謂商通則公利不減？夫官自糶鹽，利信厚矣。然舟有壞，倉有墮，官有俸，卒有糧，費已多矣。若官糶鹽而糶與商人，使自行之，既權其息，因取關市之稅，而費省焉，是公利不減也。何謂商通則鹽無滯？夫商人衆而務售，則鹽不滯雜。所至之地又以貴於市人，則列肆多得斥賣。賣者多而務售，則鹽亦不滯雜。昔啖糞土者，今皆食鹽。昔喜竊販者，今皆公行。鹽之用益廣，是以無滯也。公利不減而鹽無滯，財用以足，刑罰以清，治世之懿也。

제5장 이구의 孟子비판

『맹자』는 정주학자(程朱學者)들에 의해 ‘사서(四書)’로 격상되고, ‘공맹(孔孟)’으로 병칭되며, 급기야 안연을 밀치고 ‘아성(亞聖)’으로 불리며, 마지막으로 13경에 편입. ‘경(經)’의 지위를 인정받기 전에는 제자서(諸子書) 가운데 하나일 뿐이었다. 더구나 ‘혁명’을 인정하는 부분에서 집권세력에게는 오히려 불온한 서적에 가까웠다.⁹²⁾ 주희 이후 『맹자』를 경(經)으로 배운 세대는 해서는 안 될 일이 『맹자』에 대한 비판이지만 주희 이전에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이른 시기 순자(非十二子)부터 왕충(刺孟)과 사마광(疑孟) 그리고 이구까지 『맹자』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있어왔다. 한편 이들과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맹자』에 대하여 옹호적 주장을 하였다.⁹³⁾ 결국 이러한 『맹자』에 대한 호불호는 그 사상가의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구는 이 가운데에서도 가장 격렬하게 『맹자』를 비판하여 흔히 ‘비맹(非孟)’으로 불린다. 공리(功利)주의자로 알려진 이구의 사상과 첫 장부터 ‘하필왈리(何必曰利)’를 부르짖는 『맹자』는 분명 출발부터 관점이 다르다. 하지만 『이구집』 도처에 보이는 『맹자』 관련 언급에서는 이러한 비맹의 주장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다.⁹⁴⁾ 현재 우리는 역설적으로 이구를 비판한 주희를 통해서 이구의 비맹 주장을 접할 수 있을 뿐이다. 주희는 그의 문집 권73에 「독어은지존맹변」을 통해서 이구의 비맹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맹자관을 보여

92) 명태조 주원장은 맹자를 싫어한 대표적인 군주인데 문묘에서 맹자를 쫓아내고, 체제에 위협이 되는 85개조를 삭제하여 『孟子節文』이라는 누더기 책을 만들게 하였다. 군주에게 예를들어 ‘백성이 귀하고 사직이 다음이고 임금의 가벼운 것이다.(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 : 盡心下)’라는 식의 주장은 용납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93) 한유와 유종원이래 사마광의 대척점에 서있는 왕안석과 정주학의 후예들, 그리고 양명학자인 당견(唐甄:1630-1704 ;存孟, 宗孟)등 다양하다.

94) 「內治」, 「刑禁」, 「富國策」, 「潛書」, 「廣潛書」, 「省欲」, 「本仁」, 「延平集序」, 「送嚴介序」, 「常語」 등편에 맹자에 관한 언급이 있는데 비맹이라고 볼 만한 언급은 딱히 보이지 않는다.

주고 있다.⁹⁵⁾ 여은지와 주희는 분명히 이구의 「상어(常語)」⁹⁶⁾를 보았다는 것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구집』에는 보이지 않는다.⁹⁷⁾ 이 장은 일문 「상어」의 분석을 통해 이구의 맹자관을 살펴보려한다.

이구의 일문 「상어」는 앞서 「역론」 13편과 「산정역도서론」에서 그랬던 것처럼 ‘혹왈(或曰)’에 대한 ‘왈(曰)’의 방식으로 되어있다. 16개조에 걸쳐 이구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는데, 육경(六經)에 대한 해박한 이해를 바탕으로 『맹자』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알려진 것처럼 논조가 사뭇 과격하다. 논제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9」 佚文 「常語」 論題表.

1	彼孟子者，名學孔子而實肖之者也，焉得傳？
2	孟子者，五霸之罪人也... 孟子忍人也，其視周室如無有也.
3	桓公管仲之於周，救父祖也，而孟子非之，奈何！
4	湯武不得已也... 吾(李觀)乃不知仁義之爲篡器也.
5	伊尹... 孟子之欲爲佐命，何其躁也！
6	春秋... 臣子... 孟子其亦聞之也哉！
7	盡信書則不如無書... 今人至取孟子以斷六經矣.
8	舜避堯之子... 由孟子之言，則古之聖人作僞者也，好名者也.
9	湯以七十里... 孟子之教人，教人以不知量也哉！
10	瞽象欲殺舜?... 是皆委巷之說而孟子之聽不聰也.
11	武成... 武王以諸侯伐天子，奚不用戰哉？

95) 「讀余隱之尊孟辨」과 관련하여 안병주는 사마광과 이구의 맹자관련 조항을 시론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주희의 존맹변의 의미를 탐구하였으며, 손정민은 역시 사마광과 이구의 맹자관련 언급을 분석 맹자의 경전화 과정을 추적하였다. 안炳周, 「朱子の 尊孟辨의 意味」, 『儒敎思想研究』 1, 1986. 孫正民, 「李觀의 孟子비판」, 『宋代孟子論辨研究』, 成均館大 碩士論文, 2014.

96) 현재 『이구집』 권32:33-34에 있는 「常語」上·中·下는 여은지와 주희가 말하는 「常語」가 아니다. 1981년 중화서국판 『이구집』에는 주희의 문집에 의거하여 부록에 佚文 「常語」라는 이름으로 복원해 놓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常語」上·中·下와 구분하여 佚文 「常語」로 표기한다.

97) 『맹자』가 ‘經’이 된후 『이구집』의 편집자들에 의해 이구의 과격한 주장이 삭제된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12	孟子之言...迂闊...孟子之言固無驗也.
13	文王...孔子不妄, 孟子之誣文王也.
14	孟子自以爲好仁, 吾知其不仁甚矣.
15	行王政而居明堂, 非取王位而何也?
16	吾以爲天下無孟子可也, 不可無六經.

1조에서 이구는 한유의 도통전승론을 부정한다. 공자의 사상은 ‘임금은 임금, 신하는 신하’ 일 뿐인데, 맹자의 주장은 ‘누구나 임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맹자는 공자의 배신자일뿐이니 도통을 전할 수 없고 공자사후 도통의 전수자는 없었다는 것이다. 공자의 명분론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구가 보기에 맹자는 그저 천하를 어지럽힌 손빈 · 오기 · 소진 · 장의와 동격일 뿐이다.

2조에서 맹자는 오패의 죄인이 되고, 잔인한 사람이 된다. 멀쩡히 살아있는 주나라를 무시하였기 때문이다.

맹자는 “오패는 삼왕의 죄인이다.”⁹⁸⁾라고 말하였는데 나는 “맹자는 오패의 죄인이다.”라고 여긴다. 오패는 제후를 거느려 천자를 섬겼는데, 맹자는 제후에게 천자가 될 것을 권하였다. 진실로 사람의 본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역과 순을 알 것이다. 맹자는 주나라 현왕(顯王: 재위 BC368-BC321) 때이고, 그 뒤 오히려 또한 백년이 지나 진나라가 병합하였다. 오호라! 맹자는 잔인한 사람이다. 주나라 왕실 보기를 없애는 것이 하였다.⁹⁹⁾

3조에서 이구는 공자도 인정한 제한공의 실체에 대하여 비방만 하는 맹자에게 무슨 심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묻고 있다.

4조에서 맹자의 ‘인의(仁義)’는 찬탈의 도구가 될 뿐이다. 탕(湯) · 무(武)의 혁명은 부득이한 것이고 불행한 일이었던 것에 반하여, 맹자의 주장은

98) 『맹자』 「告子下」 五霸者, 三王之罪人也.

99) 「佚文常語」2조: 孟子曰: 五霸者, 三王之罪人也. 吾以爲, “孟子者, 五霸之罪人也.” 五霸率諸侯事天子, 孟子勸諸侯爲天子. 苟有人性者, 必知其逆順耳矣. 孟子當周顯王時, 其後尙且百年而秦并之. 嗚呼! 孟子忍人也. 其視周室如無有也.

탕 · 무로 하여금 인의를 닦아 걸(桀) · 주(紂)에게서 왕권을 쟁취하게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5조에서 맹자는 너무나 조급한 ‘혁명주의자(佐命)’가 된다.

주나라 현왕(顯王)은 악행이 있었다고 들리지 않는다. 다만 미약했을 뿐이었다. 주(紂)가 아닌데 제(齊)나라와 양(梁: 魏)나라는 섬기지 않았다. 걸(桀)이 아닌데 맹자는 나아가지 않았다. 오호라! 맹자는 천명을 보좌하려고함이 어찌 그리 조급하였던가!¹⁰⁰⁾

6조에서 맹자는 춘추대의와 관련하여 ‘신자(臣子)’의 도리가 무엇인지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된다.

7조에서 이구는 『書』를 불신하는 맹자의 잘못을 지적함과 동시에 『맹자』를 근거로 ‘육경(六經: 공자)’을 재단하는 세태에 대하여 개탄하고 있다. 『맹자』는 믿고 ‘경’은 믿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맹자)은 믿으면서 부모(공자)를 의심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 말은 이구가 일문「상어」를 짓게된 이유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큰 발언이다. 후술한다.

8조에서 이구는 맹자의 말에 따르면 옛날 성인들은 왕망만도 못한 위선자가 된다고 한다.

맹자의 말에 따르면 옛 성인은 거짓을 지은 자이고, 명예를 좋아하는 자가 된다. 왕망이 젓먹이¹⁰¹⁾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다는 것¹⁰²⁾이 어찌 족히 비웃을 만한 것이 되겠는가!”¹⁰³⁾

100) 「佚文常語」5조: 夫周顯王未聞有惡行. 特微弱爾. 非紂也, 而齊梁不事之. 非桀也, 而孟子不就之. 嗚呼! 孟子之欲爲佐命, 何其躁也!

101) 孺子: 漢宣帝의 현손인 劉嬰. 왕망은 AD5년 平帝를 독살하고 당시 2살이었던 劉嬰을 세웠다가 AD8년 劉嬰을 몰아내고 황제가 되었다.

102) 『漢書』「王莽傳」 莽親執孺子手, 流涕歔歔.

103) 「佚文常語」8조: 由孟子之言, 則古之聖人作僞者也, 好名者也. 王莽執孺子手流涕歔歔, 何足哂哉!

9조에서 맹자는 ‘주제파악도 안 되는’ 사람(不知量)이 된다. 탕이 70리로 왕천하하였고 문왕이 100리로 왕천하하였다는 맹자의 주장은 기본적인 역사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詩』를 예로 들어 고증하고 있다. 이정도 기초상식도 부족한 맹자의 ‘교인(敎人)’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10조에서 맹자는 ‘귀가 밝지 못한’ 사람(聽不聰)이 된다. 향간에 떠도는 말조차 시비판단을 못하고 무분별하게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11조에서 이구는 맹자의 『書』 「武成」 편에 대한 인식이 문제가 있으며,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됨을 말하고 있다.

무왕은 제후로써 천자를 쳤는데 어찌 전쟁하지 않았겠는가? 『詩』에 ‘목야(牧野: 지명)는 넓디 넓고, 박달나무 수레는 황황(煌煌: 鮮明)하며 네 필의 원마(驃馬)는 방방(彭彭: 強盛)하였다. 태사(太師)인 상보(尙父: 강태공)는 이때 매처럼 날아 저 무왕을 도왔다.’¹⁰⁴⁾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¹⁰⁵⁾

12조에서 맹자의 말은 우랄(迂闊)한 것이 된다. 역사적으로 실증이 없었다는 것이다.

13조에서 맹자는 문왕을 무고한 사람이 된다. 또한 공자는 육경에서 망언(妄言)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잘못 인식한 맹자가 망언한 것이 된다.

14조에서 맹자는 불인(不仁)이 심한 사람이 된다.

15조에서 이구는 당시 학자들의 주장을 소개하고 이를 반론한다. 맹자는 제후들에게 왕도를 행하라고 말했을 뿐이지 왕위를 취하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왕정을 행하고 명당에 사는 것’이 왕위를 취하라는 것이

104) 『詩』 「大雅」 「大明」 牧野洋洋, 檀車煌煌, 駟驅彭彭. 維師尙父, 時維鷹揚. 涼彼武王. 주무왕이 상나라를 친 것을 말한 詩이다.

105) 「佚文常語」 11조: 武王以諸侯伐天子, 奚不用戰哉? 詩云: “牧野洋洋, 檀車煌煌, 駟驅彭彭. 維師尙父, 時維鷹揚, 涼彼武王.” 是也.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문한다.

16조에서 이구는 맹자가 ‘인의를 말하되 왕도는 말하지 아니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드러낸다. 또한 ‘인의를 하면 왕이 될 수 있다’ 는 말도 하지 말았어야했음을 지적하고, 아울러 당시 학자들의 뇌동이 심함을 탄식하고 있다.

이상 16조에 걸쳐 일문 「상어」에 나타난 이구의 맹자관을 살펴보았다. 이구가 보는 맹자는 (1)공자를 배신한 사람. (2)오패의 죄인, 잔인한 사람. (3)이유없이 제환공을 비난만하는 사람. (4)인의를 찬탈의 도구로 쓰는 사람. (5)조급한 혁명주의자. (6)신자(臣子)의 도리가 무엇인지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 (7)『書』 곧 육경(六經: 공자)을 믿지 않는 사람. (8)성인을 왜곡시킨 사람. (9)주제파악도 안 되는 사람. (10)귀가 밝지 못한 사람. (11)상식없는 사람. (12)우활한 사람. (13)문왕을 무고한 사람. (14)불인(不仁)이 심한 사람. (15)제후들에게 왕위를 취하라고 권한 사람. (16)해야할 말과 하지말아야할 말을 구분 못하는 사람이었다. 따라서 이구가 내린 결론은 이러하다.

“나는 천하에 『맹자』는 없어도 좋으나 ‘육경’ 이 없으면 안 되며, 왕도는 없어도 좋으나 천자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¹⁰⁶⁾

정주학자들로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발언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여은지의 「존맹변」이었고, 이를 보완한 것이 주희의 「독여은지존맹변」이었다. 이들의 분노를 짐작하고도 남는다.¹⁰⁷⁾ 그러므로 이구 사후 문집에 들어있던 일문 「상어」가 13경체제 이후 사라졌고,¹⁰⁸⁾ 역설적으로 그 과격성으로 때문에 주희문집에 실려있다가 『송원학안』에도 몇조가 전해지고¹⁰⁹⁾ 오늘날 『이구집』에 부록형태로 복원된 것이다.

106) 「佚文常語」 16조: “吾以爲天下無『孟子』可也, 不可無六經; 無王道可也, 不可無天子.”

107) 여은지는 이구를 ‘陋儒’라 하였고, 주희는 ‘妄議’라고 하였다.

108) 「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 “此集爲南城左贊所編...蓋贊諱而刪之...”라고하여 명나라때 이구와 동향인 좌찬(1424-沒年未詳)의 편집하에 산삭되었다고 추정하였으나 확증할 수 없다.

109) 이구는 독립된 형태의 학안을 이루지 못하고 『宋元學案』 권3 범중엄의 高平學案에 『盱江文集』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그 안에 「常語辯」이 있다. 2·3·6·7·14·15·16조가 실려있다.

그런데 이 글은 이구 주장의 타당성 여부라든가, 여은지 · 주희의 반론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아울러 『맹자』와 육경에 관한 문헌고증도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구가 왜 이렇게도 심하게 『맹자』를 비난하고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였는가 하는 점이다.¹¹⁰⁾ 16조에서 이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오호라! 오늘날의 학자들은 뇌동이 심하다. 이는 『맹자』이지 ‘육경’이 아니고, 왕도를 즐기되 천자를 잇는 것이다. 나는 천하에 『맹자』는 없어도 좋으나 ‘육경’이 없으면 안되며, 왕도는 없어도 좋으나 천자가 없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常語」를 지어 군신의 의를 바로잡고, 공자의 도를 밝히며, 후세의 혼란과 근심을 예방하려고 했다. 사람들이 알아주어도 나에게 이로울 것이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에게 해로울 것이 없다. 학자들의 미혹됨이 슬퍼 애오라지 다시 말할 뿐이다.”¹¹¹⁾

이구는 이미 7조에서 언급한 것처럼, 당시 『맹자』를 근거로 ‘육경’ 곧 우리의 스승(吾師)인 공자를 배신하는 이상한 세태와 면밀한 고증없이 뇌동을

110) 佚文 「常語」의 저작 동기와 관련하여 안병주는 앞 논문(각주4) 109쪽에서 『東都事略』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이구가 “科擧에 응시하였을 때 모르는 문제가 있어 내가 孟子注疏 빼놓고는 읽지 않은 책이 없으니 이는 필시 孟子注疏에서 나온 문제이리라 라고 붓을 던지고 場外로 나와 그뒤 「常語」를 저술하여 孟子를 비난하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孟子의 이른바 仁義를 孫吳의 智나 蘇張의 詐와 同一視할 정도로 심한 공격을 孟子에 대해 가하는데 서슴치 않았던 것이다.” 라고 하였다. 개연성은 있을 수 있으나 이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다. 과거에 낙방한 분풀이로 맹자를 비난했다는 것인데 추측에 불과하다. 『東都事略』은 남송의 효종때 인물 왕칭(王稱: 생물연대미상)이 북송의 역사를 정리한 기전체적 저술이다. 권114, 儒學傳 권97에 이구에 관한 간략한 사실이 실려있는데 “붓을 던지고 場外로 나와 그뒤 「常語」를 저술하여 孟子를 비난하였다”는 기록은 없다. 원문은 이러하다. “素不喜孟子, 以爲孔子尊王, 孟子教諸侯爲王. 嘗試制科六論, 不得其一, 曰: 吾書未嘗不讀, 必孟子注疏也! 擲筆而出. 人爲檢視之, 果然終不中第.” 우선 이구 자신의 발언인지 불분명하다. 평소 ‘不喜孟子’했던 이구에 대하여 악의적인 유언비어가 떠돌다가 존맹의 분위기가 팽배한 남송때 저술인 『東都事略』에 채택되었을 수도 있다. 학문적 견해와 사상적 입안점이 다른 사상가의 저술을 낙방의 한풀이인냥 치부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111) 「佚文常語」 16조: “嗚呼! 今之學者, 雷同甚矣. 是『孟子』而非『六經』, 樂王道而忘天子. 吾以爲天下無『孟子』可也, 不可無『六經』; 無王道可也, 不可無天子. 故作『常語』以正君臣之義, 以明孔子之道, 以防亂患於後世爾. 人知之非我利, 人不知非我害. 悼學者之迷惑, 聊復有言.”

일삼는 학자들을 경계하고, 맹자에 미혹된 학자들을 슬퍼하였기에 「常語」를 지어 군신의 의를 바로잡고(正君臣之義), 공자의 도를 밝히며(明孔子之道), 후세의 혼란과 근심을 예방하려는 것(防亂患於後世)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다시말해서 『맹자』가 공자에 어긋나고, 후세에 혼란을 초래할 것을 염려하여 비맹의 입장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문 「상어」 집필의 동기는 앞서 보았던 「산정역도서론」을 집필한 동기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유목의 역도(易圖)가 “배우는 자제들을 가르치고(誨誤學子), 세상교육을 허무름까(壞隳世教)” 크게 염려되어 산정(刪定)하려고 했던 것처럼, 육경(공자)을 가르치고, 학자들을 미혹시켜 후세에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 명백한 『맹자』에 대하여 이구는 산정을 넘어서서 아예 폐기처분하고자한 것이었다.

제6장 결론

역사를 살펴보면 어떤 국가가 표면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면을 들여다 보았을 때 의외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구가 바라보는 북송은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주지하듯이 북송은 당말(唐末) 오대(五代)의 혼란기를 수습하고 문치주의를 표방하여 태평을 구가하고 있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더할 나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겉모습일 뿐이다. 북송의 국가적인 문제점은 황실의 사치·토지경병·조세증가·군비가중·지주의 약탈·관리의 부패·부상대고(富商大賈)의 착취 등 여러 가지이지만 이보다 더 치명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문치(文治)’의 반대급부라고 할 수 있는 ‘국방력의 부재’였다. 이민족과의 전쟁에서 패한 뒤, 막대한 세폐부담은 국고를 텅 비게 하였고 이에 따른 고통은 고스란히 백성에게 전가되었다. 『이구집』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하에 나온 저작물이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돈으로 섬기는 현실 속에서, 유자들이 성명(性命)과 의리(義理)와 성의(誠意)·정심(正心)·수신(修身)·제가(齊家)를 입으로만 외칠 때 현실을 직시하고서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富國], 군대를 강하게 하며 [強兵], 백성을 편안케 하는 [安民] 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구의 시각에서 바라본 당시 북송의 문제점과 나름대로의 해결방안을 살펴볼 수 있다.

중국의 정치사상사적인 측면에서 이구는 이른바 왕안석(王安石, 1021~1086)·진량(陳亮, 1143~1194)·섭적(葉適, 1150~1223)으로 이어지는 양송(兩宋)의 공리주의(功利主義)의 선구자로 불리운다.¹¹²⁾ 사실 이구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는 이구 당시부터 있었다. 범중엄(范仲淹, 989~1052)¹¹³⁾, 조무택(祖無

112) 소공권(蕭公權, 1897~1981)著 『中國政治思想史』, 1947, 上海. 최명·손문호 역, 1998,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113) 범중엄, 『李觀集』 「范文正公薦章三首」: 臣伏見建昌軍草澤李觀.....善講論六經, 辯博明達, 釋然見聖人之旨. 著書立言, 有孟軻揚雄之風義, 實無愧於天下之士, 而朝廷未賜采收, 識者嗟惜, 可謂遺逸者矣./ 臣觀李觀於經術文章, 實能兼富, 今草澤中未見其比. 非獨臣知此人, 朝廷士大夫亦多知之.

擇, 1011~1084)¹¹⁴⁾, 왕안석¹¹⁵⁾ 등의 평가가 그러하였는데, 특히 『송사(宋史)』 「이구전(李觀傳)」의 편자는 이구의 「명당정제도서(明堂定制圖序)」를 높이 평가하여 「이구전」의 대부분을 「명당정제도서」로 채워놓았다. 이후 명청(明清)시기 강남에서 『이구집』이 계속 중간(重刊)되어 당시 문사들의 찬사가 이어졌다. 이구가 주목받은 것은 호적의 긍정평가에 기인한다.¹¹⁶⁾ 이후 중국에서는 이구의 ‘기철학(氣哲學)’ · ‘평토균전사상(平土均田思想)’ 등을 화두로 이구를 ‘북송유물주의사상가(北宋唯物主義思想家)’로 규정하였고¹¹⁷⁾, 이후 출신지인 강서성을 중심으로 적극긍정의 입장에서 이구를 조명하고 있다.

국내의 이구관련 연구는 중국처럼 활발하지는 않으나 몇몇 분야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다. 구범진은 이구의 경제사상을 다루었고, 정병석은 이구의 경세론적 역(易)해석을 분석하였으며, 이상선은 이구의 통변사상(通變思想)에 착안하였고, 안병주와 손정민은 이구의 맹자비판을 다루었다. 강길중은 이구의 현실인식과 이치법 개혁론을 다루었고, 한성구는 이구의 의리(義利)사상과 예론(禮論)을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의 토대 위에서 한 발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고자 한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개설적이고 단편적인 인용을 통해 이구의 사상 경향이 어느 정도 소개된 점은 성과라고 할 수 있으나, 단장취의적인 접근으로는 이구의 경세사상과 공리주의가 어떠한 것인지 실체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구의 공리주의와 경세사상의 실체를 단명(單明)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구의 생각을 전하려 하였다.

114) 조무택, 『李觀集』 「直講李先生文集序」: 盱江李泰伯, 其有孟軻氏六君子(孟軻·荀卿·賈誼·董仲舒·揚雄·王通)之深心焉.....於是夙夜討論文武周公孔子之遺文舊制, 兼明乎當世之務, 悉著于篇.

115) 왕안석, 『王文公文集』 「答王景山書」: 足下又以江南士大夫爲無能文者, 而李泰伯曾子固豪士, 某與納焉. 江南士大夫良多, 度足下不遍識. 安知無有道與藝, 閉匿不自見于世者乎? 特以二君概之, 亦不可也. 況如某者, 豈足道哉?

116) 호적, 『胡適文存』 권2 「記李觀的學說」(1919): 李觀是北宋的一个大思想家. 他的大膽, 他的見識, 他的條理, 在北宋的學者之中, 幾乎沒有一個對手! 然而『宋元學案』裏竟不給他立學案, 只附在范仲淹的學案內, 全祖望本想爲他立『盱江學案』, 後來不知怎樣, 終於把他附在『高平學案』內. 這幾百年來, 大家竟不知道有李觀這一位大學者了!.....他是江西學派的一个極重要的大表, 是王安石的先導, 是兩宋哲學的一介開山大師.

117) 후외려(侯外廬) 主編, 『中國思想通史』 第4卷上冊, 第8章 「李觀的平均土地思想及其哲學思想」, 人民出版社, 1959.

이구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예(禮)’이다. 이구 당시 범중엄의 추천서는 물론 역대 이구 문집 서문과 『宋史』 「李觀傳」 등에서 이구를 언급한 사람들은 으레 이구를 소개할 때 ‘예’와 관련된 저서를 예시하고 있다. 과연 이구는 그의 문집 곳곳에서 ‘예’를 언급한다. ‘예’를 통해 자신의 경세관(經世觀)을 드러내고 있는데, 독립된 저작만해도 권2의 「禮論」 7편 · 「禮論後語」, 권5에서 권14까지의 「周禮致太平論」 51편, 권15의 「明堂定制圖序」 · 「五宗圖序」 등이 있다. 『이구집』은 ‘예론집’이라 불려도 되고, 이구는 ‘예’ 전문가라 불려도 틀린말은 아니다.

이구에게 ‘예(禮)’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의 기준이요(人道之準)’, ‘세상을 교화하는 주체(世教之主)’가 되는 것이다. 수신정심(修身正心)과 천하국가도 모두 예에서 나온다. 예는 모든 것이고, 나머지는 지엽이며 다른 이름(別名)일 뿐이다. 이구 자신의 말처럼(一本於禮) ‘예일본주의’라고 불려도 무방하다. 이와 같은 예일본(禮一本)의 사고는 「예론」 7편 전편에 흐르고 있다. 이는 인(仁) 중심의 인의예지를 주장한 『맹자』의 관점과는 분명 다르다. 이구의 사상은 맹자보다 순자의 인식과 일치됨을 확인할 수 있다.

예악이 바로선 나라는 질서와 조화가¹¹⁸⁾ 잡힌 나라다운 나라를 의미한다. 드러내놓고 말하진 못하지만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한 당시의 송나라를 부국 강병하고 백성이 평안한 태평세상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 이구의 생각이다. 이는 「예론」 7편에서 싹을 틔우고, 「예론」 7편 이후 저작들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주례치태평론」에 보이는 이구의 주장은 한 마디로 “『주례』를 통해서 태평세상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주례치태평’이란 말은 이구가 처음 쓴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이구 이전에 이미 유희(劉歆: BC53?-BC23)과 정현(鄭玄: 127-200)에게서 보인다. 『주례』는 『周官』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일종의 정부조직표와 같은 성격의 책이다. 382직(職)의 이름과 역할·인원 등등이 나열되어 있다. 강유위(康有爲: 1858-1927)가 『주례』를 ‘신대(新代: 왕망)의 학(學)’이라고¹¹⁹⁾ 맹공을 퍼기 훨씬 이전부터 경금문학자(經今文學者)들은

118) 『논어』 「陽貨」 禮云禮云, 玉帛云乎哉! 樂云樂云, 鍾鼓云乎哉! 주희 집주 속에 인용된 정이천의 주: 程子曰: 禮, 只是一箇序, 樂, 只是一箇和. 只此兩字, 含蓄多少義理, 天下無一物無禮樂...禮樂, 無處無之, 學者, 要須識得.

『주례』를 부정하였다. 『주례』가 왕망의 집권기에 유희에 의해 세력을 확장한 때문이기도 하고, 뒷날 왕안석이 『周禮新義』를 지어 취사(取士)하기도 하는 등 논란이 계속된 책이기도 하나, 어찌 되었든 훗날 13경에 포함되어 경의 지위를 잃지 않았다. 이구도 이러한 논란을 모른 것은 아니었으나, 주공의 저작으로 굳게 믿고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한 것이다. 「주례치태평론」은 후궁과 관련된 「내치」편을 빼고, 오늘날 용어로 바꾸면 경제·국방·사법·행정·교육 전반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선언문이다. 「주례치태평론」을 읽어 내려가 보면 90조에 걸쳐 주관(周官)을 예시하고 풀이한 뒤 고래 제왕들의 행적과 경전의 구절들을 섞어 설명하는데, 사실은 이구 자신의 주장을 강한 어조로 토로하고 있다.

「명당정제도서」는 명당에 대한 고증부분과 고증을 통한 명당의 재현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명당도(明堂圖)는 전하지 않고 서문만 문집에 수록되어 있다. 이구가 28세 때 지은 것으로 이구를 소개할 때 대표적인 작품으로 거론되고 있고, 실제 『송사』 이구전은 거의가 「명당정제도서」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이구는 명당의 제도와 관련하여 고서적들을 비교하여 절충을 시도하면서, 균유들의 허풍을 경계하고 있다.

「명당정제도서」에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왜 이구가 이렇게까지 명당에 관심을 갖고 철저한 고증을 시도했는가 하는 점이다. 명당의 구조에 관한 건축학적인 관심은 당연히 아니다. 이구는 송상(宋庠)에게 쓴 편지에서 “경전의 의미를 밝히고 왕의 성례(盛禮)를 돕고자 하였다.”라고 그 의도를 직접 밝히고 있는데, 이는 서문에서 “신의 몸은 비록 미천하나 또한 이때 만에 하나라도 도움이 되어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한 말과 일치한다. 결국 이구는 ‘성왕의 큰 의무’이며 ‘조정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의례’인 명당을 밝힘으로써 ‘상제를 섬기고 선조를 높이며 시령을 펴고 제후를 회합하는’ 과거 속에 존재했던 위풍당당한 왕자(王者)의 모습을 현재 송나라에서 이루어 줄 것을 원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 자신도 힘을 보태겠다고 한 것이다(自託不朽). 명당에 대한 해경(解經)이 목적이 아니었다.

「오종도서」는 오종(五宗)을 고증한 도(圖)와 서(序)인데, 현재 도는 없고

119) 강유위, 『新學僞經考』.

서만 남아있다. 오종은 친형제(同父), 종형제(同祖), 재종형제(同曾祖), 삼종형제(同高祖) 집단을 일컫는 사종(四宗)에 동성동본인 부계친족 전체를 의미하는 대종(大宗)을 더한 것이다. 이것은 주나라 종법제의 근간이라 하겠는데, 이구는 『禮記』 권16 「大傳」의 “별자위조(別子爲祖)” 이하 몇 구절에 착안하여 오종에 대한 고증을 시도하고 도를 첨부하였다. 저작 시기는 자세하지 않다. 짧은 글이지만 이구가 어디서 어떤 예(禮)를 이야기 하더라도 관심은 ‘천하를 다스리는 것(治天下)’ 이었고, 그 기준은 주나라였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동양의 전통시대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을 보려면 그 출발점은 역학관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역학의 전통은 춘추이후만 계산해도 2,000여년이 넘는데 송대에 이르러서는 정이천 이후의 리학가는 물론 각분야의 지식인들이 역학에 대한 각자의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구도 예외가 아니었다. 역학에 관한 이구의 주장은 그의 문집에 산견되지만 『이구집』 권3의 「易論」 13편과 권4의 「刪定易圖序論」에 집약되어 있다. 「역론」 13편은 『역』에 관한 이구 자신의 주장이며, 「산정역도서론」은 유목(劉牧:1011 ~1064) 이 지은 「易數鉤隱圖」를 산정(刪定)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펼친 것이다.

세상만사의 모든 것이 『역』에 들어있는데, 이러한 『역』을 성인이 지은 이유는 ‘사람을 가르치고자 함(敎人)’ 이라는 것이 이구의 생각이다. 『역』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은 ‘임금의 길’, ‘신하의 길’ 등이며, 이는 『역』이 점치는 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석가와 노자의 학문과는 다른 것이라는 선언이다. 이러한 이구의 인식은 훗날 ‘점치는 책’을 표방한 주자와 분명 다르고, 상수역내지 도서역과 관련된 언급은 없다. 포희(복희) · 문왕 · 주공 · 공자로 이어지는 성인에 대한 인식은 전통적인 역학관과 일치하지만 특이한 것은 왕필(226-249)을 높이 인정한 것이다.

왕필의 역학은 실은 도가를 존중하고 유가를 배척하는 경향이기는 하나 역학사에서의 왕필의 영향은 큰 것이었다. 왕필은 『역』이 정치철학을 강론한 책이라 보고, 나아가 득의망상설(得意忘象說) · 취의설(取義說) · 효위설(爻位說)을 주장하여 한역(漢易)의 극히 변쇄한 상수학과 미신을 배척하고 현학(玄學)에 의한 역해석의 새로운 풍조를 열었다고 역학사에서 평가되는데, 이구는

이러한 왕필을 ‘현(賢)’으로 인정하고, 「산정역도서론」에서도 밝혔듯이 왕필의 주를 원용하여 『역』의 의미를 풀이하고 있다.

이구의 「역론」 13편에서 괘기(卦氣), 오행(五行), 납갑(納甲), 효진(爻辰), 괘변(卦變), 호체(互體) 등 일반적인 한역과 상수역 내지 도서역에 보이는 이론들과 논제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이구가 이 논제들에 대한 답으로 예들든 괘효만 빼고 보면 이구의 「역론」 13편은 『역』 자체에 관한 논의라기보다 정치에 관한 논의 내지는 자기의 주장을 『역』의 괘효형식을 빌려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정병석의 지적처럼 경세론적 역학관이라고 할 수 있겠다.

13개의 효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임금의 길’을 설명하는데, 이구가 말하고자 하는 ‘임금의 길’은 결국 (1)겸손하고, (2)검소하고, (3)소박하고, (4)편애없이 모두 사랑하고, (5)널리 베풀고, (6)스스로를 수양하고, (7)사람들이 스스로 이룰 수 있게 도와주고, (8)덕을 닦아 잘못된 것을 고치고, (9)중도를 행하고, (10)폐단을 바로잡되 변통할줄 알아야 하고, (11)위엄을 갖추어 명령이 서게 하고, (12)가정을 잘 다스리고, (13)천하를 안정케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반대로 말하면 당시 임금이 그러하지 못하였다는 것일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이 당시 송나라 군주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라 하여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비단 ‘임금의 길’ 뿐만 아니라 「역론」 13편에서 제기한 논제들을 읽어보면 『역』의 이름을 빌리고 괘와 효를 차용하였을 뿐 28세 전후의 저작들, 곧 「明堂定制圖並序」, 「平土書」, 「富國」, 「彊兵」, 「安民」 30策 등에서 주장하는 견해와 궤를 같이한다. 다시 말해서 「역론」 13편에서 보이는 이구의 역학관은 『역』 자체에 대한 담론이라기 보다는 이구의 정치적 견해를 『역』의 괘효를 빌어 표방한 것이다. “만사의 이치가 『역』에 모두 들어 있다.”고 한 이구의 말에서 보듯 이구가 다수의 저작에서 주장한 것들은 이러한 역학관 속에 싹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이구의 「역론」 13편은 『역』 자체에 관한 저작이 아니었고, 『역』을 이용하여 ‘천하국가지용’을 논한 것이었다. 이것은 이구의 역학관이 상수계열 보다는 의리계열에 있음을 말해준다. 곧 이구의 역론은 ‘天道’ 보다는 ‘人事’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역론」 13편에서는 ‘氣本論’이라거나 ‘소박한

唯物論’이라고 볼 수 있는 주장의 근거는 보이지 않았다. 『역』에 관한 이러한 인식 위에서 이구는 천하국가를 향한 여러 가지 개혁방안을 다수의 관련 저작을 통하여 주장하였던 것이다.

유목은 이구보다 2살 아래인데 이구처럼 범중엄의 추천을 받았지만 『역』에 관한 입장은 전혀 달랐다. 유목은 『역』에 나온 ‘수(數)’에 착안 ‘수’의 은미한 의미를 찾아 도서로 풀이하여 「역수구은도」를 지었다. 이 「역수구은도」를 가지고 이구는 그의 주장의 오류를 지적하고, 이른바 ‘산정(刪定)’을 하고서 자기의 주장을 「산정역도서론」에 펼쳐놓았다. 이를 통해 「산정역도서론」의 주제는 비록 상수도서학이지만 이구의 관심은 「역론」13편이래 ‘天下國家之用’과 ‘世教’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서문에서 ‘학자를 그르치고 세상의 교육을 무너뜨릴까 대단히 두렵다(大懼誣誤學子, 壞隳世教)’고 한 것이나 마지막 구절인 ‘『역』의 도가 밝아지고 임금의 도가 이루어진다(易道明而君道成矣.)’는 말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이구의 「부국책」은 10수로 되어 있는데 도입부분부터 일반적인 유자(儒者)들과 색다른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이구는 치국(治國)의 실체가 반드시 ‘재용(財用)’에 뿌리를 두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는 공자의 말과 경서에 근거한 것이지 결코 이상한 주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돈이 없으면 [非財]’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다. ‘재용’의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구는 국고 고갈의 원인을 찾아 나서면서 당시 사회가 처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구가 「부국책」에서 제기한 복송 중기 사회의 문제점들은 ① 생산수단의 소유와 이용의 불합리 [地力不盡·田不墾闢], ② 한정된 재화에 대한 왜곡된 이용 풍조와 국가의 방임 [金不足·帛不賤], ③ 자본가들의 비정상적인 폭리와 놓고 먹는 사람들의 증가 [逐末·冗食], ④ 불교와 도교의 폐해 [釋·老十害], ⑤ 식량 수급 조절 실패 [糶·糶不當], ⑥ 국가 재난 상황에 대한 무대책 [水旱無備], ⑦ 통화기능 상실에 대한 국가의 무능 [惡錢], ⑧ 시대착오적인 불합리한 경제 규제 [鹽·茶專賣] 등이다. 이구 당시의 용어를 현대어로 바꾸어 보면 이구의 문제제기는 충분히 수긍이 되면서 동시에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날에도 울림이 있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문제에 대하여 이구가 「부국책」에서 제안한 해결책을 요약해 보면 ① 합리적인 제도를 통한 국가 법질서의 확립 [明立制度], ② 지도층의 솔선수범을 통한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節用], ③ 생산자 중심의 경제구조 확립 [強本抑末], ④ 시대착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철폐를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通商] 등이다.

『맹자』는 정주학자(程朱學者)들에 의해 ‘사서(四書)’로 격상되고, ‘공맹(孔孟)’으로 병칭되며, 급기야 안연을 밀치고 ‘아성(亞聖)’으로 불리며, 마지막으로 13경에 편입. ‘경(經)’의 지위를 인정받기 전에는 제자서(諸子書)가운데 하나일 뿐이었다. 더구나 ‘혁명’을 인정하는 부분에서 집권세력에게는 오히려 불온한 서적에 가까웠다. 주희 이후 『맹자』를 경(經)으로 배운 세대는 해서는 안 될 일이 『맹자』에 대한 비판이지만 주희 이전에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이른 시기 순자(非十二子)부터 왕충(刺孟)과 사마광(疑孟) 그리고 이구까지 『맹자』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있어왔다. 한편 이들과 반대의 입장에 서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맹자』에 대하여 옹호적 주장을 하였다. 결국 이러한 『맹자』에 대한 호불호는 그 사상가의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구는 이 가운데에서도 가장 격렬하게 『맹자』를 비판하여 흔히 ‘비맹(非孟)’으로 불린다. 공리(功利)주의자로 알려진 이구의 사상과 첫 장부터 ‘하필왈리(何必曰利)’를 부르짖는 『맹자』는 분명 출발부터 관점이 다르다. 하지만 『이구집』 도처에 보이는 『맹자』 관련 언급에서는 이러한 비맹의 주장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현재 우리는 역설적으로 이구를 비판한 주희를 통해서 이구의 비맹 주장을 접할 수 있을 뿐이다. 주희는 그의 문집 권73에 「독어은지존맹변」을 통해서 이구의 비맹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맹자관을 보여 주었으나, 오늘날 우리는 역으로 주희를 통해 이구의 날선 비판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16조에 걸쳐 일문 「상어」에 나타난 이구가 보는 맹자는 (1)공자를 배신한 사람. (2)오패의 죄인, 잔인한 사람. (3)이유없이 제한공을 비난만하는 사람. (4)인의를 찬탈의 도구로 쓰는 사람. (5)조급한 혁명주의자. (6)신자(臣子)의 도리가 무엇인지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 (7)『書』 곧 육경(六經: 공자)을 믿지

앓는 사람. (8)성인을 왜곡시킨 사람. (9)주제파악도 안 되는 사람. (10)귀가
 밝지 못한 사람. (11)상식없는 사람. (12)우활한 사람. (13)문왕을 무고한 사
 람. (14)불인(不仁)이 심한 사람. (15)제후들에게 왕위를 취하라고 권한 사람.
 (16)해야할 말과 하지말아야할 말을 구분못하는 사람이었다. 따라서 이구가 내
 린 결론은 “천하에 『맹자』는 없어도 좋으나 ‘육경’ 이 없으면 안되며, 왕도
 는 없어도 좋으나 천자가 없으면 안된다.” 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일문 「상어」 집필의 동기는 앞서 보았던 「산정역도서론」을 집
 필한 동기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유목의 역도(易圖)가 “배우는 자제들을
 그르치고(誣誤學子), 세상교육을 허무로까(壞隳世教)” 크게 염려되어 산정(刪
 定)하려고 했던 것처럼, 육경(공자)을 그르치고, 학자들을 미혹시켜 후세에 혼
 란을 야기시킬 것이 명백한 『맹자』에 대하여 이구는 산정을 넘어서서 아예 폐
 기처분하고자한 것이었다.

〈2부〉 『이구집』 번역

제1장 직강이선생문집서 · 자서

直講李先生文集序

孔子沒千有餘祀，斯文衰敝。其間作者孟軻·荀卿·賈誼·董仲舒·揚雄·王通之徒，異代相望而不能興衰救敝者，位不得而志不行也。苟得位以行其志，則三代之風吾知其必復。嗟乎！秦·漢以來，禮樂則不爲，而任刑以馭其民，將納於治，適所以亂之也。歷世寔久，皆謂天下當如是，可以致治而不治者，時耳。故有奮筆舌爲章句，卒不及於禮樂者，末哉文也！

직강이선생문집 서문¹²⁰⁾

공자 돌아가시고 천여년, 사문(斯文:儒學)은 쇠약해졌다. 그 사이 일어난 맹가·순경·가의(BC200~BC168)·동중서(BC170?~BC120?)·양웅(BC53~AD18)·왕통(584~617)의 무리가 다른 시대에서 서로 바라보았으나(일어났으나) 쇠약함을 일으켜 구원하지 못한 것은 ‘자리[位]’를 얻지 못하여 뜻을 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진실로 자리를 얻어 그 뜻을 행할 수 있었다면 3대(하·은·주)의 풍속이 반드시 회복되었을 것을 나는 안다. 아, 진(秦)나라와 한(漢)나라 이래 예악(禮樂)은 행하지 않고, 형벌에만 맡겨 백성을 몰아 다스리고자 하였으니 막 어지럽힐 뿐이었다. 세월이 점점 오래되면서 모두 “천하는 마땅히 이렇게 해야 다스려진다.”라고 하였으나, 다스려지지 않았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붓과 혀를 떨쳐 문장과 구절을 만드는 것이 있었으나 끝내 예악에 미치지 못하였던 것은 (본질을 모른 채) 지엽적이었던 글 때문이었다!

120) 이구가 35세 되던 해(1043, 북송 인종 慶曆 3년) 과거에 낙방하고 고향으로 물러나 초고 233수를 모아 『退居類稿』 12권을 만들었는데 그 해 겨울에 남강군수 祖無擇이 쓴 서문이다.

盱江李泰伯，其有孟軻氏六君子之深心焉。年少志大，常憤疾斯文衰敝，曰“墜之已甚，誰其拯之？”於是夙夜討論文·武·周公·孔子之遺文舊制，兼明乎當世之務，悉著于篇。且又歎曰“生處僻遐，不自進孰進哉？”因徒步二千里入京師，以文求通于天子。乃舉茂才異等，得召第一。既而試于有司，有司黜之。嗚呼！豈有司之過邪？其泰伯之命邪？或者天徒付泰伯以其文而命則否邪？亦將位得志行後有時邪？吾不得而知已。

우강 이태백(이구)은 맹가씨 등 6군자의 깊은 마음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이는 젊으나 뜻은 커 항상 사문이 쇠약해진 것을 분하고 아파하여, “땅에 떨어진지 이미 심하니 누가 건질 것인가?” 라고 하였다. 이에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주나라) 문왕·무왕·주공·공자가 남긴 글과 옛 제도를 토론하였고, 당대에 힘써야 할 것을 함께 밝혀 다 글로 지었다. 또한 탄식하여 “사는 곳은 궁벽하고 멀지만 스스로 올리지 아니하면 누가 올려줄 것인가”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천리를 맨 발로 걸어 서울에 들어와 글로써 천자에게 통하기를 구하였다. 이에 무재이등(茂才異等)으로 천거되어 첫번째로 부름을 얻었다. 이윽고 유사(有司)에게 시험하였으나 유사는 떨어뜨렸다. 오호라! 유사의 허물이 있었던가? 그것이 태백의 명(命)이었던가? 혹은 하늘이 한갓 태백에게 글만 주고 명은 부여하지 않았던가? 또는 장차 자리를 얻고 뜻을 행할 때가 뒤에 있을 것인가? 나는 모르겠다.

泰伯退居之明年，類其文稿，第爲十有二卷，以寄南康祖無擇，且屬爲序。無擇既受之，讀之晷月不休。善乎！文·武·周公·孔子之遺文舊制與夫當世之務，言之備矣。務學君子可不景行於斯！

慶曆三年冬至日序。

태백이 퇴거한 다음 해(1043, 이구 35세) 그간의 원고를 엮어 12권을 만들고, 남강 조무택¹²¹⁾에게 주며 서문을 부탁하였다. 무택은 이미 받고서 읽기를 만 한

121) 조무택: 조무택(祖無擇, 1006~1085)은 당시 이구의 고향인 강서성 남성현 인근의 남강군수였다. 이구의 지인으로 袁州知州로 부임하여 먼저 학관을 세우고 학생을 모집하여 학교가 성황을 이루었다. 이구는 1054년(이구 46세) 천하의 명문이라는 「袁州學記」를 지어 이를 기념하였다. 「袁州學記」는 『古文眞寶』편자가 “學記가 많으나 뜻이 바르고 말이 엄격하며 문장이 노련하고 기백이 짙직한 것은 이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고 평하였다. 『이구집』에는 조무택과 관련된 글이

달 동안 쉬지 않았다. 졸구나, 문왕·무왕·주공·공자가 남긴 글과 옛 제도, 및 당대에 힘써야 할 일들을 말하여 갖추어 놓았다. 학문에 힘을 쓰는 군자여 여기 큰 길을 걸어보지 않겠는가!

경력 3년(1043, 북송 인종 21년) 동짓날 서문을 씀.

다수 있다.

自序

李觀泰伯以舉茂材罷歸. 其明年慶曆癸未秋, 因料所著文, 自冠迄茲十五年, 得草稿二百三十三首. 將恐亡散, 姑以類辯爲十二卷寫之. 間或應用而爲, 未能盡無媿, 閱其力之勞, 輒不棄去. 至於妖淫刻飾尤無用者, 雖傳在人口, 皆所弗取.

噫! 天將壽我乎? 所爲固未足也. 不然, 斯十二卷, 庶可籍手見古人矣. 故自序云.

자서

이구 태백은 무재(茂材)¹²²⁾로 천거되었다가 파하고 돌아왔다. 그 다음해 경력 계미년(1043, 이구 35세) 가을 지어온 글을 헤아려 보니 약관 무렵부터 지금까지 15년동안 초고 233수를 얻었다. 없어지고 흩어질까 염려되어 우선 분류하여 12권을 만들고 필사하였다. 간혹 쓰일 수 있겠다 싶어 만들고 나니 부끄러움이 다 없지는 않으나 그 힘들인 수고로움이 안타까워 문득 버릴 수 없었다. 요망하고 음란하며 꾸며대서 더욱 쓸모 없는 것들은 비록 사람들 입에 전하여진 것이라도 다 취하지 않았다.

아, 하늘은 장차 나에게 수(壽)를 누리게 할 것인가? 해 놓은 것이 진실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렇지 않다면(단명하면) 이 12권은 다만 남의 손을 빌리게 되어 옛 사람이 쓴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서문을 쓴다.

122) 무재(茂才): 한나라때는 과거의 한 과목이었으나 송나라때는 과거에 응시하는 모든 수험생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 원래는 '秀才'였는데 후한 광무제(劉秀)의 휘를 피하여 무재가 되었다. 이구는 33세(慶曆元年, 1041)에 군에서 추천되어 응시차 서울에 가 1년여 머물렀으나 낙방하고 34세에 귀향하였다.

제2장 『이구집』 권1 賦

李觀集卷第一

賦¹²³⁾

長江賦

臣聞, 養萬物者, 惟地之大, 水居其上, 則地不能載. 以觸以蓄, 以斷以掘, 深或無底, 遠或幾千萬里, 則江之爲水, 臣不得而計之矣. 蜀焉我頂, 吳焉我腹, 淮我之腋, 海我之足. 朝谿暮谷, 刮骨磨肉, 委之填之, 而莫飽其欲. 萬山崔崔, 將裹將束, 如兒童之見犇馬, 縮頭斂手, 避路而躑躅. 時清氣和, 無濤無波, 千丈一席, 可眠可歌. 變動頃刻, 四天怒色, 凶煙暴雲, 對面漆黑. 誰爲風師? 誰爲水伯? 不軌不法, 無別無識. 風兮何聲? 水兮何形? 前雷後霆, 冰堆雪層, 操舟之老, 尚不能自保, 況乃遠而行客, 孰不椎心而太息? 出如登山, 入如沈泉, 退無所止, 進不得前. 龍螭蛇蠃, 固執殺生之權, 蝦蟹瑣瑣, 猶或賈勇而爭先.

장강부

신은 들으니 만물을 기르는 것은 오직 땅이 큰데 (그러나) 물이 그 위에 있으면 땅은 실을 수 없습니다. 부딪치고 물어뜯고 끓고 파서, 깊이는 흑 밑이 없고 멀기는 흑 몇천만리인지 장강의 물을 신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촉(蜀)은 나의

123) 이구의 詩文은 권23-권37에 수록되어 있으나 권1에 賦 3수가 앞에 배치되었다. 부의 형식을 빌려 자신의 속마음을 펼쳐놓은 것인데, 이구가 38세에 『皇祐續稿』를 편집하면서 앞에 놓은 것 같다. 이구는 38세에 「長江賦」를 지어 주나라때처럼 '采詩官'에게 채택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2년전 「慶曆民言」에 이어 南方의 일을 말하고자한 것이다. 「長江賦」는 「慶曆民言」의 운문형 축약판 이라 하겠다. 「麻姑山賦」는 이구 고향의 명산인 마고산을 읊다가, 도교의 폐해를 읊은 것으로 34세때 지은 것이다. 「疑仙賦」는 「麻姑山賦」를 이어 신선의 존재에 대하여 자문하는데 自傳적 성격의 작품으로 볼 수 있다. 38세때 지은 것이다.

정수리요, 오(吳)는 나의 배요, 회(淮)는 나의 체액이요, 바다는 나의 발이라. 아침 저녁 시내와 골짜기에서 뼈와 살을 비비고 갈아, 쌀고 메워도 그 옥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우뚝우뚝 많은 산을 싸고 묶은 것이 아이들이 달리는 말을 보고서 머리를 움츠리고 손을 거둔 채 길을 피하여 머뭇거리는 것 같습니다. 때는 맑고 기운은 온화하여 파도가 일지 아니하면 천 길의 한 자리인 듯 잠들 만하고 노래할 만합니다. 경각에 변동하여 사방의 하늘이 노기를 띠면 굵은 연기와 사나운 구름이 칠흑을 마주한 듯합니다. 누가 풍사(風師)이고 누가 수백(水伯)입니까? 궤(軌)도 아니요 법도 아니요, 분별할 수 없고 인식할 수 없습니다. 바람은 어떤 소리이고 물은 어떤 모양입니까? 앞뒤로 천둥 번개가 치고 얼음과 눈이 쌓여 배를 조종하는 노인도 오히려 능히 스스로 보전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이에 멀리 다니는 길손이 누군들 가슴이 방망이질 하고 큰 탄식을 하지 않겠습니까? 솟구칠 때는 산에 오르는 듯 하다가 꺼질 때는 샘에 빠지는 듯 하고, 물러나려 해도 그칠 곳이 없으며, 나아가려 해도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용·리·뱀·자라가 진실로 삶과 죽음의 권한을 잡고 새우와 게 잔단 것들이 오히려 혹 용력을 과시하여 앞을 다룹니다.

嗟乎! 生之難, 成之難, 父母君師之所愛, 而託命於其間. 幸而免者, 蓋有之矣. 不幸而死者, 何可勝紀? 魚腹未消, 鶻聲相繼, 豈非利欲之牽人, 而危亡之不避? 揚·荊·巴·蜀, 交·廣·甌·閩, 地有常產, 物有常珍. 衣者食者, 器者玩者, 歌童舞女, 詭異妖冶, 官所不取, 則掠之私舍. 孰賢孰才? 貪哉鄙哉! 重裝疊載, 踰江越淮. 然則視長鯨之怒東海, 不啻如蟻蠓之浮杯.

아, 삶의 어려움과 이룸의 어려움이여, 부모와 임금과 스승의 사랑을 받고서 그 사이에 명을 맡겼습니다. 다행히 면함을 얻은 사람도 있으나, 불행하게도 죽은 사람들을 어찌 다 기록하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가 아직 안 되었는데 노젓는 소리가 서로 이어지는 것은 어찌 이곳과 욕심이 사람을 이끌어 위태로움과 죽음을 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양(揚)·형(荊)·파(巴)·촉(蜀)·교(交)·광(廣)·구(甌)·민(閩)은 땅이 일정한 생산이 있고, 물자가 항상 진기합니다. 입을 것, 먹을 것, 기물, 완구, 노래하는 아이, 춤추는 여자, 특이한 것, 요

영한 것 따위를 관에서 취하지 아니하면 사가에서 약탈합니다. 누가 더 어질고 누가 더 재주 있던 말입니까? 탐욕스럽고 비루합니다. 무겁게 꾸리고 첩첩이 쌓고서 장강을 넘고 회수를 넘습니다. 그렇다면 긴 고래가 동해에서 성내는 것과 견주어 볼 수 있으니, 눈에놀이가 잔에 떠다니는 것과 같을 뿐만이 아닙니다.

嗚呼! 山川之阻, 土地之富, 天下有道, 則王之外府, 天下無道, 則奸雄所處. 蓋足於財用, 而利於守禦, 故周之衰也, 有吳有楚, 漢之亂也, 曰策曰權. 琅琊因之, 以建大號. 劉裕得之, 以入中原. 道成·蕭衍, 迄於霸先, 自取自守, 人誰敢言? 赤壁之敗曹操, 壽春之走苻堅, 雖曆數之有在, 亦事勢之使然. 及夫孫皓之虐, 叔寶之昏, 而後能滅焉. 勞乎哉! 經幾代而幾年?

오히려, 산천의 험함과 토지의 부유함은 천하에 도가 있으면 왕의 바깥 창고이지만 천하에 도가 없으면 간웅이 처하는 곳입니다. 대개 재용이 풍족하면서 지키고 방어하는데 이로웠기 때문에 주나라가 쇠약할 때에 오나라가 있었고 초나라가 있었으며, 한나라가 어지러울 때에 손책과 손권이 있었습니다. 낭야(琅琊:司馬睿)는 그 때문에 대호(大號:東晉)를 세웠고, 유유(劉裕, 363~422)는 그것을 획득하여 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도성(蕭道成, 427~482)과 소연(蕭衍, 464~549)에서 패선(霸先:陳霸先, 503~559)까지¹²⁴⁾ 스스로 취하고 스스로 지켰으니 사람들이 누가 감히 말하겠습니까? 적벽에서 패한 조조와 수춘(壽春)에서 달아난 부견(苻堅, 338~385)¹²⁵⁾은 비록 역수(曆數)가 있다고 하여도, 또한 일의 형세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 손호(孫皓, 242~284)¹²⁶⁾의 포학함과 숙보(叔寶, 553~604)¹²⁷⁾의 혼미함은 뒤에 능히 멸망되었습니다. 수고로웠습니다. 몇 대와 몇 년을 지내었습니까?

臣聞「周書」曰“制治於未亂, 保邦於未危.” 陰陽有消長, 日月有蔽虧. 在乎備之得

124) 낭야.....까지: 東晉의 司馬睿, 宋의 劉裕, 齊의 蘇道成, 梁의 蕭衍, 陳의 陳霸先을 가리키는 것인데 모두 강남을 근거로 南朝의 왕조를 개척한 사람들이다.

125) 수춘.....부견: 前秦의 부견은 383년 강남을 병합하려 東晉을 공략하였으나 安徽省 淮河의 지류인 淝水전투에서 패하여 실패하였다. 壽春은 당시의 지명으로 오늘날 안휘성 壽縣이다.

126) 손호(孫皓): 삼국시대 뒷나라의 마지막 황제. 손권의 손자.

127) 숙보(叔寶): 남북조시대 陳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陳叔寶를 말한다.

所，則禍何能爲？伏惟國家重西北而輕東南。臣何以知之？彼之官也特舉，此之官也累資。斂於此，則莫知其竭，輸於彼，則唯恐不支。官以資則庸人並進，斂之竭則民業多隳。爲貪爲暴，爲寒爲飢，如是而不爲盜賊，臣不知其所歸。

신은 들으니 『서경』 「주서」 「주관(周官)」에 “혼란하지 아니할 때 다스림을 만들고, 위태롭지 아니할 때 나라를 보전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음양은 사라짐과 자라남이 있고, 일월은 가리워짐과 이지러짐이 있습니다. 대비함이 적절함을 얻음이 있다면 재앙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앞드려 생각건대 국가가 서북을 중히 여기고 동남을 가볍게 여깁니다. 신이 어찌 압니까? 저쪽의 벼슬은 특별히 천거하나 이쪽의 벼슬은 재물을 쌓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거두는 것은 곧 그 다함을 알지 못하나 저기에 실어나르는 것은 오직 버티지 못할까 염려할 뿐입니다. 관직을 재물로써 하면 용렬한 사람도 나란히 나아가고, 거두기를 다하면 백성의 생업은 많이 무너집니다. 탐욕스럽고 포학함과 굶주리고 추움이 이와 같은데 도적이 되지 않는다면 신은 그 돌아갈 곳을 알지 못하겠나이다.

諸夏內也，爲腹心；夷狄外也，爲手足。輕重之理，豈神明之所不燭？秦備胡而陳勝起事，唐戍蠻而龐勳肆毒，觀其土崩之由，誠可爲之痛哭。古者有採詩之官，惟賦亦古詩之流，賤臣不獲言于朝，敢賦心之憂愁。安得爲太平之草木，蒙雨露兮千秋。

제하(諸夏:중국)는 안이고 배와 심장이 되며, 이적(夷狄)은 밖이고 손과 발이 됩니다. 경중의 이치를 어찌 신명이 밝히지 못할 바 이겠습니까? 진(秦)나라는 북쪽 오랑캐를 대비한다고 하였다가 진승(陳勝)이 일을 일으켰고, 당(唐)나라는 남쪽 오랑캐를 지킨다고 하였다가 방훈(龐勳)¹²⁸⁾이 독을 퍼트렸으니, 그 무너짐의 이유를 관찰해보면 참으로 통곡할 만합니다. 옛날에 채시관(采詩官)이 있었으며, 부(賦)는 또한 옛 시의 종류로서 미천한 신이 조정에 말씀을 아릴 수 없기에 감히 마음의 근심을 읊어 보았습니다. 어찌하면 태평세상의 풀과 나무가 되어 천년의 비와 이슬의 혜택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128) 방훈(龐勳): 당나라때 농민 반군의 수령. 868년 광서 계림 주둔 800여명이 수자리의 고초에 못이겨 都頭를 죽이고 방훈을 영수로 삼아 북상, 일시에 장안을 위협할 정도로 세력을 떨쳤다.

麻姑山賦

巍乎高哉! 茲山之爲異也, 吾不知夫幾百千里之廣, 但見土老而石頑, 頂天而直上. 驗地勢之所極, 固亦東南之藩障者乎! 路蹊蟠鬱, 前後相失. 岡巒峯嶺, 左右馳突. 鳴泉百雷, 躍下雲窟. 喬杉萬矛¹²⁹⁾, 舞破煙骨. 靈竒恍惚, 變見出沒. 匱耳目之觀聽, 曾不究夫萬一.

마고산¹³⁰⁾부

높고 높구나, 이 산의 기이함이어. 나는 몇 백리 몇 천리 인지 넓이를 알 수 없고, 다만 흙이 오래되고 돌이 크며 산마루가 하늘로 곧추 선 것만 본다. 지세의 끝을 증험하니 진실로 또한 동남의 울타리이다. 산길은 꼬불꼬불 앞뒤가 서로 잃고, 언덕은 비쪽비쪽 좌우로 달려 든다. 우는 샘은 백개의 번개치는 듯 구름 굴로 떨어지고, 높은 삼나무는 만개의 창인 듯 안개 속에 춤을 춘다. 신령스럽고 기이하고 황홀하여 변화가 출몰한다. 귀와 눈의 듣고 보는 것이 다하여 만에 하나도 헤아릴 수 없다.

其間則有名天之洞, 禮神之堂. 高臺層瑤, 吸日月之光, 繚垣築粉, 孕芝蘭之香. 偏門曲廊, 入迷其方, 斜軒亂窗, 或溫而涼. 況乎御龍膏之酒, 倚雲和之瑟, 一飲一石, 一醉千日. 安知億萬人, 塵衣飛蚤虱? 其或黯然而霧, 飄然而雨, 跬步之內, 則朦無所睹. 夜長漫漫, 山空月寒. 鶴群戲風, 舞羽跚跚. 老猿抱子, 吟聲欲乾. 怪物參差, 松柯水湄. 或步或馳, 或嘯而悲. 仙乎鬼乎, 千態萬狀而使人心疑. 別有澗石之迤邐, 圜潭之無底, 是曰“蛟龍之所止.” 嬾而爲旱, 怒而爲水. 嗟我力耕之民, 輟衣食之資, 而爲禱祠之費. 巖岫冥冥, 古無人行. 百獸飢死, 虎狼夜鳴. 是何假上真之名, 而神姦之

129) 原註: ‘矛’는 光緒本에 ‘株’로 되어 있다.

130) 마고산(麻姑山): 마고산은 강서성 남성현 서쪽 근교에 위치한다. 주봉은 해발 1,064m이다. 화려한 경관과 신화전설이 어우러져 오랜시간 이름을 떨쳐왔다. 도교의 명승이자 피서지로 유명하다. 당나라 개원 연간에 이 산의 도사 鄧紫陽이 麻姑廟를 세우자고 주청하여 이름을 얻었다. 도교에서 중시하는 36洞天과 72福地 중에 마고산은 제28동천과 제10복지를 겸하여 두고 있다고 전해진다.

所憑也?

그 사이에 동천과 신당이 있다. 고층의 요대는 해와 달의 빛을 흡수하고, 둘러친 채색한 담은 지초와 난초의 향을 머금었다. 한쪽 문과 굽은 회랑은 들어가면 그 방향을 잃고, 비스듬한 처마와 어지러운 창은 혹 따듯하기도 하고 서늘하기도 하다. 하물며 용고(龍膏)의 술¹³¹⁾을 쓰고, 운화(雲和)의 비파¹³²⁾에 기대어, 한번에 한 석을 마시면 천일을 취한다. 어찌 억만 사람들의 티끌 물은 옷에 베풀고 이가 날리는 것을 알겠는가? 혹여 짙은 안개가 끼고 비라도 흠뿌리면 반걸음 안에도 몽롱하여 보이는 것이 없다. 밤은 길어 끝없이 지루한데 산은 비고 달은 차다. 학은 무리지어 바람을 타고 날개 춤을 추며 머뭇머뭇한다. 늙은 원숭이는 새끼를 안고 울어대는 소리 목청이 마르려한다. 기괴한 물건이 들쭉날쭉하고, 소나무와 모밀잣밤나무는 물가에 있다. 걷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며, 휘파람 부는 듯하기도 하고 슬피우는 듯하기도 한다. 신선인가 귀신인가. 천태만상이 사람의 마음을 의심케 한다. 별도로 바위 사이로 산골물이 연이어 지다가 밑이 보이지 않는 동그런 못이 있는데 이는 교룡(蛟龍)이 머무는 곳이다. 게으름을 부리면 가뭄이 들고 성내면 큰 물이 난다. 아, 우리 힘써 밭을 가는 백성이 먹고 입어야 할 자산을 버려 기도하고 제사하는 비용으로 쓴다. 바위 구멍은 어둑어둑, 예로부터 사람이 다니지 않는다. 온갖 짐승은 굶어 죽고, 범과 이리는 밤에 운다. 어찌 상진(上眞:眞仙)의 이름을 빌려 신간(神姦)¹³³⁾이 빙자하는가.

悲夫! 以地之奇, 以物之靈, 而逋客之經營. 全形養氣, 採朮茹菁, 未嘗有笳簫之聲, 鸞鳳之迎. 謝人品而凌太清者, 徒見山寒兮青青, 水秋兮冷冷. 雲路咫尺, 而不能以升. 豈非仙可得而不可求, 道可悟而不可學? 彼其叛稼穡之功, 遺室家之樂, 越天常而慕冥冥, 宜乎白首於丹竈之下, 幽死而無所託也.

131) 용고의 술: 전설에 나오는 '용의 기름'에서 온 것인데 등불을 켜면 百里를 비추고, 仙藥으로 쓰이면 起死回生の 약이 되며, 美酒로 쓰이면 정신을 맑게 한다고 한다.

132) 운화의 비파: 『周禮』「大司樂」에 “孤竹之管, 雲和之琴瑟”에서 온 것인데 천지·산천·종묘의 제사에 소용되는 악기들이다. 孤竹과 雲和는 산이름이라고 한다.

133) 신간(神姦): 神姦또는 神奸이라고도 하는데 사람을 해치는 귀신이나 怪物을 뜻하고, 전하여 간사하고 교활한 인간의 뜻으로도 사용한다.

슬프다, 땅의 기이함과 만물의 신령함을 도망친 자들이 경영한다. 형체를 온전히 하고 기운을 기르며, 삼주를 캐고 순무를 먹어도 일찍이 갈대피리소리와 난새와 봉황의 영접이 있지 않았다. 사람됨을 사절하고 태청(太淸:하늘)을 오르는 것은 한갓 산은 차 푸릇푸릇하고 물은 가을에 냉랭한 것만 볼 뿐이다. 구름길이 지척인데 오르지 못한다. 어찌 신선이 될 수 있으나 구할 수 없고, 도를 깨우칠 수 있으나 배울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 심고 가꾸는 공을 배반하고, 가정의 즐거움을 버리며, 천상(天常:人倫)을 넘어 어둡고 적막함을 사모하는 자들은 마땅히 단조(丹竈)¹³⁴의 아래에서 머리가 허열게 세다가, 소리없이 사멸되어 의탁할 곳이 없게 될 것이다.

疑仙賦 並序

觀家盱江，其西十里則麻姑山，顏太師真卿有記存焉。少北則麻源，謝靈運詩所謂入華子崗是麻源第三谷者也。其山水清媚，與神仙趾跡相附，著在人口吻。

의선부 병서

나는 우강(盱江)¹³⁵에 살아 서쪽으로 10리를 가면 마고산(麻姑山)인데 태사 안진경(709~785)의 비석¹³⁶이 있다. 조금 더 북쪽으로 가면 마원(麻源)이라는 곳인데 사영운(385~433)의 시¹³⁷의 이른바「입화자강시마원제삼곡

134) 단조(丹竈):道士가 仙藥을 만들기 위해 丹沙를 고았다는 부뚜막을 말하는데, 선약을 만든다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135) 우강(盱江): 우강은 江西省 廣昌縣에서 발원하여 廣昌·南豐·南城·臨川·進賢·南昌을 흘러가다 南昌市 滕王閣 부근에서 贛江으로 들어가는데 총 연장 401km이다.

136) 안진경의 비석: 원명은 「有唐撫州南城縣麻姑山仙壇記」이다. 안진경 楷書의 걸작이라 일컬어 지는데 현재 원석은 없다. 안진경은 당나라때 撫州였던 남성현에 刺史로 부임하여 大曆 6년 4월 (771, 唐 代宗 10년) 麻姑가 得道했다고 傳해지는 土壇 옆에 그에 관한 전설과 仙壇·祠堂의 유래를 기록하여 돌에 刻했다.

137) 사영운의 시: 「入華子崗是麻源第三谷」은 謝靈運이 지은 시로 현재 『文選』에 실려 있다. ‘華子崗’은 마고산의 第3谷인데 ‘華子’가 이 산 정상에 살아서 불리워진 이름이라고 전한다. 5언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南州實炎德，桂樹凌寒山。銅陵映碧潤，石磴瀉紅泉。既枉隱淪客，亦棲肥遯賢。險徑無測度，天路非術阡。遂登羣峯首，邈若升雲煙。羽人絕髣髴，丹丘徒空筌。圖牒復摩滅，碑版

(入華子崗是麻源第三谷)」이라는 곳이다. 산수의 맑고 아름다움이 신선의 자취와 서로 어울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다.

吾母初無子，凡有可禱，無不至。祥符元年，夢二道士奕棋戶外，往觀之。其一人者，取局之一子授焉，遂娠。及觀生十餘歲，從先父適田間，宿東郊。既寐，有人以書與觀，方制如牘，表用黃，其目曰『王狀元文集』。夢中以爲沂公之文也。就學以來，果不甚魯。或時開卷，愀然憶念，謂曾讀此書。再思之，未嘗見也。墨筆著辭雖未善，顧出自然，不多勞力。私心喜幸，以所從受頗靈異，而不敢言。今茲年三十有八矣，乃用自疑，作「疑仙賦」。儒者不言仙，蓋患乎傷財舍生以學之者也。苟異於彼，宜無害。賦曰，

나의 어머니는 처음 아들이 없어, 무릇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이르지 않은 곳이 없으셨다. 상부원년¹³⁸⁾(1008) 꿈에 두명의 도사가 문밖에서 바둑을 두고 있었는데 가서 보았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둑 돌 하나를 주었는데, 드디어 임신하였다. 열살 무렵 아버지를 따라 밭에 가다가 동쪽 교외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잠결에 어떤 사람이 책을 나에게 주었는데 사각으로 제작되어 목간 같고 노란색을 써 표지를 했는데 그 제목은 『왕장원문집』이었다. 꿈결에 기공(沂公)¹³⁹⁾의 글이라고 생각했었다. 취학한 이래 심히 노둔(魯鈍)하지 않았다. 혹 때로 책을 펴면 놀랍게도 생각이 나서, 전에 이 글을 읽었다고 생각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안 본 것이었다. 글씨나 글솜씨가 비록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돌아보면 자연스러워 노력을 많이 한 편은 아니었다. 속으로 행운을 기뻐하면서 물려 받은 것이 자못 신령스럽고 남다르다 여겼지만 감히 말하지는 않았다. 올해 38세(1046) 인데 스스로 의심이 들어 「의선부(疑仙賦)」를 지었다. 유자(儒者)들이 신선을 말하지 않는 것은 대개 재물을 손상하고 생을 버리면서 배우는 것을 염려해서이다. 진실로 저들과 다

誰聞傳。莫辯百世後，安知千載前。且申獨往意，乘月弄潺湲。恒充餓頃用，豈爲古今然。”

138) 상부원년(祥符元年): 祥符는 北宋 眞宗의 세 번째 연호로 원래는 大中祥符이다. 1008년부터 1016년까지 9년간 사용되었다. 상부원년은 진종 11년이다.

139) 기공(沂公): 王曾(978~1038)을 말한다. 자는 孝先으로 靑州 益都(오늘날 산둥성 익도) 사람이다. 眞宗 咸平 5년(1002) 향시, 회시, 전시에 모두 장원하여 왕장원으로 불렸다. 門下侍郎, 平章事, 集賢殿大學士를 거쳐 沂國公에 봉하여졌다. 시호는 文正이다.

르다면 당연히 해는 없다. 부(賦)는 이러하다.

아, 신선은	噫噫仙乎
있는가 없는가	爲有爲無
하늘에 사는가	爲天之居
땅에 사는가	爲地之廬
산에 있는가	爲山之國
물에 있는가	爲水之都
옛날인가 지금인가	爲古爲今
지혜로운가 어리석은가	爲智爲愚
높은가 낮은가	爲崇爲卑
살찐는가 말랐는가	爲肥爲臞
사람과 같은 종류인가	與人類乎
사람과 다른 종류인가	與人異乎
천하를 이롭게 하려는가	將天下之利乎
한 몸을 이롭게 할 따름인가	將一身而已乎
이미 듣지도 못하였고 보지도 못하였으니	既匪聞而匪見
내가 어찌 그 가는 곳을 알리오	我焉知其所如

아, 나의 태어남은	繫我之生
탁월하고 진기하였어라	卓犖瓌怪
땅기운이 빼어나고	地氣殊絕
신이 주신 복이 모여	神休合會
어리석은 마음의 추향을 이끌어	導愚心之趨驟
옛사람의 경계를 범하게 하였네	犯古人之畿界
오르려 하면 혹 높은 곳 없고	攀或無高
넓히려 하면 혹 넓힐 곳 없어	博或無大
하늘의 음악을 즐겼고	戲鈞天之遺音
태평의 은택을 입었네	冒慶雲之渥彩

생각건대 영물이 도와	意靈物之所右 ¹⁴⁰⁾
당대에 속히 이루기를 바랐으나	幸速成於當代
얻기 어려운데 잃기 쉬운 것은	難得而易失者
때인 것을	時哉
청춘이 달아남이여 흰머리가 재촉한다	青春走兮素髮催
금단을 사려하나 팔지 않으니	銜金丹而不售
길에서 죽은 이를 어루만지며 슬퍼하네	撫道殯而銜哀
그러면	然則
무엇 때문에 나고	何爲而生
무엇 때문에 왔나	何爲而來
놔둬라	已矣夫
숭고는 강신하여 신(申)·보(甫) ¹⁴¹⁾ 를 낳아	嵩高降神生申·甫
중흥을 수습하여 성주 ¹⁴²⁾ 를 도로 세웠고	收拾中興還聖主
장경[金星] ¹⁴³⁾ 이 꿈에 들어가 이백을 낳아	長庚入夢生李白
강남을 떠들썩하여 촉객이 되게 했네	叫噪江南爲逐客
오늘 나를 낸 것이 어찌 뜻이 없을까	今之生我豈無意
둘은 훗날 마침내 함께 등선했으니	二者他年終一得
선인이 만약 금은궁에 있다면	仙人若在金銀宮
돌아갈지니 누가 막으리	歸去來兮誰阻隔

140) 原註: ‘右’는 光緒本에 ‘鍾’으로 되어 있다.

141) 신(申)·보(甫) : 周代의 名臣 ‘申伯’과 ‘甫侯’의 並稱. 어질고 유능한 보필의 신하라는 뜻으로도 차용된다. 『詩』「大雅」「崧高」에 “崧高維嶽，駿極于天. 維嶽降神，生甫及申. 維申及甫，維周之翰. 四國于蕃，四方于宣.”이라고 하였다.

142) 성주: 周宣王을 가리킨 것이다.

143) 장경(長庚) : 金星. 금성이 저녁별로 보일 때 지칭하는 것으로서 ‘太白’이라 하기도 한다. 새벽에 새벽으로 보일 때는 ‘啓明’이라고 한다. 『詩』「小雅」「大東」에 “東有啓明，西有長庚.”이라고 하였는데 주희는 “啓明長庚，皆金星也. 以其先日而出，故謂之啓明; 以其後日而入，故謂之長庚.”이라고 하였다. 이백의 어머니가 장경 꿈을 꾸고 이름을 태백이라 지었다고 전하여진다.

제3장 『이구집』 권2 禮論7篇并序 · 禮論後語

李觀集卷第二

禮論七篇 并序

予幼而好古, 誦味經籍, 窺測教意, 然卒未能語其綱條. 至于今茲年二十四, 思之熟矣. 比因多病, 退伏廬下, 身無他役, 得近紙筆, 故作『禮論』七篇. 推其本以見其末, 正其名以責其實. 崇先聖之遺制, 攻後世之乖缺. 邦國之龜筮, 生民之耳目, 在乎此矣.

예론 7편¹⁴⁴⁾ 병서

나는 어려서부터 옛것을 좋아하였는데 옛글을 외우고 맛을 들이면서, (옛글이) 가르치려는 뜻을 헤아려보려고 하였으나 끝내 그 대강과 조목을 말할 수 없었다. 올해 24살인데 생각이 무르익었다. 요사이 병치레가 잦아 집에 물러나 있다 보니 몸에 다른 일은 없고, 종이와 붓만 가까이할 수 있었기에 『예론』7편을 지었다. 그 근본을 헤아려 그 말(末)을 보이고, 그 명분을 바로잡아 그 실질을 밝혔다. 앞선 성인들이 남겨놓 제도를 숭상하고, 후세의 잘못되고 이지러진 것을 바로잡았다. 나라의 귀서(龜筮: 점)와 백성의 이목이 여기에 있다.

禮論第一

或問: 聖人之言禮, 奚如是之大也?

曰: 夫禮, 人道之准, 世教之主也. 聖人之所以治天下國家, 修身正心, 無他, 一於禮而已矣.

曰: 嘗聞之, 禮樂刑政, 天下之大法也. 仁義禮智信, 天下之至行也. 八者並用, 傳之者久矣, 而吾子一本於禮, 無乃不可乎?

曰: 是皆禮也. 飲食, 衣服, 宮室, 器皿, 夫婦, 父子, 長幼, 君臣, 上下, 師友, 賓

144) 예론 7편: 24세에 지은 것이다.

客, 死喪, 祭祀, 禮之本也. 曰樂, 曰政, 曰刑, 禮之支也. 而刑者, 又政之屬矣. 曰仁, 曰義, 曰智, 曰信, 禮之別名也. 是七者, 蓋皆禮矣.

敢問何謂也?

예론 제1

혹자가 물었다. 성인이 예를 말하는 것이 어찌 이와 같이 큰가?

대답했다. 예는 사람 도리의 기준이요, 세상 교화의 주체이다. 성인이 천하국가를 다스리며, 몸을 닦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니, 예에 하나같이 할 따름이다.

묻는다. 일찍이 듣기에 예·악·형·정은 천하의 큰 법이요, 인·의·예·지·신은 천하의 지극한 행실이라고 한다. 여덟가지가 나란히 쓰여 전하여진 것이 오래인데 그대는 하나같이 예에 근본한다 하니 옳지 아니한 것이 아닌가?

대답했다. 이는 모두 예이다. 음식(飮食)·의복(衣服)·궁실(宮室)·기명(器皿)·부부(夫婦)·부자(父子)·장유(長幼)·군신(君臣)·상하(上下)·사우(師友)·빈객(賓客)·사상(死喪)·제사(祭祀)는 예의 뿌리이다. 악(樂)·정(政)·형(刑)은 예의 가지이다. 형(刑)은 또한 정(政)의 무리이다. 인·의·지·신은 예의 다른 이름이다. 이 일곱가지는 모두 예이다.

감히 묻노니 무슨 말인가?

曰：夫禮之初，順人之性欲而爲之節文¹⁴⁵⁾者也. 人之始生，飢渴存乎內，寒暑交乎外. 飢渴寒暑，生¹⁴⁶⁾民之大患也. 食草木之實，鳥獸之肉，茹其毛而飲其血，不足以養口腹也. 被髮衣皮，不足以稱肌體也. 聖王有作，於是因土地之宜，以殖百穀，因水火之利，以爲炮燔烹炙. 治其犬豕牛羊及醬酒醴醢，以爲飲食. 藝麻爲布，繰絲爲帛，以爲衣服. 夏居櫓巢，則有顛墜之憂；冬入營窟，則有陰寒重腿之疾，於是爲之棟宇，取材於山，取土於地，以爲宮室. 手足不能以獨成事也，飲食不可以措諸地也，於是範金斷木，或爲陶瓦，脂繆丹漆，以爲器皿. 夫婦不正，則男女無別；父子不親，則人無所本；長幼不分，則強弱相犯. 於是爲之婚姻，以正夫婦. 爲之左右奉養，以親父子，爲之伯

145) 原註: '節文'은 光緒本에 '範圍'로 되어 있다.

146) 原註: '生'은 光緒本에 '乃'로 되어 있다.

仲叔季, 以分長幼. 君臣不辨, 則事無統, 上下不列, 則群黨爭, 於是爲之朝覲會同, 以辨君臣. 爲之公卿大夫士庶人, 以列上下. 人之心不學則懵也, 於是爲之庠序講習, 以立師友. 人之道不接則離也, 於是爲之宴享苞苴, 以交賓客. 死者人之終也, 不可以不厚也, 於是爲之衣衾棺槨, 衰麻哭踊, 以奉死喪. 神者人之本也, 不可以不事也, 於是爲之禘嘗郊社, 山川中溜, 以修祭祀. 豐殺有等, 疏數有度. 貴有常奉, 賤有常守. 賢者不敢過, 不肖者不敢不及, 此禮之大本也.

예의 처음은 사람의 성품과 욕망을 따라 규범을 만든 것이었다. 사람이 처음 생겨날 때 배고픔과 목마름이 안에 있고, 추위와 더위가 밖에 교차했다. 배고픔과 목마름, 추위와 더위는 백성의 큰 근심이다. 풀·나무의 열매를 먹고 새와 짐승의 고기를 먹으며, 그 털을 먹고 그 피를 마셔도 입과 배를 기르기에 부족하였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가죽을 입어도 살가죽과 몸에는 맞지 않았다. 성왕(聖王)이 일어나니 이에 토지의 마땅함으로 인하여 온갖 곡식을 심었고, 물과 불의 이로움으로 인하여 통째로 굽고 사르고 삶고 굽게 되었다. 개·돼지·소·양과 장(醬)·술·단술·맑은술을 다스려 마시고 먹게 되었으며, 삼을 심어 베를 짜고, 실을 켜서 비단을 짜 의복을 만들었다. 여름에 나무를 쌓아 두고 그 위에 살면 떨어지는 근심이 있고, 겨울에 굴을 파고 들어가면 서늘하고 찬 기운에 다리가 부어 오르는 병이 있어 이에 집을 지었으며, 산에서 재목을 취하고 땅에서 흙을 취하여 집을 만들었다. 손과 발 만으로는 일을 이룰 수 없고, 음식을 땅에 놔둘 수 없어, 이에 쇠를 녹이고 나무를 깎았고, 혹은 질그릇을 만들어 기름과 아교, 주사와 철로 그릇을 만들었다. 남편과 아내가 바르지 아니하면 남녀가 분별이 없고, 부모와 자식이 친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근본할 곳이 없어지며, 어른과 어린이가 나누어지지 아니하면 강한 것과 약한 것이 서로 범하게 된다. 이에 혼인을 만들어 남편과 아내를 바르게 하고, 좌우로 봉양함을 만들어 부모와 자식을 친하게 하며, 백(伯)·중(仲)·숙(叔)·계(季)를 만들어 어른과 어린이를 분별하게 하였다. 임금과 신하가 변별되지 아니하면 일이 계통이 없고, 위 아래가 반열이 없으면 무리지어 다투게 되니, 이에 조(朝)·근(覲)·회(會)·동(同)을 만들어 임금과 신하를 변별하였다. 공·경·대부·사·서인을 만들어 위 아래를 줄세웠다. 사람의 마음은 배우지 아니하면 어리석어지니, 이에 상(庠)·서(序)·강(講)·습(習)을 만들어 스

승과 벼를 세웠다. 사람의 도리는 접촉하지 아니하면 거리가 생기니, 이에 잔치와 예물을 만들어 손님과 사귀게 하였다. 죽음은 사람의 마지막이니 성대하게 보내지 않을 수 없어, 이에 옷과 이불, 관과 덧널, 상복, 울고 뛰는 것을 만들어 죽음과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 신은 사람의 근본이니 섬기지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체(禘)·상(嘗)·교(郊)·사(社)·산천(山川)·중류(中霽)를 만들어 제사를 모시게 하였다. 풍성함과 감쇄함이 등급이 있고, 드움과 잦음이 도수가 있다. 귀한 이는 항상 받들이 있고, 천한 이는 항상 지킴이 있다. 어진 사람은 감히 지나치지 못하게 하고, 어질지 않은 사람은 감히 미치지 못함이 없게 하였으니, 이것이 ‘예의 큰 근본’이다.

飲食既得，衣服既備，宮室既成，器皿既利，夫婦既正，父子既親，長幼既分，君臣既辨，上下既列，師友既立，賓客既交，死喪既厚，祭祀既修，而天下大和矣。人之和必有發也，於是因其發而節之。和久必怠也，於是率其怠而行之。率之不從也，於是罰其不從以威之。是三者，‘禮之大用’也。同出於禮而輔於禮者也。不別不異，不足以大行於世。是故節其和者，命之曰‘樂’，行其怠者，命之曰‘政’，威其不從者，命之曰‘刑’。此禮之三支也。

음식을 이미 얻고, 의복이 이미 갖추어지며, 집이 이미 이루어지고, 그릇이 이미 이용되며, 부부가 이미 바르고, 부자가 이미 친하며, 장유가 이미 나누어지고, 군신이 이미 분별되며, 상하가 이미 줄을 서고, 사우가 이미 서며, 빈객이 이미 교통하고, 초상이 이미 성대하며, 제사가 이미 닳이면 천하는 크게 화평해진다. 사람의 화평은 반드시 발전이 있으니, 이에 그 발전함으로 인하여 조절한다. 화평이 오래되면 반드시 태만해진다. 이에 그 태만함을 거느려 행동하게 해야 한다. 거느려 따르지 아니하면 이에 그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벌을 주되 위엄으로써 한다. 이 세가지는 ‘예의 큰 쓰임’이다. 예에서 함께 나와 예를 돕는 것이다. 구별하지 않고 차이를 두지 아니하면 세상에 크게 행하게 할 수 없다. 이러므로 그 화평함을 조절한 것을 ‘악(樂)’이라 명명하고, 그 태만함을 행동하게 한 것을 ‘정(政)’이라 명명하며, 그 따르지 않는 자에 위엄을 세우는 것을 ‘형(刑)’이라 명명한다. 이는 ‘예의 세 가지[三支]’이다.

在禮之中，有溫厚而廣愛者，有斷決而從宜者，有疏達而能謀者，有固守而不變者。是四者，禮之大旨也，同出於禮而不可缺者也。於是乎又別而異之。溫厚而廣愛者，命之曰‘仁’，斷決而從宜者，命之曰‘義’，疏達而能謀者，命之曰‘智’，固守而不變者，命之曰‘信’。此禮之四名也。

예 가운데, 온후하여 널리 사랑하는 것이 있고, 결단하여 마땅함을 따르는 것이 있으며, 소통하고 통달하여 꾀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굳게 지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 네가지는 ‘예의 대지(大旨)’이니, 예에서 함께 나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에 또한 구별하여 차이를 두었다. 온후하여 널리 사랑하는 것을 ‘인(仁)’이라 명명하고, 결단하여 마땅함을 따르는 것을 ‘의(義)’라 명명하며, 소통하고 통달하여 꾀할 수 있는 것을 ‘지(智)’라 명명하고, 굳게 지켜 변하지 않는 것을 ‘신(信)’이라 명명하였다. 이는 예의 ‘네가지 이름’이다.

‘三支’者，譬諸手足焉，同生於人而輔於人者也。手足不具，頭腹豈可動哉？手足具而人身舉，‘三支’立而禮本行。‘四名’者，譬諸筋骸之類焉，是亦同生於人而異其稱者也。言乎人，則手足筋骸在其中矣；言乎禮，則樂刑政仁義智信在其中矣。故曰：“夫禮，人道之准，世教之主也。聖人之所以治天下國家，修身正心，無他，一於禮而已矣。”

‘삼지(三支)’는 손과 발로 비유할 수 있으니 사람에게 함께 나서 사람을 돕는 것이다. 손과 발이 갖추어지지 아니하면 머리와 배는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는가? 손과 발이 갖추어져야 사람의 몸이 거동할 수 있고, ‘삼지’가 서야 예의 뿌리가 행할 수 있다. ‘네가지 이름’이라는 것은 근육과 뼈의 종류로 비유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사람에게 함께 난 것인데 그 명칭만 다른 것이다. 사람이라고 말할 때 곧 손과 발, 근육과 뼈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이요, 예라고 말할 때 곧 악·형·정·인·의·지·신은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는 사람 도리의 기준이요, 세상 교화의 주체이다. 성인이 천하국가를 다스리며, 몸을 닦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니, 예에 하나같이 할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禮論第二

或人不諱曰：節其和者謂之樂，行其怠者謂之政，威其不從者謂之刑，信然矣。其所以統於禮者，願聞其指。

曰：昔者聖人之制禮也，因十二月之氣分而爲律呂，因六律六呂作爲十二管，因其清濁與其輕重配而爲五聲，因其五聲變而雜之以爲八音，或爲歌詩，或被於金石絲竹匏土革木之器，爰及干戚羽旄，以導人之和心，以舞人之手足。小大有所，終始有經，倡和有秩，節奏有差。誦伸俯仰，必有齊也，綴兆行列，必有正也。宮軒特縣，各當其位，四六八羽，各昭¹⁴⁷⁾其數。以範五行，以調八風，以均百度，以象德行，以明功業，以觀政治，以和人神。此禮之一支，樂著矣。

예론 제2

혹자가 깨치지 못하고 물었다. “그 화평함을 조절한 것을 ‘악(樂)’이라 이르고, 그 태만함을 행동하게 한 것을 ‘정(政)’이라 이르고, 그 따르지 않는 자에 위엄을 세우는 것을 ‘형(刑)’이라 이른다.”는 것은 진실로 그렇다고 하여도, 그것이 예에 통괄된다는 것은 그 취지를 듣기 원하노라.

옛날 성인이 예를 제정할 때 열두 달의 기분(氣分)으로 인하여 율려(律呂)를 만들었고, 6율과 6려로 인하여 12관(管)을 만들었으며, 그 청탁과 경중으로 인하여 배합하여 5성을 만들었고, 그 5성의 변화로 인하여 섞어서 8음을 만들었다. 혹은 시를 노래하기도 하였고, 혹은 금(金)·석(石)·사(絲)·죽(竹)·포(匏)·토(土)·혁(革)·목(木)의 악기에 입혀져 이에 간척(干戚)과 우모(羽旄)에 미쳐서¹⁴⁸⁾, 사람들의 화평한 마음을 인도하고 사람들의 손과 발을 춤추게 하였다. 작은 것과 큰 것이 곳이 있고, 끝과 시작이 법이 있으며, 주고 받음에 차례가 있고, 곡절과 변화가 차이가 있다. 굴신(誦伸)과 부양(俯仰)에 반드시 가지런함이 있고, 철조(綴兆)와 행렬(行列)¹⁴⁹⁾에 반드시 바름이 있다. 궁현(宮縣)·헌현(軒縣)·특현(特縣)¹⁵⁰⁾이 각

147) 原註: ‘昭’는 正德本, 萬曆本, 光緒本에 ‘照’로 되어 있다.

148) 간척(干戚)과.....미쳐서: 『禮記』『樂記』에 “比音而樂之, 及干戚羽旄, 謂之樂.” 이라고 하였다. 干戚은 武舞를 뜻하고 羽旄는 文舞를 뜻한다.

149) 철조(綴兆)와 행렬(行列): 綴兆는 춤을 추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를 뜻한다. 『禮記』『樂記』에

각 그 자리에 마땅하고, 4우·6우·8우(羽)¹⁵¹⁾가 각각 그 수에 밝아서, 5행(五行)을 본받고, 8풍(八風)¹⁵²⁾을 조율하며, 온갖 법도를 고르게 하고, 덕행을 상징하며, 공업(功業)을 밝히고, 정치를 보며, 사람과 신을 화평하게 한다. 이것이 예의 첫째 가지, ‘악(樂)’이 드러난 것이다.

出號令，立官府，制軍旅，聚食貨，號令所以明約束，官府所以正職掌，軍旅所以待不虞，食貨所以贍不足。是故爲之符璽節旄，以信號令，爲之掾屬胥徒，以備官府，爲之甲冑五兵，以成軍旅，爲之井田賦貢，以興食貨。爲之城郭溝池，所以限內外也，爲之度量權衡，所以平多少也，爲之書契版圖，所以窮變詐，備遺忘也，爲之圉狎桎梏，所以嚴推劾，禁奔逸也。官各有守，事各有程。先後有次，遲速有檢。以辦國之大事，以平天下之民，以躋至治。此禮之二支，政成矣。

호령(號令)을 내고, 관부(官府)를 세우며, 군려(軍旅)를 제정하고, 식화(食貨)를 모으니 호령은 약속을 밝히는 것이요, 관부는 직장(職掌)을 바르게 하는 것이며, 군려는 불우(不虞)에 대비하는 것이요, 식화는 부족함을 풍족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므로 부새(符璽)와 절모(節旄)를 만들어 호령을 믿게 하고, 연속(掾屬)과 서도(胥徒)를 만들어 관부를 갖추게 하며, 갑주(甲冑)와 오병(五兵)을 만들어 군려를 이루게 하고, 정전(井田)과 부공(賦貢)을 만들어 식화를 일으켰다. 성곽과 구지(溝池)를 만든 것은 내외를 한계짓는 것이요, 도량(度量)과 권형(權衡)을 만든 것은 다소(多少)를 다스리는 것이다. 서계(書契)와 판도(版圖)를 만든 것은 변화와 속임수를 궁구하며, 버려지고 망실됨을 대비한 것이요, 어안(圉狎)과 질곡(桎

“屈伸俯仰，綴兆舒疾，樂之文也。”라고 하였고, 또한 “行其綴兆，要其節奏，行列得正焉，進退得齊焉。”이라고 하였다. 이구의 예론 제2의 이부분은 『禮記』「樂記」의 내용을 압축한 것으로 생각된다.

150) 궁현(宮縣)·현현(軒縣)·특현(特縣): 縣은 북이나 종을 매다는 것을 의미한다. 周代 樂官제도를 설명한 것으로 『周禮』「小胥」에 “正樂縣之位，王宮縣，諸侯軒縣，卿大夫判縣，士特縣，辨其聲。”이라고 하였다.

151) 4·6·8우(羽): 고대 제후 樂舞의 줄 수를 말한다. 羽는 원래 춤을 출 때 잡는 것인데, 여기서는 行의 의미로 쓰였다. 『左傳』「隱公5年」9월 條에 “考仲子之宮，初獻六羽。”라고 하였는데 杜註에 “天子用八，諸侯用六，大夫四，士二。夫舞，所以節八音，而行八風。”이라고 하였다.

152) 8풍(八風): 사전적 의미는 ‘八方之風’이다. 위 4·6·8우(羽)처럼 『左傳』「隱公5年」9월 條의 杜註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梏)을 만든 것은 추핵(推劾)을 엄히 하고 분일(奔逸)을 금한 것이다. 관직이 각각 지킴이 있고, 일이 각각 과정이 있으며, 앞뒤가 차례가 있고, 지속(遲速)을 살핌이 있어 나라의 큰 일을 변별하고, 천하의 백성을 다스리며, 지극한 다스림에 오른다. 이것이 예의 둘째 가지, ‘정(政)’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伐不義，侵不庭，刺有罪，或以鈇鉞，或以刀鋸。爲大關，爲宮，爲刑，爲墨，爲劓，爲剕，爲鞭，爲扑，爲流，爲贖。輕有其等，重有其常。用之有地，決之有時。所以懲天下之人，使皆遷善而遠罪。此禮之三支，刑行矣。

불의(不義)를 치고, 불정(不庭)을 침범하며, 죄있는 자를 찌르되 혹 부월(鈇鉞)로써 하며, 혹 도거(刀鋸)로써 한다. 대벽(大關)·궁(宮)·월(刑)·묵(墨)·의(劓)·비(剕)와 편(鞭)·복(扑)·류(流)·속(贖)을 만들어 가벼운 것은 등급이 있고, 무거운 것은 떳떳함이 있으며, 쓰는 데에 곳이 있고, 결단함에 때가 있는 것은 천하의 사람을 징계하여 하여금 다 선의로 옮기고 죄에서 멀어지게 한 것이다. 이것은 예의 셋째 가지, ‘형(刑)’이 행하여 지는 것이다.

夫所謂禮者，爲而節之之謂也。是三者，其自成乎？果有爲之者乎？其自治乎？果有節之者乎？苟不爲也，不節也，則十二管不作，五聲不辨，八音之器不具，干戚羽旄不設。小大無其所，終始無其經，倡和無其秩，節奏無其差。誦伸俯仰不齊也，綴兆行列不正也，縣之位¹⁵³⁾不殊也，羽之數不分也。如此，則何以見樂哉？

저 이른바 예라는 것은 만들고 조절함을 이르는 것이다. 이 세가지는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 지는가? 과연 만드는 자가 있는가? 그것이 스스로 다스려지는가? 과연 조절하는 자가 있는가? 진실로 만들지 아니하고 조절하지 아니하면 12관(管)은 만들어지지 않고, 5성은 변별할 수 없으며, 8음의 악기는 구비되지 않고, 간척과 우모는 설치되지 못한다. 작은 것과 큰 것이 그 곳이 없고, 끝과 시작이 그 법이 없으며, 주고 받음이 그 차례가 없고, 곡절과 변화가 그 차이가 없게 된다. 굴신(誦伸)과 부양(俯仰)이 가지런하지 아니하고, 철조(綴兆)와 행렬(行列)이

153) 原註: ‘位’는 원래 ‘面’으로 되어 있었는데 光緒本에 근거하여 고쳤다.

바르지 아니하며, 현(縣)의 자리가 다르지 아니하고, 우(羽)의 숫자가 나누어지지 않는다. 이와 같다면 어떻게 ‘악(樂)’을 볼 것인가.

不爲也，不節也，則號令不出，官府不立，軍旅不制，食貨不聚，符璽節旄不作，掾屬胥徒不備，甲冑五兵不成，井田賦貢不興，城郭溝池不修，度量權衡不均，書契版圖不著，園狃桎梏不嚴，官無其守，事無其程，先後無其次，遲速無其檢。如此，則何以見政哉？

만들지 아니하고, 조절하지 아니하면 호령이 나오지 아니하고, 관부가 서지 아니하며, 군령이 제정되지 아니하고, 식화가 모이지 아니하며, 부새와 절모가 지어지지 아니하고, 연속과 서도가 갖추어지지 아니하며, 갑주와 오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정전과 부공이 일어나지 아니하며, 성곽과 구지가 닦이지 아니하고, 도량과 권형이 고르지 아니하며, 서계와 판도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어안과 질곡이 엄하지 않는다. 관직은 그 지킴이 없고, 일은 그 과정이 없으며, 앞뒤는 그 차례가 없고, 지속은 그 살핍이 없어진다. 이와 같다면 어떻게 ‘정(政)’을 볼 것인가.

不爲也，不節也，則不義不伐，不庭不侵，有罪不刺，鈇鉞無其備，刀鋸無其平，大關，宮，別，墨，劓，荆，鞭，扑，流，贖，皆無其法。輕無其等，重無其常，用之無其地，決之無其時。如此，則何以見刑哉！

만들지 아니하고, 조절하지 아니하면 불의를 치지 못하고, 불정을 침범하지 못하며, 죄 있는 자를 찌르지 못한다. 부월은 그 갖추는 것이 없고, 도거는 그 다스림이 없다. 대벽·궁·월·묵·의·비와 편·복·류·속은 모두 그 법이 없어진다. 가벼운 것은 그 등급이 없고, 무거운 것은 그 떳떳함이 없으며, 쓰는 데에 곳이 없고, 결단함에 때가 없게 된다. 이과 같다면 어떻게 ‘형(刑)’을 볼 것인가.

由是而言，故知三者果有爲而節之者，然後能成也，能治也。爲乎飲食，衣服，宮室，器皿，夫婦，父子，長幼，君臣，上下，師友，賓客，死喪，祭祀，而節之者，既謂之禮

矣. 爲乎十二管, 五聲, 八音, 干戚, 羽旄, 號令, 官府, 軍旅, 食貨, 符璽節旄, 掾屬胥徒, 甲冑五兵, 井田賦貢, 城郭溝池, 度量權衡, 書契版圖, 囿犴桎梏, 鈇鉞刀鋸, 大關, 宮, 刑, 墨, 劓, 剕, 鞭, 扑, 流, 贖, 而節之者, 反不謂之禮可乎? 若是, 則三者果禮之支也, 而強其名者也.

이로 말미암아 말한다. 그러므로 세가지는 과연 만들고 조절한 것이 있는 뒤에 능히 이루어지고 능히 다스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음식, 의복, 궁실, 기명, 부부, 부자, 장유, 군신, 상하, 사우, 빈객, 사상, 제사를 만들고 조절하는 것은 이미 예라고 말하였다. 12관, 5성, 8음, 간척, 우모, 호령, 관부, 군려, 식화, 부새절모, 연속서도, 갑주오병, 정전부공, 성곽구지, 도량권형, 서계판도, 어안질곡, 부월도거, 대벽, 궁, 월, 목, 의, 비, 편, 복, 류, 속을 만들고 조절하는 것을 도리어 예라고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 옳겠는가? 이와 같다면 세가지는 과연 예의 ‘가지’인데 그 이름을 강제한 것이다.

禮論第三

或曰：樂刑政之說，既承教矣。敢問溫厚而廣愛者仁也，斷決而從宜者義也，疏達而能謀者智也，固守而不變者信也，則然矣。其何繫於禮哉？

曰：百畝之田，不奪其時，而民不飢矣。五畝之宅，樹之以桑，而民不寒矣。達孝悌，則老者有歸，病者有養矣。正喪紀，則死者得其藏。修祭祀，則鬼神得其饗矣。征伐有節，誅殺有度，而民不橫死矣。此溫厚而廣愛者也，仁之道也，

예론 제3

혹자가 말했다. 악·형·정의 설명은 이미 가르침을 받았다. 감히 묻노니, “온후하여 널리 사랑하는 것은 인(仁)이요, 결단하여 마땅함을 따르는 것은 의(義)요, 소통하고 통달하여 능히 꾀하는 것은 (智)요, 굳게 지켜 변하지 않는 것은 신(信)이다.” 라는 것도 그럴다고 하자. 그것이 어떻게 예에 매어있는가?

말한다. 100무(百畝)의 전지(田地)에 그 때를 빼앗지 아니하면 백성은 굶주리지 않는다. 5무(五畝)의 택지(宅地)에 뽕나무로써 심으면 백성은 춥지 아니한다.

효도와 공손함을 잘하면 늙은이가 돌아갈 곳이 있고, 병든이가 봉양받을 곳이 있다. 상기(喪紀)를 바로하면 죽은이가 안식을 얻는다. 제사를 잘 모시면 귀신이 흠향을 얻는다. 정벌이 절도가 있으면 죽이는 것이 법도가 있어 백성은 횡사하지 않는다. 이것은 온후하여 널리 사랑하는 것이니, ‘인’의 도이다.

君爲君焉，主政令，必生殺，不得不從矣。臣爲臣焉，守職事，死干戈，不得少變矣。男女有別，不得相亂矣。長幼有序，不得相陵矣。興廉讓，則財不得苟取，位不得妄受矣。立諫諍，則不得諱其惡矣。設選舉，則賢者不遺矣。正刑法，則有罪者必誅矣。此斷決而從宜者也，義之道也，

임금이 임금다우면 정령(政令)을 주관하고 생살을 기필하니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신하가 신하다우면 맡은 일을 지키고 간과에 죽으니 조금이라도 변하지 않아야 한다. 남녀가 유별하니 서로 문란하지 않아야 한다. 장유가 차서가 있으니 서로 능멸하지 않아야 한다. 청렴과 겸양을 일으키면 재물을 구차히 취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자리를 망녕히 받지 않을 것이다. 간쟁을 세우면 그 악을 숨기지 않을 것이다. 선거를 베풀면 어진이가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형법을 바로하면 죄 있는 자는 반드시 주살될 것이다. 이것은 결단하여 마땅함을 따르는 것이니, ‘의’의 도이다.

爲衣食，起宮室，具器皿，而人不乏用矣。異親疏，次上下，而人不興亂矣。列官府，紀文書，而姦詐可窮矣。築城郭，治軍旅，而寇賊不作矣。親師傅，廣學問，而百慮畢矣。此疏達而能謀者也，智之道也。

의식(衣食)을 만들고, 궁실(宮室)을 일으키며, 기명(器皿)을 구비하면 사람들이 쓰기에 궁핍하지 않는다. 친소를 달리하고, 상하를 차서있게 하면 사람들이 난을 일으키지 않는다. 관부를 줄서게 하고, 문서를 기록하면 간사함을 궁하게 할 수 있다. 성곽을 쌓고 군령을 다스리면 구적(寇賊)이 일어나지 않는다. 사부를 친하고 학문을 넓히면 온갖 염려를 마칠 수 있다. 이것은 소통하고 통달하여 능히 꾀하는 것이니, ‘지’의 도이다.

號令律式，以約民心，蔑有欺矣。祿位班次，以等賢愚，蔑相犯矣。車馬服御，以章貴賤，而人不疑矣。百官不易其守，四民不改其業，而事不僭矣。言必中，行必果，而天下率從矣，此固守而不變者也，信之道也。

호령과 율식(律式)으로 민심을 묶으면 기만이 있지 않을 것이다. 녹위(祿位)와 반차(班次)로 현우(賢愚)를 차등하면 서로 범하지 않을 것이다. 거마(車馬)와 복어(服御)로 귀천을 밝히면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백관(百官)이 그 지키는 것을 바꾸지 아니하고 사민이 그 생업을 고치지 아니하면 일이 자잘하지 않을 것이다. 말이 반드시 맞으며 행실이 반드시 과감하면 천하가 다 따를 것이다. 이것은 굳게 지켜 변하지 않는 것이니, ‘신’의 도이다.

若夫百畝之田，不奪其時，五畝之宅，樹之以桑，達孝悌以養老病，正喪紀以藏其死，修祭祀以饗鬼神，征伐有節，誅殺有度，定君臣，別男女，序長幼，興廉讓，立諫諍，設選舉，正刑法，爲衣食，起宮室，具器皿，異親疏，次上下，列官府，紀文書，築城郭，治軍旅，親師傅，廣學問，爲號令律式，祿位班次，車馬服御，官守民業，言而必中，行而必果者，謂之非禮可乎？既曰仁矣，曰義矣，曰智矣，曰信矣，總而言之，又皆禮矣。若是，則仁，義，智，信，果禮之別名也。

100무의 전지에 그 때를 빼앗지 아니하고, 5무의 택지에 뽕나무로써 심고, 효제를 잘하여 늙은이과 아픈이를 봉양하고, 상기를 바르게 하여 그 죽음을 안식하게 하고, 제사를 받들어 귀신을 흥향하게 하고, 정벌에 절도가 있고, 죽이는데 법도가 있고, 군신을 정하고, 남녀를 분별하고, 장유를 순서하고, 영양을 일으키고, 간쟁을 세우고, 선거를 베풀고, 형법을 바르게 하고, 의식을 만들고, 궁실을 일으키고, 기명을 갖추고, 친소를 달리하고, 상하를 차서하고, 관부를 줄세우고, 문서를 기록하고, 성곽을 쌓고, 군려를 다스리고, 사부를 친하고, 학문을 넓히고, 호령율식·녹위반차·거마복어를 하고, 벼슬을 지키며 백성이 생업에 종사하고, 말이 반드시 맞고, 행실이 반드시 과감한 것을 예가 아니라고 이르는 것이 옳은가? 이미 ‘인·의·지·신’이라고 말하였는데, 총괄하여 말하면 또한 모두 예이

다. 이와 같다면 ‘인·의·지·신’은 과연 예의 다른 이름이다.

禮論第四

或曰：仁義智信，疑若根諸性者也。以吾子之言，必學禮而後能乎？

曰：聖人者，根諸性者也。賢人者，學禮而後能者也。

聖人率其仁義智信之性，會而爲禮，禮成而後仁義智信可見矣。仁義智信者，聖人之性也。禮者，聖人之法制也。性畜於內，法行於外，雖有其性，不以爲法，則曖昧而不章。今夫木大者，可以爲棟梁，小者，可以爲榱桷。不以爲屋室，則朽於深山之中，與樸櫟同，安得爲棟梁榱桷也？溫厚可以爲仁，斷決可以爲義，疏達可以爲智，固守可以爲信。不以爲禮，則滯於心之內，與無識同，安得謂之仁義智信也？屋既成，雖拙者，必指之曰：此棟也，此梁也，此榱也，此桷也。禮既行，雖愚者，必知之曰：此仁也，此義也，此智也，此信也。

예론 제4

혹자가 말했다. ‘인·의·지·신’은 성(性)에 뿌리를 둔 것 같다. 그대의 말에 의하면, 반드시 예를 배운 뒤에 가능하다는 것인가?

말한다. 성인(聖人)이라는 것은 성(性)에 뿌리를 둔 사람이고, 현인(賢人)이라는 것은 예를 배운 뒤에 가능한 사람이다.

성인이 그 ‘인·의·지·신’의 성을 따르고 모아서 예를 만들었으니, 예가 완성된 뒤에 ‘인·의·지·신’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인·의·지·신’이라는 것은 성인의 성(性)이요, 예는 성인의 법제(法制)이다. 성(性)은 안에서 길러지고, 법(法)은 밖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니 비록 그 성(性)이 있더라도, 법제화 하지 아니하면 애매하여 드러나지 않는다. 지금 저 나무가 큰 것은 동량이 될 수 있고, 작은 것은 서까래(榱桷)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집을 짓지 아니하면 깊은 산중에서 썩어, 하찮은 나무 덩불(樸櫟)과 같을 것이니 어떻게 동량과 서까래가 될 수 있겠는가? 온후한 것은 ‘인’이 될 수 있고, 결단은 ‘의’가 될 수 있고, 소통하고 통달한 것은 ‘지’가 될 수 있고, 굳게 지키는 것은 ‘신’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예가 아니면 마음속

예만 막혀 있어 무식(無識)과 같을 것이니 어떻게 ‘인·의·지·신’이라고 이를 수 있겠는가? 집이 이미 완성되면, 비록 못난 사람(拙者)일지라도 반드시 가리키면서 “이것은 동(棟)이고, 이것은 량(梁)이고, 이것은 최(檼)고, 이것은 각(桷)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예가 이미 행하여지면, 비록 어리석은 사람(愚者)일지라도 반드시 알아서 “이것은 인(仁)이고, 이것은 의(義)고, 이것은 지(智)고, 이것은 신(信)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賢人者， 知乎仁義智信之美而學禮以求之者也。 禮得而後仁義智信亦可見矣。 聖與賢， 其終一也。 始之所以異者， 性與學之謂也。 『中庸』曰：“自誠明， 謂之性， 自明誠， 謂之教。 誠則明矣， 明則誠矣。” 自誠明者， 聖人也， 自明誠者， 賢人也。

현인이라는 것은 ‘인·의·지·신’의 아름다움을 알고 예를 배워서 구하는 사람이다. 예를 얻은 뒤에 ‘인·의·지·신’을 또한 볼 수 있다. 성(聖)과 현(賢)은 마침내 하나이다. 처음에 다른 까닭은 성(性)과 학(學)을 이룬 것이다. 『중용』에 “성(誠)으로부터 명(明)한 것을 성(性)이라 이르고, 명(明)으로부터 성(誠)한 것을 교(教)라 이른다. 성(誠)이 곧 명(明)이요, 명(明)이 곧 성(誠)이다.”¹⁵⁴⁾라고 하였다. ‘성(誠)으로부터 명(明)한 것’은 성인이요, ‘명(明)으로부터 성(誠)한 것’은 현인이다.

然則賢人之性果無仁義智信乎？

曰： 賢人之性， 中也。 揚雄所謂善惡混者也。 安有仁義智信哉？ 性之品有三。 上智， 不學而自能者也， 聖人也。 下愚， 雖學而不能者也， 具人之體而已矣。 中人者， 又可以爲三焉。 學而得其本者， 爲賢人， 與上智同。 學而失其本者， 爲迷惑， 守於中人而已矣。 兀然而不學者， 爲固陋， 與下愚同。 是則性之品三， 而人之類五也。

그러면 현인의 성(性)에는 과연 ‘인·의·지·신’이 없는가?

말한다. 현인의 성(性)은 가운데이다. 양웅이 이른바 “선악이 혼재되어 있다”¹⁵⁵⁾는 것이다. 어찌 ‘인·의·지·신’이 있겠는가? 성품은 세가지가 있다. 상지

154) 성(誠)으로부터.....성(誠)이다: 『中庸』 21장.

155) 양웅이.....있다: 양웅(BC53-BC18)은 『法言』 「修身」에서 “人之性也， 善惡混， 修其善， 則爲善人， 修其惡， 則爲惡人.”이라고 하였다.

(上智)는 배우지 아니하여도 스스로 능한 사람이니 성인이다. 하우(下愚)는 비록 배우더라도 능하지 못한 사람이니 사람의 몸만 구비할 따름이다. 중인(中人)은 또한 셋으로 나눌 수 있다. 배워서 그 근본을 터득한 사람은 현인이 되는데 상지와 같다. 배웠으나 그 근본을 잃은 사람은 미혹되는데 중인을 고수할 따름이다. 요지부동으로 배우지 아니하는 사람은 고루하게 되는데 하우와 같다. 이것이 곧 성품은 셋이고, 사람의 종류는 다섯인 것이다.

請問學之得失.

曰：所謂本者，禮也. 知乎仁義智信之美而不知求之於禮，率私意，附邪說，蕩然而不反，此失其本者也. 故世有非禮之仁矣，有非禮之義矣，有非禮之智矣，有非禮之信矣，是皆失其本而然也.

배움의 득실을 묻습니다.

말한다. 이른바 ‘근본’이라는 것은 예이다. ‘인·의·지·신’의 아름다움을 알되, 예에 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사사로운 뜻을 따르고 사특한 말에 붙어 방탕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는 것은 이는 그 근본을 잃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세상에 예가 아닌 인[非禮之仁]이 있고, 예가 아닌 의[非禮之義]가 있고, 예가 아닌 지[非禮之智]가 있고, 예가 아닌 신[非禮之信]이 있는 것이니 이것은 다 그 근본을 잃어 그러한 것이다.

敢問其目.

曰：奪其常產，廢其農時，重其賦稅，以至飢寒憔悴，而時賜米帛以爲哀人之困. 憲章煩密，官吏枉酷，殺戮無數，而時發赦宥以爲愛人之命. 軍旅屢動，流血滿野，民人疲極. 不知喪葬，而收斂骸骨以爲惠及死者. 若是類者，非禮之仁也.

감히 그 조목을 묻습니다.

말한다. 그 상산(常產)을 빼앗고, 그 농사지을 때를 폐하며, 그 세금을 중하게 하여 굶주리고 춥고 초체하게 만들어 놓고서, 때때로 쌀과 비단을 주면서 사람들의 곤궁함을 슬퍼한다고 한다. 법을 번거롭고 치밀하게 만들고 관리는 혹독하

여 죽이는 것을 헤아릴 수 없는데 때때로 사면과 용서를 발하여 사람들의 목숨을 사랑한다고 한다. 군령이 자주 동원되어 유혈이 들에 가득했으나 백성의 피해함이 극에 달하여 장사지내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데 해골을 수렴해주면서 은혜가 죽은 사람에게 까지 미친다고 한다. 이런 종류와 같은 것들은 ‘예가 아닌 인[非禮之仁]’이다.

背其君親，疏其兄弟，而連結私黨以死相赴，以爲共人之患。諂諛機巧，以動上心，而數辭其爵位及其貨財，以爲謙讓。君有過失而不能諫正，而暴揚於外，身有隱惡，不能自改，而專攻人之短以爲強直。賢才果勇，不能用於公家，而私相援舉以爲己力。下民之愚，而不能教訓，陷之於惡，然後峻刑以誅之，以爲奉法。若是類者，非禮之義也。

그 임금과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 형제를 멀리하되, 사당(私黨)과 연결하여 죽음으로써 서로 달려간다고 하면서 남의 근심을 함께한다고 한다. 아첨과 간교한 짓으로 윗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놓고선, 그 작위와 및 그 화재(貨財)를 자주 사양하면서 겸양(謙讓)이라고 한다. 임금이 과실이 있는데 능히 간정(諫正)하지 아니하고선, 밖에 폭로하고 드러내며, 자신의 악은 숨긴 채 능히 스스로 고치지 아니하고선, 오로지 남의 단점을 공격하면서 강직(強直)하다고 한다. 어진 재능과 과감한 용기를 공가(公家)에 능히 쓰지 아니하고 사사로이 서로 도와주고 끌어주면서 자기의 힘이라고 한다. 하민(下民)의 어리석음을 능히 가르치고 훈계하지 아니하여 악에 빠트린 뒤에 준엄한 형벌로써 죽여놓고서 법을 받들었다고 한다. 이런 종류와 같은 것들은 ‘예가 아닌 의[非禮之義]’이다.

爲智不能以制民用，修世教，起政事以治人，齊師旅以御亂，以爲天下國家久長之策，而專爲姦詐巧辯，以徼一時之利。若是類者，非禮之智也。

지혜를 쓰는데 능히 백성의 쓰는 것을 제정하고, 세상 교화를 닦으며, 정사를 일으켜 사람을 다스리고, 군사를 가지런히 하여 혼란을 제어하지도 못한다. 천하 국가의 장구한 계책을 한다면서 오로지 간사하고 재주 있는 말만 하여 한 때의

이익만을 요구한다. 이런 종류와 같은 것들은 ‘예가 아닌 지[非禮之智]’이다.

爲信不能以一號令，重班爵，明車服以辯等，守職業以興事，使天下之人仰之而不疑，而專爲因循顧望，以死兒女之言，若是類者，非禮之信也。

신(信)을 하되 능히 호령을 하나로 하고, 반작(班爵)을 중히 하며, 거복(車服)을 밝혀 등급을 분별하고, 직업을 지켜 일을 일으켜서 천하의 사람으로 하여금 우러러보고 의심하지 않게 하지 못한다. 오로지 인순(因循)을 돌아보기만 하면서 아녀자의 말에 죽는다. 이런 종류와 같은 것들은 ‘예가 아닌 신[非禮之信]’이다.

今有欲爲仁義智信而不知求之於禮，是將¹⁵⁶⁾失其本者矣。

지금 ‘인·의·지·신’을 하고자함이 있어도, 예에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이는 장차 그 근본을 잃은 자가 될 것이다.

禮論第五

或人請問：樂刑政亦有非禮者乎？

曰：善哉！爾之問也。夫夷蠻戎狄荒淫靡曼之音，雜其倡優，輔以子女，諧笑顛亂，以動人耳目，移人心氣。若是類者，非禮之樂也。

或重刑罰，變法律，伺人小過，鉤人微隱，以爲明察。或悲哀怯懦，容貸姦宄，以爲慈愛。或急征橫賦，多方揉索，抔聚畜積，以爲強國。或時吉士功，馭人爲卒，用於無用，以爲豫備。若是類者，非禮之政也。

或爲輶裂鼎鑊，炮烙菹醢，剝面夷族，以威天下。若是類者，非禮之刑也。

예론 제5

혹자가 물었다. ‘악·형·정’도 또한 예가 아닌 것이 있는가?

156) 原註: ‘將’은 光緒本에 없다.

말한다. 좋다, 그대의 물음이어. 오랑캐의 황음(荒淫)하고 아름다우며 부드러운 음에 광대를 섞고, 아들과 딸로 보조하여 우스개와 전도 착란으로 사람들의 귀와 눈을 움직이게 하며, 사람들의 마음과 기운을 옮기게 한다. 이런 종류와 같은 것들은 ‘예가 아닌 음악[非禮之樂]’이다.

혹 형벌을 엄하게 하고, 법률을 변경하며, 남의 사소한 과실을 엿보고, 남의 은미한 것을 찾아내고서 명찰(明察)이라고 여긴다. 혹 슬퍼하고 나약하며, 간귀(姦宥)한 사람을 용서하면서 자애롭다고 여긴다. 혹 급히 정벌하고 잘못 군사를 동원하며 여러방면으로 주무르고 움켜쥐고 쌓았으면서 강국이라고 여긴다. 혹 때로 토공(土功)을 일으켜 사람들을 몰아 졸도(卒徒)로 만들어 쓸모 없는데 써 놓고서 예비(豫備)라고 여긴다. 이런 종류와 같은 것들은 ‘예가 아닌 정[非禮之政]’이다.

혹 거열(車裂)과 정확(鼎鑊), 포락(炮烙)과 저해(菹醢), 박면(剝面)과 이족(夷族)으로 천하에 위엄을 세운다. 이런 종류와 같은 것들은 ‘예가 아닌 刑[非禮之刑]’이다.

曰：子所謂禮者，爲之節之者也。若是三者，豈無爲之者乎？豈盡無其節乎？

曰：夫所謂爲者，先王之爲也。所謂節之者，先王之節也。先王之所以爲而節之者，非妄也，必有仁義智信之善存乎其間矣。不念古昔，不師先王，是皆妄爲也，妄節也，君子不以爲禮也。

그대의 이른바 예라는 것은 만들고 조절하는 것이다. 이 세가지 같은 것은 어찌 만든 자가 없겠는가? 어찌 다 그 조절함이 없겠는가?

저 이른바 ‘만든다’는 것은 선왕이 만든 것이다. 이른바 ‘조절한다’는 것은 선왕이 조절한 것이다. 선왕이 만들고 조절한 것은 망녕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의·지·신’의 선한 것이 그 사이에 존재한다. 옛날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선왕을 사표로 삼지 아니하면 이는 모두 망녕되게 만든 것이요, 망녕되게 조절하는 것이니 군자는 예라고 여기지 아니한다.

或曰：樂刑政皆禮也，先儒之述何以不止於禮而言禮樂刑政？

曰：樂刑政雖統於禮，蓋以聖人既別異其名，世傳已久，止言禮，則人不知樂刑政，故並列之，使人得以兼用。然首之以禮，而樂刑政次之，意者謂樂刑政咸統於禮歟！譬諸孔門四教曰文行忠信，忠信豈非行乎？蓋以止言行，則人不知忠信，故並列之。然先之以行，而次以忠信，謂忠信咸統於行也。

‘악·형·정’이 모두 예인데 선유의 기술은 어찌 예에 그치지 아니하고 ‘예·악·형·정’이라고 말하였는가?

‘악·형·정’이 비록 예에 통합되더라도 대개 성인이 이미 그 명칭을 구별하여 달리하였고 세상에 전한 지 이미 오래라. 단지 예만 말하면 사람들이 ‘악·형·정’을 분별하지 못하므로 병렬하여 사람들이 경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나 머리를 예로써 하고 ‘악·형·정’이 다음이니 생각건대 ‘악·형·정’은 모두 예에 통합되는 것이다. 공문사교(孔門四教)¹⁵⁷⁾, 말하자면 문(文)·행(行)·충(忠)·신(信)에 비유하면 ‘충·신’이 어찌 ‘행’이 아니겠는가? 대개 단지 ‘행’만 말하면 사람들이 ‘충·신’을 알지 못하므로 병렬한 것이다. 그러나 먼저 ‘행’으로써 하고 다음에 ‘충·신’으로써 한 것은 ‘충·신’이 모두 ‘행’에 통합됨을 말한 것이다.

然則所謂仁義禮智信者，亦猶是哉？

曰：非矣。樂刑政者，禮之支也，未盡於禮之道也。其本存焉，亦猶忠信者未盡於行也。舉禮之本，而與樂刑政並列，可矣。今言乎仁義智信，則禮之道靡有遺焉。禮與仁義智信豈並列之物歟？仁義智信者，實用也。禮者，虛稱也，法制之總名也。然而所以與仁義智信並列，而其次在三者，意者謂雖有仁義智信，必須以禮制中而行之乎。

그렇다면 이른바 ‘인·의·예·지·신’이라는 것도 또한 이와 같은가?

아니다. ‘악·형·정’이라는 것은 ‘예의 가지’이므로 예의 도를 다하지 못한다. 그 뿌리가 있으니, 또한 ‘충·신’이라는 것이 ‘행’에 다하지 못한 것과 같다. 예의 근본을 들어 ‘악·형·정’과 병렬하는 것이 옳다. 지금 ‘인·의·지·신’을 말하면 예의 도는 남은 것이 있지 아니하다. 예와 ‘인·의·지·신’이 어찌 병렬할 물건이겠는가? ‘인·의·지·신’이라는 것은 실제 쓰는 것이다. 예라는 것은 공허한 칭호이니, 법제

157) 공문사교(孔門四教): 『論語』「述而」24장. “子以四教, 文行忠信”.

의 총괄적인 이름이다. 그러나 ‘인·의·지·신’과 병렬하되 그 차례가 세 번째 인 것은 생각건대 비록 ‘인·의·지·신’이 있더라도 반드시 모름지기 예로써 가운데에서 제어하고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曰：鄭氏注『中庸』性命之說，謂“木神則仁，金神則義，火神則禮，水神則信，上神則智”，疑若五者並生於聖人之性，然後會而爲法制，法制既成，則禮爲主，而仁，義，智，信統乎其間，若君臣之類焉。

曰：爾謂禮之性果何如也？

曰：豈非能節者乎？有溫厚，斷決，疏達，固守之性，而加之以節，遂成法制焉。

曰：節之者，義之性也。義斷決而從宜，豈非能節者哉！法制之作，其本在太古之時，民無所識，飢寒亂患，罔有救止，天生聖人，而授之以仁義智信之性。仁則憂之，智則謀之，謀之既得，不可以不節也。於是乎義以節之，節之既成，不可以有變也，於是乎信以守之。四者大備，而法制立矣。法制既立，而命其總名曰禮，安有禮之性哉？鄭氏之學，其實不能該禮之本，但隨章句而解之。句東則東，句西則西，百端千緒，莫有統率。故至乎性命之說，而廣求人事以配五行，不究其端¹⁵⁸⁾，不揣其末，是豈知禮也哉？

정현이 『중용』에서 성(性)·명(命)을 설명한 곳에 주를 달 때 “목신(木神)은 인이요, 금신(金神)은 의요, 화신(火神)은 예요, 수신(水神)은 신이요, 토신(土神)은 지이다”¹⁵⁹⁾라고 하였다. 의심컨대 다섯 가지가 성인의 성(性)에 나란히 생겨난 뒤에, 모여서 법제가 된 것 같다. 법제가 이미 완성되면 예가 주가 되고, ‘인·의·지·신’이 그 사이에 통합되어 군신의 종류와 같은 것이다.

그대가 말하는 예의 속성은 과연 무엇인가?

어찌 능히 조절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온후·단결·소달·고수의 성이 있고, 조절로써 더하여 드디어 법제를 이루는 것이다.

조절한다는 것은 ‘의’의 속성이다. ‘의’는 결단하고 마땅함을 따르는 것이니 어찌 능히 조절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법제의 시작은, 태고의 시대에 백성들이 아는 것이 없어 기한(飢寒)과 환란(患亂)에 구원하고 그치는 것이 있지 아니하여

158) 原註：‘端’은 萬曆本과 光緒本에 ‘本’으로 되어 있다.

159) 정현이.....지이다：『禮記』「中庸」鄭玄注.

하늘이 성인을 낳아 ‘인·의·지·신’의 성(性)을 주는데에, 그 근본이 있다. ‘인’은 곧 근심하고, ‘지’는 곧 꾀하는데, 꾀하는 것을 이미 얻으면 조절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에 ‘의’로써 조절하는 것이다. 조절을 이미 이루면 변하는 것이 있으면 안되니 이에 ‘신’으로써 지키는 것이다. 네가지가 크게 갖추어져 법제가 서는 것이다. 법제가 이미 서면 그 총괄적인 이름을 ‘예’라고 하니 어찌 예의 속성이 있겠는가? 정현의 학문은 실제 능히 예의 근본을 갖추지 못하고 다만 장구에 따라 풀이한 것이다. 장구가 동쪽이면 동쪽, 서쪽이면 서쪽이니 백단(百端)·천서(千緒)가 통솔이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성·명을 설명한 곳에 이르러 인사(人事)를 널리 구함으로써 5행으로 배합하여 그 단(端)을 연구하지 아니하고 그 말(末)을 헤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예를 아는 것인가?

或曰：「月令」之推五性亦然矣。何如？

曰：「月令」之書，蓋本於戰國之時呂氏門人所作，至唐增修之，未足以觀聖人之旨也。後之人見仁義禮智信列名而齊齒，謂五者之用，各有分區。故爲仁義智信則不取於禮，而人其私心爲禮，則不能辯仁，義，智，信，但以器服物色，升降辭語爲玩，以爲聖人作禮之方，止於窮奢極富，炫人聽覽而已矣。行其事不知其本，觀其象不知其意，因謂禮有質文，可隨時而用，先王有作，我可以作，先王有變，我可以變，而不知先王之所以作而變者，有所爲也。此之所以作而變者¹⁶⁰⁾，復何以哉？苟禮之所之，止於器服物色，升降辭語，而無仁義智信之大則，是瑣瑣有司之職耳，何聖人拳拳之若是乎？郊特牲曰：“禮之所尊，尊其義也。失其義，陳其數，祝史之事也。故其數可陳也，其義難知也。知其義而謹¹⁶¹⁾守之，天子之所以治天下也。”

「월령」에서 5성(五性)을 추론한 것도 또한 그러하다. 어떠한가?

「월령」이라는 책은 대개 전국시대 여불위 문인이 지은 것에 근본한 것인데 당나라에 이르러 증수(增修)한 것이라 성인의 취지를 볼 수 없다. 후세 사람들이 ‘인·의·예·지·신’의 이름이 줄지어져 가지런히 늘어선 것을 보고 다섯가지의 쓰임이 각각 나누어지는 것이 있다고 이른 것이다. 그러므로 ‘인·의·지·신’을 하면 예에 취하지 아니하고, 그 사사로운 마음에 맡겨 예를 하면 능히 ‘인·의·지·신’을

160) 原註: ‘者’는 萬曆本, 正德本, 光緒本에 ‘也’로 되어 있다.

161) 原註: ‘謹’은 『禮記』에 ‘敬’으로 되어 있다.

분별하지 못한다. 다만 기복(器服)·물색(物色)·승강(升降)·사어(辭語)만을 즐겨하고, 성인이 예를 지은 방법이 사치와 부를 다하여 남의 듣고 보는 것을 현혹시키는데 그칠 따름이라고 여긴다. 그 일을 행하면서 그 근본을 알지 못하고, 그 상(象)을 보고서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 때문에 “예에는 질(質)과 문(文)이 있어 때에 따라 쓸 수 있다. 선왕이 지은 것이 있으니 나도 지을 수 있고, 선왕이 변하게 한 것이 있으니 나도 변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선왕이 짓고 변하게 한 것은 하고자하는 바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다. 여기에서 짓고 변하게 한다는 것은 다시 무엇을 한다는 것인가? 진실로 예의 가는 곳이 기복(器服)·물색(物色)·승강(升降)·사어(辭語)에 그치고, ‘인·의·지·신’의 큰 것이 없다면 이는 자질구레한 유사(有司)의 직책일 뿐이니 어찌 성인의 정성스럽게 근심함이 이와 같겠는가? 「교특생(郊特性)」에 “예에서 높이는 것은 그 의미를 높이는 것이다. 그 의미를 잃고 그 수를 진열하는 것은 축사(祝史)의 일이다. 그러므로 그 수는 진열할 수 있어도, 그 의미는 알기 어렵다. 그 의미를 알고 삼가 지키는 것은 천자가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或曰：吾子所稱先儒並列禮樂刑政及仁義禮智信之意，曷以知先儒之意果若吾子之言乎？

曰：以予度之，先儒之意，當若是也。若是，則善矣。或異於此，則先儒之言者，皆不知禮而妄言也。予何咎哉！

曰：先儒既並列之，而吾子乃論而爲一，敢問何謂也？

曰：並列之使人記其條目，用之而不遺，先儒之事也。論而爲一，使人知其本根，學之而不失，予之志也。

당신이 칭한 바, 선유가 ‘예·악·형·정’과 ‘인·의·예·지·신’을 병렬한 뜻은, 선유의 뜻이 과연 당신의 말과 같은 지 어떻게 아는가?

내가 헤아려보건대 선유의 뜻이 당연히 이와 같은 것이다. 이와 같으면 좋은 것이다. 혹 이와 다르다면 선유의 말이라는 것은 다 예를 알지 못하고 망녕되게 말한 것이다. 내가 무엇을 탓할 것인가.

선유가 이미 병렬하였는데 당신은 이에 논하여 하나라고 하는 것은 감히 묻노

니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가?

병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 조목을 기록하고, 쓰는데 남김이 없게 한 것이니 선유의 일이다. 논하여 하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근본을 알고, 배워서 잃지 않게 한 것이니 나의 뜻이다.

或曰：前所謂節其和者，命之曰樂，行其怠者，命之曰政，威其不從者，命之曰刑，溫厚而廣愛者，命之曰仁，斷決而從宜者，命之曰義，疏達而能謀者，命之曰智，固守而不變者，命之曰信。徇是而言，則七者似皆禮之別名也，何以樂刑政則謂之支，而強其名，仁義智信則止謂之別名也？

曰：樂刑政各有其物，與禮本分局而治。十二管，五聲八音，干戚羽旄，樂之物也，號令官府，軍旅食貨，政之物也，鈇鉞刀鋸，大關，宮，別，墨，劓，剕，鞭，扑，流，贖，刑之物也。是三者之物，與飲食，衣服，宮室，器皿，夫婦，父子，長幼，君臣，上下，師友，賓客，死喪，祭祀之目少異，故得謂之支而強其名也。夫仁義智信豈有其物哉？總乎禮樂刑政而命之，則是仁義智信矣。故止謂之別名也。有仁義智信，然後有法制。法制者，禮樂刑政也。有法制，然後有其物。無其物，則不得以見法制。無法制，則不得以見仁義智信。備其物，正其法，而後仁義智信炳然而章矣。

전에, “그 화평함을 조절한 것을 ‘악(樂)’이라 명명하고, 그 태만함을 행동하게 한 것을 ‘정(政)’이라 명명하고, 그 따르지 않는 자에 위엄을 세우는 것을 ‘형(刑)’이라 명명하고, 온후하여 널리 사랑하는 것을 ‘인(仁)’이라 명명하고, 결단하여 마땅함을 따르는 것을 ‘의(義)’라 명명하고, 소통하고 통달하여 능히 꾀하는 것을 ‘지(智)’라 명명하고, 굳게 지켜 변하지 않는 것을 ‘신(信)’이라 명명한다”라고 이른바에 따라 말하면 일곱가지는 모두 예의 ‘다른 이름’인 것 같은데, 왜 ‘악·형·정’은 ‘가지’라고 일러 그 이름을 강제하고, ‘인·의·지·신’은 단지 ‘다른 이름’이라고 이르는가?

‘악·형·정’은 각각 그 물건이 있어, 예의 근본과 더불어 국(局)을 나누어 다스린 것이다. 12관, 5성8음, 간척, 우모는 ‘악’의 물건이다. 호령, 관부, 군려, 식화는 ‘정’의 물건이다. 부월, 도거, 대벽, 궁, 월, 묵, 의, 비, 편, 복, 류, 속은 ‘형’의 물건이다. 이 세가지의 물건은 음식, 의복, 궁실, 기명, 부부, 부자, 장유, 군

신, 상하, 사우, 빈객, 사상, 제사의 조목과 더불어 조금 다르므로 ‘가지’라 이르고 그 이름을 강제한 것이다. 저 ‘인·의·지·신’이 어찌 그 물건이 있겠는가? ‘예·악·형·정’을 총괄하여 명명하면 이것이 ‘인·의·지·신’이므로 단지 ‘다른 이름’이라고 이른 것이다. ‘인·의·지·신’이 있는 뒤에 법제가 있으니 법제라는 것은 ‘예·악·형·정’이다. 법제가 있는 뒤에 그 물건이 있다. 그 물건이 없으면 법제를 볼 수 없다. 법제가 없으면 ‘인·의·지·신’을 볼 수 없다. 그 물건을 갖추고, 그 법을 바르게 한 뒤에 ‘인·의·지·신’이 흰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或曰：前所謂刑者政之屬，誠然矣。而吾子復並列之，何謂也？

曰：因先儒之言從而論之，不遑變易耳。其旨既明，其辭雖在，奚有害子事哉？

曰：敢問吾子之列禮樂刑政之物，仁義智信之用，盡於吾子之言乎？抑有所遺者乎？

曰：凡予所言者，大也，不及其細也，略也，不及其詳也。從其類而推之，苟合乎禮，本乎聖者，皆是也。奚待予之盡言哉！

전에 이른바 ‘형’이라는 것은 ‘정’의 무리이다. 진실로 그러한데도 당신은 다시 병렬한 것은 무엇을 이른 것인가?

선유의 말로 인하여, 따라 논하다가 미처 겨를을 내어 바꾸지 못했을 뿐이다. 그 뜻이 이미 밝으니 그 말이 비록 있더라도 어찌 일에 해로움이 있는가.

감히 묻노니 당신이 ‘예·악·형·정’의 물건과 ‘인·의·지·신’의 쓰임을 나열한 것은 당신의 말을 다한 것인가. 아니면 남은 것이 있는가?

무릇 내가 말한 것은 큰 것이요 그 자세한 것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며, 대략이요 그 상세함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그 종류를 따라 추론하여, 진실로 예에 합하고 성인에 뿌리를 둔 것은 다 이것이다. 어찌 내가 말을 다함을 기다릴 것인가.

禮論第六

或曰：「樂記」曰“聖人作樂以應天，制禮以配地，禮樂明備，天地官矣”。又以天地卑

高，動靜方物，在天成象，在地成形。以爲禮者，天地之別也。地氣上齊，天氣下降，陰陽相摩，天地相蕩，雷霆風雨，四時日月，百化之興，以爲樂者，天地之和也。由此觀之，則禮樂之比隆競大，蓋已著矣。而吾子統之於禮，益有疑焉？

曰：彼以禮爲辯異，樂爲統同，推其象類，以極於天地之間，非能本禮樂之所出者也。禮也者，豈止於辯異而已哉？樂也者，豈止於統同而已哉？是皆見其一而忘其二者也。

예론 제6

혹자가 말했다. 「악기」에 “성인이 ‘악’을 지어 하늘에 응하고, ‘예’를 지어 땅에 짝하니, ‘예·악’이 밝게 갖추어져 천지가 (生成의 功을) 주관한다”라고 하였다. 또 천지(天地)·비고(卑高)·동정(動靜)·방물(方物)·재천성상(在天成象)·재지성형(在地成形)으로써 ‘예’라는 것은 천지의 구별이라 하였고, 지기상제(地氣上齊)·천기하강(天氣下降)·음양상마(陰陽相摩)·천지상탕(天地相蕩)·뢰정(雷霆)·풍우(風雨)·사시(四時)·일월(日月)·백화(百化)의 일어남으로써 ‘악’이라는 것은 천지의 조화라고 하였다.¹⁶²⁾ 이것으로 말미암아 보면 ‘예·악’이 나란히 높고 똑같이 큰 것은 대개 이미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 당신은 예에 통합시켰으니 더욱 의심이 든다.

저기서는 ‘예’로써 ‘다름을 구별하는 것’이라 하고, ‘악’으로써 ‘같음을 통합하는 것’이라 하며, 그 상류(象類)를 추론하여 천지의 사이에 다하였으니, ‘예·악’이 나오는 것에 근본하지 않았다. ‘예’라는 것이 어찌 ‘다름을 구별하는 것’에 그칠 따름이며, ‘악’이라는 것이 어찌 ‘같음을 통합하는 것’에 그칠 따름이겠는가? 이것은 모두 그 하나만 보고 그 둘은 잊은 것이다.

曰：古之言禮樂者，必窮乎天地陰陽，今吾子之論，何其小也？

曰：天地陰陽者，禮樂之象也，人事者，禮樂之實也。言其象，止於尊大其教，言其

162) 「악기」에.....하였다: 『禮記』「樂記」의 인용문 뒷구절을 축약하였다. 해당원문은 다음과 같다. “聖人作樂以應天，制禮以配地，禮樂明備，天地官矣。天尊地卑，君臣定矣。卑高已陳，貴賤位矣。動靜有常，小大殊矣。方以類聚，物以群分，則性命不同矣。在天成象，在地成形，如此，則禮者天地之別也。地氣上齊，天氣下降，陰陽相摩，天地相蕩，鼓之以雷霆，奮之以風雨，動之以四時，暖之以日月，而百化興焉，如此，則樂者天地之和也。”

實，足以軌範於¹⁶³人。前世之言，教道者衆矣，例多闊大，其意汪洋，其文¹⁶⁴以舊說爲陳熟，以虛辭爲微妙，出入混沌，上下鬼神，使學者觀之耳目驚眩，不知其所取，是亦教人者之罪也。

옛날에 ‘예·악’을 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천지와 음양을 다하였는데, 지금 당신의 논의는 어찌 그렇게 작은가?

천지와 음양이라는 것은 ‘예·악’의 상(象)이요, 인사(人事)라는 것은 ‘예·악’의 실(實)이다. 그 상을 말하는 것은 그 가르침을 높이고 키움에 그치고, 그 실을 말하여야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앞세대의 말은 도를 가르치는 것이 많은데 으레 넓고 큰 것이 많다. 그 뜻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넓으며, 그 글은 구설(舊說)로써 익숙함을 삼고 허황한 말을 미묘하다고 한다. 혼돈에 들락날락하고 귀신을 오르내려 학자들로 하여금 보았을 때 귀와 눈을 놀래키고 현혹하게 하지만, 그 취하는 바를 알 수 없으니 이 또한 사람을 가르치는 자의 죄이다.

或問：孟子曰：“惻隱之心，人皆有之，羞惡之心，人皆有之，辭讓之心，人皆有之，是非之心，人皆有之。惻隱之心，仁之端也，羞惡之心，義之端也，辭讓之心，禮之端也，是非之心，智之端也”。孟子既言人皆有仁義之性，而吾子之論獨謂聖人有之，何如？

曰：孟子以爲人之性皆善，故有是言耳。古之言性者四。孟子謂之皆善，荀卿謂之皆惡，揚雄謂之善惡混，韓退之謂性之品三，上焉者善也，中焉者善惡混也，下焉者惡而已矣。今觀退之之辯，誠爲得也。孟子豈能專之？

혹자가 물었다. 맹자는 “측은지심을 사람이 모두 가지고 있고, 수오지심을 사람이 모두 가지고 있고, 사양지심을 사람이 모두 가지고 있고, 시비지심을 사람이 모두 가지고 있다. 측은지심은 인의 단서요, 수오지심은 의의 단서요, 사양지심은 예의 단서요, 시비지심은 지의 단서이다.”¹⁶⁵라고 말하였다. 맹자가 이미 “사람은 모두 인의의 성품이 있다”라고 말하였는데 당신의 논의는 유독 “성인만

163) 原註: ‘於’는 萬曆本과 光緒本에 ‘後’로 되어 있다.

164) 原註: ‘文’은 萬曆本과 光緒本에 ‘亦’으로 되어 있다.

165) 측은지심을.....단서이다: 『孟子』「公孫丑上」 6장과 「告子上」 6장의 내용이 섞여있다.

있다”라고 이르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맹자는 “사람의 성품이 모두 선하다”라고 생각하였기에 이 말이 있을 뿐이다. 옛날에 성품에 대하여 말한 것이 네가지 이다. 맹자는 “모두 선하다”라고 하였고, 순경은 “모두 악하다”라고 하였고, 양웅은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다”라고 하였고, 한퇴지(한유)는 “성의 품이 셋이다. 상은 선이요, 중은 선악이 섞여 있고, 하는 악일 따름이다”¹⁶⁶⁾라고 하였다. 지금 보면 한유의 말이 진실로 옳다. 맹자가 어찌 능히 오로지 할 것인가.

曰：性之說既盡之矣，然其以禮與仁義智並列，何如？

曰：是皆據世俗而言，不及爲之統率耳。辭讓者，義之一節也。

성품설은 이미 다 들었다. 그러나 그 ‘예’로써 ‘인·의·지’와 병렬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것은 모두 세속에 근거하여 말한 것이니, 통솔함에는 미치지 못하였을 뿐이다. ‘사양(辭讓)’이라는 것은 ‘의(義)’의 한 마디이다.

又淳于髡問曰：“男女授受不親，禮也。嫂溺則援之以手乎”。孟子曰：“嫂溺不援，是豺狼也。男女授受不親，禮也，嫂溺援之以手，權也”。夫權，智之動，義之會也。詳孟氏此言，則義而智者，不在先王之禮歟？

曰：孟子據所聞爲禮，以己意爲權，而不謂先王之禮，固有其權也。自今言之，則必曰男女授受不親，禮也。嫂溺援之以手，亦禮也。「喪服四制」曰：“父在爲母齊衰期者，見無二尊也.....百官備，百物具，不言而事行者，扶而起，言而后事行者，杖而起。身自執事而后行者，面垢而已。秃者不髻，偃者不袒，跛者不踊，老病不止酒肉。凡此八者，以權制者也。”若是，則先王之禮豈無權乎？然其上文則曰：“恩者，仁也，理者，義也，節者，禮也，權者，智也。”於此則是言之者惑矣！其所謂恩者，爲父斬衰三年也，所謂理者，爲君亦斬衰三年也。若茲二服與父在爲母齊衰，扶杖，面垢，不髻，不袒，不踊，不止酒肉之事，非禮何以著之？自今言之，則必總四制以爲禮，而分仁義

166) 성의 품이.....따름이다: 한유의 「原性」편의 내용을 가공한 것인데 원문은 다음과 같다. “性之品有上中下三，上焉者，善焉而已矣，中焉者可導而上下也，下焉者，惡焉而已矣.”

智於其間可也.

또 순우곤이 질문하여 “남녀가 주고 받음을 친히 하지 않는 것이 예인데 형수가 물에 빠지면 구원하되 손으로써 해야 하는가.”라고 말하자, 맹자가 “형수가 빠졌는데 구원하지 않으면 이는 승냥이와 이리인 것이다. 남녀가 주고 받음을 친히 하지 않는 것은 ‘예(禮)’이고, 형수가 물에 빠지면 구원하되 손으로써 하는 것은 ‘권(權)’이다.”¹⁶⁷⁾라고 하였다. 무릇 ‘권’은 지(智)의 움직임이요, 의(義)의 모임이다. 맹씨의 이 말을 상고(詳考)해 보면 ‘의(義)’롭고 ‘지(智)’한 것이 선왕의 예에 있지 않는 것이다.

맹자는 들은 것에 근거하여 ‘예’라고 하고, 자기 뜻으로써 ‘권’이라고 한 것이 지, “선왕의 예에 진실로 그 ‘권’이 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 말한다면, 반드시 “남녀가 주고 받음을 친히 하지 않는 것은 ‘예’요, 형수가 물에 빠지면 구원하되 손으로써 하는 것 또한 ‘예’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상복사제(喪服四制)」에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어머니를 위하여 자취(齊衰)로 일년[期]을 하는 것은 이존(二尊)이 없음을 보인 것이다.....백관(百官)이 준비되고 백물(百物)이 구비되어 말하지 아니하여도 일이 행하여지는 자는 부촉하여 일어나고, 말한 뒤에 일이 행하여지는 자는 지팡이를 잡고 일어선다. 몸소 스스로 일을 집행한 뒤에 행하여지는 자는 면구(面垢)할 따름이다. 대머리는 복머리 하지 아니하고, 굵사등이는 걸어부치지 아니하고, 절뚝발이는 뛰지 아니하고, 노약자와 병자는 술과 고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이 여덟가지¹⁶⁸⁾는 ‘권(權)’으로써 제정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다면 선왕의 예가 어찌 ‘권’이 없는가? 그러나 그 윗문장에 곧 “은(恩)이라는 것은 인(仁)이요, 이(理)라는 것은 의(義)요, 절(節)이라는 것은 예(禮)요, 권(權)이라는 것은 지(智)이다.”라고 말하였으니, 이에 곧 이는 말하려는 것이 미혹된 것이다. 그 이른바 ‘은(恩)’이라는 것은 아버지를 위하여 참취(斬衰) 3년을 하는 것이요, 이른바 ‘이(理)’라는 것은 임금을 위하여 또한 참취

167) 순우곤이.....이다. 『孟子』「離婁上」 17장의 내용인데 다섯 글자가 빠져 있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淳于髡曰男女授受不親 禮與 孟子曰禮也 曰嫂溺則援之以手乎 曰嫂溺不援 是豺狼也 男女授受不親 禮也 嫂溺援之以手者 權也.”

168) 여덟가지: 인용문은 『禮記』「喪服四制」에서 온 것인데, 여덟가지 중에 첫 번째 ‘應杖不杖 不應杖而杖’을 생략하였다.

(斬衰) 3년을 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 복(服)과 및 부재위모자취(父在爲母齊衰), 부장(扶杖), 면구(面垢), 부좌(不髻), 부단(不袒), 불용(不踊), 부지주육(不止酒肉)의 일 같은 것은 ‘예’가 아니면 어떻게 드러나겠는가? 지금부터 말한다면 반드시 사제(四制: 仁義禮智)를 총괄하여 ‘예’라 하고, 그 사이에 ‘인·의·지’를 나누어 놓는 것이 옳다.

或人變色而作曰：善哉！吾子之論樂刑政仁義智信咸統於禮也。其始得之於心歟？抑嘗聞聖人之言及此者歟？

曰：予聞諸聖人矣。「禮運」記孔子之言曰：“禹，湯，文，武，成王，周公，此六君子者，未有不謹於禮者也。以著其義，以考其信，著有過，刑仁，講讓，示民有常。”其下文曰：“禮者，君之大柄也。所以別嫌明微，儆鬼神，考制度，別仁義，所以治政安君¹⁶⁹⁾也”。周公作六官之典，曰治典，曰教典，曰禮典，曰政典，曰刑典，曰事典，而並謂之『周禮』。今之『禮記』其創意命篇有不爲威儀制度者，「中庸」，「緇衣」，「儒行」，「大學」之類是也。及其成書，總而謂之『禮記』，是其本傳之者，亦知禮矣。不獨此二書而已也。韓宣子適魯，見『易象』與魯『春秋』曰：“周禮盡在魯矣”，則當時亦謂『易象』，『春秋』爲禮經也。故知禮者，生民之大也。樂得之而以成，政得之而以行，刑得之而以清，仁得之而不廢，義得之而不誣，智得之而不惑，信得之而不渝。聖人之所以作，賢者之所以述，天子之所以正天下，諸侯之所以治其國，卿大夫士之所以守其位，庶人之所以保其生，無一物而不以禮也。窮天地，亘萬世，不可須臾而去也。

흑자가 낮빛이 변하며 일어서서 말하였다. ‘악·형·정·인·의·지·신’이 다 ‘예’에 통합된다고 한 당신의 논의는 매우 좋다! 그것은 마음에 처음으로 터득한 것인가. 아니면 일찍이 성인의 말이 이에 미친 것을 들은 것인가?

나는 성인에게 들었노라. 「예운(禮運)」에 공자의 말씀을 기록하여 “우·탕·문·무·성왕·주공¹⁷⁰⁾ 이 6군자는 예에 삼가지 아니함이 있지 아니하다. 그 의(義)를 밝히고, 그 신(信)을 이루고, 과실 있는 것을 밝히고, 인(仁)을 법하고, 양(讓)을 강(講)하여 백성에게 상법(常法)이 있음을 보인 것이다.”라고 하였고, 그 아래 문장에 “예라는 것은 임금의 큰 자루이다. 혐의(嫌疑)를 변별하고, 은미함을 밝히

169) 原註: ‘君’은 원래 ‘居’로 되어 있었는데, 『禮記』「禮運」과 四庫本에 근거하여 고쳤다.

170) 인용문은 ‘주공’과 ‘이 6군자는’ 사이에 ‘由此其選也’ 다섯 글자를 생략하였다. 『禮記』「禮運」.

며, 귀신을 접하고, 제도를 참고하여 바로 잡고, 인과 의를 구별하니 정사를 다스리고 임금을 편안케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주공이 6관의 법전을 지어 치전(治典), 교전(教典), 예전(禮典), 정전(政典), 형전(刑典), 사전(事典)이라 하였고, 아울러 『주례(周禮)』라고 부른다. 오늘날의 『예기(禮記)』는 그 창의적으로 편명을 명명하여, 위의(威儀)와 제도(制度)를 의미하지 않는 것은 「중용(中庸)」·「치의(緇衣)」·「유행(儒行)」·「학기(學記)」의 종류가 이것이다. 그 책이 완성됨에 미처 총괄하여 『예기(禮記)』라고 부른다. 이것은 그 본래 전하려는 것이 또한 ‘예’임을 알 수 있다. 이 두 책 뿐만 아니다. 한선자(韓宣子)가 노나라에 갔을 때, 『역상(易象)』과 노나라 『춘추(春秋)』를 보고 “주나라의 예가 모두 노나라에 있다”¹⁷¹⁾라고 말하였으니, 곧 당시에는 또한 『역상』과 『춘추』를 예경(禮經)이라고 부른 것이다. 그러므로 ‘예’는 생민(生民)에게 중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악’이 얻어 이루고, ‘정’이 얻어 행하고, ‘형’이 얻어 맑게 하고, ‘인’이 얻어 폐하지 아니하고, ‘의’가 얻어 속이지 아니하고, ‘지’가 얻어 미혹되지 아니하고, ‘신’이 얻어 변하지 아니한다. 성인이 ‘작(作)’하는 것, 현인이 ‘술(述)’하는 것, 천자가 천하를 바르게 하는 것, 제후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 경·대부·사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서인이 그 생을 보전하는 것에서, 한 물건이라도 ‘예’로써 아니한 것이 없다. 천지를 다하고, 만세에 뻗치도록 잠깐이라도 없앨 수 없는 것이다.

或曰：「曲禮」謂“禮不下庶人”，而吾子及之，何哉？

曰：予所言者，道也。道者，無不備，無不至也。彼所言者，貨財而已耳。謂人貧富不均，不可一以齊之焉。然而「王制」曰：“庶人縣封，葬不爲雨止，不封不樹，喪不貳事。”此亦庶人之喪禮也。“庶人春薦韭，夏薦麥，秋薦黍，冬薦稻，韭以卵¹⁷²⁾，麥以魚，黍以豚，稻以雁。”此亦庶人之祭禮也。既庶人喪祭皆有其禮，而謂“禮不下庶人”者，抑述「曲禮」者之妄也。

「곡례(曲禮)」에 “예는 서인에게 내려가지 아니한다”라고 하였는데 당신은 언급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내가 말한 것은 도(道)이다. 도라는 것은 갖추지 아니함이 없고, 이르지 아니

171) 한선자(韓宣子)가.....있다: 『左傳』昭公2년條

172) 原註: ‘卵’은 원래 ‘卵’로 되어 있었는데, 正徳本과 『禮記』「王制」鄭玄注에 근거하여 고쳤다.

함이 없다. 저기에서 말한 것은 화재(貨財)일 뿐이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빈부(貧富)가 고르지 아니하여 일률적으로 똑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왕제(王制)」에 “서인은 노끈으로 매달아 하관(下官)하며, 장례를 비 때문에 그치지 아니하며, 봉분을 아니하며, 묘표를 세우지 아니하며, 상중에 상(喪)이외 두가지 일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또한 서인의 상례이다. 또 “서인은 봄에 부추를 올리며, 여름에 보리를 올리며, 가을에 기장을 올리며, 겨울에 벼를 올린다. 부추는 난(卵), 보리는 어(魚), 기장은 돈(豚), 벼는 안(鴈)을 대신한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또한 서인의 제례이다. 이미 서인의 상(喪)과 제(祭)가 모두 그 ‘예(禮)’가 있는데, “예는 서인에게 내려가지 아니한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또한 「곡례」를 기술했던 자가 망녕된 것이다.

禮論第七

或人敢問：禮之所興，自於何聖？

曰：揚子雲謂“法始於伏羲而成乎堯”。今觀『易系辭』，其制器取象，信自伏羲，神農，黃帝以來也。禮本之興，其在三皇可知矣。『大章』，章之也，『咸池』，備矣。『咸池』者，黃帝之事。上古結繩而治，後世聖人易之書契，百官以治，萬民以察，此亦黃帝之事也。弦木爲弧，剡木爲矢，弧矢之利，以威天下，此亦黃帝之事也。則樂政刑之興，亦在三皇矣。及夫堯舜繼禪，禹成其功，成湯文武翦其禍難，周公坐而修之，孔子著之於冊，七十子之徒奉之以爲教，而後禮樂刑政之物，仁義智信之用，囊括而無遺矣。

예론 제7

혹자가 감히 물었다. 예가 일어난 것은 어느 성인 때부터인가?

양자운(양웅)은 “법은 복희에서 시작되고, 요에서 완성되었다”¹⁷³⁾라고 말하였다. 지금 『역(易)』 「계사(繫辭)」를 보면 그 제기(制器)와 취상(取象)이 진실로 복희·신농·황제(黃帝)로부터 온 것이다. 예의 근본이 일어난 것은 3황에게 있었던

173) 법은.....완성되었다. 『法言』 「問道」.

것을 알 수 있다. “『대장(大章)』은 밝힌 것이요, 『함지(咸池)』는 갓춘 것이다 .174)”라고 하였는데, 『함지』라는 것은 황제(黃帝)의 일이다. “상고(上古)시대에는 결승(結繩)으로 다스렸더니, 후세에 성인이 서계(書契)로 바꾸어 백관이 다스리며 만민이 살폈다.”175)라는 것은 이 또한 황제(黃帝)의 일이다. “나무에 활시위를 매어 활을 만들고, 나무를 깎아 화살을 만들어서 활과 화살의 이로움으로 천하에 위엄을 떨쳤다.”176)라는 것은 이 또한 황제(黃帝)의 일이다. 그렇다면 ‘악·정·형’이 일어난 것도 또한 3황에게 있었던 것이다. 요·순이 이어 선위하고, 우가 그 공을 이루고, 성탕·문·무가 그 화난(禍難)을 다스리고, 주공이 앞서서 닦고, 공자가 책에 드러내고, 70제자의 무리가 받들어 가르침으로 삼은 뒤에 ‘예·악·형·정’의 일과 ‘인·의·지·신’의 쓰임이 모두 포괄되어 남은 것이 없게 되었다.

或曰：周道其盛矣，然魯諸侯也，而用天子之禮樂，何如？

曰：昔者武王既崩，成王幼，不能蒞阼，周公攝天子之位，作禮樂，朝諸侯，而天下大定。七年致政於成王。成王以周公爲有勳勞於天下，於是封之曲阜。地方七百里，革車千乘，命魯公世世祀周公以天子之禮樂。此蓋成王謂周公有王者之德，攝王者之位，輔周室致太平者，周公之爲也。故於其死，用王禮祀之，以尊之焉。若是，則魯以此祀周公可也，豈及其餘哉？至其子孫，遂徹¹⁷⁷⁾而用之，凡制宮廟，設官職，祭祀喪紀，車馬服器，率仿於周，此則非矣。周，君也，魯，臣也。人臣而用其君之禮樂，何以示民哉！成王必欲其臣行天子禮樂，則當賜之周公，俾其身用之，不須命魯公世世以此祀之也。生則臣也，死則鬼也。鬼與人異，用之非僭，故知魯以此祀周公可也。穆公之母卒，使人問於曾子曰：“如之何”曾子曰：“哭泣之哀，齊斬之情，饋粥之食，自天子達。布幕，衛也，繆幕，魯也。”夫布幕，諸侯禮也，繆幕，天子禮也。疾魯之僭，故舉諸侯以示之焉。隱公考仲子之宮將萬焉，問羽數於衆仲，對曰：“天子八，諸侯六，大夫四，士二。”公從之。書曰“九月考仲子之宮，初獻六羽”。觀『春秋』之旨，蓋謂僭

174) 『대장(大章)』은.....것이다: 『禮記』「樂記」의 일부분을 인용한 것이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大章，章之也，咸池，備矣，韶，繼也，夏，大也，殷周之樂，盡矣。” 6樂이라 부르는 것으로 大章은 堯咸池는 黃帝,韶는 舜,夏는 禹,殷周之樂은 湯의 大濩와 武王의 大武를 말한다.

175) 상고(上古).....살폈다: 『周易』「繫辭下」2장에서 온 것이다. 「繫辭下」2장은 制器尙象의 일을 말한 것인데 인용문은 夫卦를 설명한 것이다.

176) 나무에.....떨쳤다: 睽卦를 설명한 것이다.

177) 原註: ‘徹’은 萬曆本에 ‘倣’으로 되어 있다.

上既久，賢君能詳問而更始之，故書也。彼杞宋者，各自爲一王之後耳。其祖天子禮樂異於周，使行之可也。周尚在而魯倣之，則僭矣。孔子曰：“唯名與器不可以假人。”夫魯之事，假人孰甚焉。

주나라의 도가 성대하였다. 그러나 노나라는 제후인데 천자의 예악을 쓰는 것은 어떠한가?

옛날 무왕이 붕어하고 성왕이 어려 능히 자리에 임할 수 없었다. 주공이 천자의 자리를 대신하여 예악을 짓고, 제후를 조회하여 천하가 크게 안정되었다. 7년 뒤 성왕에게 정사를 돌려보내었다. 성왕은 주공이 천하에 공로가 있다고 여기고 이에 곡부에 봉하였다. 땅이 사방 700리요, 혁거(革車)가 천승이다. 노공(魯公)에게 명하여 대대로 주공을 제사하되 천자의 예악을 쓰게 하였다. 이는 대개 성왕이, 주공이 왕자(王者)의 덕이 있으며 왕자의 지위를 대신하여 주나라 왕실을 보좌하여 태평을 이룬 것은 주공이 한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죽음에 왕의 예를 써서 제사하게 하여 높인 것이다. 이와 같다면 노나라가 이로써 주공을 제사하는 것은 옳은 것이나, 어찌 그 나머지에 미쳤는가. 그 자손에 이르러 드디어 철(徹)하는데 사용하였다.¹⁷⁸⁾ 무릇 궁묘(宮廟)를 짓고, 관직을 설치하며, 제사·상기(喪紀)·거마(車馬)·복기(服器)에 모두 주나라를 모방하였으니 이는 잘못된 것이다. 주나라는 임금이요, 노나라는 신하이다. 인신(人臣)이 그 임금의 예악을 쓰면 무엇을 백성에게 보이겠는가. 성왕이 반드시 그 신하로 하여금 천자의 예악을 행하게 하고자 하였다면 마땅히 주공에게 주어 그 자신이 쓰게 하였을 것이니, 모름지기 노공에게 명하여 대대로 이것으로써 제사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살아 있으면 신하요, 죽으면 귀신이다. 귀신과 사람은 다르니 쓰더라도 참람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공이 이것으로써 주공을 제사한 것은 옳음을 알 수 있다. 목공(穆公)의 어머니가 죽었을 때 사람을 시켜 증자(曾子)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묻자, 증자가 “곡읍(哭泣)의 슬픔과 자참(齊斬)의 정과 전죽(饘粥)을 먹는 것은 천자부터 서인까지 달합니다. 포막(布幕)은 위나라요, 초막(縵幕)은 노나라입니다.”¹⁷⁹⁾라고 말하였다. 무릇 ‘포막’은 제후의 예요,

178) 그 자손에.....사용하였다: 『論語』「八佾」2장. “三家者，以雍徹。子曰，相維辟公，天子穆穆，奚取於三家之堂。”

179) 목공(穆公)의.....노나라입니다: 『禮記』「檀弓上」에서 인용한 것이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穆公

‘초막’은 천자의 예이다. 노나라가 참람한 것을 미워하였으므로 제후의 예를 거론하여 보여준 것이다. 은공(隱公)이 중자(仲子)의 궁을 완성하고 장차 춤을 추려하는데 우(羽:舞列)의 숫자를 중중(衆仲)에게 물었다. 대답하여 “천자는 8, 제후는 6, 대부는 4, 사는 2입니다.”라고 하자 공이 따랐다.¹⁸⁰⁾ “9월 중자의 궁이 완성되자 처음으로 6우를 드렸다[九月, 考仲子之宮, 初獻六羽]”라고 썼으니, 『춘추(春秋)』의 뜻을 보면 대개 참람히 위를 범한 것이 이미 오래인데 어진 임금이 능히 상세하게 묻고, 고쳐서 다시 시작하였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쓴 것이다. 저기(杞)나라와 송(宋)나라는 각자 한 왕조의 후예이다. 그 선조 천자의 예악은 주나라와 다르니 행하게 하는 것도 옳다. 주나라가 버젓이 있는데 노나라가 모방한 것은 참람한 것이다. 공자가 “오직 ‘명(名:爵號)’과 ‘기(器:車服)’는 남에게 빌려주면 안된다.”¹⁸¹⁾라고 말씀하셨으니, 노나라의 일은 ‘남에게 빌려주는 것’이 무엇이 이보다 심하겠는가.

或曰：議者以三代之後，漢唐爲盛，如之何可比隆於古昔也？

曰：漢唐其卑矣！高帝起子隴畝，草創天下，法制未修。文景繼立，齷齪守成，公卿多武人，而黃老刑名之學，熾於其間。賈生之徒，稱先聖，誦仁義，眊焉而不知所從也。武帝聰明特達，攘袂而作，聘賢良，尊文學，改正朔，易制度，有志於先王矣。然而黷兵好勝，竭天下之財，以事四夷，延方士，築宮館，以求神仙，用不經之言，以東封泰山，禪梁父。光武憂勤民事，而不務大體，專求俗吏之課，不師經籍，而聽用圖讖之書，以疑天下耳目。唐高祖凡庸之材，乘運而起。太宗有非常之度，而殘殺長適，以取其位，不能純用先王之制，而因循駁雜，浮屠亂法而不知禁，進士壞文而不知革，易置儲貳，依違不決。明皇親見禍亂，心思矯正，而興起老子，莊周之說，以害教化，寵任武功，注意兵食，鑾與展狩，出入不時，進用女色，間以讒賊，以紊經紀。自此數君，其餘蓋不足數矣。

之母卒，使人問於曾子曰，如之何。對曰，申也聞諸申之父曰，哭泣之哀，齊斬之情，饋粥之食，自天子達。布幕，衛也。繆幕，魯也。”

180) 은공(隱公)이.....따랐다: 『左傳』 隱公 5년 9월條에서 인용한 것이다. 결국 이전까지 참람하게 8 羽를 써왔던 것을 지금 제후의 예에 따라 6羽로 고쳤다는 내용이다.

181) 공자가.....안된다: 『左傳』 成公 2년 4월條.

의논하는 사람들은 3대의 뒤에 한나라와 당나라가 전성하였다고 한다. 어떻게 옛날 보다 융성할 수 있었는가?

한나라와 당나라는 낫다. 고제(高帝)는 논두렁에서 일어나 천하를 초창하여 법제가 닦여지지 않았다. 문제와 경제가 계속 서서 신중하게 수성(守成)하였으나 공경(公卿)은 무인이 많았고, 그 사이에 황노(黃老)와 형명(刑名)의 학이 치열하였다. 가생(賈生:賈誼)의 무리가 선성(先聖)을 칭하고, 인의를 외웠으나 흐릿하여 따라야 할 것을 알지 못하였다. 무제는 총명이 특달(特達)하여 소매를 걷고 일어나 현량(賢良)을 초빙하고 문학을 높이며, 정삭(正朔)을 고치고 제도를 바꾸어 선왕에 뜻이 있었다. 그러나 군사를 함부로 일으켜 이기기를 좋아하고 천하의 재물을 탕진하여 사이(四夷)에 일삼았으며, 방사(方士)를 불러들이고 궁관(宮館)을 건축하여 신선을 구하였으며, 경에 없는 말을 써서 동쪽으로 태산에서 봉(封)하고 양보(梁父)에서 선(禪)하였다.¹⁸²⁾ 광무제는 백성의 일을 근심하고 부지런하였으나 대체(大體)에 힘쓰지 아니하고, 오로지 속리(俗吏)의 일과만 구하였다. 경적(經籍)을 스승으로 삼지 아니하고 도참의 책을 듣고 써서 천하의 귀와 눈을 의혹시켰다. 당나라 고조는 범용(凡庸)한 재목으로 운을 타고 일어났다. 태종은 비상한 도량이 있었으나 형을 잔인하게 죽이고 그 자리를 취하여 능히 선왕의 법제를 순수하게 쓰지 아니하고 인순(因循)하고 뒤섞였으며, 부도(浮屠)가 법을 어지럽히는데도 금할 줄 몰랐으며, 진사(進士)가 글을 파괴하는데도 고칠 줄 몰랐으며, 저이(儲貳:황태자)를 바꾸고 우물쭈물하여 결정을 못하였다. 명황(明皇:玄宗)은 화란(禍亂)을 직접 보고 심사(心思)를 바로 잡았으나 노자와 장주(莊周)의 말을 일으켜 교화를 해쳤으며, 무공(武功)을 총임(寵任)하고 병식(兵食)에 주의(注意)하였으며, 난여(鑾輿:천자의 수레)는 돌아다니느라 수시로 출입하였고 여색을 불러들였으며, 참소하는 적당들이 이간하여 기강이 문란하였다. 이 임금들로부터 그 나머지는 헤아릴 것도 못된다.

曰：封泰山，禪梁父，前世之大典也，而吾子以爲不經之言，何如？

曰：所謂經者，二帝三王之事而孔子述之者也，六籍是矣。而封禪之文，安在哉？獨

182) 태산에서.....선(禪)하였다: 梁父는 태산 근처 산이름. 封은 玉板에 願文을 적고 돌로 만든 상자에 봉하여 天神에게 비는 것이요, 禪은 土壇을 쌓고 地神에게 비는 것이다.

司馬遷封禪書稱：“自古受命帝王，曷嘗不封禪？蓋有無其應而用事者矣，未有睹符瑞見而不臻乎泰山者也。”於是引『尚書』“舜歲二月，東巡狩，至於岱宗柴”似以此爲封禪事。斯禮也，蓋繫巡狩矣。天子巡狩至於方岳，祭天告至，爰及名山大川，皆以其秩望祭之，乃事鬼神之常道，非封禪之謂也。且舜自“正月上日受終於文祖。孔氏謂上日，朔日也。”後至“輯五瑞，既月，乃日覲四岳群牧，班瑞於群后。”孔氏謂盡以正月中，日日見四岳及九州島牧監，還其瑞。“歲二月，東巡狩至於岱宗”孔氏謂既班瑞之明月，乃順春東巡至於岱宗，若是則舜攝帝位纔朞月耳。德未必遽洽於人也，功未必遽濟於世也，符瑞之見未必如此之速也。況又未真即帝位，則將何辭以封禪哉？五載一巡狩，巡狩而封禪，則舜之在位凡幾年，凡幾封禪？其禮儀必有可采，何以不廣記之，乃獨言“柴”而已乎？封禪之禮，固不止於柴也。夫摯見生死之物，蓋其微者猶列之於後，矧封禪之盛，乃得略之乎？其不然必矣。又稱“齊桓公既霸，會諸侯於葵丘，而欲封禪。管仲曰：‘古者封泰山，禪梁父者七十二家，而夷吾所記者十有二焉，曰無懷氏，曰伏羲，曰神農，曰炎帝，曰黃帝，曰顓頊，曰帝嚳，曰堯，曰舜，曰禹，曰湯，曰周成王。’”夷吾此言，亦無所證。孔子修『六經』，“祖述堯舜，憲章文武”，豈前世有封禪之言，管氏聞之，而孔子不得聞乎？雖誠有之，孔子削而不書，是亦不足取也。

태산에서 봉하고 양보에서 선하는 것은 앞 세대의 큰 법인데 당신은 ‘경에 없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른바 ‘경(經)’이라는 것은 2제와 3왕의 일이요, 공자가 기술한 것이니 ‘6적(六籍:6경)’이 이것이다. 그런데 ‘봉선’이라는 글귀는 어디에 있는가? 홀로 사마천의 「봉선서(封禪書)」에 칭하기를 “예로부터 명을 받은 제왕은 어찌 일찍이 봉선하지 아니하였는가? 대개 그 응이 없이 권세를 부린 사람은 있어도, 부서(符瑞)가 나타난 것을 보고 태산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은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다. 이에 『상서(尙書)』의 “순수하는 해 2월, 동으로 순수하여 대중에 이르러 시(柴:제사)하였다.”¹⁸³⁾라는 구절을 인용하였으니, 이것으로써 봉선의 일이라고 여긴 것 같다. 이 예는 대개 순수(巡狩)와 관계된 것이다. 천자가 순수하여 방약(方岳)에 이르렀을 때 하늘에 제사하여 이름을 고하고, 이에 명산(名山)과 대천(大川)에 미쳐, 모두 그 차례로써 바라보고 제사하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상도

183) 순수.....하였다: 『書經』「舜典」.

(常道)이지 봉선을 말한 것이 아니다. 또한 순(舜)이 “정월 상일에 문조에서 제위를 받았다[正月上日受終於文祖]. 공(공영달)씨는 ‘상일’을 ‘초하루’라고 말했다.184)”부터 뒤에 “5서(五瑞:瑞玉)를 모으니, 이미 한 달이 되었거늘 날마다 4악(四岳)과 군목(群牧)을 보시고 서옥(瑞玉)을 군후(群后)에게 나누어 주었다[輯五瑞, 既月, 乃日觀四岳群牧, 班瑞於群后].”까지 공씨는 다 정월 가운데 매일 매일 사악과 구주(九州)의 목감(牧監)을 보고 서옥을 돌려준 것으로 생각하였다. “순수하는 해 2월, 동으로 순수하여 대중에 이르러”라는 구절을 공씨는 이미 서옥을 나누어준 다음 달, 이에 봄을 따라 동으로 순수하여 대중에 이른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와 같다면 순이 제위를 섭정한 것은 겨우 1년일 뿐이다. 덕(德)이 반드시 사람들에게 흠족하지 못하였을 것이요, 공(功)이 반드시 세상을 구제하지 못하였을 것이요, 부서(符瑞)가 나타난 것이 반드시 이와 같이 빠르지 않았을 것이다. 하물며 또한 참으로 제위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면 장차 무슨 말로써 봉선하였다는 것인가? 5년에 한 번 순수하는데 순수하면서 봉선한다면 순의 재위는 무릇 몇 년이며 무릇 몇 번 봉선했다는 것인가? 그 예의 의식이 반드시 채록할 만한 것이 있을 것인데 어찌 널리 기록하지 아니하고 홀로 ‘시(柴)’만 말할 따름이었는가? 봉선의 예는 진실로 ‘시’에 그치지 않는다. 무릇 생사의 폐백을 가지고 알현할 때 대개 그 작은 것도 오히려 뒤에 나열하는데 하물며 봉선의 성대함에 생략할 수 있겠는가? 반드시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또 (『봉선서』)에 칭하기를 “제한공이 이미 패권하고 제후를 규구에 모이게 하고 봉선하려고 하였다. 관중이 말하기를 ‘옛날에 태산에서 봉하고 양보에서 선한 것이 72가(家)입니다. 이오(夷吾:管仲)가 기억하는 것이 12개인데 무회씨(無懷氏)·복희(伏羲)·신농(神農)·염제(炎帝)·황제(黃帝)·전욱(顓頊)·제곡(帝嚳)·요(堯)·순(舜)·우(禹)·탕(湯)·주성왕(周成王)입니다.”라고 하였는데 이오의 이말은 또한 증거가 없다. 공자가 6경을 닦을 때 “요순을 조술(祖述)하고, 문무를 헌장(憲章)하였다.”185)라고 하였으니, 어찌 앞 세대에 봉선의 말이 있었는데 관씨는 듣고, 공자는 듣지 못하였겠는가? 비록 진실로 있었다라도 공자가 산삭하고 쓰지 않았다면 이는 또한 취하기에 부족한 것이다.

184) 공씨는.....말했다: 李觀은 孔穎達의 『書經正義』를 보고서 설명하는 듯 한데, ‘공씨 운운’ 하는 주석을 『書經』 원문에 이어 그대로 인용하였다.

185) 요순을.....헌장(憲章)하였다: 『中庸』 30장.

子必謂稱古帝王封禪者皆妄也. 未知此說根於何時?

至秦始皇遂舉而行之. 逮孝武即位, 又議封禪事. 齊人公孫卿稱其師申公書曰: “封禪七十二王, 唯黃帝得上封.” 又稱申公之言曰: “漢主亦得上封. 上封則能仙登天.” 孝武後乃登封, 無風雨災. 於是自喜, 幸庶幾遇神仙矣! 吁, 可怪哉! 文中子曰: “封禪之費非古也, 以夸天下, 其秦漢之侈心乎.” 是誠知言矣.

그대는 반드시 “옛날 제왕이 봉선했다고 칭하는 것은 다 망녕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 말은 어느 때에 근거한 것인가?

진시황에 이르러 비로소 거행한 것이다. 효무제가 즉위함에 미쳐 또 봉선의 일을 의논하였다. 제나라 사람 공손경(公孫卿)이 그 스승 신공(申公)의 글이라면서 칭하기를 “봉선한 72왕 가운데 오직 황제(黃帝)가 태산에 올라 봉하였습시다.¹⁸⁶⁾”라고 하였다. 또 신공의 말이라 칭하면서 “한나라 황제도 또한 올라가 봉하여야 한다. 올라가 봉하면 능히 신선이 되어 하늘에 오른다.”라고 하였다. 효무제는 뒤에 올라가 봉하였는데 바람과 비의 재앙이 없었다. 이에 스스로 기뻐하면서 거의 신선을 만난 듯 행복하였다고 한다. 아, 괴이하다. 문중자가 “봉선의 낭비는 옛 일이 아니다. 천하에 과시하고자한 것이니 진나라와 한나라의 사치스러운 마음이다.”¹⁸⁷⁾라고 하였다. 이는 진실로 지언(知言)이다.

或曰: 子謂漢唐數君訛雜之如此, 然其所以闡基緒, 致昇平者, 何也?

曰: 其始皆能求輔佐, 納諫諍, 夙興夜寐, 以安天下濟生人爲意, 此其所以興也. 及其後世, 則放逐忠良, 昵¹⁸⁸⁾近邪辟, 或婦人用事, 或外戚專政, 或宦豎竊命. 官爵授於匪人, 貨財散於無用, 兵革疲於不急, 荒淫怠慢, 厭棄民物, 皇天震怒, 奸雄並起, 而海內土崩矣. 嗚呼, 漢唐之盛, 猶不足觀, 漢唐之衰, 萬世之鑒也.

그대는 한나라와 당나라의 여러 임금이 그르치고 섞은 것이 이와 같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기초와 단서를 천명하여 승평을 이룬 것은 무엇 때문인가?

186) 봉선한.....봉하였습시다: 『史記』「孝武本紀」에서 인용. 다음 구절도 같다.

187) 봉선의.....마음이다: 『中說』「王道」.

188) 原註: ‘昵’은 萬曆本과 光緒本에 ‘數’으로 되어 있다.

그 시작은 다 능히 보좌를 구하고 간쟁을 받아들여 아침 일찍부터 밤 늦도록 천하를 편안케 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것으로써 뜻을 삼았으니 이것이 흥기한 까닭이다. 후세에 미쳐 충성스럽고 어진 사람을 내쫓고 간사하고 편벽한 무리를 가까이 하며, 혹 부인이 권세를 부리고, 혹 외척이 정사를 오로지 하며, 혹 환관이 명을 훔쳤다. 관작이 그른 사람에게 주어지고, 화재(貨財)가 쓸모 없는데 흠어지고, 군대가 급하지 아니한데에서 피곤해졌다. 황음(荒淫)하고 태만(怠慢)하며, 백성과 물자를 버렸다. 황천이 진노하여 간웅이 다투어 일어나니 중국이 무너졌다. 오호라, 한나라와 당나라의 성대함은 족히 보잘 것이 없으나 한나라와 당나라의 쇠퇴함은 만세의 귀감이다.

禮論後語

吾爲禮論七篇，既十五年，學者有持章望之論一篇來，以吾爲好怪，率天下之人爲禮不求諸內而競諸外，人之內不充而惟外之飾焉，終亦必亂而已矣。亦猶老子之言：“禮者，忠信之薄。”蓋不知禮之本，徒以其節制文章，獻酬揖讓，登降俯仰之繁而罪之也。

예론후어

내가 「예론」7편을 지은 것이 이미 15년전이다.¹⁸⁹⁾ 학자(學者)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장망지(章望之)¹⁹⁰⁾의 논의 한 편을 가지고 와서는 나더러 ‘괴이한 것을 좋아한다(好怪)’ 하면서 천하의 사람들을 거느려 예를 안에서 구하지 아니하고 밖에서 다투게 하였고, 사람들이 내면은 채우지 아니하고 오직 밖을 꾸미게 하여, 마침내 또한 반드시 혼란하게할 따름이라고 하였다. (심지어) “예라는 것은 충신(忠信)이 얽어진 것”¹⁹¹⁾이라는 노자의 말과 같다고도 하였다. 아마도 예의

189) 「禮論」이 24세 때 작품이므로 15년뒤는 39세 때인 1047년이다.

190) 장망지의 정확한 생몰연대는 알 수 없지만, 이구와 동시대에 활동한 인물이다. 구양수와 그 무렵 사람들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볼 때 이구보다 연하로 추정된다. 의론(議論)을 좋아하고, 맹자의 성선설을 종지(宗旨)로 삼아 순자·양옹·한유·이교(李翱)를 배척하여 「구성(救性)」7편을 지었고, 이구의 「예론」을 바로잡기 위하여 자신의 「예론」 한 편을 지었다고 한다. 『宋史』권443, 列傳 202, 文苑5. 章望之條.

191) 예라는.....것: 『老子』 38장.

근본은 알지 못한 채 한갓 그 절제(節制)와 문장(文章), 헌수(獻酬)와 읍양(揖讓), 그리고 오르고 내리고 우러르고 속이는 번문(繁文)만을 가지고 (나를) 죄주려는 듯하였다.

嗚呼! 章子有耳目邪? 抑蒙且瞶邪? 有則奚不視吾文, 聽吾言? 吾之論則曰: “後之人見仁義禮智信列名而齊齒, 謂五者之用, 各有分區. 故爲仁義智信則不取於禮, 而任其私心爲禮, 則不能辯仁義智信. 但以器服物色升降辭語爲玩, 以爲聖人作禮之方, 止於窮奢極富, 炫人聽覽而已矣.” 繇是推本之曰: “仁義智信者, 實用也. 禮者, 虛稱也, 法制之總名也.”, “聖人率其仁義智信之性, 會而爲禮, 禮成而後, 仁義智信可見矣.”, “賢人者, 知乎仁義智信之美, 而學禮以求之者也. 禮得而後仁義智信亦可見矣.”. 吾之論如此, 豈嘗使人爲禮不求諸內而競諸外邪? 豈嘗以節制文章之類爲禮之實邪? 章子有耳目不至乎此也.

오호라. 장선생은 귀와 눈이 있는가? 아니면 눈이 어둡고 귀가 막혔는가? (귀와 눈이) 있다면 어찌 내 글을 보지 못하고, 내 말을 듣지 못하는가? 나의 논의는 곧 “후세 사람들이 ‘인·의·예·지·신’의 이름이 줄지어져 가지런히 늘어선 것을 보고 다섯가지의 쓰임이 각각 나누어지는 것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인·의·지·신’을 하면 예에 취하지 아니하고, 그 사사로운 마음에 맡겨 예를 하면 능히 ‘인·의·지·신’을 분별하지 못한다. 다만 기복(器服)·물색(物色)·승강(升降)·사어(辭語)만을 즐겨하고, 성인이 예를 지은 방법이 사치와 부를 다하여 남의 듣고 보는 것을 현혹시키는데 그칠 따름이라고 여긴다.”¹⁹²⁾라는 것이었고, 이로 말미암아 근본을 추론하여 “‘인·의·지·신’이라는 것은 실제 쓰는 것이다. 예라는 것은 공허한 칭호이니, 법제의 총괄적인 이름이다.”¹⁹³⁾, “성인이 그 ‘인·의·지·신’의 성을 따르고 모아서 예를 만들었으니, 예가 완성된 뒤에 ‘인·의·지·신’을 볼 수 있는 것이다.”¹⁹⁴⁾, “현인이라는 것은 ‘인·의·지·신’의 아름다움을 알고 예를 배워서 구하는 사람이다. 예를 얻은 뒤에 ‘인·의·지·신’을 또한 볼 수 있다.”¹⁹⁵⁾라고 하였

192) 후세.....여긴다: 「禮論」第5.

193) 인·의·지·신.....이름이다: 「禮論」第5.

194) 성인이.....것이다: 「禮論」第4.

195) 현인.....있다: 「禮論」第4.

다. 나의 논의가 이와 같은데, 어찌 일찍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를 하되 안에 구하지 아니하고 밖에 경쟁하게 하였다.”라고 하는가? 어찌 일찍이 “절제(節制)와 문장(文章)의 종류가 예의 실제라고 하였다.”라고 하는가? 장선생은 귀와 눈이 있어도 이에 이르지 않은 것이다.

夫章子以仁義禮智信爲內，猶飢而求食，渴而求飲，飲食非自外來也，發於吾心而已矣。禮樂刑政爲外，猶冠弁之在首，衣裳之在身，必使正之耳，衣冠非自內出也。

장선생은 ‘인·의·예·지·신’으로써 ‘안[內]’이라 하면서, 배고프면 먹을 것을 구하고 목마르면 마실 것을 구한다. 음식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에서 발생할 따름인 것과 같다. ‘예·악·형·정’은 ‘밖[外]’이라 하면서, 갓과 고깔이 머리에 있고 의상이 몸에 있으니 반드시 바르게 할 뿐이다. 의관은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고 하였다

嗚呼！章子之惑甚矣！夫有諸內者必出於外，有諸外者必由於內。孰謂禮樂刑政之大，不發於心而僞飾云乎！且謂衣冠非自內出，則寒而被之葛，熱而被之裘可乎？夏則求輕，冬則求暖，固出於吾心，與飢渴之求飲食一也。而章子異之，不已感乎？故天下之善，無非內者也。聖人會其仁義智信而爲法制，固由於內也。賢人學法制以求仁義，亦內也。謂藍之青，朱之赤，固其質也。布帛之青赤則染矣，然染之而受者，亦布帛之質也，以染鐵石則不入矣。是故賢人學法制以求仁義，亦內也。下愚雖學，弗之得矣。『中庸』曰：“或生而知之，或學而知之，或困而知之。及其知之，一也。或安而行之，或利而行之，或勉強而行之。及其成功一也。”然則吾之論何嘗有外邪？何憂乎終之必亂邪？吾之論則曰：“聞諸聖人”於是引「禮運」，周公「六典」之類以明之。今章子乃曰“學乎聖人者何必易其言”，是未嘗讀吾之論也。趙簡子問子太叔揖讓周旋之禮焉。對曰“是儀也，非禮也。”“夫禮，天之經也，地之義也，民之行也。天地之經，而民實則之。”“是故爲九歌，八風，七音，六律，以奉五聲。”“爲政事，庸力行務，以從四時，爲刑罰威獄，使民畏忌，以類其震曜殺戮。”以是言之，樂，政，刑，非禮者乎？顏淵問仁，孔子曰：克己復禮爲仁。請問其目，曰：非禮勿視，非禮勿聽，非禮勿言，非禮勿動。以是言之，仁非禮者乎？章子尚未讀左氏傳，論語，宜其病吾言也。 .

오호라. 장선생의 의혹이 심하다. 안에 있는 것은 반드시 밖에서 나오고, 밖에 있는 것은 반드시 안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누가 ‘예·악·형·정’의 큰 것이 마음에서 발생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꾸몄다고 이르는가? 또한 의관이 안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추울 때 솜베 옷을 입고 열기가 있을 때 가죽 옷을 입는 것이 옳은가? 여름이면 가벼운 것을 구하고, 겨울이면 따뜻한 것을 구하는 것은 진실로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굶주리고 목마를 때 먹고 마실 것을 구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런데 장선생은 다르다 하니 이미 의혹된 것 아닌가? 그러므로 천하의 선(善)은 안이 아닌 것이 없다. 성인이 그 ‘인·의·지·신’을 모아 법제를 만든 것은 진실로 안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현인이 법제를 배워 ‘인·의’를 구하는 것, 또한 ‘안[內]’이다. 말하자면 남(藍)이 청(靑)에, 주(朱)가 적(赤)에 분디 그 바탕인 것이다. 포백(布帛)이 청색과 적색인 것은 염색한 것이다. 그러나 염색을 받아들이는 것은 또한 포백의 바탕이다. 철과 돌을 염색하려한다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이러므로 현인이 법제를 배워 ‘인·의’를 구하는 것, 또한 ‘안[內]’이다. 하우(下愚)는 비록 배우더라도 얻지 못할 것이다. 『중용』에 “혹 날으면서부터 알고, 혹 배우고 나서 알고, 혹 고생하여 경험한 뒤에 알지만 그 앞에 미치는 것은 동일하다. 혹 편안히 행하고, 혹 이롭게 여겨 행하고, 혹 힘을 써 행하지만 그 성공에 미치는 것은 동일하다.”¹⁹⁶⁾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나의 논의가 어찌 일찍이 밖이 있는가? 어찌 마침내 반드시 어지럽힐 것이라고 근심하는가? 나의 논의는 곧 “성인에게 들었다.”라고 하였고, 이에 「예운」과 주공의 6전(六典)의 종류를 인용하여 증명하였다.¹⁹⁷⁾ 지금 장선생은 “성인을 배운다는 것은 어찌 반드시 그 말을 바꾸는가?”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일찍이 나의 논의를 읽지 않은 것이다. 조간자(趙簡子)가 자태숙(子太叔)에게 읍양(揖讓)과 주선(周旋)의 예를 물었다. 대답하기를 “이 의(儀)는 예가 아니다.”¹⁹⁸⁾ “무릇 예는 하늘의 경(經)이요, 땅의 의(義)이며, 백성의 행(行)이니, 천지의 법을 백성이 실제 본받는 것이다.” 이러므로 “9가(九歌)·8풍(八風)·7음(七音)·6률(六律)을 만들어 5성(五聲)을 받든다.”, “정사를 만들어 ‘용(庸)·력(力)·행(行)·무(務)’¹⁹⁹⁾로써 사시를 따

196) 혹.....동일하다: 『中庸』 20장.

197) 성인에게.....증명하였다: 『禮論』 第6.

198) 이.....아니다: 『左傳』 昭公 25년조. 이하 『左傳』 인용문도 같다.

르고, 형벌과 위옥(威獄)을 만들어 백성들을 두렵고 꺼리게 하고, 그 진요(震曜: 天威)와 살육(殺戮)을 분류하였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말하면 ‘악·정·형’이 ‘예’라는 것이 아닌가? 안연이 ‘인(仁)’을 묻자, 공자가 “극기복례가 인이다.”²⁰⁰⁾라고 하였고, “그 조목을 묻습니다.”라고 하자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행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이로써 말하면 ‘인’이 ‘예’라는 것이 아닌가? 장선생은 아직 『좌전』과 『논어』를 읽지 않은 듯하니 내 말에 병통이 있다고 여기는 것도 마땅하다.

聖人之於禮，其言蓋參差：言其大則無事不包，言其小則庶事之一耳。故周官三百六十職，題曰『周禮』以該之，言其大也。其次則曰「禮典」，與治教政刑事配焉。其小則曰「五禮」，與射御書數並焉。章子得其小而不得其大，宜其病吾言也。故其說曰：“走百步外以救人隕溺，難也，趨百步外以揖人，易也。趨則爲之，走則不爲之矣。己後鄉人一日之生，拜之能也，坐其下，行其後能也，聞其急難，則不爲之死矣！是仁義難於禮也。”又曰：“順父，禮也，違父，非禮也。有人蹈於水火之中，己將救之，而父在側曰勿救，匍匐救之無避也，違父可也。夫婦異列，禮也。如妻踣於舅姑之前，傷而不興，盡力以扶之，可也。”又曰：“心則愛兄，而拜先仲叔，此禮之易者，固勝仁也。千金之寶，分則多伯兄，是禮不勝仁也。吾兄與嫂鬪，則不救，有嫂之嫌也²⁰¹⁾。此禮之易者，固勝義也。鄉人之長者鬪於兄，救兄不勝，則佐之鬪，是禮不勝義也。”嗚呼，章子以揖拜爲禮，宜乎其不得以兼仁義也！

성인이 예에 관하여, 그 말이 대개 일정하지 않다. 그 큼을 말하면 포함하지 않은 일이 없고, 그 작음을 말하면 여러 일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러므로 주관(周官) 360직(職)을 제목하여 『주례(周禮)』라고 하고 갖추어 놓았으니 그 큼을 말한 것이다. 그 다음은 곧 「예전(禮典)」이라고 하여 치(治)·교(教)·정(政)·형(刑)의 일과 안배하였다. 그 작은 것은 곧 「5례(五禮)」라고 하고 사(射)·어(御)·서(書)·수(數)와 나란히 하였다. 장선생은 그 작은 것을 얻고, 그 큰 것을 얻지 못

199) 용(庸)·력(力)·행(行)·무(務): 『左傳』杜註에 “民功曰庸，治功曰力，行其德教，務其時要，禮之本也.”라고 하였다.

200) 안연이.....인이다: 『論語』「顏淵」1장. 이하 인용문도 같음.

201) 原註: ‘有嫂之嫌也’는 萬曆本에 ‘存嫌之嫂也’로 되어 있고, 光緒本에 ‘存嫌於嫂也’로 되어 있다.

하였으니 내 말에 병통이 있다고 여기는 것도 마땅하다. 그러므로 그 말에 “백
 걸음 밖에서 달려가[走] 사람이 떨어지고 빠지는 것을 구원하기는 어렵다. 백
 걸음 밖에서 뛰어가[趨] 사람에게 읍(揖)하기는 쉽다. (그러나) 뛰는 것은 하고,
 달리는 것은 하지 않는다. 자기가 향인(鄉人)보다 하루를 뒤에 태어나도 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아래에 앉고 그 뒤에 가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 급하
 고 어려운 일을 들으면 위하여 죽지 않는다. 이것이 ‘인·의’가 ‘예’보다 어려운
 것이다.”라고 하였고, 또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은 예이다. 아버지를 어기는
 것은 예가 아니다. 사람이 물불 가운데 딛고 있어 자기가 장차 구원하려는데, 아
 버지가 곁에 있어 ‘구원하지 마라. 포복하여 구원하더라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아버지를 어기는 것도 옳다. 부부가 줄이 다른 것은 예이다. 만약 아내
 가 시부모 앞에서 넘어져, 다쳐서 일어나지 못하면 힘을 다하여 부축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고, 또 “마음은 형을 사랑하되 절은 중부와 숙부에게 먼저 한다.
 이는 ‘예’의 쉬운 것이니 진실로 ‘인’을 이긴다. 천금의 보물을 나누면 말형에게
 많이 준다. 이는 ‘예’가 ‘인’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내 형이 형수와 싸우면 구
 원하지 않는 것은 형수의 혐의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예’의 쉬운 것이니 진실
 로 ‘의’를 이긴다. 향인의 어른이 형과 싸울 때 형을 구원하여 이기지 못하면 도
 와서 싸운다. 이는 ‘예’가 ‘의’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오호라, 장
 선생은 읍배(揖拜)로써 ‘예’를 삼았으니, 그 ‘인·의’를 겸하지 못하는 것은 마땅하
 다.

且章子焉知仁義哉？萬物之生無不遂，吾所謂仁也，萬事之理無不當，吾所謂義也。
 而章子方區區以救隕溺，死急難爲事，不亦小乎！以一人之力而見隕溺必救，見急難
 必死，吾懼章子之仁義所及者寡，而天年不獲終也。其所謂仁，吾曰浮屠而已耳，其所
 謂義，吾曰游俠而已耳。

또한 장선생은 어찌 ‘인·의’를 알겠는가? 만물의 삶이 이루지 아니함이 없는
 것은 나의 이른바 ‘인’이요, 만사의 이치가 마땅하지 아니함이 없는 것은 나의
 이른바 ‘의’이다. 그런데 장선생은 바야흐로 구구하게 ‘떨어지고 빠지는 것을 구
 원하는 것’과 ‘급하고 어려운 일에 죽는 것’으로써 일삼으니 또한 작지 아니한

가? 한 사람의 힘으로써 떨어지고 빠지는 것을 보고 반드시 구원하며, 급하고 어려운 일을 보고 반드시 죽는다면, 나는 장선생의 ‘인·의’가 미치는 것이 적고 천년이 가도 끝나지 못할까 두렵다. 그의 이른바 ‘인’은, 나는 “부도(浮屠)일 따름이다”라고 말하겠고, 그의 이른바 ‘의’는, 나는 “유협(游俠)일 따름이다”라고 말하겠다.

孔子曰：“父在，觀其志，父沒，觀其行。三年無改於父之道，可謂孝矣。”父沒三年，尚不忍改其道，父在側，曰勿救人於水火，而違之可乎？己以救爲仁，而父曰勿救，則父不仁矣！己欲仁而彰父之不仁，未見可以爲仁也。父不仁則違之，兄之鬥則不辯是非而佐之，是父輕而兄重乎？兄與嫂斗，則以嫌而不救，懼失禮也。妻踣而傷則扶之，不顧禮焉，是妻厚而嫂薄乎？厚於妻而薄於嫂，茲小人之情，輕其父而重其兄，雖小人亦不爲也。章子以是爲仁義，非吾所敢聞也。抑其所謂禮之在內者，喪哀，祭恭，忠君，孝父，蓋皆仁義之目而不論焉，悖矣！人不知而不愠，謂之君子。吾不得已而申之者，爲其惑衆也。吾言止是矣，章子雖復言，吾不愠也。

공자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그 뜻을 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행실을 볼 것이니 3년을 아버지의 도에 고침이 없어야 효라 이를 것이다.”²⁰²⁾라고 말하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나도 오히려 차마 그 도를 고칠 수 없는 것이다. 아버지가 곁에 계시면서 “물불 속에서 사람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기는 것이 옳은가? 자기는 ‘구원하는 것’을 ‘인’이라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구원하지 말라”라고 말한다면 아버지는 ‘불인(不仁)’이다. 자기가 ‘인’을 하고자 하여 아버지의 ‘불인’을 드러낸다면 무엇이 ‘인’이 되는 지 볼 수 없다. 아버지가 ‘불인’하면 어기고, 형이 싸우면 시비를 분별하지 아니한 채 도운다는 것은 이는 아버지는 가볍고 형은 무겁다는 것인가? 형이 형수와 싸운다면 형의가 있을까 하여 구원하지 않는 것은 실례를 두려워한 것이다. 아내가 넘어져 다쳤으면 부축하는 것은 예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다. 이는 아내에게 후하고 형수에게 박한 것인가? 아내에게 후하게 하고 형수에게 박하게 하는 것은 이는 소인(小人)의 정(情)이요, 그 아버지는 경시하고 그 형을 중시하는 것은 비록 소인이

202) 아버지가.....것이다: 『論語』「學而」 11장.

라도 또한 하지 않는다. 장선생은 이것으로써 ‘인·의’라고 여기니, 내가 감히 들을 것이 아니다. 아니면 그 이른바 ‘예’가 안에 있다는 것은 상중에 슬퍼하고, 제사에 공손하며, 임금에 충성하고, 아버지께 효도하는 것이니 대개 모두 ‘인·의’의 조목인데 깨우치지 못한 것이니 이치에 어긋난 것이다. 남들이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성내지 않는 것을 군자라고 이른다.²⁰³⁾ 내가 부득이하게 (말을) 펼친 것은 (장망지의 「예론」이) 사람들을 미혹시키기 때문이다. 내 말은 여기에서 그친다. 장선생이 비록 다시 말하더라도 나는 성내지 않겠다.

203) 남들이.....이른다: 『論語』「學而」 1장.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 실컷 비판하고 성내지 않겠노라고 하면서 마쳤는데 이구 자신을 군자로, 장망지를 소인으로 규정하였고, 아울러 『論語』「學而」 1장을 인용하면서 장망지는 기본적인 독서도 하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禮論」 및 禮에 관한 李觀의 자부심을 볼 수 있다.

제4장 『이구집』 권3 易論13편

李觀集卷第三

易論十三篇

易論第一

或曰：『易』之爲書也，其不可學邪，何其微而不顯也？

曰：學者之過也. 聖人作『易』，本以教人，而世之鄙儒，忽其常道，竟習異端. 有曰“我明其象”則卜筮之書未爲泥也，有曰“我通其意”則釋老之學未爲荒也. 晝讀夜思，疲心於無用之說，其以惑也，不亦宜乎？包犧畫八卦而重之，文王，周公，孔子繫之辭，輔嗣之賢，從而爲之注. 炳如秋陽，坦如大達. 君得之以爲君，臣得之以爲臣. 萬事之理，猶輻之於輪，靡不在其中矣. 爾欲聞之乎？

역론 13편(204)

역론 제1

혹자가 물었다. 『역(易)』은 배울 수 없는 것인가. 왜 그렇게 은미하고 드러나지 아니하는가?

배우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다. 성인이 『역』을 지은 것은 본래 사람을 가르치려는 것인데, 세상의 비루한 유생들이 그 뒤틀린 도[常道]를 소홀히 하고 다투어 이단을 익힌 것이다. “나는 그 상(象)에 밝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점치는 책[卜筮之書]이 (오히려) 빠지는 것[泥]이 되지 않고, “나는 그 의미를 통하였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석가와 노자의 학문이 (오히려) 황폐함이 되지 않는 것이다. 낮에 읽고 밤에 생각하여 쓸데 없는 말에 마음을 피로하게 하니 그 미혹됨이 또한 마땅하지 아니한가? 포희가 팔괘를 그어 중첩하였고, 문왕·

204) 「直講李先生年譜」에 의하면 28세 무렵의 작품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공·공자가 말씀을 매어두었으며, 보사(輔嗣:왕필)의 어짐으로 주를 달았다. 밝기가 가을 해와 같고 탄탄하기가 큰 길과 같다. 임금이 얻으면 임금이 되고, 신하가 얻으면 신하가 된다. 만사의 이치가 수레바퀴살이 수레바퀴를 향하는 것과 같아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함이 없다. 너는 듣고자 하는가?

曰：然則請問爲君之道。

曰：夫用貴莫若恭，用富莫若儉。恭則衆歸焉，儉則財阜焉。恭儉者，先王之所以保四海也。「損」六五曰：“或益之，十朋之龜，弗克違，元吉。”龜可決疑，喻明智也。以柔居尊，而爲損道，明智之士，皆樂爲用矣。非徒人助，天且福之。故「象」曰：“六五元吉，自上佑也。”恭之得衆也如此。

그렇다면 ‘임금이 가야할 길’을 물어봅니다.

무릇 귀함[貴]을 쓰려면 공손함[恭] 같은 것이 없고, 부(富)를 쓰려면 검소함[儉] 같은 것이 없다. 공손하면 군중이 돌아오고, 검소하면 재물이 모인다. 공손함과 검소함이라는 것은 선왕이 사해(四海)를 보전한 방법이다. 「손(損)」괘²⁰⁵⁾ 육오 효사에 “혹 더해주되 십봉(十朋)의 거북[龜]으로 하면, 능히 어길 수 없을 것이니 크게 길하다.”라고 하였다. ‘거북’은 의심난 것을 결정짓는 것이니 밝은 지혜를 비유한 것이다. 유(柔:六爻)로써 높은 지위[五位:임금]에 거(居)하여 덜어내는 도[損道]를 하니, 밝고 지혜로운 선비들이 모두 즐겁게 쓰임이 되려한다. 사람이 도와줄 뿐만 아니라 하늘도 또한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象:小象傳)」에 “육오의 원길은 위로부터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공손함이 군중을 얻는 것이 이와 같다.

「貴」六五曰：“貴于丘園，束帛戔戔，吝，終吉。”丘園謂質素之地也。處得尊位，爲飾之主，而每事質素與丘園相似，則費財物束帛乃戔戔衆多也，儉之足用也如此。非徒儉於身也，祭祀鬼神尚可菲薄。

「비(賁)」괘²⁰⁶⁾ 육오 효사에 “구원(丘園)에서 꾸밈이니 육은 비단이 잘라진 듯

205) 『周易』41. 41은 64괘의 순서중 41번째 괘를 뜻함. 이하 같음.

206) 『周易』22.

하면 인(吝)하나 마침내 길하리라.”라고 하였다. 구원은 질박하고 소박한 땅이다. 높은 자리에 처하여 꾸밈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매사에 질박하고 소박한 것이 구원과 서로 비슷하다면 재물을 쓰는 것이 묶은 비단이 잘린 듯 많을 것이니, 검소함이 쓰기에 풍족함이 이와 같은 것이다. 다만 자신에게 검소한 것이 아니라 제사와 귀신에도 오히려 변변치 않은 것이다.

「既濟」九五曰：“東鄰殺牛，不如西鄰之禴祭，實受其福。”禴，祭之薄者也。謂修德以祭，雖薄而受福也。夫上之利民，以財則不足也。百姓安堵而不敗其業，利之大者也。

「기제(既濟)」괘²⁰⁷⁾ 구오 효사에 “동쪽 이웃의 소를 잡는 것이 서쪽 이웃의 소박한 제사가 실제 그 복을 받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였다. 약(禴)은 제사중에 소박한 것이다. 말하자면 덕을 닦아 제사하면 비록 소박하더라도 복을 받는다는 것이다. 무릇 윗사람이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이 재물로써 하는 것은 부족하다. 백성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그 생업을 망치지 않게 하는 것이 이익의 큰 것이다.

「益」九五曰：“有孚惠心，勿問，元吉。有孚，惠我德。”謂因民所利而利之，惠而不費，則不須疑問，必獲大吉，而物亦以信惠歸於我也。夫溥愛無私，君之德也，反是則非「益」之謂也，

「익(益)」괘²⁰⁸⁾ 구오 효사에 “은혜로운 마음에 믿음이 있으니 묻지 않아도 크게 길하다. 믿음이 있어 나의 덕을 은혜롭게 여길 것이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백성이 이롭게 여기는 것으로 인하여 이롭게 해주는 것이 ‘혜이불비(惠而不費)’²⁰⁹⁾니 곧 의심을 물어볼 필요도 없이 반드시 크게 길함을 얻을 것이요, 저들도 또한 믿음과 은혜로써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무릇 널리 사랑하고 사사로움이 없는 것은 임금의 덕이니, 이와 반대라면 「익」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207) 『周易』63.

208) 『周易』42.

209) 혜이불비(惠而不費): 『論語』「堯曰」2장. “子曰: 因民之所利而利之, 斯不亦惠而不費乎.”

「屯」九五曰：“屯其膏，小貞吉，大貞凶。”膏，謂恩惠也。處屯難之時，居尊位之上，不能博施群小，而繫應在二，所惠偏狹，於有司之貞則吉，於大人之貞則凶也。

「屯(屯)」괘²¹⁰⁾ 구오 효사에 “그 고(膏)가 어려우니 소정(小貞)은 길하나 대정(大貞)은 흉하다.”라고 하였다. 고는 은혜를 말한 것이다. 어려운 시절에 처하여 높은 자리에 거하였으나 능히 여러 소인들에게 널리 베풀지 아니하고, 구이효(九二爻)에게만 매어 응한다면 은혜의 미치는 것이 편협할 것이다. 유사(有司)의 곧음에 있어서는 길하나 대인의 곧음에 있어서는 흉하다.

「比」九五曰：“顯比，王用三驅，失前禽，邑人不誠，吉。”謂爲「比」之主，而有應在二，顯比者也。不能無私於物，唯賢是與，愛於來而惡於去，用三驅之道者也。伐不加邑，動必討叛，雖得乎顯比之吉，而可以爲上之使，非爲上之道。故「象」曰：“邑人不誠，上使中也。”夫執剛莫如體柔，責人莫如自修。尚力取勝亦已勞矣。

「비(比)」괘²¹¹⁾ 구오 효사에 “현비(顯比)니 왕이 세 방향에서 물이를 하는데 앞의 짐승을 잃는다. 읍사람을 경계하지 않으니 길하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비」괘의 주인이 되고, 응이 육이효(六二爻)에 있으니 비(比)의 도를 드러내는 사람이다. 능히 물(物)에 사사로움이 없어 오직 어진 사람을 이에 더불어 하고, 오는 것을 사랑하고 가는 것을 미워하여 세 방향에서 모는 도를 쓰는 것이다. 정벌하는 것이 읍에 더하지 아니하고, 움직이면 반드시 배반한 적을 토벌한다. 비록 현비의 길함을 얻더라도 윗사람의 부림이 될 뿐이요, 윗 사람의 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象)」에서 “읍사람을 경계하지 않는 것은 윗사람의 부림이 중도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무릇 강(剛)을 잡는 것은 유(柔)를 체득하는 것만 못하고, 남을 꾸짖는 것은 스스로를 닦는 것만 못한 것이다. 힘을 숭상하여 승리를 취하더라도 또한 이미 수고로운 것이다.

「同人」九五曰：“同人先號咷而後笑，大師克相遇。”謂不能使物自歸，而用其強直，

210) 『周易』3.

211) 『周易』8.

故必大師克之，然後得志也。

「동인(同人)」괘²¹²⁾ 구오 효사에 “동인이 먼저 올라 뒤에 웃는다. 큰 군사로 이겨야 서로 만난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능히 상대로 하여금 스스로 돌아오게 하지 못하고, 그 강직을 쓴 것이므로 반드시 큰 군사로써 이긴 뒤에 뜻을 얻는 것이다.

「困」九五曰：“剝剝，困于赤紱，乃徐有說，利用祭祀。”赤紱，謂異方之物也。五以剛猛，物所不附，忿物不附，而行威刑，則異方愈不懷矣。而體在中直，能不遂迷，乃徐修德，則得喜說。履夫尊位，過而能改，以斯祭祀，必受福也。夫以至尊敵至賤，勝之不足爲武也。

「곤(困)」괘²¹³⁾ 구오 효사에 “코를 베고 발을 벤다. 적발(赤紱)에 곤궁하나 서서히 기쁜 일이 있다. 제사에 이롭다.”라고 하였다. 적발은 이방의 물건을 말한다. 구오효가 강맹(剛猛)하므로 상대방이 부속하지 않는다. 상대가 부속하지 않는 것을 분노하여 위엄과 형벌을 행하면 이방은 더욱 품을 수 없다. 그러나 본체가 중직(中直)하니 능히 미혹하지 아니하여 이에 서서히 덕을 닦는다면 기쁨을 얻을 것이다. 저 높은 자리에 달고서서 과실을 능히 고치고 이로써 제사하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무릇 지극히 높은 사람이 지극히 천한 사람을 대적하였으니 승리하더라도 족히 무공(武功)이 될 수 없다.

「夬」九五曰：“剝陸夬夬，中行無咎。”剝陸，草之柔脆者，謂上六也。夬之時，以君子決除小人，而五處尊位，躬自決之，雖其克勝，未足多也。處中而行，足以免咎而已。故「象」曰：“中行無咎，中未光也。”夫安非福也，危非禍也。知危而懼，安莫如之。

「괘(夬)」괘²¹⁴⁾ 구오 효사에 “현륙(剝陸:비름나물)을 싹둑 베어버리는데, 중도를

212) 『周易』13.

213) 『周易』47.

214) 『周易』43.

행하면 허물이 없으리라.”라고 하였다. 현륙은 풀이 부드럽고 취약한 것이니 상륙효를 말한 것이다. 「괘」의 때는 군자가 소인을 결단하여 제거한다. 구오효가 높은 자리에 처하여 몸소 스스로 결단하여 비록 이기더라도 족히 자랑할만한 것은 아니다. 중도에 처하여 행동하면 허물을 면할 따름이다. 그러므로 「상(象)」에서 “중행이 허물은 없으나 중(中)이 빛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무릇 편안함은 복이 아니요, 위태로움은 재앙이 아니다. 위태로움을 알고 두려워한다면 편안함이 이만 못할 것이다.

「否」九五曰：“休否，大人吉。其亡其亡，繫于苞桑。”處君子道消之時，已當尊位，能施否於小人而自戒，其將亡則得苞桑之固也。夫救弊之術，莫大乎通變。然民可與樂成，難與慮始。非斷而行之，不足以有爲矣。

「비(否)」괘²¹⁵⁾ 구오 효사에 “막힌 것을 쉬게 하니 대인이 길하다. 망하면 어쩌나 망하면 어쩌나 하여야 뽕나무 뿌리에 매인 듯 하리라.”라고 하였다. 군자의 도가 소멸되는 때에 처하여 이미 높은 자리에 당하였으니 능히 소인에게 막힘을 시행하여 스스로 경계하고, 장차 망할 것을 걱정하면 뽕나무 뿌리에 매인 듯한 견고함을 얻을 것이다. 무릇 폐해를 구원하는 방법은 통변(通變)보다 큰 것은 없다. 그러나 백성들은 더불어 완성을 즐길 수 있으나 더불어 처음을 염려하기는 어렵다. 결단코 행하지 않는다면 족히 해 낼 수 없을 것이다.

「巽」初六曰：“進退，利武人之貞。”謂處令之初，未能服令。故進退也，則宜用武威以整齊之，乃能成命也。

「손(巽)」괘²¹⁶⁾ 초륙 효사에 “나아가고 물러감이니 무인의 곧음이 이롭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명령의 처음에 처하여 능히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아가고 물러가는 것이니 곧 마땅히 무위(武威)를 써서 정제(整齊)하여야 이에 능히 명령을 이룰 것이다.

215) 『周易』12.

216) 『周易』41.

「革」上六曰：“君子豹變，小人革面。”謂居變之終，變道已成，則小人變面以順上也。夫治國始於齊家，王化本乎夫婦，百代不易之道也。

「혁(革)」괘²¹⁷⁾ 상륙 효사에 “군자는 표범처럼 변하고 소인은 얼굴만 바뀐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변화의 끝에 거하여 변화의 도가 이미 이루어지면 소인은 얼굴을 변하여 윗사람을 따른다. 무릇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가정을 다스리는데에서 시작하고, 왕화(王化)가 부부에 근본하는 것은 백대(百代)가 지나도 바뀌지 않는 도이다.

「家人」九五曰：“王假有家，勿恤，吉。”謂居於尊位，而明家道，則下莫不化矣。父子子，兄兄弟弟，夫夫婦婦，六親和睦，交相愛樂，而家道正，正家而天下定，故勿恤而吉也。凡此皆爲君之道也。

「가인(家人)」괘²¹⁸⁾ 구오 효사에 “왕이 집안을 감격시키니 근심하지 않아도 길하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높은 자리에 거하여 가정의 도를 밝히면 아래는 교화되지 않음이 없다.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아들이 아들답고, 형이 형답고, 아우가 아우답고, 남편이 남편답고, 아내가 아내다워서 6친이 화목하고 서로서로 사랑하고 즐거우면 가정의 도가 반듯해 진다. 가정을 바르게 하고 천하가 안정되므로 근심하지 않아도 길한 것이다. 무릇 이는 모두 ‘임금이 가야할 길’이다.

或曰：子謂執剛莫如體柔，責人莫如自修，而乃以威武成命，何也？

曰：「同人」九五敵剛也。「困」九五來異方也。其欲勝敵懷遠，不可暴也，舜於有苗，文王於崇，乃其跡也。「巽」之初六行令於吾人也。令善而衆疑，不濟以威，是終不可爲也。『周官』凡出教令，必“徇以木鐸曰：‘不用法者，國有常刑。’”乃其事也。蓋所施之異，胡可結以一言哉！

혹자가 말했다. 그대는 “강(剛)을 잡는 것은 유(柔)를 체득하는 것만 못하고, 남을 꾸짖는 것은 스스로를 닦는 것만 못한 것이다.”라고 말해놓고 이에 위무(威

217) 『周易』49.

218) 『周易』37.

武)로 명령을 완성한다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동인」괘 구오효는 적이 강하고, 「곤」괘 구오효는 이방을 오게 하는 것이다. 적을 이기고 먼 지방을 품는데 포악해서는 안된다. 순(舜)이 유묘(有苗)에게 한 것과 문왕이 송(崇)에게 한 것이 그 자취이다. 「손」괘 초륙효는 우리 사람들에게 명령을 행한 것이다. 명령이 좋는데 군중이 의심할 때 위엄으로써 다스리지 아니하면 이는 마침내 시행할 수 없다. 『주관(周官:周禮)』에 무릇 교령(敎令)을 낼 때 반드시 목탁이 따르면서 “법을 쓰지 아니한 자는 나라에 상형(常刑)이 있다.”²¹⁹⁾라고 말한 것이 그 일이다. 대개 시행하는 것이 다름이니 어찌 같은 말로써 묶겠는가.

易論第二

或曰：爲君之道，任官其急也。請言其要。

曰：「井」九五曰：“井冽寒泉食。”謂五居中得正，而體剛直，不食汙穢，必須井潔而寒泉，然後乃食。以言剛正之主，不納非賢，必須行潔才高，然後乃用也。「兌」九五曰：“孚于剝，有厲。”謂處尊正之位，不說信乎君子，而說信乎小人，則小人道長而國有危也。「剝」六五曰：“貫魚以宮人寵，無不利。”謂施寵小人，但同之於宮人，勿使害正，則終無尤也。然則人君所任，宜得賢才，不可說信小人，雖未能不加以寵，亦當處之散地，無俾乘勢，以消君子可也。

역론 제2

혹자가 말했다. 임금이 가야할 길은 관직을 임명하는 것이 급한데 그 요체를 말해 달라.

「정(井)」괘²²⁰⁾ 구오효에 “우물이 달고 깨끗하여 시원한 샘물을 먹는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구오효가 중(中)에 거하고 정(正)을 얻었다. 체질이 강직하여 더러운 것을 먹지 아니하고 반드시 우물이 깨끗하고 시원한 뒤에 먹는다. 굳세고 바른 군주가 어질지 않은 사람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반드시 행실이 깨끗하

219) 『주관(周官)』에.....있다. 『周禮』「小司徒」.

220) 『周易』48.

고 재주가 높은 뒤에 등용한다는 말이다. 「태(兌)」괘²²¹⁾ 구오효에 “박(剝)을 믿으면 위태로움이 있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높고 바른 지위에 처하여 군자를 기뻐하고 믿지 아니하고, 소인을 기뻐하고 믿으면 소인의 도가 자라나고 나라는 위태로움이 있다. 「박(剝)」괘²²²⁾ 육오효에 “물고기를 켜어 궁인의 총애를 받는 듯 하면 이롭지 아니함이 없으리라.”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소인에게 총애를 베풀되 다만 궁인(宮人)과 같이하여 하여금 정(正)을 해치지 않게 하면 마침내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임금이 신임해야 할 것은 마땅히 어질고 재주있는 사람을 얻어야 하고, 소인을 기뻐하고 믿지 말 것이며, 비록 능히 총애를 더하지 않을 수 없더라도 또한 마땅히 한산한 곳에 처하게 하여, 세력을 타고 군자를 소멸함이 없게 하는 것이 옳다.

或曰：人君有不自爲國而委之大臣，可乎？

曰：茲禍福之機也。事有不可不然，亦不可必然，在度宜而行之耳。「蒙」六五曰：“童蒙，吉。”謂委於二也。夫蒙之時，陰昧而陽明，五以陰質居於尊位，不敢以其蒙昧自任，而委之剛陽，付物以能，故獲吉也。

임금이 스스로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대신에게 맡기는 것이 옳은가?

이는 화복(禍福)의 기틀이다. 일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을 때가 있다. 또한 반드시 그렇다는 것도 아니다. 마땅함을 헤아려 행함에 있을 뿐이다. 「몽(蒙)」괘²²³⁾ 육오효에 “동몽(童蒙)이니 길하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구이효에게 맡기는 것이다. 몽의 때에는 음은 어둡고 양은 밝다. 육오효가 음의 본질로 높은 자리에 거하여 감히 그 몽매함으로써 자임(自任)하지 아니하고, 굳센 양(陽)에게 위임하며, 능한 자에게 일을 부탁하므로 길을 얻는 것이다.

「師」六五曰：“田有禽，利執言，無咎。長子帥師，弟子輿尸，貞，凶。”謂柔非軍帥，陰非剛武，故不躬行，必以授也。授不得主，衆猶不從，故長子則可，弟子則凶。蓋九二得中，可以任也。“自閫以外，將軍制之。”用兵之法，亦其宜矣。

221) 『周易』58.

222) 『周易』23.

223) 『周易』4.

「사(師)」괘²²⁴⁾ 육오효에 “밭에 짐승이 있거든 잡는 것이 이로우니 허물이 없다. 큰 아들이 군사를 거느리니 여러 아들이 주관하면 바르더라도 흉하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유(柔)는 군의 통수가 아니요, 음은 강무(剛武)가 아니다. 그러므로 몸소 행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주어야 하는 것이다. 주는데 주관함을 얻지 못하면 군중이 오히려 따르지 아니하므로 큰 아들은 좋고, 여러 아들들은 흉하다. 대개 구이효는 중(中)을 얻었으니 말길만 하다. “문지방 밖은 장군이 통제한다.”²²⁵⁾라고 하였으니 용병의 방법 또한 그러한 것이 마땅하다.

「臨」六五曰：“知臨，大君之宜，吉。”夫「臨」，剛浸而長，君子道盛之時也。因而納之，委以其事，則不勞而成功矣。任得君子，庸非智乎!

「임(臨)」괘²²⁶⁾ 육오효에 “지혜로 임하는 것이다. 대군(大君)의 마땅함이니 길하다.”라고 하였다. 「임」괘는 강(剛)이 점점 자라니 군자의 도가 전성할 때이다. 인하여 받아들이고 그 일로써 맡기면 수고롭지 아니하면서 성공할 것이다. 군자를 얻어 신임하는 것이 어찌 지혜가 아닌가.

「大壯」六五曰：“喪羊於易。無悔。”羊，壯也。君大壯之時，以陰處陽，以柔乘剛，用壯之甚。敵寇之來，將失其居，故不待險難而先舍其壯。委任於二，則得無悔也。此皆事之宜，不得不然也。

「대장(大壯)」괘²²⁷⁾ 육오효에 “양을 쉽게 잃는다. 후회가 없다.”라고 하였다. 양(羊)은 왕성함이다. 임금이, 「대장」의 때에, 음으로써 양(陽)의 자리에 처하고, 유(柔)로써 강(剛)을 올라탔으니 왕성함을 쓰는 것이 심하다. 적구(敵寇)가 올 때 장차 그 거처를 잃으므로 험난을 대비하지 못하고 먼저 그 왕성함을 버린다. 구이효에게 위임하였다면 후회가 없었을 것이다. 이는 모두 일의 마땅함이니 그럴

224) 『周易』7.

225) 문지방..... 통제한다. 『史記』 권102 「馮唐傳」, “閫以內者 寡人制之, 閫以外者 將軍制之.”

226) 『周易』19.

227) 『周易』34.

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歷觀衆卦，此類頗多，率由陰居尊位，未得剛正，在上而廢其聰明，委政於下也。得其人則民受其賜，非其人則職爲亂階。此不得不然也。「恒」六五曰：“恒其德，貞。婦人，吉。夫子，凶。”謂居得尊位，不能制斷，而係應於二，專從其唱，以此爲恒，則婦人之吉，非夫子之道也。以言人君在位，苟不能獨斷，而牽於臣下，權時則可矣，以之爲常，則非君之道也。「坤」初六曰：“履霜，堅冰至。”戒其漸也。上六曰：“龍戰於野。”辨之不早，疑盛乃動，故必戰也。此任官之要，先王其慎之也。

여러 괘들을 훑어보면 이러한 종류가 꽤 많다. 대부분 음(陰)이 높은 자리에 거하여 강정(剛正)을 얻지 못하고, 위에 있으면서 그 총명을 담은 채, 아랫 사람에게 정사를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책임자를 얻으면 백성들은 그 주는 것을 받아들이나, 책임자를 얻지 못하면 직책이 혼란의 사닥다리가 된다. 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항(恒)」괘²²⁸⁾ 육오효에 “그 덕을 항상하면 바르다. 부인은 길하고 부자(夫子:남자)는 흉하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거함이 높은 자리를 얻었으나 능히 제단(制斷)하지 못하고 구이효에게 매달려 응한다. 오로지 그가 창도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써 항상한다면 부인의 길이지만 부자의 도는 아니다. 임금이 자리에 있으면서 진실로 능히 홀로 결단하지 못하고 신하에게 끌려다니는 것은 임시일 때는 옳다 할 수 있어도 항상 그러하다면 임금의 도가 아니다. 「곤(坤)」괘²²⁹⁾ 초륙효에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온다.”라고 하였으니 그 점진을 경계한 것이다. 상륙효에 “용이 들에서 싸운다.”라고 하였으니 변별을 일찍 하지 못하여 의혹이 성대하면 이에 움직이므로 반드시 싸우는 것이다. 이는 임관(任官)의 요체니 선왕들이 신중히 여긴 것이다.

易論第三

或人請問爲臣之道。

曰：君子之進也，難哉！苟進則諂。諂則何有於君？唯利而已矣。「否」初六曰：“拔

228) 『周易』32.

229) 『周易』2.

茅茹，以其彙。貞，吉，亨。”「象」曰：“拔茅貞吉，志在君也。”謂居「否」之時，動則入邪。三陰同道，皆不可進。故茅茹以類。正而不諂，志在於君，故不苟進也。

역론 제3

혹자가 ‘신하가 가야할 길’에 대해 물었다.

군자가 나아가는 것은 어렵다. 구차히 나아가면 아첨하는 것이다. 아첨하려 한다면 임금에게 무엇이 있겠는가? 오직 이긋[利]만 있을 뿐이다. 「비(否)」괘²³⁰⁾ 초륙효에 “띠풀의 뿌리를 뽑는데 그 무리로써 한다. 바르고 길하여 형통하다.”라고 하였고, 「상(象)」에 “발모정길(拔茅貞吉)은 뜻이 임금에게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비」의 때에 거하여, 움직이면 사(邪)로 들어간다. 3개의 음(초륙·육이·육삼)이 도를 함께하여 모두 나아가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띠풀의 뿌리가 무리짓는 것과 같다. 바르고 아첨하지 아니하며 뜻이 임금에게 있으므로 구차히 나아가지 않는 것이다.

夫執剛用直，進不爲利，忠誠所志，鬼神享之。「升」九二曰：“孚乃利用禴，無咎。”謂與五爲應，往必見任。體夫剛德，進不求寵，閒邪存誠，志在大業，故乃利用，納禴²³¹⁾於神明也。夫君臣之交，初未見親。未信而諫，人以爲諂。

무릇 강(剛)을 잡고 직(直)을 쓰며, 나아감에 이긋을 위하지 아니하는 것은 충성(忠誠)이 뜻하는 바요, 귀신이 흠향한다. 「승(升)」괘²³²⁾ 구이효에 “믿음이 있어야 이에 약(禴:春祭)을 쓰는 것이 이로우니 허물이 없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육오효와 더불어 응(應)이 되니, 가면 반드시 신임을 볼 것이다. 강덕(剛德)을 체득하고 나아감에 총애를 구하지 아니하며, 사특함을 막고 성실함을 보존하며, 뜻은 대업(大業)에 있다. 그러므로 이에 쓰는 것이 이롭고 신명에게 약(禴:禴)을 들이는 것이다. 무릇 임금과 신하가 교제함에 처음은 친함을 보지 못한다. 신뢰가 없는데 간하는 것을 사람들은 비방한다고 생각한다.

230) 『周易』12.

231) 原註: ‘禴’은 원래 ‘約’으로 되어 있었는데 光緒本에 근거하여 고쳤다.

232) 『周易』46.

「損」初九曰：“已事，遄往，無咎。酌損之。”謂剛以奉柔，當自酌損其剛，乃得合志。志既合則道可行也。然剛德之長，不可全削。志意既合，當自守正。九二曰：“利貞。征，凶。弗損，益之。”謂初已損剛以順柔，二復損已以益柔，則「剝」道成焉。故不可遄往而利貞也。

「손(損)」괘²³³⁾ 초구효에 “일을 마쳤으면 빨리 가야 허물이 없다. 짐작하여 덜어내야 한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강(剛)으로써 유(柔:六五)를 받들었으니 마땅히 스스로 짐작하여 그 강을 덜어내어야 이에 뜻이 합쳐질 수 있다. 뜻이 이미 합쳐지면 도가 행하여질 수 있다. 그러나 강덕(剛德)의 장점을 온전히 깎아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뜻이 이미 합하면 마땅히 스스로 정(正)을 지켜야 한다. 구이효에 “정(貞)이 이롭다. 가면 흉하다. 덜어내지 않아야 (육오효를) 유익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초구효가 이미 강을 덜어 유에게 순종하였는데, 구이효가 다시 자기를 덜어 유를 유익하게 한다면 「박(剝)」괘²³⁴⁾의 도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빨리 가는 것은 옳지 않고 정(貞)이 이로운 것이다.

夫道雖貞矣，宜得其中，不可過也。「小畜」上九曰：“既雨既處，尚德，載。婦貞，厲。月幾望，君子征，凶。”謂體巽處上，剛不敢犯，尚德者也。爲陰之長，能畜剛健，德積載者也。婦制其夫，臣制其君，雖正近危。故曰“婦貞厲”也。滿而又進，必失其道，陰疑於陽，必見戰伐。雖復君子，以征必凶，故曰“君子征”凶也。

무릇 도가 비록 정정(貞正)하더라도, 마땅히 그 중(中)을 얻어야 하니 지나치면 옳지 않다. 「소축(小畜)」괘²³⁵⁾ 상구효에 “이미 비오고 이미 그치는 것은 덕을 숭상하여 쌓은 것이다. 부인이 정고(貞固) 하면 위태롭다. 달이 거의 보름이니 군자가 가면 흉하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손체(巽體)²³⁶⁾의 상(上)에 처하여 강(剛)을 감히 범하지 않으니 덕을 숭상하는 사람이다. 음의 장(長)이 되어 능히

233) 『周易』41.

234) 『周易』23. 李觀의 말은 初九爻와 九二爻가 剛을 덜어 柔효, 곧 陽爻에서 陰爻로 변하면 初爻부터 五爻까지 모두 陰爻이고 上爻만 陽爻인 剝卦가 된다는 뜻이다.

235) 『周易』9.

236) 손체(巽體): 小畜卦의 上體가 巽卦인 것을 말한다.

강건(剛健:乾)을 저지하였으니 덕이 쌓인 사람이다.²³⁷⁾ 부인이 그 지아비를 제압하고, 신하가 그 임금을 제압하면 비록 바르더라도 위태로움에 가깝다. 그러므로 “부정려(婦貞厲)”라고 말한 것이다. 가득했는데 또 나아가면 반드시 그 도를 잃고, 음이 양을 의심하면 반드시 싸우게 된다. 비록 다시 군자라고 해도 가면 반드시 흉하다. 그러므로 “군자정흉(君子征凶)”이라고 말한 것이다.

「恒」初六曰：“浚恒，貞，凶，無攸利。”象曰“浚恒之凶，始，求深也。”謂求深窮底，物無餘蘊，以此爲恒，凶正害德，無施而利，蓋人不可以至察也。

「항(恒)」괘²³⁸⁾ 초륙효에 “깊은 항(恒)이다. 정(貞)이라도 흉하다. 이로울 것이 없다.”라고 하였고, 「상(象)」에 “준항의 흉은 처음에 깊은 것을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깊이 구하여 끝까지 다하면 어떤 물건이라도 남아날 수 없으니 이로써 항상하면 바르더라도 흉하고 덕을 해쳐서 어디에 베풀더라도 이로움이 없다. 대개 사람은 지극히 살피서는 안된다.

「節」上六曰：“苦節，貞，凶，悔亡。”謂過節之中，以至亢極，苦節者也。以斯施正，物所不勝，正之凶也。以斯修身，行在無妄，故得悔亡。蓋政不可以峻刻也。雖不可過，亦不可未至而止也。

「절(節)」괘²³⁹⁾ 상륙효에 “고절(苦節)이니 정(貞)하더라도 흉하다. 후회 없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절」의 중앙을 지나 항극(亢極)에 이르니 괴로운 「절」이다. 이로써 바름을 베풀더라도 물(物)이 이기지 못하는 것이니 바름의 흉이다. 이로써 수신하면 행실에 망녕됨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후회는 없다. 대개 정사(政事)는 준엄하고 각박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 비록 지나친 것이 옳지 않더라도 또한 이르지도 아니한 채 그치는 것도 옳지 아니하다.

237) 음의.....사람이다: 李觀는 上體인 巽卦가 下體인 乾卦를 저지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巽卦는 文王 8卦로 보면 長女가 된다.

238) 『周易』32.

239) 『周易』60.

「晉」初六曰：“晉如摧如，貞，吉。罔孚，裕，無咎。”謂進明退順，不失其正，而處卦之始，功業未著，物未之信，若以此爲足，自喪其長者也。故必裕之，然後無咎也。

「진(晉)」괘²⁴⁰⁾ 초륙효에 “나아가고 물러남에 정(貞)하면 길하다. 믿어주지 않더라도 여유로우면 허물이 없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나아감이 밝고 물러남이 순하여 그 바름을 잃지 않는다. 그러나 괘의 처음에 처하여 공업(功業)이 드러나지 않고 상대방이 신뢰하지 않는데 만약 이것으로써 만족한다면 스스로 그 장점을 상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여유롭게 대처한 뒤에 허물이 없을 것이다.

夫爲君耳目，所以司聰明也。不能去邪人，使至君側，誰之罪也？「兌」九四曰：“商兌，未寧，介疾，有喜。”謂三爲佞說，將近至尊，四以剛德，裁而隔之。初則未寧，終則有喜也。此之爲喜，乃爲至尊所善，天下所賴，故「象」曰：“九四之喜，有慶也。”

무릇 임금의 귀와 눈이 된다는 것은 귀밝고 눈밝은 것을 말는 것이다. 능히 간사한 사람을 제거하지 아니하여 임금의 곁에 이르게 한다면 누구의 죄인가. 「태(兌)」괘²⁴¹⁾ 구사효에 “기뻐함을 헤아려 보느라 안녕하지 않으나 절개를 지켜 사특함을 미워하여 기쁜 일이 있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육삼효가 말잘하고 기쁘게 함으로써 장차 지존(至尊:九五)에 가까이 하려하니, 구사효가 강덕(剛德)으로써 재단하여 가로막고 있다. 처음에는 안녕하지 못하나 나중에는 기쁜 일이 있다. 여기서 기쁨이 되는 것은 지존이 선하게 여기는 것이고, 천하가 의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象)」에 “구사효의 기쁨은 경사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夫事君盡禮，致恭存位，古之道也。「履」九四曰：“履虎尾，愬愬，終吉。”謂逼近至尊，處多懼之地。然以陽居陰，以謙爲本，雖處危懼，終獲其志也。夫君唱臣和，理之常也。專而見疑，鮮不及矣。

240) 『周易』35.

241) 『周易』58.

무릇 임금을 섬김에 예를 다하고 공경을 다하여 자리를 보존하는 것은 옛날의 도이다. 「이(履)」괘²⁴²⁾ 구사효에 “호랑이 꼬리를 밟았으나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여 마침내 길하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지존에 매우 가까우니 두려움이 많은 땅에 처한 것이다. 그러나 양효로써 음의 자리에 거하고 겸손함으로써 근본을 삼으니 비록 위태롭고 두려움에 처하더라도 마침내 그 뜻을 얻는 것이다. 무릇 임금이 인도하고 신하가 화답하는 것은 이치의 정상이다. 오로지 하였다가 의심을 당하면 (재앙이) 미치지 않는 것이 적다.

「坤」六三曰：“含章可貞，或從王事，無成有終。”謂含美於內，待命而發，不爲事首，順上而終，可謂智矣。故「象」曰：“含章可貞，以時發也。或從王事，知光大也。”

「곤(坤)」괘²⁴³⁾ 육삼효에 “아름다움을 머금고 있는 것이 바를 수 있으니, 혹은 왕의 일을 따르면 이름은 없고 끝이 있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아름다움을 안에 머금고 있다가 명을 기다려 발할 때 일의 머리가 되지 말고 윗사람을 순종하여 마친다면 지혜롭다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상(象)」에 “함장가정(含章可貞)은 때로써 발하는 것이요, 혹은종왕사(或從王事)는 지혜가 빛나고 큰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無妄」六二曰：“不耕獲，不菑畲，則利有攸往。”亦謂代終已成而不造也。不擅其美，乃盡臣道，故利有攸往也。雖不獲自專，而時有未安，不可不憂也。

「무망(無妄)」괘²⁴⁴⁾ 육이효에 “갈거나 수확하지 아니하며, 1년된 밭이나 3년된 밭을 만들지 아니하면 가는 곳에 이름다.”라고 하였다. 또한 말하자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대신하여 마치고, (앞장서서 일을) 짓지 아니한다. 그 아름다움을 천단(擅斷)하지 아니하는 것이 신하된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는 곳에 이로움이 있는 것이다. 비록 스스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얻지 못하나 때로 편안치 아니함이 있으니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42) 『周易』10.

243) 『周易』2.

244) 『周易』25.

「渙」六四曰：“渙其群，元吉。渙有丘，匪夷所思。”謂與五合志，內掌機密，外宣化命，能爲群物，散其險害。然處上體之下，不可自專，猶有丘墟未平之慮。雖已得大功，所思不可忘也。若時不我用，不與於政，則宜卷而懷之，毋使動而之悔也。

「환(渙)」괘²⁴⁵⁾ 육사효에 “그 무리를 위하여 흠으니 크게 길하다. 환산(渙散)할 때 구허(丘墟)가 있으니 평상(平常)시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구오효와 더불어 뜻이 합하여 안으로 기밀을 관장하고 밖으로 교화와 명령을 선포하며, 능히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그 험하고 해로운 것을 흠어 버린다. 그러나 상체(上體:巽)의 아래에 처하여 스스로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오히려 구허(丘墟)처럼 편안치 못한 생각이 있다. 비록 이미 큰 공을 얻었으나 생각한 것을 잊으면 안된다. 만약 때가 나를 써주지 아니하여 정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마땅히 거두어들여 품고서 움직여서 후회할 일이 없게 해야 한다.

「坤」六四曰：“括囊，無咎，無譽。”謂以陰居陰，不與陽事，隱其賢德，乃可免咎。故「象」曰：“括囊無咎，慎不害也。”或竭其忠信，志在立功，圖國忘身，雖慎可也。

「곤(坤)」괘 육사효에 “주머니의 끈을 묶는 것이니 허물도 없고 명예도 없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음효가 음의 자리에 거하여 양의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그 어진 덕을 숨기면 허물을 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象)」에서 “괄낭무구(括囊無咎)는 삼가면 해가 없다.”라고 말한 것이다. 혹 그 충신(忠信)을 다하여 뜻이 공을 세우는 곳에 있고 나라를 도모하여 몸을 잊더라도 비록 삼가는 것이 옳다.

「隨」九四曰：“隨有獲，貞，凶。有孚，在道，以明，何咎。”謂居於臣地，以擅其民，失於臣道，違正者也。體剛居說而得民心，能幹其事而成其功者也。雖違常義，志在濟物，著信在道，以明其功，何咎之有哉!

245) 『周易』59.

「수(隨)」괘²⁴⁶⁾ 구사효에 “따라서 얻음이 있으니 정(貞)하더라도 흉하다. 믿음이 있고 도에 있으며 밝음을 쓴다면 무슨 허물이 있으리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신하의 처지에 있으면서 그 백성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신하의 도를 잃고 바름에 어긋나는 것이다. 몸이 강(剛:陽)한데 열(說:兌)에 있어 민심을 얻고, 능히 그 일을 주관하여 그 공을 이루는 사람이다. 비록 상의(常義)에는 어긋나나 뜻이 남을 구제함에 있고, 믿음이 드러나 도에 있으며, 그 공을 밝히니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夫權之所在，衆之所附，不守以正，速禍而已矣. 「益」六二曰：“或益之，十朋之龜，弗克違，永貞，吉.” 謂居中得位，益自外來，朋龜獻策，同於「損」卦六五之位. 位不當尊，故永貞乃吉也. 夫忠臣之分，雖處險難，義不忘君也.

무릇 권력이 있는 곳에 군중은 붙는 것이니 정(正)으로써 지키지 아니하면 재앙을 부를 따름이다. 「익(益)」괘²⁴⁷⁾ 육이효에 “혹자가 더해주는데 십봉(十朋)의 거북으로 하면 능히 어기지 못할 것이니 영정(永貞)하여야 길하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중(中)에 거하고 자리를 얻었으니 더해주는 것이 밖으로부터 와서 봉귀(朋龜)와 헌책(獻策)하는 것은 「손(損)」괘 구오효의 자리와 같다. (그러나 육이효는) 지위가 높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길게 반듯해야 길한 것이다. 무릇 충신(忠臣)의 본분은 비록 험난(險難)에 처하더라도 의(義)는 임금을 잊지 않는 것이다.

「蹇」六二曰：“王臣蹇蹇，匪躬之故.” 謂居位應五，不以五在難中，私身遠害. 執心不回，志救王室者也. 故「象」曰：“王臣蹇蹇，終無尤也.” 凡此皆爲臣之道也. 孔子曰：“爲臣不易.” 豈虛言哉!

「건(蹇)」괘²⁴⁸⁾ 육이효에 “왕의 신하가 어렵고 어려운 것이 자신의 연고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있는 자리가 구오효와 응하니, ‘구오효는 어려움 가운데²⁴⁹⁾ 있고, 자신은 해에서 멀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마음을 잡아 변절하

246) 『周易』17.

247) 『周易』42.

248) 『周易』39.

지 않고, 왕실을 구원하는데 뜻을 둔 사람이다. 그러므로 「상(象)」에 “왕신건건(王臣蹇蹇)은 마침내 허물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다. 무릇 이는 모두 ‘신하가 가야 할 길’이다. 공자는 “신하노릇 하기 쉽지 않다.”²⁵⁰⁾라고 말하였으니, 어찌 빈말이겠는가.

易論第四

或曰：大哉！君臣之道，既得而聞之矣。請問凡所以治其身何如？

曰：性不能自賢，必有習也。事不能自知，必有見也。習之是而見之廣，君子所以有成也。「蒙」六四曰：“困蒙，吝。”謂獨遠於陽，處兩陰之中，困於蒙昧，不能比賢以發其志，故曰：吝也。

역론 제4

혹자가 말했다. 크다! ‘군신의 도’는 이미 들었습니다. 청하여 묻노니 ‘그 몸을 닦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성(性)은 능히 저절로 어질어지지 않으니 반드시 익힘[習]이 있어야 한다. 일은 능히 저절로 알아지지 않으니 반드시 보는 것이 있어야 한다. 익힘이 옳고 보는 것이 넓으면 군자를 이룰 수 있다. 「몽(蒙)」괘²⁵¹⁾ 육사효에 “곤몽(困蒙)이니 인(吝)하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홀로 양(陽:九二)에서 멀고 두 음(陰:六三·六五) 가운데 처하니, 몽매함에 함들어 능히 어진이와 가까이하여 그 뜻을 발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인(吝)’이라고 말한 것이다.

「觀」初六曰：“童觀，小人，無咎。君子，吝。”謂處於觀時，而最遠朝美，體於陰柔，不能自進，無所鑒見，故曰：童觀。在小人則無咎，君子處之，吝道也。

「관(觀)」괘²⁵²⁾ 초륙효에 “어린 아이의 보는 것이니, 소인은 허물이 없고 군자

249) 어려움 가운데: 蹇卦의 上體가 坎卦인 것을 말한다.

250) 신하노릇.....않다: 『論語』「子路」15장.

251) 『周易』4.

는 인(濟)하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관」의 때에 처하여 조정의 아름다움에 가장 멀고, 음유(陰柔)의 체질이니 능히 스스로 나아가지 못해 보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의 봄[童觀]’이라고 말한 것이다. 소인은 허물이 없으나 군자가 처하면 부끄러운 도이다.

夫道之於人，不可斯須去之也。進則飾其行，退則不勉焉，是爲利者也。君子恥之。「履」九二曰：“履道坦坦，幽人貞吉。”謂在內卦幽隱之地，而履其中道。不以居外爲榮，處內爲屈，隱顯皆同，常行其正，宜其吉也。

무릇 도는 사람에게서 잠깐이라도 떠날 수 없다. 나아가면 그 행실을 꾸미고, 물러나면 힘쓰지 않는 것은 이는 이곳을 위하는 사람이다. 군자는 부끄러워 한다. 「이(履)」괘²⁵³⁾ 구이효에 “이행하는 도가 탄탄하니 그윽한 사람이라야 바르고 길하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내괘(內卦:兌) 그윽하고 숨을만한 곳에 있으면서 그 중도(中道)를 이행한다. 밖에 거하는 것으로써 영화롭다 여기고, 안에 처하는 것으로써 굴욕이라 여기지 아니한다. 은둔하거나 현달하거나 모두 같이 항상 그 바름을 행하니 그 길한 것은 마땅하다.

「中孚」九二曰：“鳴鶴在陰，其子和之。我有好爵，吾與爾靡之。”謂處內而居重陰之下，履不失中，不徇於外，立誠篤至，雖在暗昧，物亦應之也。

「중부(中孚)」괘²⁵⁴⁾ 구이효에 “우는 학이 그늘에 있거늘 그 새끼가 화답한다. 나에게 좋은 벼슬이 있어 내가 너와 함께 매어 있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안에 처하여 중음(重陰:六三·六四)의 아래에 있어도 이행하는 것이 중도를 잃지 아니하고, 밖을 따르지 아니하며, 정성을 다하여 돈독하고 지극하니, 비록 어둠속에 있더라도 상대방이 또한 응하는 것이다.

「晉」六二曰：“晉如愁如，貞，吉。受茲介福於其王母。”謂進而無應，其德不昭，不

252) 『周易』20.

253) 『周易』10.

254) 『周易』61.

以無應而回其志，處晦而能致其誠，故得貞之吉也。其初愁如，履正不回，則乃受茲大福於其母也。

「진(晉)」괘²⁵⁵⁾ 육이효에 “나아감에 근심하나 바르면 길하다. 이 큰 복을 그 왕 모에게 받는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나아가되 응(應)이 없으니, 그 덕이 밝아 지지 아니하나 응이 없다고 그 뜻을 돌리지 아니하고, 어두운 곳에 처하여 능히 그 정성을 다한다. 그러므로 바름의 길(吉)을 얻는 것이다. 그 처음에 근심하나 바름을 이행하고 변치 아니하면 이 큰 복을 그 어머니에게 받는 것이다.

「井」九三曰：“井渫不食，爲我心惻，可用汲。王明，並受其福。”謂井渫而不見食，猶人修己全潔而不見用，故使我心惻也。不下注而應上²⁵⁶⁾，是可汲也。井之可汲也，猶人可用。若逢明王，則既嘉其行，又欽其用，故曰：並受其福也。

「정(井)」괘²⁵⁷⁾ 구삼효에 “우물이 깨끗한데도 먹지 아니하니 내 마음이 측은하여 물을 기른다. 왕이 밝으면 그 복을 함께 받는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우물이 깨끗한데도 먹여주지 아니하니, 사람이 자기를 닦아 완전히 깨끗한데도 등용되지 못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슬프게 한다. 아래로 쏟아 붓지 아니하고 위로 응하니 이는 기를 수 있는 것이다. 우물이 기를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이 등용될 수 있다는 것과 같다. 만약 밝은 임금을 만나면 이미 그 행실을 가상히 여기고 또 그 쓰는 것을 공경히 한다. 그러므로 “함께 그 복을 받는다.”라고 말한 것이다.

夫欲不可逞，強不可恃。放其私心，罔知戒懼，凶之道也。「震」初九曰：“震來虩虩，後，笑言啞啞，吉。”謂體夫剛德，爲卦之先，能以恐懼而修其德，乃致福也。

무릇 욕심은 부리지 말아야 하고, 강함은 믿지 말아야 한다. 그 사사로운 마음

255) 『周易』35.

256) 原註: ‘上’은 원래 ‘止’로 되어 있었는데 井卦九三爻와 王弼注에 근거하여 고쳤다.

257) 『周易』48.

을 놓아 버린 채 경계하고 두려워함을 알지 못하는 것은 흉한 도이다. 「진(震)」괘²⁵⁸⁾ 초구효에 “진동이 올 때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뒤에 웃고 말하는 것이 우습고 우스울 것이니 길하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강덕(剛德)을 체득하여 괘의 선두가 되었으니 능히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며 그 덕을 닦아야 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豫」初六曰：“鳴豫，凶。”謂處豫之初，而特得志於上，樂過則淫，志窮則凶也。

「예(豫)」괘²⁵⁹⁾ 초륙효에 “즐거움을 소리에 드러내니 흉하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예」의 처음에 처하여 특별히 윗사람의 뜻을 얻었으니 즐거움이 지나치면 음란하고 뜻을 다하고자 하면 흉하다는 것이다.

「대장(大壯)」九三曰：“小人用壯，君子用罔，貞，厲。羝羊觸藩，羸其角。”謂處健之極，以陽處陽，用其壯者也。故小人用之以爲壯，君子用之以爲羅已者也。雖復羝羊以之觸藩，必拘羸其角矣。

「대장(大壯)」괘²⁶⁰⁾ 구삼효에 “소인은 장성함을 쓰고 군자는²⁶¹⁾ 그물²⁶²⁾을 쓰니 굳이 하면 위태롭다. 숫양이 울타리를 들이받아 그 뿔이 피곤하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강건함의 극에 처하여 양(陽:九)효로써 양(陽:三)의 자리에 처하니 그 장성함을 쓰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인은 쓰면서 장성하다고 생각하고 군자는 쓰면서 자기가 망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록 다시 숫양이 써서 울타리를 받더라도 반드시 그 뿔이 구속되고 곤궁할 것이다.

「益」上九曰：“莫益之，或擊之，立心勿恒，凶。”謂處益之極，過盈者也。求益無厭，人弗之與，怨者非一，故或擊之也。

258) 『周易』51.

259) 『周易』16.

260) 『周易』34.

261) 군자는: 여기에서 君子는 벼슬이 높은 사람, 곧 권력이 있는 사람을 뜻한다.

262) 그물: 李覯는 王弼注를 신뢰하여 그물, 망라의 의미로 사용하였으나 뒷날 程頤와 朱熹는 ‘罔’을 ‘無’로 보았다.

「익(益)」괘²⁶³) 상구효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혹 공격한다. 마음을 세우는데 항(恒)하지 말 것이니 흉하다.”라고 하였다. 「익」의 끝에 처하여 지나치게 가득찬 사람이다. 더함을 구하여 물림이 없으니 사람들이 주지 아니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하나가 아니다. 그러므로 혹 공격하기도 하는 것이다.

夫靜以俟時，則無悔，躁而求利則有恥，不可不慎也. 「頤」初九曰：“舍爾靈龜，觀我，朵頤，凶.” 謂居養賢之世，不能正其所履，而舍其靈龜之明德，羨我朵頤而躁求，不足貴也.

무릇 조용히 때를 기다리면 후회가 없고 조급하게 이것을 구하면 부끄러움이 있으니 삼가지 않을 수 없다. 「이(頤)」괘²⁶⁴) 초구효에 “너의 신령스런 거북을 버리고 나를 보며 덕을 늘어뜨리니 흉하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어진이를 기르는 세상에 거하여 능히 그 이행하는 것을 바르게 하지 아니하고, 그 신령스런 거북의 밝은 덕을 버리고서 나를 부러워하여 덕을 늘어뜨리고 조급하게 구하니 귀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咸」六二曰：“咸其腓，凶. 居，吉.” 腓，謂動躁者也. 感物以躁凶之道也. 由躁故凶，居則吉矣.

「함(咸)」괘²⁶⁵) 육이효에 “감동하는 것이 그 장딴지이니 흉하다. 거하면 길하다.”라고 하였다. 장딴지는 움직임이 조급한 사람을 말한 것이다. 상대방을 감동시키는데 조급하게 하는 것은 흉한 도이다.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흉한 것이니 거하면 길하다.

夫遵道而行，不牽於俗，明哲之任也. 與衆雷同²⁶⁶), 善柔之事也. 「豫」六二曰：“介于石. 不終日，貞，吉.” 謂順不苟從，豫不違中，不改其操，是以吉也.

263) 『周易』42.

264) 『周易』27.

265) 『周易』31.

266) 原註: 光緒本에 '同'아래에 '則'자가 있다.

무릇 도를 따라 행하고 세속에 끌려가지 않는 것은 명철(明哲)의 임무이다. 대중과 더불어 뇌동하는 것은 선유(善柔)의 일이다. 「예(豫)」괘²⁶⁷⁾ 육이효에 “절개가 돌과 같다. 하루도 마치지 아니하니 바르고 길하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순하여도 구차히 따르지 아니하고, 기빠도 중도를 어기지 아니하며, 그 지조를 고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써 길한 것이다.

「咸」九三曰：“咸其股. 執其隨, 往, 吝.” 謂志在隨人所執, 亦已賤矣. 用斯以往, 吝其宜也.

「함(咸)」괘 구상효에 “감동하는 것이 그 다리이다. 잡는 것이 그 따르는 것이니 가면 부끄럽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뜻이 남이 잡은 것을 따르는 데 있으니 또한 이미 천한 것이다. 이를 써서 가면 그 마땅함에 부끄러울 것이다.

「小過」九三曰：“弗過防之, 從或戕之, 凶.” 謂居下體之上, 以陽當位, 而不能先過防之, 至令小者咸過, 而復應而從焉. 其從之也則戕之, 凶至矣. 然而絕類離倫, 衆之所非, 毀方瓦合, 亦儒之權也.

「소과(小過)」괘²⁶⁸⁾ 구상효에 “지나치게 방비하지 아니하면 따라서 혹 해칠 것이니 흉하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하체(下體: 艮)의 위에 거하여 양효로써 자리에 당하였는데 능히 먼저 지나치게 방비하지 아니하면, 소자(小者: 小人)로 하여금 다 지나가게 하고 다시 응하고 따르게 함에 이른다. 그 따르게 하면 해칠 것이니 흉이 지극하다. 그러나 무리에서 빼어나면²⁶⁹⁾ 대중들이 비난하는 것이니 모난 것을 헐어 질그릇을 맞추는 것²⁷⁰⁾도 또한 유자(儒者)의 권도이다.

267) 『周易』16.

268) 『周易』62.

269) 무리에서 빼어나면: ‘絕類離倫’은 韓愈의 「進學解」에 나오는 말로, 韓愈는 孟子와 荀子가 뛰어나 성인의 경지에 들지만 세상에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함을 비유하였다.

270) 모난.....것: ‘毀方瓦合’은 『禮記』「儒行」편에 나온다. “慕賢而容衆, 毀方而瓦合, 其寬裕有如此者.” 질그릇을 만들 때 모난 부분을 다듬어 맞추어 나간다는 뜻인데 원래는 포용과 관용을 의미하였으나 나중에는 원칙을 버리고 세상에 영합한다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萃」六二曰：“引，吉，無咎。”謂處坤之中，己獨處正與衆殊異。民之多僻，獨正者未能變體以遠於害，故必見引，然後乃吉而無咎也。凡此皆治身之道也。

「萃(萃)」괘²⁷¹⁾ 육이효에 “끌어당기면 길하여 허물이 없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곤(坤:下體)의 가운데에 처하였으니, 자기 홀로 바름에 처하여 대중과 다르다. 백성들은 편벽함이 많으니 홀로 바른 사람이 능히 체(體:坤)를 바꾸어 해(害)에서 멀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끌어당김을 본 뒤에야 길하고 허물이 없다는 것이다. 무릇 이것은 모두 ‘몸을 다스리는 도’이다.

或曰：修身及家，自天子達庶人，一也。請問家道，

曰：「蠱」初六曰：“幹父之蠱，有子，考無咎。厲，終吉。”「象」曰：“幹父之蠱，意承考也。”謂幹父之事，不可大小損益，一依父命，當量事制宜，以意承考而已。九二曰：“幹母之蠱，不可貞。”「象」曰：“幹母之蠱，得中道也。”謂婦人之性，難可全正，宜屈己剛，既幹且順。故曰：不可正也。雖不宜全正，亦不可納之於邪，故曰：得中道也。

몸을 닦는 것과 가정을 다스리는 것은 천자부터 서인까지 동일합니다. ‘가정을 다스리는 도’를 청하여 묻습니다.

「고(蠱)」괘²⁷²⁾ 초륙효에 “아버지의 일을 주간함이니,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가 허물이 없다. 위태로워하면 마침내 길하다.”라고 하였고, 「상(象)」에 “간부지고(幹父之蠱)는 뜻이 아버지를 계승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아버지의 일을 주간할 때 대소(大小)와 손익(損益) 할 것 없이 하나같이 아버지의 명에 의지하여야 한다. 마땅히 일을 헤아려 마땅함을 다스리고 뜻으로써 아버지를 받들 따름이다. 구이효에 “어머니의 일을 주간함이니, 바른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였고, 「상(象)」에 “간모지고(幹母之蠱)는 중도를 얻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부인의 성정은 온전히 바르기가 어려우니 마땅히 자기의 강함을 굽혀야 할

271) 『周易』45.

272) 『周易』18.

것이다. 이미 주관하고 또한 순종하므로 ‘불가정(不可正)’이라고 말한 것이다. 비록 온전히 바른 것이 마땅하지 않으나 또한 사특함에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아니하므로 ‘득중도(得中道)’라고 말한 것이다.

「家人」初九曰：“閒有家，悔亡。” 謂治家之法，及其志之未變而豫防之，則悔亡也。家瀆而後嚴之，則無逮矣。九三曰：“家人，嗃嗃，悔厲，吉。婦子嘻嘻，終吝。” 謂家人雖嗃嗃，悔其酷厲，猶保其吉。婦子嘻嘻，乃失其節也。是威克厥愛，家道之善者矣。

「가인(家人)」괘²⁷³⁾ 초구효에 “가정에 법도로 막는 것이 있으면 후회가 없다.” 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가정을 다스리는 법은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에 미쳐 예방하면 후회가 없다는 것이다. 집안이 더럽혀진 뒤에 엄하게 한들 미치지 못할 것이다. 구삼효에 “집안 사람이 원망하니 엄함을 후회하면 길하다. 부인과 자녀가 희희낙락하면 마침내 부끄러울 것이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집안 사람이 비록 원망하여도 그 혹독하고 엄했던 것을 누우치면 오히려 그 길함을 보전할 것이다. 부인과 자식이 희희낙락하는 것은 그 예절을 잃은 것이다. ‘위엄이 그 사랑을 이기는 것’이 ‘집안을 다스리는 도’의 선한 것이다.

易論第五

或曰：修身及家，前聞之矣。請問凡所以遇於人，何如？

曰：夫上之遇下有道。「屯」初九曰：“盤桓，利居貞，利建侯。” 「象」曰：“雖盤桓，志行正也。以貴下賤，大得民也。” 貴謂陽，賤謂陰也。初九之陽，在三陰之下，是以貴下賤，故大得民心也。

역론 제5

몸을 닦는 것과 가정을 다스리는 것은 전에 들었습니다. 무릇 ‘사람을 대하는

273) 『周易』37.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청하여 묻습니다.

무릇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하는 것이 도가 있다. 「둔(屯)」괘 초구효에 “머무르는 것이니 바름에 거하는 것이 이롭고, 후(侯)를 세우는 것이 이롭다.”라고 하였고 「상(象)」에 “비록 머물러 있더라도 뜻은 정도를 행하는 것이다. 귀함으로써 천한 사람에게 낮추니 크게 민심을 얻는다.”라고 하였다. 귀(貴)는 양(陽)을 말하고, 천(賤)은 음(陰)을 말한다. 초구의 양효가 세 개 음(陰:六二·六三·六四)효 아래 있으니, 귀함으로써 천한 사람에게 낮추므로 크게 민심을 얻는 것이다.

「無妄」初九曰：“無妄，往，吉。”「象」曰：“無妄之往，得志也。”亦謂體剛處下，以貴下賤，行不犯妄，故往得其志也。

「무망(無妄)」괘²⁷⁴⁾ 초구효에 “망녕됨이 없으니 가면 길하다.”라고 하였고, 「상(象)」에 “망녕됨이 없이 가는 것은 뜻을 얻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말하자면 강(剛:九)의 체질로 아래에 처하여 귀함으로써 천한 사람에게 낮추고, 행실이 망녕됨을 범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가면 그 뜻을 얻는 것이다.

「困」九二曰：“困于酒食，朱紱方來，利用亨祀。征，凶，無咎。”謂以陽居陰，尚謙者也。體夫剛質，而用中履謙，應不在一，心無所私，雖以處困，物莫不至，不勝豐衍。故曰：困于酒食也。能招異方，故曰：朱紱方來也。然而不可以瀆也。

「곤(困)」괘²⁷⁵⁾ 구이효에 “술과 음식에 곤궁하나 붉은 제복(祭服)이 바야흐로 오니 제사에 이롭다. 가면 흉하나 허물은 없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양(陽:九)으로써 음(陰:二)의 자리에 거하였으니 겸손을 숭상하는 사람이다. 강한 바탕의 체질로 중도를 쓰고 겸손을 이행한다. 응함이 하나가 아니나 마음에 사사로운 것이 없으니, 비록 곤궁함에 처하여도 사물이 이르지 아니함이 없어 풍성함을 이길 수 없다. 그러므로 ‘곤우주식(困于酒食)’이라고 말한 것이요, 능히 이방을 초청하므로 ‘주불방래(朱紱方來)’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더럽힐 수 없다.

274) 『周易』25.

275) 『周易』47.

「頤」六四曰：“顛頤，吉。虎視眈眈，其欲逐逐，無咎。”謂居得其位，以上養下，得頤之義，而下交不可以瀆。故虎視眈眈，威而不猛，不惡而嚴也。

「이(頤)」괘²⁷⁶⁾ 육사효에 “전도되어 길러주는 것이나 길하다. 호랑이가 보는 것을 노려보고 노려보며 그 욕망을 계속하고 계속하면 허물이 없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거함이 그 자리를 얻어 윗사람으로써 아래를 기르니 「이」의 의미를 얻었으나 아랫사람과 교제하는 것은 더럽혀져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호시탐탐하여 위엄이 있으면서도 사납지 아니하며²⁷⁷⁾ 미워하지 아니하면서도 엄한 것²⁷⁸⁾이다.

夫下之遇上有道。「大過」初六曰：“藉用白茅，無咎。”謂以柔處下，心能謹慎，故得無咎也。

무릇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대하는 것이 도가 있다. 「대과(大過)」괘²⁷⁹⁾ 초륙효에 “깔되 흰 띠풀을 쓰니 허물이 없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유(柔:六)로써 아래에 처하여 마음으로 능히 삼가므로 허물이 없는 것이다.

「訟」六三曰：“食舊德，貞，厲，終吉。或從王事，無成。”謂體夫柔弱，以順於上，不爲九二自下訟上，不見侵奪，保全其有，故得食其舊德而不失也。然而不可以諂也。

「송(訟)」괘²⁸⁰⁾ 육삼효에 “옛날 덕을 먹으니 바르면 위태로우나 마침내 길하다. 옥 왕의 일을 따르나 이롭지 않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유약한 체질로 위에서 순종하여 구이효가 아래에서부터 위로 소송하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침탈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있는 것을 보전하므로 그 구덕(舊德)을 먹고 잃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아첨해서는 안된다.

「頤」六三曰：“拂頤貞，凶。十年勿用，無攸利。”謂履夫不正以養於上，納上以諂者

276) 『周易』27.

277) 위엄이.....아니하며: 『論語』「述而」 37장. “子，溫而厲，威而不猛，恭而安.”

278) 미워하지.....것: 『周易』「遯」, 「大象」. “天下有山，遯. 君子以，遠小人，不惡而嚴.”

279) 『周易』28.

280) 『周易』6.

也. 處頤而爲此行, 十年見棄者也. 立行於斯, 無施而利也.

「이(頤)」괘²⁸¹⁾ 육삼효에 “기름[頤]의 정도에 어긋나니 흉하다. 10년을 쓰지 말 것이니 이로울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바르지 아니함으로써 윗사람에게 길러짐을 이행하니 윗사람에게 아첨을 들이는 사람이다. 「이」에 처하여 이런 행실을 하여 10년 동안 버림을 받는 사람이다. 이런 행동을 하니 이로울 것이 없다.

「兌」六三曰：“來兌, 凶.” 謂以不正而來求說, 邪佞之道, 故凶也.

「태(兌)」괘²⁸²⁾ 육삼효에 “와서 기뻐하는 것이니 흉하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바르지 아니함으로써 와서 기쁘기를 구하는 것은 간사하고 아첨하는 도이므로 흉한 것이다.

「巽」九二曰：“巽在牀下, 用史巫, 紛若, 吉, 無咎.” 謂處巽之中, 既在下位, 而復以陽居陰卑, 巽之甚. 故曰: 巽在床下也. 若惟施至, 卑於神祇, 而不用之於威勢, 則得吉而無咎也.

「손(巽)」괘²⁸³⁾ 구이효에 “공손함이 평상 아래에 있으니 사무(史巫)를 쓰는 것이 많으면 길하고 허물이 없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손(巽: 下體)」의 가운데에 처하여 이미 하위에 있고, 다시 양효로써 음비(陰卑: 二)에 거하였으니 공손함이 심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손함이 평상 아래에 있다.”라고 말한 것이다. 오직 지극함을 베풀어 하늘과 땅의 신에게 낮추고 위세를 쓰지 아니하면 길함을 얻고 허물이 없을 것이다.

夫陽爲君子, 陰爲小人, 同於君子則吉, 附於小人則凶. 「臨」九二曰：“咸臨, 吉, 無不利.” 謂有應在五, 而五體柔, 若順於五, 則剛德不長矣. 雖感應之時, 不可全與.

281) 『周易』27.

282) 『周易』58.

283) 『周易』57.

相違必未順其命，乃得吉，無不利也。六四曰：“至臨，無咎。”謂處順履正，不忌剛長，而乃應之，故得無咎也。

무릇 양(陽)은 군자가 되고 음(陰)은 소인이 되니, 군자와 함께하면 길하고 소인에 붙으면 흉하다. 「臨」괘²⁸⁴⁾ 구이효에 “함림(咸臨)이니 길하여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응이 육오효에 있는데 육오효는 유(柔)의 체질이니 만약 육오효에게 순종하면 강덕(剛德)이 자라지 않을 것이다. 비록 감응의 때라도 온전히 함께하는 것은 옳지 아니하다. 서로 어긋나 반드시 그 명에 순종하지 않아야 길함을 얻고 이롭지 아니함이 없을 것이다. 육사효에 “지극히 임함이니 허물이 없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순(順:坤)에 처하고 정(正:四)을 밟았으니, 강(剛:初九)이 자라는 것을 꺼리지 아니하고 응하므로 허물이 없는 것이다.

「剝」六三曰：“剝之無咎。”謂與上爲應，群陰剝陽，我獨協焉。雖處于剝，可以無咎也。

「박(剝)」괘²⁸⁵⁾ 육삼효에 “「박」가운데 허물이 없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상(上:上九)과 응이 되니, 군음(群陰:初六·六二·六四·六五)이 양(陽:上九)을 깎아내리는데 나만 홀로 협력한다. 비록 「박」에 처하였지만 허물이 없을 수 있는 것이다

「夬」九三曰：“壯于頄，有凶。君子夬夬。獨行，遇雨，若濡，有愠，無咎。”謂夬爲剛長，而三獨應上六，助於小人，是以凶也。君子處之，必能棄夫情累，決之不疑，故曰：“君子夬夬”也。若不與衆陽爲群，而獨行殊志，應於小人，則受其困焉。遇雨若濡，有恨而無所咎也。

「夬(夬)」괘²⁸⁶⁾ 구삼효에 “광대뼈에 장성하니 흉이 있다. 군자는 결단을 쾌하게 하니 홀로 행하여 비를 만나 젖은 듯하고 성냄이 있으나 허물은 없다.”²⁸⁷⁾라고

284) 『周易』19.

285) 『周易』23.

286) 『周易』43.

287) 광대뼈에.....없다: 李觀는 王弼注를 따르고 있으나, 程頤는 『伊川易傳』에서 爻辭差錯을 언급하였다. 程頤에 의하면 爻辭는 “壯于頄，有凶，獨行遇雨，君子夬夬，若濡有愠，無咎.”로 바로잡아야

하였다. 말하자면 「괘」는 강(剛:陽)이 자라나는 괘²⁸⁸⁾인데, 구삼효가 홀로 상륙효와 응하여 소인에게 도움을 받으니 이로써 흥한 것이다. 군자가 처신함에 반드시 능히 정(情)으로 매인 것을 버리고 결단하기를 의심이 없어야 하므로 “군자괘괘(君子夫夫)”라고 말한 것이다. 만약 여러 양효들과 더불어 무리짓지 아니하고 홀로 가서 뜻을 달리하여 소인과 응하면 그 곤욕을 받을 것이다. 비를 만나고, 젖은 듯 하며, 한(恨)이 있어도 허물할 것이 없다.

夫心貴乎公，而量貴乎大．公則視人如一，大則無物不包．視人如一，則惟善是從也，無物不包，則雖患有處也．「比」初六曰：“有孚比之，無咎．有孚盈缶，終來有它吉．”謂處比之首，應不在一，心無私吝，則莫不比之．故必有它吉也．

무릇 마음[心]은 공변됨[公]이 귀하고, 양(量)은 큼[大]이 귀하다. 공변되면 사람을 보는 것이 하나 같고, 크면 어떤 물건도 포함하지 않음이 없다. 사람을 보는 것이 하나 같으면 오직 선(善)을 이에 따르고, 어떤 물건도 포함하지 않음이 없으면 비록 어리석더라도 처함이 있을 것이다. 「비(比)」괘²⁸⁹⁾ 초륙효에 “믿음이 있고 친하여야 허물이 없다. 믿음이 있어 장군에 가득차면 마침내 다른 길함도 있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비」의 처음에 처하여 응이 하나에 있지 않으니 마음에 사린(私吝)이 있지 아니하면 친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다른 길함도 있는 것이다.

「同人」初九曰：“同人于門，無咎．”謂爲同人之首，而無應於上，心無係吝，通夫大同．出門皆同，誰與爲吝也．

「동인(同人)」괘²⁹⁰⁾ 초구효에 “사람과 함께함에 문을 나서니 허물이 없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동인」의 처음에 처하여 위에 응이 없으니, 마음에 매임이 없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朱熹는 『周易本義』에서 王弼注와 李觀의 句法을 따랐다.

288) 「괘」는.....괘: 初九부터 九五까지 모두 陽爻이고 맨위 上六爻 하나만 陰爻인 것을 말한다. 陽이 자라나면서 陰爻를 決斷하는 형국인데, 李觀은 九三爻가 홀로 전열을 이탈하여 上六爻와 동조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

289) 『周易』8.

290) 『周易』13.

어 대동(大同)에 통한다. 문을 나서면 모두 같으니 누구와 더불어 허물이 있으리 오.

「兌」初九曰：“和兌，吉。”謂居兌之初，應不在一，無所黨係，和兌之謂也。說不在諂，履斯而行，未見有疑之者，吉其宜矣。

「태(兌)」괘²⁹¹⁾ 초구효에 “화태(和兌)니 길하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태」의 처음에 거하여 응이 하나에 있지 아니하다. 당(黨)에 매인 것이 없으니 ‘화태’라고 말한 것이다. 기뻐함이 아침에 있지 아니하다. 이를 밟고 행하면 의심하는 자가 있는 것을 볼 수 없으니 길함이 마땅하다.

「大過」九四曰：“棟隆，吉，有它，吝。”謂雖能拯其弱，不爲下所撓，而應在初，用心不廣，故有它吝也。

「대과(大過)」괘²⁹²⁾ 구사효에 “기둥이 높으니 길하나 다른 마음을 두면 부끄러울 것이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비록 능히 그 약(弱:四)함을 구제하여 아래로 휘지 아니하나 응이 초륙효에 있어 마음 씀이 넓지 못하므로 ‘다른 마음을 두면 부끄러울 것’이라고 한 것이다..

「蒙」九二曰：“包蒙，吉，納婦，吉，子克家。”謂以剛居中，童蒙所歸也。包而不距，則遠近咸至，故包蒙吉也。

「몽(蒙)」괘²⁹³⁾ 구이효에 “몽매함을 포용하니 길하다. 부인을 들이니 길하다. 자식이 집안일을 능히 다스린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강(剛:九)으로써 중(中:二)에 거하니 동몽이 돌아가는 곳이다. 포용하고 거절하지 아니하면 멀고 가까운 곳에서 다 이르므로 ‘포몽길(包蒙吉)’이라고 한 것이다.

291) 『周易』58.

292) 『周易』28.

293) 『周易』4.

「泰」九二曰：“包荒，用馮河，不遐遺，朋亡，得尚于中行。”謂體健居中，而用乎泰，能包含荒穢，受納馮河者也。用心廣大，無所遐棄，無所朋黨，乃可以得配于五也。凡此皆遇人之道也。

「태(泰)」괘²⁹⁴) 구이효에 “거친 것을 포용하며, 황하를 맨몸으로 건너는 무모함을 쓰며, 먼 곳을 버리지 아니하며, 붕(朋:黨與)가 없어지면 중행(中行)에 배합(配合)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건체(健體:乾)의 중앙에 거하여 태평이도를 쓰니 능히 거칠고 더러움을 포함하며, 황하를 맨몸으로 건너는 무모함도 받아 들인다. 마음 씀이 광대하여 먼곳도 포기함이 없으며, 붕당하는 것도 없으니 구오효에 배합될 수 있다. 무릇 이는 모두 ‘사람을 대하는 도’이다.

易論第六

或曰：吉凶悔吝，生乎動者也。請問動而無悔則奚由？

曰：時乎時，智者弗能違矣。先時而動者，妄也。後時而不進者，怠也。妄者過之媒，怠者功之賊也。「蹇」初六曰：“往，蹇。來，譽。”謂處難之始，居止之初，獨見前識，觀險而止，以待其時。故往則遇蹇，來則譽也。

역론 제6

길(吉)·흉(凶)·회(悔)·린(吝)은 움직임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청하여 묻노니 움직여도 후회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때[時]에 때를 맞추어야 하니 지혜로운 사람은 능히 어기지 아니한다. 때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은 망동(妄動)이다. 때보다 뒤에 나아가지도 않는 것은 게으름이다. 망동이라는 것은 과실(過失)의 매개(媒介)요, 게으름이라는 것은 성공(成功)의 적이다. 「건(蹇)」괘²⁹⁵) 초륙효에 “가면 힘들다. 오면 명예롭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어려움의 처음에 처하고 그침[지:良]의 처음에 거하였으나, 홀로 앞을 내다보는 식견으로 험난함을 목도하고 그쳐서 그 때를 기다리므로 가면 어

294) 『周易』11.

295) 『周易』39.

러움을 만나고 오면 명예로운 것이다.

「歸妹」六三曰：“歸妹以須，反歸以娣。”謂室主猶存而求進焉，進未值時，故有須也。不可以進，故反歸待時，以娣乃行也。凡此，不可先時者也。

「귀매(歸妹)」괘²⁹⁶) 육삼효에 “누이를 시집보내는데 기다리니, 돌아와 잉첩이 된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집의 주인이 오히려 있는데 나아가기를 구하였으나 나아감에 때를 만나지 못하므로 기다림이 있는 것이다. 나아가면 안 되므로 돌아와 때를 기다려 잉첩으로써 행하는 것이다. 무릇 이는 ‘때 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들이다.

「豐」上六曰：“豐其屋，蔀其家。窺其戶，閔其無人，三歲不覲，凶。”謂處於明動尚大之時，而深自幽隱，以高其行。大道既濟，而猶不見隱，不爲賢，更爲反道，凶其室也。三年豐道之成，治道未濟，隱猶可也，既濟而隱，以治爲亂也。

「풍(豐)」괘²⁹⁷) 상륙효에 “그 집을 크게 하고, 그 집에 차양을 쳤다. 그 문을 엿보니 조용하여 사람이 없어 3년이 지나도 볼 수 없으니 흉하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밝음이 움직이고 큼을 숭상하는 때에 처하였는데 깊이 스스로 숨기며 그 행실을 고상히 한다. 큰 도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오히려 숨은 것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어짐을 하지 아니하여 다시 도에 반하니 그 집을 흉하게 할 것이다. 3년간 풍성함의 도가 이루어졌다. 다스림의 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숨는 것은 오히려 옳은 일이나, 이미 이루어졌는데 숨는 것은 치세(治世)를 난세(亂世)라고 여긴 것이다.

「節」九二曰：“不出門庭，凶。”謂初已造之，至二宜宣其制矣，而故匿之。失時之極，則遂廢矣。故不出門庭則凶也。凡此，不可後時者也。嗚呼，進取之時易見，退避之時難知。蓋利者，人之所欲，欲則存諸心，存諸心則計之熟矣。害者，人之所惡，惡則幸其無之，而不知爲謀矣。

296) 『周易』54.

297) 『周易』55.

「절(節)」괘²⁹⁸⁾ 구이효에 “문안의 뜰을 나가지 않으니 흉하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초구효가 이미 나아갔으니, 구이효에 이르러 마땅히 그 통제를 베풀어야 하는데 고의로 숨겼다. 때의 지극함을 잃으면 드디어 폐지된다. 그러므로 문안의 뜰을 나가지 않으면 흉하다고 한 것이다. 무릇 이는 ‘때 보다 뒷서면 안되는 것’들이다. 오호라, 나아가고 취할 때는 보기 쉬우나 물러나고 피할 때는 알기 어렵다. 대개 이곳[利]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니, 하고자함은 곧 마음에 있고 마음에 있으면 셈이 익숙한 것이다. 해(害)라는 것은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이니, 미워함은 곧 그 없기를 바라는 것인데 꺾할 줄 모르는 것이다.

或人請問退避之道.

曰：君子見機而作，愚者闇於成事，禍至而避，亦無及也. 「渙」初六曰：“用拯，馬壯，吉.” 謂處散之初，乖散未甚，故可以遊，行得其志，而違於難也. 不在危劇，而後乃逃竄，故曰：“用拯馬壯吉”也.

혹자가 물러나고 피하는 도를 물었다.

군자는 낚새를 보고 일어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일을 이루는데 어두워 재앙이 이르러 피하더라도 또한 미치지 못한다. 「환(渙)」괘²⁹⁹⁾ 초륙효에 “구원하는데 말이 건장하니 길하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흩어짐의 처음에 처하여 괴산(乖散)이 심하지 아니하므로 자적할 수 있고, 행함에 그 뜻을 얻어 어려움에서 떠나간다. 위태로움이 심함에 있지 아니하고 뒤에 달아날 수 있으므로 “구원하는데 말이 건장하니 길하다.”라고 말한 것이다.

「遯」初六曰：“遯尾，厲. 勿用有攸往.” 謂處遯之時，而爲遯尾，禍所及也. 危至而後求行，難可免乎. 故勿用有攸往也. 然而矯枉過正，衆之所憎，和而不同，身乃無患.

「둔(遯)」괘³⁰⁰⁾ 초륙효에 “은둔의 꼬리이니 위태롭다. 가는 곳을 두지 말아야

298) 『周易』60.

299) 『周易』59.

한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은둔의 때에 처하여 은둔의 꼬리가 되었으니 재앙이 미치는 것이다. 위태로움이 이른 뒤에 행하기를 구하니 면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가는 곳을 두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굽은 것을 바로잡으려다 정(正)을 지나치는 것은 대중들이 미워하는 것이지만 조화롭되 뇌동하지 아니하면³⁰¹⁾ 몸은 이에 근심이 없다.

「明夷」初九曰：“明夷于飛，垂其翼。君子于行，三日不食。有攸往，主人有言。”謂處卦之始，最遠於難。遠難過甚，明夷遠遯，絕跡匿形，不由軌路，殊類過甚。以斯適人，人必疑之，故曰：“有攸往，主人有言”也。六二曰：“明夷，夷于左股，用拯馬壯，吉。”夷于左股，示不能行也。以柔居中，用夷其明，進不殊類，退不逃難，故可用拯馬而壯吉也。

「명이(明夷)」괘³⁰²⁾ 초구효에 “밝음이 상실할 때 날아가는 데 그 날개를 드리운다. 군자가 가는데 3일을 먹지 못한다. 갈 곳을 둠에 주인이 말을 한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괘의 처음에 처하여 어려움에서 가장 멀다. 어려움에서 먼 것이 지나치게 심하고, 「명이」에서 멀리 은둔하여 종적을 끊고 형체를 숨기며, 정한 길로 말미암지 아니하여 무리와 다름이 지나치게 심하다. 이로써 사람에게 가면 사람들이 반드시 의심하므로 “갈 곳을 둠에 주인이 말을 한다.”라고 말한 것이다. 육이효에 “「명이」에서 왼쪽 다리를 다치니 구원하되 말이 장성하면 길하다.”라고 하였다. 왼쪽다리를 다쳤다는 것은 능히 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유(柔:六)로써 중(中:二)에 거하여 그 밝음을 상하였으니, 나아감에 무리와 다르지 아니하고 물러남에 어려움에서 도망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구원하되 말이 장성하면 길할 수 있는 것이다.

夫有所避者，不可有所顧也。以欲而忘患，鱗屬所以死於餌也。「遯」九三曰：“係遯，有疾，厲。畜臣妾，吉。”謂在內近二，以陽附陰。宜遯而繫，故曰：“係遯。”遯之爲義，宜遠小人，以陽附陰，繫於所在，不能遠害，亦已憊矣，宜其屈辱而危厲也。繫於所

300) 『周易』33.

301) 조화롭되.....아니하면: 『論語』「子路」 23장. “子曰: 君子, 和而不同, 小人, 同而不和.”

302) 『周易』36.

在，畜臣妾可也。施於大事，凶之道也。九四曰：“好遯，君子吉，小人否。”謂處於外而有應於內。君子好遯，故能舍之，小人繫戀，是以否也。

무릇 피해야 할 것이 있는 사람은 고려할 바를 두어선 안된다. 욕망으로써 근심을 망각하는 것은 물고기가 미끼에 죽는 까닭인 것이다. 「둔(遯)」괘³⁰³⁾ 구상효에 “매여 있는 은둔이니 병이 있어 위태롭다. 신첩(臣妾)을 기름에는 길하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내괘(內卦:艮)에 있고 육이효에 가까우니, 양효로써 음(陰:六二)에 붙는다. 마땅히 은둔하여야 하는데 매여 있으므로 “계둔(係遯)”이라고 말한 것이다. 은둔의 의미는 마땅히 소인을 멀리하는 것인데, 양효로써 음효에 붙어, 있는 곳에 매여 있으니 능히 해를 멀리하지 못하고 또한 이미 고달픈 것이다. 그 굴욕과 위태로움이 마땅하다. 있는 곳에 매여 있는 것은 신첩을 기르는 데에는 옳으나, 큰 일을 행하는 데에는 흉한 도이다. 구사효에 “은둔을 좋아하는 것이니, 군자는 길하고 소인은 그렇게 못한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외괘(外卦:乾)에 처하였으나 응(應:初六)은 안에 있다. 군자는 은둔을 좋아하므로 능히 버리지만, 소인은 사랑에 매여 있으므로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다.

若夫分有所定，義不可去，則莫若守正之爲利也。「泰」九三曰：“無平不陂，無往不復。艱貞，無咎。勿恤其孚³⁰⁴⁾，于食有福。”謂處天地之將閉，平路之將陂，時將大變，世將大革，而居不失其正，動不失其應，艱而能正，不失其義，故無咎也。信義誠著，故“勿恤其孚于食有福”也。

무릇 분수에 정한 바가 있고 의리상 떠나갈 수 없다면 바름을 지키는 것이 이로움이 되는 것 만한 것이 없다. 「태(泰)」괘³⁰⁵⁾ 구상효에 “평평하기만 하고 기울어지지 않는 것은 없으며, 가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은 없다. 어려워도 바르면 허물이 없다. 근심하지 말고 믿음에 있으면 먹음에 복이 있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천지가 장차 달히려 하고 평평한 길이 장차 기울어지려는데 처하여,

303) 『周易』33.

304) 原註: ‘勿恤其孚’는 원래 탈락되었으나 四庫本, 光緒本, 『易』「泰」卦 九三爻辭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305) 『周易』11.

때가 장차 크게 변하고 세상이 장차 크게 개혁되려는데 거함이 그 바름을 잃지 아니하고 움직임이 그 응을 잃지 아니하여 어려워도 능히 바르고 그 의(義)를 잃지 않으므로 허물이 없는 것이다. 믿음과 의리가 정성스럽고 드러나므로 “근심하지 말고 믿음이 있으면 먹음에 복이 있다.”라고 한 것이다.

「明夷」六五曰：“箕子之明夷，利貞。”謂最近於晦，與難爲比，猶闇不能沒，明不可息，正不憂危，故“利貞”也。凡此，避禍之道也。詩曰：“既明且哲，以保其身。”此之謂也。

「명이(明夷)」괘³⁰⁶⁾ 육오효에 “기자(箕子)의 밝음이 감춰진 것이니 바름이 이롭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어둠에 가장 가까우니 더불어 나란히 하기가 힘들다. 어둠을 능히 물러나게 할 수 없고 밝음을 쉴 수도 없는 것과 같다. 바르게 하고 위태로움을 근심하지 아니하므로 “바름이 이롭다”라고 한 것이다. 무릇 이것은 ‘재앙을 피하는 도’이다. 『시(詩)』³⁰⁷⁾에 “이미 밝고 또 밝아 그 몸을 보전한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을 이룬 것이다.

易論第七

或曰：獨陰孰始，獨陽孰生，萬事云爲，未有不因人以成，故大則有君臣之交，小則有同志之會。變故非一，願聞其詳。

曰：人事之變，或遠而相應，或近而相得。遠而相應，君臣之分定也。近而相得，以各無應同志者也。然而應於遠者，或爲近所困。承於上者，或爲下所逼。臣欲應君，而寇難阻之。君欲應臣，而讒邪制之。惟其明哲，決所去就，秉心不回，終乃無過也。「屯」六二曰：“屯如遭如，乘馬班如。匪寇，婚媾。女子貞，不字，十年乃字。”謂志在乎五，不從於初。與初相近而不相得，困於侵害。時方屯難，正道未通，涉遠而行，難可以進。屯難之世，勢不過十年。十年則反常，反常則本志斯獲矣。

306) 『周易』36.

307) 『詩』「大雅」「烝民」.“肅肅王命，仲山甫將之，邦國若否，仲山甫明之，既明且哲，以保其身。夙夜匪解，以事一人。”

역론 제7

혹자가 말하였다. 음(陰)이 홀로 무엇을 시작할 것이며, 양(陽)이 홀로 무엇을 낳을 것입니까. 만사의 운위(云爲)가 사람으로 인하여 완성되지 아니함이 있지 않으므로 크게는 임금과 신하의 사귀어 있고 작게는 뜻을 같이하는 사람의 모임이 있습니다. 변화의 연고가 하나가 아니니 그 상세함을 듣기 원합니다.

인간사의 변화가 혹 멀어도 서로 응하기도 하고, 혹 가까우면서 서로 얻기도 한다. 멀어도 서로 응하는 것은 임금과 신하의 분수가 정해진 것이요, 가까우면서 서로 얻는 것은 각각 응이 없으면서 뜻이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멀리서 응하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 곤궁하게 하는 바가 되기도 하고, 윗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혹 아랫사람에게 핍박받는 바가 되기도 한다. 신하가 임금에게 응하고자 하여도 구난(寇難)이 저지하고, 임금이 신하에게 응하고자 하여도 참소하고 간사한 자들이 통제한다. 오직 그 명철한 사람이 거취(去就)를 결정하고, 잡은 마음을 돌리지 아니하여 마침내 허물이 없다. 「둔(屯)」괘³⁰⁸⁾ 육이효에 “어려워 하고 머뭇거리며, 말을 댄다가 내려 온다. 도둑이 아니라 혼인을 구하는 것이다. 여자가 정절을 지켜 정혼하지 않다가 10년이 지나 이에 정혼한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뜻이 구오효에 있어 초구효를 따르지 않는다. 초구효와 더불어 서로 가까우나 서로 얻지 못하여 침해받아 곤궁하다. 때가 바야흐로 어려운데 정도(正道)는 통하지 아니하고, 먼길을 지나 행하여 나아가기가 어렵다. 어려운 세상에 세력은 10년을 지나가지 않으니 10년이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오고 정상으로 돌아오면 본래의 뜻한 것을 이에 얻을 것이다.

「大有」九四曰：“匪其彭，無咎。”謂既失其位，而上近至尊之威，下比分權之臣，其爲懼也可謂危矣。唯夫有聖知者，乃能免斯咎也。三雖至盛，五不可舍，能辨斯數，專心承五，常匪其彭，則無咎矣。

「대유(大有)」괘³⁰⁹⁾ 구사효에 “그 지나치게 성대하지 아니하면 허물이 없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이미 그 자리를 잃고, 위로 지존의 위엄에 가까우며 아래로

308) 『周易』3.

309) 『周易』14.

권력을 분점한 신하와 가까우니 그 두려움은 가히 위태롭다고 이를만 하다. 오직 성지(聖知)가 있는 사람이라야 능히 이 허물을 면할 수 있다. 구삼효가 비록 지극히 성대하나 육오효를 버릴 수 없으니 능히 이 수를 분별하여 오릇한 마음으로 육오효를 받들어 항상 그 지나치게 성대하지 아니하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睽」六三曰：“見輿曳，其牛掣，其人，天且劓，魚器反。無初，有終。”謂以陰居陽，以柔乘剛。志在於上，而不和於四，二應於五，則近而不相比。故滯隔所在，不獲進也。四從上取，二從下取，而應在上九，執志不回。初雖受困，終獲剛助也。

「규(睽)」괘³¹⁰⁾ 육삼효에 “수레가 뒤로 끌리고, 그 소가 앞에서 저지당하며, 그 사람은 머리가 깎이고 코가 베이니 처음은 없고 끝은 있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음(陰:六)으로써 양(陽:四)에 거하고 유(柔:六)로써 강(剛:九二)을 탔다. 뜻은 위에 있어도 구사효와 화합되지 못하고, 구이효는 육오효에 응하니 곧 가까우나 서로 가깝지 못하다. 그러므로 있는 곳에서 정채되고 가로막혀 나아갈 수 없다. 구사효는 위로부터 취하고, 구이효는 아래로부터 취하는데, 응(應)은 상구효에 있으니 뜻을 잡고 변심하지 아니하면 처음에는 비록 곤궁함을 받아도 마침내 강(剛:上九)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

「漸」九五曰：“鴻漸于陸。婦三歲不孕，終莫之勝，吉。”謂進得中位，而隔乎三四，不得與其應合。然各履正而居中，三四不能久塞其塗，不過三歲必得所願矣。九三曰：“鴻漸于陸。夫征不復，婦孕不育，凶。”謂以陽爻爲下卦之主，而棄其群醜，與四相得，遂乃不反。夫征不復，樂於邪配，則婦亦不能執正矣。然小人之心中，惡直醜正，近不相得，亦宜備之。

「점(漸)」괘³¹¹⁾ 구오효에 “기러기가 구름에 점점 나아간다. 부인이 3년 동안 잉태하지 못하나 마침내 이기지 못하니 길하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나아감에 중(中:五)의 자리를 얻었으나 구삼효와 육사효에 막혀 그 응(應:六二)과 합하지

310) 『周易』38.

311) 『周易』53.

못한다. 그러나 각각 정도를 이행하고 중에 거하니 구상효와 육사효가 능히 오랫동안 그 길을 막지 못하고 불과 3년 만에 반드시 원하는 바를 얻을 것이다. 구상효에 “기러기가 물에 점점 나아간다. 남자는 가면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자는 잉태하더라도 기르지 못하니 흥하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양효로써 하괘(下卦:艮)의 주체가 되었으나 그 무리를 버리고 육사효와 서로 얻으니 드디어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남자가 가서 돌아오지 않는 것은 사특한 짝에 즐거워한 것이니 곧 여자도 또한 능히 정도를 잡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소인의 마음은 곧 음을 미워하고 바름을 추하게 여기니 가까워도 또한 서로 얻지 못한다. 또한 마땅히 대비해야 한다.³¹²⁾

「既濟」六四曰：“繻有衣袽，終日戒。”謂履得其正，而近不與三五相得，鄰於不親而得全者，終日戒也。

「기제(既濟)」괘³¹³⁾ 육사효에 “젖었을 때를 대비하여 옷과 헌옷을 두고 종일 경계한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밟는 것이 그 정(正:四)을 얻었으나 가까이 구상효·구오효와 더불어 서로 얻지 못하였으니 친하지 아니한 사람과 이웃하여 온전함을 얻은 사람이라 종일토록 경계하는 것이다.

抑又交際之間，理非一致。或名雖爲應，而實不相接，或義有可合，而情不相同。智者三思，故往而必納，愚者徑行，則動而多悔也。「屯」六四曰：“乘馬班如。求婚媾，往，吉，無不利。”謂二雖比初，執正不從，不害已志者也。求與合好，往必見納矣，故「象」曰：“求而往，明也。”

또한 교제하는 사이에 이치가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혹 명분은 비록 응이 되지만 실제 서로 접하지 아니하기도 하고, 혹 의리는 합할 듯 하지만 사정이 서로 같지 아니하기도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 번 생각하므로 가서 반드시 받아들여지고, 어리석은 사람은 곧장 행하니 움직여 후회가 많은 것이다. 「둔(屯)」

312) 또한.....한다: 『周易』「漸」卦 九三爻辭에는 ‘凶’字 뒤에 ‘利禦寇’세 글자가 더 있는데, 李觀는 이를 해석한 것이다. 『李觀集』의 편집과정에서 실수로 누락된 듯 하다.

313) 『周易』63.

괘³¹⁴) 육사효에 “말을 탔다가 다시 내려온다. 배필을 구하여 가면 길하여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육이효가 비록 초구효와 가까우나 정도를 잡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을 해치지 않는 사람이다. 더불어 좋게 합하기를 구하니, 가면 반드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러므로 「상(象)」에 “구하여 감은 현명한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小畜」初九曰：“復自道，何其咎。吉。” 謂處乾之始，以升巽初，四爲已應，不距已者也。以陽升陰，復自其道，順而無違，何所犯咎，得義之吉也。

「소축(小畜)」괘³¹⁵) 초구효에 “돌아오는 것이 도(道)로부터 하니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길하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건(乾:下卦)의 처음에 처하여 손(巽:上卦)의 처음으로 올라가니 육사효는 자기의 응이라 자기를 거절하지 않는 사람이다. 양(陽:初九)으로써 음(陰:六四)에 오르는 것은 ‘돌아옴에 그 도로부터 하는 것’이니 순리요 어김이 없는 것이다. 어디에 허물을 범함이 있겠는가. 의(義)를 얻어 길한 것이다

「隨」六三曰：“係丈夫，失小子。隨，有求，得，利居貞。” 謂雖體下卦，二已據初，將何所附。故舍初係四，志在丈夫。四俱無應，亦欲於已隨之，則得其所求也。

「수(隨)」괘³¹⁶) 육삼효에 “장부에 매이고 소자를 잃는다. 따름에 구함을 얻으나 바름에 거하는 것이 이롭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비록 몸은 하괘(下卦:震)이나 육이효는 이미 초구효에 근거하니 장차 어느 곳에 붙을 것인가. 그러므로 초구효를 버리고 구사효에 매이니 뜻이 장부에게 있는 것이다. 구사효도 함께 응이 없어 또한 자기에게 따르고자 하니 그 구하는 바를 얻을 것이다.

「睽」六五曰：“悔亡。厥宗，噬膚，往，何咎。” 謂有應在二，三雖比二，二之所噬，非妨已應者也。以斯而往，何咎之有。往必合也。凡此，智者之慮，能見彼情者也。

314) 『周易』3.

315) 『周易』9.

316) 『周易』17.

「규(睽)」괘³¹⁷⁾ 육오효에 “후회 없다. 그 일족이 살을 깨물 듯이 하면, 감에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응이 구이효에 있으니 육삼효가 비록 구이효와 가까우나 구이효가 깨무는 것은 자기의 응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로써 가면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가면 반드시 합할 것이다. 무릇 이는 지혜로운 사람의 사려가 능히 저쪽의 사정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屯」六三曰：“即鹿無虞，惟入于林中。君子幾，不如舍，往，吝。”謂三既近五，而無寇難。四雖比五，其志在初，不妨己路，可以進而無屯遭也。見路之易，不揆其志，五應在二³¹⁸⁾，往必不納，何異無虞以從禽，其可獲乎？故不如舍。往吝，窮也。

「둔(屯)」괘³¹⁹⁾ 육삼효에 “사슴을 따라 가는데 우인(虞人:길잡이)이 없어 숲속으로 들어갈 뿐이다. 군자는 낚새를 채고 (사슴을) 버리는 것만 못하니 가면 부끄러울 것이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육삼효는 이미 구오효에 가까운데 구난(寇難)이 없다. 육사효가 비록 구오효에 가까우나 그 뜻이 초구효에 있어 자기의 길을 방해하지 아니하니 나아감에 머뭇거림이 없을 수 있는 것이다. 길이 쉬운 것을 보고 그 뜻을 헤아리지 아니하며, 구오효의 응은 육이효에 있어 가더라도 반드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니 우인도 없이 짐승을 쫓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획득하겠는가? 그러므로 버리는 것만 못한 것이다. ‘가면 부끄럽다’는 것은 궁색하다는 것이다.

「大畜」九二曰：“輿說輹。”謂五處畜盛，未可犯也。遇斯而進，故輿說輹也。凡此，愚者之動，不知彼情者也。

「대축(大畜)」괘³²⁰⁾ 구이효에 “수레가 바퀴통이 빠졌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육오효가 저지함의 성대함에 처하였으니 범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만나 나아

317) 『周易』38.

318) 原註: ‘二’는 원래 ‘三’으로 되어 있었는데 光緒本과 『周易』王弼注에 근거하여 고쳤다.

319) 『周易』3.

320) 『周易』26.

갔으므로 수레가 바퀴통이 빠진 것이다. 무릇 이는 어리석은 사람이 움직임에 저쪽 사정을 알지 못한 것이다.

故亦有非應比各亢一方，而渙然合好，罔有猜嫌者。同患相恤，勢使之然也。「睽」九四曰：“睽孤，遇元夫，交孚，厲，無咎。”謂無應獨處，而初亦無應特立，處睽之時，俱在獨立，同處體下，故求其疇類而自託焉。相得無疑，故曰：“交孚。”雖在乖革，志可得行，雖危無咎也，故曰：“苟識其情，不憂乖遠，苟明其趣，不煩彊武。能說諸心，能研諸慮。睽而知其類，異而知其通，其唯明爻者乎！”

그러므로 또한 응(應)·비(比)도 아니고 각각 한 방면에서 높게 있었는데, 잘 풀려서 좋게 합하며 시기와 혐의가 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같은 근심에 서로 구원하니, 일의 형세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규(睽)」괘³²¹⁾ 구사효에 “어긋나는 때를 당면해 외로워 좋은 사람을 만나 서로 믿으니 위태로우나 허물이 없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응이 없이 홀로 처하고 있는데 초구효도 또한 응이 없이 우뚝 서있으니, 어긋나는 때에 처하여 함께 홀로 서있고 함께 상·하체의 아래에 처하므로 그 짝을 구하여 스스로 의탁하는 것이다. 서로 얼음이 의심할 것이 없으므로 “서로 믿는다.”라고 말한 것이다. 비록 어긋나고 변혁되는 때에 있으나 뜻을 행할 수 있으니 비록 위태로우나 허물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실로 그 사정을 알면 어긋나고 멀어짐을 근심하지 아니하고, 진실로 그 취향에 밝으면 강무(彊武)를 번거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능히 마음에 기뻐하며, 능히 생각에 연구한다. 어긋났으나 그 유사함을 알며, 다르되 그 통함을 아는 것은 그 오직 효에 밝은 사람이다.”³²²⁾라고 말한 것이다.

易論第八

或曰：天有常，故四時行，地有常，故萬物生，人有常，故德行成。而事或有變，勢

321) 『周易』38.

322) 진실로.....사람이다: 王弼의 『周易略例』「明爻通變」에서 인용하였다. 인용문에서 “苟識其情，不憂乖遠，苟明其趣，不煩彊武.”는 漸卦, “能說諸心，能研諸慮.”는 「繫辭」下, “睽而知其類，異而知其通.”은 睽卦 彖傳에서 온 것이다.

或有異，以常待之，其可乎？

曰：常者道之紀也，道不以權，弗能濟矣。是故權者，反常者也。事變矣，勢異矣，而一本於常，猶膠柱而鼓瑟也。「履」九五曰：“夬履，貞，厲。”謂履道尚謙，不喜處盈，而五以陽處陽，正當其位，是以危也。

역론 제8

혹자가 말했다. 하늘에 떳떳함[常]이 있으므로 사시(四時)가 운행되고, 땅에 떳떳함이 있으므로 만물이 생겨나고, 인간에 떳떳함이 있으므로 덕행(德行)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일에는 흑 변화가 있고, 형세는 흑 다름이 있거늘 떳떳함으로써 대하는 것이 옳은가?

떳떳함이라는 것은 도(道)의 기강이다. 도는 권도(權道)로써 아니하면 능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하므로 권도라는 것은 떳떳함의 반대인 것이다. 일은 변하고 형세는 달라졌는데 떳떳함에 한결같이 근본하는 것은 기러기발에 아교칠을 하고 비파를 치는 것과 같다. 「이(履)」괘³²³⁾ 구오효에 “강결(剛決)로 이행하는 것이니 바르더라도 위태롭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이행의 도는 겸손함을 숭상하고 가득참에 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데 구오효가 양(陽:九)으로써 양(陽:五)에 처하였으니 그 자리에 바로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므로써 위태로운 것이다.

「豐」六二曰：“豐其蔀。日中見斗，往，得疑疾。有孚發若，吉。”謂處明動之時，爻皆以居陽位，又不應陰爲美，而二以陰居陰，常於厥位，故幽而無覩，不能自發也。

「풍(豐)」괘³²⁴⁾ 육이효에 “그 차양을 풍성하게 하였다. 해가 있는 가운데 북두를 보니 가면 의심과 질투를 얻는다. 믿음을 두고 감발(感發)하면 길하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밝음[離]이 움직임[震] 때에 처하여, 효가 모두 양(陽)의 자리[位:初·三·五]에 거하고 또한 음(陰)과 응하지 않는 것으로써 아름다움을 삼는데 육이효는 음(陰:六)으로써 음(陰:二)에 거하여 그 자리에 항상 있으므로 어둡고 보는 것이 없어 능히 스스로 발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323) 『周易』10.

324) 『周易』55.

若夫排患³²⁵⁾解紛，量時制宜，事出一切，愈不可常也。「益」六三曰：“益之用凶事，無咎。有孚中行，告公用圭。”謂以陰居陽，處下卦之上，壯之甚也。語以謙沖，則罪可戮，用救衰危，則物所恃。故以此告公，國主所任也。

무릇 근심을 물리치고 어지러운 것을 해결하며, 때를 헤아려 마땅함을 다스리는 데에 일이 일체(一切)에서 나오는 것은 더욱 떳떳함[常]이 옳지 않다. 「익(益)」괘³²⁶⁾ 육상효에 “더하는 것을 굶은 일에 쓰면 허물이 없다. 믿음의 있고 중도를 행하면 공에게 알릴 때 규(圭)를 쓴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음(陰:六)으로써 양(陽:三)에 거하고, 하괘(下卦:震)의 위에 처하였으니 장성함이 심한 것이다. 말을 하되 겸손함과 속깊음으로써 하면 죄를 가히 죄줄 수 있고, 쇠약하고 위태로움을 구원함에 쓴다면 상대가 믿는 바가 된다. 그러므로 이로써 공에 고하니 나라의 주인이 신임하는 것이다.

「大過」九二曰：“枯楊生稊，老夫得其女妻，無不利。”謂以陽處陰，能過其本而救其弱者也。上無其應，心無係吝，處過以此，無衰不濟也。九三曰：“棟橈，凶。”謂居大過之時，處下體之極，不能救危拯弱，以隆其棟，而以陽處陽，自守所居，又應於上，係心在一，宜其淹溺而凶衰也。

「대과(大過)」괘³²⁷⁾ 구이효에 “마른 버드나무에 뿌리가 생기고, 늙은 남자가 그 아내를 얻으니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양(陽:九)으로써 음(陰:二)에 처하여 능히 그 근본을 지나치면서까지 그 약함을 구원하는 사람이다. 위에 그 응이 없어 마음에 매임과 부끄러움이 없다. 지나침에 처하기를 이로써 하면 어떠한 쇠함도 구제하지 못할 것이 없다. 구상효에 “기둥이 휘니 흉하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대과」의 때에 거하고 하체(下體:巽)의 끝에 처하여, 능히 위태로움을 구원하고 약한 사람을 건져서 그 기둥을 높이려 하지 않는다. 양(陽:九)으로써 양(陽:三)에 처하여 머무는 곳만을 스스로 지키고, 또 상륙효에 응하여

325) 原註: ‘患’은 光緒本에 ‘難’으로 되어 있다.

326) 『周易』42.

327) 『周易』28.

마음 매어 있는 것이 하나에 있으니, 그 적시고 빠져서 흥하고 쇠하여지는 것이 마땅하다.

或曰：甚哉，幹蠱之難也！才不勝任，亦可勉乎哉？

曰：驚駘疾走，不如良馬之安行也。小人飾智，不能及君子之任眞也。天命之性，有限乎中，苟非其宜，是以身釣禍也。「大有」九二曰：“大車以載，有攸往，無咎。”謂健不違中，爲五所任。任重不危，致遠不泥，故可以往而無咎也。

혹자가 말했다. 심하다, 일을 주간하기 어려움이어. 재능이 책임을 이기지 못하면 또한 힘을 써야 하는가.

노둔한 말이 짐을 싣고 빨리 가는 것은 양마(良馬)가 천천히 가는 것만 못하다. 소인이 지혜를 가장하는 것은 군자가 참됨에 맡기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 하늘이 명한 성(性)이 중심에 한정되어 있으니 진실로 그 마땅함이 아니면 이는 ‘몸으로써 재앙을 낚는 것’이다. 「대유(大有)」괘³²⁸ 구이효에 “큰 수레로써 실은 것이니 갈 곳을 두면 허물이 없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건(健:乾)이 중(中:二)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육오효의 신임을 받는다. 책임이 무거워도 위태롭지 아니하고 멀리 가도 빠지지 않으므로 가더라도 허물이 없을 수 있는 것이다.

「鼎」九四曰：“鼎，折足，覆公餗。其形，渥，凶。”謂處上體之下，而又應初，既承且施，非己所勝，故曰：“鼎，折足，覆公餗。”也。既覆公餗，體爲渥沾，智小謀大，不勝其任，受其至辱，災及其身，故曰：“其形，渥，凶。”也。

「정(鼎)」괘³²⁹ 구사효에 “솔이 다리가 부러져 공에게 바칠 내용물이 쏟아졌다. 그 몸이 젖었으니 흥하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상체(上體:離)의 아래에 처하고 또 초륙효에 응하니 이미 받드는 것과 베푸는 것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솔이 다리가 부러져 공에게 바칠 내용물이 쏟아졌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미 공에게 바칠 내용물이 쏟아져 몸이 젖었으니, 지혜는 작는데 모의는 커서 그 책임을 이기지 못하고 그 지극한 욕을 받아 재앙이 그 몸에 미치

328) 『周易』14.

329) 『周易』50.

므로 “그 몸이 젖었으니 흉하다.”라고 말한 것이다.

「解」六三曰：“負且乘，致寇至。”謂處非其位，履非其正。乘二負四，以容其身，小人而乘君子之器，盜思奪之矣。凡此，皆以身釣禍者也。

「해(解)」괘³³⁰⁾ 육삼효에 “짐을 져야하는데 또한 수레에 탔으니 도둑이 오게 하였다.”³³¹⁾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처함이 그 자리가 아니요, 밧은 곳이 그 바름이 아니다. 구이효를 타고 구사효를 짊어지면서 그 자신을 용납하려 하니 소인이 군자의 기물을 타서 도둑이 빼앗으려고 생각한 것이다. 무릇 이는 모두 ‘몸으로 써 재앙을 낚는 것’이다.

亦有才可適用，德可及物，而勢不可爲者，必謹察之也。「井」九二曰：“井谷，射鮒。甕敝漏。”謂處上宜下，處下宜上，而二無應於上，反下與初，故莫之與也。是卑者不可以有爲也。

또한 재주는 쓰기에 적합하고 덕은 물(物)에 미칠만 한데 형세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반드시 삼가 살펴야 한다. 「정(井)」괘³³²⁾ 구이효에 “우물이 골짜기와 같아 두꺼비에게만 쏟아진다. 독이 깨져 샌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위에 처하면 마땅히 아래로 하고 아래에 처하면 마땅히 위로 해야 하는데 구이효는 위에 응이 없어 반대로 아래로 초륙효와 함께 하고자 하므로 함께 할 사람이 없는 것이다. 이는 ‘낮은 사람이 어찌 해볼 수 없는 것’이다.

「旅」九三曰：“旅焚其次，喪其僮僕，貞，厲。”謂居下體之上，與二相得，以寄旅之身，而爲施下之道，與萌侵權，主之所疑，故次焚僕喪而身危也。是疏者不可以有爲也。凡此，亦所以釣禍也。

「여(旅)」괘³³³⁾ 구삼효에 “나그네가 그 자리를 태우고, 그 동복(童僕)을 잃었으

330) 『周易』40.

331) 짐을.....하였다: 『周易』「解」卦 爻辭에는 인용문 뒤에 ‘貞吝’두 글자가 더 있다.

332) 『周易』48.

니 바르더라도 위태롭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하체(下體:艮)의 위에 거하여 육이효와 더불어 서로 얻어서 나그네의 몸으로써 아래에 베푸는 도를 하니, 정사의 싹에 참여하여 권력을 침범하는 듯 하여 주인의 의심을 받으므로 자리가 불태워지고 동복을 잃고 몸이 위태로운 것이다.³³⁴⁾ 이는 ‘소원한 사람이 어찌 해볼 수 없는 것’이다. 무릇 이는 또한 ‘재앙을 낚는 것’이다.

或有不量其力，悖道逆理，以圖非望，茲又罪之至也。「履」六三曰：“眇能視，跛能履。履虎尾，咥人，凶。武人爲于大君。”謂以陰居陽，以柔乘剛，志在剛健，不修所履，欲以陵武於人，爲于大君。行未能免於凶，而志存于五³³⁵⁾，頑之甚也。

혹 그 힘을 헤아려 보지 아니한 채 도에 어긋나고 이치를 거역하여 바라서는 안 될 것을 도모하는 것이 있으니 이는 또한 죄의 지극함이다. 「이(履)」괘³³⁶⁾ 육삼효에 “애꾸눈이 능히 보며, 절름발이가 능히 걷는다. 호랑이 꼬리를 밟아 사람을 물으니 흉하다. 무인이 대군(大君)이 된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음(陰:六)으로써 양(陽:三)에 거하고, 유(柔:六)로써 강(剛:九二)을 뒀다. 뜻은 강건(剛健:乾)에 있으면서 이행하는 것은 닦지 아니하며 사람을 무력으로 능멸함으로써 대군이 되고자 한다. 행실은 능히 흉을 면치 못하는데 뜻은 구오효에 있으니 완악함이 심하다.

「同人」九三曰：“伏戎于莽，升其高陵，三歲不興。”謂貪於所比，據上之應，其敵剛健，非力所當，故伏戎于莽，不敢顯亢也。升其高陵，望不敢進，量斯勢也，三歲不能興者也。三歲不能興，則五道亦已成矣，安所行焉。

「동인(同人)」괘³³⁷⁾ 구삼효에 “군사를 수풀속에 잠복시켜 놓고 그 높은 구름에

333) 『周易』56.

334) 하체(下體:艮)의.....것이다: 李觀는 旅卦 九三爻辭의 풀이에서 王弼注의 해당 구절을 한 글자도 빠짐 없이 그대로 인용하였다. 인용구는 孔穎達의 『周易正義』도 王弼注와 동일하다.

335) 原註: ‘五’는 원래 ‘王’으로 되어 있었는데 『周易』履卦 六三爻辭 王弼注를 살펴보면 당연히 ‘五’가 되어야 하므로 지금 이에 근거하여 고쳤다.

336) 『周易』10.

337) 『周易』13.

올라가 3년을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가까운 사람³³⁸⁾을 탐하며 상구효의 응에 근거하나 그 적(敵:九五)이 강건하여 힘으로 감당할 바가 아니므로 수풀에 군사를 잠복시켜 놓고 감히 드러내어 겨루지 못하는 것이다. 그 높은 구릉에 올라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것을 바라보고 이 형세를 헤아려 3년간 능히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다. 3년간 능히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곧 구오효의 도가 또한 이미 완성된 것이니 갈 곳이 어디인가.

「隨」上六曰：“拘係之，乃從維之，王用亨于西山。”謂隨之爲體，陰順陽者也。最處上極，不從者也。隨道已成，而時不從，故拘係之乃從也。

「수(隨)」괘³³⁹⁾ 상육효에 “붙잡아 매어야 이에 따라서 묶으니 왕이 서산에서 형통하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수」의 체(體)는 음(陰:兌)이 양(陽:震)을 따르는 것이다. (상육효는) 가장 위 끝에 처하였으니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수」의 도가 이미 완성되었는데 때에 따르지 아니하므로 붙잡아 매어야 이에 따르는 것이다.

「離」九四曰：“突如其來如。焚如，死如，棄如。”謂逼近至尊，履非其位，欲進其盛，以炎其上，命必不終也。噫，天不可違，人不可欺，忠孝之美，有生者所宜拳拳也。

「이(離)」괘³⁴⁰⁾ 구사효에 “돌격하듯이 온다. 불타는 듯하여 죽고 버림 받는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지존(至尊:六五)에 매우 가까워 밝고 있는 것이 그 자리가 아닌데 그 성대하게 나아가 그 위사람을 태울 듯 하니 명을 받드시 마치지 못할 것이다. 아, 하늘은 어길 수 없고 사람은 속일 수 없으니 충효의 아름다움을 살아 있는 사람은 마땅히 정성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338) 가까운 사람: 아래에 있는 六二爻를 말한다. 同人卦는 陽爻가 다섯이고 陰爻가 하나이다. 모든 陽爻가 陰爻와 함께하려 하고 우호적이다. 더구나 六二爻는 九三爻와 매우 가까운데 九三爻가 이를 차지하려고 한 것이다.

339) 『周易』17.

340) 『周易』30.

易論第九

或曰：如此乎，禍福之猶影響也。何從而慎諸？

曰：火之生也，一勺之勝，及其燎也，川流莫競。是故君子慎乎始也。「節」初九曰：“不出戶庭，無咎。”謂爲節之初，將整離散，而立制度者也。故明於通塞，慮於險僞，不出戶庭，慎密不失，然後事濟而無咎也。「夬」³⁴¹⁾初九曰：“壯于前趾。往，不勝，爲咎。”謂居健之初，爲決之始，宜審其策以行其事。壯其前趾，往而不勝，宜其咎也。

역론 제9

혹자가 말했다. 이와 같구나, 재앙과 복이 그림자와 메아리 같음이어. 어디서 부터 삼가야 하는가?

불이 일어나는 것은 한 잔 물로 끌 수 있는 곳에서부터 이지만 그 타오름에 미치면 냇물을 흘려부어도 끌 수 없다. 이따라서 군자는 시작을 삼간다. 「절(節)」³⁴²⁾ 초구효에 “호(戶) 밖의 뜰에 나가지 아니하면 허물이 없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절」의 처음이 되니 장차 흩어진 것들을 정리하여 제도를 세울 사람이다. 그러므로 통색(通塞)에 밝고 험위(險僞)를 염려하여 호 밖의 뜰에 나가지 아니한다. 신중하고 치밀하여 실수가 없어야 그러한 뒤에 일이 이루어져 허물이 없을 것이다. 「괘(夬)」³⁴³⁾ 초구효에 “앞발이 장성하다. 가서 이기지 못하면 허물이 된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건(健:乾)의 처음에 거하여 결단의 시작이 되니 마땅히 그 계책을 살펴서 그 일을 행하여야 한다. 그 앞발이 장성한데 가서 이기지 못하면 그 허물이 마땅할 것이다.

然則不慎而失之者，尚可及乎？

曰：亦在人之明與昧也。明者則辨之於早，過而能改，故可及也。昧者則以智飾非，至於貫盈，雖悔無及矣。「復」初九曰：“不遠復。無祇悔，元吉。”謂最處復初，始復者也。不遠而復，幾悔而反，以此修身，患難遠矣。錯之於事，其殆庶幾乎，故元吉也。

341) 原註: ‘夬’字는 원래 없었는데 四庫本과 『周易』夬卦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342) 『周易』60.

343) 『周易』43.

그렇다면 신중하지 못하여 실수한 사람은 오히려 만회할 수 있는가?

또한 사람의 명철함과 몽매함에 달려 있다. 명철한 사람은 일찍 분별하여 과실을 능히 고치므로 만회할 수 있다. 몽매한 사람은 지혜로써 그릇됨을 꾸미다가 가득참에 이르면 비록 후회하더라도 미치지 못한다. 「복(復)」괘³⁴⁴⁾ 초구효에 “멀리 가지 아니하고 돌아온다. 후회에 이르지 않으니 크게 길하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가장 「복」의 처음에 처하니 처음으로 돌아온 사람이다. 멀리 가지 아니하고 돌아오며 거의 후회할 뻔하다 돌아오니 이로써 수신하면 환난이 멀어질 것이다. 일에 조치하여 그 자못 거의 미치므로 크게 길한 것이다.

「需」九三曰：“需于泥，致寇至。”「象」曰：“需于泥，災在外也。自我致寇，敬³⁴⁵⁾慎，不敗也。”謂以剛逼難，欲進其道，所以招寇而致敵也。猶有須焉，不陷其剛。寇之來也，自我所招，恭慎防備，可以不敗也。

「수(需)」괘³⁴⁶⁾ 구삼효에 “진흙에서 기다리니 도둑이 오게 한다.”라고 하였고, 「상(象)」에 “수우니(需于泥)는 재앙이 밖에 있는 것이다. 도둑이 오는 것은 나로부터이니 삼가면 패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강(剛:九)으로써 어려움 [難:坎]에 가까운데 그 도를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도둑을 부르고 적을 오게 하는 것이다. 오히려 기다림이 있으면 그 강함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도둑이 오는 것은 내가 부르는 것으로부터이니 방비를 공경히 삼가면 패하지 않을 것이다.

「訟」九四曰：“不克訟。復即命，渝，安貞，吉。”謂處上訟下，可以改變者也。故其咎不大。若能反從本理，變前之命，安貞不犯，不失其道，爲仁由己，故吉從之也。

「송(訟)」괘³⁴⁷⁾ 구사효에 “소송에 이기지 못한다. 돌아와 명에 나아가서 변하고 바름에 편안하면 길하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위에 처하여 아래를 소송하니

344) 『周易』24.

345) 原註: ‘敬’은 원래 ‘恭’으로 되어 있었는데 四庫本, 光緒本과 『周易』需卦 九三 象辭에 근거하여 고쳤다.

346) 『周易』5.

347) 『周易』6.

고치고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 허물이 크지 않다. 만약 능히 돌이켜 본래의 이치를 따라서 앞의 명을 변하고, 바름에 편안하여 범하지 아니하며, 그 도를 잃지 아니하면 인(仁)을 하는 것이 자기로 말미암으므로 길이 따르는 것이다.

「噬嗑」初九曰：“履校，滅趾，無咎。”謂過輕戮薄，足懲而已，小懲大誡，乃得無咎也。

「서합(噬嗑)」괘³⁴⁸⁾ 초구효에 “족쇄를 채워 발을 상하였으니 허물이 없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과실이 가볍고 형벌이 박하여 발을 징계할 따름이니 작게 징계하여 크게 다스려진다면 이에 허물이 없어질 것이다.

「同人」九四曰：“乘其墉，弗克攻，吉。”謂履非其位，以與人爭。二自五應，三非犯己，攻三求二，尤而效之。違義傷理，衆所不與。故雖乘墉而不克也。不克則反自思過，以從法則，故得吉也。

「동인(同人)」괘³⁴⁹⁾ 구사효에 “그 담에 올라갔으나 능히 공격하지 못하니 길하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밟은 것이 그 자리가 아니어서 남과 더불어 다툰다. 육이효는 구오효로부터 응하고, 구삼효는 자기를 범하는 사람이 아니니, 구삼효를 공격하고 육이효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줄 알면서도 힘쓰는 것이다.³⁵⁰⁾ 의(義)를 어기고 이(理)을 상하면 대중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담에 올라도 능히 공격하지 못하는 것이다. 능히 공격하지 못하면 돌이켜 스스로 과실을 생각하여 법칙을 따르므로 길함을 얻는 것이다.

「臨」六三曰：“甘臨，無攸利。既憂之，無咎。”謂履非其位，居剛長之世，而以邪說臨物，宜其無攸利也。若能盡憂其危，改修其道，剛不害正，故咎不長也。凡此，辨之於早，可及者也。

348) 『周易』21.

349) 『周易』13.

350) 잘못된인.....것이다: 『左傳』僖公 24년조. “尤而效之, 罪又甚焉.”

「臨」괘³⁵¹⁾ 육삼효에 “달콤함으로 임하니 이로울 것이 없다. 이미 근심하니 허물이 없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밝은 것이 그 자리가 아니요, 강(剛:陽)이 자라나는 세상에 거하여 사특한 말로써 상대에게 임하니 그 이로울 것 없음이 마땅하다. 만약 능히 그 위태로움에 대한 근심을 다하여 그 도를 고치고 닦으면 강이 그 바름을 해치지 아니하므로 허물이 자라나지 않을 것이다. 무릇 이는 ‘일찍 분별하여 만회할 수 있는 것’이다.

「復」上六曰：“迷復，凶。有災眚，用行師，終有大敗，以其國，君，凶。至於十年，不克征。”謂最處復後，是迷者也。以迷求復，故曰：“迷復”也。用之行師，難用有克，終必大敗。用之於國，則反乎君道也。大敗乃復，量斯勢也。雖復十年修之，猶未能征也。

「복(復)」괘³⁵²⁾ 상륙효에 “돌아옴에 혼미하니 흉하다. 재앙이 있어 군사를 행하면 마침내 대패하고, 나라에 쓰면 임금이 흉하다. 10년에 이르도록 능히 가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복」의 가장 뒤에 처하니 이는 미혹한 사람이다. 미혹함으로써 「복」을 구하므로 ‘미복(迷復)’이라고 말한 것이다. 군사를 행하는데 쓰면 이기기 어려우니 마침내 반드시 대패한다. 나라에 쓰면 임금의 도에 반대가 된다. 대패하고 이에 돌아오는 것은 이 형세를 헤아리는 것이다. 비록 다시 10년을 닦아도 오히려 능히 가지 못한다.

「噬嗑」上九曰：“何校，滅耳，凶。”謂處罰之極，惡積不改者也。罪非所懲，故刑及其首，至于滅耳。及首非誠，滅耳非懲，凶莫甚焉。凡此，至於貫盈，雖悔無及者也。

「서함(噬嗑)」괘³⁵³⁾ 상구효에 “목에 칼을 차 귀를 멸하였으니 흉하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형벌의 끝에 처하였으니 악이 쌓여 고치지 않는 사람이다. 죄가 징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형벌이 그 머리에 미쳐서 귀를 멸함에 이른 것이

351) 『周易』19.

352) 『周易』24.

353) 『周易』21.

다. 머리에 미쳐도 다스려지지 아니하고 귀를 멀해도 다스려지지 않으니 흉이 이보다 심할 수 없다. 무릇 이는 ‘가득참에 이르러 비록 후회해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亦有勢猶可救，而弗用謀言，遂及敗覆者，茲又不明之甚也。「夬」九四曰：“臀無膚，其行次且。牽羊，悔亡，聞言，不信。”謂下剛而進，非己所據，必見侵食，失其所安，而五爲夬主，非下所侵。若牽於五，則可得悔亡而已。剛亢不能納言，自任所處，聞言不信，以斯而行，凶可知矣。噫，過而不能知，是不智也。知而不能改，是不勇也。持疑猶豫，目以無害，古之亡國敗家未嘗不以此也。

또한 형세는 오히려 만회할 수 있는데 꺾이는 말을 쓰지 아니하여 드디어 패하고 전복됨에 미치는 것이 있다. 「괘(夬)」괘³⁵⁴⁾ 구사효에 “불기에 살이 없고, 그 가는 것을 머뭇거리다. 양을 끌 듯 하면 후회가 없으나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아래에 강(剛:乾)이 나오니 자기가 웅거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반드시 침식(侵食)을 당하여 그 편안한 곳을 잃는다. 그런데 구오효는 「괘」의 주인이니 아래로 침범하지 않는다. 만약 구오효에게 끌려가면 후회가 없어질 수 있을 따름이다. 강(剛:九)이 높아 능히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처할 바를 자임하며, 말을 듣고도 믿지 않으니 이로써 행하면 흉함을 알 수 있다. 아,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능히 알지 못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요, 알고도 능히 고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의심을 지닌 채 머뭇거리다가 해로울 것 없다고 여겨버리니, 옛날에 나라를 망치고 가정을 망치는 것이 일찍이 이로써 하지 않음이 없었다.

易論第十

或曰：文王之囚，箕子之奴，豈其所自取哉？

曰：患自己招，斯可患也。患非己招，斯不足患也，其必免矣。如其不免，是有命焉，非智之過也。「節」六三曰：“不節若，則嗟若，無咎。”謂以陰處陽，以柔乘剛，違節之

354) 『周易』43.

道，以至哀嗟。自己所致，故無所怨咎也。此患自己招者也。

역론 제10

혹자가 말했다. 문왕이 수감된 것과 기자가 종이 된 것은 어찌 그 스스로 취하였는가?

근심이 자기로부터 초래하면 이는 근심해야 한다. 근심이 자기로부터 초래한 것이 아니면 이는 근심할 것이 못되니 그것은 반드시 면할 것이다. 만약 그것을 면치 못하면 이는 명이 있는 것이니 지혜로운 사람의 과실이 아니다. 「節」괘³⁵⁵ 육삼효에 “절제하지 아니하면 탄식할 것이니 허물할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음(陰:六)으로써 양(陽:三)에 처하고 유(柔:六)로써 강(剛:九二)을 댔으니 「절」의 도에 어긋나 슬퍼하고 탄식함에 이른 것이다. 자기로부터 초치한 것이므로 원망하고 탓할 곳이 없다. 이는 ‘근심이 자기로부터 초래한 것’이다.

「漸」初六曰：“鴻漸于干，小子厲，有言，無咎。”謂始進而未得其位，則困於小子，窮於謗言，故曰：“小子厲，有言”也。困於小子譏謬之言，未傷君子之義，故曰：“無咎”也。

「점(漸)」괘³⁵⁶ 초륙효에 “기러기가 물가에 나오니, 소자(小子)는 위태로워 말이 있으나 허물은 없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처음 나와 그 자리를 얻지 못하면 어린이에게 곤액을 당하여 비방하는 말에 곤궁하므로 “소자(小子)는 위태로워 말이 있다.”라고 말한 것이다. 어린아이들의 참소하고 잘못된 말에 곤궁한 것은 군자의 의(義)에 손상이 없으므로 “허물은 없다.”라고 말한 것이다.

「姤」九三曰：“臀無膚，其行次且，厲，無大咎。”謂處下體之極，而二據於初，不爲己乘，居不獲安。行無其應，不能牽據以固所處，故曰：“臀無膚，其行次且”也。於履得其位，非爲妄處。不遇其時，故使危厲。災非己招，是以無大咎也。此患非己招，必免者也。

355) 『周易』60.

356) 『周易』53.

「구(姤)」괘³⁵⁷⁾ 구상효에 “불기에 살이 없다. 그 가는 것이 머뭇거리니 위태로 우나 큰 허물은 없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하체(下體:巽)의 끝에 처하였으나 구이효가 초륙효에 근거하여 자기가 탈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으니 거처가 편안함을 얻지 못한다. 가더라고 그 응이 없으니 능히 근거를 이끌고 처한 곳을 견고하게 할 수 없으므로 “불기에 살이 없다. 그 가는 것이 머뭇거린다.”라고 말한 것이다. 밝은 것이 그 자리를 얻었으니 망녕히 처한 것은 아니다. 그 때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위태롭게 된 것이다. 재앙이 자기가 초래한 것이 아니니 이 때문에 큰 허물은 없는 것이다. 이는 ‘근심이 자기가 초래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면할 수 있는 것’이다.

「蹇」六四曰：“往蹇，來連。”謂往則無應，來則乘剛，往來皆難，故曰：“往蹇，來連。”然得位履正，當其本實，雖³⁵⁸⁾遇於難，非妄所招也。此患非己招，不可免者也。是有命焉，非智之過也。

「건(蹇)」괘³⁵⁹⁾ 육사효에 “가면 어렵고, 오면 연합한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가면 응이 없고 오면 강(剛:九三)을 타니 오는 것과 가는 것이 다 어려우므로 “가면 어렵고, 오면 연합한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자리[位:四]를 얻어 정(正)을 밝아서 그 본래의 실질에 당하였으니 비록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망녕됨이 부른 것이 아니다. 이는 ‘근심이 자기가 초래한 것이 아닌데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명(命)이 있는 것이니 지혜로운 사람의 과실이 아니다.

亦有進不違私，志在救難，以危其身。此又君子之大義，非智者之羞也。「大過」上六曰：“過涉滅頂。凶，無咎。”謂處大過之極，過之甚也。涉難過甚，故至於滅頂凶。志在救時，故不可咎也。

357) 『周易』44.

358) 原註: ‘雖’는 원래 ‘難’으로 되어 있었는데 光緒本과 『周易』蹇卦 六四爻辭 王弼注에 근거하여 고쳤다.

359) 『周易』39.

또한 나아감이 사사로움에 어기지 아니하고, 뜻이 어려움을 구제하는데 있으나 그 몸이 위태로워지는 것이 있다. 이는 또한 군자의 대의(大義)요, 지혜로운 사람의 수치가 아니다. 「대과(大過)」괘³⁶⁰⁾ 상륙효에 “지나치게 건너 이마를 멀하였다. 흥하나 허물은 없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대과」의 끝에 처하였으니 지나침이 심한 것이다. 어려움을 건너는 것이 지나치게 심하였으므로 이마를 멀하여 흥함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뜻은 시대를 구원하려는 데 있었으므로 탓할 수 없는 것이다.

古之人曰：“貪夫徇財，烈士徇名，夸者死權。”有所欲者必得所惡也。關龍逢死於夏，王子比干死於商，人臣之義，不得不然也。是故知幾之賢，少欲之士，拂衣塵外，高蹈不還。鴻飛冥冥，非弋人之所慕也。「蠱」上九曰：“不事王侯，高尚其事。”謂最處事上，而不累於職位，不承事王侯。但自高尚其事，故志可則也。

옛사람이 말하기를 “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재물을 따르고, 열사(烈士)는 명예를 따르고, 과시하려는 사람은 권력에 죽는다.”³⁶¹⁾라고 하였다. 욕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미움을 받는다. 관룡방은 하나라때 죽었고, 왕자비간은 상나라때 죽었으니 신하된 의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하므로 기미를 아는 어진이와 욕망이 적은 선비는 티끌 밖에 옷을 떨쳐 고상한 행실을 하고 돌아오지 않는다. 큰 기러기 아득한 곳에 날아, 활쏘는 사람이 겨냥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³⁶²⁾ 「고(蠱)」괘³⁶³⁾ 상구효에 “왕후(王侯)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고상히 한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일[事:蠱]의 가장 끝에 처하여 직위에 매이지 아니하고 왕후를 받들어 섬기지 않는다. 다만 스스로 그 일을 고상히 하므로 뜻을 본받을 만한 것이다.

「漸」上九曰：“鴻漸于陸。其羽可用爲儀，吉。”謂進處高潔，不累於位，無物可以屈其心而亂其志。峨峨清遠，儀可貴也。

360) 『周易』28.

361) 탐하는.....죽는다: 賈誼의 「鵬鳥賦」에 나오는 말이다.

362) 큰.....아니다: 揚雄의 『法言』「問明」에 나온다. 원문은 이렇하다. “鴻飛冥冥，弋人何慕焉。”

363) 『周易』18.

「점(漸)」괘³⁶⁴ 상구효에 “기러기가 공중³⁶⁵에 나아간다. 그 깃이 의표가 될 만 하니 길하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높고 깨끗한 곳에 나아가 처하여 자리에 매이지 아니하니 어떤 물건도 그 마음을 굴복시키고 그 뜻을 어지럽힐 것이 없다. 능름히 맑고 멀어 의표가 고귀하다.

「賁」初九曰：“賁其趾，舍車而徒。”謂在賁之始，以剛處下，居於無位，棄於不義，安夫徒步，以從其志者也。此，二疏以免於漢，四皓以免於秦。特立獨行，非凡所及也。噫，天道之變，日星循環，占之而不舛者，以知其數也。人事之動，情僞交錯，應之而不謬者，以知其勢也。持之以正，用之以中，百祿之來，弗可辭也已。噫，非天下之至變，其孰能與於此哉!

「비(賁)」괘³⁶⁶ 초구효에 “그 발을 꾸미는 것이니 수레를 버리고 걷는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비」의 처음에 있어 강(剛:陽)으로써 아래에 처하였으니, 자리가 없고 불의(不義)에 버림받아 도보를 편안히 여기면서 그 뜻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는 소광(疏廣)과 소수(疏受)가 한(漢)나라에서 면한 것이요, 상산사호(商山四皓)³⁶⁷가 진(秦)나라에서 면한 것이다. 우뚝 서서 홀로 행한 것이니 범인이 미칠 바가 아니다. 아, 천도(天道)의 변화는 해와 별이 순환하니 점을 쳐서 어긋나지 않는 것은 그 수(數)를 알기 때문이다. 인사(人事)의 움직임은 진실과 거짓이 서로 섞여 있으니 응하여 그릇됨이 없는 것은 그 형세를 알기 때문이다. 정(正)을 잡고, 중(中)을 쓰면 백록(百祿:百福)이 오는 것을 사양하지 않을 일이다. 아,

364) 『周易』53.

365) 공중: 上九爻辭의 풀이에서 李觀은 역시 王弼注를 따라서 한 글자도 다름없이 인용하였다. 그러나 程頤는 ‘陸’을 ‘達’로 보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胡瑗의 주장이다. 따라서 程頤에 의하면 ‘達’는 ‘雲路’가 되고 ‘虛空之中’이 된다. 또한 『爾雅』에 ‘九達’이라고 한 말을 인용하여 ‘通達無阻蔽’로 해석하였다. 朱熹도 程頤의 해석을 따랐다. 이 번역문에서는 程頤와 朱熹의 해석에 의거 ‘공중’으로 번역하였다.

366) 『周易』22.

367) 상산사호(商山四皓): 陝西省의 商山에 은거하던 네 노인, 곧 東園公, 綺里季, 夏黃公, 甬里先生을 말한다. 한고조가 이들의 말을 듣고 태자를 바꾸려던 계획을 철회한 이야기가 유명하다. 앞에 나온 疏廣, 疏受와 함께 무욕의 은자로 후세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인데 周興嗣의 『千字文』에도 거론 되어 있다. “綺回漢惠.”/“兩疏見機, 解組誰逼.”

천하의 지극한 변화를 다한 사람이 아니면 그 누가 능히 이에 참여하겠는가.

易論第十一

或曰：卦者，時也，爻者，適時之變者也。時既不一，事亦不同，不可相假者也。今子統而論之，毋乃拂於時乎？

曰：時雖異矣，事雖殊矣，然事以時變者，其跡也，統而論之者，其心也。跡或萬殊，而心或一揆也。若夫湯湯洪水，禹以是時而濬川，黎民阻飢，稷以是時而播種，百姓不親，契以是時而敷五教，蠻夷猾夏，皋陶以是時而明五刑。其跡殊，其所以爲心一也。統而論之，謂之有功可也。

역론제11

혹자가 말하였다. 괘(卦)라는 것은 때[時]요, 효(爻)라는 것은 때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다. 때가 이미 하나가 아니요, 일이 또한 같지 않으니 서로 빌릴 수 없는 것이다. 지금 당신은 통합하여 논하였으니 때에 어긋난 것 아닌가?

때가 비록 다르고 일이 비록 다르나 일이 때로써 변하는 것은 그 자취요, 통합하여 논한 것은 그 마음이다. 자취는 혹 만가지로 다르더라도 마음은 혹 하나로 헤아려 보는 것이다. 일령이는 홍수에 우(禹)는 이때 하천을 준설했고, 여민(黎民)이 굶주림에 직(稷)은 이때 파종하였고, 백성이 친하지 아니하니 설(契)은 다섯가지 가르침을 펴고, 만이(蠻夷)가 중국을 어지럽히니 고요(皋陶)는 이때 다섯가지 형벌을 밝혔다. 그 자취는 달라도 그 마음 씀은 하나이다. 통합하여 논하건대 “공(功)이 있다.”라고 이르는 것이 옳다.

亦有因時立事，事不局於一時，可爲百代常行之法者，如仁義忠信之例是也。故夫子於上下繫所稱者，十有九爻，未有言其時者，蓋事不局於一時也。是故時有大小。有以一世爲一時者，此其大也，有以一事爲一時者，此其小也。以一世爲一時者，「否」「泰」之類是也，天下之人共得之也。以一事爲一時者，「訟」「師」之類是也，當事之人獨得之也。

또한 때로 인하여 일을 세우는데 일은 한 때에 국한되지 않는 것이 있다. 백대(百代)에 항상 행하여야 할 법이 되는 것은 인(仁)·의(義)·충(忠)·신(信)의 예 같은 것이 이것이다. 그러므로 부자(夫子:孔子)가 상·하 계사전(繫辭傳)에서 칭한 것이 19개 효(爻)인데 그 때를 언급한 것이 있지 않은 것은 대개 일이 한 때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하므로 때는 작은 것과 큰 것이 있다. 일세(一世)로써 일시(一時)를 삼는 것이 있으니 이는 그 큰 것이요, 일사(一事)로써 일시(一時)를 삼는 것이 있으니 이는 그 작은 것이다. ‘일세(一世)로써 일시(一時)를 삼는 것’은 「비(否:12)」³⁶⁸와 「태(泰:11)」의 종류가 이것이니 천하의 사람이 함께 얻는 것이다. ‘일사(一事)로써 일시(一時)를 삼는 것’은 「송(訟:6)」과 「사(師:7)」의 종류가 이것이니 일에 해당하는 사람이 홀로 얻는 것이다.

借如今之世, 「泰」之時也, 天下所共矣, 而所遇之事, 人各不同. 若其倥侗之質, 求師辯惑, 「蒙」之時也. 立身向道, 非禮勿行, 「履」之時也. 居其德義, 以待施惠, 「井」之時也. 自遠之近, 觀鑒朝美, 「觀」之時也. 量能受任, 各當其分, 「鼎」之時也. 夙夜在公, 幹君之事, 「蠱」之時也. 用其剛正, 辯物之事, 「訟」之時也. 斷其刑罰, 無有不當, 「噬嗑」之時也. 出軍遣將, 以討不庭, 「師」之時也. 險難在前, 按兵觀釁, 「需」之時也. 民有困窮, 從而養之, 「頤」之時也. 事有所失, 知而改之, 「復」之時也. 禮有過差, 議而定之, 「節」之時也. 逸樂之情, 約之以正, 「豫」之時也. 文飾之盛, 反之於素, 「賁」之時也. 人有解慢, 示之以威, 「震」之時也.

가령 지금 세상은 「태(泰)」의 때이니 천하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나는 일은 사람마다 각각 같지 않다. 무지하고 몽매한 자질로 스승을 구하고 의혹을 분별하는 것은 「몽(蒙:4)」의 때이다. 몸을 세우고 도를 향하여 예가 아니면 행하지 않는 것은 「이(履:10)」의 때이다. 덕의(德義)에 거하여 시혜(施惠)를 기다리는 것은 「정(井:48)」의 때이다. 먼 곳으로부터 가까운 곳으로 가서 조정의 아름다움을 보고 귀감으로 삼는 것은 「관(觀:20)」의 때이다. 능력을 헤아려 책임을 받고 각각 그 분수에 마땅한 것은 「정(鼎:50)」의 때이다. 아침부터 밤까지 공조(公朝)

368) 「비(否:12)」: 괘호 속의 숫자는 『周易』 64괘에서 해당 괘의 순서이다. 이하 같다.

에 있으면서 임금의 일을 주관하는 것은 「고(蠱:18)」의 때이다. 강정(剛正)을 써서 물(物)을 분별하는 일은 「송(訟:6)」의 때이다. 형벌을 판단하고 부당함이 없는 것은 「서합(噬嗑:21)」의 때이다. 군사를 내고 장수를 보내 조회하지 않음을 토벌하는 것은 「사(師:7)」의 때이다. 어려움이 앞에 놓여있는데 군사를 살피고 틈을 보는 것은 「수(需:5)」의 때이다. 백성이 곤궁함이 있을 때 쫓아가서 기르는 것은 「이(頤:27)」의 때이다. 일이 실수한 것이 있을 때 알고 고치는 것은 「복(復:24)」의 때이다. 예(禮)에 지나치고 차이나는 것이 있을 때 의논하여 정하는 것은 「절(節:60)」의 때이다. 안일하게 즐기려는 감정을 정(正)으로써 묶는 것은 「예(豫:16)」의 때이다. 꾸밈이 성할 때 소박함으로 돌아오는 것은 「비(賁:22)」의 때이다. 사람이 풀어지고 태만할 때 위엄으로써 보이는 것은 「진(震:51)」의 때이다.

夫此之類，皆以一事爲一時，而諸卦之時，君之所遇者多，以事無不統也，臣之所遇者寡，以事有分職也。或一人之身而兼數事，或終食之久而移數時。時既屢遷，跡亦皆變，苟不求其心之所歸，而專視其跡，則散漫簡策，百紐千結，豈中材之所了邪？子曰：“天下何思何慮，天下同歸而殊塗，一致而百慮，天下何思何慮。”謂少則得，多則惑也。然則統而論之，不亦可乎？

무릇 이러한 종류는 모두 ‘일사(一事)로써 일시(一時)를 삼는 것’인데 모든 과거의 때가 임금이 만나는 것이 많은 것은 일이 통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요, 신하가 만나는 것이 적은 것은 일이 나누어진 직분이 있기 때문이다. 혹 한 사람의 몸에 여러 일을 겸하기도 하고, 혹 종식(終食)의 시간에도 여러 때가 옮기기도 한다. 때가 이미 자주 옮겨 자취 또한 모두 변하니, 진실로 그 마음의 돌아가는 곳은 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 자취만을 본다면 산만한 간책(簡策)을 백 번 매고 천 번 매더라도 어찌 보통 사람이 마칠 수 있을 것인가? 공자는 “천하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염려하겠는가. 천하가 돌아감은 같아도 길이 다르며, 이치는 하나이나 생각은 백가지니 천하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염려하겠는가.”³⁶⁹⁾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생각이) 적으면 얻고, 많으면 미혹되는 것이다. 그

369) 천하가..... 염려하겠는가: 『周易』「繫辭下傳」 5장.

렇다면 통합하여 논하는 것이 또한 옳지 아니한가?

易論第十二

或人請問. 「乾」「坤」何時也?

曰: 「乾」者, 聖人進取天位, 非承平之時也. 故初則潛, 二則見, 三則乾乾, 四則或躍, 五則飛, 上則亢也. 「坤」者, 聖人防閑臣下, 非大通之時也. 故初則履霜, 上則龍戰, 三則含章而不敢爲首, 四則括囊而後無咎, 五則黃裳而後元吉. 唯二居於下卦, 履其中正, 乃可任其自然也.

역론제12

혹자가 물었다. 「건(乾:1)」과 「곤(坤:2)」은 어느 때인가.

「건」이라는 것은 성인이 천위(天位)에 나아가는 것이니 승평(承平)의 때가 아니다. 그러므로 초구효는 ‘잠수하는 것’이요, 구이효는 ‘나타나는 것’이요, 구삼효는 ‘힘쓰고 힘쓰는 것’이요, 구사효는 ‘혹 뛰는 것’이요, 구오효는 ‘날아가는 것’이요, 상구효는 ‘지나치게 높은 것’이다. 「곤」이라는 것은 성인이 신하를 방한(防閑)하는 것이니 대통(大通)의 때가 아니다. 그러므로 초륙효는 ‘서리를 밟는 것’이요, 상륙효는 ‘용과 싸우는 것’이요, 육삼효는 ‘빛남을 머금어 감히 머리가 되지 말라는 것’이요, 육사효는 ‘주머니를 묶은 뒤에야 허물이 없는 것’이요, 육오효는 ‘노란 치마와 같은 뒤에야 크게 길한 것’이다. 오직 육이효는 하괘에 거하여 그 중(中)과 정(正)을 밟았으니, 이에 ‘그 자연에 맡겨둘만한 것’이다.

又問: 「大過」之時, 則務在救危, 「遯」「明夷」之時, 則貴乎避難, 何其不同也?

曰: 「大過」之時, 本末雖弱, 而未見君之昏亂, 臣之讒邪. 是國家之難, 何世無之? 君子之義, 不得不救也. 「遯」則小人得志, 「明夷」則闇主在上, 忠良之士, 徒見害而已, 無足可爲也. 君子之智, 不得不避也.

또 물었다. 「대과(大過:28)」의 때는 힘쓸 것이 ‘위태로움을 구원함’에 있는데,

「둔(遯:33)」과 「명이(明夷:36)」의 때는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귀하니 왜 같지 아니한가.

「대과」의 때는 본(本:初六)과 말(末:上六)이 비록 약하나, 임금이 어둡고 어지럽거나 신하가 참소하고 간사한 것은 볼 수 없다. 이 국가의 어려움은 어느 세상인들 없을까. 군자의 의(義)는 구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둔(遯)」은 소인이 뜻을 얻고, 「명이」는 암주(闇主)가 위에 있어 총량(忠良)의 선비가 한갓 해를 입을 따름이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군자의 지혜로도 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又問：陰爻浸長，皆小人道盛也。「剝」之五陰，「否」之三陰，小人衆多矣，而不見君子避之之意。二陰始進，而君子之遯，猶恐爲尾，何也？

曰：君子之道，知幾其神。故云二陰用事，小人將盛，而亟避之，則無患矣。苟至於否塞，至于剝落，而後退焉，不已晚乎？易之爲遯，所以示先見也。

또 물었다. 음효(陰爻)가 점점 자라나는 것은 모두 소인의 도가 성한 것이다. 「박(剝:23)」의 5개 음효와 「비(否:12)」의 3개 음효는 소인이 매우 많은 것인데도 ‘군자가 피한다’는 뜻을 볼 수 없다. (그런데 「둔(遯)」은) 2개의 음효(陰爻:初六·六二)가 비로소 나아가는 것 인데도 군자가 은둔함에 오히려 꼬리가 될까³⁷⁰⁾ 염려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군자의 도는 기미를 아는 것이 신과 같다.³⁷¹⁾ 그러므로 ‘2개의 음효가 권세를 부려 소인이 장차 성대할 것이니 빨리 피하면 근심이 없다’라고 이른 것이다. 진실로 비색(否塞)함에 이르고 박락(剝落)함에 이른 뒤에 물러난다면 너무 늦지 않겠는가. 『역(易)』에서 「둔(遯)」을 만든 것은 ‘앞서 보는 것’을 제시하려 한 것이다.

然則「剝」與「明夷」，孰爲大禍？

370) 군자가.....될까: ‘꼬리’라는 것은 遯卦 初六爻에 나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初爻는 시작을 의미하나 遯卦에서는 은둔의 때이므로 맨 위에 있는 효가 선두가 되고 가장 아래 있는 효가 후미가 된다. 은둔할 때는 선두에 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므로 뒤처지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371) 기미를.....같다: 『周易』「繫辭下傳」5장. “子曰 知幾其神乎.”

曰：小人雖盛，制之在君，故“貫魚，以宮人寵，則無不利。”是禍之小也。主之闇，則末如之何，故“南狩，得其大首。”是禍之大也。

그렇다면 「박(剝)」과 「명이(明夷)」는 어떤 것이 더 큰 재앙인가?

소인이 비록 성하더라도 제어하는 것이 임금에게 있으므로 “물고기를 꿰듯, 궁인이 총애를 받는 듯 하면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³⁷²⁾라고 하였으니 이는 재앙이 작은 것이다. 군주가 어두우면 어떻게 할 수 없으므로 “남쪽으로 사냥하여 그 대수(大首:首魁)를 얻는다.”³⁷³⁾라고 하였으니 이는 재앙이 큰 것이다.

又問：「屯」也，「蹇」也，「困」也，名相近也，請言其別。

曰：「屯」者，動乎險中，可爲之世也，然而足以有功矣。「蹇」者，見險而止，不可爲之世也，然而足以無過矣。「困」者，剛見揜於柔，君子爲小人所蔽，窮厄委頓者也。人之所患，莫斯之甚也。

또 물었다. 「屯(屯:3)」과 「건(蹇:39)」과 「곤(困:47)」은 이름이 서로 비슷한데 차별을 말해 달라.

「屯(屯)」이라는 것은 험(險:坎) 속에서도 움직이니[動:震] 해볼 만한 세상이다. 그래서 충분히 공(功)이 있을 수 있다. 「건(蹇)」이라는 것은 험(險:坎)을 보고 그치니[止:艮] 해볼 수 없는 세상이다. 그러나 충분히 허물은 없을 수 있다. 「곤(困)」은 강(剛:九二·九四·九五)이 유(柔:初六·六三·上六)에게 엄페 당하였으니, 군자가 소인에게 가리워져 궁액(窮厄)하고 쇠약한 것이다. 사람의 근심이 이보다 심한 것은 없다.

「比」也，「同人」也，「隨」也，義相類也，請言其異。

曰：「比」者，剛得尊位，上下應之，天下之人，皆親其君也。「同人」者，柔履中正，而應乎乾，同志相合，物各有黨也。「隨」者，剛來下柔，動而之說。謂能下於人，動則人說，莫不從其所爲也。上之所務，莫斯之大也。

372) 물고기를.....없다: 剝卦 六五爻辭. “貫魚, 以宮人寵, 無不利.”

373) 남쪽으로.....얻는다: 明夷卦 九三爻辭. “明夷于南狩, 得其大首, 不可疾貞.”

「비(比:8)」와 「동인(同人:13)」과 「수(隨:17)」는 의미가 서로 유사한데 그 차이를 말해 달라.

「비(比)」라는 것은 강(剛:九)이 존위(尊位:五)를 얻어 상하가 응하니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그 임금을 친하는 것이다. 「동인」이라는 것은 유(柔:六二)가 중정(中正)을 이행하여 건(乾:上體)에 응하니, 동지(同志)가 서로 합하고 만물이 각각 당여(黨與)가 있는 것이다. 「수(隨)」라는 것은 강(剛)이 와서 유(柔)에게 낮추고³⁷⁴, 동(動:震)하여 기쁨[說:兌]으로 가는 것이다. 말하자면 능히 남에게 낮추어 행동하면 남들이 기뻐하여 그 하는 바를 따르지 아니함이 없는 것이다. 윗사람이 힘 쓸 것은 이보다 큰 것은 없다.

「謙」也, 「巽」也, 奚若?

曰: 「謙」者, 內陽外陰, 屈其剛德, 以下於物者也. 「巽」者, 內外皆陰, 心貌如一, 情實卑順者也.

「겸(謙:15)」과 「손(巽:57)」은 어떠한가?

「겸」이라는 것은 양(陽:艮)이 안쪽 음(陰:坤)이 바깥쪽에 있으니 그 강덕(剛德)을 굽혀 상대에게 낮추는 것이다. 「손(巽)」이라는 것은 안과 밖이 모두 음(陰:巽下巽上)이니 마음과 외모가 하나 같다. 실제로 낮고 순한 것이다.

「豫」也, 「兌」也, 奚若?

曰: 「豫」者, 主於逸樂, 「兌」者, 喜悅而已也.

「예(豫:16)」와 「태(兌:58)」는 어떠한가?

「예(豫)」라는 것은 일락(逸樂)에 주로 하는 것이요, 「태(兌)」라는 것은 희열(喜

374) 강(剛)이.....낮추고: 李觀은 「易論」에서 卦變說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여기의 剛柔는 王弼注를 따라 剛은 震으로 柔는 兌로 본 것 같다. 그러나 뒷날 程頤와 朱熹는 卦變說을 채택하여 풀이한다. 程頤는 『伊川易傳』에서 “乾之上九, 來居坤之下, 坤之初六, 往居乾之上, 以陽剛, 來下於陰柔, 是以上下, 以貴下賤, 能如是, 物之所說隨也.”라고 하였고, 朱熹는 『周易本義』에서 “以卦變言之, 本自困卦九來居初, 又自噬嗑九來居五, 而自未濟來者, 兼此二變, 皆剛來隨柔之義.”라고 하였다.

悅)일 따름이다.

「晉」也, 「升」也, 奚若?

曰: 「升」者, 升得位, 「晉」者, 進見於君也.

「진(晉:35)」과 「승(升:46)」은 어떠한가?

「승(升)」이라는 것은 올라가 자리를 얻는 것이요, 「진(晉)」이라는 것은 나아가 임금을 뵈는 것이다.

「泰」也, 「既濟」也, 奚若?

曰: 「泰」者, 君臣合好, 君子在位, 小人在野之世³⁷⁵⁾也. 然物既大通, 多失其節, 故不具利貞之德也. 若夫物皆得其所, 事皆得其宜, 未有如「既濟」之盛者也. 堯舜其猶病諸. 然安不忘危, 戒在終止, 故曰: “初吉終亂”也. 「泰」之極, 則城復于隍, 「既濟」之極, 則濡其首. 禍福倚伏, 誠可畏也. 昔大禹之訓曰: “予臨兆民, 懷乎若朽索之馭六馬.” 夫能保萬世無疆之休, 其唯知懼者乎!

「태(泰:11)」와 「기제(既濟:63)」는 어떠한가?

「태(泰)」라는 것은 임금과 신하의 합이 좋은 것이니, 군자가 자리에 있고 소인이 밖에 있는 세상이다. 그러나 만물이 이미 대통하면 그 절도(節度)를 많이 잃으므로 이정(利貞)의 덕은 갖추지 않았다. 무릇 만물이 모두 그 곳을 얻고, 일이 모두 그 마땅함을 얻는 것이 「기제」의 성대함 같은 것은 있지 아니하다. 요순도 오히려 안타까워함이 있었다.³⁷⁶⁾ 그리하여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잊지 아니하니³⁷⁷⁾, 경계할 것이 끝에서 멈춤에 있으므로 “처음은 길하고 마지막은 어지럽다.”³⁷⁸⁾라고 말한 것이다. 「태(泰)」의 끝은 ‘성이 해자로 돌아가는 것’이요, 「기제」의 끝은 ‘그 머리를 적시는 것’이다. 화와 복은 기대고 잠복하니³⁷⁹⁾ 진실로

375) 原註: ‘世’는 光緒本에 ‘時’로 되어 있다.

376) 요순도.....있었다: 『論語』「雍也」 28장과 「憲問」 45장에 두 번 나온다.

377) 편안할.....아니하니: 『周易』「繫辭下傳」 5장. “子曰: 危者, 安其位者也, 亡者, 保其存者也, 亂者, 有其治者也. 是故, 君子安而不忘危, 存而不忘亡, 治而不忘亂. 是以身安而國家可保也.”

378) 처음은.....어지럽다: 『周易』既濟卦 象辭. “既濟, 亨, 小, 利貞, 初吉, 終亂.”

379) 화와.....잠복하니: 『老子』 58장. “禍兮, 福之所倚. 福兮, 禍之所伏.”

두렵다. 옛날 대우(大禹)의 가르침에 “내가 조민(兆民:萬民)에 임하는데 두려운 것이 썩은 줄로 여섯 마리 말을 모는 것 같다.”³⁸⁰⁾라고 하였다. 무릇 능히 만세 무강의 아름다움을 보전함은 그 오직 두려움을 아는 사람인 것이다.

易論第十三

或曰：“八卦成列，象在其中矣。”謂備天下之象也，請言其略。

曰：天地萬物，存乎「說卦」矣。姑以人事明之。八卦之道，在人靡不有之也。但賢者得其正，不肖者處其偏矣。夫剛而不暴，「乾」之正也。順而不邪，「坤」之正也。動而不妄，「震」之正也。卑而不辱，「巽」之正也。險而不可犯，「坎」之正也。明而不可欺，「離」之正也。靜而不可誘以利，「艮」之正也。和而不可撓以怒，「兌」之正也。

역론제13

혹자가 말했다. “8괘가 줄을 이루니, 상(象)이 그 가운데 있다.”³⁸¹⁾라는 것은 천하의 상이 갖추어져 있다는 말이다. 그 대략을 말해 달라.

천지만물이 「설괘(說卦)」에 있다. 우선 인간사로서 밝혀 본다. 8괘의 도는 인간사에 있지 않은 것이 없다. 다만 어진 사람은 그 정(正)을 얻고, 어질지 못한 사람은 그 편(偏)에 처한다. 무릇 강(剛)하되 포박하지 않는 것은 「건(乾)」의 정(正)이다. 순하되 사특하지 않는 것은 「곤(坤)」의 정이다. 움직이되 망녕되지 않는 것은 「진(震)」의 정이다. 낮되 욱되지 않는 것은 「손(巽)」의 정이다. 험하여 범할 수 없는 것은 「감(坎)」의 정이다. 밝아서 속일 수 없는 것은 「이(離)」의 정이다. 고요하여 이곳으로 끌 수 없는 것은 「간(艮)」의 정이다. 온화하여 성냄으로써 훔 수 없는 것은 「태(兌)」의 정이다.

若剛而不容於物，「乾」之偏也。順而不守其道，「坤」之偏也。動而爲躁，「震」之偏也。卑而爲佞，「巽」之偏也。險而爲賊害，「坎」之偏也。明而爲苛細，「離」之偏也。止而不及其時，「艮」之偏也。說而不由於禮，「兌」之偏也。

380) 내가.....같다: 『書經』「五子之歌」.

381) 8괘가.....있다: 『周易』「繫辭下傳」 1장.

강하기만 하여 상대에게 용납되지 못하는 것은 「건」의 편(偏)이다. 순하기만 하고 그 도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곤」의 편이다. 움직이되 조금함이 되는 것은 「진」의 편이다. 낮아서 아첨하는 것은 「손」의 편이다. 험하여 해로움이 되는 것은 「감」의 편이다. 밝아서 가혹하고 자잘한 것은 「리」의 편이다. 멈추어 그 때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간」의 편이다. 기뻐하되 예(禮)로 말미암지 않는 것은 「태」의 편이다.

是故賢者以功，不肖者以過。賢者以福，不肖者以禍。由所用之道，名同而實異也。然賢者之道也，或其數不備，或所施者狹。夫能具八者之用，發之乎身，充之乎天地之間者，其唯聖人乎！故用之於國，則邇人安，用之於軍，則遠人服。鼓之舞之，無物不得其宜矣。

이러하므로 어진 사람은 써서 공을 이루고, 어질지 못한 사람은 써서 허물을 이루며, 어진 사람은 써서 복을 받고, 어질지 못한 사람은 써서 재앙을 받으니 쓰는 도가 이름은 같아도 실제로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진 사람의 도라는 것이 혹 그 수(數)가 갖추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혹 베푸는 것이 혹 좁을 수도 있다. 무릇 능히 여덟가지의 쓰임을 갖추고서 몸에 발하고 천지의 사이에 가득 차게 것은 그 오직 성인(聖人) 뿐이다. 그러므로 나라에 쓰면 가까운 사람이 편안하고 군사에 쓰면 멀리 있는 사람이 복종한다. 고무하여 어떤 물건도 그 마땅함을 얻지 못함이 없다.

純精勁正，造成庶事，旰食忘倦，終而復始，用「乾」於國也。含藏廣大，靡物不愛，隤然和順，無有煩擾，用「坤」於國也。甲兵斧鉞，以重其威，無敢奸宄，無敢怠惰，用「震」於國也。適時之變，權宜在己，以貴下賤，士爭歸之，用「巽」於國也。封疆阻固，山河分限，貴在常尊，無得褻近，用「坎」於國也。善靡不照，惡靡不見，人文化成，上下肅雍，用「離」於國也。修其典禮，止邪未形，慢易之心，無自而入，用「艮」於國也。行慶施惠，洽於群心，罔有小大，翕然欣戴，用「兌」於國也。

순수하고 정밀하고 곧세고 반듯하여 여러 일을 만들어 이룩하고, 날이 저물어 야 식사하면서도 피곤함을 잊으며, 마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은 나라에 「건」을 쓰는 것이다. 머금고 저장하고 넓고 커 어떤 물건도 사랑하지 않음이 없으며, 부드럽게 온화하고 유순하여 번거롭고 시끄러움이 없는 것은 나라에 「곤」을 쓰는 것이다. 갑병(甲兵)과 부월(斧鉞)로 그 위엄을 무겁게 하여 감히 간귀(奸宄)가 없게 하고, 감히 게으름이 없게 하는 것은 나라에 「진」을 쓰는 것이다. 때의 변화에 맞추고 권의(權宜:變通)가 자기에게 있어 귀함으로써 천함에 낮추니 선비들이 다투어 귀부(歸附)하는 것은 나라에 「손」을 쓰는 것이다. 봉강(封疆:疆界)을 견고하게 하여 산하를 나누며, 귀함은 항상 높은데 있어 감히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나라에 「감」을 쓰는 것이다. 선을 비추지 아니함이 없고 악을 보지 아니함이 없으며, 인문(人文)이 교화되고 이루어져³⁸²⁾ 상하가 엄숙하고 화한 것은 나라에 「리」를 쓰는 것이다. 그 전례(典禮)를 닦아서 사특함을 그쳐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태만하고 쉽게 여기는 마음이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것은 나라에 「간」을 쓰는 것이다. 상을 행하고 은혜를 베풀어³⁸³⁾ 군중의 마음에 흡족하여 소인 대신할 것 없이 모두 흔연히 받드는 것은 나라에 「태」를 쓰는 것이다.

以剛決事，以勇臨敵，變動不息，罔失其正，用「乾」於軍也。撫養士卒，如母親子，雖其柔仁，不害方直，用「坤」於軍也。先聲後實，威聞敵國，動於九天，物莫能亢，用「震」於軍也。隱其形勢，示之不能，始如處女，後如脫兔，用「巽」於軍也。深溝高壘，遠其斥候，敵人不得襲，刺客不得近，用「坎」於軍也。部曲分辯，各有麗著，號令明白，衆罔疑惑，用「離」於軍也。退北佯爲不追，見利佯爲不知，持重有待，巖如山立，用「艮」於軍也。誅其渠魁，弔其民人，箠食壺漿，以迎王師，用「兌」於軍也。

강(剛)으로써 일을 결정하고 용(勇)으로써 적에 임하며, 변동에 쉬지 아니하고 그 바름을 잃지 않는 것은 군사에 「건」을 쓰는 것이다. 사졸을 어루만져 기르기를 어머니가 자식을 친하는 것 같이 하고, 비록 부드럽고 인자하나 방정하고 곧

382) 인문(人文)이.....이루어져: 『周易』 賁卦 彖傳에 나오는 말이다. 賁卦의 下體에 離卦가 있어 인용한 듯 하다. “觀乎天文，以察時變，觀乎人文，以化成天下.”

383) 상을.....베풀어: 『禮記』「月令」. “行慶施惠，下及兆民，慶賜遂行，毋有不當.”

음에 해롭지 않는 것은 군사에 「곤」을 쓰는 것이다. 소리가 먼저요 실질이 나중이니 위엄이 적국에 들리고 구천에 진동하여³⁸⁴⁾ 어떤 물건도 능히 겨룰 수 없는 것은 군사에 「진」을 쓰는 것이다. 그 형세를 숨기고 능력 없음을 보이며, 처음에는 처녀 같다가 나중에는 달아나는 토끼 같은³⁸⁵⁾ 것은 군사에 「손」을 쓰는 것이다. 도량을 깊게 하고 성루를 높게 하며, 그 척후를 멀리하여 적이 습격할 수 없게 하고 자객이 가까이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군사에 「감」을 쓰는 것이다. 부곡(部曲:兵士)을 분별하여 각각 연결됨이 있으며 호령이 명백하여 군중이 의혹이 없는 것은 군사에 「리」를 쓰는 것이다. 패하여 퇴각하는 적을 기만하여 추격하지 않는 듯 하고, 이로움을 보고 기만하여 알지 못하는 듯 하며,³⁸⁶⁾ 신중함을 가지고 기다림이 있는 것이 높다랗게 산이 서있는 듯 한 것은 군사에 「간」을 쓰는 것이다. 그 괴수를 주살하고 그 백성을 위로하니, 대나무 그릇의 밥과 물병으로 왕의 군사를 맞이한다³⁸⁷⁾는 것은 군사에 「태」를 쓰는 것이다.

故知八卦之道大矣。有高焉，必乘其上，有深焉，必載其底，有旁焉，必環其外。幽無不貫，微無不徹，惟所用之何如耳！

그러므로 8괘의 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높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 위에 올라타고, 깊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 밑바닥에 이르고, 곁이 있으면 반드시 그 바깥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윽한 것을 꿰지 아니함이 없고, 은미한 것을 통하지 아니함이 없으니, 오직 쓰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일 뿐이다.

噫，作『易』者，既有憂患矣，讀『易』者，其無憂患乎？苟安而不忘危，存而不忘亡，治而不忘亂，以憂患之心，思憂患之故，通其變，使民不倦，神而化之，使民宜之，則自天祐之，吉無不利矣。

아, 『역(易)』을 지은 사람은 이미 근심이 있었으니,³⁸⁸⁾ 『역』을 읽는 사람은 그

384) 구천에 진동하여: 『孫子』「軍形」. “善守者，藏於九地之下，善攻者，動於九天之上.”

385) 처음에는.....같은: 『孫子』「九地」. “是故始如處女，敵人開戶，後如脫兔，敵不及拒.”

386) 패하여.....하며: 『吳子』「論將」. “其追北佯爲不及，其見利佯爲不知.”

387) 대나무.....맞이한다: 『孟子』「梁惠王下」 11장.

388) 『역(易)』을.....있었으니: 『周易』「繫辭下傳」 7장.

우환이 없겠는가? 진실로 편안하되 위태로움을 잊지 아니하고, 잘 살고 있어도 망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다스려져도 어지러움을 잊지 아니하여야 하며,³⁸⁹⁾ 근심하는 마음으로써 근심의 연고를 생각하고,³⁹⁰⁾ 그 변화에 통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게으르지 아니하게 하며, 신묘함으로 화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마땅하게 한다면³⁹¹⁾ 하늘로부터 도움이 있어, 길하고 이롭지 아니함이 없을 것이다.³⁹²⁾

389) 진실로.....하며: 『周易』「繫辭下傳」 5장.

390) 근심의.....생각하고: 『周易』「繫辭下傳」 8장.

391) 그 변화에.....한다면: 『周易』「繫辭下傳」 2장.

392) 하늘로부터.....것이다: 『周易』大有卦 上九爻辭. 및 「繫辭上傳」 2장. 11장.

제5장 『이구집』 권4 刪定易圖序論

李觀集卷第四

刪定易圖序論

觀嘗著「易論」十三篇，援輔嗣之注以解義。蓋急乎天下國家之用，毫析幽微，所未暇也。世有治『易』根於劉牧者，其說日不同，因購牧所爲「易圖」五十五首，觀之則甚複重。假令其說之善，猶不出乎河圖洛書八卦三者之內，彼五十二皆疣贅也，而況力穿鑿以從僂異，考之破碎，鮮可信用。大懼誣誤學子，壞隳世教，乃刪其圖而存之者三焉。所謂河圖也，洛書也，八卦也。於其序解之中，撮舉而是正之，諸所觸類，亦復詳說，成六論，庶乎人事修而王道明也。其小得失，不足喜愠者，不盡糾割。別有一本，黃黎獻爲之序者，頗增多誕謾，自鄙以下，可無譏焉。牧又注『易』，所以爲新意者，合牽象數而已，其餘則攘輔嗣之指，而改其辭，將不攻自破矣。先代諸儒，各自爲家，好同惡異，有甚寇讎，吾豈斯人之徒哉。憂傷後學，不得已焉耳。

산정역도서론³⁹³⁾

나는 일찍이 「역론」 13편을 지었는데 왕필의 주를 원용하여 의미를 풀었다. 대개 천하국가의 쓰임에 급한 나머지 자세하고 은미한 것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일은 미처 겨를이 없었다. 세상에 『역』공부를 유목³⁹⁴⁾에게 뿌리를 둔 사람들이 있으나 그 주장들이 나날이 같지 아니하여 유목이 지은 「역도」 55수를 구매하여 보니 중복이 심하였다. 가령 그 주장 가운데 훌륭한 것은 그래도 하도·낙서·8괘

393) 산정역도서론: 「年譜」에 의하면 39세에 지은 것이다.

394) 유목(1011~1064): 북송 衢州 西安 사람. 字는 先之 또는 牧之, 호는 長民. 진사에 합격, 范仲淹의 천거로 兗州觀察推官이 되고, 大理寺丞과 廣南西路, 轉運判官을 지냈으며 太常博士까지 올랐다. 범중엄과 孫復의 문하에서 『春秋』를 수학했고, 范諤昌에게서 易學을 배웠다. 학문은 邵雍과 연원을 같이 했지만, 송나라 象數學의 한 지류인 圖書學派의 개창자가 되었다. 도서학파는 송나라 仁宗 때 문인 黃黎獻과 吳秘, 程大昌 등에 의해 성행했다. 저서에 『易數鉤隱圖』와 『易解』, 『卦德通論』, 『先儒遺論九事』 등이 있다. 『중국역대인명사전』(2010. 이회문화사)

세가지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나 저 52수는 모두 군더더기였고 하물며 힘들여 천착하여 허수아비나 괴이한 것을 따랐으니 이를 살펴 분석해 보면 믿고 쓸만한 것이 적었다. 배우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상의 가르침을 무너뜨릴까 크게 염려되어 곧 그 도(圖)를 깎아 내고 남긴 것이 셋이었다. 이른바 하도와 낙서와 8괘이다. 그 서해(序解) 안에서 간추려 이를 바로잡고, 여러 저촉되는 종류들 또한 다시 자세히 설명하여 6론을 만드니 거의 인사가 닦이고 왕도가 밝아졌다. 그 작은 특설로 기뻐하고 성내기에 부족한 것을 모두 규명하여 잘라내지는 않았다. 별도의 한 판본으로 황려헌³⁹⁵⁾이 서문을 지은 것은 자못 허망한 것을 더욱 늘려 회(會) 이하는 비판할 것도 못된다. 유목은 또한 『역』에 주를 달았는데 새로운 뜻이 될만한 것은 상수를 끌어들이는 것 뿐이요 그 나머지는 곧 왕필의 취지를 물리치고 그 말을 고친 것이니 공박하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부서질 것이다. 선대의 여러 유자들은 각각 스스로 일가를 이루어 같은 것을 좋아하고 다른 것을 미워하여 심하면 원수와 같이 여겼으니 내가 어찌 이런 사람들의 무리에 들 수 있겠는가? 후학을 상하게 할까 근심하여 그만 둘 수 없었을 뿐이다.

論一

或問：劉氏之說，「河圖」「洛書」，同出於伏羲之世，何如？

曰：信也。「繫辭」稱，“河出圖，洛出書，聖人則之。”其指在作『易』也，則不待禹而得之，明矣。

논1

흑자가 물었다. “유씨의 말에 「하도」와 「낙서」는 복희시대에 같이 나왔다는데 어떠한가?”

진실이다. 계사에 “황하에서 도가 나오고 낙수에서 서가 나오자 성인이 이를 본받았다.”³⁹⁶⁾고 하였다. 그 취지는 ‘『역』을 지은 것’에 있으니, 곧 우(禹) 이전

395) 황려헌(黃黎獻): 송나라 때 사람. 생애는 자세하지 않다. 劉牧에게 『周易』을 배웠다. 저서에 『續鈎隱圖』와 『略例義』, 『室中記師隱訣』 등이 있다. 『중국역대인명사전』(2010. 이회문화사)
 396) 황하에서..... 법하였다. 『周易』「繫辭上傳」 10장.

에 얻은 것이 분명하다.

其所圖者，信乎？

曰：「洛書」五十有五，協於「繫辭」天地之數。「河圖」四十有五，雖於『易』無文，然其數與其位，灼有條理，不可移易，非妄也。惜乎，劉氏之辯則過矣。

“그 그린 것은 믿을 수 있는가?”

「낙서」55는 「계사」의 천지의 수³⁹⁷⁾와 부합된다. 「하도」45는 비록 『역』에 글은 없으나 그 수와 자리는 밝게 조리가 있어 옮기거나 바꿀 수 없으니 헛된 것은 아니다. 애석하게도 유씨의 변설은 지나쳤다.

或曰：敢問「河圖」之數與位，其條理何如？

曰：一三五七九，奇數，陽也，非中央則四正矣，「坎」「離」「震」「兌」之位也。二四六八，耦數，陰也，不得其正而得四隅矣，「乾」「坤」「艮」「巽」之位也。「乾」「坎」「艮」「震」，陽卦位也，則左旋。「兌」「坤」「離」「巽」，陰卦位也，則右轉。奇則先左而後右，耦則先右而後左。「坎」一「震」三也，「兌」七「離」九也，「坤」二「巽」四也，「乾」六「艮」八也。抑又縱橫數之，皆得十五，此非灼有條理不可移易者乎。

“「하도」의 수와 자리는 그 조리가 어떠한가?” 감히 여쭙니다.

1·3·5·7·9는 홀수요 양이니 중앙이 아니면 네 정방(正方)이니, 「감」「리」「진」「태」의 자리이다. 2·4·6·8은 짝수요 음이니 그 정방을 차지하지 못하고 네 모퉁이를 차지하였으니 「건」「곤」「간」「손」의 자리이다. 「건」「감」「간」「진」은 양괘의 자리이니 좌선한다. 「태」「곤」「리」「손」은 음괘의 자리이니 우전한다. 홀수는 좌가 먼저이고 우가 뒤이며, 짝수는 우가 먼저이고 좌가 뒤이다. 「감」은 1, 「진」은 3이고, 「태」는 7, 「리」는 9이고, 「곤」은 2, 「손」은 4이고, 「건」은 6, 「간」은 8이다. 또한 가로 세로로 이를 헤아리면 모두 15³⁹⁸⁾가 되니, 이는 밝게 조리가 있어 옮기거나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닌가?

397) 천지의 수(天地之數): 『周易』「繫辭上傳」 9장. 1·3·5·7·9는 天數라 하고 2·4·6·8·10은 地數라 하는데 이 수들이 조합하여 변화를 이루고 귀신을 운행한다고 한다.

398) 가로세로로.....15: 중앙의 5를 가운데 두고 합한 수를 말한다. 곧 1+5+9, 2+5+8, 3+5+7, 4+5+6.

或曰：劉氏之辯，其過焉在？

曰：劉氏以「河圖」「洛書」合而爲一，但以「河圖」無十，而謂“水火木金不得土數，未能成形，乃謂之象。”至於「洛書」有十，“水火木金附於土而成形矣，則謂之形。”以此爲異耳。其言“四象生八卦，”則取「河圖」之七八九六，以其有象字，不可用「洛書」之形故也。其下文又引“水六金九火七木八”而“生八卦，”於此則通取「洛書」之形矣。噫，何其自相違也。矧曰：“天五居中而主乎變化，上駕天一而生地六，下駕地二而生天七，左駕天三而生地八，右駕地四而生天九”者，不亦惑乎！夫所謂生者，言乎其始也。苟「河圖」之象生八卦，則「洛書」之形又生八卦者，何也？若以聖人既取「河圖」之數以畫卦，而「洛書」之數止爲揲蓍，則其論云：“在「河圖」則老陽老陰少陽少陰之數，”此又已言揲蓍矣。反覆不通，故曰：“自相違也。”夫天一至地十，乃天地之氣降出之次第耳。謂之五者，非有五物，謂之十者非有十枚。而曰：“五十有五者，”蓋聖人假其積數以起算法，非實數也。如人兄弟行_{下浪反}。第一至第十者，乃十人耳，焉可謂有五十五人哉？

혹자가 물었다. “유씨의 변설은 그 지나침이 어디에 있는가?”

유씨는 「하도」 「낙서」를 합하여 하나로 만들었지만 「하도」는 10을 두지 않고, “수·화·목·금은 토수(土數:10)를 얻지 못하면 형(形)을 이룰 수 없으니 곧 이를 상(象)이라 한다.”고 하였다. 「낙서」에 10이 있는데 이르러서는 “수·화·목·금이 토에 붙어서 형(形)을 이루었으니 ‘형(形)’이라고 말한다.”라고 하였다. 이것으로 써 차이로 삼았을 뿐이다. 그가 “사상이 8괘를 낳는다.”고 한 것은 곧 「하도」의 7·8·9·6을 취한 것이니 그 것이 ‘상(象)’자가 있어 「낙서」의 형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아래 문장에 또 “수6·금9·화7·목8”을 인용하여 “8괘를 낳는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낙서」의 형을 통으로 취한 것이다. 아, 어찌하여 그 스스로 서로 어긋나는가? 하물며 말하길 “천5가 중앙에 위치하여 변화를 주관하니 위에 천1을 얻어 지6을 낳고, 아래에 지2를 얻어 천7을 낳고, 왼쪽에 천3을 얻어 지8을 낳고, 오른쪽에 지4를 얻어 천9를 낳는다.”³⁹⁹⁾고 한 것은 또한 의혹이

399) 천5(天五)는.....낳는다: 李觀은 이를 疑惑이라 하였지만 뒷날 朱熹는 象數學을 적극 수용하면서 이를 받아들였다.

아닌가. 무릇 이른바 낱는다는 것은 그 시작에서 말하는 것이다. 만약 「하도」의 상이 8괘를 낱는다면 「낙서」의 형이 또 8괘를 낱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만약 성인이 이미 「하도」의 수를 취하여 괘를 그리고, 「낙서」의 수를 가지고 단지 시초를 세는 것으로 삼았다면 그의 논리에 “「하도」에서는 노양·노음·소양·소음의 수.”라고 하였는데 이 또한 이미 시초 세는 것을 말한 것이다. 반복해서 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스스로 서로 어긋난다.”고 한 것이다. 무릇 천1부터 지10까지는 곧 천지의 기가 내려오는 순서일 뿐이다. 이를 5라 한 것은 다섯가지 물건이 있다는 것이 아니요, 10이라 한 것은 열 개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55라고 한 것은 대개 성인이 그 적립된 수를 빌려 셈법을 세운 것이지 실제 숫자가 아니다. 형제간의 항렬과 같은 것이다. 제1부터 제10까지 라는 것은 곧 열 사람일 뿐이니, 어찌 55명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厥初太極之分，天以陽高於上，地以陰卑於下．天地之氣，各充所處，則五行萬物何從而生？故初一則天氣降於正北，次二則地氣出於西南，次三則天氣降於正東，次四則地氣出於東南，次五則天氣降於中央，次六則地氣出於西北，次七則天氣降於正西，次八則地氣出於東北，次九則天氣降於正南．天氣雖降，地氣雖出，而猶各居一位，未之會合，亦未能生五行矣．譬諸男未冠，女未笄，昏姻之禮未成，則何孕育之有哉？

그 처음 태극이 나누어질 때 하늘은 양으로써 위에서 높고, 땅은 음으로써 아래에서 낮았다. 하늘과 땅의 기는 각각 처한 곳에서 높이 있다면 5행과 만물은 어디에서 생겨날까? 그러므로 초1은 곧 천기가 정북에 내려오고, 차2는 곧 지기가 서남에서 나오고, 차3은 곧 천기가 정동에 내려오고, 차4는 곧 지기가 동남에서 나오고, 차5는 곧 천기가 중앙에 내려오고, 차6은 곧 지기가 서북에서 나오고, 차7은 곧 천기가 정서에 내려오고, 차8은 곧 지기가 동북에서 나오고, 차9는 곧 천기가 정남에 내려온다. 천기가 비록 내려오고 지기가 비록 나오지만 여전히 각각 한 자리에 거하고 회합하지 않는다면 또한 5행을 낱을 수 없다. 이를 남자가 아직 관례하지 않고 여자가 아직 계례 하지 않아 혼인의 예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비유하면 어찌 잉태하고 기르는 일이 있겠는가?

況中央八方九位既足，而地十未出焉，天地之氣誠不備也。由是一與六合於北而生水，二與七合於南而生火，三與八合於東而生木，四與九合於西而生金，加之地十，以合五於中，而生土。五行生而萬物從之矣。二四易位而一三五如其初者，當所王之方也。

하물며 중앙과 8방의 아홉 자리가 이미 충족되었으나 지10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 천지의 기는 진실로 갖추어지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1은 6과 더불어 북쪽에서 합하여 수를 낳고, 2는 7과 더불어 남쪽에서 합하여 화를 낳고, 3은 8과 더불어 동쪽에서 합하여 목을 낳고, 4는 9와 더불어 서쪽에서 합하여 금을 낳고, 여기에 지10을 더하여 중앙에서 5와 합해 토를 낳는다. 5행이 생겨나고 만물이 이를 따른다. 2와 4는 자리를 바꾸었지만⁴⁰⁰⁾ 1·3·5는 그 처음과 같은 것은 왕성한 방향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夫物以陰陽二氣之會，而後有象，象而後有形。象者，胚胎是也，形者，耳目鼻口手足是也。「河圖」之數，二氣未會，而劉氏謂之象，悖矣。若夫「洛書」之數，五位既合，則五行有象且有形矣。象與形相因之物也，其一二三四五爲生數，六七八九十爲成數者，徒以先後分之耳。其實二者合而後能生，生則成矣。蓋非一生之，待六而後成也。假令「河圖」是象，「洛書」是形，則取「洛書」而爲八卦者，亦非酌水燃火，伐木鍛金而成之也，直取其象耳，以法象而言之，不亦可乎？何其固執形象之象也？

무릇 만물은 음양 두 기가 회합한 뒤에 상이 있고, 상이 있고 난 뒤에 형이 있는 것이다. 상이란 것은 아이를 밴 것이 이것이요, 형이란 것은 귀·눈·코·입·손·발이 이것이다. 「하도」의 수는 두 기가 아직 회합하지 아니하였는데 유씨는 이를 상이라 하였으니 잘못이다. 저 「낙서」의 수와 같은 것은 5위가 이미 합하였다면 5행은 상이 있고, 형도 있는 것이다. 상과 형은 서로 원인이 되는 물건이니, 그 1·2·3·4·5는 생수가 되고 6·7·8·9·10은 성수가 된다는 것은 한갓 선후로 나누었을 뿐이다. 사실 두 가지는 합한 뒤에 생길 수 있고, 생겨나면 이루어 진

400) 2와.....바꾸고: 「河圖」에서 坤2는 동남, 巽4는 서남이었던 것이 지금 李觀의 주장에 의하면 坤2가 서남, 巽4가 동남으로 서로 자리를 바꾼 것을 말한다.

다. 대개 1이 이것을 낳고 6을 기다린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가령 「하도」는 상이고, 「낙서」는 형이라고 한다면 「낙서」를 취하여 8괘를 만든다는 것은 또한 물을 붓고 불을 피우고 나무를 베고 쇠를 단련하여 이를 완성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상을 취하였을 뿐이다. 법상(法象)⁴⁰¹⁾으로써 이를 말하는 것이 또한 옳지 아니한가? 왜 그렇게 형상의 상을 고집하는가?

其曰：“天五駕一二三四而生六七八九”者，愈乖遠矣。且陰陽會合而後能生，今以天五駕天一天三，乃是二陽相合，安能生六生八哉？天降陽地出陰，陰陽合而生五行，此理甚明白，豈有陽與陽合而生陰哉？況所謂五者，乃次第當五，非有五物也。其一與六合之類，皆隔五者，蓋以一二三四五主五方，而六七八九十合之，周而復始，必然之數，非有取於天五也。其不用五奇主五方而五耦合之者，陽方則奇爲之主，而耦與之合，陰方則耦爲之主，而奇與之合，又昭昭矣。

그가 말한 “천5에 1·2·3·4를 얹어 6·7·8·9를 낳았다.”는 것은 더욱 어긋나고 멀다. 또한 음양이 회합한 이후에 낳을 수 있는데, 지금 천5에 천1과 천3을 얹는다는 것은 곧 두 개의 양이 서로 합하는 것이니 어찌 6을 낳고 8을 낳을 수 있겠는가? 하늘은 양을 내리고 땅은 음을 내어, 음양이 합하여 5행을 낳는다는 이 이치는 매우 명백한데 어찌 양이 양과 합하여 음을 낳는 일이 있겠는가? 하물며 이른바 5라는 것은 곧 차례가 5에 해당한다는 것이지 다섯가지 물건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 그 1과 6이 합하는 종류로 모두 5의 간격이 있는 것은, 대개 1·2·3·4·5는 다섯 방향을 주관하는데 6·7·8·9·10이 합하면 한바퀴를 돌아 다시 시작하여, 필연의 수이지 천5에서 취함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다섯 개의 기(奇:1·3·5·7·9)를 사용하여 다섯 개의 방향을 주관하게 하고, 다섯 개의 우(耦:2·4·6·8·10)를 이에 합하지 않은 것은 양의 방향은 곧 기가 주관하고 우가 그와 합하고, 음의 방향은 우가 주관하고 기가 그와 합한 것이 또한 매우 분명하다.

401) 법상(法象): 『周易』「繫辭上傳」 10장에 나오는 말이다. 「繫辭傳」에 나오는 여러 조의 取象을 의미한다. 사전적 의미는 ‘자연계 일체 사물현상의 총칭’ 또는 ‘모방’인데 지금 여기서 논하는 形·象과 구분된다.

至如劉氏所圖太極生兩儀一·二·三·四，其解曰：“畫天左旋，畫地右動。”今按其畫，天一在坎，天三在震，誠左旋也。地二在離，地四在兌，亦左旋耳，非右動也。夫所謂左旋者，如斗柄自寅向卯也，右動者如日月五星自丑向子也，今以自午向西而爲右動，何哉？若直以東北爲左方，西南爲右方，以分天地之位，則又不可謂之旋且動也。旋動者，進前之意也。設謂陽升陰降，先「兌」四而後「離」二，則「繫辭」所陳，先二而後四，未嘗倒言之也。如是，則劉氏之解果謬矣。注「易」圖「易」，自謂窮天地之理，而乃未明左旋右動之法，甚哉，其可笑也。

유씨가 그린 '태극이 양의와 1·2·3·4를 낳았다'에서 그 풀이에 “하늘은 좌선하게 그리고, 땅은 우동하게 그렸다.”⁴⁰²⁾고 하였다. 지금 그 그림을 살펴보면 천1은 감에 있고, 천3은 진에 있으니 진실로 좌선이다. 지2는 리에 있고, 지4는 태에 있으니 또한 좌선일 뿐, 우동이 아니다. 이른바 좌선이라는 것은 북두의 자루가 인에서 묘를 향하는 것과 같고, 우동이라는 것은 해와 달과 5성이 축에서 자를 향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지금 오에서 유로 향하는 것으로써 우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만약 다만 동·북을 좌방이라 하고, 서·남을 우방이라 하여 천지의 자리를 나눈다면 이를 또한 선과 동이라 할 수 없다. 선·동이라는 것은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다. 설령 양은 올라가고 음은 내려가며, 태4가 앞이고 리2가 뒤이라고 한다면 「계사」에서⁴⁰³⁾ 진열한 바, 2가 앞이고 4가 뒤라는 것은 일찍이 이를 도치하여 말한 적이 없다. 이와 같다면 유씨의 풀이는 과연 오류이다. 『역』에 주를 달고, 『역』에 그림을 그리면서, 스스로 천지의 이치를 다하였다라고 말하였으나 곧 좌선과 우동의 법을 아직 밝히지 아니하였으니 심하다, 그 가소로움이어!

論二

或曰：劉氏謂“聖人以「河圖」七八九六而畫八卦，”而吾子之意乃取「洛書」，何也？

曰：「繫辭」稱“八卦成列，象在其中矣。”謂備天下之象也。「河圖」之數，二氣未合，

402) 하늘은.....그렸다: 『易數鉤隱圖』의 해당 원문은 다음과 같다. “今畫天左旋者，取天一天三之位也。畫地右動者，取地二地四之位也。”

403) 「계사」에서: 『周易』「繫辭上傳」 9장.

品物未生，何所象乎？「洛書」之數，五行成矣，萬物作矣，於是象金而畫「乾」「兌」，象土而畫「坤」「艮」，象木而畫「震」「巽」，象水而畫「坎」，象火而畫「離」，不言五而言四象者，以土分王⁴⁰⁴四時，舉四行則土可知矣。又以四行之數而揲蓍，七少陽八少陰九老陽六老陰是也。

논2

혹자가 말했다. 유씨는 말하기를 “성인이 「하도」의 7·8·9·6으로써 8괘를 그었다.”라고 하였는데 당신의 뜻은 곧 「낙서」를 취하였으니 어째서인가?

「계사」에 칭하기를 “8괘가 줄을 이루고, 상이 그 가운데 있다.”⁴⁰⁵는 것은 천하의 상을 갖추었음을 말한다. 「하도」의 수는 두 기가 아직 합하지 아니하여 품물이 아직 생기지 않았으니 어디에 상을 하겠는가? 「낙서」의 수는 5행이 이루어지고 만물이 지어졌으니, 이에 금을 상하여 「건」과 「태」를 그었고, 토를 상하여 「곤」과 「간」을 그었고, 목을 상하여 「진」과 「손」을 그었고, 수를 상하여 「감」을 그었고, 화를 상하여 「리」를 그었는데, 5를 말하지 아니하고 4상을 말한 것은 토가 4시(四時)에 왕(王:土旺)을 나누었으니 4행(四行:木·火·金·水)을 거론하였으면 토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4행의 수로써 시초를 세어 7은 소양, 8은 소음, 9는 노양, 6은 노음이라 하는 것이 이것이다.

曰：敢問畫卦皆取「洛書」矣，其於「河圖」何所則也？

曰：則其位也。「河圖」有八方之位，「洛書」有五行之象，二者相須而卦成矣。

감히 묻노니 괘를 그을 때 모두 「낙서」를 취하였다면, 「하도」에서는 무엇을 본받았는가?

그 자리를 본받은 것이다. 「하도」는 8방의 자리가 있고, 「낙서」는 5행의 상이 있으니 양자는 서로 필요하여 괘가 이루어진 것이다.

曰：劉氏以爲六居「坎」而生「乾」，謂三爲「坎」三爲「乾」也。九居「兌」而生「坤」，謂

404) 原註: ‘王’은 光緒本에 ‘旺’으로 되어 있다.

405) 8괘가.....있다: 『周易』「繫辭下傳」 1장.

三爲「兌」六爲「坤」也. 七居「離」而生「巽」, 謂三爲「離」四爲「巽」也. 八居「震」而生「艮」, 謂三爲「震」五爲「艮」也. 何如?

曰: 以位數之, 則「乾」「坤」「艮」「巽」亦三位也. 以畫數之, 則「坎」「震」亦五畫也, 「離」「兌」亦四畫也. 何其或以位數, 或以畫數, 反錯之甚也? 況「說卦」稱“六畫而成卦, 六位而成章.”彼重卦, 然畫與位等耳, 未常析言之也. 苟析言之, 則「坤」六位而十二畫矣, 焉得曰: “六畫成卦”也? 雖「繫辭」“陽, 一君而二民.” 蓋取陰耦以喻人臣代終之義, 非可積以爲數也. 今謂人有二心者, 非可積十人以爲二十心也. 且劉氏說天地之數六者, 有六物耳, 而乃以一爻分爲二畫, 以當二物, 可乎? 歷觀諸卦, 以爻爲人, 雖陰爻亦一人耳. “帝乙歸妹”, 非有兩妹也. “箕子明夷”, 非有兩箕子也. 然則劉氏畫卦之說, 其不可用, 明矣!

유씨는 “6이 「감」에 거하여 「건」을 낳는다.”라고 하였으니 말하자면 3이 「감」이 되고, 3이 「건」이 되는 것이다. “9가 「태」에 거하여 「곤」을 낳는다.”⁴⁰⁶⁾라고 하였으니 말하자면 3이 「태」가 되고, 6이 「곤」이 되는 것이다. “7이 「리」에 거하여 「손」을 낳는다.”라고 하였으니 말하자면 3이 「리」가 되고, 4가 「손」이 되는 것이다. “8이 「진」에 거하여 「간」을 낳는다.”라고 하였으니 말하자면 3이 「진」이 되고, 5가 「간」이 되는 것이다. 어떠한가?

자리로써 이를 세면 「건」「곤」「간」「손」 또한 세 자리이다. 획으로써 이를 세면 「감」과 「진」 또한 5획이요, 「리」와 「태」 또한 4획이다. 어찌 흑자는 자리로써 세고, 흑자는 획으로써 세어 반대되고 착란됨이 심한가? 하물며 「설괘(說卦)」에 칭하기를 “여섯 번 그어 괘를 이루고, 여섯 번 자리하여 장(章)을 이룬다.”⁴⁰⁷⁾고 하였다. 이는 중괘(重卦: 64괘)이나 ‘획(畫)’과 ‘위(位)’가 같을 뿐, 이를 쪼개서 말한 것이 아니다. 만약 이를 쪼개서 말하자면 「곤」은 여섯 번 자리하였고, 12획이니 어떻게 “6획성괘”라 할 수 있겠는가? 비록 「계사」에 “양(陽: 震·坎·艮)은 한 임금에 두 백성이다.”⁴⁰⁸⁾라고 하였으나 대개 음효가 짝인 것을 취하여 인신(人

406) 유씨는.....말하였다: 『易數鉤隱圖』의 「四象生八卦第十」에 나오는 말인데 원문은 다음과 같다.

“五行成數者, 水數六, 金數九, 火數七, 木數八也. 水居坎而生乾, 金居兌而生坤, 火居離而生巽, 木居震而生艮. 已居四正而生乾坤艮巽, 共成八卦也.”

407) 여섯 번.....이룬다: 『周易』「說卦傳」 2장.

408) 양(陽: 震·坎·艮)은.....백성이다: 『周易』「繫辭下傳」 4장.

臣)이 대신 마치는 의리를 비유한 것이지 ‘쏟아서 수를 삼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지금 말하기를 ‘사람이 두마음이 있다’는 것은 ‘열 사람을 쏟아서 20개의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또한 유씨가 말한 ‘천지지수육(天地之數六)’이라는 것은 여섯 개의 물건이 있을 뿐이니, 곧 하나의 효를 나누어 두 개의 획으로 만들어서 두 개의 물건에 배당하는 것이 옳은가? 여러 괘를 훑어 보면 효로써 사람을 삼았을 때 비록 음효라도 또한 한 사람일 뿐이다. “제을귀매(帝乙歸妹)”⁴⁰⁹⁾는 양매(兩妹)가 있는 것이 아니요, “기자명이(箕子明夷)”⁴¹⁰⁾는 양기자(兩箕子)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유씨의 ‘획괘설’은 사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矧聰明睿智，創制立法，固不區區專決於圖書，故曰：“古者包犧氏之王天下也，仰則觀象於天，俯則觀法於地，觀鳥獸之文與地之宜，近取諸身，遠取諸物。”是不專決於圖書，參互而後起之者也。

하물며 총명하고 예지한 분이 제도를 창립하고 법을 세우면서 진실로 구구하게 도서에서 오로지 결정하지 않았으니 그러므로 “옛날 포희씨가 왕천하할 때 우러러 하늘에서 상을 보았고, 굽어 땅에서 법을 보았으며, 새와 짐승의 문(文)과 땅의 마땅함을 관찰하고, 가까이 이를 몸에서 취하고 멀리 이를 만물에서 취하였다.”⁴¹¹⁾고 하였다. 이는 도서에서 오로지 결정하지 않고 참고한 뒤에 일으킨 것이다.

聖人既按「河圖」有八方，將以八卦位焉。「洛書」有五行，將以八卦象焉。於是觀陰陽而設奇耦二畫，觀天地人而設上中下三位。純陽爲「乾」，取至健也。純陰爲「坤」，取至順也。一陽處二陰之下，剛不能屈於柔，以動出而爲「震」。一陰處二陽之下，柔不能犯於剛，以入伏而爲「巽」。一陽處二陰之中，上下皆弱，罔克相濟，以險難而爲「坎」。一陰處二陽之中，上下皆強，足以自託，以麗著而爲「離」。一陽處二陰之上，剛以駁下則止，故爲「艮」。一陰處二陽之上，柔以撫下則說，故爲「兌」也。

409) 제을귀매(帝乙歸妹): 『周易』歸妹卦 六五爻辭.

410) 기자명이(箕子明夷): 『周易』明夷卦 六五爻辭.

411) 옛날.....취하였다: 『周易』「繫辭下傳」 2장.

성인은 이미 「하도」에 8방이 있는 것을 살펴 8괘로 자리를 삼았다. 「낙서」에 5행이 있는 것을 살펴 8괘로 상을 삼았다. 이에 음양을 보고 기·우 두 획을 두었으며, 천지인을 보고 상·중·하 세 자리를 두었다. 순수한 양을 「건」으로 삼았으니 지극히 굳건함을 취한 것이다. 순수한 음을 「곤」으로 삼았으니 지극히 유순함을 취한 것이다. 하나의 양이 두 음 아래에 처하였으나 강이 유에 굴복할 수 없어 움직여 나오는 것으로써 「진」을 삼았다. 하나의 음이 두 양 아래 처하여 유가 양을 범할 수 없어 들어가 앞드리는 것으로써 「손」을 삼았다. 하나의 양이 두 음 가운데 처하여 위아래가 모두 약하여 서로 구제할 수 없어 험난함으로써 「감」을 삼았다. 하나의 음이 두 양 가운데 처하여 위아래가 모두 강하여 스스로 의탁하기에 충분하므로 붙어있는 것으로써 「리」를 삼았다. 하나의 양이 두 음 위에 처하여 강으로써 아래를 공박하면 그치므로 「간」을 삼았다. 하나의 음이 두 개의 양 위에 처하여 유로써 아래를 어루만지면 기뻐하므로 「태」를 삼았다.

西北盛陰用事，而陽氣盡矣，非至健莫能與之爭，故「乾」位焉。爭勝則陽氣起，故「坎」以一陽而位乎北。「坎」者，險也，一陽而犯衆陰，誠不爲易而爲險也。「艮」者，止也，物芽地中將出而止也，待春之謂也。自此動出乎「震」，絜齊乎「巽」。「離」者，明也，萬物皆盛長，得明而相見也。「坤」厚以養成之，成而說，故取諸「兌」也。畫八卦，分八方之義，如斯而已也。

서복은 성한 음이 일을 맡아 양기가 다하였으니, 지극한 '굳건함'이 아니면 이와 더불어 다룰 수 없으므로 「건」이 자리하였다. 다투어 이기면 양기가 일어나므로 「감」이 하나의 양으로 북에 자리하였다. 「감」이라는 것은 '험난함'이니, 하나의 양이 여러 음을 범하여 진실로 쉽지 않고 험난한 것이다. 「간」이라는 것은 '그침'이니, 만물이 땅 속에서 발아하여 장차 나오려다 멈춘 것으로 봄을 기다리는 것을 말한다. 이로부터 '움직임'은 「진」에서 나오고, 「손」에서 혈제(絜齊·整齊·潔齊)한다.⁴¹²⁾ 「리」라는 것은 '밝음'이니 만물이 모두 성장(盛長)하여 '밝음'을

412) 혈제(絜齊)한다. 이부분은 『周易』「說卦傳」 5장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說卦傳」 5장에서 '齊

얻어 서로 보는 것이다. 「곤」이 ‘두터움’으로 양성하니, 이루어져 기쁘므로 이를 「태」에서 취한 것이다. 8괘를 굿고 8방을 나눈 의미는 이와 같을 따름이다.

或曰：「說卦」稱“勞乎「坎」”，謂萬物閉藏納受爲勞也，“成言乎「艮」”，謂萬物之所終也。今吾子之言似不類者，何也？

曰：孔子據物終於地上而言也，觀取諸物始於地下而言也。所以就足先聖之論，使人不疑耳。

혹자가 말했다. 「설괘」에⁴¹³⁾ “노호「감」(勞乎坎)”이라 하였으니 말하자면 만물이 닫히고 감춰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을 ‘노(勞)’라 한 것이요, “성언호「간」(成言乎艮)”이라 하였으니 만물이 마침을 말한 것이다. 지금 당신의 말은 이와 유사하지 않은 듯 한데 어째서인가?

공자는 만물이 땅 위에서 끝나는데 근거하여 말한 것이요, 나는 만물이 땅 아래에서 시작되는 것에서 취하여 말한 것이다. 앞 성인의 논의를 보완하여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게 하였을 뿐이다.

或曰：劉氏謂“三畫象三才，爲不詳「繫辭」之義，則以「乾」之三畫爲天之奇數三，一三五皆陽也，「坤」之三畫爲地之耦數三，六八十皆陰也，獨陽獨陰，無韞三才之道”者，何如？

曰：劉氏學『易』，乃不知畫之與位各一事也。畫者，譬諸人也，位者，人所處之地也，三畫雖純陽象天，而三位有天地人之別，何害也？上中下三位，譬如公也，卿大夫也，奇耦二畫，譬如君子也，小人也。公卿大夫皆君子蓋有之矣，皆小人亦有之矣，或一君子而二小人，或一小人而二君子，猶行人之止傳舍，何常之有？安可見純天便曰無地位，見純地便曰無天位哉？

혹자가 말했다. 유씨가 말하기를 “3획이 3재를 상징한다는 것은 「계사」의 의미를 상세하지 않기 때문이니, 곧 「건」의 3획은 천의 기수 3을 삼아 1·3·5가 모

乎巽이라고 한 뒤 설명하는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다. “齊乎巽，巽，東南也，齊也者，言萬物之潔齊也。”

413) 「설괘」에: 『周易』「說卦傳」 5장.

두 양이요, 「곤」의 3획으로 지의 우수 3을 삼아 6·8·10이 모두 음인데 독양과 독음은 3재의 도를 담고 있지 않다.”고 한 것은 어째서인가?

유씨가 『역』을 배웠으나 곧 ‘긋는 것’과 ‘자리’가 각각 하나의 일인 것을 알지 못했다. 획이라는 것은 이를 사람에 비유한 것이요, 위라는 것은 사람이 처한 지위이다. 3획이 비록 순수한 양으로 하늘을 상징해도 3위가 천·지·인의 구별이 있는 것이 무엇이 해로운가? 상·중·하 3위는 비유하자면 공·경·대부와 같고, 기와 우 두 획은 비유하자면 군자와 소인 같은 것이다. 공·경·대부가 모두 군자인 경우가 대개 있을 수 있으나 모두 소인인 경우 또한 있을 것이며, 혹은 한 군자에 두 소인, 혹은 한 소인에 두 군자일 수도 있어 행인이 여관에 머무는 것과 같으니 어찌 늘 그러하겠는가? 어떻게 순천을 보고 문득 지위가 없다고 말하며, 순지를 보고 문득 천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且其引「說卦」“兼三才而兩之，故『易』六畫而成卦。”以爲六畫包三才，無三畫韞三才之說。噫，何其泥也！三畫象三才矣，重之爲六，又象三才，何害也？若三畫之時，「乾」爲天，「坤」爲地，六畫之後，亦不免爲天爲地也。三畫之位，則初爲地，二爲人，三爲天。六位則初二爲地，三四爲人，五上爲天。從宜改易，何固執之爲哉？

또한 그 「설괘」의 “3재를 겸하여 이를 두 번 하였으므로 『역』은 6획에 괘를 이루었다.”⁴¹⁴⁾는 구절을 인용하여 “6획이 3재를 포함하나, 3획이 3재를 담았다는 설은 없다.”고 하였다. 아, 어찌 그리 진창에 빠졌는가! 3획은 3재를 상징하니, 이를 중복하여 6이 되더라도 또 3재를 상징하는 데 무슨 방해가 되겠는가? 3획 때에 「건」은 하늘이 되고, 「곤」은 땅이 되니 6획 뒤에 또한 하늘이 되고 땅이 되는 것을 면치 못한다. 3획의 자리는, 곧 초는 땅이 되고 2는 사람이 되고 3은 하늘이 되며, 6획의 자리는, 곧 초와 2는 땅이 되고 3과 4는 사람이 되고 5와 상은 하늘이 된다. 마땅함을 따라 고쳐야 할 것인데, 왜 고집하는가?

且劉氏論三才，則引「說卦」六畫，破先儒三畫，以爲不經。及其論奇耦，則用天三奇地三耦，天地各減其二，不顧「繫辭」五位有合之說，是經乎？不經也。

414) 3재를.....이루었다: 『周易』「說卦傳」 1장.

또 유씨는 3재를 논하면서, 곧 「설괘」의 6획을 끌어와 선배 유자의 3획을 파기하고 “경(經)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가 기와 우를 논하면서는, 곧 천3기와 지3우를 사용하여 천지에서 각각 그 둘을 덜어내면서 「계사」의 ‘5위유합’⁴¹⁵⁾의 설을 돌아보지 않았으니, 이것이 경인가? 경이 아니다.

又其論「乾」元用九，謂天一天三天五陽數也，「坤」元用六，謂地二地四陰數也。至其下文，以天五散在五行，天一居尊不動，餘有天三地四合而成九，天三則「乾」之三畫，地二地四則「坤」之六畫，陽得兼陰，故「乾」三兼「坤」六，而「乾」元用九也。噫，陽不可兼陰乎，則天三何以稱用九？陽果得兼陰乎，則天一天三天五當兼地二地四，何以不稱「乾」元用十五也？輕先儒九揲六揲之通義，而務求新，不虞錯亂之至此，鄙哉！

또 그는 ‘건원용구’⁴¹⁶⁾를 논하면서 천1·천3·천5는 양수라 하였고, ‘곤원용륙’⁴¹⁷⁾을 논하면서 지2·지4는 음수라고 하였다. 그 아래 문장에 이르러 천5는 5행에 흠어져 있고, 천1은 존위에 거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며, 나머지 천3과 지4는 합하여 9를 이루는데 천3은 「건」의 3획이요, 지2와 지4는 「곤」의 6획으로 양이 음을 겸하였으므로 「건」3이 「곤」6을 겸하여 ‘「건」원은 9를 쓰는 것이다.’⁴¹⁸⁾라고 하였다. 아, 양이 음을 겸할 수 없다면 천3이 어떻게 ‘용구’를 칭하겠는가? 양이 과연 음을 겸할 수 있다면 천1·천3·천5는 마땅히 지2·지4를 겸해야 하니 어찌 ‘「건」원용15’라 칭하지 않는가? 선배 유자의 9설6설의 통의⁴¹⁹⁾를 경시하고 새로운 것을 구하는데 힘을 쓰다가, 착오와 혼란이 이 지경에 이르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였으니, 비루하다!

論三

415) 5위유합(五位有合): 『周易』「繫辭上傳」, 9장. “天數五, 地數五, 五位相得, 而各有合, 天數二十有五, 地數三十. 凡天地之數五十有五, 此所以成變化而行鬼神也.”

416) 건원용구(乾元用九): 『周易』「乾卦文言傳」.

417) 곤원용륙(坤元用六): 『周易』「坤卦文言傳」.

418) 천5는.....것이다: 『易數鉤隱圖』의 「論下」의 내용을 축약한 것이다.

419) 9설6설(九揲六揲)의 통의(通義): 揲蓍할 때 통상적으로 양효는 9로 세고, 음효는 6으로 세는 것을 말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李觀가 ‘論3’에서 후술한다.

或人敢問：大衍之數五十，諸儒異論，何如？

曰：京房，馬季長，荀爽之釋，吾無取焉耳。至於鄭康成，姚信，董遇，以爲天地之數五十有五，減五而用之，劉氏亦同此說，吾有取焉耳。此章上言大衍之數，下言乾坤之策，中言天地之數，非衍之用而何也？然所以減之之意，或謂減五行，或謂減六畫，或謂減天五，蓋未之思矣。夫五行六畫天五減之之可否，不足復詰，吾直謂天地之數雖五十五，至揲蓍之法，止可用五十，故取其整數而已也。只如期三百六旬有六日，而“「乾」「坤」之策，三百六十，當期之日。”又豈可言無六策以當六日者，別有意也。

논3

혹자가 감히 물었다. ‘대연지수50’⁴²⁰⁾은 여러 유자들이 논의를 달리하는데 어떠한가?

경방⁴²¹⁾·마계장⁴²²⁾·순상⁴²³⁾의 해석은 내가 이를 취한 것이 없다. 정강성⁴²⁴⁾·요신⁴²⁵⁾·동우⁴²⁶⁾에 이르러서는 천지의 수 55이나 5를 빼고 이를 사용하였으며 유씨도 또한 이 설에 동의하였는데, 나 또한 이를 취함이 있다. 이 장은 위에서 ‘대연지수’를 말하고, 아래에서 건곤의 책을 말하며, 중간에 천지의 수를 말하였으니 ‘대연’을 쓰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빼는 뜻’은 혹 말하기를 “5행을 덜어낸다.”라고 하고, 혹 말하기를 “6획을 덜어낸다.”라고 하고, 혹 말하기를 “천5를 덜어낸다.”라고 하였는데,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무릇 5행·6획·천5를 빼는 것의 옳고 그름은 다시 따질 것이 없다. 나는 다만, “천지의 수가 비록 55이나, 시초를 세는 법에 이르러 단지 50을 사용하므로, 그 정돈된 수만을 취할 따름이다.”라고 말한다. 단지 일년이 366일인데, “「건」「곤」의 책이 360이니, 일년의 날 수에 해당한다.”⁴²⁷⁾는 것과 같다. 또 “어떻게 ‘6책이 없는데, 6일을

420) 대연지수50(大衍之數五十): 『周易』「繫辭上傳」 9장.

421) 경방: 京房(BC77~BC37)은 今文京房易學의 개창자이다. 대표작으로 『京氏易傳』이 있다.

422) 마계장: 季長은 馬融(79~166)의 字이다. 一代의 通儒로 鄭玄을 가르쳤다.

423) 순상: 荀爽(128~190)은 費直의 古文易學을 연구하여 『周易』荀爽注가 일부분 전하고 있다.

424) 정강성: 康成은 鄭玄(127~200)의 字이다. 今文과 古文에 모두 정통하여 다수의 저작이 전한다.

425) 요신: 姚信은 삼국시대 蜀나라 사람으로 생몰년은 자세하지 않으나, 여러 기록에 저작으로 『周易注』가 있었다고 전한다.

426) 동우: 董遇는 삼국시대 魏나라의 저명한 儒宗으로, 주로 『老子』와 『春秋』를 연구하였다.

감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은 별도로 뜻이 있다.

聖人揲蓍，虛一分二，掛一揲四，歸奇再扚，確然有法，象非苟作也。故五十而用四十九，分於兩手，掛其一則存者四十八，以四揲之，十二揲之數也。左手滿四，右手亦滿四矣，乃扚其八，而謂之多。左手餘一，則右手餘三。左手餘三，則右手餘一。左手餘二，右手亦餘二矣。乃扚其四，而謂之少，三少則扚十二，並掛而十三，其存者三十六，爲老陽。以四計之，則九揲也，故稱九。三多則扚二十四，並掛而二十五，其存者二十四，爲老陰。以四計之，則六揲也，故稱六。一少兩多，則扚二十，並掛而二十一，其存者二十八，爲少陽。以四計之，則七揲也，故稱七。一多兩少，則扚十六，並掛而十七，其存者三十二，爲少陰。以四計之，則八揲也，故稱八。所謂七八九六者，蓋取四象之數也。以是五十之策，不可增損。增一損一，則不可揲之矣。故康伯述輔嗣之旨曰：“演天地之數，所賴者五十也。”

성인이 시초를 센 것은 “하나를 비우고⁴²⁸⁾ 둘로 나누며, 하나를 걸고⁴²⁹⁾ 네 개씩 세고 남은 것⁴³⁰⁾을 돌려보내 다시 끼워”⁴³¹⁾ 확연히 법이 있으며 구차히 지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50에서 49를 사용하여 양손에 나누고 그 하나를 걸면 남은 것은 48이며 네 개씩 이를 세면 열 두 번 셀 수 있는 수이다. 왼손이 네 개가 가득차고 오른손 또한 네 개가 가득차면⁴³²⁾, 곧 그 8개를 끼어, ‘다’라고 한다. 왼손에 남은 것이 한 개면 오른손에 남은 것은 세 개이고, 왼손에 남은 것이 세 개이면 오른손에 남은 것은 한 개이며, 왼손에 남은 것이 두 개이면 오른손도 또한 두 개가 남는다. 곧 그 4개를 끼어, ‘소’라고 한다. 3소면 낀 것이 12개이고, 처음에 걸어두었던 한 개와 합치면 13개가 되고, 그 남아 있는 것은 36개이니 ‘노양’이 된다. 네 개씩 계산하면 아홉 번 세는 것이므로 9라고 칭한다. 3다면 낀 것이 24개이고, 처음에 걸어두었던 한 개와 합치면 25가 되고, 그 남

427) 「진」「곤」의.....해당한다: 『周易』「繫辭上傳」 9장의 해당 원문은 다음과 같다. “乾之策，二百一十有六，坤之策，百四十有四。凡三百有六十，當期之日。”

428) 하나를 비우고: 50개에서 하나를 빼고, 나머지 49개를 무작위로 양손으로 나눈다.

429) 하나를 걸고: 양분한 것중 오른손에 있는 시초 하나를 왼손 새끼 손가락에 건다.

430) 남은 것: 네 개씩 세고 남은 것을 왼손 중지와 약지 사이에 낀다.

431) 하나를.....끼운다: 『周易』「繫辭上傳」 9장의 내용을 축약한 것이다.

432) 왼손이.....가득차면: 양손의 시초를 네 개씩 세어 두 손 모두 네 개씩 남는 경우이다.

아 있는 것은 24개이니 ‘노음’이 된다. 네 개씩 계산하면 여섯 번 세는 것이므로 6이라고 칭한다. 1소양다면 낀 것이 20개이고, 처음에 걸어두었던 한 개와 합치면 21개가 되고, 그 남아 있는 것은 28개이니 ‘소양’이 된다. 네 개씩 계산하면 일곱 번 세는 것이므로 7이라고 칭한다. 1다양소면 낀 것이 16개이고, 처음에 걸어두었던 한 개와 합치면 17개가 되고, 그 남아 있는 것은 32개이니 ‘소음’이 된다. 네 개씩 계산하면 여덟 번 세는 것이므로 8이라고 칭한다. 이른바 7·8·9·6이라는 것은 대개 사상의 수를 취한 것이다. 이로써 50책은 더하거나 뺄 수 없다. 하나를 더하고 하나를 빼면 셀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강백(康伯)⁴³³이 보사(輔嗣:王弼)의 뜻을 기술하여 “천지의 수를 펴는데 의지하는 것은 50이다.”⁴³⁴라고 한 것이다.

苟謂“聖人以五行天五之故，特減其五。”則未知不減之時如何揲也。以五十五而虛其一，又掛其一，則兩手五十三，十三揲之數而餘一也，左手雖得四，右手尚餘一。左手三則右手二，左手二則右手三，左手一則右手四。終無平時，雖童子亦知不可爲也。五十之上，唯五十四可矣。虛一掛一，則兩手五十二，十三揲之數也。然三少則存者四十，三多則存者二十八，一少兩多則存者三十二，一多兩少則存者三十六，「乾」元當用十，「坤」元當用七，少陽八而少陰九矣。其下唯四十六，虛一掛一，則兩手四十四，十一揲之數也。然「乾」元當用八，「坤」元當用五，少陽六而少陰七矣。不徒不應四象之數，陽反而耦，陰反而奇矣。吾故謂“揲蓍之法，止可用五十，故取其整數而已也。”

진실로 “성인이 5행과 천5의 연고 때문에 특별히 그 5를 덜어냈다.”라고 말한다면, 덜어내지 않았을 때 어떻게 세었는지 알 수 없다. 55에서 하나를 빼고, 또 하나를 걸면 양손에 53개인데 13번 셀 수 있는 수이고, 1개가 남는다. 왼손이 비록 4개를 얻더라도 오른손은 오히려 1개가 남고, 왼손이 3개이면 오른손은 2개, 왼손이 2개이면 오른손은 3개, 왼손이 1개이면 오른손은 4개이다. 끝내 나누어질 때가 없으니 비록 어린아이이라도 할 수 없음을 알 것이다. 50 위는 54만 가능하다. 하나를 빼고 하나를 걸면 양손에 52개인데 13번 셀 수 있는 수이다. 그

433) 강백(康伯): 康伯은 韓伯(332~380)의 字이다. 왕필을 계승하여 『周易』과 『繫辭傳』등에 注를 달았는데 일부가 전해진다.

434) 천지의.....50이다: 『周易』王弼注 附『繫辭上』韓康伯注.

러나 3소가 되면 남아 있는 것은 43개, 3다가 되면 남아 있는 것이 28개, 1소양
 다가 되면 남아 있는 것이 32개, 1다양소가 되면 남아 있는 것은 36개이니, 「건」
 원은 당연히 10을 써야 하고 「곤」원은 당연히 7을 써야 하며 소양은 8이요 소
 음은 9이다. 그 아래는 46 뿐이니 하나를 빼고 하나를 걸면 양손에 44개인데
 11번 셀 수 있는 수이다. 그러나 「건」원은 당연히 8을 써야 하고 「곤」원은 당연
 히 5를 써야 하며 소양은 6이요 소음은 7이다. 다만 사상의 수에 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양은 반대로 우가 되고 음은 반대로 기가 된다. 나는 그러므로 “시
 초를 세는 법은 50 만을 쓸 수 있고, 때문에 그 정수를 취할 따름이다.”라고 한
 것이다.

或曰：虛其一者，康伯以爲太極，劉氏以爲天一，何如？

曰：究觀「繫辭」，以四十九，“分而爲二，以象兩。”則是虛一在兩儀之前也。下文，
 “太極生兩儀。”則又太極在兩儀之前。太極與虛一相當，則一非太極而何也！

혹자가 말했다. 그 하나를 빼는 것을 강백은 태극이라고 여겼고,⁴³⁵⁾ 유씨는 천
 1이라고 여겼는데,⁴³⁶⁾ 어떠한가?

「계사」를 자세히 보면 49로써 “나누어 둘로 만들어 양의를 상징한다.”라고 하
 였으니 곧 이는 허일이 양의 앞에 있다. 아래 문장⁴³⁷⁾에 “태극이 양의를 낳는
 다.”고 하였으니 곧 태극이 양의 앞에 있다. 태극과 허일이 서로 해당하니, 하나
 가 태극이 아니고 무엇인가!

且其謂“大衍後天地之數，則太極不可配虛其一之位。”此又不思之甚矣。作大衍之
 法，誠在數之後矣。然其所取象，固在數之先，所謂“分而爲二，以象兩。”者也。蓋有
 兩儀而後有數也。既可象兩儀於數之先，豈不得配太極於兩儀之上哉？

435) 강백은.....하였고: 『周易』王弼注 附 「繫辭上」韓康伯注. “其用四十有九，則其一不用也，不用而用
 以之通，非數而數以之成，斯易之太極也.”

436) 유씨는.....하였는데: 『易數鉤隱圖』의 「其用四十有九第十六，論上·下」에서 유목은 한강백의 주
 장을 반박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폈다. “此必韓氏之寓言，非輔嗣之意也.....天一居尊而不動.”

437) 아래 문장: 『周易』「繫辭上傳」10장. “是故，易有太極，是生兩儀，兩儀生四象，四象生八卦.”

또한 그가 이르기를 “대연은 천지의 수보다 뒤이니, 태극은 허일의 자리에 배정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니, 이 또한 생각하지 않음이 심하다. 대연의 법을 만든 것은 진실로 수의 뒤이다. 그러나 그 상을 취한 것은 진실로 수 앞이니 이른바 “나누어 둘로 만들어 양의를 상징한다.”라는 것이다. 대개 양의가 있고 난 뒤에 수가 있는 것이다. 이미 수 앞에 양의를 상징할 수 있다면 어떻게 태극을 양의 앞에 배정할 수 없겠는가?

若以一二三四便爲兩儀，則天非一天，地非一地而已也。是知天地者，其體也。一二三四之類，其氣也。苟虛一以象天一之氣，而分四十九以象兩儀之體，則是逸其末而勞其本，於義乖矣。

만약 1·2·3·4로써 곧 양의라고 한다면 하늘은 하나의 하늘이 아니요, 땅은 하나의 땅이 아닐 뿐이다. 이에 천지라는 것은 그 체요, 1·2·3·4의 종류는 그 기임을 알 수 있다. 진실로 허일로써 천1의 기를 상징하고, 49를 나누어 양의의 체를 상징한다고 하면, 이것은 그 말을 편안하게 하고 그 본을 수고롭게 하는 것이니, 의에 어긋난다.

又破康伯之注，“無不可以無明，必因於有。”以謂“太極其氣已兆，非無之謂。”噫，其氣雖兆，然比天地之有容體可見，則是無也。

또한 한강백의 주, “무는 무로써 밝아질 수 없고 반드시 유에 기인해야한다.”를 파괴하여, “태극은 그 기가 이미 조짐이 있으니, 무를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아, 그 기가 비록 조짐이 있어도, 그러나 천지는 용체가 볼 수 있는 것에 비하면 이는 무이다.

又稱：“聖人之辭‘易有太極’，既言有，則非無之謂也。”吾以爲天地之先，強名太極，其言“易有太極，”謂有此名曰太極者耳，非謂太極便有形⁴³⁸⁾也。如老子之言，恍忽中有物有象，不可一見有字，便指爲實物實象也。凡此皆巧詆先儒，不自知其罪也。

438) 原註: ‘形’아래에 正德本, 萬曆本, 光緒本은 ‘色’字가 있다.

또한 칭하기를 “성인의 말씀, ‘『역』에 태극이 있다.’에서 이미 유라고 말하였으니, 곧 무를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천지의 앞을 ‘태극’이라고 억지로 이름지었으니, 그 “『역』에 태극이 있다.”는 말은 “이 이름하여 태극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말일 뿐이지, “태극이 곧 형이 있다.”는 말이 아니다. 『노자』의 말에 “황홀한 가운데 물이 있고, 상이 있다.”⁴³⁹⁾라는 것과 같이 유자를 한 번 보고, 곧 가리켜 실물과 실상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모든 이것은 다 선배 유자를 교묘하게 헐뜯으면서도, 스스로 그 죄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論四

或曰：劉氏謂「坎」生「復」卦，「離」生「姤」卦，何如？

曰：磔裂爻位則巧矣，義則未也。聖人設卦觀象，以陽潛地中故，「坎」以一陽居二陰之中。陽生陰下故，「復」以一陽居五陰之下。八卦配八方，則「坎」當北。十二卦配十二月，則「復」當建子。「復」之陽乃「坎」之陽也，陽則無二，而象之之卦有兩也。何哉？八方與十二月不同也，三畫與六畫不同也。是故陽則無二而象之之卦有兩也。「離」與「姤」亦如之。若謂「坎」之陽生「復」之陽，「離」之陰生「姤」之陰，則是十一月有兩陽也，五月有兩陰也，固不然矣。

논4

혹자가 말했다. 유씨는 “「감」이 「복」괘를 낳고, 「리」가 「구」괘를 낳는다.”라고 하였는데, 어떠한가?

효위를 찢어 발기는 것이 교묘하나, 의는 아니다. 성인이 괘를 두고 상을 볼 때, 양이 땅속에 잠겨 있으므로 「감」은 한 개의 양이 두 개의 음 가운데 거하게 하였다. 양이 음의 아래에서 생겨나므로 「복」은 한 개의 양으로써 다섯 개의 음

439) 황홀한.....있다: 『老子』 21장. 원문은 다음과 같다. “孔德之容, 惟道是從. 道之爲物, 惟恍惟惚. 惚兮恍兮, 其中有象. 恍兮惚兮, 其中有物.”

아래에 거하게 하였다. 8괘를 8방에 배열하면 「감」은 북쪽에 해당하고, 12괘로 12개월을 배정하면⁴⁴⁰⁾ 「복」은 건자에 해당한다. 「복」의 양은 곧 「감」의 양이니 양은 둘이 없는데 이를 상징하는 괘는 둘이다. 왜 인가? 8방과 12개월은 같지 않고, 3획과 6획은 같지 않다. 그러므로 양은 둘이 없으나 이를 상징하는 괘는 둘이 있는 것이다. 「리」와 「구」 또한 이와 같다. 만약 “「감」의 양이 「복」의 양을 낳고, 「리」의 음이 「구」의 음을 낳는다.”고 한다면, 이는 11월에 두 개의 양이 있고, 5월에 두 개의 음이 있는 것이니, 진실로 그렇지 않다.

且其說以「復」卦生於「坎」，中動於「震」，交於「坤」，變二「震」二「兌」二「乾」而終。「姤」卦生於「離」，中消於「巽」，交於「乾」，變二「巽」二「艮」二「坤」而終。自「復」至「坤」，凡十二卦，主十二月。噫，以十二月言之，則自「復」以往，歷「臨」「泰」「大壯」「夬」而後至「乾」，此云二「震」二「兌」而後二「乾」者，何也？自「姤」以往，歷「遯」「否」「觀」「剝」而後至「坤」，此云二「巽」二「艮」而後二「坤」者，何也？

또 그 설에, “「복」괘는 「감」에서 생겨나서, 중간에 「진」에서 움직이고 「곤」에 교감하여, 2「진」·2「태」·2「건」을 변하고 마친다. 「구」괘는 「리」에서 생겨나서, 중간에 「손」에서 소멸되고 「건」에 교감하여, 2「손」·2「간」·2「곤」을 변하고 마친다. 「복」부터 「곤」까지 모두 12괘가 12개월을 주관한다.”고 하였다. 아, 12개월로 말하면 「복」으로부터 가서 「임」·「태」·「대장」·「괘」를 지난 뒤에 「건」에⁴⁴¹⁾ 이르는 데, 이것을 일러 ‘2「진」·2「태」이후 2「건」’이라 한 것은 어째서인가? 「구」로부터 가서 「돈」·「비」·「관」·「박」을 지난 뒤에 「곤」에⁴⁴²⁾ 이르는 데, 이것을 이르기를 ‘2「손」·2「간」이후 2「곤」’이라 한 것은 어째서인가?

以八方言之，則自「坎」以往，歷「艮」「震」至「巽」極矣，陽一於子而六於巳也。此云「震」「兌」「乾」者，何也？自「離」以往，歷「坤」「兌」至「乾」極矣。陰一於午而六於亥也。

440) 12괘로.....배정하면: 12辟卦說을 말한다. 12벽괘에 의하면 「復」은 11월에 배정된다.

441) 「복(復)」으로부터.....「건(乾:1)」에: 12벽괘설에 의하면 「復」은 11월, 「臨」은 12월, 「泰」는 1월, 「大壯」은 2월, 「夬」는 3월, 「乾」은 4월에 해당한다.

442) 「구(姤)」로부터.....「곤(坤)」에: 12벽괘설에 의하면 「姤」는 5월, 「遯」은 6월, 「否」는 7월, 「觀」은 8월, 「剝」은 9월, 「坤」은 10월에 해당한다.

此云「巽」「艮」「坤」者，何也？其意以「復」「姤」生於「坎」「離」，而變初四，變二五，變三上，每爲二卦，則八卦備，謂之巧也宜矣，然義不通也。

8방으로 말하면 「감」으로부터 가서 「간」·「진」을 지나 「손」에 이르러 끝나니, 양이 자에서 1이요, 사에서 6이다. 이것을 이르기를 ‘「진」·「태」·「건」’이라고 한 것은 어째서인가? 「리」로부터 가서 「곤」·「태」를 지나 「건」에 이르러 끝나니, 음은 오에서 1이요, 해에서 6이다. 이것을 이르기를 ‘「손」·「간」·「곤」’이라고 한 것은 어째서인가? 그 의도는, “「복」과 「구」가 「감」과 「리」에서 생겨나서, 초효와 4효를 변하고, 2효와 5효를 변하고, 3효와 상효를 변하여 매양 2괘가 되면 8괘가 갖추어진다.”는 것인데, 이를 일러 교묘하다고 하는 것은 마땅하겠지만 의미는 통하지 않는다.

又以「姤」，「巽」承於「乾」，非四正之卦，乃引「歸妹」之「兌」，云：“妹係姊嫁，故「兌」少女而用「巽」之長女主其卦。”噫，何爲飾之多也。彼其意欲以「兌」承於「乾」則成「履」，非「姤」陰生之卦，又不可數變，故引「兌」於「歸妹」，假託輔嗣之義，而係「巽」於「姤」耳。不徒義理迂怪，以象論之，大可笑也。少女既嫁於「震」，又係「巽」，而嫁於「乾」乎？長女既交於「乾」，又從「兌」，而交於「震」乎？則是一女而事二夫也，豈不可笑？此所謂爲飾之多也，聖人之意，曷至是哉！

또 「구」는 「손」이 「건」을 받드니,⁴⁴³⁾ 4정괘⁴⁴⁴⁾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귀매」의 「태」⁴⁴⁵⁾를 끌어다 이르기를 “동생이 언니에 매어 시집가므로, 「태」는 소녀이니 「손」의 장녀를 써서 그 괘를 주관하게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아, 어찌 꾸민 것이 이렇게 많은가? 저것은 그 의도가, “「태」가 「건」을 받들면 「이」가 이루어져, 음이 생겨나는 「구」가 아니고, 또한 자주 변할 수 없으므로 「귀매」에서 「태」를 끌어다 왕필의 뜻을 가탁하고서 「손」을 「구」에 매어두고자 한 것”일 뿐이

443) 「구(姤)」는.....받드니: 여기에서 「姤」는 大成卦이고, 「손」과 「건」은 小成卦이다. 곧 「姤」괘는 「손」이 아래에 있고 「건」이 위에 있는 괘라는 뜻이다.

444) 4정괘: 四正卦는 乾·坤·坎·離를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坎·離·震·兌를 의미한다. 곧 ‘坎主冬, 離主夏, 震主春, 兌主秋’ 또는 ‘坎主北, 離主南, 震主東, 兌主西’를 말한 것이다.

445) 「귀매(歸妹:54)」의 「태」: 여기서도 「歸妹」는 大成卦이고, 「태」는 「歸妹」의 下體인 小成卦 「태」를 가리킨다.

다. 다만 의리가 동떨어지고 괴이할 뿐 아니라 상으로써 논해보면 대단히 가소롭다. 소녀가 이미 「진」에게 시집갔는데,446) 또 「손」을 매어 「건」에게 시집가는가?447) 장녀가 이미 「건」과 교감하였는데448) 또 「태」를 따라서 「진」과 교감하는가?449) 곧 이는 한 여자가 두 지아비를 섬기는 것이니, 어찌 가소롭지 아니한가? 이것이 이른바 “꾸며대는 것이 많다.”는 것이다. 성인의 뜻이 어찌 여기에 이르겠는가!

或曰：劉氏之說，“七日來復”，不取『易緯』“六日七分”，何如？

曰：不取宜矣。苟以十二月之卦論之，則「剝」盡之後經「坤」，一月，非止七日也。以六日七分言之，則「剝」盡之後，經「艮」·「既濟」·「噬嗑」·「大過」·「坤」·「未濟」·「蹇」·「頤」·「中孚」九卦，每卦六日七分，乃至於「復」，非止七日也。然劉氏更以七爲少陽，必經陰六之數盡，至七日，少陽乃生，斯又未善也。歷觀衆卦，或言七日，或言三日，或言三年，或言十年，強爲配合，時或可言，參相鉤考，辭則易屈。

혹자가 말했다. 유씨가 “7일래복(七日來復)”450)을 말하면서 『역위(易緯)』451)의 “6일7분(六日七分)”452)을 취하지 않은 것은 어떠한가?

취하지 않은 것이 마땅하다. 진실로 ‘12월괘’로 이를 논하면, 「박」이 다한 뒤 「곤」을 지나는 것이 1개월이니, 7일에 그치지 않는다. ‘6일7분’으로 말하면, 「박」이 다한 뒤 「간」·「기제」·「서합」·「대과」·「곤」·「미제」·「건」·「이」·「중부」등 아홉 개의 괘를 지나니, 매괘가 6일7분인데, 이에 「복」에 이른다면, 7일에 그치지 않는

446) 소녀가.....시집갔는데: 「歸妹」의 兌下震上을 말한 것이다.

447) 「손」을.....시집보내고자: 「姤」의 巽下乾上을 말한 것이다.

448) 장녀가.....교감하고: 「姤」를 말한 것이다.

449) 「태」를.....한다: 「歸妹」를 말한 것이다.

450) 7일래복(七日來復): 「復」괘 「彖」辭.

451) 『역위(易緯)』: 兩漢시대 6經에 대해 6緯가 있었는데, 緯는 經에 대한 신비주의적 해석이다. 그 가운데 『易緯』의 佚文이 후세 사람들에 의하여 편집되어 전해지는데, 대표적으로 『乾鑿度』가 가장 유명하고, 그 외에 『稽覽圖』, 『通卦驗』, 『是類謀』, 『坤靈圖』 등이 있다.

452) 6일7분(六日七分): 『易緯』의 卦氣說로, 漢나라 孟喜에서 시작되어 京房, 揚雄, 穀永등에 의해 전승되었다. 1년이 ‘360日+5와 1/4日’로 되어 있는데, 春夏秋冬을 관장하는 4正卦 곧 坎·離·震·兌를 빼 60괘로 우선 ‘360일’을 나누면 ‘6日’이 되고, 나머지 ‘5와 1/4일’은 1일을 80分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420分이니 60괘로 나누면 ‘7分’이 된다. 따라서 일년중에 한 卦當 ‘6일7분’을 주관하게 된다.

다. 그러나 유씨는 다시 “7은 소양이 되니, 반드시 음6의 수가 다하는 것을 지나서, 7일째에 이르러 소양이 이에 생겨난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또한 아직 좋지는 않다. 여러 괘를 훑어보면 혹 ‘7일’을 말하고, 혹 ‘3일’을 말하고, 혹 ‘3년’을 말하고, 혹 ‘10년’을 말하는데, 억지로 배합하면 때때로 혹 말할 수도 있겠으나 서로 참고해 보면 말이 곧 들어맞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大抵言日遠者不過七日. 「震」六二, 「既濟」六二, “勿逐七日得”, 不過七日而得也. “七日來復,” 以復不可遠, 君子之道雖消不久, 不過七日而復. 「彖」曰: “天行也”, 蓋言來復之義, 是天之行, 反覆如此, 亦非考案氣候實日而云也. 萬壽無疆, 豈實有萬哉? 愛而多之之辭也.

대저 ‘날이 멀’을 언급한 것은 7일을 지나지 않는다. 「진」괘 육이효⁴⁵³)와 「기제」괘 육이효⁴⁵⁴)의 “쫓지 아니하면 7일에 얻는다.”는 것은 ‘7일을 지나지 아니하고 얻는다.’는 것이다. “7일래복”은 ‘복’이 멀지 않으니, 군자의 도가 비록 소멸되었더라도 오래지 아니하여, 7일을 지나지 아니하여 회복된다는 것이다. 「단」에 “천행이다”라고 하였으니, 대개 ‘내복’의 의미는, 이것은 ‘하늘의 운행이 반복됨이 이와 같다’는 것이요, 또한 기후와 실제 날짜를 고안하여 말한 것이 아니다. ‘만수무강’이 어찌 실제 만이 있겠는가. 아껴서 늘린 말이다.

或曰: 「臨」“至于八月有凶”, 諸儒之論, 孰爲得失?

曰: 何氏云“建子陽生, 至建未爲八月”, 當矣. 「臨」二陽, 「遯」二陰, 合耦之卦也. 劉氏破之, 以爲“果建子則辭當在「復」卦之下,” 此不明矣. 且「復」卦陽生, 其勢微弱, 未足矜也. 「臨」卦剛長, 強亢之漸, 故戒之以「遯」卦有凶也. 推其本而言之, 「復」生爲一月, 「臨」長爲二月, 至「遯」爲八月, 不亦可乎? 而劉氏固守「臨」之建丑, 數至「遯」之建未, 則七月, 以不滿八之故, 遂用『周正』排建未爲八月. 又念文王演卦, 在商之末, 正朔未改, 不可以未爲八月, 乃稱周公述而成之, 故以『周正』爲定.

혹자가 말했다. 「임」괘의 “지우팔월유흉”⁴⁵⁵)은 여러 유자의 논의 중에 어떤

453) 「진(震:51)」괘 육이효: “震來厲, 億喪貝, 躋于九陵, 勿逐, 七日得.”

454) 「기제(既濟:63)」괘 육이효: “婦喪其茀, 勿逐, 七日得.”

것이 옳고 그른가?

하씨가 이르기를 “건자에서 양이 생겨 건미에 이르러 8월이 된다.”⁴⁵⁶⁾고 한 것이 옳다. 「임」은 2양이요, 「돈」은 2음이니 합하여 짝하는 괘이다. 유씨는 이를 파괴하여 “과연 건자라면 말이 마땅히 「복」괘의 아래에 있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밝지 않다. 또한 「복」괘는 양이 생겼으나 그 세가 미약하니 자랑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임」괘는 강이 자라니, 강이 높아지는 점진적인 과정이므로 ‘「돈」괘의 흉이 있음’으로써 이를 경계한 것이다. 그 근본을 미루어 이를 말하면, ‘「복」의 태어남’이 1월이 되고, ‘「임」의 자라남’이 2월이 되며, 「돈」에 이르러 8월이 되는 것이 또한 옳지 아니한가? 그런데 유씨는 ‘「임」의 건축’을 고수하여 세어 가다 「돈」의 건미에 이르면 7월이니 ‘8’에 가득차지 않았기 때문에 드디어 『주정』⁴⁵⁷⁾을 써서 건미를 안배하여 8월로 삼았다. 또한 “문왕이 괘를 편 것이 상나라 말이어서 정삭이 아직 고쳐지지 않았으니 미를 8월로 삼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여 곧 칭하기를 “주공이 이를 기술하고 완성하였으므로 『주정』으로 정하였다.”라고 하였다.

且先儒以爲文王作卦辭，周公作爻辭，劉氏既未有以破之，安得謂卦辭亦周公所成，以飾「臨」卦八月，用『周正』之說乎？其下文曰，“況乎，『易』有三名，夏曰『連山』，商曰『歸藏』，周曰『周易』。『易』既題周以正名，則不得不以周之正朔定其月也。”

또한 선배 유자가 문왕이 괘사를 짓고, 주공이 효사를 지었다고 하였는데, 유씨가 이를 파괴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괘사 또한 주공이 완성한 것이 「임」괘 8월을 꾸며 『주정』의 설을 쓸 수 있는가? 그 아래 문장에 “하물며 『역』은 세 이름이 있으니, 하나라는 『연산』이라 하였고, 상나라는 『귀장』이라 하였고, 주나라는 『주역』이라 하였다. 『역』은 이미 ‘주’를 제목으로 달아 이름을 바로하였으니, 부득불 주나라의 정삭으로 그 달을 정하였다.”고 하였다.

且『周易』書名。周公設官，可題周家，以別餘代，卦辭豈得擅改？彼禮樂損益，蓋從

455) 지우팔월유흉(至于八月有凶): 「臨」卦 「象」辭.

456) 하씨가.....된다: 『周易正義』「臨」卦 何晏注.

457) 『주정(周正)』: 주나라의 정월이니 11월에 해당한다. 『夏正』은 正月, 『殷正』은 12월을 쓴다.

時之宜, 『易』之爲書, 萬世無敝. 況文考之手澤, 周公改之, 何意也? 文王若曰: “七月有凶”有何妨害, 而周公故以八月定之乎? 文王作『易』之時, 便題周字, 亦可矣, 何必周公也? 號國曰周, 其來久矣. 故曰: “周雖舊邦, 其命惟新.” 雖紂在上, 而題『易』曰周, 以別夏商, 何害也? 「魯頌」次於「周頌」, 亦須周滅而後加魯字乎? 此類皆閭巷老生, 誑童耀駭之辨, 非天下之公議也.

또한 『주역』은 책이름이다. 주공이 관직을 설치할 때, 주가를 제목으로 하여 다른 세대와 구별할 수 있었으니,⁴⁵⁸⁾ 과사를 어떻게 마음대로 고칠 수 있었겠는가? 저 예약의 손익은 대개 시대의 마땅함을 따랐으니, 『역』의 책됨은 만세에 폐가 없다. 하물며 문왕의 손때가 묻은 것을 주공이 고쳤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문왕이 만약 “7월유홍”이라고 말했다 하더라도 무슨 방해가 있기에 주공이 고의로 8월로써 이를 정하였겠는가? 문왕이 『역』을 지을 때, 문득 ‘주’자로 제목을 달아도 또한 옳은 일인데, 하필이면 주공이 그리하였겠는가? 나라를 불러 주라한 것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그러므로 “주나라는 비록 오래된 나라이나, 그 명이 새로워졌다.”⁴⁵⁹⁾라고 말한 것이다. 비록 주(紂)가 위에 있어도 『역』을 ‘주’라고 제목하여 하·상과 구별하는 것이 무엇이 해로운가? 「노송」이 「주송」 다음인데, 또한 모름지기 주나라가 멸망하고 난 뒤에 ‘노’자를 더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러한 종류는 모두 여항의 노인이 아이들과 어리석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변론이지, 천하의 공적인 논의가 아니다.

論五

或曰: 『易緯』以六十卦, 主三百六十五日四分日之一, 信乎?

曰: 吾觀於『太玄』, 信矣.

논5

혹자가 말했다. 『역위』의 ‘60괘로 365일과 4분의 1일을 주관한다’는 것을 믿

458) 주공이.....있었으나: 『周禮』를 말한 듯하다.

459) 주나라는.....새로워졌다: 『詩』「大雅」「文王」.

을 수 있는가?

내가 『태현(太玄)』⁴⁶⁰⁾에서 보니 믿을 수 있다.

所主之日，取卦象乎？取卦名乎？

曰：取諸卦名而已。『太玄』所以準『易』者也。起於冬至，其首曰「中」，“陽氣潛萌於黃宮，信無不在乎中。”謂是時萬物之萌，信無不在地之中，於『易』則『中孚』。孚者，信也，亦謂信無不在地之中也。其次曰「周」，“陽氣周神而反乎始。”於『易』則『復』。復者，反也。亦謂反乎始也。其次曰「礮」，“陽氣微動，動而礮，礮，物生之難也。”於『易』則「屯」。屯者，物之始生也。粗舉二三，則知冬至之後，其卦「中孚」「復」「屯」者，題號，此日之氣候，曰中孚也，曰復也，曰屯也，他皆倣此。

‘주관하는 날’은 과상을 취한 것인가, 과명을 취한 것인가?

이를 과명에서 취했을 뿐이다. 『태현』은 『역』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동지에서 시작하는데, 그 첫머리를 「중」⁴⁶¹⁾이라 하니, “양기가 황궁⁴⁶²⁾에서 싹트니, 신이 「중」에 있지 않음이 없다.”⁴⁶³⁾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 때 만물의 싹이 땅 속에 있지 않음이 없다.”라는 것이다. 『역』의 「중부」에 해당한다. ‘부’라는 것은 ‘신’이니, 또한 “신이 땅 속에 있지 않음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은 「주」⁴⁶⁴⁾라는 것인데, “양기가 신을 회복하여 처음으로 돌아온다.”고 하였으니, 『역』의 「복」에 해당한다. ‘복’은 ‘반’이니, 또한 “처음으로 돌아온다.”는 말이다. 그 다음은 「현」⁴⁶⁵⁾인데, “양기가 미동하나 움직이되 어려우니 현은 만물의 태어남의 어려움이다.”라고 하였으니, 『역』의 「둔」이다. ‘둔’이라는 것은 만물의 처음 태어남이다. 대강 두셋을 들어도 동지의 뒤를 알 수 있으니 그 과의 「중부」·「복」·「둔」이라는 것은 ‘재호’이며 이 날의 기후가 ‘속에 부가 있다’·‘회복된다’·‘어렵

460) 『태현(太玄)』: 揚雄이 도가의 영향을 받아 『周易』을 모방하여 지은 책이다. 후세에 도가와 상수역학과에 영향을 끼쳤다. 64괘를 모방하여 81수(首)를 만들었다.

461) 「중(中)」: 81수중 첫 번째 수이다. ‘首’는 卦에 해당한다.

462) 황궁(黃宮): 12律중 黃鍾에 해당하는 자리인데, 天文으로는 建子이고, 夏正으로는 11월 동지이다. 道家에서는 배꼽아래 丹田에 대응하는 머리위 腦頂을 말한다.

463) 양기(陽氣)가.....없다: 『周易』의 「象」에 해당하는 것인데, 『太玄』에서는 「玄首」라고 한다.

464) 「주(周)」: 81수중 두 번째 수이다. 晉나라 范望의 注에 의하면, 여기서 ‘周’의 의미는 ‘復’이니 ‘7日來復’과 같다고 한다.

465) 「현(顯)」: 81수중 세 번째 수이다.

다'는 것이니, 다른 것도 모두 이와 비슷하다.

但「玄首」八十一，每首四日有半。『易』卦六十，每卦六日有奇。故前後或參差，蓋大同而小異也，而劉氏以經“「乾」「坤」之策，三百六十，當期之日。”不別起數，謂『易緯』六日七分，義無所出。若是則劉氏凡言天五駕天一之類，亦出於經乎？「乾」「坤」之策，況其數六十卦，況其名不相妨也。又謂十二卦已主十二月，不可取雜書破經義。今觀六十卦之次，其十二卦仍在本月，稱爲闢卦，則十二卦既總主一月，又與諸卦分治六日，如侯伯有功德者，既作一州之牧，亦未免爲一國之君也。而劉氏區區，以月各有主，日無用卦，是欲立州牧而廢二百一十君也，其可乎？

다만 「현수」는 81이요, 매 수는 4일 반이다. 『역』과는 60이요, 매과는 6일 남짓이다. 그러므로 앞뒤가 혹 들쭉날쭉하나 대개 대동소이한데 유씨는 경에 “「건」「곤」의 책이 360이니 일년의 날 수에 해당한다.”⁴⁶⁶⁾고 하여 별도로 수를 기산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말하기를 “『역위』의 ‘6일 7분’은 뜻이 출처가 없다.”고 하였다. 이런 식이라면 유씨가 무릇 말한 ‘천5에 천1을 엮었다.’와 같은 종류 또한 ‘경’에서 나왔는가? ‘「건」「곤」의 책’은 그 수가 60괘임을 비유한 것이니, 그 이름을 비유한다고 해서 서로 방해될 것은 없다. 또한 말하기를 “12개의 과가 이미 12월을 주관하니, 잡서를 취하여 경의를 파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지금 60괘의 차례를 보면, 그 12괘는 여전히 본달에 있어 벽괘⁴⁶⁷⁾라 칭하니, 곧 12괘가 이미 한 달을 총괄 주관하고, 또 여러 과와 더불어 6일을 분치하니 후와 백으로 공덕 있는 자를 이미 한 주의 목으로 삼았으니 또한 한 나라의 임금 됨을 면치 못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유씨는 구구하게 “달은 각각 주관함이 있으나, 날은 과를 쓸 것이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주목은 세우고자 210군을 폐하는 것이니, 가당한가?

或曰：敢問元亨利貞何謂也？

曰：大哉乎「乾」之四德也。而先儒解詁，未能顯闡，是使天道不大明，君子無所法。

466) 「건」「곤」의.....해당한다: 『周易』「繫辭上傳」 9장.

467) 벽괘(辟卦:임금괘):孟喜의 卦氣說에 의하면, 4정괘를 60괘를 辟·公·卿·大夫·侯의 5조로 나누어 각조당 12개의 과를 배당하는데, 12벽괘가 12월을 대표한다.

若夫元以始物，亨以通物，利以宜物，貞以乾物，讀『易』者，能言之矣。然所以始之，通之，宜之，幹之，必有其狀。

혹자가 말했다. 감히 묻노니, ‘원형리정’은 무엇을 이르는가?

위대하도다 「건」의 4덕이여. 선배 유자가 풀이하였으나 드러내어 밝힐 수 없었으니, 이것이 천도로 하여금 크게 밝아지지 못하게 하고, 군자가 본받을 것이 없게 하였다. 저 ‘원’으로써 만물을 시작하게 하고, ‘형’으로써 만물을 통하게 하며, ‘이’으로써 만물을 마땅하게 하고, ‘정’으로써 만물을 주관하게 하는 것은, 『역』을 읽는 사람이라면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작하게 하고’·‘통하게 하고’·‘마땅하게 하고’·‘주관하게 하는’ 방법은 반드시 그 정상(情狀)이 있어야 한다.

竊嘗論之曰：始者，其氣也，通者，其形也，宜者，其命也，幹者，其性也。走者，得之以胎，飛者，得之以卵，百穀草木，得之以勾萌，此其始也。胎者，不殞，卵者，不殞，勾者，以伸，萌者，以出，此其通也。人有衣食，獸有山野，蟲豸有陸，鱗介有水，此其宜也。堅者，可破而不可軟，炎者，可滅而不可冷，流者，不可使之止，植者，不可使之行，此其幹也。

저우기 일찍이 이를 논하였다. 시(始)라는 것은 그 기요, 통이라는 것은 그 형이요, 의라는 것은 그 명이요, 간이라는 것은 그 성이다. 달리는 것들은 이를 태(胎)로써 얻고, 나는 것들은 이를 알로써 얻고, 백곡과 초목은 이를 싹으로써 얻으니, 이는 그 시이다. 태로 얻은 것들은 낙태하지 않고, 알로 얻은 것들은 깨지지 않고,⁴⁶⁸⁾ 굽은 것들은 펴고, 싹나는 것들은 나오게 하니, 이는 그 통이다. 사람이 입는 것과 먹는 것이 있고, 짐승이 산과 들이 있으며, 충치⁴⁶⁹⁾는 물이 있고, 어패류가 물이 있으니, 이는 그 의이다. 견고한 것은 파괴할 수 있어도 부드럽게 할 수 없고, 타오르는 것은 멸할 수 있어도 차게 할 수 없으며, 흐르는 것은 이를 멈추게 할 수 없고, 심는 것은 이를 돌아다니게 할 수 없으니, 이는 그 간이다.

468) 태로.....알고: 『禮記』『樂記』에 나오는 말이다.

469) 충치(蟲豸): “有足謂之蟲，無足謂之豸.” 『爾雅』.

「乾」而不元，則物無以始，故女不孕也。元而不亨，則物無以通，故孕不育也。亨而不利，則物失其宜，故當視而盲，當聽而聾也。利而不貞，則物不能幹，故不孝不忠，爲逆爲惡也。是故「文言」曰：“元者，善之長也，亨者，嘉之會也，利者，義之和也，貞者，事之乾也。”

「건」하여도 원하지 않으면 만물이 시작할 수 없으므로 여자가 잉태할 수 없다. 원하고도 형하지 않으면 만물이 통할 수 없으므로 잉태하여도 기를 수 없다. 형하고도 이하지 않으면 만물이 그 마땅함을 잃으므로 볼 때 눈멀고, 들을 때 귀 먹는다. 이하고도 정하지 않으면 만물이 주관할 수 없으므로 불효하고 불충하며, 역을 하고 악을 하는 것이다. 이러하므로 「문언」⁴⁷⁰⁾에서 “원이란 것은 선의 어른이요, 형이란 것은 아름다움의 모임이요, 이란 것은 의의 화평함이요, 정이란 것은 일의 근간이다.”고 한 것이다.

唯君子，爲能法「乾」之德，而天下治矣。制夫田以飽之，任婦功以煖之，輕稅斂以富之，恤刑罰以生之，此其元也。冠以成之，昏以親之，講學以材之，擯接以交之，此其亨也。四民有業，百官有職，能者居上，否者在下，此其利也。用善不復疑，去惡不復悔，令一出而不反，事一行而不改，此其貞也。是故「文言」曰：“君子，體仁足以長人，嘉會足以合禮，利物足以和義，貞固足以幹事。君子行此四德者，故曰：‘「乾」元亨利貞.’”

오직 군자라야 「건」의 덕을 본받을 수 있어 천하가 다스려진다. 농토를 다스려 배부르게 하고, 부녀자의 일을 맡겨 따듯하게 하며, 세금을 가볍게 하여 부유하게 하고, 형벌을 구휼하여 살리니, 이것이 그 원이다. 관례로써 이루게 하고, 혼례로써 친하게 하며, 학문을 강의함으로써 인재를 만들고, 손님을 접대함으로써 교제하게 하니, 이것이 그 형이다. 4민이 일이 있고, 백관이 직분이 있으며, 능한 사람은 위에 있고, 능하지 못한 사람은 아래에 있으니, 이것이 그 이이다. 선을 쓰되 다시 의심하지 아니하고, 악을 제거하되 다시 후회하지 아니하며, 명령

470) 「문언(文言)」: 『周易』乾卦 「文言傳」을 말한 것인데, 인용문은 원래 『左傳』襄公 9年 5月條에 穆姜의 말로 소개되어 있다.

이 한 번 나옴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이 한 번 행하여짐에 고치지 아니하니, 것이 그 정이다. 이때문에 「문언」에 “군자는 인을 체득하니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될 만하며, 모임을 아름답게 하니 충분히 예예⁴⁷¹⁾ 합하며, 만물을 이롭게 하니 충분히 의에 화합하며, 바르고 곧으니 충분히 일을 주관한다. 군자는 이 4덕을 행하는 사람이므로 ‘「건」은 원하고 형하고 이하고 정하다.’고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論六

或曰：敢問五行相生則吉，相克則凶，信乎？

曰：相生未必吉，相克未必凶，用之得其宜，則雖相克而吉。用之失其宜，則雖相生而凶。今夫水克於火，則燔燒可救。火克於金，則器械可鑄。金克於木，則宮室可匠。木克於土，則萌芽可出。土克於水，則漂溢可防。是用之得其宜，雖相克而吉也。以水浸木則腐，以木入火則焚，以火加土則焦，以土埋金則斂，以金投水則沈，是用之失其宜，雖相生而凶也。

논6

혹자가 말했다. 감히 묻노니, “5행이 상생하면 길하고, 상극하면 흉하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가?

‘상생’이 반드시 길하지 않고, ‘상극’이 반드시 흉하지 않다. 이를 운용함이 그 마땅함을 얻으면 비록 상극이라도 길하다. 이를 운용함이 그 마땅함을 잃으면 비록 상생이라도 흉하다. 지금 저 물이 불을 이기면 불타는 것을 구할 수 있다. 불이 쇠를 이기면 기계를 주조할 수 있다. 쇠가 나무를 이기면 집을 지을 수 있다. 나무가 흙을 이기면 싹을 나오게 할 수 있다. 흙이 물을 이기면 넘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는 운용이 그 마땅함을 얻은 것이니, 비록 상극이라도 길하다. 물로 나무를 적시면 썩고, 나무를 불에 넣으면 살라지고, 불을 흙에 더하면 그슬

471) 예(禮)예: 元亨利貞은 四時로는 春夏秋冬이지만, 人事로 보면 仁禮義智의 순서가 된다. 따라서 亨이 禮이고 利가 義이다.

러지고, 흠으로 쇠를 묻으면 녹슬고, 쇠를 물에 던지면 가라앉으니 이는 운용이 그 마땅함을 잃은 것이니, 비록 상생이라도 흉하다.

是以『太玄』之「贊」，決在晝夜，當晝則相克亦吉，當夜則相生亦凶。「玄告」曰：“五生不相殄，五克不相逆。不相殄乃能相繼也，不相逆乃能相治也。相繼則父子之道也，相治則君臣之寶也。”今夫父之於子，能食之弗能教之，則恩害於義也。君之於臣，能賞之，又能刑之，則威克厥愛也。恩害義則家法亂，威克愛則國事修。吾故曰：“相生未必吉，相克未必凶”也。

이로써 『태현』의 「찬」⁴⁷²⁾은 결정이 낮과 밤에 있으니, 낮을 당하면 상극 또한 길하고, 밤을 당하면 상생 또한 흉하다. 「현고」⁴⁷³⁾에 “5생은 서로 멀하지 아니하고, 5극은 서로 거역하지 않는다. 서로 멀하지 않기 때문에 곧 서로 이을 수 있고, 서로 거역하지 않기 때문에 곧 서로 다스릴 수 있다. 서로 이은 즉 부자의 도요, 서로 다스린 즉 군신의 보배이다.”라고 하였다. 오늘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먹일 수 있더라도 가르칠 수 없으면 은혜가 의를 해친다. 임금의 신하에게 상을 줄 수 있고 또 형도 줄 수 있다면 위엄이 그 사랑을 이긴다. 은혜가 의를 해치면 가법이 어지러워지고, 위엄이 사랑을 이기면 나라의 일이 닦여진다. 나는 그러므로 “‘상생’이 반드시 길한 것이 아니요, ‘상극’이 반드시 흉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或曰：吾子之言性命，何其異也？

曰：吾之言也，折諸聖，宜乎其異矣。命者，天之所以使民爲善也，性者，人之所以明於善也。觀其善則見人之性，見其性則知天之命。「說卦」曰：“昔者聖人之作『易』也，將以順性命之理，是以立天之道曰陰與陽，立地之道曰柔與剛，立人之道曰仁與義。兼三才而兩之，故『易』六畫而成卦。”人之有仁義，所以順性命也。

혹자가 말했다. 당신이 성명을 말한 것은 어찌 그리 다른가?

472) 「찬(贊)」: 『太玄』의 「贊」은 『周易』의 爻와 같은 것인데, 爻가 한 卦에 6개인데 반하여, 「贊」은 한 「首」에 9개씩, 총 729「贊」이 있다.

473) 「현고(玄告)」: 「현고(玄告)」는 『周易』의 「繫辭傳」을 모방한 것이다.

나의 말은 이를 성인에게서 절충한 것이니 마땅히 다르다. 명이란 것은 하늘이 백성들로 하여금 선을 하게 하는 방법이요, 성이란 것은 사람이 선에 밝은 방법이다. 그 선을 관찰하면 사람의 성을 보고, 그 성을 보면 하늘의 명을 알 수 있다. 「설괘」에⁴⁷⁴⁾ “옛날 성인이 『역』을 지은 것은 장차 이것으로 성명의 이치에 따르려는 것이니, 이로써 하늘의 도를 세워 ‘음과 양’이라 하였고, 땅의 도를 세워 ‘유와 강’이라 하였고, 사람의 도를 세워 ‘인과 의’라고 하였다. 3재를 겸하여 이를 두 번 하였으므로 『역』은 6획으로 괘를 이룬다.”고 하였으니, 사람이 인의가 있는 것은 성명을 따르려는 까닭이다.

董仲舒曰：“天命之謂命，命非聖人不行。質樸之謂性，性非教化不成。人受命於天，固超然異於群生。入有父子兄弟之親，出有君臣上下之誼，會聚相遇，則有耆老長幼之施。粲然有文以相接，驩然有恩以相愛，此人之所以貴也。生五穀以食之，桑麻以衣之，六畜以養之，服牛乘馬，圈豹檻虎，是其得天之靈，貴於物也。”然則本乎天謂之命，在乎人謂之性，非聖人則命不行，非教化則性不成，是以制民之法，足民之用，而命行矣。導民以學，節民以禮，而性成矣。則是聖人爲天之所爲也。

동중서는⁴⁷⁵⁾ “하늘이 명령한 것을 명이라 이르니 명은 성인이 아니면 행하여 지지 아니하고, 질박을 성이라 이르니 성은 교화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476) 사람은 하늘에서 명을 받았으니 진실로 초연히 못 생명과 다르다. 들어가면 부자와 형제의 친함이 있고, 나오면 군신과 상하의 마땅함이 있으며, 모여서 서로 만나면 기로와 장유의 베품이 있다. 찬란하게 문이 있어 서로 접하고, 기쁘게 은이 있어 서로 사랑하니, 이것이 사람이 귀한 까닭이다. 5곡을 길러 먹이고, 뽕나무와 삼베로써 옷을 입히고, 6축⁴⁷⁷⁾으로써 봉양하고, 소를 부리고 말을 타며, 표범과 호랑이를 우리에게 가두니, 이는 그가 하늘의 신령함을 얻어 만물보다 귀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하늘에 근본한 것을 명이라 이르고, 사람에게

474) 「설괘(說卦)」에: 『周易』「說卦傳」 2장의 내용이다.

475) 동중서는: 다음 인용문은 『漢書』「董仲舒傳」에서 온 것이다.

476) 않는다: 李觀가 中略했는데, 『漢書』「董仲舒傳」에는 다음 문장이 있다. “人欲之謂情，情非度制不節。是故王者上謹於承天意，以順命也。下務明教化民，以成性也。正法度之宜，別上下之序，以防欲也。脩此三者，而大本學矣。”

477) 6축(六畜): 六畜은 馬·牛·羊·雞·狗·豬이다.

있는 것을 성이라고 이르니, 성인이 아니면 명은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교화가 아니면 성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때문에 백성의 법을 제정하고, 백성의 씹씹이를 풍족하게 하여 명이 행해진다. 백성을 인도하되 학으로써 하고, 백성을 절제시키되 예로써 하여 성이 이루어진다. 곧 이는 성인은 하늘이 하는 것을 한다.

「繫辭」曰：“吉凶者，言乎其失得也，悔吝者，言乎其小疵也，無咎者，善補過也。”由此觀之，吉凶由人，乃『易』之教也。黃帝堯舜通其變，使民不倦，神而化之，使民宜之，是以自天祐之，吉無不利。若夫釋人事而責天道，斯孔子所罕言。古之龜筮，雖質諸神明，必參以行事。南蒯將亂，而得黃裳元吉。穆姜棄位，而遇元亨利貞。德之不稱，知其無益。

「계사」에 “길흉이라는 것은 그 득실을 말하는 것이요, 회린이라는 것은 그 작은 하자를 말하는 것이요, 무구라는 것은 과실을 잘 보충하는 것이다.”⁴⁷⁸⁾라고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보면 길흉은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곧 『역』의 가르침이다. 황제·요·순이 그 변화를 통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게으르지 않게 하고, 신묘하게 교화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마땅하게 하였다. 이러므로써 하늘로부터 도와서 길하여 이롭지 않은 것이 없다.⁴⁷⁹⁾ 인간사를 풀면서 천도를 닦는 것 이것은 공자가 드물게 말한 것이다. 옛날의 귀서는 비록 신명에게 이를 질정하는 것이라도 반드시 행사로써 참고하였다. 남괴가 장차 반란하려 하였으나 “황상원길”을 얻었다⁴⁸⁰⁾ 목강이 자리를 버렸으나 “원형리정”을 만났다.⁴⁸¹⁾ 덕이 맞지 않아서

478) 길흉이라는.....것이다: 『周易』「繫辭上傳」 3장.

479) 황제(黃帝)·요·순이.....것이다: 『周易』「繫辭下傳」 2장의 내용인데 원문은 다음과 같다. “神農氏沒，黃帝堯舜氏作，通其變，使民不倦，神而化之，使民宜之，易，窮則變，變則通，通則久。是以自天祐之，吉無不利。”

480) 남괴(南蒯)가.....얻었다: 『左傳』昭公 12년조에 나온다. 남괴는 당시 촌나라 費읍의 읍제로 季平子에게 반란하려고 짐을 쳤는데, 坤괘 六五爻辭 ‘黃裳元吉’을 얻었다. 그러나 子服惠伯이 ‘忠信之事則可，不然必敗.’라고 하였다. 이 사례는 뒤의 穆姜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易』을 이용할 때 行事を 참고해야함을 보여준다.

481) 목강(穆姜)이.....만났다: 『左傳』襄公 9년조에 나온다. 穆姜은 노나라 宣公의 부인으로 음란하였고, 成公을 廢하려다 실패하여 東宮에 유폐되었다가 죽었다. 유폐 당시 짐을 쳤는데 之卦로 隨卦를 얻자 扈가 ‘탈출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였으나, 목강이 그 유명한 元亨利貞을 거론하면서 “나는 부녀자로서 난에 참여하였고, 아랫자리에 있으면서 不仁하였으니 元이라 말할 수 없고, 國

이니 그 무익함을 알겠다.

後之儒生，非史非巫，而言稱運命，矯舉經籍，以緣飾邪說，謂存亡得喪，一出自然，其聽之者，亦已荒矣！「王制」曰：“執左道以亂政，殺，假於鬼神時日卜筮以疑衆，殺。”爲人上者，必以「王制」從事，則『易』道明，而君道成矣。

후세의 유생은 사도 아니고 무도 아닌데, 말끝마다 운명을 칭하고, 경적을 속여서 거론하여 사특한 말을 꾸며대면서 이르기를 “존망과 득상이 하나같이 자연에서 나왔다.” 라고 하니 그것을 듣는 사람도 또한 이미 황폐해진다. 「왕제」에 “좌도를 잡아 정사를 어지럽히면 죽인다. 귀신·시일·복서를 빌려 군중을 의혹되게 하면 죽인다.” 고 하였다. 남의 위가 된 자는 반드시 「왕제」로 종사해야만 『역』의 도가 밝아지고 임금의 도가 이루어진다.

가를 편안케 하지 못하였으니 흉이라 말할 수 없고, 난을 일으켜 몸을 해쳤으니 치라고 말할 수 없고, 자리를 버리고 음란하였으니貞이라고 말할 수 없다. 4덕이 있는 사람은 隨卦를 만나 허물이 없겠으나 나는 4덕이 모두 없으니, 어찌 隨卦에 해당하겠는가. 나는 惡을 취하였으니 능히 허물이 없겠는가. 반드시 여기에서 죽을 것이니 탈출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제6장 『이구집』 권5 周禮致太平論51篇并序 · 內治

李觀集卷第五

周禮致太平論 五十一篇 並序

敘曰：昔劉子駿鄭康成，皆以『周禮』爲周公致太平之跡，而林碩謂末世之書，何休云六國陰謀。然鄭義獲伸，故周官遂行。觀竊觀六典之文，其用心至悉，如天焉有象者在，如地焉有形者載，非古聰明睿智誰能及此，其曰周公致太平者，信矣。鄙儒俗士，各滯所見，林之學不著何說公羊誠不合禮，盜憎主人，夫何足怪？今之不識者，抑又譎譎，將使人君何所取法？是用摭其大畧而述之。天下之理，由⁴⁸²⁾家道正，女色階禍，莫斯之甚，述「內治」七篇。利用厚生爲政之本，節以制度乃無傷害，述「國用」十六篇。備預不虞，兵不可闕，先王之制，則得其宜，述「軍衛」四篇。刑以防奸，古今通義，唯其用之有所不至，述「刑禁」六篇。綱紀既立，持之在人，天工其代，非賢罔⁴⁸³⁾，述「官人」八篇。何以得賢，教學爲先，經世軌俗，能事以畢，述「教道」九篇。終焉並序，凡五十一篇，爲十卷，命之曰：「周禮致太平論」。噫，豈徒解經而已哉，唯聖人君子知其有爲言之也！

주례치태평론⁴⁸⁴⁾ 51편 병서

옛날 유자준(劉子駿·劉歆)과 정강성(鄭康成·鄭玄)은 모두 『주례(周禮)』는 ‘주공이 태평을 이룬 자취’라고 하였는데, 임석(林碩)은 ‘말세의 책’이라 하였고, 하휴(何休)는 ‘6국의 음모’라고 하였다. 그러나 정현의 의(義)가 펼쳐져 『주관(周官)』이 드디어 행하여졌다.⁴⁸⁵⁾ 내가 6전(六典·周禮)의 글을 가만히 보니, 그 마음 씀

482) 原註: ‘由’는 원래 ‘臼’로 되어 있었는데 正德本, 萬曆本, 四庫本, 光緒本에 근거하여 고쳤다.

483) 原註: ‘父’는 원래 ‘又’로 되어 있었는데 문장의 의미에 근거하면 마땅히 ‘父’로 되어야 하니 지금 바로잡는다. 光緒本에는 ‘又’위에 하나의 ‘任’자가 더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又’는 마땅히 아래에 붙여 읽어야 한다.

484) 주례치태평론: 年譜에 의하면 35세때 지은 것이다.

485) 옛날..... 행하여졌다: 『周禮正義』「序周禮廢興」에 나오는 말을 요약한 것이다. 해당 원문은 다음

씀이가 지극히 상세하여, 하늘에 상(象)이 있는 것과 같고, 땅에 형(形)이 실려 있는 것과 같았다. 옛날 총명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능히 이에 미치겠는가? ‘주공이 태평을 이루었다’라고 한 말은 믿을만 하다. 비유(鄙儒)와 속사(俗士)들은 각기 보는 것에 막혀있으니, 임석의 학문은 드러나지 못하였고, 하휴가 말한 공양(公羊)은 진실로 예에 함당하지 않다. 도둑이 주인을 미워하는 것이 어찌 죽히 괴이한 일이겠는가? 오늘날에도 식견 없는 자들이 또한 시끄럽게 떠들어대니, 장차 임금으로 하여금 어디에서 법을 취하게 하겠단 말인가? 이러므로써 그 대략을 주워모아 기술하였다. 천하의 이치는 집안의 도가 바로잡힘으로 말미암는다. 재앙의 계단은 여색 보다 심한 것이 없으니 「내치(內治)」7편을 지었다. 이용후생(利用厚生)은 정치의 기본이다. 제도로 절제하여 상해(傷害)가 없게 해야하므로 「국용(國用)」16편을 지었다. 뜻하지 아니한 사태에 미리 대비할 때 군사는 빠트릴 수 없다. 선왕의 제도가 마땅함을 얻었으니 「군위(軍衛)」4편을 지었다. 형벌로써 간악함을 막는 것은 고금의 통한 의(義)이나, 오직 그 쓰임이 지극하지 못한 것이 있어 「형금(刑禁)」6편을 지었다. 기강은 이미 섰으나 잡고 지키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있다. 천공(天工)을 대신함이니 어진이가 아니면 다스릴 수 없으므로 「관인(官人)」8편을 지었다. 어떻게 어진이를 얻을 것인가? 교학(敎學)이 우선이다. 세상을 경영하고 세속에 법이 서면 능한 일이 마쳐질 것이니 「교도(敎道)」9편을 지었다. 마치면서 서문을 곁들이니 모두 51편, 10권이 되었다. 「주례치태평론(周禮致太平論)」이라 이름하였다. 아, 어찌 한갓 경(經)을 풀이할 따름이겠는가! 오직 성인군자는 그 위함이 있어 말한 것을 알 것이다.

內治第一

男女之際，人道所重，前哲固備言矣。然而賢妃相成之道不世出，亂國家者，往往而是。蓋婦人之性，鮮克正也。陰則昧，柔則弱，昧不足自見，弱不足自立，與物而遷，直⁴⁸⁶情忘反，其體一也。堯試舜，“觀厥刑于二女，釐降二女于媿汭，嬪於虞。”以堯之女，其淵源非不善，尚曰：“舜能以義理下其心。”是無聖人爲之耦，則不克使其行

과 같다. “林孝存以爲武帝知周官末世瀆亂不驗之書，故作七論七難以排棄之，何休亦以爲六國陰謀之書。唯有鄭玄徧覽群經，知周禮者乃周公致太平之迹，故能答林碩之論難，使周禮義得條通。”
486) 原註: ‘直’은 光緒本에 ‘眞’으로 되어 있다.

婦道也. 彼凡人子, 而不漸以教, 摩以禮, 其可乎哉?

내치 제1

남녀의 교제가 사람 도리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전철(前哲)이 진실로 말을 갖추어 놓았다. 그러나 ‘어진 왕비가 서로 이루는 도’⁴⁸⁷⁾는 세상에 좀처럼 나오지 않으나, 국가를 어지럽히는 자는 가끔 있었다. 대개 부인의 성정은 능히 바른 것이 드물다. 음(陰)은 어리석고 유(柔)는 약하니, 어리석음은 스스로 보기에 부족하고 약함은 스스로 서기에 부족하다. 상대를 따라 옮기고 감정에 솔직하여 돌아옴을 잊으니 그 체(體)가 하나이다. 요(堯)가 순(舜)을 시험하였는데, “두 딸에게 모범이 되는 것을 보고자 하여, 두 딸을 치장하게 하고 규수(媯水)의 북쪽⁴⁸⁸⁾에 시집 보내 우순(虞舜)의 아내가 되게 하였다.”⁴⁸⁹⁾라고 하였다. 요의 딸로써 그 연원이 선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오히려 가로대⁴⁹⁰⁾ “순이 능히 의리로써 그 마음을 낮추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이는 성인(聖人) 배우자가 없었다면 능히 그 부도(婦道)를 행하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저 평범한 사람의 아들로서 교육으로써 점진(漸進)하게 하고 예절로써 연마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가능했겠는가.

今夫數口之家, 猶以婦傾, 或靡敝財用, 或離析骨肉, 速刑召禍, 至無可救者多矣. 況乎后妃, 同體於王, 其次嬪御, 亦所愛幸, 一發言, 一舉事, 足以旋轉天地, 薄蝕日月, 其爲禍福, 可勝言哉! 貴則爲驕, 富則爲侈, 並寵則妬, 不答則怨, 憎則有讒言, 愛則有私謁, 府庫或爲之空, 刑賞或爲之濫, 奸邪或爲之昌, 忠良或爲之剝, 宗室或爲之棄, 冢嗣或爲之易, 帷薄或爲之不修, 社稷或爲之不食. 妹喜之放桀, 妲己之殺紂, 此類豈少哉!

지금 저 수구지가(數口之家)⁴⁹¹⁾도 오히려 부인 때문에 기울어지니, 혹 재물 씀

487) 어진.....도: 『詩經』「鷄鳴」毛序에 나오는 말이다. “「鷄鳴」, 思賢妃也. 哀公荒淫怠慢, 故陳賢妃貞女, 夙夜警戒相成之道焉.”

488) 규수(媯水)의 북쪽: 당시 순이 경작하던 곳이었다.

489) 두 딸에게.....하였다: 『書經』「堯典」의 구절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490) 가로대: 孔穎達의 말이다. 『尚書正義』. “舜爲匹夫, 帝女下嫁, 以貴適賤, 必自驕矜, 故美舜能以義理下帝女尊克之心於所居媯水之汭, 使之服行婦道於虞氏.”

씬이가 사치하여 없애기도 하고, 혹 골육(骨肉)을 이간하기도 하여, 형벌을 부르고 재앙을 불러 구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한 것이 많다. 하물며 후비(后妃)는 왕과 한 몸이요, 그 다음 빈어(嬪御) 또한 총애받는 사람이다. 한 번 발언하고 한 번 거사(擧事)하는 것이 천지를 돌려 일식과 월식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니 그 재앙과 복 되는 것을 이루 말할 수 있는가? 귀하게 되면 교만하고 부유해지면 사치하며, 총애를 받으면 투기하고 답이 없으면 원망하며, 증오하면 참소하는 말이 있고 사랑하면 사적으로 청탁하여 부고(府庫)는 혹 텅비고 형벌과 상은 혹 넘쳐나며, 간사(姦邪)한 자들은 혹 번창하고 충량(忠良)한 사람들은 혹 깎여나가며, 종실이 혹 버려지고 맏아들이 혹 바뀌며, 장막이 혹 닳이지 아니하고⁴⁹²⁾ 사직이 혹 먹을 수 없게 된다. 말희(妹喜)가 걸(桀)을 내치고 달기(妲己)가 주(紂)를 죽였으니 이러한 종류가 어찌 적겠는가.

故「內宰」“以陰禮教六宮.” 陰禮, 婦人之禮. 六宮, 謂后也. 又“以陰禮教九嬪.” 不言教夫人世婦, 舉中以見上下省文也. 又“以婦職之法教九御, 使各有屬, 以作二事, 正其服, 禁其奇衰, 展其功緒.” 九嬪掌婦學之法, 以教九御婦德婦言婦容婦功. 后, 尊也. 不得不受教. 女御, 卑也, 而教亦及之. 在王宮者, 不可不知禮也. 如使后夫人九嬪世婦女御皆受教, 皆知禮, 德皆正, 言皆順, 無冶容, 無廢功, 無侈服, 無衰道, 則閨門之內, 何有不肅? 溥天之下, 何有不化? 「關雎」之不淫, 「葛覃」之躬儉, 「樛木」之無嫉妬, 「螽斯」之多子孫, 「卷耳」之輔佐求賢, 「兔置」之莫不好德, 於斯見矣! 王道安得不成乎?

그러므로 「내재(內宰)」⁴⁹³⁾에 “음례(陰禮)로써 6궁(六宮)을 가르친다.”라고 하였으니, 음례는 부인의 예요, 6궁은 후(后)를 말한 것이다. 또 “음례로써 9빈(九嬪)을 가르친다.”라고 하고 ‘부인(夫人)과 세부(世婦)를 가르친다.’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중심을 들어 위아래가 생문(省文)임을 보인 것이다.⁴⁹⁴⁾ 또 “부직(婦職)의

491) 수구지가(數口之家): 父母와 本人과 妻子등 8~9명으로 이루어진 평범한 가구를 말한다. 『孟子』 「梁惠王上」.

492) 장막이.....아니하고: ‘帳薄不脩’는 남녀가 음란함을 말한다. 『漢書』 「賈誼傳」 및 『新書』 「階級」.

493) 「내재(內宰)」: 『周禮』 「天官冢宰下」.

494) 부인(夫人)과.....것이다: 李觀의 말이 아니라 『周禮』 鄭玄注의 말이다. 이구는 직접 인용하기도 하고 축약하기도 하면서 정현의 주를 사용하고 있다.

법으로 9어(九御)를 가르쳐 하여금 각각 소속이 있게 하여 두 가지 일⁴⁹⁵⁾을 하게 한다. 그 의복을 바르게 하고, 그 아침을 금하며, 그 공적을 기록한다.”라고 하였다. 9빈은 부학(婦學)의 법을 관장하여 9어에게 부덕(婦德)과 부언(婦言)과 부용(婦容)과 부공(婦功)을 가르친다. 후(后)는 존귀하니 교육을 받지 않을 수 없고, 여어(女御)는 비천(卑賤)하나 교육이 또한 미치니,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예를 알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후·부인·9빈·세부·여어로 하여금 모두 교육을 받고 모두 예를 알게 하여, 덕이 모두 바르고 말이 모두 순하며, 야용(冶容)이 없고 공(功)을 폐함이 없으며, 사치하는 의복이 없고 간사한 도가 없게 된다면 규문(闈門)의 안이 어찌 엄숙하지 않음이 있을 것이며, 넓은 하늘 아래가 어찌 교화되지 아니함이 있겠는가? 「관저(關雎)」의 음란하지 아니함과 「갈담(葛覃)」의 몸소 검소함과 「규목(樛木)」의 질투 없음과 「동사(蠡斯)」의 자손 많음과 「권이(卷耳)」의 군자를 보좌하고 어진이를 구함과 「토저(兔置)」의 덕을 좋아하지 아니함이 없는 것⁴⁹⁶⁾을 이에서 볼 것이니, 왕도가 어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內治第二

天官冢宰，其屬則有九嬪世婦女御女祝女史。唯夫人之於后，猶三公之於王，坐而論婦禮，無官職，故不列。且夫六宮內也，如家人，家人私也。六宮外也，乃國事，國事公也。外內異處，國家異分，公私異宜。然而使嬪婦屬天官，無外內國家公私之辨者，何哉？聖人之意，於是深矣！

내치 제2

천관총재(天官冢宰)는 그 관속에 9빈·세부·여어·여축(女祝)·여사(女史)가 있다. 오직 부인이 후(后)를 대하는 것은 3공이 왕을 대하는 것과 같다. 앉아서 부례(婦禮)를 논하나 관직이 없으므로 반열에 있지 않다. 또한 저 6궁은 ‘내(內)’이니

495) 각각.....일: 女御가 총 81명인데 9명씩 9조로 움직여 御와 事(婦職) 두가지 일을 하게 한다는 말이다.

496) 「관저(關雎)」의.....것: 여기 인용된 시편들은 모두 『詩經』「周南」에서 온 것으로 婦德을 주제로 하고 있다.

집안 사람과 같다. 집안 사람은 ‘사(私)’이다. 6관(六官)⁴⁹⁷은 ‘외(外)’이니 곧 나라의 일이다. 나라의 일은 ‘공(公)’이다. ‘외’와 ‘내’가 거처를 달리하고, ‘나라’와 ‘집안’이 나누어짐이 다르며, ‘공’과 ‘사’는 마땅함이 다르다. 그러나 빈부(嬪婦)로 하여금 천관(天官)에 소속하게 하여 외·내, 국·가, 공·사의 분별을 없게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성인의 뜻이 이에 깊다!

彼婦人女子，而當於至尊，幽居九重，人弗得見，則驕蹇自恣，無所不至也。是故使之分職於內，而附屬於外。有職則當奉其法，有屬則必考其功。奉法則不敢不謹，考功則不敢不慎。舉宮中之人而知所勸勉者，官有其長之效也。而況內宰亦用大夫士。「春官」“世婦每宮卿二人。”蓋皆分命賢臣，以參檢內事，與夫婢妾賤人，自相使令而無畏忌者，不同年而語矣。天子所御，而服官政，從官長，是天子無私人。天子無私人，則群臣焉得不公？庶事焉得不平？“無偏無黨，王道蕩蕩。”此之謂也。

저들은 부인과 여자이나 지존에 해당하고, 구중궁궐에 깊이 거하여 사람들이 볼 수 없으니, 곧 교만하고 스스로 방자하여 이르지 못할 곳이 없다. 이러하므로 하여금 ‘내’에서 직분을 나누되 ‘외’에 부속시킨 것이다. 직분이 있으면 마땅히 그 법을 받들 것이요, 소속이 있으면 반드시 그 공을 고찰할 수 있다. 법을 받들면 감히 삼가지 않을 수 없고, 공을 고찰하면 감히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궁중의 사람을 들어 권면할 바를 알게 하는 것은 관(官)에 그 장(長)이 있는 효과이다. 그런데 하물며 내재는 또한 대부와 사(士)를 쓴다. 「춘관(春官)」⁴⁹⁸에 “세부(世婦)는 매 궁(宮)에 경(卿)이 2인⁴⁹⁹이다.”라고 하였으니, 대개 모두 어진 신하를 분명(分命)하여 ‘내’의 일을 참고하고 살피게 한 것이다. 비첩(婢妾)과 천인(賤人)이 스스로 상호 간에 시키고 명령하여 두려움과 거리낌이 없는 것과는 같은 수준에서 논할 수 없는 것이다. 천자가 거느리는 사람이지만 관정(官政)에 복무하고, 관장(官長)을 따르니, 이는 천자에게 사인(私人)이 없는 것이다. 천자에게 사인이 없으니, 곧 군신(群臣)이 어찌 공변되지 않을 것이며, 서사(庶事)가 어

497) 6관(六官): 周代에 중앙 정부를 天·地·春·夏·秋·冬으로 나누어 각각 治·教·禮·兵·刑·事를 주관하게 하여 6관이라 하였는데 6卿이라고도 한다. 장관은 각각 冢宰·司徒·宗伯·司馬·司寇·司空이다.

498) 「춘관(春官)」: 『周禮』「春官宗伯」.

499) 매.....2인: 6궁이므로 총 12인이다.

찌 올바르지 않겠는가? “편(偏)이 없고 당(黨)이 없으니 왕도가 탕탕(蕩蕩)하다.”⁵⁰⁰⁾라는 것은 이것을 이룬 것이다.

漢高帝欲廢太子，立戚夫人子趙王如意，留侯曰：“骨肉之間，雖臣等百人何益!” 此大臣不得與內事之敝也。爰盎引卻慎夫人坐，謂妾主豈可以同坐。文帝怒，說以人豕，乃說。如使盎輩得制宮中之事，則尊卑有不序，上下有不和者乎? 官失其守，一女顯恣，則公卿附離之不暇，其何冢宰之能帥也? 悲夫!

한(漢)나라 고제는 태자를 폐하고 척부인(戚夫人)의 아들 조왕(趙王) 여의(如意)를 세우고자 하였다. 유후(留侯:張良)가 가로대 “골육지간은 비록 신들이 백명이라도 무슨 유익함이 있겠습니까.”⁵⁰¹⁾라고 하였다. 이는 대신이 ‘내’의 일에 관여할 수 없는 폐해이다. 원앙(爰盎)이 신부인(慎夫人)의 좌석을 끌어당겨 낮추면서 말하기를 “첩(妾:慎夫人)과 주(主:皇后)가 어떻게 같이 앉을 수 있습니까?”라고 하자 문제(文帝)가 노하였다. (원앙이) ‘인시(人豕:戚夫人)’로 설명하자 이에 기뻐하였다.⁵⁰²⁾ 만약 원앙과 같은 사람들로 하여금 궁중의 일을 통제할 수 있게 한다면, 존비(尊卑)가 질서 잡히지 않음이 있고, 상하가 불화(不和)한 것이 있겠는가? 관직이 그 지킴을 잃고 한 여자가 방자함을 오로지하면, 공경(公卿)이 들러볼기에 겨를이 없으니, 그 어떻게 총재(冢宰)가 능히 통솔할 것인가? 슬프다!

內治第三

「昏義」曰：“古者，天子后，立六宮⁵⁰³⁾，三夫人，九嬪，二十七世婦，八十一御妻，以聽天下之內治，以明章婦順，故天下內和而家理”也。至於「天官」序，則世婦以下，不言數，謂君子不苟於色，有婦德者充之，無則闕。世婦女御，視大夫士，尚惟其人，

500) 편(偏)이.....탕탕(蕩蕩)하다: 『書經』「洪範」. “無偏無陂，遵王之義，無有作好，遵王之道，無有作惡，遵王之路，無偏無黨，王道蕩蕩，無黨無偏，王道平平，無反無側，王道正直.”

501) 한(漢)나라.....있겠습니까: 『漢書』「張良傳」.

502) 원앙(爰盎)이.....기뻐하였다: 『漢書』「爰盎傳」. 文帝가 上林에 行幸할 때 皇后와 慎夫인이 따라갔는데, 당시 의전 담당이었던 爰盎이 尊卑와 上下를 거론하며 신부인의 자리를 황후보다 낮게 하면서 高帝 당시 戚夫人의 예를 든 것이다. 뒤에 신부인이 금 50근을 내렸다고 한다.

503) 原註: ‘宮’은 원래 ‘官’으로 되어 있었는데 四庫本과 『禮記』「昏義」에 근거하여 고쳤다.

則三夫人，九嬪官，不必備，可知矣.

내치 제3

「혼의(昏義)」⁵⁰⁴⁾에 가로대, “옛날 천자의 후(后)가 6궁과 3부인과 9빈과 27세 부와 81어처(御妻)를 세워 천하의 내치(內治)를 듣고서 부순(婦順)을 밝혔다. 그러므로 천하는 ‘내’가 화목하여 집안이 다스려졌다.”⁵⁰⁵⁾라고 하였다. 「천관(天官)」의 서(序)에 이르면 세부(世婦) 이하는 숫자를 말하지 않았으니, 말하자면 군자는 색(色)에 구차하지 아니하여 부덕(婦德)을 갖춘 자가 있으면 충원하고, 없으면 비워둔다는 것이다. 세부와 여어는 대부와 사에 견주어 오히려 오직 그 사람을 숭상하였으니, 곧 3부인과 9빈의 관원도 반드시 구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自古婦人之賢者，蓋不易得。故其生，則寢之地以教其卑，衣之裒以教其正，弄之瓦以教其事。既十年，姆教婉婉聽從，執麻枲，治絲繭，織紵組紃，學女事，以共衣服，觀於祭祀，納酒漿籩豆菹醢，禮相助奠。十有五年而笄，二十而嫁。先嫁三月，祖廟未毀，教于公宮，祖廟既毀，教于宗室，教以婦德婦言婦容婦功，教成之，祭，牲用魚，芼用蘋藻，所以成婦順也。如此而後，備於從人之道。況乎王之北宮，當貫魚之寵者，可以非其人哉？

예로부터 부인의 현명한 자는 대개 얻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아가) 태어나면 땅바닥에서 재워 그 낮음을 가르치고, 장옷을 입혀 그 바름을 가르치며, 실패를 가지고 놀게 하여 그 일을 가르친다.⁵⁰⁶⁾ 이미 열 살이 되면 여자 스승은 순하고 듣고 따르며, 삼과 모시품을 잡으며, 실과 누에고치를 다스리며, 비단을 짜고 끈을 짜며, 여자의 일을 배워서 의복을 장만하며, 제사를 보아 술과 장과

504) 「혼의(昏義)」: 『禮記』 篇名.

505) 옛날.....다스려졌다: 참고로 인용문 뒤에 바로 이어지는 구절은 다음과 같다. “天子，立六官，三公，九卿，二十七大夫，八十一元士，以聽天下之外治，而明章天下之南教，故外和而國治.”

506) 태어나면.....가르친다: 『詩經』 「小雅」 「斯干」에서 인용한 듯 하다. “乃生女子，載寢之地，載衣之裒，載弄之瓦，無非無儀，唯酒食是議，無父母詒懼.”라고 하였는데 참고로 남자를 낳을 경우는 다음과 같다. “乃生男子，載寢之牀，載衣之裳，載弄之璋，其泣嚶嚶，朱芾斯皇，室家君王.”

변두(籩豆)와 첫갈을 들며 예로 도와 상차리는 것 도우기를 가르친다. 열 다섯 살에 비녀를 꽂고, 스무 살에 시집간다.⁵⁰⁷⁾ 시집가기 석달 전에 아직 선조의 복(服)이 다하지 않았으면 공궁(公宮:祖廟)에서 가르치고, 선조의 복(服)이 이미 다 하였으면 종실에서 가르친다. 가르치되 부덕(婦德)과 부언(婦言)과 부용(婦容)과 부공(婦功)으로써 하여 가르침이 완성되면 제사를 지낸다. 희생은 물고기를 사용하며, 채소는 빈조(蘋藻:水草)를 사용하니 부순(婦順)을 이루는 것이다.⁵⁰⁸⁾ 이와 같이 한 뒤에 종인지도(從人之道)를 갖추는 것이다. 하물며 왕의 북궁(北宮)⁵⁰⁹⁾은 관어(貫魚:衆陰)의 총애를 받아야 하는 자⁵¹⁰⁾에 해당하니 그 사람이 아니면 가능하겠는가?

故無德以色親，則天有投蜺之異，詩曰：“蜺蝮在東，莫之敢指。”謂邪色之乘陽也。「曲禮」“納女於天子曰：備百姓。”言以廣子姓耳。深山大澤，實生龍蛇，母子傳類，亦不可忽。晉愍懷太子宮中爲市，使人屠酤，手揣斤兩，輕重不差。蓋其母，屠家女也。先王之制，百二十人，猶以無人而闕之，至難至慎若此。武帝平吳之後，掖庭殆將萬人，復何義也？人多則御幸不可徧，怨恨由是興，費廣則財物不足支，民氓所以困，國家之敗，何莫由斯者邪！

그러므로 덕은 없으면서 색(色)으로써 친하면 하늘에서 무지개를 던지는 이상한 일이 있다. 『시(詩)』에⁵¹¹⁾ 가로대 “체동(蜺蝮:虹)이 동쪽에 있으니 감히 가리킬 수 없구나.”라고 하였으니, 사색(邪色)이 양을 올라탄 것을 말한 것이다. 「곡례(曲禮)」에 “천자에게 딸을 보내는 것을 ‘백성을 갖춘다.’라고 말한다.”라고 하였으니 말하자면 후손을 넓힌다는 것일 뿐이다. “깊은 산과 큰 못은 실로 용과 뱀이 산다.”⁵¹²⁾라고 하였으니 모자간에 전하는 종류,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다.

507) 열 살이.....시집간다: 『禮記』「內則」의 해당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508) 시집가기.....것이다: 『禮記』「昏義」의 내용이다. 단 원문은 “敎成，祭之，牲用魚，芼之以蘋藻。”인데 ‘祭之’에서 ‘之’자가 빠졌고, ‘芼之以蘋藻’에서 ‘之以’가 ‘用’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509) 북궁(北宮): 왕의 寢宮은 南宮이고, 왕후의 寢宮은 北宮이다.

510) 관어(貫魚:衆陰)의.....자: 『周易』 剝卦 六五爻辭에 “貫魚，以宮人寵，無不利.”라고 하였다. 다섯 개의 음이 맨 위의 양을 剝削하는 것이 剝卦이지만, 六五爻는 왕후의 위치로써 모든 음을 거느려 양의 사랑을 받아야 이롭다는 것처럼 왕후가 여러 궁인과 함께 왕을 모셔야 함을 비유하였다.

511) 『시(詩)』에: 『詩經』「鄘風」「蜺蝮」을 말한다. 淫奔을 금지할 것을 읊은 시이다.

진(晉)나라 민회태자(愍懷太子)가 궁중에 시장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시켜 짐승을 잡고 술을 팔게 하며, 손수 근량(斤兩)을 헤아리니 경중(輕重)이 차이가 없었다. 대개 그 어머니가 도가(屠家)의 딸이었기 때문이었다.⁵¹³⁾ 선왕의 제도에 120인⁵¹⁴⁾은 오히려 사람이 없으므로써 빼놓았으니, 지극히 어려워하고 지극히 신중함이 이와 같았던 것이다. 무제(武帝:晉武帝)가 오(吳)나라를 평정한 뒤 액정(掖庭:宮人)이 자못 1만명이었으니 다시 무슨 의(義)인가?⁵¹⁵⁾ 사람이 많으면 어행(御幸)이 두루할 수 없으니 원한이 이 때문에 일어나고, 비용이 많이 들면 재물이 지탱하기 부족하니 백성이 곤궁해진다. 국가의 실패가 어찌 이것으로 말미암지 않겠는가!

內治第四

“女御掌御叙于王之燕寢.” 凡群妃御見之法，月與后妃其象也，卑者宜先，尊者宜後。十五日而徧。自望後反之。其不使九嬪世婦掌之，而使女御者，防上之專妬也。蓋以女御官卑，不敢嫉妬自專，則九九之法行矣。九九之法行，則內無怨女，而子孫衆多矣。

내치 제4

“여어(女御)가 왕의 연침(燕寢)에서 모시는 순서를 관장한다.”⁵¹⁶⁾라고 하였다. 무릇 군비(群妃)가 여현(御見)하는 법은 달과 후비(后妃)가 그 상(象)이니, 낮은 자가 마땅히 앞이요, 높은 자가 마땅히 뒤이다. 15일까지 두루하고 보름부터 뒤는 반대이다.⁵¹⁷⁾ 9빈과 세부로 하여금 관장하게 하지 않고 ‘여어’를 시킨 것은 윗전이 마음대로 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대개 ‘여어’는 관직이 낮으니,

512) 깊은.....산다: 『左傳』襄公 21年條. 叔向의 어머니가 叔向에게 해준 말로 후궁이 총애를 받아 아들을 낳으면 용과 뱀이 되어 자신의 아들인 叔向을 해칠까 염려하여 한 말이다.

513) 진(晉)나라.....때문이었다: 『晉書』列傳 23 「愍懷太子」.

514) 120인: 3夫人, 9嬪, 27世婦, 81御妻를 합한 수이다.

515) 무제(武帝:晉武帝)가.....의(義)인가: 『晉書』列傳 31 「胡貴嬪」.

516) 여어(女御)가.....관장한다: 『周禮』「女御」.

517) 무릇.....반대이다: 『周禮』「九嬪」의 鄭玄注를 옮긴 것이다.

감히 질투를 마음대로 할 수 없어,⁵¹⁸⁾ 곧 9·9법⁵¹⁹⁾이 행해진다. 9·9법이 시행되면 안에 원망하는 여자가 없고 자손은 많아질 것이다.

夫飲食男女，人之大欲，一有失時，則爲怨曠。「七月」「女心傷悲」，「東山」「婦嘆於室」，君子揮於人情，周道所以興也。安得聚少艾之色，幽於深宮之中，而無進御之路，則其性情之所感動，何如哉？四時何以能和？百神何以降福？

음식과 남녀는 사람의 큰 욕망이니, 하나라도 때를 잃음이 있으면 원망한다. 「7월(七月)」⁵²⁰⁾에 “아가씨 마음 슬퍼함이여.”라고 하였고, 「동산(東山)」⁵²¹⁾에 “부인이 집에서 탄식하네.”라고 하였다. 군자가 인정(人情)을 탐색하였으니 주나라의 도가 흥기한 까닭이다. 이에 젊고 예쁜 여자를 모아서 깊은 궁궐 가운데 유폐하여 두었는데, 나아가 모실 길이 없다면 그 성정의 느끼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4계절이 무엇으로써 능히 조화로우며, 온갖 신이 무엇으로써 복을 내리겠는가?

至于繼嗣，社稷之重事。甚有寵之人，或不宜子，非廣其禮，將無及也。霍光欲上官皇后擅寵有子，雖宮人使令，皆爲窮禰，多其帶，後宮莫有進者，而昭帝無嗣。成帝約不負趙昭儀，掖庭中御幸生子者，輒死，飲藥傷墮者無數，終以國統三絕，王莽篡之，愛有所偏之過也。薄姬輸織室而生孝文，爲漢太宗。晉簡文寵徐貴人，彌年無子。李后在織坊，形長色黑，謂之崑崙，帝以大計召之，乃生孝武。天命所在，不以貴賤美惡論也。然則九九而御，使無專妬者，聖人之意遠矣。

후사를 잇는데 이르면 사직의 중대한 일이다. 매우 총애하는 사람이 있고 혹

518) 9빈과.....없어: 『周禮』「女御」의 鄭玄注를 옮긴 것이다.

519) 9·9법: 원래 9嬪이 9명씩 81女御를 거느리는 것을 말한다. 곧 ‘궁내의 질서’를 의미하는데 위에 나온 御見을 예로 들어보면, 15일을 배정할 때 女御 81인이 9夕, 世婦 27인이 3夕, 9嬪 9인이 1夕, 3夫人이 1夕, 后가 1夕을 담당하는 등의 질서이다.

520) 「7월(七月)」: 『詩經』「邶風」에 있는 詩篇名이다. 李觀은 ‘傷悲’를 ‘怨’으로 풀이하였으나, 뒷날 朱熹는 『詩經集傳』에서 ‘시집가는 여자가 부모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프고 슬픈 것’으로 보았다.

521) 「동산(東山)」: 『詩經』「邶風」에 있는 詩篇名이다. 인용구는 남편이 부역나간 지 3년이 지난 부인의 탄식이다.

아들이 마땅하지 않을 때, 그 예(禮)를 넘히지 않으면 장차 후회막급이다. 광광(霍光)은 상관황후(上官皇后)⁵²²가 총애를 독차지하여 아들이 있기를 바래서, 비록 궁인과 사령이라도 모두 궁고(窮褲)⁵²³를 하여 그 띠가 많게 하였고, 후궁이 나아가는 자가 있지 않게 하였는데⁵²⁴ 소제(昭帝)가 후사가 없었다. 성제(成帝)는 조소의(趙昭儀)⁵²⁵를 저버리지 않기로 약속하여 액정(掖庭:宮人) 가운데 어행(御幸)으로 아들을 낳은 자가 문득 죽었고, 약을 마시거나 떨어져 다친 자가 셀 수 없었다.⁵²⁶ 마침내 국통이 3번 끊겨 왕망이 찬탈하였으니, 편애(偏愛)의 재앙이었다. 박희(薄姬)⁵²⁷는 직실(織室)로 보내졌는데, 효문(孝文)을 낳아 (효문제)가 한나라 태종(太宗)이 되었다. 진(晉)나라 간문제(簡文帝)는 서귀인(徐貴人)을 총애하였으나 해가 차도 자식이 없었다. 이후(李后)가 직방(織坊)에 있었는데 키가 크고 낮빛이 검어 ‘곤륜(崑崙)’이라고 불렀다. 간문제가 대계(大計)⁵²⁸로써 불러 이에 효무(孝武)를 낳았다.⁵²⁹ 천명(天命)이 있는 곳에는 귀천(貴賤)과 미악(美惡)으로써 논할 수 없다. 그렇다면 9·9의 어(御)로써 투기를 오로지 하는 자가 없게 한 성인의 뜻은 심원한 것이다.

內治第五

哀公問曰：“冕而親迎，不已重乎？”孔子愀然作色而對曰：“合二姓之好，以繼先聖之後，以爲天地宗廟社稷之主，君何謂已重乎？”然則先王之所以重昏禮，爲其主祭祀也。祭祀之禮，豈唯致齋於內，會君於廟，服副禕於東房，執璋瓚而亞裸，酌瑤爵，進玉齋，薦徹豆籩，以嘉魂魄而已乎？是禮之末節，一日可爲者也。必竭力從事，然後爲

522) 상관황후(上官皇后): 상관황후(BC88~BC37)는 霍光의 외손녀로 6세에 昭帝의 皇后가 되었다.

昭帝가 죽고 昌邑王이 즉위하자 皇太后가 되었고, 宣帝가 즉위하자 太皇太后가 되었다.

523) 궁고(窮褲): 바지의 앞 뒤를 막고 끈을 많이 묶어 황제가 가까이 할 수 없게 한 옷이다.

524) 광광(霍光)은.....하였는데: 『漢書』「外戚傳上」.

525) 조소의(趙昭儀): 조소의(BC47~BC7)는 趙飛燕의 동생으로 成帝의 총애를 받아 언니는 皇后, 동생은 昭儀가 되었다. 成帝사후 백성들이 음탕한 죄를 묻자 자살하였다.

526) 성제(成帝)는.....없었다: 『漢書』「外戚傳下」.

527) 박희(薄姬): 漢文帝의 어머니이다. 잉태후 관심밖에 있어 呂太后의 박해를 피할 수 있었다. 『漢書』「外戚傳上」.

528) 대계(大計): 전혀 관심 밖이던 궁인이 귀한 아들을 낳을 상이라는 관상쟁이의 말을 듣고 후사를 잇고자 侍寢케 한 것을 말한다.

529) 진(晉)나라..... 낳았다: 『진서』「后妃傳下」.

至焉。故「內宰」“中春，詔后帥外內命婦，始蠶於北郊，以爲祭服。”又“上春，詔王后帥六宮之人，而生種稷之種，獻之于王。”

내치 제5

애공이 물었다. “면류관을 쓰고 친영하는 것은 너무중한 것 아닙니까?” 공자가 초연히 얼굴빛을 고치며 대답하였다. “두 성씨의 줄음을 합하여 선성(先聖)의 뒤를 잇고, 천지와 종묘와 사직의 주인이 될 것인데, 임금께서 어찌 너무중한 것이라고 이르십니까?”⁵³⁰⁾ 그렇다면 선왕이 혼례를 중시한 까닭은 그 제사를 주관하기 위함이다. 제사의 예가 어찌 오직 안으로 재계를 다하고,⁵³¹⁾ 종묘에서 임금과 회동하며, 동쪽 방에서 부위(副禕)⁵³²⁾를 착용하고, 장찬(璋瓚:裸器)을 잡아 두 번째 잔을 붓고,⁵³³⁾ 요작(瑤爵)에 따르고, 옥자(玉齋)를 내며, 두(豆)와 변(籩)을 차리고 거두어 혼백을 즐겁게 하는 것⁵³⁴⁾일 따름 이겠는가? 이는 예의 지엄적인 것이니 하루에 할 수 있는 것이다. 반드시 힘을 다하여 종사한 뒤에 지극함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재(內宰)」⁵³⁵⁾에서 “중춘에 후(后)에게 조고(詔告)하여, 외·내의 명부(命婦)를 거느리고 북교(北郊)에서 장사를 시작하여 제복을 만들게 한다.”라고 하였고, 또 “상춘에 왕후에게 조고하여 6궁의 사람을 거느리고 동륙(種陸)⁵³⁶⁾의 종자를 띄워서 왕에게 바치게 한다.”라고 하였다.

夫普天王土，率土王臣。蠶者非一女也，將以爲王服，有不足乎？而后且親蠶其夫，以事先舅先姑，敢不用力焉？不可以爲婦道也。耕者非一男也，將以爲粢⁵³⁷⁾盛，有不足乎？而后且佐耕其夫，以事先舅先姑，敢不用力焉？不可以爲婦道也。王后之尊而親蠶，天下之女子有不遵微行求柔桑者乎？王后之尊而佐耕，天下之女子有不饁南畝喜田峻者乎？王后之尊而爲婦道，天下之女子有不承先祖共祭祀者乎？明王之以孝治

530) 애공이.....이르십니까: 『孔子家語』「大昏解」.

531) 안으로.....다하고: 『禮記』「祭義」. “致齋於內，散齋於外.”

532) 부위(副禕): ‘副’는 머리 장식이고, ‘禕’는 왕후의 예복이다.

533) 동쪽.....붓고: 『禮記』「祭統」.

534) 혼백을.....것: 『禮記』「禮運」. “君與夫人，交獻以嘉魂魄.”

535) 「내재(內宰)」: 『周禮』「春官冢宰下」.

536) 동륙(種陸): 鄭玄의 注에 “先種後孰謂之種，後種先孰謂之陸.”이라 하였다.

537) 原註: ‘粢’는 원래 ‘祭’로 되어 있었는데 光緒本에 근거하여 고쳤다.

天下, 此其一助也. 而況不知耕之勞, 則以爲田自生穀, 不知蠶之苦, 則以爲桑自生絲. 自古愚婦人, 糞土貨財, 焦爛府庫, 農夫病, 工女死, 而求之不已者, 不知民事之難也. 干⁵³⁸⁾竇之論「晉紀」曰: “其婦女妝櫛織紵, 皆取成於婢僕, 未嘗知女工絲枲之業, 中饋酒食之事也.” 晉之禮法, 於此大壞, 則周之興也宜矣.

넓은 하늘 아래가 왕의 땅이요, 온 땅에 왕의 신하가 있으니,⁵³⁹⁾ 양잠하는 자, 한 여자가 아니거늘 장차 왕의 의복을 지으라는 것은 부족해서인가? 그리고 왕후가 또한 그 지아비를 위해 친히 양잠하여 돌아가신 시부모를 섬기는 데에 감히 힘을 쓰지 않겠는가? 부도(婦道)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경작하는 자, 한 남자가 아니거늘 장차 자성(稔盛)을 하라는 것은 부족해서인가? 그리고 왕후가 또한 그 지아비의 경작을 보좌하여 돌아가신 시부모를 섬기는 데에 감히 힘을 쓰지 않겠는가? 부도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왕후의 존귀함으로 친히 양잠하는 것은 천하의 여자가, 오솔길을 따르며 부드러운 뽕잎을 구하지⁵⁴⁰⁾ 않는 자가 있어서인가? 왕후의 존귀함으로 경작을 보좌하는 것은 천하의 여자가, 남쪽 이랑에 새창을 내와서 전준(田峻: 勸農官)을 기쁘게 하지⁵⁴¹⁾ 않는 자가 있어서인가? 왕후의 존귀함으로 부도를 행하는 것은 천하의 여자가, 선조를 받들고 제사를 올리지⁵⁴²⁾ 않는 자가 있어서인가? 명왕(明王)이 효(孝)로써 천하를 다스리는데 이는 그것을 일조(一助)한 것이다. 그리고 하물며 경작의 수고로움을 알지 못하면 전토(田土)에서 곡식이 저절로 자란다고 생각하며, 양잠의 고통을 알지 못하면 뽕나무에서 저절로 실이 나온다고 생각할 것이다. 예로부터 어리석은 부인(婦人)은 재물을 썩은 흙처럼 여겨 창고를 태워 문드러지게 하나니, 농부가

538) 原註: ‘干’은 원래 ‘于’로 잘못 되어 있었는데 四庫本에 근거하여 고쳤다.

539) 넓은.....있으니: 『詩經』「小雅」「北山」. “普天之下, 莫非王土, 率土之濱, 莫非王臣.”

540) 오솔길을.....구하지: 『詩經』「豳風」「七月」. “七月流火, 九月授衣, 春日載陽, 有鳴倉庚, 女執懿筐, 遵彼微行, 爰求柔桑. 春日遲遲, 采芣祁祁. 女心傷悲, 殆及公子同歸.” 양잠하여 지아비를 뒷마라지 하는 모습을 읊은 대목이다.

541) 남쪽.....하지: 『詩經』「豳風」「七月」. “七月流火, 九月授衣, 一之日鶩發, 二之日栗烈, 無衣無褐, 何以卒歲, 三之日于耜, 四之日舉趾, 同我婦子, 饁彼南畝, 田峻至喜.” 농민의 일상을 읊은 대목이다. 朱熹의 『詩經集傳』에 의하면, 成王이 농사의 어려움을 모르므로 周公이 악사에게 읊게 하여 朝夕으로 외우게 한 것이라고 한다.

542) 선조를.....올리지: 『詩經』「召南」「采蘋」 毛序. “采蘋, 大夫妻能循法度也, 能循法度, 則可以承先祖, 共祭祀矣.”

병들고 직녀가 죽어도 요구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은 백성의 일이 어려운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간보(干寶)⁵⁴³가 『진기(晉紀)』에서 논하여 가로대 “그 부녀(婦女)들은 단장하고 빗질하며 베짜는 것을 모두 비복(婢僕)에게서 이루기를 취하여, 일찍이 여공이 길쌈하는 일과 집안에서 술과 음식을 장만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진(晉)나라의 예법이 여기에서 크게 무너진 것이니, 곧 주(周)나라의 흥기함은 마땅한 것이다.

內治第六

「春官內宗」, 凡內女之有爵者. 內女, 王同姓之女. 有爵, 其嫁於大夫及士者. 其職“掌宗廟之祭祀, 薦加豆籩, 及以樂徹, 則佐傳豆籩. 賓客之饗食, 亦如之. 王后有事, 則從.” 「外宗」, 凡外女之有爵者. 外女, 王諸姑姊妹之女. 其職“掌宗廟之祭祀, 佐王后薦玉豆, 眡豆籩, 及以樂徹, 亦如之. 王后以樂羞齋則贊. 凡王后之獻, 亦如之. 王后不與, 則贊宗伯. 小祭祀, 掌事. 賓客之事, 亦如之.” 夫富貴驕人, 自然之勢, 苟非明哲, 其能免乎? 矧伊女子, 生於王族, 雖有葭莩之親者, 猶乘勢以輕其家, 不順於舅姑, 不和於室人, 庸奴其夫者, 多矣.

내치 제6

「춘관내종(春官內宗)」은 무릇 ‘내녀(內女)’ 가운데 벼슬이 있는 자이다. ‘내녀’는 왕의 동성(同姓) 여자이다. 벼슬이 있다는 것은 대부와 사(士)에게 시집간 자이다. 그 직은 “종묘의 제사를 관장하여 두변(豆籩)을 올리며, 음악으로써 철상(撤床)할 때 두변 옮기는 것을 보좌한다. 빈객을 향사(饗食)할 때 또한 같다. 왕후가 일이 있으면 따른다.”라고 하였다. 「외종(外宗)」은 무릇 ‘외녀(外女)’ 가운데 벼슬이 있는 자이다. ‘외녀’는 왕의 모든 고모와 자매의 딸이다. 그 직은 “종묘위 제사를 관장하여 왕후를 도와 옥두(玉豆)를 올리고 두변을 보살피며, 음악으로써 철상(撤床)할 때 또한 같다. 왕후가 음악으로써 자성(粢盛:黍稷)을 올리면 돕는다. 무릇 왕후가 술잔을 올릴 때도 또한 같다. 왕후가 참여하지 아니하면 종백

543) 간보(干寶): 東晉때 사람이다. 저서에 『搜神記』, 『晉紀』 등이 있다.

(宗伯)을 돕는다. 궁중의 작은 제사⁵⁴⁴)에는 일을 관장한다. 빈객의 일도 또한 같다.”라고 하였다. 무릇 부귀(富貴)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형세이니 진실로 명철한 사람이 아니면 그 능히 면하겠는가? 하물며 저 여자들은 왕족에서 태어났으니, 비록 가부(葭苴)의 친함⁵⁴⁵)이 있는 자라도 오히려 세력을 타고서 그 남편의 집안을 가볍게 여기고, 시부모에게 불순(不順)하며, 집안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고, 그 남편을 멍청한 놈이라고 욕 하는 자가 많다.

夫婦之道，天地之象，人之大倫也。乃由宗室亂之，非所以示天下也。聖人有作，安得不大爲之坊？夫禮禁亂之所由生，猶坊止水之所自來也。故以內女外女謂之內宗外宗，列爲禮官之屬，其職禮，則視必在禮，聽必在禮，言必在禮，貌必在禮，思必在禮。視聽言貌思，無不在禮，則其人之智愚賢不肖何如也？祭祀賓客，非有切身之急，而不敢不以禮，則己之所以爲婦者，敢有不恭乎？

부부의 도는 천지의 상이요, 사람의 큰 윤리이다. 이에 종실로 말미암아 어지럽혀지는 것은 천하에 보여줄 수 없는 것이다. 성인이 지은 것이 있으니, 어찌 크게 제방을 만들지 않았겠는가? 무릇 예(禮)에서 문란함이 생기는 근원을 금하는 것은 물이 오는 근원을 제방으로 막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내녀’와 ‘외녀’를 ‘내종’과 ‘외종’이라 이르고, 반열을 예관의 소속으로 삼은 것이니, 그 직이 예라는 것은 곧 ‘보는 것’이 반드시 예에 있어야 하며, ‘듣는 것’이 반드시 예에 있어야 하며, ‘말하는 것’이 반드시 예에 있어야 하며, ‘용모’가 반드시 예에 있어야 하며, ‘생각’이 반드시 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과 용모와 생각이 예에 있지 아니함이 없으면 그 사람의 지혜롭고 어리석음과 어질고 어질지 아니함이 어떠하겠는가? 제사와 빈객은 몸에 절실한 급함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감히 예로써 아니함이 없다면 자기가 부녀되는 것에 감히 공경하지 않음이 있겠는가?

544) 궁중의 작은 제사: 『禮記』「祭法」에 “王立七祀，七祀之中行·中霤·司命·大厲是外神，后不與，惟有門·戶·竈而已。”라고 하였다.

545) 가부(葭苴)의 친함: 葭苴는 갈대의 줄기에 있는 얇은 膜으로 ‘葭苴之親’은 관계가 소원한 먼 친척을 의미한다. 『漢書』「中山靖王傳」, “今群臣非有葭苴之親.”

觀后之事宗廟，則知所以順其舅姑，觀后之饗同姓諸侯，則知所以和其室人，觀后之亞王裸獻，則知所以從其夫。順於舅姑，和於室人，而當於夫，是故婦順備而內和理，內和理而家可長久也。「召南」「何彼穠矣」，美王姬之詩，謂雖則王姬，亦下嫁於諸侯，車服不繫其夫，下王后一等，猶執婦道，以成肅雍之德。彼天子所生而若此，況於同姓姑姊妹之女乎？是其所以爲王化之基也。

왕후가 종묘를 섬기는 것을 보면 그 시부모에게 순종해야 함을 알 것이지요, 왕후가 동성제후를 향사하는 것을 보면 그 집안 사람들과 화목해야 함을 알 것이지요, 왕후가 왕의 다음으로 강신(降神)의 술잔을 올리는 것을 보면 그 지아비에게 순종해야 함을 알 것이다. 시부모에게 순종하고, 집안 사람들과 화목하며, 지아비에게도 마땅히 그렇게 할 것이니, 이러므로 부순(婦順)이 갖추어져 집안의 화목이 다스려지고, 집안의 화목이 다스려져 가정이 장구(長久)할 수 있는 것이다.⁵⁴⁶⁾ 「소남(召南)」의 「하피농의(何彼穠矣)」는 왕희(王姬)를 찬미한 시이니, 말하자면 비록 왕희라도 또한 제후에게 하가(下嫁)할 때 수레와 복식이 그 지아비에게 매이지 아니하고, 왕후보다 한 등급을 낮게 하여 오히려 부도(婦道)를 잡아 엄숙하고 화목한 도를 이루었다는 것이다.⁵⁴⁷⁾ 왕희는 천자의 소생인데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동성 고모와 자매의 딸들이야? 이것이 그 왕화(王化)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內治第七

“「媒氏」，掌萬民之判。凡男女，自成名以上，皆書年月日名焉。令男三十而娶，女二十而嫁。凡娶判妻入子者，皆書之。中春之月，令會男女。於是時也，奔者不禁。司男女之無夫家者而會之。” 夫昏姻之禮，要在及時。故國無鰥民，則「桃夭」之詠作。喪其妃耦，則「有狐」之刺興。彼室家之好，而繫之王者之風，爲人上者，不可不察也。

내치 제7

546) 시부모에게.....것이다: 『禮記』「昏義」에서 인용하였다.

547) 「하피농의(何彼穠矣)」는.....것이다: 『詩經』「何彼穠矣」의 毛序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이다.

「매씨(媒氏)」⁵⁴⁸에 “「매씨」는 만민의 판합(判合:成夫婦)을 관장한다. 무릇 남녀가 이름이 있는⁵⁴⁹ 이상은 모두 연·월·일과 이름을 쓴다. 남자는 30살에 장가가게 하고, 여자는 20살에 시집가게 한다. 무릇 장가 간 사람과 입자(入子:媵妾)도 모두 적는다. 중춘의 달에 남녀를 모이게 한다. 이 때에 부모 허락 없이 동거하는 자도 금하지 않는다. 남녀의 흠아비와 과부를 살펴 모이게 한다.”라고 하였다. 혼인의 예(禮)는 중요함이 ‘때에 미치는 것’에 있다. 그러므로 나라에 흠아비로 있는 백성이 없으면 「도요(桃夭)」⁵⁵⁰을 읊조리는 것이 일어나고, 그 배우자를 잃으면 「유호(有狐)」⁵⁵¹의 풍자가 일어난다. 저것은 부부의 좋음을 읊은 것인데, 왕자(王者)의 국풍(國風)에 매어 놓은 것을 윗사람 되는 자는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孟子對齊宣王曰：“昔者大王好色，愛厥妃。詩云，‘古公亶父，來朝走馬，率西水滸，至于岐下，爰及姜女，聿來胥宇。’當是時也，內無怨女，外無曠夫。王如好色，與百姓同之，於王何有？”誠哉，是言也！人主知漁色，而不知下無室家，知逞欲而不知下有怨曠，其可乎哉？天地不合，萬物不生。有夫有婦，然後爲家，上得以養父母，下得以育子孫。生民之本，於是乎在，而人主慢之，非計也。

맹자가 제선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대 “옛날에 태왕이 색(色)을 좋아하여 그 왕비를 사랑하였습니다. 『시』에⁵⁵² 이르기를 ‘고공단보가 아침에 말을 달려와서 서쪽 물가를 따라 기산아래에 이르렀네. 이에 강녀(姜女)와 드디어 살 곳을 정하였네.’라고 하였습니다. 이 때를 당하여 안에는 원망하는 여자가 없었고, 밖에는 가슴이 텅빈 남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왕께서 만약 색을 좋아하신다면, 백성과 더불어 함께 하신다면 왕천하(王天下) 하시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⁵⁵³라고 하였다. 진실하다, 이 말이며. 인주(人主)가 어색(漁色)만 알고 아래 백성이

548) 「매씨(媒氏)」: 『周禮』「地官」.

549) 이름이 있는: 『禮記』「內則」에 “三月之末，父執子右手，孩而名之.”라고 하였으니 이름이 있다는 것은 태어난 지 3개월이 지났다는 의미이다.

550) 「도요(桃夭)」: 『詩經』「周南」의 詩篇名. 여자가 제 때에 시집감을 읊은 시이다.

551) 「유호(有狐)」: 『詩經』「衛風」의 詩篇名. 과부가 흠아비를 보고 읊은 시이다.

552) 『시』에: 『詩經』「大雅」의 「綿」篇을 말한 것이다.

553) 맹자가.....있겠습니까: 『孟子』「梁惠王下」.

실가(室家:家庭) 없는 것을 알지 못하며, 욕심을 부릴 것만 알고 아래에 원녀(怨女)와 광부(曠夫)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옳은가? 천지가 화합하지 않으면 만물이 생길 수 없다. 부부가 있고 나서 가정을 이루어, 위로 부모를 봉양하고 아래로 자손을 기를 수 있는 것이다. 생민(生民)의 근본이 이에 있는데, 임금이 태만하다는 것은 계책이 아니다.

是故聖人設官，主判合之禮。子生三月，必書其名。男自二十以及二十九，女自十五以及十九，皆爲盛年。其昏自季秋至於孟春，惟其所用。若男三十女二十，爲期盡，雖中春猶可行。所以蕃育人民，是皆言其極也。及此月而父母不娶不嫁之者，相奔不禁。若無故而不用令，則罪罰之。嘗有妃匹而鰥寡者，亦察焉。

이러므로 성인이 관직을 설치하여 ‘판합(判合:婚姻)의 예(禮)’를 주관하게 하였다. 자식이 태어난 지 3개월에 반드시 그 이름을 쓴다. 남자는 20살부터 29살까지, 여자는 15살부터 19살까지 모두 성년(盛年)이다. 그 혼인은 계추부터 맹춘까지 쓸 수 있다. 만약 남자가 30살이고 여자가 20살이면 기한이 다한 것이니 비록 중춘이라도 오히려 행할 수 있다. 인민을 번육(蕃育)하는 것이니 이는 모두 그 극단을 말한 것이다. 이 달에 미쳐서도 부모가 장가보내지 않고 시집보내지 않는 자는 서로 혼례를 치르지 않고 사는 것도 금하지 않는다. 만약 연고없이 명령을 쓰지 아니하면 죄를 벌준다. 일찍이 배우자가 있었으나 흠아비와 과부가 된 자도 또한 살핀다.

先王之道如此其至也，既爲之立其家，又使之有其業。國中則「典婦功」，掌婦式之法，野則「鄧長」，稽其女功，然而民不庶且富者，未之信也。「越語」“女子十七不嫁，丈夫二十不娶，父母有罪。”雖於禮爲蚤，而句踐報吳，亦以是也。晉泰始中，博選良家以充後宮，先下書禁天下嫁娶。噫，大可笑也！

선왕의 도가 이와 같이 그렇게 지극하였으니, 이미 위하여 그 가정을 세우게 해주고, 또 하여금 그 생업이 있게 하였다. 국중(國中)에는 곧 「전부공(典婦功)」⁵⁵⁴⁾이 부식(婦式)의 법⁵⁵⁵⁾을 관장하였고, 야(野)에는 곧 「찬장(鄧長)」⁵⁵⁶⁾이 그

여공(女功)을 살폈으니, 그렇게 하고도 백성이 많아지고 또한 부유해지지⁵⁵⁷⁾ 않는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월어(越語)」에⁵⁵⁸⁾ “여자가 17살에 시집가지 아니하고, 장부가 20살에 장가가지 아니하면 부모에게 죄가 있다.”라고 하였다. 비록 예(禮)에는 이르지만 구천이 오나라에 보복한 것은 또한 이 때문이다. 진(晉)나라 태시(泰始)⁵⁵⁹⁾ 연간에 양가(良家)에서 널리 선발하여 후궁을 채웠는데, 먼저 글을 내려 천하의 가취(嫁娶)를 금한다고 하였다. 아, 대단히 가소로운 일이다.

554) 「전부공(典婦功)」: 『周禮』「天官冢宰下」.

555) 부식(婦式)의 법: 鄭玄의 注에 “婦式, 婦人事之模範. 法, 其用財舊數.”라고 하였다. 주로 길쌈관련 일을 말한다.

556) 「찬장(鄴長)」: 『周禮』「地官司徒下」.

557) 백성이.....부유해지지: 『論語』「子路」 9장. “子適衛, 冉有僕. 子曰庶矣哉! 冉有曰既誓矣, 又何加焉? 曰富之. 曰既富矣, 又何加焉? 曰教之.”

558) 「월어(越語)」에: 『國語』「越語上」을 말한다.

559) 태시(泰始): 泰始는 西晉 武帝 司馬炎의 연호이다. 265년에서 274년까지 10년간이다.

제7장 『이구집』 권6 國用1-國用5

李觀集卷第六

國用第一

人所以爲人, 足食也, 國所以爲國, 足用也. 然而天不常生, 其生有時, 地不徧產, 其產有宜, 人不皆作, 其作有能, 國不盡得, 其得有數. 一穀之稅, 一錢之賦, 給公上者, 各有定制, 苟不量入以爲出, 節用而愛人, 則哀公云“二猶不足.” 『公羊』謂“大桀小桀.” “誅求無已.” 怨刺並興, 亂世之政也.

국용 제1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것은 먹을 것이 충족되었을 때요, 나라가 나라일 수 있는 것은 쓸 것이 충족되었을 때이다. 그러나 하늘은 항상 살려주는 것이 아니니 그 살려주는 것이 때가 있고, 땅은 두루 낚는 것이 아니니 그 낚는 것이 마땅함이 있으며, 사람은 모두가 짓는 것이 아니니 그 짓는 것이 능력이 있고, 나라는 다 얻는 것이 아니니 그 얻는 것이 수(數)가 있다. 곡식 한 알갱이의 세금과 동전 한 닢의 세금이라도 공상(公上)에 공급하는 것은 각각 정한 제도가 있으니, 진실로 수입을 헤아려 지출을 하며,⁵⁶⁰⁾ 쓰기를 절약하고 사람을 사랑하지⁵⁶¹⁾ 아니하면, 애공이 말한 “돌도 오히려 부족하다.”⁵⁶²⁾는 것과 『공양(公羊)』에 “대걸(大桀)에 소걸(小桀)이다.”⁵⁶³⁾ “주구(誅求)가 그치지 않았다.”⁵⁶⁴⁾라는 것처럼 원

560) 수입을.....하며: 『禮記』「王制」. “冢宰制國用.....用地小大, 視年之豐耗, 以三十年之通, 制國用, 量入以爲出.”

561) 쓰기를.....사랑하지: 『論語』「學而」, 5장. “子曰: 道千乘之國, 敬事而信, 節用而愛人, 使民以時.”

562) 돌도.....부족하다: 『論語』「顏淵」, 5장. “哀公問於有若曰: 年饑用不足, 如之何? 有若對曰: 盍徹乎? 曰: 二吾猶不足, 如之何其徹也. 對曰: 百姓足, 君孰與不足, 百姓不足, 君孰與足.”

563) 대걸(大桀)에 소걸(小桀)이다: 『公羊傳』宣公 15年條. “什一者, 天下之中正也. 多乎什一, 大桀小桀, 寡乎什一, 大貉小貉.”

564) 주구(誅求)가.....않았다: 『左傳』襄公 31年條에 “誅求無時”라고 하였고, 董仲舒의 『春秋繁露』「王道」에 “誅求無已”라고 하였으나, 『公羊傳』에는 해당 기사가 없다. 둘중 하나가 착오에 의해 빠

망과 풍자가 아울러 일어나 난세(亂世)의 정치가 될 것이다.

故「大府」，“凡頒財以式法授之。”王日一舉，其膳六牲，祀兵朝甸，其服有九。故“關市之賦，以待王之膳服。”諸侯來朝，卿大夫來聘，致之則有積餐饗，接之則有饗食燕。故“邦中之賦，以待賓客。”牛馬之食，其用芻禾，車秣之數，皆視牢禮。故“四郊之賦，以待稍秣。”

그러므로 「대부(大府)」⁵⁶⁵에 “무릇 재물을 나눔에 식법(式法)으로써 준다.”⁵⁶⁶라고 하였다. 왕이 하루에 한 번 육식을 하는데⁵⁶⁷ 그 반찬이 6생(六牲:馬·牛·羊·豕·犬·雞)을 쓰고, 제사와 군사와 조화와 사냥에 그 복식(服飾)이 아홉이다. 그러므로 “관시(關市)의 세금으로 왕의 선복(膳服:衣食)을 공급⁵⁶⁸한다.”라고 하였다. 제후가 내조(來朝)하고 경대부가 내빙(來聘)할 때, 이르면 손옹(殮饗)을 쌓음이 있고, 접견하면 향사(饗食)의 잔치가 있다. 그러므로 “방중(邦中)의 세금으로 빈객 접견비를 공급한다.”라고 하였다. 소와 말이 먹는 것은 그 꼴과 버를 쓰니, 거타(車秣)의 수(數)⁵⁶⁹는 모두 리례(牢禮)에 견준다. 그러므로 “사교(四郊)의 세금으로 초말(稍秣:먹이)을 공급한다.”라고 하였다.

功懋懋賞，以馭其幸，所受之物，邦之大用。故“家削之賦，以待匪頒。”冬官百工，取材非一，五庫之量，毋或不良。故“邦甸之賦，以待工事。”問勞贈賄，酬爵侑食，皆爲筐實，將其厚意。故“邦縣之賦，以待幣帛。”

진 듯한데, 앞에 『公羊傳』을 언급한 것으로 보면 董仲舒의 『春秋繁露』인 것 같기도 하나 확실치 않다.

565) 「대부(大府)」: 『周禮』「天官冢宰下」.

566) 무릇.....준다: ‘재물을 나눈다’는 것은 官府의 소요비용을 세금을 건어 大府에서 분배한다는 것이요, ‘식법’이라는 것은 ‘九式’을 말한 것인데, 다음에 차례대로 나온다. 곧 關市·邦中·四郊·家削·邦甸·邦縣·邦都·山澤·幣餘 등이다.

567) 왕이.....하는데: 『周禮』「膳夫」에 나오는 말이다. 鄭玄의 注에 “殺牲盛饌日舉，王日一舉，以朝食也.”라고 하였다.

568) 공급: 鄭玄의 注에 “待猶給也.”라고 하였으니 이를 따라 번역하였다.

569) 거타(車秣)의 수(數): 『儀禮』「聘禮」에 “禾三十車，車三秣，設于門西，西陳.”이라고 하였고, 鄭玄의 注에 “秣，數名也，三秣，千二百秉.”이라고 하였다.

공이 많으면 상을 성대하게 하는 것,⁵⁷⁰⁾ 그 행(幸)을 거느리는 것,⁵⁷¹⁾ 받은 물건 등은⁵⁷²⁾ 나라의 큰 쓰임이다.⁵⁷³⁾ 그러므로 “가삭(家削)⁵⁷⁴⁾의 세금으로 비반(匪頒:分賜)을 공급한다.”라고 하였다. 동관(冬官)의 백공(百工)은 재료를 취하는 것이 하나가 아니요, 5고(五庫)의 양은 혹 불량(不良)이 없게 했다.⁵⁷⁵⁾ 그러므로 “방전(邦甸)의 세금으로 공사(工事)를 공급한다.”라고 하였다. 문로(問勞)와 증회(贈賄)와 수작(酬爵)과 유식(侑食)은 모두 광주리를 채워 그 후의(厚意)를 받들었다.⁵⁷⁶⁾ 그러므로 “방현(邦縣)의 세금으로 폐백을 공급한다.”라고 하였다.

大祀小祭，事神之禮，牲幣玉器，不奢不儉。故“邦都之賦，以待祭祀。”股肱或虧，君之所痛，贈祿含賻，闕一不可。故“山澤之賦，以待喪紀。”王及塚宰，時有所善，燕好之用，亦以推恩。故“幣餘之賦，以待賜予。”

대사(大祀)와 소제(小祭)는 신을 섬기는 예이니, 희생과 폐백과 옥기(玉器)는 사치하지도 않고 검소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방도(邦都)의 세금으로 제사를 공급한다.”라고 하였다. 고굉(股肱)이 혹 이지러지는 것은⁵⁷⁷⁾ 임금이 애통하는 것이라. 봉(贈:輿馬)과 수(祿:衣服)와 함(含:玉貝)과 부(賻:貨財)는 하나라도 빼면 옳지 않다. 그러므로 “산택(山澤)의 세금으로 상기(喪紀:喪事)를 공급한다.”라고 하였다. 왕과 총재가 때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연호(燕好:友好)의 비용으로 또한 추은(推恩)을 내린다. 그러므로 “폐여(幣餘)⁵⁷⁸⁾의 세금으로 사여(賜予)를 공

570) 공이.....것: 『書經』「仲虺之誥」. “德懋懋官，功懋懋賞.”

571) 그 행(幸)을.....것: 『周禮』「大宰」에 “以八柄詔王馭群臣.....三曰予，以馭其幸.”이라 하였고 鄭玄의 注에 “幸謂言行偶合於善，則有以賜予之，以勸後也.”라고 하였다.

572) 받은 물건 등은: 『周禮』「內府」에 “凡適四方使者，共其所受之物而奉之，凡王及冢宰之好賜予，則共之.”라고 하였다.

573) 나라의 큰 쓰임이다: 『周禮』「內府」에 “內府，掌受九貢九賦九功之貨賄良兵良器，以待邦之大用.”이라 하였고 鄭玄의 注에 “大用，朝覲之頒賜.”라고 하였다.

574) 가삭(家削): 鄭玄의 注에 “三百里之內地名削，其中有大夫采地，謂之家，故名家削.”이라고 하였다.

575) 5고(五庫)의.....했다: 『禮記』「月令」에 “是月也，命工師，令百工，審五庫之量，金鐵，皮革筋，角齒，羽箭幹，脂膠丹漆，毋或不良.”이라 하였다.

576) 광주리를.....받들었다: 『毛詩正義』「鹿鳴」에 “鹿鳴，燕群臣嘉賓也，既飲食之，又實幣帛筐篚，以將其厚意，然後忠臣嘉賓得盡其心矣.”라고 하였다.

577) 고굉(股肱)이.....것은: 『左傳』昭公 9年條. “君之卿佐，是謂股肱，股肱或虧，何痛如之.”

급한다.”라고 하였다.

王於諸侯，分裁救患，凶禮五事，其費則多。故“邦國之貢，以待吊用。”國家閒暇，要在多積，積貯之道，天下大命。故“萬民之貢，以充府庫。”難得之貨，飢不可食，燕游所用，非國之急。故“式貢之餘財，以共玩好之用。”

왕은 제후에게 재난이 있으면 곡백(穀帛)을 나누어 주고, 환난이 있으면 구원해 주어야 하니,⁵⁷⁹⁾ 흉례(凶禮)의 5사(五事:喪·荒·吊·禴·恤)는 그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므로 “방국(邦國)의 공(貢)으로 조용(吊用)을 공급한다.”라고 하였다. 국가가 한가할 때 많이 쌓아 두어야 하니, 쌓아 두는 도는 천하의 큰 사명이다. 그러므로 “만민(萬民)의 공(貢)으로 부고(府庫)를 채운다.”라고 하였다. 얻기 어려운 재화는 기근이 들면 먹을 수 없고, 연유(燕游)에 소용되는 것은 나라의 급한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식(式)과 공(貢)의 남은 재물로 완호(玩好)의 비용을 장만한다.”라고 하였다.

凡其一賦之出，則給一事之費，費之多少，一以式法。如是而國安財阜，非偶然也。

무릇 그 하나의 세금이 나오면 한가지 일의 비용을 공급하였고, 비용의 많고 적음은 하나 같이 9식의 법으로써 하였다. 이와 같이 나라가 평안하고 재물이 쌓이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國用第二

「玉府」“掌王之金玉玩好兵器，凡良貨賄之藏。”“燕衣服衽席床第，凡褻器。”“凡王之獻金玉兵器文織良貨賄之物，受而藏之。”“凡王之好賜，共其貨賄。”「內府」“掌受九貢九賦九功之貨賄良兵良器，以待邦之大用。凡四方之幣獻之金玉齒革兵器，凡良貨

578) 폐여(幣餘): 鄭玄의 注에 “幣餘, 占賣國之斥幣.”라고 하였다. 관부에서 남은 물건을 매각하는 것이다.

579) 재난이.....하니: 『左傳』僖公 元年 6月條에 “邢, 遷于夷儀, 諸侯城之, 救患也. 凡侯伯, 救患分灾 討罪, 禮也.”라고 하였다.

賄入焉。凡適四方使者，共其所受之物而奉之。凡王及冢宰之好賜予，則共之。”

국용 제2

「옥부(玉府)」⁵⁸⁰에 “왕의 금옥(金玉)과 완호(玩好)와 병기(兵器) 등, 무릇 좋은 화(貨:金玉)와 회(賄:布帛)의 소장을 관장한다.” “연의복(燕衣服)과 임석(衽席)과 상자(床第:平床) 등, 무릇 사사로운 기물.” “무릇 왕이 제후에게 줄 수 있는 금은과 병기와 문직(文織)과 좋은 화회(貨賄)의 물건을 받아서 소장한다.” “무릇 왕의 호사(好賜)에 그 화회를 이바지 한다.”라고 하였다. 「내부(內府)」⁵⁸¹에 “구공(九貢)과 구부(九賦)와 구공(九功)의 화회와 양병(良兵)과 양기(良器)를 받아서 나라의 대용(大用:頒賜)을 공급하는 것을 관장한다. 무릇 사방의 제후가 바친 금옥과 치혁(齒革)과 병기 등, 무릇 좋은 화회를 들인다. 무릇 사방에 사자가 갈 때, 그 받은 물건을 장만하여 받든다. 무릇 왕과 총재의 좋은 하사가 있으면 이바지한다.”라고 하였다.

按其職文，掌天子器用財賄燕私之物及受貢獻，以備賞賜。此帑藏之在宮中官職之最私褻者，然而爲冢宰之屬，列「大府」以下，與凡治藏之官不異者，何也？蓋王者無外，以天下爲家，尺地莫非其田，一民莫非其子，財物之在海內，如在橐中，況於貢賦之入，何彼我之云哉？

그 직책과 관련한 글을 살펴보면, 천자의 기용(器用)과 재회(財賄)와 연사(燕私)의 물건들과 및 공헌(貢獻) 받은 것으로써 상사(賞賜)를 대비하는 일을 관장한다. 이것은 천자의 개인 금고로 궁중의 관직 가운데 가장 사사로운 것이다. 그러나 총재의 소속으로 되어 있고, 「대부(大府)」 이하에 나열되어 무릇 금고를 다스리는 관원과 더불어 차이가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대개 왕자(王者)는 밖이 없어 천하로써 가(家)를 삼는다. 한 자의 땅도 그 전답이 아님이 없고, 한 백성도 그 자식이 아님이 없으니, 재물이 해내(海內:나라 안)에 있는 것은 주머니 속에 있는 것과 같다. 하물며 공부(貢賦)의 수입에 어찌 네 것 내 것을 말할 것인가

580) 「옥부(玉府)」: 『周禮』「天官冢宰下」.

581) 「내부(內府)」: 『周禮』「天官冢宰下」.

가?

歷觀『書』『傳』，自「禹貢」以來，未聞天子有私財者。漢湯沐邑，爲私奉養，不領於經費。靈帝西園，萬金常聚爲私藏，皆衰亂之俗，非先王之法也。

『서(書)』와 『전(傳)』을 훑어 보아도 「우공(禹貢)」부터 이래로 천자가 사재(私財)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 한(漢)나라의 탕목읍(湯沐邑:私邑)은 사사로이 봉양하기 위한 것이라 경비에 넣지 않았으며, 영제(靈帝)의 서원(西園)은 만금(萬金)을 항상 모아 사금고를 만들었으니, 모두 쇠란(衰亂)한 시대의 풍속이지 선왕의 법이 아니다.

故雖天子器用財賄，燕私之物，受貢獻，備賞賜之職，皆屬於「大府」。屬於「大府」，則日有成，月有要，歲有會。「職內」之入，「職歲」之出，「司書」之要貳，「司會」之鈎考廢置，誅賞之典存焉。如此，用安得不節？財安得不聚？若以御府禁錢捐之親幸之手，省闈之中，外人弗睹，法制所不行，校比所不及，則傷財害民，非細事也。

그러므로 비록 천자의 기용(器用)과 재회(財賄)와 연사(燕私)의 물건들과 공헌(貢獻) 받은 것으로써 상사(賞賜)를 대비하는 직책이라도 모두 「대부」에 소속시켰다. 「대부」에 소속시켰으니, 곧 날마다 ‘성(成)’이 있고, 달마다 ‘요(要)’가 있으며, 해마다 ‘회(會)’가 있다.⁵⁸²⁾ 「직내(職內)」⁵⁸³⁾의 ‘입(入)’과 「직세(職歲)」⁵⁸⁴⁾의 ‘출(出)’과 「사서(司書)」⁵⁸⁵⁾의 ‘요이(要貳)’와 「사회(司會)」⁵⁸⁶⁾가 감사하여 사방의 제후를 존치하고 폐출하는 등등의 상벌의 법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데 쓰

582) 날마다.....있다: 日計를 ‘成’이라 하고, 月計를 ‘要’라 하고 歲計를 ‘會’라 한다. ‘成’은 일선 징세관이 기록하고, 부분을 司書에게 보내면 司書는 이를 취합하고, 최종적으로 司會가 일년의 회계를 내고 감사한다.

583) 「직내(職內)」: 『周禮』「天官冢宰下」. 세금의 수입을 문서화 하여 관장하는 직책이다.

584) 「직세(職歲)」: 『周禮』「天官冢宰下」. 세금의 지출을 문서화 하여 관장하는 직책이다.

585) 「사서(司書)」: 『周禮』「天官冢宰下」. 국가의 서류를 관장하는 직책인데, 세입과 세출의 기록을 관리한다. 담당 부서의 관원들이 한 통의 부이(副貳) 문서를 베껴 이름을 ‘要’라고 명명하여 司書에게 보내는 것을 ‘入要貳’라고 한다. 司書는 이를 취합하여 회계 감사에 대비한다.

586) 「사회(司會)」: 『周禮』「天官冢宰下」. 국가의 모든 문서를 취합하여 최종적으로 회계를 하는 직책이다.

는 것을 어찌 절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재물이 어떻게 모이지 않겠는가? 만약 어부(御府:內帑)의 금전(禁錢)을 친하고 총애하는 사람의 손에 맡기고 대궐 속에 두어, 외부인이 볼 수 없게 하고 법제가 행할 수 없으며 감사가 미치지 못하게 한다면 재물을 상하고 백성을 해치는 것이니 작은 일이 아니다.

國用第三

「太宰」“以九職任萬民. 一曰三農, 生九穀. 二曰園圃, 毓草木. 三曰虞衡, 作山澤之材. 四曰藪牧, 養蕃鳥獸. 五曰百工, 飭化八材. 六曰商賈, 阜通貨賄. 七曰嬪婦, 化治絲枲. 八曰臣妾, 聚斂疏材. 九曰閒民, 無常職, 轉移執事.”天之生民, 未有無能者也. 能其事而後可以食, 無事而食, 是衆之殃, 政之害也. 是故聖人制天下之民, 各從其能, 以服於事, 取有利於國家, 然後可也.

국용 제3

「태재(太宰)」⁵⁸⁷⁾에 “9직(九職)으로써 만민의 직업을 맡게 한다. 첫째는 ‘3농(三農)’이니 9곡을 생산한다.⁵⁸⁸⁾ 둘째는 ‘원포(園圃)’니 초목을 기른다. 셋째는 ‘우형(虞衡)’이니 산택의 재목을 가꾼다. 넷째는 ‘수목(藪牧)’이니 조수(鳥獸)를 기르고 번식한다. 다섯째는 ‘백공(百工)’이니 8재(八材)⁵⁸⁹⁾를 부지런히 다루어 변화시킨다. 여섯째는 ‘상고(商賈)’니 화회(貨賄)를 통행시켜 성대하게 한다. 일곱째는 ‘빈부(嬪婦)’니 길쌈을 한다. 여덟째는 ‘신첩(臣妾)⁵⁹⁰⁾’이니 백초(百草)와 근실(根實)을 모은다. 아홉째는 ‘한민(閒民)’이니 떳떳한 직업이 없이 옮겨 다니며 품팔이를 한다.”라고 하였다. 하늘이 백성을 낳을 때 무능한 사람은 있지 않다. 능히 그 일을 한 뒤에 먹을 수 있으니 일도 하지 않으면서 먹는 것은 이는 대중의 재앙이요, 정치의 해악이다. 그러므로 성인이 천하의 백성을 다스림에 각각 그 능력

587) 「태재(太宰)」: 『周禮』「天官冢宰」.

588) 3농(三農).....생산한다: 鄭玄의 注에 의하면, ‘三農’은 平地, 山, 澤이요, ‘九穀’은 黍, 稷, 秬, 稻, 麻, 大小豆, 大小麥이다.

589) 8재(八材): 鄭玄의 注에 의하면, ‘八材’는 ‘珠曰切, 象曰瑳, 玉曰琢, 石曰磨, 木曰刻, 金曰鑊, 革曰剝, 羽曰析.’이라고 한다.

590) 신첩(臣妾): 여기서는 貧賤한 男女를 가리킨다.

에 따라서 일에 복무하게 하여 국가에 이로움이 있음을 취한 것이요, 그렇게 한 뒤에야 옳은 것이다.

「太宰」授之職，「閭師」責其功。故曰：“任農以耕事，貢九穀。任圃以樹事，貢草木。任工以飭材事，貢器物。任商以市事，貢貨賄。任牧以畜事，貢鳥獸。任嬪以女事，貢布帛。任衡以山事，貢其物。任虞以澤事，貢其物。凡無職者，出夫布”也。人各有事，事各有功，以興材征，以濟經用。無惰而自安，無賊於糧食，是富民之大本，爲國之上務。雖關百聖，何以易此？

「태재」가 직업을 주고, 「여사(閭師)」⁵⁹¹⁾가 그 공(功)의 책임을 묻는다. 그러므로 가로대 “‘농(農)’에게 경작하는 일로써 맡겨 구곡을 바치게 하고, ‘포(圃)’에게 심는 일로써 맡겨 초목을 바치게 하고, ‘공(工)’에게 8재를 다루는 일로써 맡겨 기물(器物)을 바치게 하고, ‘상(商)’에게 시장의 일로써 맡겨 화회를 바치게 하고, ‘목(牧)’에게 가축 기르는 일로써 맡겨 조수를 바치게 하고, ‘빈(嬪)’에게 여자의 일로써 맡겨 포백(布帛)을 바치게 하고, ‘형(衡)’에게 산(山)의 일로써 맡겨 그 물건을 바치게 하고, ‘우(虞)’에게 택(澤)의 일로써 맡겨 그 물건을 바치게 하고, 무릇 무직자는 부포(夫布:人頭稅)를 내게 한다.”⁵⁹²⁾라고 한 것이다. 사람이 각각 일이 있고 일이 각각 공이 있어, 필요한 물자와 세금을 일으키며 경영하고 쓰는 것을 이루는 것이다. 게을러 스스로 편안함이 없고 양식에 해로움이 없는 것, 이것이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근본이요, 나라의 최상의 의무가 된다. 비록 백명의 성인을 거치더라도 어떻게 이것을 바꾸겠는가?

昔胥臣對晉文公謂，“戚施植鑄，蓬蔭蒙璆，侏儒扶廬，矐睞修聲，聾瞶司火。”「王制」，“瘠聾跛躄斷者侏儒，各以其器食之。”古者，廢疾之人，猶有所役，後之游民作無益以害有益者，肩相摩，轂相擊，而吏不以是罪之，主不以是棄之，謂之何哉？

옛날 서신(胥臣)이 진(晉)나라 문공(文公)에게 이르기를 “곰사등이[戚施]도 박종(鑄鐘)을 치며, 천상바라기[籐蔭]도 옥경(玉磬:璆)을 머리에 이며, 난쟁이[侏

591) 「여사(閭師)」: 『周禮』「地官司徒下」.

592) ‘농(農)’에게.....한다: 「閭師」에 있는 말이다.

儒]도 창자루를 잡고 연희(演戲)를 하며, 장님[矇瞍]도 음악을 다루며, 귀머거리[聾聵]도 불을 다룹니다.”⁵⁹³라고 하였고, 「왕제」에 “병어리·귀머거리·절뚝발이·얇은뱅이·사지가 절단된 자·난쟁이도 각각 그 능력에 따라 먹인다.”라고 하였다. 옛날에는 지체가 자유롭지 못한 사람도 오히려 부릴 곳이 있었는데, 후세의 노는 백성은 무익(無益)함을 지어 유익(有益)함을 해치는 자가 어깨를 서로 스치며 수레바퀴통이 서로 부딪칠 지경인데도, 관리는 이것으로써 단죄하지 않고 군주는 이것으로써 버리지 않으니, 어찌하자는 말인가?

國用第四

言井田之善者，皆以均則無貧，各自足也。此知其一，未知其二。必也人無遺力，地無遺利，一手一足無不耕，一步一畝無不稼，穀出多而民用富，民用富而邦財豐者乎! 「大司徒」“凡造都鄙，制其地域而封溝之，以其室數制之。不易之地，家百畝。一易之地，家二百畝，再易之地，家三百畝。”不易之地，歲種之，地美，故家百畝。一易之地，休一歲乃復種，地薄，故家二百畝。再易之地，休二歲乃復種，故家三百畝。

국용 제4

정전법의 좋은 점을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균등하면 가난이 없고 각각 자족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는 그 하나만 알고 그 둘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반드시 사람이 남아도는 노동력이 없고 땅이 이로움을 버리는 것이 없어, 한 손과 한 발도 경작하지 않음이 없으며, 한 보(步)와 한 무(畝)도 심지 않음이 없어야 곡식이 나오는 것이 많고 백성이 쓰는 것이 부유하며, 백성이 쓰는 것이 부유하고 나라의 재물이 풍부해지는 것이다. 「대사도(大司徒)」⁵⁹⁴에 “무릇 도비(都鄙)⁵⁹⁵를 조성, 그 지역을 편제해 봉구(封溝)를 나누되 그 가구의 수로써 편제한다. ‘불역지지(不易之地)⁵⁹⁶’는 1가에 100무(畝), ‘일역지지(一易之地)’는 1가에

593) 곽사등이[戚施]도..... 다룹니다: 『國語』「晉語」4.

594) 「대사도(大司徒)」: 『周禮』「地官司徒」.

595) 도비(都鄙): 都是 國이고 鄙는 邊邑인데 王子弟公卿大夫의 采地를 말한다. 公의 大都是 百里, 卿의 小都是 五十里, 大夫의 家邑은 二十五里이다.

596) 불역지지(不易之地): 토질이 좋아 매년 바꾸지 않고도 경작이 가능한 땅을 말한다. 一易은 한

200무(畝), ‘재역지지(再易之地)’는 1가에 300무(畝)이다.”라고 하였다. ‘불역지지’는 해마다 파종하니 토질이 비옥하므로 1가에 100무이다. ‘일역지지’는 한 해를 쉬고 이에 다시 파종하니 토질이 척박하므로 1가에 200무이다. ‘재역지지’는 2년을 쉬고 이에 다시 파종하므로 1가에 300무이다.⁵⁹⁷⁾

「遂人」“辨其野之土，上地中地下地，以頒田里。上地，夫一廛，田百畝，萊五十畝，餘夫亦如之。中地，夫一廛，田百畝，萊百畝，餘夫亦如之。下地，夫一廛，田百畝，萊二百畝，餘夫亦如之。”萊，謂休不耕者。戶計一夫一婦而賦之田。其一戶有數口者，餘夫亦受此田也。

「수인(遂人)」⁵⁹⁸⁾에 “그 야(野)의 토지를 변별하여 상지(上地)·중지(中地)·하지(下地)로써 전리(田里)를 나누어 준다. ‘상지’는 한 농부당 1전(廛·住居)과 전(田) 100무와 래(萊·목정밭) 50무이니, 여부(餘夫·受田外人)도 또한 같다. ‘중지’는 한 농부당 1전(廛)과 전(田) 100무와 래(萊) 100무이니, 여부도 또한 같다. ‘하지’는 한 농부당 1전(廛)과 전(田) 100무와 래(萊) 200무이니, 여부도 또한 같다.”라고 하였다. ‘래(萊)’는 휴경한 것을 말한다. 호(戶)는 1부(夫)1부(婦)를 계산하여 전(田)을 준다. 그 1호에 여러 식구가 있는 자는 여부도 또한 이 전(田)을 받는다.⁵⁹⁹⁾

「載師」“以宅田士田賈田，任近郊之地。以官田牛田賞田牧田，任遠郊之地。”宅田，致仕者之家所受田也。士田，仕者亦受田。賈田，在市賈人其家所受田也。官田，庶人在官者其家所受田也。牛田牧田，畜牧者之家所受田也。

「재사(載師)」⁶⁰⁰⁾에 “택전(宅田)·사전(士田)·고전(賈田)으로써 근교의 땅을 맡기고, 관전(官田)·우전(牛田)·상전(賞田)·목전(牧田)으로써 원교의 땅을 맡긴다.”라고 하였다. ‘택전(宅田)’은 치사(致仕·隱退)한 사람의 집안에서 받는 전토이다. ‘사전

해를 걸러 경작하는 것이고, 再易은 2년을 걸러 경작 해야 하는 땅이다.

597) ‘불역지지’는.....300무이다: 李覲의 말이 아니라 鄭玄의 注를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598) 「수인(遂人)」: 『周禮』「地官司徒下」.

599) ‘래(萊)’는.....받는다: 鄭玄의 注이다.

600) 「재사(載師)」: 『周禮』「地官司徒下」.

(土田)’은 벼슬한 사람도 또한 전토를 받는 것이다. ‘고전(賈田)’은 시장에 있는 장사치의 집안에서 받는 전토이다. ‘관전(官田)’은 서인(庶人)으로 관직에 있는 사람의 집안에서 받는 전토이다. ‘우전(牛田)’과 ‘목전(牧田)’은 목축하는 사람의 집안에서 받는 전토이다.⁶⁰¹⁾

若餘夫致仕者仕者賈人庶人在官者畜牧者之家，皆受田，則是人無不耕。無不耕，則力豈有遺哉？一易再易萊皆頒之，則是地無不稼。無不稼則利豈有遺哉？

여부와 은퇴한 사람과 벼슬하는 사람과 장사치와 서인으로 관직에 있는 사람과 목축하는 사람의 집안까지 모두 전토를 받는다는 것은, 곧 이는 어떤 사람도 경작하지 않음이 없다는 것이다. 경작하지 않음이 없다면 노동력이 어찌 버려지는 것이 있겠는가? 일역과 재역과 래도 모두 나누어 준다는 것은, 곧 이는 어떤 땅이라도 심지 않음이 없다는 것이다. 심지 않음이 없다면 이로움이 어찌 버려지는 것이 있겠는가?

自阡陌之制行，兼並之禍起，貧者欲耕而或無地，富者有地而或乏人。野夫有⁶⁰²⁾作惰游，況邑居乎？沃壤猶爲蕪穢，況瘠土乎？飢饉所以不支，貢賦所以日削。孟子曰：“仁政，必自經界始。”師丹言“宜略爲限。”不可不察也。

천맥(阡陌)의 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 겸병의 재앙이 일어났으니, 가난한 사람은 경작하고자 하여도 흠 땅이 없고, 부유한 사람은 땅이 있어도 흠 사람이 없게 되었다. 야부(野夫)도 게으르고 노는 사람이 있는데 하물며 읍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야? 비옥한 땅도 오히려 목정밭이 되어 가는데 하물며 척박한 땅이야? 기근이 들면 지탱하지 못하는 까닭이며, 공부(貢賦)가 날마다 줄어드는 까닭이다. 맹자가 “인정(仁政)은 반드시 경계(經界)로부터 시작한다.”⁶⁰³⁾라고 말하였고, 사단(師丹)이 “마땅히 생략하여 한전(限田)해야 합니다.”⁶⁰⁴⁾라고 말하였으니, 살피

601) ‘택전(宅田)’은.....전토이다: 鄭玄의 注이다.

602) 原註: ‘有’는 光緒本에 ‘猶’로 되어 있다.

603) 인정(仁政)은.....시작한다: 『孟子』「滕文公上」 3장.

604) 마땅히.....합니다: 『漢書』「哀帝紀」 및 「食貨志」.

지 않을 수 없다.

國用第五

地利之食於人，博哉！農既得其時，種既得其宜，然且不熟者，水旱賊之也。水旱之災，雖天所爲，至於人力，亦有可及矣。故「遂人」“凡治野，夫間有遂，遂上有徑。十夫有溝，溝上有畛。百夫有洫，洫上有涂，千夫有澮。澮上有道。萬夫有川，川上有路。”此鄉遂之田制也。

국용 제5

지리(地利)가 사람을 먹이는 것이 넓다! 농사가 이미 그 때를 얻고, 파종이 이미 그 마땅함을 얻었으나, 또한 익지 않는 것은 홍수와 가뭄이 해치는 것이다. 홍수와 가뭄의 재앙은 비록 하늘이 하는 것이라도, 사람의 힘에 이르러도 또한 미치는 것이 있다. 그러므로 「수인(遂人)」에 “무릇 야(野)를 다스림에 한 농부와 또 한 농부 사이에 수(遂)가 있고, 수 위에 경(徑)이 있다. 10부(十夫)에 구(溝)가 있고, 구 위에 진(畛)이 있다. 100부(百夫)에 혁(洫)이 있고, 혁 위에 도(涂)가 있다. 1,000부(千夫)에 회(澮)가 있고, 회 위에 도(道)가 있다. 만부(萬夫)에 천(川)이 있고, 천 위에 로(路)가 있다.”라고 하였다. 이는 향수(鄉遂)⁶⁰⁵의 전제(田制)이다.

「匠人」“爲溝洫，耜廣五寸，二耜爲耦。一耦之伐，廣尺，深尺，謂之剛。田首倍之，廣二尺，深二尺，謂之遂。九夫爲井，井間廣四尺，深四尺，謂之溝。方十里爲成，成間廣八尺，深八尺，謂之洫。方百里爲同，同間廣二尋，深二仞，謂之澮。”此都鄙之田制也。

「장인(匠人)」⁶⁰⁶에 “구혁(溝洫)을 만들 때, 쟁기 날의 너비가 5촌인데 두 개의

605) 향수(鄉遂): 주나라 제도에 王畿의 郊內에 六鄉을 두고 郊外에 六遂를 두었는데 제후국도 마찬가지였다.

606) 「장인(匠人)」: 『周禮』「冬官考工記」.

날을 나란히 한 것이 우(耦)가 된다. 1우가 쳐낸, 너비가 1척, 깊이가 1척인 것을 ‘견(剛)’이라고 이른다. 논이 머리는 두배로 하는데 너비가 2척, 깊이가 2척인 것을 ‘수(遂)’라고 이른다. 9부(九夫)가 정(井)이 되는데, 정 사이 너비가 4척, 깊이가 4척인 것을 ‘구(溝)’라고 이른다. 4방 10리가 성(成)이 되는데, 성 사이 너비가 8척, 깊이가 8척인 것을 ‘혁(洫)’이라고 이른다. 4방 100리가 동(同)이 되는데, 동 사이 너비가 2심(二尋:16척), 깊이가 2인(二仞:16척)⁶⁰⁷⁾인 것을 ‘회(澮)’라고 이른다.”라고 하였다. 이는 도비(都鄙)의 전제(田制)이다.

川大於澮，澮大於洫，洫大於溝，溝大於遂，遂大於剛。剛通水以入于遂，遂入于溝，溝入于洫，洫入于澮，澮入于川。然則雖大雨霖，其水有所滌，能爲害者希矣。

‘천’은 ‘회’보다 크고, ‘회’는 ‘혁’보다 크고, ‘혁’은 ‘구’보다 크고, ‘구’는 ‘수’보다 크고, ‘수’는 ‘견’보다 크다. ‘견’은 물을 통하게 하여 ‘수’로 들어가고, ‘수’는 ‘구’로 들어가고, ‘구’는 ‘혁’으로 들어가고, ‘혁’은 ‘회’로 들어가고, ‘회’는 ‘천’으로 들어간다. 그렇다면 비록 큰 비와 장마가 와도 그 물이 빠져 나갈 곳이 있어 능히 해가 되는 것이 드물다.

「稻人」“掌稼下地，以瀦畜水，以防止水，以溝蕩水，以遂均水，以列舍水，以澮寫水，以涉揚其芟作田。”瀦，謂畜流水之陂。防，瀦旁隄也。然則雖久不雨，其水可以得能爲害者希矣。聖人之於水旱，不其有備哉！

「도인(稻人)」⁶⁰⁸⁾에 “낮은 땅에 심는 것을 관장한다. 저(瀦)로써 물을 모아두고, 방(防)으로써 물을 막고, 구(溝)로써 물을 흐르게 하고, 수(遂)로써 물을 고르게 하고, 열(列:고랑)로써 물을 흘려버리고, 회(澮)로써 물을 쏟아내고, 그 작년에 베어낸 풀을 쓸러보냄으로써 전토를 다스려 벼를 심는다.”라고 하였다. ‘저(瀦)’는 흐르는 물을 모아두는 방죽을 말한다. 방(防)은 저(瀦) 옆의 둑이다.⁶⁰⁹⁾ 그렇

607) 2인(二仞:16척): ‘仞’은 주석가에 따라 4척(王肅·爾雅), 7척(鄭玄), 8척(孔安國)이라고 한다. 단 너비는 ‘尋’이라 하고, 깊이는 ‘仞’이라고 하므로 공안국의 주장을 따라 16척으로 보았다. 그렇게 하여야 앞에서부터 쪽 너비와 깊이를 같게 한 것에 부합된다.

608) 「도인(稻人)」: 『周禮』「地官司徒下」.

다면 비록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도 그 물은 능히 해가 되는 것이 드물게 할 수 있다. 성인이 홍수와 가뭄에 그 대비가 있지 않았던가!

菑掩規偃豬，君子以爲禮。史起引漳水，舄鹵生稻。梁鄭國鑿涇水，關中爲沃野。古之賢人未有不留意者也。水官不修，川澤溝瀆無有舉，掌機巧趨利之民得行其私，日侵月削，往往障塞。雨則易以溢，謂之大水，豈天乎？霽則易以涸，謂之大旱，豈天乎？如是而望有年，未之思矣。

초나라의 위엄(菑掩)이 “언저(偃豬)를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한 것을 군자가 예(禮)라 하였고,⁶¹⁰⁾ 위(魏)나라의 사기(史起)는 장수(漳水)를 끌어들이어 간석지[舄鹵]에 벼를 키웠고,⁶¹¹⁾ 진(秦)나라의 정국(鄭國)은 경수(涇水)를 굴착하여 관중(關中)이 옥야(沃野)가 되었으니,⁶¹²⁾ 옛날의 어진 사람은 유의(留意)하지 않은 사람이 있지 않았다. 수관(水官)이 닦이지 아니하여 천(川)·택(澤)·구(溝)·독(瀆)을 거행함이 없게 되자, 기교(機巧)를 쥐고 이곳에 달려가는 백성들이 그 사사로움을 행할 수 있게 되어 날마다 침식하고 달마다 깎아먹으니 이따금 막혀버린다. 비가 오면 쉽게 넘치는 것을 ‘큰 물이 났다’라고 말하니 어찌 하늘이 한 것인가? 비가 개면 쉽게 마르는 것을 ‘큰 가뭄이 들었다’라고 말하니 어찌 하늘이 한 것인가? 이와 같은데도 풍년을 바라는 것은 생각이 없는 것이다.

609) ‘저(澗)’는.....독이다. 鄭玄의 注이다. 단 鄭玄의 注에는 澗앞에 偃이 있어 偃澗라고 하였다.

610) 초나라의.....하였고; 『左傳』襄公 25年條.

611) 위(魏)나라의.....키웠고; 『漢書』권29 「溝洫志」 제9.

612) 진(秦)나라의.....되었으니; 『漢書』권29 「溝洫志」 제9. 李觀의 인용문에는 鄭國 앞에 ‘梁’자가 있는데 알 수 없다. 『漢書』「溝洫志」에 鄭國은 韓나라 출신의 水工이라고만 되어 있고, 鄭國이 공사한 것을 鄭國渠라 명명하였다고 하였으니 혹 梁은 渠 일 수도 있다.

제8장 『이구집』 권7 國用6-國用10

李觀集卷第七

國用第六

「繫辭」曰：“包犧氏沒，神農氏作，斲木爲耜，揉木爲耒，耒耜之利，以教天下，蓋取諸「益」.” 是聖人之於農，必制器以利其用也. 「舜典」曰：“棄，黎民，阻飢，汝后稷，播時百穀.” 是聖人之於農，必命官以掌其政也.

국용 제6

「계사」에 가로대 “포희씨가 죽고 신농씨가 일어나 나무를 깎아 보습을 만들고 나무를 휘어 쟁기를 만들어 보습과 쟁기의 이로움으로 천하를 가르쳤으니 대개 「익(益)」괘에서 취한 것이다.”⁶¹³⁾라고 하였다. 이는 성인이 농사에 반드시 기계(器械)를 제작하여 그 쓰임을 이롭게 한 것이다. 『서경』「순전(舜典)」에 가로대 “기(棄)야, 여민(黎民:백성)이 곤궁하고 굶주린다. 너를 후직(后稷)으로 삼으니 이 백곡을 파종하라.”라고 하였다. 이는 성인이 농사에 반드시 관(官)을 명하여 그 정책을 관장하게 한 것이다.

故「遂大夫」“正歲，簡稼器，修稼政.” 稼器，耒耜鉶基之屬. 稼政，孟春之「月令」所云，“皆修封疆，審端徑術，善相丘陵阪險原隰，土地所宜，五穀所殖，以教道民，必躬親之.”之比也. 器不簡，則貧人或不能備物，政不修，則愚者或不能得宜. 不備物，則雖良田將不耕，不得宜，則雖嘉種將不獲. 若是，不可不慎也.

그러므로 「수대부(遂大夫)」⁶¹⁴⁾에 “정세(正歲:正月)에 기기(稼器)를 점검하고 가정(稼政)을 닦는다.”라고 하였다. ‘기기(稼器)’는 쟁기·보습등 농기구의 무리이다.

613) 포희씨가.....것이다.: 『周易』「繫辭下傳」 2장.

614) 「수대부(遂大夫)」: 『周禮』「」

‘가정(稼政)’은 맹춘의 「월령」에 이른바 “모두 봉강(封疆)을 닦고 경수(徑遂)⁶¹⁵⁾를 살피 바르게 하며, 구릉(丘陵)과 판험(阪險)과 원습(原隰)과 토지의 마땅함과 5곡의 심을 것을 잘 살펴서 백성을 가르치고 인도하되 반드시 몸소 한다.”⁶¹⁶⁾라는 구절과 견줄 수 있다. 농기가 점검되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은 혹 능히 물건을 준비할 수 없고, 농정이 닦이지 아니하면 어리석은 자가 혹 능히 마땅함을 얻지 못한다. 물건이 준비되지 않으면 비록 좋은 농토라고 하더라도 경작할 수 없을 것이요, 마땅함을 얻지 못하면 비록 좋은 종자라고 하여도 수확할 수 없을 것이니, 이와 같은 것을 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至如二耜爲耦，一夫不足獨舉，必通功易事，兩人相助而後可也。故「里宰」“以歲時合耦於耩，以治稼穡，趨其耕耨，行其秩敘。”耩者，「里宰」治處，於此合耦，使相佐助。秩敘，相佐助之次第也。

‘2개의 보습이 1우(耦)가 된다’⁶¹⁷⁾ 같은 것은 한 농부가 혼자 할 수 없으니 반드시 공(功)을 통하고 일을 바꾸어 두 사람이 서로 도운 뒤에야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재(里宰)」⁶¹⁸⁾에 “세시(歲時)에 우(耦)를 서(耩)에 모이게 하여 가색(稼穡)을 다스리게 하는데 그 봄에 경작하고 여름에 김매는데 달려가게 하고, 그 질서를 행하게 한다.”라고 하였다. ‘서(耩)’라는 것은 「이재(里宰)」가 다스리는 곳이니, 여기에 우를 모이게 하여 서로 돕게 하는 것이다. ‘질서(秩敘)’는 서로 돕는 차례이다.⁶¹⁹⁾

又五穀熟時，有風雨之急，是謂“力耕數耘，收獲如寇盜之至”者也。然一夫又不足爲。故「遂師」“巡其稼穡而移用其民，以救其時事。”謂使轉相助，救時急事也。古之治天下，至纖至悉之如此，奈何民不富國不實也!

615) 경수(徑遂): 『禮記』「月令」에서 ‘徑術’을 ‘徑遂’로 읽으므로 따른 것이다. 그렇게 하여야 溝洫法에 맞다.

616) ‘가기(稼器)’는.....한다: 鄭玄의 注이다.

617) 2개의.....된다: 『周禮』「匠人」, 및 李觀의 「國用」 제5 참고.

618) 「이재(里宰)」: 『周禮』「地官司徒下」.

619) ‘서(耩)’라는.....차례이다: 鄭玄의 注를 정리한 것이다.

또한 5곡이 익을 때, 바람과 비의 급함이 있으니, 이것이 이른바 “힘써 경작하고, 자주 김매며, 수확할 때는 도둑이 이르는 것처럼.”⁶²⁰⁾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 농부가 또한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수사(遂師)」⁶²¹⁾에 “그 심고 거두는 것을 돌아보고 그 백성을 옮겨 쓰게 하여 그 때의 일을 구원하게 한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옮겨서 서로 돕게 하여 때의 급한 일을 구원하게 한다⁶²²⁾는 것이다. 옛날에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지극히 섬세하고 지극히 상세함이 이와 같았으니, 어떻게 백성이 부유하지 아니하며 나라가 튼실하지 않겠는가.

漢趙過能爲代田，一畝三剛，一夫三百剛，而播種於剛中。苗生葉，稍耨隴草，因隴其土，以附苗根。比盛暑，隴盡而根深，能風與旱。其耕耘下種，田器皆有便巧。用耦犁，二牛三人。一歲之收，常過縵田晦一斛以上，善者倍之。民或苦少牛，過奏故平都令光，以爲丞，教民相與庸輓犁，以故田多墾闢，用力少而得穀多。斯近古之事，效驗甚明，而歷代莫以爲意，何也？

한(漢)나라 때 조과(趙過)가 능히 대전(代田)을 만들어 1무에 도랑을 3개씩, 한 농부가 300개의 도랑을 파고, 도랑 가운데 파종하게 하였다. 싹에 잎이 나면 조금씩 두둑의 풀을 김매는데 그 흙을 헐어가면서 싹의 뿌리를 북돋우게 하였다. 한더위에 미치면 두둑은 다하여도 뿌리는 깊어져 능히 바람과 가뭄에 버틸 수 있었다. 그 경작하고 김매며 파종하는데 농기구가 모두 편리함이 있었다. 2마리 소를 사용하였는데 소 2마리에 사람이 3명이었다. 1년의 수확은 항상 도랑이 없는 땅에 비하여 1무에 1곡(一斛) 이상이었고 잘하는 사람은 두배였다. 백성들이 혹 소가 적어 고생하자, 조과가 아뢰어 옛날 평도(平都)의 수령이었던 광(光)을 승(丞)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서로 더불어 만려(輓犁) 쓰는 것을 가르쳤다. 이렇게 하므로써 개간된 농토가 많아졌으며, 힘을 쓰는 것은 적어도 곡식 얻는 것은 많아졌다.⁶²³⁾ 이는 가까운 옛날의 일이고 효험이 매우 밝은 것인데도 역대(歷代)에 유의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620) 힘써.....것처럼: 『漢書』「食貨志上」, 顏師古의 注에 “如寇盜之至, 謂促遽之甚, 恐爲風雨所損.”이라고 하였다.

621) 「수사(遂師)」: 『周禮』「地官司徒下」.

622) 옮겨서.....한다: 鄭玄의 注이다.

623) 한(漢)나라.....많아졌다: 『漢書』「食貨志上」의 해당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國用第七

「載師」“凡宅不毛者，有里布。凡田不耕者，出屋粟。凡民無職事者，出夫家之征。”
 謂宅不毛者，罰以一里二十五家之泉。空田者，罰以三家之稅粟。民雖有間無職事者，
 猶出夫稅家稅。夫稅者，百畝之稅。家稅者，出土徒車輦給繇役也。

국용 제7

「재사(載師)」⁶²⁴에 “무릇 택지가 불모(不毛)한 자는 이포(里布)가 있다. 무릇 전지(田地)가 경작되지 않은 자는 옥속(屋粟)을 내게 한다. 무릇 백성이 직업이 없는 자는 부가(夫家)의 세금을 내게 한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택불모자’는 한 마을 25가의 벌금을 물리고, 농토를 놀리는 자는 3가의 세속(稅粟)으로 벌주며, 백성이 비록 한가하여 직업이 없는 자가 있더라도 오히려 ‘부세(夫稅)’와 ‘가세(家稅)’를 내게 하는데, ‘부세’라는 것은 100무의 세금이요, ‘가세’라는 것은 사도(士徒)와 거련(車輦) 등을 나가게 하여 요역을 공급하게 한다⁶²⁵는 것이다.

「閭師」“凡庶民不畜者，祭無牲。不耕者，祭無盛。不樹者，無槨。不蠶者，不帛。不績者，不衰。”
 謂庶人五母雞，二母彘，無失其時，是以不畜者，罰之，死後祭無牲也。黍稷曰盛，耕者所以殖黍稷。今田不耕，非直罰以屋粟，又死後祭無盛也。五畝之宅，樹以桑麻。今宅不毛，非直罰以里布，死後又無槨也。蠶則得帛，不蠶，故身⁶²⁶不得衣帛。績則得布，不績，故死則不爲之着衰，以罰之也。

「여사(閭師)」⁶²⁷에 “무릇 서민이 가축을 기르지 않는 자는 제사에 희생을 쓸 수 없게 하고, 경작하지 않는 자는 제사에 자성(粢盛)을 쓸 수 없게 하고, 뽕나무를 심지 않는 자는 곱(槨)을 쓸 수 없게 하고, 양잠하지 않는 자는 비단을 쓸

624) 「재사(載師)」: 『周禮』「地官司徒下」.

625) ‘택불모자’는.....한다: 鄭玄의 注를 정리한 것이다.

626) 原註: ‘身’은 光緒本에 ‘死’로 되어 있다.

627) 「여사(閭師)」: 『周禮』「地官司徒下」.

수 없게 하고, 길쌈하지 않는 자는 쇠(衰:喪服)를 쓸 수 없게 한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서인은 다섯 마리 어미 닭과 두 마리 큰 어미 돼지를 그 때를 잃지 않게 하여야 하는데 이에 기르지 않는 자는 벌을 주어 죽은 뒤 제사에 희생을 쓸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서직(黍稷)을 ‘성(盛)’이라고 말하는데 경작하는 자는 서직을 심기 때문이다. 지금 농토를 경작하지 않으면 옥속(屋粟)으로 벌줄 뿐만 아니라 또한 죽은 뒤 제사에 ‘성’을 쓸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5무의 택지에 뽕나무와 삼[麻]을 심는데 지금 택지에 심지 않으면 이포(里布)로써 벌줄 뿐만 아니라 죽은 뒤 또한 깍이 없게 한다는 것이다. 양잠을 하면 비단을 얻는데 양잠을 하지 않았으므로 몸에 비단을 입을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길쌈을 하면 베를 얻는데 길쌈하지 않았으므로 죽으면 위하여 상복을 입지 못하게 하여 벌주게 한다는 것이다.

夫財賦力征，人所吝嗇，與其無事而重，孰若有業而輕？以此罰之，敢或不勉者乎？帛，所以養老，衰，所以送死。葬禮祭禮乃爲令終，一有解惰，則不得用。以此罰之，敢或不勉者乎？是聖人馭民以反本之術也。

무릇 재물로 내는 세금과 노동력으로 내는 세금은 사람들이 몹시 아끼는 것인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중한 세금을 내는 것 보다는 직업이 있으면서 가벼운 세금을 내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로써 벌을 준다면 감히 혹 힘쓰지 않는 자가 있을까? 비단은 노인을 봉양하는 것이요, 상복은 죽은 사람을 보내는 것이다. 장례와 제례는 곧 잘 마치기 위하는 것인데 한 번 게으름이 있으면 사용할 수 없다. 이로써 벌을 준다면 감히 혹 힘쓰지 않는 자가 있을까? 이는 성인이 근본을 돌이키게 하는 기술로써 백성을 모는 것이다.

漢高祖令賈人不得衣絲乘車，重稅租以困辱之。孝惠高后時，爲天下初定，復弛商賈之律，然市井子孫，亦不得爲官吏。商賈乃在四民之目，而前代且謫之。後之游惰，去四民遠甚者，其類不可勝數，爲國者非徒函容，或尊寵之，傷哉！

한나라 고조는 장사치들로 하여금 비단옷을 입고 수레를 타지 못하게 하였으

며, 세금을 무겁게 하여 곤욕을 주었다. 효혜제·고후의 때에 천하가 처음 안정되자 다시 장사치에 대한 법률을 느슨하게 하였다. 그러나 시정의 자손들은 또한 관리가 될 수 없었다.⁶²⁸⁾ 상고(商賈)는 곧 4민의 항목에 있는데도 전대에는 또한 견책하였다. 후대의 놀고 게으른 자들은 4민에 가기가 먼 것이 심한 자가 그 종류를 이루 다 셀 수 없을 지경인데도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용납할 뿐만 아니라 혹 높이고 총애하니, 속상하다.

國用第八

一夫之耕，食有餘也。一婦之蠶，衣有餘也。衣食且有餘而家不以富者，內以給吉凶之用，外以奉公上之求也。而況用之無節，求之無藝，則死於凍餒者，固其勢然也。故「土均」⁶²⁹⁾「掌和邦國都鄙之政令刑禁，與其施舍。禮俗喪紀祭祀，皆以地嫩惡爲輕重之法而行之，掌其禁令。」禮俗，邦國都鄙民之所行先王舊禮也。君子行禮，不求變俗，隨其土地厚薄爲之制豐省之節耳。

국용 제8

한 농부가 경작하면 먹을 것이 남음이 있다. 한 여자가 양잠하면 입을 것이 남음이 있다. 입을 것과 먹을 것이 또한 남음이 있는데 집안이 부유하지 못한 것은 안으로 길흉의 비용을 공급하고, 밖으로 공상(公上)의 요구를 받아들여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물며 쓰는 것이 절제가 없고 요구하는 것이 법이 없으면 추위와 굶주림에 죽는 것은 진실로 그 형세가 그러한 것이다. 그러므로 「토균(土均)」⁶²⁹⁾에 “방국(邦國)·도비(都鄙)의 정령(政令)과 형금(刑禁)과 및 그 정역(政役)에서 버려진 자까지 조화롭게 함을 관장한다. 예속(禮俗)과 상기(喪紀:喪事)와 제사(祭祀)는 모두 땅의 미악(嫩惡:美惡)으로써 경중의 법을 만들어 행하고 그 금령(禁令)을 관장한다.”라고 하였다. ‘예속(禮俗)’은 방국·도비의 백성이 행하는 바 선왕의 구례(舊禮)이다. 군자가 예를 행함에 풍속을 변하게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니, 그 토지의 후박(厚薄)에 따라 풍생(豐省)의 절차를 제정할 뿐이다.⁶³⁰⁾

628) 한나라.....없었다: 『史記』「平準書」의 해당부분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629) 「토균(土均)」: 『周禮』「地官司徒下」.

「司書」“三歲則大計群吏之治，以知民之財器械之數，以知田野夫家六畜之數，以知山林川澤之數，以逆群吏之政令。”逆，謂鉤考也。恐其群吏濫稅斂萬民，故知此本數，乃鉤考其政令也。

「사서(司書)」⁶³¹⁾에 “3년이면 군리(群吏)의 치적을 크게 통계하여 백성의 재물과 기계의 수를 알며, 전야(田野)와 부가(夫家:男女)와 6축(六畜)의 수를 알며, 산림과 천택(川澤)의 수를 알아서 군리(群吏)의 정령(政令)⁶³²⁾을 역(逆)한다.”라고 하였다. ‘역(逆)’은 구고(鉤考:監査)를 말한 것이다. 그 군리(群吏)가 지나친 세금을 만민에게 걷을까 염려되므로 이 본래의 수를 알아서 이에 그 정령을 구고하는 것이다.⁶³³⁾

夫奢則以爲榮，儉則以爲辱，不顧家之有亡，汲汲以從俗爲事者，民之常情也。是故，爲之禁令，地媿收多，則用之豐。地惡收少，則用之省。如此，民皆知惜費矣。虧下以益上，貪功以求賞，不恤人之困乏，皇皇以言利爲先者，吏之常態也。是故，爲之鉤考，雖器械六畜山林川澤，必知其數，如此，吏不敢厚斂矣。

무릇 사치하면 영화롭다고 여기고 검소하면 굴욕이라고 여겨 집안의 있고없고는 돌아보지 않고 급급하게 풍속을 따름으로써 일삼는 것은 백성의 보통 사정이다. 이러하므로 금령을 만들되 땅이 비옥하여 수확이 많으면 쓰는 것을 풍성하게 하고, 땅이 척박하면 쓰는 것을 덜어내게 한다. 이와 같이 하면 백성들은 모두 비용 아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래에서 뜯어 위에 더하고, 공을 탐하여 상을 구하며, 사람들의 곤핍은 구휼하지도 않고 황황히 이곳을 말함으로써 우선을 삼는 것은 관리의 보통 태도이다. 이러하므로 구고를 하여 비록 기계와 6축과 산림과 천택이라도 반드시 그 수를 알아낸다. 이와 같이 하면 관리가 감히 후하게 수렴하지 못할 것이다.

630) ‘예속(禮俗)’은.....뿐이다: 鄭玄의 注이다.

631) 「사서(司書)」: 『周禮』「天官冢宰下」.

632) 정령(政令): 「司書」에는 ‘徵令’으로 되어 있다.

633) ‘역(逆)’은.....것이다: 鄭玄의 注와 賈公彥의 疏를 참조하였다.

民皆知惜費，吏不敢厚斂，而不免凍餒者，未嘗聞也。「禮器」曰：“居山以魚鱉爲禮，居澤以鹿豕爲禮，君子謂之不知禮。”然則地之惡，禮不可輕耶？有若曰：“百姓不足，君孰與足？”然則民之財，官可不知耶？是先王之所以得，後世之所以失也。

백성들이 모두 비용 아끼는 것을 알고, 관리가 감히 후렴하지 않는데도 얻고 굶주림을 면치 못한다는 것은 일찍이 듣지 못하였다. 『禮記』「禮器」에 가로대 “산에 살면서 물고기와 자라로써 예를 하고, 택(澤)에 살면서 사슴과 돼지로써 예를 하는 것을 군자는 ‘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한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땅이 척박한 곳에 예를 가볍게 해야하지 않겠는가? 유약(有若)이 말하기를 “백성이 부족하면 임금은 누구와 더불어 풍족한단 말입니까?”⁶³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백성의 재물을 관에서 알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이것이 선왕이 ‘득(得)’이 된 까닭이요, 후세가 ‘실(失)’이 된 까닭이다.

國用第九

「職方氏」“凡邦國，小大相維。王設其牧，制其職，各以所能，制其貢，各以其所有。”謂國之地物所有也。諸侯得稅，大國半，次國三之一，小國四之一，皆市取當國所有，以貢於王也。

국용 제9

「직방씨(職方氏)」⁶³⁵⁾에 “무릇 방국(邦國)은 작은 것과 큰 것이 서로 매어 있다. 왕이 그 목(牧)을 설치하여 그 직(職)을 편제하되 각각 그 능한 것으로써 하며, 그 공(貢)을 제정하되 각각 그 있는 것으로써 한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나라 땅의 물산에 있는 것으로 한다⁶³⁶⁾는 것이니, 제후는 세금으로 얻고, 대국은 절반, 차국은 3분의 1, 소국은 4분의 1인데, 모두 해당국의 소유 물산 가운데에

634) 백성이.....말입니까: 『論語』「顏淵」9장.

635) 「직방씨(職方氏)」: 『周禮』「夏官司馬下」.

636) 나라.....한다: 鄭玄의 注이다.

서 사들여서 왕에게 바친다⁶³⁷⁾는 것이다.

「土訓」“掌道地圖，以詔地事。道地慝，以辨地物，而原其生，以詔地求。”辨地物者，別其所有所無，原其生，生有時也。以此二者告王。雖是當州所有，而生有時，地所無，及物未生，則不求也。

「토훈(土訓)」⁶³⁸⁾에 “지도를 설명하여 땅의 일로써 고한다. 땅의 악물(惡物)과 장기(瘴氣) 등을 설명하여 땅의 물산의 유무를 분별하고, 그것이 생산되는 시기를 밝혀 왕의 요구에 답한다.”라고 하였다. ‘변지물(辨地物)’이라는 것은 그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원기생(原其生)’은 생산이 때가 있는 것이다. 이 두가지 것으로써 왕에게 고한다. 비록 이는 해당 주(州)에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생산은 때가 있으니, 땅에 없는 것과 물산이 아직 생산되지 않은 것은 곧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⁶³⁹⁾

大哉，聖人念民勤，恤財匱，如是其著也！地所有而官不用，則物必賤。地所無而反求之，則價必貴。況天時所不生，則雖有如無矣。買賤賣貴，乘人之急，必劫倍徙之利者，大賈蓄家之幸也。爲民父母，奈何不計本末，罔農夫以附商賈？令下之日，吏旁爲姦，公不獲皮毛而私啄其髓矣。壞民家，敗民產，此其甚也。「夏書」“任土作貢。”厥貢厥篚，九州不同，前聖後聖，豈非一揆者乎？

위대하다, 성인이 백성의 수고로움을 생각하고 재물이 없는 것을 구휼함이 이와 같이 그 드러남이여! 땅에 있는 것이라도 관에서 쓰지 않으면 물산은 반드시 천해진다. 땅에 없는데 반대로 요구하면 가격은 반드시 올라간다. 하물며 천시(天時)에 아직 생산되지 않는 것이라면 비록 있더라도 없는 것과 같다. 쌀 때 사들이고 비쌀 때 팔아치워 남의 급한 사정에 편승, 반드시 두배나 다섯배의 이득을 겁탈하는 것은 대고(大賈)와 축가(畜家)의 바라는 바이다. 백성의 부모가 되어 어찌 본말을 계산하지 않고, 농부를 기망하여 장사치를 보태주는가? 명령이

637) 제후는.....바친다: 賈公彥의 疏이다.

638) 「토훈(土訓)」: 『周禮』「地官司徒下」.

639) ‘변지물(辨地物)’이라는.....것이다: 鄭玄의 注와 賈公彥의 疏를 참작하였다.

떨어지는 날, 관리는 곁에서 간사한 짓을 하여 ‘공(公)’은 겹질과 터럭도 얻지 못하는데 ‘사(私)’는 그 골수를 쪼아 먹는다. 백성의 가정을 파괴하고 백성의 가산을 망하게 하니 이는 그 심한 것이다. 『서경』「하서(夏書)」「우공(禹貢)」에 “땅에 따라 공물을 정한다.”⁶⁴⁰⁾라고 하였고 ‘궐공(厥貢)’과 ‘궐비(厥篚)’는 9주가 같지 않았으니, 앞 성인과 뒤 성인이 어찌 동일한 방법이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漢桑都尉領大農，以諸官各自市相爭，物以故騰躍，而天下賦輸，或不償其徭費。乃請，“置大農部丞數十人，分部主郡國。令遠方各以其物如異時商賈所轉販者爲賦，置平準於京師，都受天下委輸，大農諸官，盡籠天下之貨物。如此，富商大賈亡所牟大利，則反本，而萬物不得騰躍。故抑天下之物，名曰‘平準.’” 桑雖聚斂之臣，然此一役，豈無法耶？孝武時，國用饒給而民不益賦，誠有以也。

한(漢)나라⁶⁴¹⁾ 상홍양(桑弘羊)이 치속도위(治粟都尉)가 되어 대농(大農)을 거느릴 때, 제관(諸官)들에게 각각 스스로 사들이게 하여 서로 경쟁을 시켰더니 물가가 이 때문에 뛰어 올랐고, 천하에서 세금을 실어오는데 혹 그 운반하는 품삯비용도 감당하지 못하였다. 이에 청하기를, “대농부승(大農部丞) 수십명을 설치하고 부서를 나누어 군국(郡國)을 주관하게 합니다. 먼지방에서 각각 그 물산이 혹여 다른 때⁶⁴²⁾ 장사치가 미리 사들였다 판매한 것으로써 세금을 부과하게 하고, 경사(京師)에 평준(平準)을 설치하여 천하의 물자를 모두 받아들이면, 대농의 모든 관원이 천하의 재화를 모두 장악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부상(富商)과 대고(大賈)가 큰 이익을 취할 곳이 없어지면 근본으로 돌아가 만물이 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천하의 물가를 억제하니 이름을 ‘평준’이라 합니다.”라고 하였다. 상홍양은 비록 세금을 걷는 신하이나 이 한가지 정책은 어찌 법이 되지 않겠는가? 효무제때 국용이 풍요롭게 공급되었는데도 백성은 세금을 더 내지 않은 것은 진실로 까닭이 있었던 것이다.

640) 땅에.....정한다: 우리나라에서 통행된, 永樂大全 속에 있는 蔡沈의 『書經集傳』에는 해당 구절이 없다. 이 구절은 孔安國의 『尚書正義』에 나오는데 「禹貢」앞 「夏書」에 「禹貢」의 서문격으로 나오는 구절이다.

641) 한(漢)나라: 이 단락은 『史記』「平準書」의 해당부분을 인용한 것인데, 생략된 구절이 몇 있다.

642) 다른 때: 「平準書」에는 ‘賈’라고 한 것을 李觀는 ‘如異’로 바꾸었다.

國用第十

「司稼」“巡野觀稼，以年之上下，出斂法。”斂法者，豐年從正，凶年則損也。「廩人」“掌九穀之數。”“以歲之上下數邦用，以知足否，以詔穀用，以治年之豐凶。凡萬民之食食者，人四鬴，上也。人三鬴，中也。人二鬴，下也。若食不能人二鬴，則令邦移民就穀，詔王殺邦用。”謂以歲之豐凶，得稅物多少之帳，計國之用，以知足否。若歲凶，稅物少而用多，則不足。「廩人」既知多少足否，乃詔告在上用穀之法也。

국용 제10

「사가(司稼)」⁶⁴³에 “야(野)를 순행하며 심어진 것을 보아 해의 상·하로써 엄법(斂法)을 산출한다.”라고 하였다. ‘엄법(斂法)’이라는 것은 풍년에는 정(正:十一)을 따르고, 흉년에는 감손(減損)한다는 것이다.⁶⁴⁴ 「능인(廩人)」⁶⁴⁵에 “9곡의 수(數)를 관장한다.”“해의 상·하로써 나라에서 쓸 것을 세어 충분한지 아닌지를 알아내고, 곡식 쓸 것을 고하여 해의 풍흉을 다스린다. 무릇 만민이 밥을 먹는 것은 한 사람이 4부(鬴)면 상(上)이요⁶⁴⁶, 한 사람이 3부면 중(中)이요, 한 사람이 2부면 하(下)이다. 만약 먹는 것이 한 사람당 2부가 못되면 나라에 영을 내려 백성을 옮겨 곡식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고 왕에게 나라에서 쓸 것을 줄이도록 고한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해의 풍흉으로써 세금의 많고 적은 수효를 얻어 나라의 쓸 것을 계산하여 충분한지 아닌지 알아 낸다. 만약 해가 흉년이 들어 세금은 적은데 쓸 것이 많으면 ‘부족’이 된다. 「능인」은 이미 많고 적음과 충분한지 아닌지를 알았다면 이에 윗사람에게 곡식 쓰는 법을 고한다⁶⁴⁷는 것이다.

643) 「사가(司稼)」: 『周禮』「地官司徒下」.

644) ‘엄법(斂法)’이라는.....것이다: 鄭玄의 注이다.

645) 「능인(廩人)」: 『周禮』「地官司徒下」.

646) 한 사람이.....상이요: 한 달 먹는 쌀의 양을 말한다. 鬴는 6斗4升이니, 한 사람이 4鬴씩이면 大豊年, 3鬴씩이면 中豊年, 2鬴씩이면 少儉년이다.

647) 해의.....고한다: 賈公彥의 疏이다.

夫什一而稅，天下中正，是故謂之徹。徹者，通也。然耕獲之事，豐儉亡常，不幸凶旱水溢，或螟螣蠹賊，農雖盡力，穀有不登，而有司必求如法，於理安乎？

무릇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는 것은 천하의 중정(中正)이다. 이러하므로 ‘철(徹)’이라고 말한다. ‘철’이라는 것은 통(通)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작하고 수확하는 일은 풍(豐)과 검(儉)이 떳떳함이 없어 불행히 가뭄이 들거나 물이 넘치거나 혹은 명충·박가시나방애벌레·뿌리잘라먹는벌레가 있으니, 농사에 비록 힘을 다 하더라도 곡식은 익지 않음이 있는데 유사(有司)는 반드시 법대로 하기를 요구한다면 이치에 편안한가?

孟子道龍子之言⁶⁴⁸)曰：“治地莫善於助，莫不善於貢。貢者，校數⁶⁴⁹)歲之中以爲常。樂歲，粒米狼戾，多取之而不爲虐，則寡取之，凶年，糞其田而不足，則必取盈焉。爲民父母，使民盼盼然，將終歲勤動，不得以養其父母，又稱貸而益之，使老稚轉乎溝壑，惡在其爲民父母也？”故聖人設官，必於穀之將熟，巡於田野，觀其豐凶，而後制稅斂焉。豐年從正，亦不多取也，凶荒則損，何取盈之有哉？然則龍子所見，蓋周之末世，周公雖貢，未嘗聞其不善也。然而取之少則用不得不殺，取少而用不殺，則國不能自濟，非反乎民，將焉得也？宜其知足否而詔穀用焉。

맹자가 용자(龍子)의 말을 말하여 가로대 “땅을 다스리는 것은 ‘조(助)’보다 좋은 것은 없고, ‘공(貢)’보다 좋지 않은 것은 없다. ‘공’이라는 것은 여러해의 중간을 비교하여 상수(常數)로 삼는다. 풍년에 낱알이 흩어져, 많이 취하여도 가혹하다 여기지 않을 것인데도 적게 취하고, 흉년에 그 농토에 거름을 해도 부족한데 반드시 정해진 수에 가득차는 것을 취하려 한다. 백성의 부모가 되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인상스럽게 하면서 장차 해를 마치도록 부지런히 움직여도 그 부모를 봉양할 수 없고, 또한 이자를 물면서 채워넣느라 노인과 어린이로 하여금 도량과 골짜기를 전전하게 한다면, 어디에 그 백성의 부모됨이 있는가?”⁶⁵⁰)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성인이 관직을 설치하여 반드시 곡식이 장차 익어갈 때에 전야

648) 原註: 『孟子』에는 ‘之言’ 두자가 없다.

649) 原註: ‘數’는 원래 탈락되어 있었는데 光緒本과 『孟子』에 근거하여 보충했다.

650) 땅을.....있는가: 『孟子』「滕文公上」 3장.

(田野)를 돌면서 그 풍흉을 관찰한 뒤에 세렴(稅斂)을 제정하도록 하였다. ‘풍년에 정(正:十一)을 따른다’는 것은 또한 많이 취한 것이 아니요, 흉황(凶荒)이면 감손하니, 어디에 ‘가득참을 취하는 것’이 있겠는가? 그렇다면 용자가 본 것은 주나라의 말세(末世)니, 주공(周公)이 비록 ‘공(貢)’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찍이 그 ‘불선(不善)’을 듣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취하는 것이 적으면 쓰는 것을 줄이지 않을 수 없다. 취하는 것이 적은데도 쓰는 것을 줄이지 않는다면 나라는 능히 스스로 구제할 수 없으니 백성에게 돌리지 않고 장차 어디에서 얻겠는가? 마땅히 그 충분하지 아닌지를 알아내어 곡식 쓰는 것을 고해야 할 것이다.

「王制」曰：“冢宰制國用，必於歲之杪，五穀皆入，然後制國用。用地小大，視年之豐耗，以三十年之通，制國用，量入以爲出。”由此道也。後世作者，除減斂法則既聞之矣。至於邦用，其可忽諸？

『예기』「왕제」에 가로대 “총재는 나라의 쓸 것을 제정하되 반드시 해의 끝자락에 하는 것은 5곡이 모두 들어온 뒤에 나라의 쓸 것을 제정하는 것이다. 땅이 큰지 작은지를 쓰며, 해의 풍모(豐耗)를 보아 30년의 통계로써⁶⁵¹⁾ 나라의 쓸 것을 제정하고, 수입을 헤아려 지출을 한다.”라고 하였으니, 이 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후세의 작자(作者)가 영법(斂法)을 제감(除減)한다는 것은 곧 이미 들었다. 나라의 쓰는 것에 이르러서는 그것을 소홀히 해도 되겠는가?

651) 30년의 통계로써: 30년의 통계라는 것은 30년간 수입의 수량을 통계내어 10년의 여유분을 비축한다는 것이다. 매해 수입을 4등분하여, 4분의 3을 쓰고 매년 4분의 1을 남겨서 3년째가 되면 1년 쓸 것을 충족할 수 있으니 30년에 10년치가 남는 것이다.

제9장 『이구집』 권8 國用11-國用16

李觀集卷第八

國用第十一

「泉府」“掌以市之征布，斂市之不售，貨之滯於民用者，以其賈買之，物楮⁶⁵²)而書之，以待不時而買者。買者，各從其抵，都鄙，從其主，國人郊人，從其有司，然後予之。凡賒者，祭祀無過旬日，喪紀無過三月。凡民之貸者，與其有司，辨而授之，以國服爲之息。”物楮而書之，物物書其賈也。不時買者，謂求急者也。賒，謂祭祀喪紀二者事大，故賒與民不取利也。貸者，即今之舉物生利也。與其有司，別其所授之物，所出之利，各依其服事之稅。若其人受園廛之田而貸萬泉，則晷出息五百，他倣此也。

국용 제11

「천부(泉府)」⁶⁵³에 “시장의 정포(征布)를 관장한다. 시장에서 팔리지 않아 재화가 백성이 쓰는데 막혀 있는 것을 거두어 들이는데 그 가격으로 사들여서 물건마다 풋말을 적어두고 불시(不時)에 살 사람에게 공급한다. 살 사람은 각각 그 소속에 따르는데, 도비(都鄙)는 그 주(主)를 따르고, 국인(國人:城內6鄉民)과 교인(郊人:郊外6遂民)은 그 유사(有司)를 따른다. 그런 뒤에 준다. 무릇 외상거래하는 것은 제사는 10일을 초과하지 않고, 상기(喪紀:喪事)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무릇 백성이 임대한 것은 그 유사에게 주되, 변별하여 주고, 국복(國服)으로써 이자를 삼는다.”라고 하였다. ‘물같이서지(物楮而書之)’는 물건마다 그 가격을 써놓는 것이다. ‘불시매자(不時買者)’는 급히 구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賒)’는 제사와 상기, 두 가지는 일이 큰 것이므로 백성에게 외상으로 주고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대(貸)’라는 것은, 곧 오늘날 물건을 빌리면서 이자를 내

652) 原註: ‘楮’은 원래 ‘揭’로 되어 있었는데 四庫本과 『周禮』「地官司徒泉府」와 阮元の 校記에 근거하여 고쳤다.

653) 「천부(泉府)」: 『周禮』「地官司徒下」.

는 것이다. 그 유사에게 주는데, 그 빌려준 물건과 나온 이자를 구별하고, 각각 그 복사(服事)의 세율에 의한다.⁶⁵⁴⁾ (예를 들어) 만약 그 사람이 원전(園廛)의 토지를 받아 만천(萬泉)을 빌렸다면, 일년에 이자 5백(五百:二十而一)을 내게 하는데 다른 것도 이와 같다.⁶⁵⁵⁾

天之生物，而不自用，用之者人。人之有財，而不自治，治之者君。「繫辭」曰：“理財，正辭，禁民爲非曰義。”是也。君不理，則權在商賈。商賈操市井之權，斷民物之命。緩急，人之所時有也。雖賤不得不賣，裁其價太半可矣。雖貴不得不買，倍其本什百可矣。如此，蚩蚩之氓，何以能育？是故，不售之貨則斂之，不時而買則與之，物楬而書，使知其價，而況賒物以備禮，貸本以治生，皆所以紓貧窶而鉗並兼。養民之政，不亦善乎？

하늘이 만물을 낳아도 스스로 쓰지 못하니, 쓰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이 재물이 있어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니, 다스리는 것은 임금이다. 「계사」에 “재물을 다스리고 말을 바르게 하며 백성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금함을 ‘의(義)’라 한다.”⁶⁵⁶⁾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임금이 다스리지 아니하면 권한이 상고(商賈)에게 있게 된다. ‘상고’가 시정(市井)의 권세를 잡으면 백성과 물자의 명은 끊어진다. 완급(緩急)은 사람이 때로 있는 것이다. 비록 물건 값이 떨어져도 팔지 않을 수 없으니, 그 가격의 태반을 잘라내도 감수한다. 비록 물건 값이 올라가도 사지 않을 수 없으니, 그 본래 가격의 열배 백배를 올려도 감수한다. 이와 같으니, 어리석은 백성을 어떻게 능히 기를 것인가? 이러하므로 팔리지 않는 재화는 거두어들였다가 불시에 사려는 사람이 있으면 주고, 물목마다 뜻말을 하여 적어 두었다가 그 가격을 알게 한다. 그리고 하물며 물건을 외상으로 주어 예를 갖추게 하고, 자본을 빌려주어 생업을 다스리게 하였으니, 모두 가난하고 군색한 사람의 옥천(玉泉) 것을 느슨하게 해주고 병겸(竝兼)에게는 칼을 채우는 것이다. 양민(養民)의 정책이 또한 좋지 아니한가?

654) 각각.....의한다: 『周禮』「地官司徒下」「載師」에 “國宅無征，園廛二十而一，近郊十一，遠郊二十而三.....”이라고 하여 稅率을 규정해 놓았다.

655) ‘물갈이서지(物楬而書之)’는.....같다: 賈公彥의 疏이다.

656) 재물을.....한다: 『周易』「繫辭下傳」 1장.

管仲通輕重，而桓公以霸，李悝平糶，而魏國富強，耿壽昌築常平，而民便之，師古之效也，宜其流風遂及于今。必也事責其實，官得其人，亦何愧彼哉！

관중이 경중(輕重)을 통하게 하여 환공이 패권을 잡았고,⁶⁵⁷⁾ 이회가 평적(平糶)을 하여 위(魏)나라가 부강하였으며,⁶⁵⁸⁾ 경수창(耿壽昌)이 상평(常平)을 쌓아 백성이 편리했던 것은⁶⁵⁹⁾ 옛날을 스승으로 삼았던 효험이니, 그 유풍(流風)이 드디어 지금까지 미치는 것이 마땅하다. 반드시 일은 그 실사(實事)를 권책(勸責)하며 관(官)은 그 사람을 얻는다면 또한 어찌 저들에게 부끄럽겠는가.

國用第十二

「司市」“凡治市之貨賄，六畜珍異，亡者使有，利者使阜，害者使亡，靡者使微。”利，利於民，謂物實厚者，害，害於民，謂物行苦者。使有使阜，起其賈以召之也，使亡使微，抑其賈以却之也。侈靡細好，使富民好奢，微之而已。

국용 제12

「사시(司市)」⁶⁶⁰⁾에 “무릇 시장의 화회(貨賄)와 6축(六畜)과 진이(珍異)를 다스려서 없는 것은 있게 하고, 백성에게 이로운 것은 성하게 하고, 백성에게 해로운 것은 없게 하고, 사치스러운 것은 미약하게 한다.”라고 하였다. ‘이(利)’는 백성에게 이로운 것이니 물건이 실(實)하고 후(厚)한 것을 말한다. ‘해(害)’는 백성에게 해로운 것이니 물건이 행고(行苦:粗惡)한 것을 말한다. ‘있게 하고, 성하게 하는 것’은 그 고(賈)를 일으켜 부르는⁶⁶¹⁾ 것이요, ‘없게 하고, 미약하게 하는 것’은 그 고(賈)를 억제하여 물리치는 것이다. 치미(侈靡)와 세호(細好)⁶⁶²⁾는 부유한

657) 관중이.....잡았고: 『史記』「管晏列傳」 및 『漢書』「食貨志下」.

658) 이회가.....부강하였으며: 『漢書』「食貨志上」.

659) 경수창(耿壽昌)이.....것은: 『漢書』「食貨志上」.

660) 「사시(司市)」: 『周禮』「地官司徒下」.

661) 부르는: 「司市」에는 ‘徵’으로 되어 있는데 『李觀集』에는 ‘召’로 되어 있다.

662) 치미(侈靡)와 세호(細好): 치미(侈靡)와 세호(細好)는 둘 다 사치를 말한 것이다.

백성이 사치를 좋아하게 하니 미약하게 할 따름이다.⁶⁶³⁾

又“僞飾之禁，在民者十有二，在商者十有二，在賈者十有二，在工者十有二。”所以俱十有二者，工不得作，賈不得粥，商不得資，民不得畜。「王制」曰：“用器不中度，不粥於市，兵車不中度，不粥於市，布帛精粗不中數，幅廣狹不中量，不粥於市，姦色亂正色，不粥於市。”“五穀不時，果實未熟，不粥於市，木不中伐，不粥於市，禽獸魚鱉不中殺，不粥於市。”亦其類也。

또 “위식(僞飾)을 금함이, 백성에게 있는 것이 12가지, 상(商)에게 있는 것이 12가지, 고(賈)에게 있는 것이 12가지, 공(工)에게 있는 것이 12가지이다.”⁶⁶⁴⁾라고 하였다. 12가지에 저촉되는 것을, 공(工)은 만들 수 없고, 고(賈)는 팔 수 없고, 상(商)은 자산으로 삼을 수 없고, 백성은 쌓을 수 없다는 것이다.⁶⁶⁵⁾ 『예기』 「왕제」에 “용기(用器)가 도수에 맞지 않으면 시장에서 팔 수 없으며, 병거(兵車)가 도수에 맞지 않으면 시장에서 팔 수 없으며, 포백(布帛)의 정(精)·추(麤)가 수(數)에 맞지 않고 폭의 광(廣)·협(狹)⁶⁶⁶⁾이 양(量)에 맞지 않으면 시장에서 팔 수 없으며, 간색(姦色)이 정색(正色)을 어지럽히면 시장에서 팔 수 없다.” “5곡이 때가 아니고 과실이 익지 않았으면 시장에서 팔 수 없으며, 나무가 벌목하기에 알맞지 않으면 시장에서 팔 수 없으며, 조수(鳥獸)와 어별(魚鱉)이 잡기에 적당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팔 수 없다.”라고 하였으니 또한 그러한 종류인 것이다.⁶⁶⁷⁾

夫理財之道，去僞爲先。民之詐僞，蓋其常心。矧茲市井，飾行儻，何所不至哉！奸僞惡物而可雜亂欺人以取利，則人競趨之矣。豈唯愚民見欺邪？使人妨日廢業以作無用之物，人廢業則本不厚矣，物無用則國不實矣。下去本而上失實，禍自此始也。

무릇 재물을 다스리는 도는 ‘가짜’ 제거하기를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백성들이 속임수를 하고 가짜를 만드는 것은 대개 그 보통의 마음이다. 하물며 이 시

663) ‘이(利)’는.....따름이다. 鄭玄의 注이다.

664) 위식(僞飾)을.....12가지이다. 48가지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665) 12가지에.....것이다. 鄭司農(鄭衆)의 注이다.

666) 폭의 광(廣)·협(狹): 『禮記』 鄭玄의 注에 “布幅，廣二尺二寸，帛，廣二尺四寸.”이라 하였다.

667) 『예기』 「왕제」에.....것이다. 鄭玄의 注이다.

정(市井)은 행실을 꾸며대고 사특함을 파는 데니 어느 곳인들 이르지 못하겠는가. 가짜와 조악한 물건이 잡스럽게 어지럽히고 사람을 속여서 이곳을 취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투어 달려들 것이다. 어찌 어리석은 백성만 기만당할 뿐이겠는가. 사람들을 해쳐 날마다 생업을 폐하고 쓸모 없는 물건만을 만들게 할 것이요, 사람들이 생업을 폐하면 근본이 두텁지 못하게 될 것이니, 물건은 쓸만한 것이 없고 나라는 부실해질 것이다. 아래는 근본을 버리고 위는 튼실함을 잃는다면, 재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至於侈靡，皆爲人費，雖不可盡去，亦當制節使微少矣。孟冬之「月令」曰：“毋或作爲淫巧，以蕩上心，必功致爲上。”『書』曰：“不貴異物，賤用物，民乃足。”此之謂也。噫！爲國家者，孰不有意哉，言而必信，令而必行，鮮矣。

사치함에 이르러서는 모두 사람들이 낭비하는 것이라 비록 다 제거할 수 없다 하더라도 또한 마땅히 절제시켜 미약하고 줄어들게 해야 한다. 맹동(孟冬)의 「월령(月令)」에 “혹 교묘한 눈가림용을 만들어 윗사람의 마음을 방탕하게 하지 말고 반드시 공을 치밀하게 한 것으로 으뜸을 삼아야 한다.”⁶⁶⁸⁾라고 하였고, 『서(書)』에⁶⁶⁹⁾ “진이(珍異)한 물건을 귀하게 여기고 일용(日用)하는 물건을 천하게 여기지 않으면 백성은 이에 풍족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을 말한 것이다. 아, 국가를 다스리는 자, 누군들 뜻을 두지 않을까마는 말하면 반드시 믿고 명령하면 반드시 행하는 것은 드물다.

國用第十三

「遺人」“掌邦之委積，以待施惠。鄉里之委積，以恤人之艱厄。門閭之委積，以養老孤。郊里之委積，以待賓客。野鄙之委積，以待羈旅。縣都之委積，以待凶荒。”委積者，計九穀之數，足國用，以其餘共之也。艱厄，謂民有困乏則振恤之。門閭，謂出入有稅，足國用之外，留之以養死政之老與其孤也。郊里，六鄉之民居郊者，其委積以待

668) 혹 교묘한.....한다: 『禮記』 鄭玄의 注에 의하면, 工師가 祭器를 만들 때 잔 재주로 사치품을 만들어 윗사람을 현혹하지 말고 정성을 다하여 치밀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669) 『서(書)』에: 『書經』「旅獒」를 말한다.

賓客至郊，與主國使者接，因與之廩餼也。野鄙，謂六遂，客有羈繫未得去者，則於此惠之。縣都，謂四百里五百里中，年穀不登，則畿內畿外通給之也。

국용 제13

「유인(遺人)」⁶⁷⁰⁾에 “나라의 위자(委積)⁶⁷¹⁾를 관장하여 시혜(施惠)를 공급한다. 향리(鄉里)의 위자으로써 백성의 간액(艱厄)을 구휩한다. 문관(門關)의 위자으로써 노인과 고아를 양육한다. 교리(郊里)의 위자으로써 빈객을 공급한다. 야비(野鄙)의 위자으로써 기려(羈旅)를 공급한다. 현도(縣都)의 위자으로써 흉황(凶荒)에 공급한다.” 라고 하였다. ‘위자’라는 것은 9곡의 수를 계산하여 국용(國用)을 충족하고 그 남은 것으로써 공급하는 것이다. ‘간액’은 백성이 곤핍(困乏)함이 있으면 진휩하는 것을 말한다. ‘관문’은 출입할 때 세가 있는데 국용을 충족시키고 남은 것을 남겨두었다가 나랏일을 하다 죽은 사람의 부모와 그 고아를 양육하는 것⁶⁷²⁾을 말한다. ‘교리’는 6향의 백성이 교(郊)에 거주하는 것이니, 그 위자으로써 빈객이 교에 이르러 주국(主國)의 사자와 더불어 접했을 때 인하여 능희(廩餼)를 주는 것을 공급하는 것이다. ‘야비’는 6수(六遂)를 이룬 것이니, 객이 기침(羈繫:拘禁)되어 떠나갈 수 없는 자가 있으면 여기에서 시혜한다. ‘현도’는 400리(四百里:縣)와 500리(五百里:都) 가운데를 말한 것이니, 흉년에 곡식이 익지 않으면 기내와 기외를 통합하여 공급하는 것이다.⁶⁷³⁾

世之有飢穰，天之行也。禹湯之聖，猶弗能免。至於困窮孤獨寄客之人，皆國所常有，安坐而視其死，則非仁人在上視民如傷者之意。將推其惻隱，則邦用有經，倉之穀孰爲閒粒？府之帛孰爲羨縷？如是而輟焉，禍蓋博矣。

세상에 기근과 풍년이 있는 것은 하늘이 행하는 것이다. 우(禹)와 탕(湯) 같은 성인이라도 오히려 능히 면할 수 없는 일이다. 곤궁하고 고독하고 길떠난 사람

670) 「유인(遺人)」: 『周禮』「地官司徒下」.

671) 위자(委積):貯蓄을 의미하는데 鄭玄의 注에 ‘少曰委,多曰積.’이라 하였다.

672) 나랏일을.....것: 『周禮』「地官司徒下」「司門」에 “以其財養死政之老與其孤.”라고 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

673) ‘위자’라는.....것이다: 賈公彥의 疏를 편집한 것이다.

에 이르러, 모두 나라에 항상 있는 것이니 편안히 앉아서 그 죽어감을 본다는 것은 곧 어진 사람이 위에 있어 백성 보기를 아픈 사람과 같이 한다⁶⁷⁴)는 뜻이 아닌 것이다. 장차 그 측은지심을 미루어 살피려 한다면, 나라에서 쓰는 것은 법이 있으니, 창고의 곡식은 어떤 것이 한가로운 낱알이 될 것이며, 곳집의 비단은 어떤 것이 여분의 실이 되겠는가? 이와 같다고 해서 그쳐버린다면 재앙은 아마 넓어질 것이다.

故宜於大有年時，畜積以備之。「倉人」“有餘，則藏之，以待凶而頒之。”「職內」“敘其財以待邦之移用。”亦謂此也。然而「洪範」云“臣無有作福。”晏子稱“家施不及國。”使民弗知主恩。而謂爲己力，乃人臣之常過，國家之大患也。故「鄉師」“以歲時巡國及野，而賙萬民之艱厄，以王命施惠。”此慮之深，禮之至也。然則義倉之法，亦有取焉耳。

그러므로 마땅히 크게 풍년이 들었을 때 쌓아서 대비해야 한다. 「창인(倉人)」⁶⁷⁵)에 “여유가 있으면 저장하여 흉년을 기다렸다가 나누어 준다.”라고 하였고, 「직내(職內)」⁶⁷⁶)에 “그 재물을 문서로 정리하여 두었다가 나라에서 옮겨 사용할 때 공급한다.”라고 한 것은 또한 이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서경』 「홍범」에 이르기를 “신하는 복(福)을 짓는 것이 있으면 안된다.”⁶⁷⁷)라고 하였고, 안자(晏子)는 칭하기를 “대부의 집안에서 시혜하는 것은 나라에 미치면 안됩니다.”⁶⁷⁸)라고 하였으니, 백성으로 하여금 군주의 은혜를 알지 못하게 하고서 자기의 역량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곧 신하들이 늘상 저지르는 과오요, 국가의 큰 근심거리다. 그러므로 「향사(鄉師)」⁶⁷⁹)에서 “세시(歲時)에 국(國)과 야(野)를 돌아보고 만민의 간액을 구원하되 왕명으로써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사려가

674) 백성.....한다: 『左傳』 哀公元年條 및 『孟子』 「離婁下」 20장. “文王，視民如傷.”

675) 「창인(倉人)」: 『周禮』 「地官司徒下」.

676) 「직내(職內)」: 『周禮』 「天官冢宰下」.

677) 신하는.....안된다: 『書經』 「洪範」에 “惟辟，作福，惟辟，作威，惟辟，玉食，臣無有作福作威玉食.”

이라 하였다. 賞罰의 권한은 임금에게 있어야함을 말한 것이다.

678) 대부의.....안됩니다: 『左傳』 昭公 25年條에 나오는 말이다. 晏子が 齊景公에게 禮를 거론하면서 신하가 시혜를 베풀어 민심을 얻으면 반역의 빌미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한 것인데, 당시 대부 陳氏를 지칭한 것이다.

679) 「향사(鄉師)」: 『周禮』 「地官司徒」.

깊은 것이요, 예의 지극함이다. 그렇다면 의창(義倉)의 법도 또한 취할 것이 있다.

國用第十四

「司救」“凡歲時有天惠民病，則以節巡國中及郊野，而以王命施惠。”由是觀之，非直凶荒而後施與也，疾疫亦有之矣。夫四時之厲，或連月不愈，或闔門不起，丁壯臥於床蓐，則老稚無能爲。飲食所不給，醫藥所不濟，以至於死者，豈天命乎？人主所宜動心矣！

국용 제14

「사구(司救)」⁶⁸⁰⁾에서 “무릇 세시에 천환(天患:災害)과 민병(民病)이 있으면 정절(旌節)을 가지고 국중(國中)과 교야(郊野)를 순행하면서 왕명으로써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흉황이 든 이후에 베풀어 줄 뿐만 아니라 질역(疾疫)에도 또한 있었던 것이다. 무릇 4시(四時)의 역병에 혹은 달을 연이어 낚지 않기도 하고 혹은 온 가족이 영영 일어나지 못하기도 한다. 정장(丁壯:壯丁)이 자리에 누우면 노인과 어린이는 능히 어떻게 할 수 없다. 음식도 공급받지 못하고 의약도 구원받지 못하여 죽음에 이르는 것이 어찌 천명(天命)이겠는가? 인주(人主)는 마땅히 마음을 움직여야 할 것이다.

「賈師」“凡天患，禁貴儻者，使有常價。”亦爲此也。「司關」“國凶札，則無關門之征，猶幾。”由是觀之，凶年非直除減田租，彼貨賄之征皆舍之，疾疫亦然。夫阻飢之人，營求衣食，固無所不至，又將籠其貨賄，則何以措手足乎？況於疾疫之世，安得助天爲虐耶？人主所宜動心矣！

「고사(賈師)」⁶⁸¹⁾에 “무릇 천환이 있으면 미리 쌀아 두었다가 비싸게 파는 자⁶⁸²⁾를 금하여 하여금 항상 같은 가격이 있게 한다.”라고 한 것은 또한 이 때

680) 「사구(司救)」: 『周禮』「地官司徒下」.

681) 「고사(賈師)」: 『周禮』「地官司徒下」.

문이다. 「사관(司關)」⁶⁸³에 “나라에 흉찰(凶札)⁶⁸⁴이 있으면 통관하는데 세금이 없고 오히려 기찰(譏察)만 한다.”라고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흉년에 전조(田租)를 제감할 뿐만 아니라 저 화회의 세금도 모두 면제하고 질역에도 또한 그러하였던 것이다. 무릇 기근에 허덕이는 사람은 입고 먹을 것을 구함에 진실로 이르지 못할 곳이 없는데 또한 장차 그 화회마저 농락한다면 무엇으로써 손발을 조치하겠는가? 하물며 질역이 돌 때 어떻게 하늘을 도와 가혹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인주(人主)는 마땅히 마음을 움직여야 할 것이다.

「掌客」“凡禮賓客，國新殺禮，凶荒殺禮，札喪殺禮，禍裁殺禮，在野在外殺禮。”由是觀之，非直以歲之下則殺邦用，若新建國及札喪禍裁，在野在外，皆殺禮也。禮許儉，不非無。安得重困於無聊之民，求備乎籩豆之事也？人主所宜動心矣！

「장객(掌客)」⁶⁸⁵에 “무릇 빈객에게 예를 할 때 나라가 새로 건국하였으면 예를 감하고, 흉황에 예를 감하고, 찰상(札喪)에 예를 감하고, 화재(禍裁)에 예를 감하고, 야(野)에 있거나 밖에 있어도 예를 감한다.”라고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작황이 하(下)일 때 나라의 쓸 것을 줄일 뿐만 아니라 만약 ‘새로 건국’하였거나 ‘찰상’과 ‘화재’와 ‘재야재외’의 때에도 모두 예를 감하였던 것이다. 예는 검소함을 허락하니 없는 것을 그르다고 하지 않는다.⁶⁸⁶ 어떻게 하릴없는 백성에게 거둬 곤란을 겪게 하며, 변두(籩豆)의 일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인주(人主)는 마땅히 마음을 움직여야 할 것이다.

「膳夫」“大荒則不舉，大札則不舉，天地有裁則不舉，邦有大故則不舉。”由是觀之，非直於外事殺禮，若王膳亦爲之貶也。譬諸父母，其子之不哺，而日餘膏粱，可哉？人

682) 미리.....파는 자: 鄭玄의 注에 “謂若貯米穀棺木，而諸久雨疫病者，貴賣之，因天災害阨民，使之重困。”이라고 하였다.

683) 「사관(司關)」: 『周禮』「地官司徒下」.

684) 흉찰(凶札): 鄭司農(鄭衆)의 注에 “凶，謂凶年饑荒也。札，謂疾疫死亡也。越人謂死爲札。”이라 하였다.

685) 「장객(掌客)」: 『周禮』「秋官司寇下」.

686) 예는.....않는다: 『禮記』「曲禮上」에 나오는 “貧者，不以貨財爲禮.”라는 구절에 대한 鄭玄의 注이다.

主所宜動心矣!

「선부(膳夫)」⁶⁸⁷⁾에 “흉년이 들면 ‘거(擧:殺牲盛饌)’를 하지 않으며, 역병이 들면 ‘거’를 하지 않으며, 천지에 재난이 있으면 ‘거’를 하지 않으며, 나라에 사형 집행이 있으면 ‘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바깥일에만 예를 감할 뿐만 아니라 왕의 수라도 또한 줄이는 것이다. 부모에 비유하면, 그 자식은 먹지 못하는데 날마다 고량(膏粱)이 남아도는 것이 옳은가? 인주(人主)는 마땅히 마음을 움직여야 할 것이다.

故「曲禮」曰：“歲凶，⁶⁸⁸⁾ 年穀不登，君膳不祭肺，馬不食穀，馳道不除，祭事不縣，大夫不食粱，士飲酒不樂。”皆自貶損，憂民之道也。如此，天不爲之感，人不爲之悅，用度不足，海內不安，未之前聞也。

그러므로 『예기』 「곡례」에 가로대 “흉년이 들어 곡식이 익지 않거든 임금의 수라에는 폐를 제물로 쓰지 않으며,⁶⁸⁹⁾ 말이 곡식을 먹지 아니하며, 임금의 수레가 다니는 길에 풀을 제거하지 않으며,⁶⁹⁰⁾ 제사에 ‘현(縣:音樂)’을 하지 않으며, 대부는 ‘양(粱)’을 하지 않으며,⁶⁹¹⁾ 선비는 술을 마실 수 있으나 음악을 연주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모두 스스로 깎고 줄여서 백성을 근심하는 도인 것이다. 이와 같이 하였는데도 하늘이 감동하지 않고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으며 씩씩이가 부족하고 해내가 불안했다는 것은 전에 듣지 못하였다.

國用第十五

「鄉師」“以國比之法，以時稽其夫家衆寡，辨其老幼貴賤廢疾馬牛之物，辨其可任者與其施舍者，掌其戒令糾禁，聽其獄訟。” 「鄉大夫」“以歲時登其夫家之衆寡，辨其可

687) 「선부(膳夫)」: 『周禮』 「天官冢宰」.

688) 原註: ‘歲凶’은 원래 ‘凶荒’으로 되어 있었는데 『禮記』 「曲禮」에 근거하여 고쳤다.

689) 폐를.....않으며: 『禮記』 鄭玄의 注에 “食殺牲則祭先，有虞氏以首，夏后氏以心，殷人以肝，周人以肺。不祭肺，則不殺也.”라고 하였다.

690) 임금의.....않으며: 혹 굶주린 백성이 취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제거하지 않는 것이다.

691) 대부는.....않으며: 원래 大夫는 黍稷에 粱을 더하는데 흉년이므로 빼는 것이다.

任者. 國中自七尺以及六十, 野自六尺以及六十有五, 皆征之. 其舍者, 國中貴者賢者能者服公事者老者疾者皆舍. 以歲時入其書.”

국용 제15

「향사(鄉師)」⁶⁹²에 “국비(國比)의 법⁶⁹³으로써 때로 그 부가(夫家)의 많고 적음을 헤아리고, 그 노유(老幼)와 귀천(貴賤)과 폐질(廢疾)과 마소의 물목을 변별하며, 그 요역을 맡을 수 있는 사람과 시사(施舍:復免)할 사람을 변별하며, 그 계령(戒令)과 규금(糾禁)을 관장하고, 그 옥송(獄訟)을 청단(聽斷)한다.”라고 하였다. 「향대부(鄉大夫)」⁶⁹⁴에 “세시(歲時)로써 그 부가(夫家)의 많고 적음을 정하고 그 요역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을 변별한다. 국중(國中:城郭中)은 7척(七尺:年二十)부터 60세까지, 야(野)는 5척(六尺:年十五)부터 65세까지 모두 요역을 부과한다. 그 요역을 면제할 자는 국중의 귀한 자와 현자(賢者)와 능자(能者)와 공사(公事)에 복무중인 자와 노인과 질환자이니 모두 면제한다. 세시로써 문서를 작성하여 「대사도(大司徒)에게 보고한다.”라고 하였다.

征之者, 謂給公上築作挽引道渠之役也. 國中復除者多, 役使者少, 人少則勞, 故晚役而早免之, 二十以及六十是也. 野復除者少, 役使者多, 人多則逸, 故早役而晚免之, 十五以及六十五是也. 君子之於人, 裁其勞逸而用之, 可不謂義乎! 世有仕學之鄉, 或舍役者半, 農其間者, 不亦難乎! 而上弗之恤, 悖矣! 貴者有爵命, 服公事者有功勞, 誠不可役, 然復其身而已. 世有一戶皆免之, 若是, 則老者疾者, 亦可以闔門不使耶?

‘정지(征之)’는 공상(公上)의 축작(築作)·만인(挽引)·도거(道渠)의 요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국중’에는 복제(復除:免除)자가 많고 역사(役事)자가 적다. 사람이 적으면 수고로우므로 늦게 요역을 지우고 일찍 면제하는 것이니 ‘20세에서

692) 「향사(鄉師)」: 『周禮』「地官司徒」.

693) 국비(國比)의 법: 『周禮』「地官司徒」「小司徒」의 ‘九比之數’를 말한다. 九比는 ‘九夫爲井(鄭司農)’이라하기도 하고, ‘九賦(鄭玄)’라고도 한다.

694) 「향대부(鄉大夫)」: 『周禮』「地官司徒」.

60세까지'라는 것이 이것이다. '야'에는 복제자가 적고 역사자가 많다. 사람이 많으면 편안하므로 일찍 요역을 지우고 늦게 면제하는 것이니 '15세에서 65세까지'라는 것이 이것이다. 군자가 사람들에게 그 수고로움과 편안함을 재단하여 사용하니 의롭다 이르지 않겠는가. 세상에는 '사학지향(仕學之鄉)'이 있어 혹은 요역을 면제받은 자가 절반이니 그 사이에서 농사짓는 자는 또한 어렵지 않겠는가. 그러한데도 위에서 구휼하지 않으니 잘못된 것이다. '귀자(貴者)'는 작명(爵命)이 있고, '복공사자(服公事者)'는 공로가 있으니 진실로 부릴 수 없으나 그 자신을 면제할 따름이다. 세상에는 1호(一戶)를 모두 면제하는 일도 있으니, 이런식이라면 노인과 질환자도 또한 온 가족을 부리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至於馬牛，皆辨其可任，善夫。世有人未嘗芻秣而責以牽傍，其僦費敗家者衆矣。況乎水旱疾疫之歲，飢餓之弗察，死亡之弗圖，而臨以定制，驅之給使可乎？

마소에 이르러도 모두 그 요역을 맡길 수 있는 것을 변별한다고 하였으니, 좋다. 세상에는 사람이 일찍이 추말(芻秣:풀)을 먹이지도 않는데 견방(牽傍)⁶⁹⁵으로 써 책임을 묻는 일이 있으니 그 품삯 비용으로 패가한 자 많다. 하물며 홍수와 가뭄과 질병이 든 해에 굶주리는 것을 살피지도 못하고, 사망하는 것을 도모하지도 못하면서 정해진 제도로만 균림하여, 내몰아 역사를 공급하게 하는 것이 옳은가?

故「均人」“凡均力政，以歲上下。豐年，則公甸用三日焉。中年，則公甸用二日焉。無年，則公甸用一日焉。凶札，則無力政無財賦”也。古者使民歲不過三日，而秦法月爲更卒，已復爲正，一歲屯戍，一歲力役，三十倍於古。何不仁之甚也！天下畔之晚矣。

그러므로 「균인(均人)」⁶⁹⁶에 “무릇 역정(力政:力征)을 고르게 하는데 작황의 상하로써 한다. 풍년⁶⁹⁷이면 일은 균등하게⁶⁹⁸ 3일을 사용한다. 흉년이면 일은

695) 견방(牽傍): 소와 말을 끄을 때 앞에서 끄는 것을 '牽'이라 하고 옆에서 끄는 것을 '傍'이라 한다.

696) 「균인(均人)」: 『周禮』「地官司徒下」.

균등하게 2일을 사용한다. 무년이면 일은 균등하게 1일을 사용한다. 흉찰이면 역 정도 없고 재부도 없다.”라고 하였다. 옛날에 백성을 부리는 것이 1년에 3일을 초과하지 않았는데 진(秦)나라의 법은, 한달은 경졸(更卒)이 되었다가 다시 정졸(正卒)이 되니,⁶⁹⁹⁾ 1년의 수자리와 1년의 역역(力役)이 옛날보다 30배였다.⁷⁰⁰⁾ 어찌 불인(不仁)함이 이다지도 심하였던가! 천하가 반란한 것은 늦은 것이었다.

國用第十六

「大司徒」“以保息六養萬民.”“六曰安富.” 謂平其繇役，不專取也。大哉，先王之法，其所以有天下而民不斃者乎！孔子謂“既庶矣，富之。既富矣，教之。”管子有言“倉廩實，知禮節。衣食足，知榮辱。”然則民不富，倉廩不實，衣食不足，而欲教以禮節，使之趨榮而避辱，學者皆知其難也。

국용 제16

「대사도(大司徒)」⁷⁰¹⁾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여섯가지로 만민을 기른다.” “여섯번째는 ‘안부(安富)’이다.”라고 하였으니, 그 요역을 공평하게 하고 오로지 취하지 않는다⁷⁰²⁾는 말이다. 위대하다 선왕의 법이여, 그것이 천하를 소유하였어도 백성이 싫어하지 않는 까닭이었던 것이다. 공자는 이르기 “이미 백성이 많으면 부유하게 하고, 이미 부유하였거든 가르쳐야 한다.”⁷⁰³⁾라고 하였고, 관자(管子)는 말이 있었으니 “창름(倉廩)이 채워져야 예절을 알고, 의식(衣食)이 풍족해야 영욕(榮辱)을 안다.”⁷⁰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백성이 부유하지 못하고, 창름

697) 풍년: 豊年은 사람이 月 4黼씩 먹는 해이고, 中年은 3黼, 無年은 2黼이다.

698) 일은 균등하게: 鄭玄의 注에 “公, 事也. 旬, 均也.”라고 하였다.

699) 한달은.....되니: 『漢書』顏師古의 注에 “更卒, 謂給郡縣一月而更者也. 正卒, 謂給中都官也.”라고 하였다.

700) 옛날에.....30배였다: 『漢書』「食貨志下」에 나오는데 董仲舒가 한 말이다.

701) 「대사도(大司徒)」: 『周禮』「地官司徒」.

702) 그 요역을.....안는다: 鄭玄의 注이다. 賈公彥의 疏에 “繇役均平, 又不專取, 則富者安, 故云安富也.”라고 하였다.

703) 이미.....한다: 『論語』「子路」 9장.

704) 창름(倉廩)이.....안다: 『史記』「管晏列傳」 및 『管子』「牧民」.

이 채워지지 않았으며, 의식이 풍족하지 못하데 예절로써 가르쳐 하여금 영화로 달려가고 욕을 피하게 하고자 한들, 학자는 모두 그 어려움을 알 것이다.

及其爲國家，則有反是者矣。田皆可耕也，桑皆可蠶也，材皆可飭也，貨皆可通也，獨以是富者，心有所知，力有所勤，夙興夜寐，攻苦食淡，以趣天時，聽上令也。如此而後可以爲人之民，反疾惡之，何哉？疾惡之，則任之重，求之多，勞必於是，費必於是，富者幾何其不黜而貧也。使天下皆貧，則爲之君者，利不利乎？故先王平其繇役，不專取以安之也。

그 국가를 다스림에 미치면 이와 반대인 것이 있다. 농토는 모두 경작할 수 있고 뽕나무는 모두 누에를 먹일 수 있으며 재목은 모두 꾸밀 수 있고 재화는 모두 통용할 수 있는데 유독 이로써 부유한 자는 마음에 아는 것이 있고 힘이 부지런한 것이 있고 일찍 일어나고 밤에 자며 고생을 견디고 담백한 것을 먹으면서 천시에 달려가며 위의 명령을 들은 것이다. 이와 같이 한 뒤에 사람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도리어 미워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미워한다면 책임을 중하게 하고 구하는 것을 많이 하며 수고로움을 반드시 이에 하며 비용을 반드시 이에 할 것이니 부유한 자가 얼마나 그 쫓겨나고 가난해지지 않겠는가. 천하로 하여금 모두 가난하게 하면 임금 되는 자 이롭겠는가 이롭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선왕이 그 요역을 공평하게 하고 오로지 취하지 않게 하여 편안케 한 것이다.

漢武帝時，算賈人之緡，匿不自占，占不悉，戍邊一歲，沒入緡錢。有能告者，以其半畀之。即治郡國緡錢，得民財物以億計，奴婢千萬數，田大縣數百頃，小縣百餘頃，宅亦如之。商賈中家以上，大氐破，民偷甘食好衣，不事畜藏之業。當是之時，天下何如？其不亡者，幸也。世俗不辨是非，不別淑慝，區區以擊彊爲事。噫，富者乃彊邪？彼椎埋而誅者，果何人也？

한나라 무제때 장사하는 사람들의 돈궤미를 계산하게 하였는데, 숨기고 스스로 적어내지 않거나 적어내더라도 다 하지 아니하면 변방의 수자리를 1년 살게 하

고 민전(緡錢)은 몰수하였다. 능히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그 절반을 주었다. 곧 군국(郡國)의 민전을 다스려 백성의 재물을 얻은 것이 억(億)으로써 계산하였고, 노비는 천(千)·만(萬)을 세었으며, 농토는 큰 현(縣)은 수백경(數百頃) 작은 현은 수십경이었고, 주택도 또한 같았다. 상고(商賈)의 중가(中家) 이상은 대부분⁷⁰⁵⁾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달게 먹고 좋게 입는 것만을 탐하였으며 축장(畜藏)의 업은 일삼지 않게 되었다.⁷⁰⁶⁾ 이때를 당하여 천하가 어떠하였겠는가? 망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세속은 시비(是非)를 변별하지 않고 숙특(淑慝:善惡)을 구별하지 않은 채 구구하게 ‘격강(擊疆)’으로써 일삼는다. 아, 부유한 자가 곧 강(疆)인가? 저 때려 죽이고 묻고 주살하는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705) 대부분: 『李觀集』에 ‘大氏’로 되어 있으나 『史記』에는 ‘大率’로 되어 있다.

706) 한나라.....되었다: 『史記』「平準書」의 부분부분을 편집한 것인데 생략된 글자도 더러 있다.

제10장 『이구집』 권9 軍衛1-軍衛4

李觀集卷第九

軍衛第一

兵者，國之大事，人知之矣。然先王足兵而未嘗有兵，後世有兵而未嘗足兵。何以言之？

군위 제1

‘군사[兵]가 국가의 큰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안다. 그러나 선왕은 군사가 충분하였어도 일찍이 군사를 두지 않았고, 후세는 군사를 두었어도 일찍이 군사가 충분하지 못하였다. 무엇으로써 말하는가?

「小司徒」“會萬民之卒伍而用之。五人爲伍，五伍爲兩，四兩爲卒，五卒爲旅，五旅爲師，五師爲軍。以起軍旅，以作田役，以比追胥，以令貢賦。乃均土地，以稽其人民而周知其數。上地家七人，可任也者家三人。中地家六人，可任也者二家五人。下地家五人，可任也者家二人。凡起徒役，毋過家一人。”“唯田與追胥竭作。”

「소사도(小司徒)」⁷⁰⁷⁾에 “만민의 졸오(卒伍)를 모아 쓴다. 5인이 ‘오(伍)’가 되고, 5오가 ‘양(兩:25인)’이 되고, 4량이 ‘졸(卒:100인)’이 되고, 5졸이 ‘여(旅:500인)’가 되고, 5려가 ‘사(師:2,500인)’가 되고, 5사가 ‘군(軍:1만 2,500인)’이 된다. 군려(軍旅:征伐)를 일으키고, 전역(田役:田獵役作)을 하며, 추(追:逐寇)와 서(胥:伺捕盜賊)를 함께 하고, 공부(貢賦)를 명령한다. 토지를 균분하여 그 인민을 헤아리고 그 수를 두루 안다. 상지가(上地家)⁷⁰⁸⁾는 7인이니 부릴 수 있는 사람은 1가

707) 「소사도(小司徒)」: 『周禮』「地官司徒」.

708) 상지가(上地家): 夫婦가 1家の 최소인원이니 2인부터 10인까지 9등급으로 나누었을 때, ‘上地家’는 중간 3등급 중에서 ‘上’인 7인을 말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中地家’는 6인, ‘下地家’는 5인이 된다.

(一家)에 3인⁷⁰⁹⁾이다. 중지가(中地家)는 6인이니 부릴 수 있는 사람은 2가(二家)를 합하여 5인이다. 하지가(下地家)는 5인이니 부릴 수 있는 사람은 1가(一家)에 2인이다. 무릇 도역(徒役)을 일으킬 때 1가(一家)에 1인을 초과하지 않는다.”“오직 전렵과 추서에는 모두 행한다.”라고 하였다.

「夏官」序“凡制軍，萬有二千五百人爲軍。王六軍，大國三軍，次國二軍，小國一軍，軍將皆命卿。二千有五百人爲師，師帥皆中大夫。五百人爲旅，旅帥皆下大夫。百人爲卒，卒長皆上士。二十五人爲兩，兩司馬皆中士。五人爲伍，伍皆有長。”

「하관(夏官)」의 서두에 “무릇 군을 편제할 때 1만 2,500인이 ‘군(軍)’이 된다. 왕은 6군이요, 대국은 3군이요, 차국(次國)은 2군이요, 소국은 1군이니 군장(軍長)은 모두 경(卿)을 임명한다. 2,500인이 ‘사(師)’가 되니 사수(師帥)는 모두 중대부(中大夫)이다. 500인이 ‘여(旅)’가 되니 여수(旅帥)는 모두 하대부이다. 100인이 ‘졸(卒)’이 되니 졸장(卒長)은 모두 상사(上士)이다. 25인이 ‘양(兩)’이 되니 양사마(兩司馬)는 모두 중사(中士)이다. 5인이 ‘오(伍)’가 되니 오에 모두 장(長)이 있다.”라고 하였다.

凡民在鄉則五家爲比，家出一人，故在軍五人爲伍，比長因爲伍長。五比爲閭，故五伍爲兩，閭胥因爲兩司馬。四閭爲族，故四兩爲卒，族師因爲卒長。五族爲黨，故五卒爲旅，黨正因爲旅帥。五黨爲州，故五旅爲師，州長因爲師帥。五州爲鄉，故五師爲軍，鄉大夫因爲軍將。士不特選，皆吾民也。將不改置，皆吾吏也。有事則驅之於行陣，事已則歸之於田里。無招收之煩而數不闕，無稟給之費而食自飽。故曰：“先王足兵而未嘗有兵”也。壘壁以聚之，倉庫以生之，群眠類坐而不使，補死填亡之不暇。故曰：“後世有兵而未嘗足兵”也。

무릇 백성이 향(鄉)에 있으면 5가(五家)가 ‘비(比)’가 되니, 1가에 1인이 나오므로 군을 편제함에 있어 5인이 ‘오(伍)’가 되고 ‘비장(比長)’은 인하여 ‘오장(伍

709) 3인: 7인 중에 家長 1인을 빼면 6인이 남고, 6인을 強弱으로 3인씩 나누면 強하여 부릴 수 있는 사람이 3인이 된다.

長)’이 된다. 5비가 ‘여(閭)’가 되므로 5오는 ‘양(兩)’이 되니 여서(閭胥)는 인하여 ‘양사마(兩司馬)’가 된다. 4려가 ‘족(族)’이 되므로 4량은 ‘졸(卒)’이 되니 족사(族師)는 인하여 ‘졸장(卒長)’이 된다. 5족이 ‘당(黨)’이 되므로 5졸은 ‘여(旅)’가 되니 당정(黨正)이 인하여 ‘족수(族帥)’가 된다. 5당이 ‘주(州)’가 되므로 5려는 ‘사(師)’가 되니 주장(州長)이 인하여 ‘사수(師帥)’가 된다. 5주가 ‘향(鄉)’이 되므로 5사는 ‘군(軍)’이 되니 향대부(鄉大夫)가 인하여 ‘군장(軍長)’이 된다. ‘사(士)’를 특별히 선발하지 않으니 모두 우리 백성이다. ‘장(將)’을 새로 두지 않으니 모두 우리 관리이다.⁷¹⁰⁾ 일이 있으면 행진(行陣)에 몰고가고, 일이 마치면 전리(田里)에 돌려보낸다. 부르고 거두는 번거로움이 없으면서 숫자는 빠지지 않고, 급료의 비용도 없으면서 먹는 것이 스스로 배부르다. 그러므로 “선왕은 군사가 충분하였어도 일찍이 군사를 두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이다. 누벽(壘壁·堡壘)으로써 모이게 하고 창고(倉庫)로써 먹여 살려서, 여럿이 잠을 자고 무리지어 앉아 있으나 부리지 못하고, 죽은 자를 보충하고 도망자를 메꿔넣느라 겨를이 없다. 그러므로 “후세는 군사를 두어도 일찍이 군사가 충분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한 것이다.

管仲相齊桓公，作內政而寓軍令焉，故卒伍定乎里而軍政成乎郊。連其什伍，居處同樂，死生同憂，禍福共之。故夜戰則其聲相聞，晝戰則其目相見，緩急足以相死。其教已成，外攘夷狄，內尊天子，以安諸夏。然則鄉軍之法，固嘗試矣。善哉!

관중이 환공을 도와 내정(內政)을 지으면서 군령(軍令)을 붙여넣었으므로 졸오(卒伍)가 이(里)에서 정하여졌고, 군정(軍政)이 교(郊)에서 이루어졌다. 그 십오(什伍)를 연결하여 거처함에 즐거움을 함께 하고, 죽고 태어남에 근심을 함께 하며, 화복(禍福)을 함께 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밤에 전투가 벌어지면 그 소리를 서로 듣고, 낮에 전투가 벌어지면 그 눈으로 서로 보아 완급에 충분히 서로 위하여 죽을 수 있었다. 그 가르침이 이미 완성되자 밖으로 이적(夷狄)을 물리치고

710) ‘사(士)’를.....관리이다. 周代の 행정편제인 ‘比·閭·族·黨·州·鄉’이 그대로 군사편제인 ‘伍·兩·卒·旅·師·軍’이 되므로 행정관리인 ‘比長·閭胥·族師·黨正·州長·鄉大夫’가 군관인 ‘伍長·兩司馬·卒長·族師·師帥·軍長’이 됨을 말한 것이다. 곧 李覲는 주대의 제도를 활용하면 별도의 상비군과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북송 중기의 고질병인 무능한 군대와 막대한 재정지출에 대한 해결책을 시론적으로 제안한 것이다.

안으로 천자를 높여 제하(諸夏)를 편안케 하였다.⁷¹¹⁾ 그렇다면 향군(鄉軍)의 법을 진실로 일찍이 시도했던 것이다. 좋다.

軍衛第二

「大司馬」“中春，教振旅”，“遂以蒐田”，“火弊，獻禽以祭社”，“中夏，教芟畝”，“遂以苗田”，“車弊，獻禽以享祚”，“中秋，教治兵”，“遂以獮田”，“羅弊，致禽以祀祊”，“中冬，教大閱”，“遂以狩田”，“徒弊，致禽饁獸於郊，入獻禽以享烝”.

군위 제2

「대사마(大司馬)」⁷¹²⁾에 “중춘(中春)에 진려(振旅)⁷¹³⁾를 가르친다.....드디어 수전(蒐田)⁷¹⁴⁾을 한다.....불이 꺼지면⁷¹⁵⁾ 잡은 짐승을 바쳐 제사(祭社)⁷¹⁶⁾한다.....중하(中夏)에 발사(芟畝)⁷¹⁷⁾를 가르친다.....드디어 묘전(苗田)⁷¹⁸⁾을 한다.....수레가 정지하면⁷¹⁹⁾ 잡은 짐승을 바쳐 향약(享祚)⁷²⁰⁾한다.....중추(中秋)에 치병(治兵)⁷²¹⁾을 가르친다.....드디어 선전(獮田)⁷²²⁾을 한다.....그물이 그치면⁷²³⁾ 잡은

711) 관중이.....하였다: 『漢書』「刑法志」.

712) 「대사마(大司馬)」: 『周禮』「夏官司馬」.

713) 진려(振旅): 사전적 의미는 ‘적국에 가서 위세를 떨치고 군대를 거두어 개선함’ 또는 ‘사람들을 모아 정돈함’인데 鄭玄의 注에 “凡師出曰 治兵, 入曰 振旅, 皆習戰也. 四時各教民以其一焉. 春習振旅, 兵入收衆專於農.”이라고 하였다.

714) 수전(蒐田): 봄사냥(春田)을 말한다. 賈公彥의 疏에 “蒐, 搜也. 春時鳥獸孚乳, 搜擇取不孕任者, 故以蒐爲名.”이라고 하였다.

715) 불이 꺼지면: 사냥이 끝남을 말한다. 鄭玄의 注에 “火弊, 火止也. 春田主用火, 因焚萊除陳草, 皆殺而火止.”라고 하였다.

716) 제사(祭社): 鄭玄의 注에 “春田主祭社者, 土方施生也.”라고 하였다.

717) 발사(芟畝): 사전적 의미는 ‘한데서 잡, 노숙함’인데 鄭玄의 注에 “芟畝, 草止之也. 君有草止之法.”이라고 하였다.

718) 묘전(苗田): 여름사냥(夏田)을 말한다. 鄭玄의 注에 “擇取不孕任者, 若治苗去不秀實者云.”이라고 하였다.

719) 수레가 정지하면: 사냥이 끝남을 말한다. 鄭玄의 注에 “車弊, 驅獸之車止也. 夏田主用車, 示所取物希, 皆殺而車止.”라고 하였다.

720) 향약(享祚): 鄭玄의 注에 “祚, 宗廟之夏祭也. 冬夏田主于祭宗廟者, 陰陽始起, 象神之在內.”라고 하였다.

721) 치병(治兵): 賈公彥의 疏에 “凡兵, 出曰治兵, 入曰振旅. 春以入兵爲名, 尙農事. 秋以出兵爲名,

짐승을 바쳐 사평(祀祊)⁷²⁴한다.....중동(中冬)에 대열(大閱)⁷²⁵을 가르친다..... 드디어 수전(狩田)⁷²⁶을 한다.....우리가 멈추면⁷²⁷ 잡은 짐승을 바쳐 교(郊)에서 4방의 신에게 제사를 하고, 들어와 잡은 짐승을 바쳐 향증(享烝)⁷²⁸한다.”라고 하였다.

夫守國之備，不可以不素習也。不素習，則驅市人而戰之，未足爲喻也。是故春教兵入乎列陳，如戰之陳，辨鼓鐸鐻鐃之用，以教坐作進退疾徐疏數之節。夏教草止，如振旅之陳，辨號名之用，以辨軍之夜事。秋教師出，如振旅之陳，辨旗物之用。至冬大閱，簡軍實焉。然而不祥之器不得已而用之。若無故而習，是習殺人也，非示天下不復用兵之意也。故因春蒐夏苗秋獮冬狩而教焉。

무릇 나라를 지키는 준비는 평소에 익혀두지 않으면 안된다. 평소에 익혀두지 않으면 시장사람들을 몰고가서 싸우게 하는 것이니 충분히 깨우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하므로 봄에 열진(列陳)에 들어가는 것을 가르쳐 전투에서 진치는 것과 같게 하고, 고(鼓)와 탁(鐸)과 탁(鐻)과 요(鐃)의 용도를 변별하여 앉고 일어서고 나아가고 물러나고 빨리 하고 천천히 하고 드문드문 하고 자주하는 절차를 가르친다. 여름에 초지(草止)를 가르쳐 진려(振旅)의 진치는 것과 같게 하고, 호명(號名)⁷²⁹의 용도를 변별하며, 군사의 밤에 지키는 일을 변별하게 한다. 가을에 군

秋嚴尙威故也.”라고 하였다.

722) 선전(獮田): 가을사냥(秋田)을 말한다. 鄭玄의 注에 “獮，殺也.”라고 하였다.

723) 그물이 그치면: 사냥이 끝남을 말한다. 鄭玄의 注에 “羅弊，罔止也。秋田主用罔，中殺者多也。皆殺而罔止.”라고 하였다.

724) 사평(祀祊): 鄭玄의 注에 “祊當爲方，聲之誤也。秋田主祭四方，報成萬物.”이라고 하였고, 賈公彥의 疏에 “祊乃是廟門之外內，惟因祭宗廟及明日繹祭，乃爲祊祭。今既因秋田而祭，當是祭四方之神，故云誤也.”라고 하였다.

725) 대열(大閱): 왕이 친히 검열하는 것인데, 鄭玄의 注에 “春辨鼓鐸，夏辨號名，秋辨旗物，至冬大閱，簡軍實.”이라고 하였다.

726) 수전(狩田): 겨울사냥(冬田)을 말한다. 鄭玄의 注에 “冬田爲狩，言守取之，無所擇也.”라고 하였고, 賈公彥의 疏에 “冬田爲狩，言守取之，無所擇者，對春夏言蒐言苗有所擇。又秋名獮，中殺者多，對此圍守之，此又多於獮，故得守名也.”라고 하였다.

727) 우리가 멈추면: 사냥이 끝남을 말한다. 『周禮』에 ‘徒乃弊’라고 되어 있는데 『李觀集』에는 ‘徒弊’로 되어 있다. 鄭玄의 注에 “徒乃弊，徒止也。冬田主用衆，物多，衆得取也.”라고 하였다.

728) 향증(享烝): 사냥을 마치고 종묘에 들어와 겨울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한다. ‘烝’은 겨울제사이 다.

사가 나가는 것을 가르쳐 진려의 진치는 것과 같게 하고, 그 기물(旗物)의 용도를 변별하게 한다. 겨울에 이르러 대열(大閱)을 하여 군사를 검열한다. 그러나 상서롭지 않은 기물이므로 부득이하게 쓴다. 만약 이유도 없이 익히게 하는 것은 이는 살인을 익히게 하는 것이니, 천하에 다시는 군사를 쓰지 않겠다는 뜻을 보이는 것⁷³⁰⁾이 아니다. 그러므로 ‘춘수(春蒐)’와 ‘하묘(夏苗)’와 ‘추선(秋獮)’과 ‘동수(冬狩)’로 인하여 가르치는 것이다.

鳥獸魚鱉皆函血氣，若無故而殺，是暴天物也，作禽荒也。故因祭社享祿祀祊享蒸而行焉，明非好兵也，爲田獵也，非好田獵也，爲祭祀也。其名甚美，其實甚利。外以彰事神之禮，非美乎？內以作不虞之備，非利乎？聖人之動，其順如此，顧不足爲後世法乎？

조수와 어별은 모두 혈기를 머금은 것이니 만약 이유도 없이 죽인다면 이는 하늘의 물건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요, 금황(禽荒)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사(祭社)’와 ‘향약(享祿)’과 ‘사팽(祀祊)’과 ‘향증(享蒸)’으로 인하여 행하는 것이니, 군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전렵을 위한 것이며, 전렵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위한 것임을 밝힌 것이다. 그 명분이 매우 아름답고 그 실질이 매우 이롭다. 밖으로 신을 섬기는 예를 드러내니 아름답지 아니한가? 안으로 뜻하지 않은 일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니 이롭지 아니한가? 성인의 움직임은 그 순리가 이와 같으니 돌아보건대 후세의 법이 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가?

天下無事，則卒伍放於冗從，器械束於故府，學軍旅者指爲凶人。一方有警，則旦收而暮教之，暮教而旦發之，人情焉得不驚？戰陣焉得不敗？至有以講武爲戲樂，用相夸視，先王之禮，沒於淫樂中者，亦不足算也。

천하에 일이 없으면 졸오(卒伍)는 용종(冗從:散職)에 방치되고 기계(器械)는 고

729) 호명(號名): 鄭玄의 注에 “號名者，徽識所以相別也。鄉遂之屬謂之名，家之屬謂之號，百官之屬謂之事。在國以表朝位，在軍又象其制而爲之，被之以備死事。”라고 하였다.

730) 천하에.....보이는 것: 『禮記』「樂記」에 “倒載干戈，包之以虎皮.....天下知武王之不復用兵也.”라고 하였다.

부(故府)에 묶여 있으며, 군려(軍旅)를 배우는 사람을 가리켜 흉인(凶人)이라 한다. 한 방면에 번고가 있으면 아침에 거두어 저녁에 가르치고, 저녁에 가르쳤다가 아침에 출발시키니 인정(人情)이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전진(戰陣)이 어떻게 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강무(講武)로써 희락(戲樂)을 삼아 서로 과시함이 있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선왕의 예(禮)가 음악(淫樂) 가운데 빠진 것⁷³¹⁾은 또한 셀 수도 없다.

軍衛第三

「宮伯」「掌王宮之士庶子凡在版者. 掌其政令, 行其秩敘, 作其徒役之事. 授八次八舍之職事. 若邦有大事作宮衆, 則令之.” 王宮之士, 謂王宮中諸吏之適子也. 庶子, 其支庶也. 秩, 謂依班秩受祿, 敘者, 其才藝高下爲次第. 以作其徒役者, 士庶子屬太子, 隨其所用, 使役之也. 八次八舍, 衛王宮者, 必居四角四中, 於徼候便也. 大事, 謂寇戎之事, 起宮中之衆, 使士庶子行, 則「宮伯」戒令之也.

군위 제3

「궁백(宮伯)」⁷³²⁾에 “왕궁의 사(士)와 서자(庶子)로서 무릇 판(版:名籍)에 있는 자를 관장한다. 그 정령(政令)을 관장하여 그 질서를 행하며 그 도역(徒役)의 일을 짓는다. 8차(八次)와 8사(八舍)⁷³³⁾의 직사(職事)를 준다. 만약 나라에 큰 일이 있어 궁속에서 무리를 지으면 명령한다.”라고 하였다. ‘왕궁지사(王宮之士)’는 왕궁 가운데 모든 관리의 말아들을 말한다. ‘서자(庶子)’는 그 지서(支庶:衆子)이다.⁷³⁴⁾ ‘질(秩)’은 반질(班秩)에 의하여 녹(祿)을 받는 것이요, ‘서(敘)’는 재예(才藝)의 높고 낮음으로 차례(次第)를 삼는 것을 말한다. ‘이작기도역(以作其徒役)’⁷³⁵⁾이라는 것은 사와 서자를 태자에게 소속시켜 그 쓸 곳에 따라서 사역(使役)

731) 강무(講武)로써.....빠진 것: 『漢書』「刑法志」에 있는 말을 인용한 것이다.

732) 「궁백(宮伯)」: 『周禮』「天官冢宰」.

733) 8차(八次)와 8사(八舍): 鄭玄의 注에 “次, 其宿衛所在. 舍, 其休沐之處”라고 하였다.

734) ‘왕궁지사(王宮之士)’는.....지서(支庶:衆子)이다: 鄭玄의 注이다.

735) ‘이작기도역(以作其徒役)’: ‘以’字는 『周禮』原文과 鄭玄의 注에 없는데, 賈公彥의 疏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하는 것이다.⁷³⁶⁾ ‘8차8사(八次八舍)’는 왕궁을 숙위(宿衛)하는 자가 반드시 4각(四角:四維)과 4중(四中:四方)에 거하여 요후(徼候:巡察守候)를 편하게 한 것이다.⁷³⁷⁾ ‘대사(大事)’는 구용(寇戎)의 일을 말한 것이니, 궁중의 무리를 일으켜 사와 서자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면 「궁백」이 경계하고 명령한다는 것이다.⁷³⁸⁾

「宮正」“掌王宮之戒令糾禁。”“去其淫怠與其奇衰之民，會其什伍而教之道藝。”民，謂宮中吏之家人也。「宮正」掌宮中卿大夫士，亦兼掌子弟，若有爲淫放怠慢譎觚非常之行，則去之。又會合之，五人爲伍，二伍爲什，欲使宿衛時，語言相體，服容相識，及其學問，又相親切磋琢磨。道藝，謂三德三行六藝也。若是，則宮中諸吏之子弟，必當備宿衛，從征役，且聽太子之令也。豈唯宮中諸吏之子弟而已哉？凡公卿大夫元士之子，亦然。

「궁정(宮正)」⁷³⁹⁾에 “왕궁의 계령(戒令)과 규금(糾禁)을 관장한다.....그 음란하고 게으르며 및 그 기사(奇衰:譎觚非常)한 백성을 제거하고, 그 십오(什伍)를 모아 도예(道藝)를 가르친다.”라고 하였다. ‘민(民)’은 궁중 관리의 집안 사람을 말한 것이다. 「궁정」이 궁중의 경·대부·사를 관장하고 또한 겸하여 자제도 관장하는데, 만약 음방(淫放)·태만(怠慢)·흠고(譎觚)·비상(非常)한 행동을 하는 자가 있으면 제거한다. 또한 회합하되 5인이 ‘오(伍)’가 되고 2오(二伍)가 ‘십(什)’이 되니, 숙위할 때 언어를 서로 체득하고 복장과 용모를 서로 알게 하며, 그 학문함에 미쳐 또한 서로 친하여 절차탁마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도예(道藝)’는 3덕(三德)과 3행(三行)과⁷⁴⁰⁾ 6예(六藝)를 말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궁중 모든 관리의 자제가 반드시 마땅히 숙위를 준비하고 정역(政役)에 따르며 또한 태자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 어찌 궁중 모든 관리의 자제일 뿐이었겠는가? 무릇 공·경·대부·원사(元士)의 아들도 또한 그러했던 것이다.

736) ‘질(秩)’은.....것이다: 賈公彥의 疏이다.

737) ‘8차8사(八次八舍)’는.....것이다: 鄭玄의 注이다.

738) ‘대사(大事)’는.....것이다: 賈公彥의 疏이다.

739) 「궁정(宮正)」: 『周禮』「天官冢宰」.

740) 3덕(三德)과 3행(三行)과: 『周禮』「師氏」에 “以三德教國子，一曰至德，以爲道本，二曰敏德，以爲行本，三曰孝德，以知逆惡，教三行，一曰孝行，以親父母，二曰友行，以尊賢良，三曰順行，以事師長。”이라고 한 것을 말한다.

故「諸子」“掌國子之倅，掌其戒令與其教治，辨其等，正其位。國有大事，則帥國子而致於太子，唯所用之。若有兵甲之事，則授之車甲，合其卒伍，置其有司，以軍法治之，「司馬」弗正”也。

그러므로 「제자(諸子)」⁷⁴¹⁾에 “국자(國子)⁷⁴²⁾의 쉬(倅:副代父)를 관장한다. 그 계령(戒令)과 그 교치(教治)를 관장하며 그 등급을 변별하고 그 자리를 바르게 한다. 나라에 대사(大事:祭祀)가 있으면 국자를 거느리고 태자에게 이르러 쓰임이 되게 한다. 만약 병갑(兵甲)의 일이 있으면 수레와 갑옷을 주고 그 졸오를 합치며 그 유사(有司)를 두어 군법으로써 다스리니, 「사마(司馬)」가 징집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이다.

大哉，王者之師其備矣乎！非直興於閭里，抑又取諸世族。彼以父祖貴富，宜有報上之心，而況學習德行道藝，孰不知忠孝之美？任之以金革，則與夫干賞蹈利庸徒鬻賣者，蓋有間矣！且太子將爲君，國子將爲臣，君臣之分未定，而恩義固已接矣，則今日之游倅，未必不爲嗣王之將帥也。轡長馭遠有如是哉！

위대하다, 왕자(王者)의 군사가 그 준비됨이여! 여리(閭里)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아니 또한 모든 세족(世族)에서 취하였다. 저들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부귀를 누렸으니 마땅히 위에 보답하려는 마음이 있는 데다가 하물며 덕행과 도예(道藝)를 학습하였으니 누가 충효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겠는가? 금혁(金革)으로써 말기면, 저 상을 요구하고 이곳을 탐하며, 품을 파는 자⁷⁴³⁾와 더불어 대개 간극이 있을 것이다. 또한 태자는 장차 임금이 되고 국자는 장차 신하가 될 터인데 군신의 직분이 아직 정하여지지 않았으나 은혜와 의리가 진실로 이미 접하였으니, 곧 오늘날 어울리던 아들들이 사왕(嗣王)의 장수가 되지 않는다고 기필할 수 없는 것이다. 고삐가 길어 먼곳을 제어하는 것⁷⁴⁴⁾이 이와 같음이 있었

741) 「제자(諸子)」: 『周禮』「夏官司馬下」.

742) 국자(國子): 鄭玄의 注에 “國子, 諸侯卿大夫士之子也.”라고 하였다.

743) 저 상을.....자: 『漢書』「刑法志」에서 인용하였다. 孫武, 孫臏, 吳起, 商鞅등의 용병술을 말한 것이다.

744) 고삐가.....것: 劉勰의 『文心雕龍』「通變」에 ‘長轡遠馭, 從容按節’이라고 하였다.

던 것이다.

「文王世子」曰：“公若有出疆之政，庶子以公族之無事者，守於公宮，正室守太廟，諸父守貴宮貴室，諸子諸孫守下宮下室。”此諸侯禮也，豈天子之事而有不用力者乎？

『예기』「문왕세자」에 “공(公)이 만약 출강(出疆)의 정사(政事:朝覲會同)가 있으면 서자(庶子)는 공족(公族)의 직수(職守)가 없는 자로써 공궁(公宮:宗廟宮室)에서 지키고, 정실(正室)⁷⁴⁵은 태묘를 지키고 제부(諸父)는 귀궁(貴宮)과 귀실(貴室)을 지키고 제자(諸子)와 제손(諸孫)은 하궁(下宮)과 하실(下室)을 지킨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제후의 예(禮)이니, 어찌 천자의 일에 힘을 쓰지 않는 자가 있었겠는가?

軍衛第四

「彙人」“掌受財於「職金」，以齎其工。弓六物爲三等，弩四物亦如之。矢八物皆三等，箛亦如之。春獻素，秋獻成。書其等以饗工。乘其事，試其弓弩，以下上其食而誅賞”
 饗，謂酒肴勞之也。上工作上等，其饗厚，下工作下等，其饗薄。乘者，計其事之成功也，善則上其食。尤善，又賞之。否者反此。先王之於造兵，其事必計之，其物必試之，非直饗有厚薄，食有上下，又臨之誅賞，則工有不勉者乎？作有不慎者乎？

군위 제4

「고인(彙人)」⁷⁴⁶에 “「직금(職金)」⁷⁴⁷에게 재물을 받아 그 공(工)의 물자(物資) 공급을 관장한다. 활 6물(六物)⁷⁴⁸은 3등(三等)⁷⁴⁹으로 나누고, 쇠뇌 4물(四

745) 정실(正室): 『禮記正義』孔穎達의 疏에 “正室，公卿大夫之適子也.”라고 하였다.

746) 「고인(彙人)」: 『周禮』「夏官司馬下」.

747) 「직금(職金)」: 『周禮』「秋官司寇」. 업무중에 죄인이 出贖한 물건을 관리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彙人」이 받아서 쓰는 것이다.

748) 6물(六物): 『周禮』「司弓矢」의 王弓, 弧弓, 夾弓, 庾弓, 唐弓, 大弓을 말한 것이다.

749) 3등(三等): 활의 길이가 각각 6尺6寸, 6尺3寸, 6尺인 上·中·下의 등급을 말한다. 사용자의 신장에 따른 분류이다.

物)⁷⁵⁰도 또한 같다. 화살 8물(八物)⁷⁵¹도 모두 3등이요, 복(箛:箭筒) 또한 같다. 봄에 소(素)를 올리고 가을에 성(成)을 올린다.⁷⁵² 그 작업결과의 등급을 적어 공(工)을 향사(饗食)한다. 그 일의 성공여부를 계산하고 그 활과 쇠뇌를 시험하여 그 향사를 내리고 올리며 책임을 묻거나 상을 준다.”라고 하였다. ‘향(饗)’은 술과 안주로 위로함을 말한 것이다. 상공(上工)은 상등(上等)이 되니 그 향사가 후하고 하공(下工)은 하등(下等)이 되니 그 향사가 박하다. ‘승(乘)’이라는 것은 그 일의 성공을 계산하는 것이니, 잘했으면 그 향사를 올린다. 더욱 잘했으면 또 상을 준다. 못했으면 이와 반대이다.⁷⁵³ 선왕이 병기(兵器)를 만들 때 그 일을 반드시 계획하고 그 물건을 반드시 시험하여 향사에 후박과 상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책망과 상으로써 임하였으니, 곧 공(工)이 힘쓰지 아니한 자 있었겠는가? 제작에 신중하지 아니한 자 있었겠는가?

故「弓人」“爲弓，取六材，必以其時”，“凡相幹，欲赤黑而陽聲”，“角欲青白而豐末”，“膠欲朱色而昔”，“筋欲小簡而長，大結而澤”，“漆欲測，絲欲沈”，“冬析幹而春液角，夏治筋，秋合三材。寒奠體，冰析澇”，“春被弦則一年之事”。

그러므로 「궁인(弓人)」⁷⁵⁴에 “활을 만드는데 6재(六材)⁷⁵⁵를 취함에 반드시 그 때에 한다.....무릇 ‘공간(弓幹)’을 볼 때 붉고 검으면서 맑은 소리가 나와 한다.....‘각(角)’은 푸르고 희면서 끝이 커야 한다.....‘교(膠)’는 주색(朱色)이면서 무늬는 교착되어야 한다.....‘근(筋)’은 작은 간찰 조각 같으면서도 길다랗고 크게 묶여 있으면서도 윤기가 있어야 한다.....‘칠(漆)’은 맑아야 하고 ‘사(絲)’는 물에 잠겨있을 때의 색이어야 한다.....겨울에 ‘간(幹)’을 쪼개고 봄에 ‘각(角)’에 다 액을 바르며, 여름에 ‘근(筋)’을 다스리고 가을에 3재(三材)를 합친다. 추울 때 본체를 정돈하고 얼음이 얼 때 칠을 한다.....봄에 현(弦)을 입히면 1년의 일

750) 4물(四物): 『周禮』「司弓矢」의 夾弩, 庾弩, 唐弩, 大弩를 말한 것이다.

751) 8물(八物): 『周禮』「司弓矢」의 枉矢, 絜矢, 殺矢, 鍛矢, 矰矢, 蒺矢, 恒矢, 庫矢를 말한 것이다.

752) 봄에.....올린다: 『儀禮』「士喪禮」鄭玄의 主에 “形法定爲素，飾治畢爲成.”이라고 하였다. 봄에 시제품을 올려 가부를 결정한 뒤 가을에 완제품을 바친다는 의미이다.

753) ‘향(饗)’은.....반대이다: 鄭玄의 注이다.

754) 「궁인(弓人)」: 『周禮』「冬官考工記下」.

755) 6재(六材): 六材는 幹, 角, 筋, 膠, 絲, 漆을 말한다.

이다.”라고 하였다.

「矢人」“爲矢，前弱則俛，後弱則翔，中弱則紆，中強則揚，羽豐則遲，羽殺則趨。是故夾而搖之，以視其豐殺之節也，橈之，以視其鴻殺之稱也。凡相筈，欲生而搏，同搏欲重，同重節欲疏，同疏欲栗。”

「시인(矢人)」⁷⁵⁶⁾에 “화살을 만들 때, 앞이 약하면 처지고 뒤가 약하면 빙빙 돌며 중간이 약하면 굽어지고 깃이 크면 더디며 깃이 작으면 요동친다. 이러하므로 손가락에 끼고 흔들어 보아 그 풍쇄(豐殺:大小)의 정도를 보며, 휘어 보아 그 홍쇄(鴻殺:強弱)의 강도를 본다. 무릇 화살대[筈]를 선택할 때, 하자가 없고 둥글어야 하며, 둥글기가 같으면 무거워야 하고, 무게가 같으면 마디가 띄여야 하며, 트임이 같으면 견실(堅實)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廬人」“爲戈秘車戟酋矛夷矛”。 “句兵欲無彈⁷⁵⁷⁾，刺兵欲無蝸。是故句兵棹，刺兵搏。般兵同強，舉圍欲細”。 “凡試廬事，置而搖之，以視其蝸也，灸諸牆，以視其橈之均也，橫而搖之，以視其勁也”。

「여인(廬人)」⁷⁵⁸⁾에 “창 자루[戈秘]와 거근(車戟)과 추모(酋矛)와 이모(夷矛)⁷⁵⁹⁾를 만든다.....구병(句兵:戟屬)은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자병(刺兵:矛屬)은 힘이 없어야 한다. 이러하므로 구병은 모서리를 없애고 자병은 둥그렇게 한다. 격병(般兵:無刃)은 위아래의 강도가 같아야 하며 손으로 잡는 부분은 가늘어야 한다.....무릇 여(廬)의 일을 시험할 때, 세워 두고 흔들어 그 힘을 보며, 담장에 받쳐 두고 그 본체의 강약이 균등한지 여부를 보며, 무릎 위에 빗겨 두고서 한 손으로 잡고 흔들어 그 견경(堅勁) 여부를 본다.”라고 하였다.

756) 「시인(矢人)」: 『周禮』「冬官考工記下」.

757) 原註: ‘彈’은 阮元이 唐石經諸本에 근거하여 인식하기를 마땅히 ‘儻’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758) 「여인(廬人)」: 『周禮』「冬官考工記下」.

759) 창 자루[戈秘]와.....이모(夷矛): 『周禮』「廬人」에 “戈秘，六尺有六寸，車戟常，酋矛常有四尺，夷矛三尋。”이라고 하였다. ‘尋’은 8尺이고 ‘常’은 16尺이다.

「函人」“爲甲，凡察革之道，視其鑽空，欲其窻也，視其裏，欲其易也，視其朕，欲其直也，囊之，欲其約也，舉而視之，欲其豐也，衣之，欲其無齟也。”

「함인(函人)」⁷⁶⁰에 “갑옷을 만드는데, 무릇 가죽을 살피는 도는 뚫린 구멍을 보았을 때 그 구멍이 작아야 하며, 그 이면을 보았을 때 해져서 더러움이 없어야 하며, 그 가죽 자른 것을 보았을 때 곧아야 하며, 갑옷전대에 넣을 때 묶여야 하며, 들고 보았을 때 커야 하며, 입었을 때 이음새가 안맞는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其作巧，其試明，擐之者無不堅，執之者無不銳．以此戰，何不勝？以此攻，何不取？以此守，何不固？

그 제작이 공교하고 그 시험이 밝으니, 갑옷을 꿰어 입는 자 견고하지 않음이 없고 활과 창을 잡는 자 예리하지 않음이 없다. 이로써 싸우니 어찌 이기지 못할 것이며, 이로써 공격하니 어찌 취하지 못할 것이며, 이로써 지키니 어찌 견고하지 않겠는가?

楚之鐵劍利而秦王色憂，謂鐵劍利則士勇焉耳．爲國家者，苟不留聰明，則有司以常事處之，郡國之貢姑備名物，府藏之約唯謹簿書，而欲用之立尸之地，此可爲太息者也．

초나라의 철검(鐵劍)이 예리하여 진(秦)나라 소왕(昭王)의 낯빛에 근심이 서렸다⁷⁶¹고 하였으니, 철검이 예리하면 병사가 용감하다는 말인 것이다. 국가를 다스리는 자가 진실로 총명을 머물러 두지 않으면 유사(有司)는 늘상 있는 일로 대처할 것이요, 군국(郡國)의 공물은 우선 물목의 이름만 갖추고 부장(府藏)의 문서는 오직 장부만 삼갔다가 전장(戰場:立尸之地)⁷⁶²에서 쓰고자 하니, 이는 한숨이 나오는 일인 것이다.

760) 「함인(函人)」: 『周禮』「冬官考工記」.

761) 초나라의.....서렸으니: 『史記』「范雎蔡澤列傳」.

762) 전장(戰場:立尸之地): 『吳子』「治兵」. “凡兵戰之場，立尸之地，必死則生，幸生則死.”

제11장 『이구집』 권10 刑禁1-刑禁6

李觀集卷第十

刑禁第一

刑罰之行尚矣. 積聖累賢未有能去者也. 非好殺人, 欲民之不相殺也, 非使畏已, 欲民之自相畏也. 然而憲令所加, 寬猛或異, 苟失權時之制, 則致遠恐泥矣.

형금 제1

형벌의 시행이 오래되었으나 여러 성현을 지내었어도 능히 없애버렸던 사람은 있지 않았다. 살인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서로 죽이지 않게 하고자 한 것이요, 자기를 두려워 하게끔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스스로 서로 간에 두려워 하게끔 하고자 한 것이다. 헌령(憲令)이 더하여지는 곳에 너그러움과 사나움이 혹 다르고, 진실로 때에 맞추는 정도를 잃는다면 멀리 가다 진창에 빠질까 염려된다.⁷⁶³⁾

故「大司寇」之職, “掌建邦之三典, 以佐王刑邦國, 詰四方. 一曰刑新國用輕典.” 新國者, 新闢地立君之國. 用輕法者, 爲其民未習於教. “二曰刑平國用中典.” 平國, 承平守成之國. 用中典者, 常行之法. “三曰刑亂國用重典.” 亂國, 篡弑叛逆之國. 用重典者, 以其化惡伐滅之.

그러므로 「대사구(大司寇)」⁷⁶⁴⁾의 직(職)에 “건국한 나라의 3전(三典)을 관장하여 왕이 방국(邦國)의 법이 되고 4방을 삼강을 보좌한다. 첫째는 가른 새로운 나라의 법은 경전(輕典)을 쓰는 것이다.” ‘신국(新國)’이라는 것은 새로 땅을 열고

763) 멀리..... 염려된다: 『論語』「子張」 4장. “子夏曰, 雖小道, 必有可觀者焉, 致遠恐泥, 是以君子不爲也.”

764) 「대사구(大司寇)」: 『周禮』「秋官司寇」.

임금을 세운 나라이다. ‘가벼운 법을 쓴다’는 것은 그 백성들이 가르침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⁷⁶⁵⁾ “둘째는 가론 평국(平國)의 법은 중전(中典)을 쓰는 것이다.” ‘평국(平國)’은 승평(承平:太平)하고 수성(守成)한 나라이다. ‘중전(中典)을 쓴다’는 것은 항상 시행하던 법이다.⁷⁶⁶⁾ “셋째는 가론 어지러운 나라의 법은 중전(重典)을 쓰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난국(亂國)’은 찬탈하고 시해하며 반역한 나라이다. ‘중전(重典)을 쓴다’는 것은 그 악에 몰들었기에 정벌하고 멸한다는 것이다.⁷⁶⁷⁾

蓋四海之內，千八百國，國政或異，人心豈同？苟執一以御之，是膠柱而鼓瑟，欲盡五聲之變，不可得也。夫新闢地立君之國，居處未安，衣食未足，君臣之義未固，上下之情未接，從而急之，則魚滄鳥獮不復聚矣，其可不用輕法邪？篡殺叛逆之國，紀綱大壞，風俗大惡，強弱相勝，衆寡相暴，從而緩之，則羊狼狼貪，難以制矣，其可不伐滅之邪？承平守成之國，人各有業，事各有制，緩之將恐縱，急之將恐擾，其可不用常行之法邪？以大言之，則天下之理亦然。

대개 4해의 안에 1,800개의 나라⁷⁶⁸⁾가 국정(國政)이 혹 다른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찌 같겠는가? 진실로 하나만 잡아서 다스린다면 이는 안족(雁足)을 아교칠 해놓고 비파를 켜는 격이니, 5성(五聲)의 변화를 다하고자 하여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저 새로 땅을 열고 임금을 세운 나라는 거처가 편안치 못하고 의식이 충분하지 못하며, 군신(君臣)의 의리가 견고하지 못하고 상하의 정이 접하지 못하였는데, 이 상황에 급히 하면 물고기가 무리지어 흩어지고 새들이 놀라 날아가듯⁷⁶⁹⁾ 다시 모이지 않을 것이니 ‘경법(輕法)’을 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찬살(篡殺)⁷⁷⁰⁾·반역의 나라는 기강이 크게 무너지고 풍속이 대단히 악하며, 강(強)·약

765) ‘신국(新國)’이라는.....때문이다: 鄭玄의 注이다.

766) ‘평국(平國)’은.....법이다: 鄭玄의 注이다.

767) ‘난국(亂國)’은.....것이다: 鄭玄의 注이다.

768) 1,800개의 나라: 나라마다 사정이 다름을 강조하게 위해 작은 단위의 나라까지 열거하였다. 『

晉書』志4「地理上」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다.

769) 물고기.....날아가듯: 『禮記』「禮運」에 “魚鮪不滄.....鳥不獮”의 상황과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770) 찬살(篡殺): 찬시(篡弒)를 잘못 쓴 것 같다.

(弱)이 서로 이기려 하고 중(衆)·과(寡)가 서로 폭압하는데, 이 판국에 느슨히 하면 양처럼 패러긋고 이리처럼 탐하여⁷⁷¹⁾ 제압하기 어려울 것이니 정벌하고 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승평하고 수성한 나라는 사람이 각각 생업이 있고 일이 각각 법제가 있으니 느슨하게 하면 장차 방종할까 염려스럽고 급하게 하면 장차 소요가 일까 염려스러우니 ‘항상 시행하던 법’을 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큰 것으로써 말하면 천하의 이치가 또한 그러하다.

漢興，高祖初入關，約法三章曰：“殺人者死，傷人及盜抵罪。”蠲削煩苛，兆民大說。此非刑新國用輕典者邪？周道既衰，穆王旼荒，命甫侯度時作刑，以詰四方。五刑之屬三千，蓋多於「司刑」所職五百章，此非刑亂國用重典者邪？

“한나라가 흥기하여 고조가 처음 관(關)에 들어 갔을 때 약법(約法) 3장에 ‘살인한 자는 죽이고, 사람을 상해한 자와 도둑질한 자는 죄에 저촉된다.’라고 하였다. 번거롭고 가혹한 것을 덜고 삭제하였으니 조민(兆民)이 크게 기뻐하였다.”⁷⁷²⁾고 한다. 이는 ‘새로운 나라의 법은 경전(輕典)을 쓴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주나라의 도가 이미 쇠하고 목왕(穆王)이 모황(旼荒)하였으니 보후(甫侯)에게 명하여 시의(時宜)를 헤아려 형법을 지어 4방을 다스리게 하였다. 5형(五刑)의 무리가 3,000개였으니 대개 「사형(司刑)」⁷⁷³⁾의 직무에 있는 500장(五百章)보다 많은 것이었다.”고 한다.⁷⁷⁴⁾ 이는 ‘어지러운 나라의 법은 중전(重典)을 쓴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洪範」“三德，一曰正直，二曰剛克，三曰柔克。平康正直，彊弗友剛克，變友柔克。”皆聖人所以適時之變也。奈何以三尺之書，齊萬邦之政？俗雖殊而弗察，事雖變而弗知，治之不及古，豈不有由也哉！

『서경』「홍범」에 “3덕은 첫째 가른 정직(正直)이요, 둘째 가른 강극(剛克)이요,

771) 양처럼.....탐하여: 『史記』「項羽本紀」에 “因下令軍中曰:‘猛如虎, 很如羊, 貪如狼, 強不可使者, 皆斬之.’”라고 하였다.

772) 한나라가.....기뻐하였다: 『漢書』「刑法志」.

773) 「사형(司刑)」: 『周禮』「秋官司寇」.

774) 주나라의.....것이였다: 역시 『漢書』「刑法志」를 인용한 것인데 생략하고 고친부분이 있다.

셋째 가론 유극(柔克)이다. 평강(平康)은 정직으로 다스리고, 강경하여 순종하지 않는 자는 강(剛)으로 다스리고, 화유(和柔)하여 순한 자는 유(柔)로 다스린다.”라고 하였다. 모두 성인이 시의(時宜)의 변화에 맞춘 것이다. 어떻게 3척(三尺:法律)의 책으로써 만방의 정사를 다스릴 것인가? 풍속이 비록 다르더라도 살피지 아니하고 일이 비록 변화하였는데도 알지 못하니, 다스림이 옛날에 미치지 못함은 어찌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刑禁第二

「小司寇」“以三刺斷庶民獄訟之中。一曰訊群臣，二曰訊群吏，三曰訊萬民。聽民之所刺宥，以施上服下服之刑。”刺，殺也，宥，寬也。民言殺，殺之，言寬，寬之。上服劓墨，下服宮劓，是四刑亦三刺也。群臣，士以上，群吏，府史胥徒，萬民，民間有德行不仕者。

형금 제2

「소사구(小司寇)」⁷⁷⁵⁾에 “3자(三刺)⁷⁷⁶⁾로써 서민들 옥송(獄訟)의 죄를 정하고 판단한다. 첫째는 가론 ‘군신(群臣)에게 물음’이요, 둘째는 가론 ‘군리(群吏)에게 물음’이요, 셋째는 가론 ‘만민(萬民)에게 물음’이다. 백성들이 ‘자(刺)’와 ‘유(宥)’를 말하는 것을 듣고 상복(上服)과 하복(下服)의 형을 시행한다.”라고 하였다. ‘자(刺)’는 죽이는 것이요, ‘유(宥)’는 관용을 베푸는 것이다. 백성이 죽이라고 말하면 죽이고 관용을 베풀라고 말하면 관용을 베푸는 것이다. ‘상복(上服)’은 의형(劓刑)과 묵형(墨刑)이요, ‘하복(下服)’은 궁형(宮刑)과 월형(劓刑)이니,⁷⁷⁷⁾ 이 4형(四刑)도 또한 ‘3자(三刺)’한다. ‘군신(群臣)’은 사(士) 이상이요, ‘군리(群吏)’는 부(府)·사(史)·서(胥)·도(徒)요, ‘만민(萬民)’은 민간에서 덕행은 있으나 벼슬하지

775) 「소사구(小司寇)」: 『周禮』『秋官司寇』.

776) 3자(三刺): 여기서 ‘刺’는 ‘자문한다’는 의미로서, 뒤에 형집행할 때의 ‘殺’과 다르다. 곧 ‘3刺’는 오늘날 ‘3審’의 의미와 비슷하다 하겠다.

777) ‘상복(上服)’은.....월형(劓刑)이니: 墨刑과 劓刑은 얼굴에 시행하므로 上服이라 하고, 宮刑과 劓刑은 하체에 시행하므로 下服이라 한 것이다.

않는 자이다. 778)

「朝士」“掌建邦外朝之法。左九棘，孤卿大夫位焉，群士在其後。右九棘，公侯伯子男位焉，群吏在其後。面三槐，三公位焉，州長衆庶在其後。”此則所訊之人也。

「조사(朝士)」779)에 “건국한 나라와 외조(外朝)의 법을 관장한다. 왼쪽 9극(九棘)780)은 고(孤:小國之君)·경(卿)·대부(大夫)가 자리를 하고 군사(群士)는 그 뒤에 있다. 오른쪽 9극(九棘)은 공(公)·후(侯)·백(伯)·자(子)·남(男)이 자리를 하고 군리(群吏)는 그 뒤에 있다. 전면의 3괴(三槐)781)는 3공(三公)이 자리를 하고 주장(州長)과 중서(衆庶)는 그 뒤에 있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곧 물어볼 사람들이다.

噫! 凡有血氣之類, 莫不愛其生. 君大夫士之於牛羊犬豕猶無故不殺, 況於人者萬物之靈, 父母生之, 拊畜長育, 顧復之恩至而後免於其懷. 刑之大者, 伏鈇鑕, 其次, 亦斷支體, 刻肌膚, 終身不息, 何其痛哉! 刑期無刑, 蓋不獲已, 苟得其情, 亦哀矜而勿喜, 矧可不慎以及於非辜者乎?

아, 무릇 혈기가 있는 종류는 그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이 없다. 군(君)과 대부(大夫)와 사(士)는 소와 양과 개와 돼지에게도 오히려 아무 이유도 없이 죽이지 않는 법인데782) 하물며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요, 부모가 낳아주시고 어루만지고 길러주고 기르고 키워주시며 돌아보고 또 돌아보신 은혜가 지극한 뒤에 그 품을 벗어난다.783) 형벌 가운데 큰 것은 부질(鈇鑕:도끼)로 죽이고, 그 다음은 또한 지체(支體)를 절단하며 살가죽에 새겨 죽을 때까지 쉬지 못하니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가!784) 형벌을 쓰되 형벌이 없어지기를 기약하는 것785)은 대개 이를 수

778) ‘자(刺)’는.....자이다. 李觀 자신의 말은 하나도 없고, 모두 鄭玄의 注와 賈公彥의 疏를 편집한 것이다.

779) 「조사(朝士)」: 『周禮』「秋官司寇」.

780) 9극(九棘): 鄭玄의 注에 “樹棘以爲立者, 取其赤心而外刺, 象以赤心三刺也.”라고 하였다.

781) 3괴(三槐): 鄭玄의 注에 “槐之言懷也, 懷來人於此, 欲與之謀.”라고 하였다.

782) 군(君)과.....법인데: 『禮記』「玉藻」. “君無故不殺牛, 大夫無故不殺羊, 士無故不殺犬豕.”

783) 부모가.....벗어난다: 『詩經』「蓼莪」. “父兮生我, 母兮鞠我, 拊我畜我, 長我育我, 顧我復我, 出入腹我. 欲報之德, 昊天罔極.”

784) 형벌.....고통스러운가: 『史記』「孝文本紀」13年 5月條 “夫刑至斷支體, 刻肌膚, 終身不息, 何其楚

없다 하더라도, 진실로 그 사정을 알게 되면 또한 슬퍼하고 불쌍히 여기며 기뻐하지 않아야 할 것⁷⁸⁶⁾인데 하물며 신중하지 못하여 죄 없는 사람에게 미쳐서야 되겠는가?

故聖人求之以五聽，麗之以八議，三宥以恤其非意，三赦以異於全人，猶恐聽有所不聞，明有所不見，下情有所不達，議法有所不平。於是外朝之位以詢於衆焉。必群臣群吏萬民之意同，然後刑殺，可不謂慎乎？孟子曰：“左右皆曰可殺，勿聽，諸大夫皆曰可殺，勿聽，國人皆曰可殺，然後察之，見可殺焉，然後殺之。故曰國人殺之也。”

그러므로 성인이 ‘5청(五聽)’으로써 구하고 ‘8의(八議)’로써 부치며,⁷⁸⁷⁾ ‘3유(三宥)’로써 그 고의가 아니었던 것을 구휼하고 ‘3사(三赦)’로써 온전한 사람과 차이를 두었으면서도⁷⁸⁸⁾ 오히려 귀빚음에도 듣지 못하는 것이 있을까, 눈빚음에도 보지 못하는 것이 있을까, 아래의 사정이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 있을까, 의논하는 법이 공평하지 못한 것이 있을까 염려하였다. 이에 외조(外朝)의 자리가 있어 군중에게 자문하였다. 반드시 군신(群臣)과 군리(群吏)와 만민(萬民)의 뜻이 같은 뒤에야 형벌과 사형을 집행하였으니 ‘신중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맹자는 말하기를 “좌우가 모두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더라도 듣지 말고, 여러 대부가 모두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더라도 듣지 말고, 나랏사람이 모두 ‘죽여야 한다’라고 말한 뒤에 살펴서 ‘죽여야 할만 함’을 보고 나서 죽인다. 그러므로 ‘나랏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한다.”⁷⁸⁹⁾라고 하였다.

「洪範」曰：“汝則有大疑，謀及乃心，謀及卿士，謀及庶人，謀及卜筮。”古之王者，於有事且與下民共之，後之效一官者，往往自用，同官爲僚，或疑其賣己，閉口不與論

충而不德也，豈稱爲民父母之意哉！其除肉刑。”

785) 형벌을.....것: 『書經』「大禹謨」, “刑期于無刑.”

786) 진실로.....것: 『論語』「子張」, “孟氏使陽膚爲士師，問於曾子，曾子曰，上失其道，民散久矣，如得其情則哀矜而勿喜.”

787) ‘5청(五聽)’으로써.....부치며: 『周禮』「小司寇」의 내용이다. ‘五聽’은 辭聽, 色聽, 氣聽, 耳聽, 目聽이요, ‘八議’는 議親, 議故, 議賢, 議能, 議功, 議貴, 議勤, 議賓이다.

788) ‘3유(三宥)’로써.....두었으면서도: 『周禮』「司刺」에 “壹宥曰不識, 再宥曰過失, 三宥曰遺忘. 壹赦曰幼弱, 再赦曰老旄, 三赦曰憊愚.”라고 하였다.

789) 좌우가.....말한다: 『孟子』「梁惠王下」, 7장.

職事. 況他人乎? 斷獄弊訟, 一出其臆, 如是而刑不濫邪? 去⁷⁹⁰於先王遠矣.

『서경』「홍범」에 “너는 곧 큰 의심이 있거든 꾀함이 너의 마음에 미치며, 꾀함이 경(卿)·사(士)에 미치며, 꾀함이 서인(庶人)에 미치며, 꾀함이 복서(卜筮)에 미쳐라.”라고 하였다. 옛날의 왕자(王者)는 일이 있을 때 또한 하민(下民)과 더불어 함께 하였는데, 후세의 한 벼슬에만 힘쓰는 자는 이따금 자신의 생각만 쓰며, 동관(同官)이 ‘요(僚)’가 되는데도⁷⁹¹ 혹 그가 자기를 팔까 의심하여 입을 닫고 직사(職事)를 더불어 논의하지 않는다. 하물며 타인이야? 옥송(獄訟)을 판단할 때⁷⁹² 하나같이 그 억측에서 나온다면 이와 같이 하고서도 형벌이 넘치지 않겠는가? 선왕에게서 떨어진 것이 멀다.

刑禁第三

「鄉士」“掌國中”, “辨其獄訟, 異其死刑之罪而要之. 旬而職聽於朝. 「司寇」聽之, 斷其獄弊其訟於朝. 群士司刑皆在, 各麗其法, 以議獄訟. 獄訟成, 「士師」受中, 協日刑殺”. “若欲免之, 則王會其期”. 「遂士」“掌四郊”. “二旬而職聽於朝”. “若欲免之, 則王令三公會其期”. 「縣士」“掌野”. “三旬而職聽於朝”. “若欲免之, 則王命六卿會其期.” 期, 謂「鄉士」「遂士」「縣士」職聽於朝. 「司寇」聽之日. 王欲赦之, 則用此時親往議, 或命三公六卿往議之也.

형금 제3

「향사(鄉士)」⁷⁹³에 “국중(國中)⁷⁹⁴을 관장한다.....그 옥(獄:爭罪)과 송(訟:쟁재)을 변별하며, 그 사(死)와 형(刑)을 달리하여 요약한다. 10일이 지나 직사(職事)

790) 原註: ‘去’는 원래 ‘賢’으로 되어 있었는데 光緒本에 근거하여 고쳤다.

791) 동관(同官)이.....되는데도: 『左傳』文公 7年條. “同官爲寮, 吾嘗同僚, 敢不盡心乎.”

792) 옥송(獄訟)을 판단할 때: 『周禮』「鄉士」에 “司寇聽之, 斷其獄弊其訟於朝.”라고 하였고, 賈公彥의 疏에 “獄言斷, 訟言弊, 弊亦斷, 異言耳.”라고 하였다.

793) 「향사(鄉士)」: 『周禮』「秋官司寇」.

794) 국중(國中): 鄭玄의 注에 “其地則距王城百里內也. 言掌國中, 此主國中獄也, 六鄉之獄在國中.”이라고 하였다.

를 외조(外朝)에서 청단(聽斷)한다. 「사구(司寇)」가 듣고 외조에서 그 옥을 판단하고 그 송을 결정한다. 군사(群士)와 「사형(司刑)」⁷⁹⁵⁾이 모두 있어 각각 그 법으로 붙여 옥송을 의논한다. 옥송이 완성되면 「사사(士師)」⁷⁹⁶⁾가 형벌이 적중하였음을 접수하고 날짜를 협의하여 형벌과 사형을 시행한다.....만약 사면하고자 하면 왕이 그 기한에 직접 간다.”라고 하였고, 「수사(遂士)」⁷⁹⁷⁾에 “사교(四郊)⁷⁹⁸⁾를 관장한다.....20일이 지나 직사를 외조에서 청단한다.....만약 사면하고자 하면 왕이 3공(三公)에게 명령하여 그 기한에 직접 가게 한다.”라고 하였으며, 「현사(縣士)」⁷⁹⁹⁾에 “야(野)⁸⁰⁰⁾를 관장한다.....30일이 지나 직사를 외조에서 청단한다.....만약 사면하고자 하면 왕이 6경(六卿)에게 명령하여 그 기한에 직접 가게 한다.”라고 하였다. ‘기(期)’는 「향사」와 「수사」와 「현사」가 직사를 외조에서 청단하는 하고 「사구」가 청단하는 날을 말한다. 왕이 사면하고자 하면 이 시기를 사용하여 친히 가서 의논하거나 혹은 3공과 6경에게 명령하여, 가서 의논하게 하는 것이다.⁸⁰¹⁾

君之於民，猶親之於子也。親則不忍其子，君焉得忍其民哉？推其不忍之心，則人無有可戮，罪無有可刑，王欲赦之，固其理也。然而天討有罪，王者奉之以作五刑。刑者非王之意，天之意也，非天之意，天下之人之意也。殺人者死，而民猶有相殺，傷人者刑，而民猶有相傷。苟有以不忍而赦之，則殺人者不死，傷人者不刑。殺傷之者，無以懲其惡，被殺傷者無以伸其冤。此不近於帥賊而攻人者乎？

임금이 백성에게 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것과 같다. 부모라면 그 자식을 차마 어찌지 못하니, 임금이 어떻게 그 백성을 차마 할 수 있겠는가? 그

795) 「사형(司刑)」: 『周禮』「秋官司寇」.

796) 「사사(士師)」: 『周禮』「秋官司寇」.

797) 「수사(遂士)」: 『周禮』「秋官司寇」.

798) 사교(四郊): 鄭玄의 注에 “其地則距王城百里以外至二百里。言掌四郊者，此主四郊獄也，六遂之獄在四郊。”라고 하였다.

799) 「현사(縣士)」: 『周禮』「秋官司寇」.

800) 야(野): 鄭玄의 注에 “地距王城二百里以外至三百里曰野，三百里以外至四百里曰縣，四百里以外至五百里曰都。都縣野之地，其邑非王子弟公卿大夫之采地，則皆公邑也，謂之縣，縣士掌其獄焉。言掌野者，郊外曰野，大摠言之也。”라고 하였다.

801) ‘기(期)’는.....것이다: 鄭玄의 注이다.

차마 어찌지 못하는 마음을 미룬다면 사람들은 죽어도 될만함이 없고, 죄는 형을 집행할 만함이 없을 것이니 왕이 사면하고자 한다는 것은 진실로 그 이치이다. 그러나 하늘은 죄가 있는 사람을 토벌하고,⁸⁰²⁾ 왕자(王者)는 받들어 5형(五刑)을 지었다.⁸⁰³⁾ ‘형(刑)’이란 것은 왕의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요, 하늘의 뜻이 아니라 천하 사람들의 뜻이다. 사람을 죽인 자는 죽였는데도 백성들은 오히려 서로 죽이는 것이 있고, 사람을 상해한 자는 형벌을 가했는데도 백성들은 오히려 서로 상해하는 것이 있었다. 진실로 ‘차마 어찌지 못함’으로써 사면함이 있다면 사람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사람을 상해한 자가 형벌을 받지 않는다. 살인하고 상해를 가한 자에게 그 악을 징계함이 없다면 살인과 상해의 피해자는 그 원통함을 풀 수 없게 된다. 이것은 도적을 가르쳐 사람을 공격하게 함에 가깝지 아니한가?

是故，先王雖有不忍之心，而不敢輒赦，必於外朝與掌事者議其可否焉。赦者非王赦之，情可赦也。否者非王不赦，情不可赦也。如此，民何有不服？令何有不行？王符「述赦」曰：“養稂莠者，害禾稼。惠奸宄者，賊良民。”誠哉！不可不慎也。

이러하므로 선왕이 비록 ‘차마 어찌지 못하는 마음’을 두었으나 감히 문득 사면하지 못하고, 반드시 외조(外朝)와 일을 관장한 자가 그 가부(可否)를 논의할 때 하였던 것이다. ‘사(赦)’라는 것은 왕이 사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황이 사면할 만한 것이요, ‘부(否)’라는 것은 왕이 사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황이 사면할 만하지 못한 것이다. 이와 같은데, 백성이 어떻게 복종하지 않음이 있겠는가? 명령이 어떻게 행하여지지 않음이 있겠는가? 왕부(王符)의 「술사(述赦)」⁸⁰⁴⁾에 “낭유(稂莠)를 기르는 것은 화가(禾稼)를 해치는 것이요,⁸⁰⁵⁾ 간귀(姦宄)에게 은혜를

802) 하늘은.....토벌하고: 『書經』「皋陶謨」.

803) 오형을.....지었다: 『漢書』「刑法志」에서 가져왔다. “書云天秩有禮，天討有罪。故聖人因天秩而制五禮，因天討而作五刑。”

804) 왕부(王符)의 「술사(述赦)」: 王符는 後漢末의 사상가이다. 대표저서에 『潛夫論』이 있는데, 「述赦」는 『潛夫論』의 篇名이다. 『後漢書』 권49 「王充王符仲長統列傳」에 『潛夫論』이 비중 있게 다루어져 있는데 李觀가 이를 인용한 듯하다.

805) 낭유(稂莠)를.....것이요: 稂莠는 수크령과 강아지풀로 벼와 비슷한 害草이다. 禾稼는 벼 또는 穀類의 總稱이다.

베푸는 것은 선량한 백성을 해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진실하다! 삼가지 않을 수 없다.

刑禁第四

「掌囚」⁸⁰⁶⁾“掌守盜賊，凡囚者。上罪梏拑而桎，中罪桎梏，下罪梏。王之同族拑，有爵者桎，以待弊罪。及刑殺，告刑於王，奉而適朝，士加明梏，以適市而刑殺之。凡有爵者與王之同族，奉而適甸師氏，以待刑殺。”由此觀之，先王之制，雖同族，雖有爵，其犯法當刑，與庶民無以異也。

형금 제4

「장수(掌囚)」⁸⁰⁶⁾에 “도적과 수감자⁸⁰⁷⁾를 지키는 것을 관장한다. 상죄(上罪)는 ‘곡(桎:수갑)’과 ‘공(拑:수갑)’과 ‘질(桎:차꼬)’을 하고⁸⁰⁸⁾ 중죄(中罪)는 ‘질’과 ‘곡’을 하고 하죄(下罪)는 ‘곡’을 한다. 왕의 동족은 ‘공’을 하고, 작위가 있는 자는 ‘질’을 하여 죄의 판단을 기다린다. ‘형(刑)’과 ‘살(殺)’에 미쳐 왕에게 행형(行刑)을 고하고, 받들어 외조(外朝)에 가며, 「향사(鄉士)」는 ‘곡’에다 성명과 죄목을 덧붙이고 저자에 가서 형살한다. 무릇 작위가 있는 자와 왕의 동족은 받들어 「전사(甸師)」⁸⁰⁹⁾씨에게 가서 형살을 기다린다.”라고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선왕의 법제는 비록 동족이거나, 비록 벼슬이 있는 자라도 그 법을 범하여 형벌에 당하면 서민과 더불어 차이가 없었던 것이다.

法者，天子所與天下共也。如使同族犯之而不刑殺，是爲君者私其親也，有爵者犯之而不刑殺，是爲臣者私其身也。君私其親，臣私其身，君臣皆自私，則五刑之屬三千止謂民也。賞慶則貴者先得，刑罰則賤者獨當，上不愧於下，下不平於上，豈適治之道邪？故王者不辨親疏，不異貴賤，一致於法。其所以不肆諸市朝而適甸師氏者，爲其

806) 「장수(掌囚)」: 『周禮』「秋官司寇」.

807) 수감자: 鄭玄의 注에 “凡囚者，謂非盜賊自以他罪拘者也.”라고 하였다.

808) 상죄(上罪)는.....하고: 鄭衆의 注에 “拑者，兩手共一木也，桎梏，兩手各一木也.”라고 하였고, 賈公彥의 疏에 “五刑之人，三木之囚，輕重著之，極重者三木俱著，次者二，下者一.”이라고 하였다.

809) 「전사(甸師)」: 『周禮』「天官冢宰」.

有恥，毋使人見之也.

법이란 것은 천자가 천하와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이다. 만약 동족이 범법하였는데 형살을 당하지 않게 한다면 이는 임금 되는 자가 그 친척을 사사로이 대하는 것이요, 작위가 있는 자가 범법하였는데 형살을 당하지 않게 한다면 이는 신하 되는 자가 그 자신을 사사로이 대하는 것이다. 임금이 그 친척을 사사로이 대하고 신하가 그 자신을 사사로이 대하여 임금과 신하가 모두 스스로 사사로이 대한다면 5형의 무리 3,000은 단지 백성만을 이룬 것이다. ‘상경(賞慶)’은 귀한 자가 먼저 획득하고 ‘형벌(刑罰)’은 천한 자가 홀로 감당하여,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불평한다면 어찌 다스리는 도에 적합하겠는가? 그러므로 왕자(王者)는 친소(親疎)를 변별하지 말고 귀천(貴賤)에 차이를 두지 말아서 법에 일치해야 한다. 그 시조(市朝)에 버리지 아니하고 「전사」씨에게 가는 것은 그 수치스러움이 있어 사람들이 볼 수 없게 하기 위함이다.

「文王世子」曰：“公族，其有死罪，則磬於甸人。其刑罪，則織劓，亦告於甸人。公族無宮刑。獄成，有司讞於公，其死罪，則曰‘某之罪在大辟’，其刑罪，則曰‘某之罪在小辟’。公曰‘宥之’，有司又曰‘在辟’。公又曰‘宥之’，有司又曰‘在辟’。及三宥，不對，走出，致刑於甸人，公又使人追之，曰‘雖然，必赦之’。有司對曰‘無及也’。反命于公，公素服，不舉，爲之變，如其倫之喪，無服，親哭之。”公族之罪，雖親不以犯有司正術也，所以體百姓也。刑于隱者，不與國人，慮兄弟也。弗吊弗爲服，哭于異姓之廟，爲忝祖遠之也。素服居外不聽樂，私喪之也，骨肉之親無絕也。公族無宮刑，不翦其類也。古者諸侯之禮亦如是之懿哉!

『예기』「문왕세자」에 “공족(公族)이 그 사죄(死罪)가 있으면 전인(甸人)에게 교살(絞殺) 당한다. 그 형죄(刑罪)는 섬(織:刺)과 단(劓:割)을 하되 또한 전인에게 고한다. 공족은 궁형(宮刑)이 없다. 옥(獄)이 이루어져 유사가 공(公)에게 아뢰는데 그 사죄이면 곧 가로대 ‘아무개의 죄는 대벽(大辟:死刑)입니다’라고 하고, 그 형죄이면 곧 가로대 ‘아무개의 죄는 소벽(小辟)입니다’라고 한다. 공이 가로대

‘용서하라’라고 하면 유사가 또 가로대 ‘벅입니다’라고 하고, 공이 또 가로대 ‘용서하라’라고 하면 유사가 또 가로대 ‘벅입니다’라고 한다. 3유(三宥)에 미쳐 대답하지 아니하고 달려 나가 전인에게 형을 이루게 하면 공이 또 사람을 시켜 추론(追論)하여 가로대 ‘비록 그러하더라도 반드시 사면하라’라고 말한다. 유사가 대답하여 가로대 ‘미칠 수 없습니다’라고 한다. 공에게 반명(反命:復命)하면 공이 소복(素服)을 한 채 ‘거(擧:殺牲盛饌)’를 하지 않고 위하여 변상(變常)하며, 그 친소의 차례에 따른 상(喪)과 같이 하되 복(服)은 없고⁸¹⁰⁾ 친히 곡(哭)을 한다.”라고 하였다. 공족의 죄는 비록 친하더라도 유사의 바른 법집행을 범하지 않는 것은 백성의 입장을 체득한 것이다. 안보이는 곳에서 형을 집행하는 것은 나랏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고 형제를 배려한 것이다. 조복(弔服)을 하지 않고, 다른 성씨의 사당에 가서 곡하는 것은 조상을 욕되게 할까 싶어 멀리한 것이다. 소복(素服)을 하고 밖에 거하며 음악을 듣지 않는 것은 사사로이 상을 치르는 것이니, 골육지친(骨肉之親)을 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공족은 궁형이 없다’는 것은 그 씨를 없애지 않는 것이다. 옛날 제후의 예(禮)가 또한 이와 같이 아름다웠던 것이다!

孟子謂“舜爲天子，皋陶爲士，瞽瞍殺人，則執之。舜視棄天下，猶棄敝屣也，竊負而逃，遵海濱而處，終身訢然，樂而忘天下。”彼天子父猶不可曲法，而況官之子孫乃用蔭乎？

맹자가 이르기를 “순(舜)이 천자가 되고 고요(皋陶)가 사(士)가 되었는데, 고수(瞽瞍)가 사람을 죽이면 법대로 집행한다. 순이 천하 버리는 것 보기를 헌신짝 버리는 것과 같이하여 고수를 업고 도망쳐 바닷가를 전전하며 거처하여 죽을 때까지 만족하고 즐거워하여 천하를 잊을 것이다.”⁸¹¹⁾라고 하였다. 저 천자의 아버지도 오히려 법을 어기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벼슬아치의 자손이 이에 ‘음(蔭:庇護)’을 쓸 수 있었겠는가?

810) 그 친소의.....없고: 陳澧의 『禮記集說』注에 “如其親疎之倫而不爲弔服者，以不親往故也，但居外不聽樂及賻贈之類，仍依親疎之等耳.”라고 하였다.

811) 맹자가.....것이다: 『孟子』「盡心上」 35장의 내용을 축약하였다.

刑禁第五

「司救」⁸¹²⁾「掌萬民之衰惡過失而誅讓之，以禮防禁而救之。凡民之有衰惡者，三讓而罰，三罰而士加明刑，恥諸嘉石，役諸「司空」。其有過失者，三讓而罰，三罰而歸於圜土。」
 衰惡，謂侮慢長老，語言無忌而未麗於罪者。過失，亦由衰惡齟齬好訟，若抽拔兵器，誤以行傷害人麗於罪者。誅，誅責也。罰，撻擊之也。加明刑者，去其冠飾而書其衰惡之狀，著之背也。嘉石，在外朝之門左，使坐焉以恥辱之。既而役諸司空也。圜土，獄城。過失近罪，晝日任之以事而收之，夜藏於獄，亦加明刑以恥之。

형금 제5

「사구(司救)」⁸¹²⁾에 “만민의 사악(邪惡)과 과실(過失)을 주양(誅讓)하고 예(禮)로써 막고 금하여 구원하는 것을 관장한다. 무릇 백성 가운데 ‘사악’이 있는 자는 세 번 꾸짖고[讓] 벌하며, 세 번 벌하고 사(士)가 명형(明刑)을 더하며, 가석(嘉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사공(司空)」에서 노역한다. 그 ‘과실’이 있는 자는 세 번 꾸짖고 벌하며, 세 번 벌하고 환토(圜土)로 돌려보낸다.”라고 하였다. ‘사악(邪惡)’은 장로(長老)를 업신여기고 말이 거리낌이 없으나 죄에 걸리지 않는 것⁸¹³⁾을 말한다. ‘과실(過失)’은 또한 사악과 술주정과 다툼을 좋아함으로 말미암아 만약 흥기를 뺏아 들고 잘못하여 사람을 상해하였으나 죄에 걸리지 않는 것이다. ‘주(誅)’는 꾸짖음이다. ‘벌(罰)’은 때리는 것이다. ‘명형(明刑)을 더한다’는 것은 그 관식(冠飾)을 벗기고 그 사악한 죄상을 써서 등에 부착하는 것이다. ‘가석(嘉石)’은 외조(外朝)의 문 왼쪽에 있는데 얹게 하여 치욕을 주는 것이다. 이윽고 「사공」에서 노역한다. ‘환토(圜土)’는 감옥이다. ‘과실’은 죄에 가까우니, 낮에 일을 맡기되 수렴하여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게 하며, 밤에 옥에 수감하고 또한 명형을 더하여 수치스럽게 한다.⁸¹⁴⁾

812) 「사구(司救)」: 『周禮』「地官司徒下」.

813) 죄에.....것: 즉시 감옥으로 보내어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鄭玄의 注에 “古者重刑，且責怒之，未卽罪也.”라고 하였다.

814) ‘사악(邪惡)’은.....한다: 모두 鄭玄의 注이다.

故「大司寇」以圜土聚教罷民。凡害人者，置之圜土而施職事焉，以明刑恥之。其能改者，反于中國，不齒三年。其不能改而出圜土者，殺。” “以嘉石平罷民。凡萬民之有罪過而未麗於法，而害於州里者，桎梏而坐諸嘉石，役諸「司空」。重罪，旬有三日坐，暮役。其次，九日坐，九月役。其次，七日坐，七月役。其次，五日坐，五月役。其下罪，三日坐，三月役。使州里任之，則宥而舍之。”

그러므로 「대사구(大司寇)」⁸¹⁵⁾에 “환토로써 피민(罷民)⁸¹⁶⁾을 모아 교화한다. 무릇 사람을 해친 자⁸¹⁷⁾는 환토에 두고 직사(職事)를 시행케 하여 명형하고 수치스럽게 한다. 그 능히 고치는 자는 중국(中國)에 돌려보내고⁸¹⁸⁾ 3년간 불치(不齒)⁸¹⁹⁾한다. 그 능히 고치지 않고 감옥을 탈출하는 자는 죽인다.....가석으로써 피민을 천선(遷善)하게 한다. 무릇 만민 가운데 죄과(罪過)가 있으나 법에 걸리지 않고서 주리(州里)에 해를 입힌 자는 ‘질’과 ‘곡’을 한 채 가석에 앉게 하고 「사공」에서 노역한다. 중죄(重罪)는 13일간 앉아 있게 하고 1년 노역한다. 그 다음은 9일간 앉아 있게 하고 9개월 노역한다. 그 다음은 7일간 앉아 있게 하고 7개월 노역한다. 그 다음은 5일간 앉아 있게 하고 5개월 노역한다. 그 아래의 죄는 3일간 앉아 있게 하고 3개월 노역한다. 노역을 마치고 주리(州里)에 맡기면 용서하고 풀어준다.”라고 하였고,

「司圜」“掌收教罷民。凡害人者，不使冠飾而加明刑焉，任之以事而收教之。能改者，上罪三年而舍，中罪二年而舍，下罪一年而舍。其不能改而出圜土者，殺。雖出，三年不齒。凡圜土之刑人也，不虧體，其罰人也，不虧財。”

「사환(司圜)」에 “피민을 수감하여 교화하는 것을 관장한다. 무릇 사람을 해치

815) 「대사구(大司寇)」: 『周禮』「秋官司寇」.

816) 피민(罷民): ‘罷’의 음은 ‘피’인데 ‘疲’와 같다. ‘罷民’은 강제 노역을 받아 마땅한 전혀 불쌍하지 않는 백성, 노역에 지칠대로 지친 백성이란 의미이다. 「司圜」鄭衆의 注에 “罷民，謂惡人不從化，爲百姓所患苦，而未入五刑者也.”라고 하였다.

817) 사람을 해친 자: 鄭玄의 注에 “害人，謂爲邪惡已有過失麗於法者.”라고 하였다.

818) 중국(中國)에 돌려보내고: 鄭玄의 注에 “反于中國，謂舍之還於故鄉吏也.”라고 하였다.

819) 불치(不齒): 鄭玄의 注에 “不齒者，不得以年次列於平民.”이라고 하였다. 오늘날의 ‘資格停止’인 셈이다.

는 자는 관식을 못하게 하고 명형을 더하며, 일을 맡기고 수감하여 교화한다. 능히 고치는 자는 상죄(上罪)는 3년을 하고 놓아주며, 중죄(中罪)는 2년을 하고 놓아주며, 하죄(下罪)는 1년을 하고 놓아준다. 그 능히 고치지 아니하고 환토를 탈출하는 자는 죽인다. 비록 탈출하였다더라도 3년간 불치한다. 무릇 환토에서의 형(刑)은 육형(肉刑)을 하지 않으며 그 벌(罰)은 벌금(罰金)을 부과하지 않는다. 820)”라고 하였다.

善哉，爲國乎！人之大惡豈一朝一夕，必有漸也。放僻邪侈之情動，而無所畏忌，則涓涓以成江河，毫末以尋斧柯。或伏尸市朝，或流血刀鋸，雖其悔之，猶噬臍也。是故先王之馭民必早爲之所，過輕者則坐諸嘉石，稍重者則歸於園土，皆未入于五刑也。若因茲困辱，遂能自新，則復爲齊民，何刑殺之及哉！此亦使民遷善遠罪之術也。孔子曰：“小人不恥不仁，不畏不義。不見利不勸，不威不懲，小懲而大誡。『易』曰：‘履校，滅趾，無咎。’此之謂也。”成康所以刑錯不用，非一助邪！

좋다, 나라를 다스림이여! 사람의 대악(大惡)이 어찌 하루 아침 하루 저녁이었겠는가, 반드시 ‘점(漸)’이 있었던 것이다. 방벽(放僻)과 사치(邪侈)의 정(情)이 움직여 거리낄 것이 없다면 졸졸흐르던 물이 강하(江河)를 이루고,⁸²¹⁾ 털끝 만할 때 뽑아내지 않다가 장차 도끼를 찾는 격⁸²²⁾이 될 것이다. 혹 시조(市朝)에서 복시(伏尸)되기도 하고, 혹 도거(刀鋸)에 피가 흐르기도 하니, 비록 그 뉘우친다고 한들 서제(噬臍:後悔莫及)⁸²³⁾와 같다. 이러하므로 선왕이 백성을 다스림에 반드시 일찍 대안을 마련하였으니,⁸²⁴⁾ 과실이 가벼운 자는 곧 가석에 앉게 하고 조금 무거운 자는 환토에 돌려보내 모두 5형에는 들지 않게 하였던 것이다. 만약

820) 형(刑)은.....않는다: 鄭玄의 注에 “言其刑人，但加以明刑，罰人，但任之以事耳.”라고 하였다.

821) 졸졸흐르던.....이루고: 『說苑』「敬慎」에 “涓涓不壅，將成江河.”라고 하였는데 『荀子』「法行」에 “詩曰涓涓源水，不壅不塞.”에서 온 것이다.

822) 털끝.....격: “毫末不扎，將尋斧柯.”에서 온 것인데, 『左傳』, 『孔子家語』등에 ‘諺’, ‘古語’라고 소개되어 있다.

823) 서제(噬臍:後悔莫及): 『左傳』 莊公 6年條. “亡鄧國者，必此人也。若不早圖，後君噬臍。其及圖之乎.”

824) 반드시.....마련하였으니: ‘早爲之所’는 『左傳』 隱公 元年條의 “對曰 姜氏何厭之有，不如早爲之所，無使滋蔓，蔓難圖也.”에서 온 것이다.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대비하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곤욕(困辱)으로 인하여 드디어 능히 스스로 새로워진다면 다시 제민(齊民:百姓)이 되니 어찌 형살(刑殺)이 미치겠는가! 이 또한 백성으로 하여금 천선(遷善)하여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방법인 것이다. 공자 가라사대 “소인은 불인(不仁)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불의(不義)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곳을 보여주지 않으면 권면(勸勉)할 수 없고 위엄을 보여주지 않으면 징계할 수 없나니, 작은 것을 처벌하여 큰 것을 경고하는 것이다. 『주역』에 ‘차꼬를 신겨 발을 멸하였으니 허물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이를 이르는 것이다.”⁸²⁵⁾라고 하였다. 주나라 성왕(成王)과 강왕(康王)이 형(刑)을 버려두고 쓰지 않았다⁸²⁶⁾는 것은 일조(一助)가 아니겠는가!

刑禁第六

「萍氏」“幾酒”，謂苛察沽買過多及非時者，“謹酒”，謂使民節用酒也。「司黷」“掌憲市之禁令”，“禁以屬游飲食於市者。若不可禁，則搏而戮之。”以屬游飲食，謂群飲食者也.

형금 제6

「평씨(萍氏)」⁸²⁷⁾의 “기주(幾酒)”는 파는 것이 과다(過多)하거나 및 때⁸²⁸⁾가 아닌 것을 엄하게 살피는 것을 말한 것이요,⁸²⁹⁾ “근주(謹酒)”는 백성들이 술 쓰는 것을 절제하게 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⁸³⁰⁾ 「사포(司黷)」⁸³¹⁾에 “시장의 금령을 표

825) 공자.....것이다: 『周易』「繫辭下傳」 5장에서 인용한 것인데, 해당 구절은 「噬嗑」卦 初九爻辭를 풀이한 것이다. 「噬嗑」괘는 ‘頤口에 물건이 끼어 있어 깨문다’는 象을 띠는 괘로서, 明罰勅法과 관련된 일을 설명하므로 李觀가 刑禁을 설명하면서 적절하게 인용한 것이다. 단 인용문에서 ‘小德而大誠’와 ‘易曰’사이에 ‘此小人之福也’를 생략하였다.

826) 주나라.....않았다: 『史記』권112「平津侯主父列傳」. “嚴安上書曰: 臣聞周有天下, 其治三百餘歲, 成康其隆也, 刑錯四十餘年而不用.”

827) 「평씨(萍氏)」: 『周禮』「秋官司寇下」.

828) 때: 祭祀, 鄉飲酒, 婚娶등을 말한다.

829) 파는.....것이요: 鄭玄의 注이다.

830) 백성들이.....것이다: 역시 鄭玄의 注이다.

831) 「사포(司黷)」: 『周禮』「地官司徒下」.

현(表縣:告示)하는 것을 관장한다.....시장에서 무리지어 놀면서 마시고 먹는 자를 금한다. 만약 금할 수 없다면 때려 죽인다.”라고 하였다. ‘이속유음식(以屬游飲食)’은 무리지어 마시고 먹는 자를 말한다.⁸³²⁾

夫酒之爲禍久矣，君子以覆其邦家，小人以不免刑戮，可稱數哉！「酒誥」曰：“文王誥教小子，有正有事，無彝酒。越庶國，飲，惟祀，德將無醉。”又曰：“妹土，嗣爾股肱，純其藝黍稷，奔走事厥考厥長，肇牽車牛，遠服賈，用孝養厥父母，厥父母慶，自洗腆，致用酒。”

무릇 술이 재앙이 되는 것이 오래니, 군자는 그 방가(邦家)를 전복하고 소인은 형륙(刑戮)을 면치 못한 것을 여럿 칭할 수 있다. 『서경』 「주고(酒誥)」에 가로대 “문왕이 젊은이와 벼슬이 있고 직업이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되 ‘술을 항상 하지 말라. 여러 나라가 마시되 오직 제사이니, 덕을 받들어 취하지 말라.’”라고 하였고, 또 가로대 “매토(妹土)⁸³³⁾의 백성들아! 너희의 팔 다리를 계속 움직여서 그 서직(黍稷) 가꾸는 일에 순일(純一) 하고, 그 부모와 그 어른들을 분주하게 섬기며, 비로소 수레와 소를 끌고 멀리 장사를 하여 그 부모를 효도로 봉양하되, 그 부모가 기뻐하여야 스스로 깨끗하고 후하게 하여 술을 쓸 수 있느니라.”라고 하였다.

此言文王告其民之小子與群吏，無得常飲酒，若庶國君臣民衆飲酒，亦唯祭祀，以德自將，無令至醉。故戒康叔當以文王之法，往使妹土之人，爲純一之行，勤種黍稷，奔走事其父兄。農功既畢，始牽車牛遠行賈賣，用其所得珍異，孝養其父母，其父母善子之行，子乃自潔厚致用酒養也。

이것은 문왕이 그 백성 가운데 젊은이와 여러 관리들에게 항상 술을 먹지 말라고 고한 것으로, 만약 여러 나라의 군신(君臣)과 민중(民衆)이 술을 마신다면 또한 오직 제사 지낼 때요, 덕으로써 스스로 받들어 취함에 이르지 말라는 말이

832) ‘이속유음식(以屬游飲食)’은.....말한다: 鄭衆의 注이다.

833) 매토(妹土): ‘妹土’는 商의 都邑이다. 蔡沈의 『書經集傳』 「酒誥」 序頭에 “商受酏酒，天下化之。妹土，商之都邑，其染惡尤甚。武王以其地封康叔，故作書誥教之云。”이라 하였다.

다. 그러므로 강숙에게 경계하여 마땅히 문왕의 법으로써 가서 매토의 사람들을 부리되 순일(純一)한 행동을 하여 서직을 부지런히 심고 그 부형을 분주히 섬기게 한 것이다. 농공이 이미 마치면 비로소 수레와 소를 끌고 멀리 장사를 행하여 그 얻은 바 진이(珍異)를 써서 그 부모를 효도로 봉양하는데, 그 부모가 자식의 행동을 좋게 여기면 자식이 이에 스스로 깨끗하고 후하게 하여 술을 써서 봉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文王之法，民之置酒，唯祭與養耳。而小人用之，疏數無其時，多少無其節。群飲食於市井，以妨其業，以費其財，以興淫邪，以起鬪訟，是以禁之也。然則聖人之於天下，事爲之制，曲爲之防，果如何哉？昔曹參去齊，屬其後相，以齊獄市爲寄。謂“獄市者，所以並容。擾之，姦人安所容乎？”蓋是時，天下初定，故從民之欲而不擾亂，豈常行之道邪？獄市不可以不治，姦人不可以不禁。

문왕의 법은 백성이 술을 둘 수 있는 경우는 오직 제사와 봉양일 뿐이다. 그런데 소인이 쓰면 소삭(疏數:頻度)은 그 때가 없고 다소(多少)는 그 절제가 없어진다. 여럿이 시정(市井)에서 마시고 먹으면 그 생업에 방해되고 그 재물을 낭비하며 음사(淫邪)를 일으키고 싸움과 쟁송을 일으키니 이러므로써 금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인이 천하에, 매사에 제도를 만들고 자세하게 방한(防閑)을 했다⁸³⁴⁾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하였다는 것인가? 옛날 조참(曹參)⁸³⁵⁾이 제나라를 떠나올 때 그 후상(後相)에게 말기면서 제나라의 옥시(獄市)로써 부탁하였다. 이르기를 “‘옥시’라는 것은 선악을 모두 수용하는 곳이다. 요란(擾亂)하게 하면 간사한 사람이 어느 곳에 용납되겠는가?⁸³⁶⁾”라고 하였다. 대개 이때에 천하가 처음 안정 되었으므로 백성들의 욕망을 따라 요란하지 않게 한 것이니 어찌 항상 행할 수 있는 방도였겠는가? ‘옥시’는 다스리지 않을 수 없고 ‘간인’은 금하지 않을 수 없다.

834) 매사에.....했다: 『漢書』「藝文志」에 “帝王質文，世有損益，至周曲爲之防，事爲之制.”라고 하였고, 顏師古의 注에 “委曲防閑，每事爲制也.”라고 하였다.

835) 조참(曹參): 曹參은 前漢의 공신으로 平陽侯에 봉해졌으며 蕭何의 추천으로 相國이 되어 惠帝를 보필하였다. 인용문은 『史記』「曹相國世家」와 『漢書』「蕭何曹參傳」에 모두 들어 있다.

836) ‘옥시’라는.....용납되겠는가: 曹參은 원래 秦나라의 獄吏출신으로 秦나라가 형벌이 극에 달하여 천하가 반란한 것을 경계하여 후임에게 특별히 부탁한 것이다.

「大司徒」“以荒政十有二聚萬民”。“其三曰緩刑”，而“十有二曰除盜賊”。是救飢之政，雖則緩刑，至於盜賊，不可不急其刑以除之也。噫！酒權之官未罷，則「萍氏」之禁，「司黻」之令，不復行矣。然而緩刑，仁也，除盜賊，義也。凶年飢饉而仁義存焉，亦不減於先王矣。

「대사도(大司徒)」⁸³⁷에 “황정(荒政) 12가지로 만민을 모은다.....그 셋째는 ‘완형(緩刑)’이요.....열 두 번째는 ‘제도적(除盜賊)’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기근을 구원하는 정책이니, 비록 ‘형벌을 느슨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도적에 이르러서는 그 형벌을 급히 하여 제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아, 주각(酒權)⁸³⁸의 관(官)이 혁파되지 않으면 「평씨」의 금(禁)과 「사포」의 영(令)은 다시 행하여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완형’은 ‘인(仁)’이요, ‘제도적’은 ‘의(義)’이다. 흉년에 기근이 들었는데 ‘인의’가 있으니 또한 선왕보다 감소한 것이 아니다.

837) 「대사도(大司徒)」: 『周禮』「地官司徒」.

838) 주각(酒權): 정부가 鹽鐵처럼 술도 專賣하여 생산과 유통을 독점하고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漢武帝 때 처음 시행하였다.

제12장 『이구집』 권11 官人1-官人4

李觀集卷第十一

官人第一

爲人上者，孰不欲進賢，而賢或不進，孰不欲退不肖，而不肖或不退。豈知而縱之邪？人未易知也。知人則哲，帝堯猶以爲難。彼色厲內荏，言行不相顧者，滔滔皆是也，非久與居，胡能睹其真僞耶？久與居者，非鄰里鄉黨而誰邪？

관인 제1

윗사람 되는 자, 누군들 어진이를 나오게 하고 싶지 않을까마는 어진이는 훗 나오지 않고, 누군들 불초한 사람을 물러나게 하고 싶지 않을까마는 불초한 사람은 훗 물러나지 않는다. 어떻게 어진이를 알아보고 불초한 사람을 놓아버릴까? 사람은 쉽게 알 수 없다. 사람을 알아보면 밝은 것이니 요순도 오히려 어렵다고 하였다.⁸³⁹⁾ 저 낮으로는 위엄이 있으나 속은 유약하여⁸⁴⁰⁾ 말과 행동이 서로 돌아보지 않는자, 도도(滔滔)한 것이 천하가 다 이러하다.⁸⁴¹⁾ 오래 더불어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능히 그 진위(眞僞)를 볼 것인가? 오래 더불어 거하는 자, 인(鄰)·리(里)·향(鄉)·당(黨)이 아니면 누구인가?

故「閭胥」“凡春秋之祭祀役政喪紀之數，聚衆庶，既比，則讀法，書其敬敏任恤者。”
 「族師」“月吉，則屬民而讀邦⁸⁴²⁾法，書其孝弟睦婣有學者。春秋祭酺亦如之。”
 「黨正」“正歲，屬民讀法，而書其德行道藝。”

839) 사람을.....하였다: 『書經』「皐陶謨」, “皐陶왈, 都, 在知人, 在安民. 禹曰, 吁, 威若時, 惟帝, 其難之. 知人則哲. 能官人, 安民則惠.”

840) 낮으로는.....유약하여: 『論語』「陽貨」12장. “子曰, 色厲而內荏, 譬諸小人, 其猶穿窬之盜也與!”

841) 도도한.....이러하다: 『論語』「微子」6장. “滔滔者天下皆是也, 而誰以易之.”

842) 原註: ‘邦’字는 원래 없었는데 『周禮正義』「地官族師」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그러므로 「여서(閭胥)」⁸⁴³에 “무릇 봄가을의 제사와 역정(役政)과 상기(喪紀)의 수(數)에 중서(衆庶)를 모이게 하고, 이미 모이면 법을 읽고 그 경(敬)·민(敏)·임(任)·휼(恤)한 자를 적는다.”라고 하였고, 「족사(族師)」⁸⁴⁴에 “매달 초하루에 백성을 모아 놓고 나라의 법을 읽는데 효(孝)·제(弟)·목(睦)·인(嫻)하고 학문이 있는 자를 적는다. 봄가을에 포(酺)⁸⁴⁵에게 제사하는 것도 또한 같다.”라고 하였으며, 「당정(黨正)」⁸⁴⁶에 “정세(正歲)⁸⁴⁷에 백성을 모아 놓고 법을 읽는데 그 덕행과 도예(道藝)를 적는다.”라고 하였고,

「州長」“正月之吉，各屬其州之民而讀法。以考其德行道藝而勸之，以糾其過惡而戒之。若以歲時祭祀州社，則屬其民而讀法，亦如之。” 「鄉大夫」“三年則大比，考其德行道藝而興賢者能者。鄉老及鄉大夫帥其吏與其衆寡，以禮禮賓之。厥明，鄉老及鄉大夫群吏獻賢能之書于王，王再拜受之，登于「天府」，「內史」貳之。退而以鄉射之禮五物詢衆庶。一曰和，二曰容，三曰主皮，四曰和容，五曰興舞。”

「주장(州長)」⁸⁴⁸에 “정월 초하루에 각각 그 주의 백성을 모아 놓고 법을 읽는다. 그 6덕과 6행과 도예(道藝)를 고량(考量)하여 권하고 그 과악(過惡)을 규찰(糾察)하여 경계한다. 세시로써 주사(州社)에 제사하게 되면 그 백성을 모아 놓고 법을 읽는데 또한 같이 한다.”라고 하였으며, 「향대부(鄉大夫)」⁸⁴⁹에 “3년이면 크게 모여 그 6덕과 6행과 도예를 고량하여 현자(賢者)와 능자(能者)를 추천한다. 향노(鄉老)와 「향대부」가 그 관리와 그 종과(衆寡)를 거느리고 향음주(鄉飲酒)의 예(禮)로써 예우하고 공경한다. 그 다음날 향노와 「향대부」와 여러 관리가 왕에게 현자와 능자를 적은 문서를 올리면 왕은 두 번 절하며 받고, 「천부(天府)」⁸⁵⁰에 올리며, 「내사(內史)」⁸⁵¹는 부분을 만든다.⁸⁵² 물러나서 향사(鄉射)의 예

843) 「여서(閭胥)」: 『周禮』「地官司徒」.

844) 「족사(族師)」: 『周禮』「地官司徒」.

845) 포(酺): ‘酺’는 사람에게 재해를 끼치는 귀신이다.

846) 「당정(黨正)」: 『周禮』「地官司徒」.

847) 정세(正歲): 원래 양력과 음력을 맞추기 위해 ‘윤달로 채워 넣는 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매년’의 의미이다. 賈公彥의 疏에 “正歲建寅朔日，聚衆庶讀法。”이라 하였다.

848) 「주장(州長)」: 『周禮』「地官司徒」.

849) 「향대부(鄉大夫)」: 『周禮』「地官司徒」.

850) 「천부(天府)」: 『周禮』「春官宗伯」.

(禮) 5물(五物)로써 중서(衆庶)에게 묻는다. 첫째는 ‘화(和)’요, 둘째는 ‘용(容)’이요, 셋째는 ‘주피(主皮)’요, 넷째는 ‘화용(和容)’이요, 다섯째는 ‘흥무(興舞)’이다.⁸⁵³⁾”라고 하였다.

「閭胥」, 二十五家之吏, 凡因會聚則書其人材. 「族師」, 每月朔書, 春秋祭酺又書. 「黨正」, 夏正之月書. 「州長」, 正月之朔考, 春秋社又考. 是一歲之中, 凡幾書, 凡幾考. 至于三歲, 「鄉大夫」, 乃考而興之, 獻其書于王, 退而又詢衆庶, 寧復有賢能者乎? 其詳如此, 其慎如此, 而官謗不戢, 治道不登, 未之有也.

「여서」는 25가의 관리이니 무릇 모이는 것으로 인하여 그 인재를 적는다. 「족사」는 매달 초하루에 적고 봄가을 포에 제사할 때 또 적는다. 「당정」은 하나라 달력으로 정월에 적는다. 「주장」은 정월 초하루에 고량하고 봄가을 사(社)에 제사할 때 또 고량한다. 이 1년 가운데 무릇 몇 번이나 적고 무릇 몇 번이나 고량하는가. 3년에 이르면 「향대부」가 이에 고량하여 추천하고 그 문서를 왕에게 올리며, 물러나와 또 중서에게 묻기를 ‘오히려 다시 현자와 능자가 있는가?’라고 한다. 그 상세함이 이와 같고 그 신중함이 이와 같은데 관방(官謗)⁸⁵⁴⁾이 멈추지 않고 다스림의 도가 오르지 못하는 것은 있지 않다.

孔子曰：“昔吾於人也，聽其言而信其行，今吾於人也，察其言而觀其行。”不見其人之姓名，不知其身之善惡，才不才，決於數百言，難乎爲無失矣!

공자는 말씀하기를 “예전에 나는 사람에게 그의 말을 듣고 그의 행동을 믿었는데, 지금은 내가 사람에게 그의 말을 듣고 그의 행동을 보게 되었다.”⁸⁵⁵⁾라

851) 「내사(內史)」: 『周禮』「春官宗伯下」.

852) 「천부(天府)」에.....만든다: 鄭玄의 注에 “天府, 掌祖廟之寶藏者. 內史副寫其書者, 當詔王爵祿之時.”라고 하였다.

853) 첫째는.....‘흥무(興舞)’이다: 鄭玄의 注에 “和載六德, 容包六行也. 庶民無射禮, 因田獵分禽則有主皮. 主皮者, 張皮射之, 無侯也. 主皮, 和容, 興舞, 則六藝之射與禮樂與.”라고 하였다.

854) 관방(官謗): 관원이 직책에 맞는 역할을 못해 비방 당하는 것을 말한다. 『左傳』莊公 22年條 “齊侯使敬仲爲卿, 辭曰.....敢辱高位, 以速官謗?”

855) 예전에.....되었다: 『論語』「公治長」 9장.

고 하였다. 그 사람의 성명을 본적도 없고, 그 몸의 선악을 알지도 못한 채 ‘재(才)’와 ‘불재(不才)’를 수 백마디의 말에 결정하니 실수 없기가 어렵다!

官人第二

「司士」“掌群臣之版”，“以德詔爵，以功詔祿，以能詔事，以久奠食。”德，謂賢者。凡賢者能者，皆先試以事，久而有功，然後授之以爵，得祿食也。爵以貴乎人，天下之人共貴之，祿以富乎人，天下之人共富之。高冠大蓋，吏民趨走，事之恐不及，天下共貴之也，稟財給穀，農桑賦貢，奉之而不暇，天下共富之也。

관인 제2

「사사(司士)」⁸⁵⁶에 “군신(群臣)의 판(版:名籍)을 관장한다.....덕(德)으로써 아뢰어 ‘작(爵)’을 주고, 공(功)으로써 아뢰어 ‘녹(祿)’을 주고, 능(能)으로써 아뢰어 일을 주고, 일을 오래하여 이루어내면 ‘사(食:稍食)’를 정한다.”라고 하였다. ‘덕(德)’은 현자(賢者)를 말한다. 무릇 현자와 능자(能者)는 모두 먼저 일로써 시험하고, 오래하여 공이 있고 난 뒤에 ‘작’을 주어 ‘녹’과 ‘사’를 얻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작’으로써 사람들 보다 귀하게 하는 것은 천하의 사람들이 함께 귀하게 대우하는 것이요, ‘녹’으로써 사람들 보다 부하게 하는 것은 천하의 사람들이 함께 부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고관(高冠)과 대개(大蓋)를 관리와 백성들이 뛰어다니면서 섬기는데 미치지 못할까 염려하는 것은 ‘천하가 함께 귀하게 대우하는 것’이요, 능재(稟財)와 급곡(給穀)을 농부와 병나무 키우는 사람이 공물을 바치면서 받들기에 겨를이 없는 것은 ‘천하가 함께 부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天下共貴之而貴非其人，天下共富之而富非其人，則君命果義乎？衆心果服乎？且人各有能有不能，孟公綽不可以爲滕薛大夫，裨諶謀於國則否，況其下者乎？苟非試其事考其功，而遽與之爵祿，則曠天官敗公事，何足道哉？

856) 「사사(司士)」: 『周禮』「夏官司馬下」.

천하가 함께 귀하게 대우하는데 ‘귀’가 ‘그 사람’이 아니요, 천하가 함께 부하게 만들어 주는데 ‘부’가 ‘그 사람’이 아니라면 임금의 명령이 과연 의로운 것인가? 군중의 마음이 과연 복종하겠는가? 또한 사람이 각각 ‘능’이 있고 ‘불능’이 있으니, “맹공작(孟公綽)은 등(滕)나라와 설(薛)나라의 대부가 될 수 없다”라고 하였고,⁸⁵⁷⁾ “비심(裨諶)은 국읍(國邑)에 모의하면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하였는데,⁸⁵⁸⁾ 하물며 그 아래의 사람이야? 진실로 그 일을 시험하고 그 공을 고찰하지 않은 채, 문득 ‘작록’을 쥐버리면 천관(天官)을 비우고 공사(公事)를 망치는 것을 어찌 족히 말하겠는가?

「王制」曰：“論定然後官之，任官然後爵之，位定然後祿之。” 所謂官之者，使試守也。堯舜豈不聖而試臣以職，慎之至也。若是，則賢者必用，不肖者必舍，能者必行，否者必藏。嗇夫之印綬，不可以幸而得也，奚高位之辱哉？

『예기』「왕제」에 “논의⁸⁵⁹⁾가 정하여지고 난 뒤에 벼슬을 주며, 벼슬을 맡기고 난 뒤에 작위를 주며, 작위가 정하여지고 난 뒤에 녹을 준다”라고 하였다. 이른바 ‘벼슬을 준다’는 것은 시험삼아 지키게 해보는 것이다. 요순이 어찌 성인이 아닐까마는 신하를 직책으로써 시험한 것은 삼감의 지극함이다. 이와 같이 하면 ‘현자’는 반드시 임용되고 ‘불초자’는 반드시 버려질 것이요, ‘능자’는 반드시 행하고 ‘불능자’는 반드시 감춰질 것이다. 색부(嗇夫)⁸⁶⁰⁾의 인수(印綬)도 요행으로 얻을 수 없는데 어떻게 높은 자리를 욕되게 하겠는가?

夫位有高卑，祿有厚薄，言其操柄，則無所不重。州縣之職，前世以爲徒勞者，而民命繫之，未聞明試其功而居位受祿。一官之效，則仕而後學之，有美錦者，不使人學制

857) 맹공작(孟公綽).....하였고: 魯나라 大夫인 孟公綽은 청렴하고 욕심이 적어 큰 나라의 가신 노릇은 잘 하였으나 재주가 짧아서 복잡하고 책임질 일이 많은 작은 나라의 대부 노릇 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말이다. 『論語』「憲問」 12장. “子曰，孟公綽，爲趙魏老則優，不可以爲滕薛大夫.”

858) 비심(裨諶)은.....하였는데: 鄭나라 대부인 裨諶의 모의는 통하는 곳이 있고 안통하는 곳이 있다는 말이다. 『左傳』襄公 31年條. “裨諶能謀，謀於野則獲，謀於邑則否.”

859) 논의: 官材를 논의한 것이다. 인용문 앞에 “司馬辨論官材，論進士之賢者，以告于王而定其論.”이라 하였다.

860) 색부(嗇夫): 「司空」의 屬官으로 群吏와 百姓의 檢束을 임무로 한다.

焉。民所以死生貧富顧不重哉!

무릇 ‘위(位)’는 높고 낮음이 있으며 ‘녹’은 후함과 박함이 있으나 그 권병(權柄)을 잡은 것으로 말하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주현(州縣)의 직책은 전세(前世)에 ‘속절없이 수고롭기만 한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백성들의 목숨이 매어 있는데도 “그 공을 밝게 시험하여 자리에 거하고 녹을 받는다”라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 한 관직의 효험은 곧 벼슬을 한 이후에 배워가는 것이니 아름다운 비단이 있는 자는 사람들이 가위질하는 것을 배우게 하지 않는다.⁸⁶¹⁾ 백성들이 죽고 살고 가난하고 부유한 것은 돌아봄에 중요하지 아니한가!

官人第三

「大宰」“歲終，則令百官府各正其治，受其會，聽其致事，而詔王廢置。三歲，則大計群吏之治而誅賞之。”「宰夫」“歲終，則令群吏正歲會，月終，則令正月要，旬終，則令正日成，以考其治。治不以時舉者，以告而誅之。”「司會」“以參互考日成，以月要考月成，以歲會考歲成。以周知四國之治，以詔王及「冢宰」廢置。”

관인 제3

「대재(大宰)」⁸⁶²⁾에 “해가 마치면 모든 관부(官府)로 하여금 각각 그 다스린 것을 문서로 바르게 처리하도록 하고, 그 회계를 받아 그 일을 이룬 것을 청단하여 왕에게 ‘폐치(廢置)’를 아뢴다. 3년이 되면 군리(群吏)의 치적을 크게 셈하여 책임을 묻거나 상을 준다.”라고 하였고, 「재부(宰夫)」⁸⁶³⁾에 “해가 마치면 군리(群吏)로 하여금 ‘세회(歲會)’를 정리하게 하고, 달이 마치면 하여금 ‘월요(月要)’를 정리하게 하고, 열흘이 마치면 하여금 ‘일성(日成)’을 정리하게 하여 그 치적

861) 아름다운.....않는다. 아름다운 비단은 大官과 大邑을 비유한 것이고, ‘制’는 ‘浴’의 의미이다. 초보자에게 큰 벼슬과 큰 읍을 다스리게 할 수 없는 것은 초보자에게 좋은 비단을 맡겨 가위질 연습하게 할 수 없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左傳』襄公 31年條에서 鄭나라 子産이 한 말이다. “子有美錦，不使人學製焉。”

862) 「대재(大宰)」: 『周禮』「天官冢宰」.

863) 「재부(宰夫)」: 『周禮』「天官冢宰」.

을 고찰한다. 치적을 때에 맞게 올리지 않는 자는 「총재(冢宰)」에게 고하여 책임을 묻게 한다.”라고 하였고, 「사회(司會)」⁸⁶⁴에 “‘참호(參互)’⁸⁶⁵로써 하루에 이룬 일의 문서를 점검하고, ‘월요’로써 한달 동안 이룬 일의 문서를 점검하고, ‘사회’로써 일년 동안 이룬 일의 문서를 점검한다. 4방 제후국의 치적을 두루 알아 내어 왕과 「총재」에게 ‘폐치’를 아뢴다.”라고 하였다.

歲計曰會，月計曰要，日計曰成。凡百官府，旬終月終，皆考其治狀，若治不以時舉者，「宰夫」以告「冢宰」而責之。至于歲終又考，非直責之而已，其有功無功，「司會」以詔「冢宰」，「冢宰」以詔王而廢置之。置者進其爵，廢者退其爵也。及三歲則「冢宰」大計其治，大無功，不徒廢，必罪之。大有功，不徒置，必賞之也。

일년의 결산을 ‘회(會)’라 하고, 한달의 결산을 ‘요(要)’라 하고, 하루의 결산을 ‘성(成)’이라 한다. 무릇 모든 관부는 열흘이 마치고 한달이 마치면 모두 그 치적의 상황을 고찰하는데 만약 치적을 때에 맞춰 올리지 않는 자는 「재부」가 「총재」에게 보고하여 책임을 묻게 한다. 일년이 마침에 이르러 또 고찰하는데 다만 책임을 물을 따름만 아니라 그 공이 있고 공이 없음을 「사회」가 「총재」에게 아뢰고, 「총재」는 왕에게 아뢰어 ‘폐치’하게 한다. ‘치(置)’라는 것은 그 작위를 나아가게 하는 것이요, ‘폐(廢)’라는 것은 그 작위를 물러나게 하는 것이다. 3년이 되면 「총재」는 그 치적을 크게 셈하여 크게 공이 없으면 ‘폐’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단죄한다. 크게 공이 있으면 ‘치’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상을 준다.

噫！先王所以課吏考功，如是其密也。日入其成，是無一日而可敖盪，歲終廢置，是無一歲而不勸懲。三年有成，則申之以誅賞。有功者驟獲其利，無功者卒伏其辜。雖能言之類，亦知勸勉愧恥矣，況智者乎！「舜典」“三載考績，三考黜陟幽明。”彼三歲而一考，九歲而後黜陟，蓋帝道寬簡，抑時世之然，未若周公之典垂後昆之臚也。

아, 선왕이 관리를 살피고 공을 고찰한 것은 이와 같이 치밀하였다. 날마다 그

864) 「사회(司會)」: 『周禮』「天官冢宰下」.

865) 참호(參互): 鈎考官인 「司會」와 「司書」와 「職內」와 「職歲」등이 담당업무인 행정, 세입, 세출의 결산을 맞추는 것을 말한다.

성취를 들이게 하는 것은 이는 하루라도 오탕(敖盪)⁸⁶⁶이 없게 하는 것이요, 해가 마치면 ‘폐치’하는 것은 이는 일년이라도 권징(勸懲)하지 않음이 없다는 것이다. 3년에 성패가 있으면 꾸짖음과 상을 펼친다. 공이 있는 자는 그 이득을 빨리 얻게 하고, 공이 없는 자는 그 죄를 기어이 묻는다. 비록 말만 능한 무리라도 또한 권면과 부끄러움을 알게 될 것인데 하물며 지혜로운 자들이야! 『서경』「순전(舜典)」에 “3년에 치적을 고찰하며, 3고(三考:9年)에 어두운 자와 밝은 자를 내치고 올린다.”라고 하였다. 저 3년에 한번 고찰하고 9년 이후에 출척(黜陟)한 것은 대개 제(帝)의 도가 너그럽고 간소하였거나 아니면 그 당시 세상이 그러하였던 것이니, 주공의 법이 후손에게 올바름을 드리운 것과 같지 않다.

董仲舒曰：“古所謂功者，以任官稱職爲差，非謂積日累久也。故小材雖累日，不離於小官，賢材雖未久，不害爲輔佐。”必也不求功實，而以日月爲限，三年而遷一官，則人而無死，孰不可公卿者乎？

동중서가 말하기를 “옛날의 이른바 ‘공(功)’이란 것은 벼슬을 맡겨 직무에 맞는가의 여부로써 차등을 둔 것이니 ‘날짜 쌓인 것이 오래되었음’을 말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소재(小材)는 비록 날짜가 쌓였더라도 소관(小官)을 벗어나지 못하고, 현재(賢材)는 비록 오래되지 않았더라도 보좌(輔佐)가 되기에 해롭지 않다.”⁸⁶⁷라고 하였다. 반드시 공과 실적을 구하지 아니하고 날과 달로써 한계를 삼아 3년에 하나의 관직을 옮기게 한다면 사람이 죽지 않을 경우에 공경(公卿)이 불가능한 자가 누구이겠는가?

官人第四

「冬官考工」注 “其曰某氏者，官有世功，若族有世業，以氏名官者也。”官有世功，則以官爲氏，若「馮相氏」，「保章氏」，「師氏」，「保氏」，「韋氏」，「裘氏」，「冶氏」之類，是也。族有世業，則以氏名官，若「桃氏」爲劍，「築氏」爲削，「鳧氏」爲鍾，「栗氏」爲量之類，是也。甚矣，事之不可以不常也。

866) 오탕(敖盪): ‘敖’는 遊戲, ‘盪’은 放蕩함을 말한다. 『漢書』「魏相丙吉傳」顏師古의 注.

867) 옛날의.....않다: 『漢書』「董仲舒傳」.

관인 제4

「동관고공기(冬官考工記)」의 주(注)⁸⁶⁸에 “그 가론 ‘아무개씨’ 라는 것은 관(官)에 대대로 공이 있거나, 족(族)에 대대로 업이 있어 ‘씨(氏)’로써 관을 이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관’에 대대로 공이 있으면 ‘관’으로써 ‘씨’를 삼으니 「빙상씨(馮相氏)」⁸⁶⁹, 「보장씨(保章氏)」⁸⁷⁰, 「사씨(師氏)」⁸⁷¹, 「보씨(保氏)」⁸⁷², 「위씨(韋氏)」, 「구씨(裘氏)」⁸⁷³, 「야씨(冶氏)」⁸⁷⁴의 종류 같은 것이 이것이다. 족(族)에 대대로 업이 있으면 ‘씨’로써 관을 이르는 하니 「도씨(桃氏)」⁸⁷⁵가 검(劍)을 만들고, 「축씨(築氏)」⁸⁷⁶가 삭(削)을 만들고, 「부씨(鳧氏)」⁸⁷⁷가 종(鍾)을 만들고, 「울씨(栗氏)」⁸⁷⁸가 양(量)을 만드는 종류 같은 것이 이것이다. 심하다, 일이 ‘항상(恒常)’하지 않을 수 없음이여.

『易』曰：“天地之道，常久而不已也”。“日月得天而能久照，四時變化而能久成，聖人久於其道而天下化成。”孔子曰：“如有王者，必世而後仁。”“善人爲邦百年，可以勝殘去殺矣。”夫以聖人之德，履天子之位，尚曰久於其道必三十年，必百年而後仁政可成，殘殺可去，況於中人以下，分職授政，而可以不久者乎？是故先王建官，有世守之，至以爲氏也。漢文景至武帝之初，國家無事，爲吏者長子孫，居官者以爲姓號。倉氏庾氏是也。然則古之治天下，皆如此乎？

868) 주(注): 鄭玄의 注를 말한다. 인용문은 「考工記」序頭의 “攻木之工.....搏埴之工, 陶旒.”에 대한 注이다.

869) 「빙상씨(馮相氏)」: 『周禮』「春官宗伯下」. 12歲, 12月, 12辰, 10日, 28星의 位를 관장한다.

870) 「보장씨(保章氏)」: 『周禮』「春官宗伯下」. 天星을 관장한다. 星辰日月의 變動을 기록하며 천하의 變천을 보아 吉凶을 變별한다.

871) 「사씨(師氏)」: 『周禮』「地官司徒下」. 왕에게 善道로써 告하는 것을 관장한다.

872) 「보씨(保氏)」: 『周禮』「地官司徒下」. 왕의 잘못을 간하는 것을 관장한다.

873) 「위씨(韋氏)」, 「구씨(裘氏)」: 「韋氏」와 「裘氏」는 둘 다 「考工記」에 이름은 있으나 구체적인 직무는 사라져서 전하지 않는다.

874) 「야씨(冶氏)」: 『周禮』「冬官考工記」. 殺矢, 刃, 戈등을 제작한다.

875) 「도씨(桃氏)」: 『周禮』「冬官考工記」.

876) 「축씨(築氏)」: 『周禮』「冬官考工記」.

877) 「부씨(鳧氏)」: 『周禮』「冬官考工記」.

878) 「울씨(栗氏)」: 『周禮』「冬官考工記」.

『주역』에 가로대⁸⁷⁹⁾ “천지의 도는 상구(常久)하여 그치지 않는다.....해와 달이 하늘의 순리를 얻어 능히 오랫동안 비추며, 4시(四時)가 변화하여 능히 오랫동안 이루며, 성인이 그 도에 오래하여 천하의 교화가 완성된다.”라고 하였고, 공자는 말하기를 “만약에 왕자(王者)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30년 이후에 인(仁)이 된다.⁸⁸⁰⁾ 선인(善人)이 나라 다스리기를 100년 하면 잔악한 사람을 이기고 사형을 없앨 것이다.⁸⁸¹⁾”라고 하였다. 무릇 성인의 덕으로써 천자의 자리를 밟고서도 오히려 가로대 “그 도에 오래하여 반드시 30년, 반드시 100년 이후에 인정(仁政)을 완성할 수 있으며, 잔(殘)과 살(殺)을 없앨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하물며 중인(中人) 이하에게 직(職)을 나누고 정사를 주되 오랫동안 시키지 않는 것이 되겠는가? 이러하므로 선왕이 관(官)을 세우고 대대로 지키는 것이 있게 하여 ‘씨’를 삼음에 이른 것이다. 한나라 문제와 경제 연간에서 무제의 초기까지 국가가 일이 없어 관리가 되는 자는 자손을 기르고, 관직에 거한 자는 성호(姓號)를 삼았다.⁸⁸²⁾ 창씨(倉氏)와 유씨(庾氏)가 이것이다.⁸⁸³⁾ 그렇다면 옛날에 천하를 다스림이 모두 이와 같았던 것인가?

吏之於民，必相知心然後治也。吏知民心則明，明則政平矣。民知吏心則信，信則令行矣。欲相知心，豈一朝一夕而可哉？上下未相知，或知之未久，遽委而去之，後來者亦如此，則是吏未嘗知民心，民未嘗知吏心。吏以所治爲傳舍，事或不舉，則曰以待後人，民視所屬如過客，理或不勝，亦曰以待後人，官何以修？衆何以服？謂其有功邪，進其爵可也，重其賞可也。如其職事，則久之爲貴，故漢有當遷而增秩留者。矧伊無功之人，而可虛受祿食，往來於道路間邪！

879) 『주역』에 가로대: 「恒」卦 象傳에 나오는 말이다. 인용문은 ‘常久’로 되어 있으나 『周易』에는 ‘恒久’로 되어 있다. ‘恒’과 ‘常’은 같은 것이지만 『周易』은 「恒」卦이므로 당연히 ‘恒’으로 썼으나, 李覯는 위에서 ‘常’을 언급하였으므로 의도적으로 ‘常’이라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 착오인지 알 수 없다.

880) 만약에.....된다: 『論語』「子路」 12장.

881) 선인(善人)이.....것이다: 『論語』「子路」 11장의 말인데 공자의 말이 아니라 공자가 인용한 말이다. “子曰，善人爲邦百年，亦可以勝殘去殺矣，誠哉，是言也!”

882) 한나라.....삼았다: 『史記』「平準書」와 『漢書』「食貨志」에 모두 나온다.

883) 창씨(倉氏).....이것이다: 司馬遷이나 班固의 말이 아니라 『漢書』에 注釋한 如淳의 말이다.

관리는 백성에게 반드시 서로 마음을 알고 난 뒤에 다스려야 한다. 관리가 백성의 마음을 알면 밝을 것이요, 밝으면 정사가 태평하다. 백성이 관리의 마음을 알면 믿을 것이요, 믿으면 명령이 행해진다. 서로 마음을 알고자 하는데 어찌 하루 아침과 하루 저녁에 가능하겠는가? 위아래가 서로 알지 못하거나 혹은 아는 것이 오래되지 않았는데 문득 버리고 가고, 뒤에 오는 자도 또한 이와 같다면 이는 관리가 일찍이 백성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백성이 일찍이 관리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관리는 다스리는 곳을 전사(傳舍:旅館)로 여기고 일이 혹 거행되지 않으면 가로대 “다음 사람을 기다린다.”라고 하며, 백성은 관리 보기를 지나가는 손님과 같이 하여 이치에 혹 이기지 못하거든 또한 가로대 “다음 사람을 기다리자.”라고 하니, 관(官)이 어찌 닷일 것이며, 군중이 어찌 복종하겠는가? 이를테면 그 공이 있는가. 그 작위를 올리는 것이 옳고, 그 상을 중하게 하는 것이 옳다. 그 직사(職事)는 곧 오래하는 것이 귀함이 되므로 한나라 때는 마땅히 옮겨야 하는데 질(秩)을 더하여 머무르게 한 자도 있었다.⁸⁸⁴⁾ 하물며 저 공도 없는 인간이 헛되이 녹식(祿食)을 받고서 도로 사이에 왕래하는 것이야!

884) 한나라.....있었다: 『漢書』권75 「眭兩夏侯京翼李傳」에 焦延壽의 秩을 더하여 小黃에 계속 머무르게 한 이야기가 전한다.

제13장 『이구집』 권12 官人5-官人8

李觀集卷第十二

官人第五

「地官」序, “鄉老, 二鄉則公一人.” 老, 尊稱也. 王置六鄉, 則公有三人也. 三公者, 內與王論道, 中參六官之事, 外與六鄉之教, 其要爲民, 是以屬之鄉焉. 誠哉! 民事之重, 宰相所宜躬親也. 以三公之爵而聯六鄉之吏, 非躬親而何? 召公爲伯, 聽男女之訟, 不重煩勞百姓, 止舍小棠之下, 國人被其德, 說其化, 思其人, 愛其樹, 「甘棠」之所爲作也. 而陳平曰: “決獄責廷尉, 錢穀責治粟內史.” 丙吉謂, “宰相不親小事.” 何也? 苟決獄不平, 錢穀出入不節, 民鬥相殺傷不止, 而宰相不知, 尚可調和陰陽, 順四時, 遂萬物之宜也哉? 此皆華言誤天下事, 慎聽之也.

관인 제5

「지관(地官)」의 서(序)에 “향노(鄉老)는 2향에 곧 공(公) 1인이다.”라고 하였다. ‘노(老)’는 존칭이다. 왕이 6향을 설치하니 곧 공은 3인이 있는 것이다. ‘3공’은 안으로 왕과 더불어 도를 논하며, 중앙에서 6관(六官)의 일에 참여하며, 밖으로 6향의 교화에 관여하는데 그 요체는 백성을 위함이니 이러므로써 ‘향’에 속하게 한 것이다.⁸⁸⁵⁾ 진실하다, 백성에 관한 일의 중요함을 재상이 마땅히 몸소 친히 함이여, 3공의 작위로써 6향의 관리에 연결되었으니 몸소 친히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소공(昭公)이 백(伯)이 되어 남녀의 송사를 청단할 때, 백성을 거듭 번거롭고 수고롭게 하지 않으려고 작은 팔배나무 아래에 머물렀는데 나랏사람들이 그 덕을 입고 그 교화를 기뻐하며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나무를 공경하였으니,⁸⁸⁶⁾ 이때문에 『시경』의 「감당(甘棠)」편이 지어졌던 것이다. 그런데 진평(陳平)은 말하기를 “결옥(決獄)은 정위(廷尉)에게 책임을 묻고 전곡(錢穀)은 치속내사

885) ‘노(老)’는.....것이다: 鄭玄의 注이다.

886) 소공(昭公)이.....공경하였으니: 『毛詩正義』에 있는 鄭玄의 箋이다.

(治粟內史)에게 책임을 묻는다.”⁸⁸⁷)라고 하였고, 병길(丙吉)은 이르기를 “재상은 작을 일을 친히 하지 않는다.”⁸⁸⁸)라고 한 것은 무엇인가? 진실로 ‘결옥’이 공평하지 못하고 ‘전곡’의 출입이 절도에 맞지 않으며 백성들이 싸워 서로 죽이고 상해를 입히는 것이 멈추지 않는데 재상은 알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음양을 조화하고 4시(四時)에 순응하며 만물의 마땅함을 이루게 한다.”⁸⁸⁹)라고 하는 것이 가당한가? 이는 모두 화려한 말로 천하의 일을 그르치는 것이니 삼가 들어야 한다.

故先王以民惟⁸⁹⁰)邦本，造次顛沛無或忘之。既使大臣爲鄉老，又取其鄉之人爲吏，所謂“使民興賢，出使長之，使民興能，入使治之。”者也。蓋使民自舉能者，因入之，而使之治民之貢稅田役於內，謂爲「比長」以上之官也。夫能盡知人之情僞，與其土所有，其俗所宜，莫若其鄉之人也。因以爲吏，孰不治乎？

그러므로 선왕은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⁸⁹¹)라고 하여 조차(造次)·전패(顛沛)라도 혹여 잊음이 없었다. 이미 대신으로 하여금 ‘향노’를 삼고 또 그 ‘향’의 사람을 취하여 관리를 삼았으니 이른바 “백성이 ‘어진 이’를 추천하게 하고, ‘향’을 나와서 ‘장(長)’을 하게 하며, 백성이 ‘능한 이’를 추천하게 하고, ‘향’에 들어가 다스리게 한다.”⁸⁹²)라는 것이다. 대개 “백성들이 스스로 ‘능한 자’를 천거하게 하고, 인하여 ‘향’에 들어가 백성의 공세(公稅)와 전역(田役)을 안에서 다스리게 한다.”⁸⁹³)는 것은 「비장(比長)」 이상의 관리가 뭘을 말한 것이다. 무릇 사람의 정위(情僞)와 그 땅의 소유(所有)와 그 풍속의 마땅함을 능히 다 아는 것은 그 ‘향’의 사람 만한 것이 없다. 인하여 관리로 삼았으니 누군들 다스리지 못할 것인가?

887) 결옥(決獄)은.....묻는다: 『史記』권56 「陳丞相世家」.

888) 재상은.....않는다: 『漢書』권74 「魏相丙吉傳」.

889) 음양을.....한다: 陳平이 孝文帝에게 재상의 책무에 관하여 답한 말이다. 앞의 “決獄은 廷尉에게 云云”에 이어지는 말이다. 『史記』권56 「陳丞相世家」.

890) 原註: ‘惟’는 光緒本에 ‘爲’로 되어 있다.

891) 백성이.....근본이다: 『書經』「五子之歌」. “民惟邦本，本固邦寧.”

892) 백성이.....한다: 『周禮』「鄉大夫」에 나오는 말이다.

893) 백성들이.....한다: 鄭玄의 注이다.

宓子賤爲單父宰，反命於孔子曰：“此國有賢不齊者五人，教不齊所以治者。”孔子曰：“惜哉！不齊所治者小，所治者大，則庶幾矣。”子賤受教於單父之人，猶以至治，況使單父之人躬爲吏乎？漢之賢人仕州郡者多矣，刺史二千石往往有能名，未必非其所助也。東西南北之人，言語猶未相通，而責之善政，難矣哉！

복자천(宓子賤)이 단보(單父)의 읍宰(邑宰)가 되어 공자에게 반명(反命:復命)하며 말하기를 “이 나라에는 저보다 어진 이가 다섯 사람이 있는데 저에게 다스리는 것을 가르쳐주었습니다.”라고 하자 공자가 말하기를 “애석하다, 자천이 다스리는 곳이 작음이어! 다스리는 곳이 컸다면 거의 이르렀을 것이다.”⁸⁹⁴⁾라고 하였다. 자천이 ‘단보’의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고서 오히려 다스림에 이르렀으니, 하물며 ‘단보’의 사람들을 몸소 관리가 되게 하였다면 어떠하였겠는가? 한(漢)나라의 어진 이가 주군(州郡)에 출사한 자가 많으니, 자사(刺史) 2,000석이 이따금 능력으로 이름남이 있었던 것은 그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동서남북의 사람이 언어가 오히려 서로 통하지 않는데 선정(善政)의 책임을 물으니, 어렵다!

官人第六

「大司徒」“凡建邦國，以土圭土其地而制其域。諸公之地，封疆方五百里，其食者半。諸侯之地，封疆方四百里，其食者參之一。諸伯之地，封疆方三百里，其食者參之一。諸子之地，封疆方二百里，其食者四之一。諸男之地，封疆方百里，其食者四之一。”大哉，封建之禮! 此周之所以本支百世乎!

관인 제6

「대사도(大司徒)」⁸⁹⁵⁾에 “무릇 방국(邦國)을 세움에 토규(土圭)⁸⁹⁶⁾로써 그 땅을

894) 복자천(宓子賤)이.....것이다. 『史記』권67 「仲尼弟子列傳」에 나오는 말이다. 子賤은 司馬遷에 의하면 공자보다 30세 연하의 제자로 이름은 ‘不齊’이며魯나라 사람이다. 인용문은 宋나라 單父의 邑宰로 갔을 때의 이야기이다.

895) 「대사도(大司徒)」: 『周禮』「地官司徒」.

해아리고 그 강역을 제정한다. 제공(諸公)의 땅은 봉강(封疆)이 사방 500리인데 그 조세를 먹는 것은 절반이다. 제후(諸侯)의 땅은 봉강이 사방 400리인데 그 조세를 먹는 것은 3분의 1이다. 제백(諸伯)의 땅은 봉강이 사방 300리인데 그 조세를 먹는 것은 3분의 1이다. 제자(諸子)의 땅은 봉강이 사방 200리인데 그 조세를 먹는 것은 4분의 1이다. 제남(諸男)의 땅은 봉강이 사방 100리인데 그 조세를 먹는 것은 4분의 1이다.”라고 하였다. 위대하다, 봉건의 예(禮)여! 이것이 주나라의 본종(本宗)과 지자(支子)가 백세를 이어간⁸⁹⁷⁾ 까닭이었도다!

荀卿有言：“兼制天下，立七十一國，姬姓獨居五十三人，而天下不稱偏焉。”富辰曰：“昔周公吊二叔之不咸，故封建親戚以蕃屏周。管蔡郟霍魯衛毛聃郟雍曹滕畢原鄆郇，文之昭也，邗晉應韓，武之穆也，凡蔣邢茅胙祭，周公之子也。”然則先王於其族類有不厚乎？

순경(荀卿)이 말하기를 “천하를 겸제(兼制)하여 71개의 나라를 세웠는데 희성(姬姓)이 홀로 53인이었으나 천하가 편벽이라고 칭하지 않았다.”⁸⁹⁸⁾라고 하였고, 부진(富辰)이 말하기를 “옛날 주공이 하(夏)·은(殷)의 숙세(叔世:末世)에 친척들이 함께하지 않은 것을 상심하였으므로 친척을 봉건하여 주나라의 번병(藩屏)으로 삼았습니다. 관(管)·채(蔡)·성(郟)·곽(霍)·노(魯)·위(衛)·모(毛)·담(聃)·고(郟)·옹(雍)·조(曹)·등(滕)·필(畢)·원(原)·풍(豐)·순(郇)은 문왕의 아들이요, 우(邗)·진(晉)·응(應)·한(韓)은 무왕의 아들이요, 무릇 장(蔣)·형(邢)·모(茅)·조(胙)·제(祭)는 주공의 아들입니다.”⁸⁹⁹⁾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선왕은 그 일가붙이[族類]에게 후대하지 않음이 있었는가?

詩曰：“凡今之人，莫如兄弟。”“兄弟鬪于牆，外御其侮。”平王東遷，而晉鄭是依，其世與年，過于所卜，由此塗出也。豈嘗有兄弟之國敢問鼎之輕重者哉？

896) 토규(土圭): 땅의 깊이와 해의 그림자를 측정하던 막대를 말한다. 길이는 1척 5촌이다. 鄭玄의 注에 “土圭，所以致四時日月之景也.”라고 하였다.

897) 본종(本宗)과..... 이어간: 『詩經』「文王」, “文王孫子, 本支百世.”

898) 천하를.....않았다: 『荀子』「儒效」.

899) 옛날.....아들입니다: 『左傳』僖公 24年條.

『시경』에⁹⁰⁰⁾ 가로대 “무릇 지금 사람은 형제 만한 것이 없네.....형제가 담 안에서는 싸우나, 밖으로는 그 업신여김을 막네.”라고 하였다. 평왕이 동천하여 진(晉)나라와 정(鄭)나라에 의지하였으니⁹⁰¹⁾ 그 세대와 연도가 예측했던 것 보다 지나쳤던 것은 이 길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다. 어찌 일찍이 형제의 나라가 감히 정(鼎)의 경중(輕重)을 묻는 자가 있겠는가?⁹⁰²⁾

故段灼表於晉武帝曰：“滅周者秦，非姬姓也，代漢者魏，非劉氏也。雖云割地，譬猶囊漏貯中，亦一家之有耳。縱令後世子孫還自相並，蓋亦楚人失繁弱於雲夢，尚未爲亡其弓也。其於神器不移他族，則始祖不遷之廟，萬年不改其名矣。”善哉！灼之知言也。漢雖有七國之變，而梁孝以睢陽城守。晉雖有八王之亂，而元帝以琅邪中興。魏氏王公，有名無實，禁防壅隔，同於囹圄。曹爽一死，而司馬家取之如運諸掌上。灼之言不亦善乎？

그러므로 단작(段灼)⁹⁰³⁾이 진무제(晉武帝)에게 표문을 올려 말하기를 “주나라를 멸한 것은 진(秦)나라이니 희성(姬姓)이 아니요, 한나라를 대신한 것은 위(魏)나라이니 유씨(劉氏)가 아닙니다. 비록 땅을 떼어준다고 말하였지만 비유하건대 창고 속에서 주머니가 새는 것과 같으니 또한 한 집안의 소유물일 뿐입니다.⁹⁰⁴⁾ 가령 후세 자손이 도로 스스로 서로 병합하면, 대개 또한 초나라 사람이 운몽(雲夢)⁹⁰⁵⁾에서 번약(繁弱:良弓名)을 잃었어도 오히려 그 활을 잃은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⁹⁰⁶⁾ 그 신기(神器)가 다른 종족에게 옮겨진 것이 아니라면 시조의 불천(不遷)의 사당도 만년 동안 그 이름을 고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좋다,

900) 『시경』에: 「小雅」 「常棣」 편을 말한다.

901) 평왕이.....의지하였으니: 『國語』 「周語」. “凡我周之東遷，晉鄭是依.”

902) 어찌.....있겠는가: 楚나라 莊王이 周天子에게 九鼎의 輕重을 묻은 것을 말한다. 『左傳』 宣公 3 年條. “楚子問鼎之大小輕重焉.”

903) 단작(段灼): 段灼의 字는 休然으로 敦煌 사람이다. 辯才가 있었다. 인용문은 『晉書』 권48 「段灼傳」에서 온 것이다.

904) 비록.....뿐입니다: 이 부분은 「段灼傳」의 「復陳時宜曰」 아래에 있고, 앞뒤 구절은 「表曰」 아래에 있는 것인데 李觀가 「表曰」의 구절 사이에 편집한 것이다.

905) 운몽(雲夢): 雲夢은 ‘雲夢大澤’ 이라 칭하기도 하는데 오늘날 湖北省 武漢 서북쪽 약 60km에 위치한다. 전국시대 사상 최대 淡水湖로서 옛날 楚나라 7大澤중의 하나였다.

906) 대개.....같습니다: 『公孫龍子』 「跡府」. “龍聞，楚王張繁弱之弓，載忘歸之矢，以射蛟兕於雲夢之圃，而喪其弓。左右請求之，王曰：‘止。楚王遺弓，楚人得之，又何求乎?’”에서 온 말이다.

단약의 말할 줄 앞이여! 한(漢)나라가 비록 7국의 번고가 있었더라도 양효왕(梁孝王)은 수양성(睢陽城)으로써 지켰고,⁹⁰⁷⁾ 진(晉)나라는 비록 8왕의 난이 있었더라도 원제(元帝)는 낭야(琅邪)로써 중흥하였다.⁹⁰⁸⁾ 위(魏·曹)씨의 왕공(王公)은 유명무실하니 금지하고 방어하며 막아버리고 간격을 두는 것이 감옥과 같았다.⁹⁰⁹⁾ 조상(曹爽)⁹¹⁰⁾이 한 번 죽자 사마(司馬)씨 집안이 취하기를 손바닥 위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하였다. 단약의 말이 또한 좋지 아니한가?

官人第七

「大行人」⁹¹¹⁾「掌大賓之禮及大客之儀，以親諸侯。春朝諸侯而圖天下之事，秋覲以比邦國之功，夏宗以陳天下之謨，冬遇以協諸侯之慮。時會以發四方之禁，殷同以施天下之政。」

관인 제7

「대행인(大行人)」⁹¹¹⁾에 “대빈(大賓)의 예(禮)와 대객(大客)의 의(儀)를⁹¹²⁾ 관장하여 제후와 친한다. 봄에 제후를 ‘조(朝:春見)’ 하여 천하의 일을 도모하고, 가을에 ‘근(覲:秋見)’으로써 방국(邦國)의 공(功)을 비교하며, 여름에 ‘종(宗:夏見)’으로써 천하의 모(謨)를 펼치고, 겨울에 ‘우(遇:冬見)’로써 제후의 여(慮)를 합친다. 시회(時會)로써 4방(四方)의 금(禁)을 발하고, 은동(殷同)으로써 천하의 정(政)을 시행한다.”라고 하였다.

907) 한나라가.....지켰고: 『史記』「梁孝王世家」. 梁孝王 劉武는 文帝의 아들이요 景帝의 친동생으로 吳楚7국의 난 때 梁나라의 수도인 睢陽城을 지켜 난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웠다.

908) 진(晉)나라는.....중흥하였다: 317년 당시 琅邪王이었던 司馬睿(276~323)가 혼란을 수습하고 建康에서 東晉을 건국한 것을 말한다. 『晉書』 권6 「中宗元帝」.

909) 위(魏)씨의.....같았다: 『三國志』「魏書」 권20 「燕王子」의 마지막에 나오는 陳壽의 評語에서 온 것이다. “評曰，魏氏王公，既徒有國土之名，而無社稷之實，又禁防壅隔，同於囹圄。”

910) 조상(曹爽): 曹爽(?~249)은 曹操의 侄孫으로 大將軍에 이르러 司馬懿와 함께 明帝를 輔佐하였으나 자만하여 司馬懿에게 피살되었고 인하여 조씨가 멸족되었다.

911) 「대행인(大行人)」: 『周禮』「秋官司寇下」.

912) 대빈(大賓)의.....의(儀)를: 鄭玄의 注에 “大賓，要服以內諸侯。大客，謂其孤卿。”이라고 하였다.

此六事者，以王見諸侯爲文。圖比陳協，皆考績之言。王者春見諸侯則圖其事之可否，秋見諸侯則比其功之高下，夏見諸侯則陳其謀之是非，冬見諸侯則合其慮之異同。六服以其朝歲，四時分來，更迭如此而徧。時會，無常期。諸侯有不順服者，王將有征討之事，則既朝，王命爲壇於國外，合諸侯而發禁命事焉。王十二歲一巡狩，若不巡狩則衆同。衆同者，六服盡朝。既朝，王亦命爲壇於國外，合諸侯而命其政。四時分來，歲終則徧矣。六服朝歲，則下文“侯服，歲一見”，“甸服，二歲一見”，“男服，三歲一見”，“采服，四歲一見”，“衛服，五歲一見”，“要服，六歲一見”，是也。

이 여섯가지 일은 왕이 제후를 보는 것으로써 문장을 만들었다. 도(圖)·비(比)·진(陳)·협(協)은 모두 고적(考績:考課)의 용어이다. 왕자(王者)가 봄에 제후를 보면 그 일의 가부(可否)를 도모하고, 가을에 제후를 보면 그 공의 고하(高下)를 비교하며, 여름에 제후를 보면 그 모의의 시비(是非)를 펼치고, 겨울에 제후를 보면 그 생각의 이동(異同)을 합친다. 6복(六服)⁹¹³⁾이 그 조회하는 해에 4시(四時)로 나누어 와서 번갈아들기를 이와 같이 하여 두루한다. ‘시회(時會)’는 일정한 시기가 없는 것이다. 제후 가운데 순복(順服)하지 않는 자가 있어 왕이 장차 정토(征討)의 일이 있으면 이미 조회를 하고 왕이 명하여 국외(國外)에 단(壇)을 만들고 제후를 모이게 하여 금(禁:九伐之法)을 발하고 일을 명한다. 왕이 12년에 한 번 순수(巡狩)하는데 만약 순수하지 않으면 은동(殷同)을 한다. ‘은동’이란 것은 6복이 모두 조회하는 것이다. 이미 조회를 하고 왕이 또한 명령하여 국외에 단을 만들고 제후를 모이게 하여 그 정(政:邦國之九法)을 명한다. 4시(四時)로 나누어 오게 하여 1년이 마치면 두루한다.⁹¹⁴⁾ ‘6복이 조회하는 해’는 곧 아래 문장에 “후복(侯服)은 1년에 한 번 본다.....전복(甸服)은 2년에 한 번 본다.....남복(男服)은 3년에 한 번 본다.....채복(采服)은 4년에 한 번 본다.....위복(衛服)은 5년에 한 번 본다.....요복(要服)은 6년에 한 번 본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夫君臣之禮不可以不接，不接則上恩不下流，下情不上通，嫌疑易以生，毀譽易以入。在『易』，天地不交則「否」，柔進而上行則“錫馬蕃庶，晝日三接”也。先王知其如

913) 6복(六服): 6服은 제후국을 말한다. 王城에서의 거리에 따라 사방으로 500리씩 侯服, 甸服, 男服, 采服, 衛服, 要服이 있다.

914) 이 여섯가지.....두루한다: 鄭玄의 注를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단 중간에 몇 자는 생략이 있다.

此, 故制諸侯之朝, 遠者不過六歲, 以之圖事比功陳謨協慮發禁施政, 則言何以不見納? 行何以不見知? 奸邪何以介其間? 左右何以塞其路? 漢刺史奏事京師, 其斯之謂乎!

무릇 임금과 신하의 예(禮)는 접하지 않을 수 없으니, 접하지 않으면 위의 은혜가 아래로 흐르지 아니하고 아래의 정이 위로 통하지 아니하여, 혐의(嫌疑)가 쉽게 생기고 훼예(毀譽)가 쉽게 들어온다. 『주역』에 있어서, 천지가 교통하지 않으면 「비(否)」가 되고,⁹¹⁵⁾ 유(柔)가 나아가 위로 가면⁹¹⁶⁾ (나라를 편안하게 하는 제후에게) “말을 많이 하사하고 낮에 세 번 접견한다.”⁹¹⁷⁾라고 하였다. 선왕은 그 이와 같음을 알았다. 그러므로 제후의 조회를 제정하되 멀리 있는 자도 6년을 지나지 않게 하고, 도사(圖事)와 비공(比功)과 진모(陳謨)와 협려(協慮)와 발금(發禁)과 시정(施政)으로써 하였으니, 곧 말이 어찌 가납되지 않을 것이며, 행실이 어찌 알려지지 않을 것이며, 간사한 사람이 어찌 그 사이에 개입될 것이며, 좌우가 어찌 그 길을 막을 것인가? 한나라때 ‘자사(刺史)가 경사(京師)에 그 일을 아뢰었다’⁹¹⁸⁾는 것은 이것을 말한 것이다.

石顯五鹿充宗疾京房, 欲遠之, 元帝以房爲魏郡太守. 房自請歲盡乘傳奏事, 天子許焉. 房未發, 詔止無乘傳奏事, 房意愈恐. 由此觀之, 臣子不得見君父, 其禍何如? 詩曰: “彼採葛兮, 一日不見, 如三月兮.” 一日之中, 尚曰如三月三秋三歲, 況其久者乎!

석현(石顯)과 오륙충종(五鹿充宗)이 경방(京房)을 미워하여 멀리 보내고자 하였는데, 원제(元帝:BC75~BC33)가 경방을 위군태수(魏郡太守)로 삼았다. 경방이 1년이 다하면 역말을 타고 일을 아뢴 것을 청하였는데 천자가 허락하였다. 경방이 아직 출발하지 않았는데 ‘역말을 타고 일을 아뢰는 것이 없도록 하라’라고 하

915) 천지가.....되고: 『周易』「否卦大象傳」.

916) 유(柔)가.....가면: 『周易』「晉卦象傳」.

917) 말을.....접견한다: 『周易』「晉卦象辭」. “晉, 康侯, 用錫馬蕃庶, 晝日三接.”

918) 자사(刺史)가.....아뢰었다: 『漢書』권84 「翟方進傳」에 “河平中, 方進轉爲博士. 數年, 遷朔方刺史, 居官不煩苛, 所察應條輒舉, 甚有威名. 再三奏事, 遷爲丞相司直.”이라는 문장의 ‘再三奏事’에 대한 顏師古의 注에 “刺史歲盡輒奏事京師也.”라고 하였다.

여 경방이 더욱 염려하였다.⁹¹⁹⁾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신자(臣子)가 군부(君父)를 볼 수 없게 된다면 그 화가 어떠하겠는가? 『시경』에⁹²⁰⁾ 가로대 “저 침을 캐러 간 이여! 하루 동안 못 본 것이 석달과 같구나!”라고 하였다. 하루 동안에도 오히려 ‘3월(三月)·3추(三秋)·3세(三歲)와 같다’라고 말하는데, 하물며 그보다 더 오래된 것이야!

官人第八

“「內小臣」, 奄上士四人”, “「寺人」, 王之正內五人”, “「內豎」, 倍寺人之數”, “「酒人」, 奄十人”, “「漿人」, 奄五人”, “「籩人」, 奄一人”, “「醯人」, 奄一人”, “「醢人」, 奄二人”, “「鹽人」, 奄二人”, “「冪人」, 奄一人”, “「內司服」, 奄一人”, “「縫人」, 奄二人”. “「舂人」, 奄二人”, “「饋人」, 奄二人”, “「藁人」, 奄八人”. “「守祧」, 奄八人”.

관인 제8

“「내소신(內小臣)」은 염상사(奄上士)가 4인(四人)이다.....「시인(寺人)」은 왕의 정내(正內:路寢)가 5인이다.....「내수(內豎)」는 「시인」의 수의 배(倍)이다.....「주인(酒人)」은 염(奄)이 10인이다.....「장인(漿人)」은 염이 5인이다.....「변인(籩人)」은 염이 1인이다.....「해인(醯人)」은 염이 1인이다.....「혜인(醢人)」은 염이 2인이다.....「염인(鹽人)」은 염이 2인이다.....「먹인(冪人)」은 염이 1인이다.....「내사복(內司服)」은 염이 1인이다.....「봉인(縫人)」은 염이 2인이다.” “「용인(舂人)」은 염

919) 석현(石顯)과.....염려하였다: 이 당시 환관 石顯이 中書丞으로서 전권을 행사하고, 자기 친구인 五鹿充宗을 尙書丞으로 삼아 전횡을 일삼자, 京房이 元帝에게 ‘巧佞’을 물리칠 것을 건의하였는데 이는 石顯일과를 지칭한 것이었다. 元帝가 ‘已諗’라고 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石顯일과가 京房을 견제하려 한 것이다. 결국 京房은 棄市되고 환관은 더욱 발호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漢書』권75 「睦兩夏侯京翼李傳」에서 인용한 것이다.

920) 『시경』에: 「王風」 「采葛」을 말한 것인데, 毛序에 “采葛, 懼讒也.”라고 하였다. 淫奔자가 침 캐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나타나지 않자 이를 그리워하는 사람의 마음을 빌어, 임금이 간사한 사람의 말을 듣고 신하를 멀리함을 비유한 것이다. 全詩는 다음과 같다. “彼采葛兮, 一日不見, 如三月兮./ 彼采蕭兮, 一日不見, 如三秋兮./ 彼采艾兮, 一日不見, 如三歲兮.”

이 2인이다.....「치인(饗人)」은 엄이 2인이다.....「고인(藁人)」은 엄이 8인이다.”
 “「수조(守祧)」는 엄이 8인이다.”⁹²¹⁾

「內小臣」稱士者，異其賢，其餘蓋皆不命也. 夫宦官之位，天象所有. 指其居次，則或在帷簿之內，論其職掌，則或聞床第之言. 固不可以詘辱俊乂，渾淆男女，其用腐身之類，是乃制事之宜矣. 然而先王不以恩奪義，不以私廢公，雖其褻臣，無得過寵. 奄稱士者，止於四人，況可爲卿大夫乎哉?

「내소신(內小臣)」에 ‘사(士)’라고 칭한 것은 그 어짐을 달리 표현한 것이니,⁹²²⁾ 그 나머지는 대개 모두 명을 받지 못한 것이다. 무릇 환관의 지위는 천상(天象)에 있는 것이다.⁹²³⁾ 그 머무르는 자리를 지적하자면 혹 침실 안에 있기도 하고, 그 직장(職掌)을 논하자면 혹 방중(房中)의 말을 듣기도 한다. 진실로 준예(俊乂)를 굴욕하거나 남녀를 혼효(渾淆)할 수 없으니, 그 부신(腐身:去勢)의 종류를 쓰는 것은 이는 곧 일을 제정함이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선왕은 은혜로써 의(義)를 빼앗지 아니하고, 사사로움으로써 공(公)을 폐하지 않았으니 비록 그 친압하는 신하일지라도 지나친 총애를 얻을 수 없었다. 엄인을 ‘사’라고 칭한 것이 4인에 그쳤으니, 하물며 경대부(卿大夫)가 될 수 있었겠는가?

漢文帝時，趙談驂乘，爰盎伏車前曰：“天子所與共六尺輿者，皆天下豪英. 今漢雖乏人，獨奈何與刀鋸之餘共載?” 如使之尸天官，又非驂乘之比也. 自鄭衆謀誅竇憲，爲大長秋封侯，其後孫程定立順之功，曹騰參建桓之策，續以五侯合謀，梁冀受鉞. 高冠長劍，紆朱懷金者，布滿宮闈，苴茅分土，南面臣人者，蓋以十數. 故曰：“三世以嬖色取禍，嬴氏以奢虐致災，西京自外戚失祚，東都緣閹尹傾國.” 豈不哀哉? 唐之北

921) 「내소신(內小臣)」은.....8인이다. 「內小臣」부터 「縫人」까지 12職은 天官소속이요, 「春人」「饗人」「藁人」등 3職은 地官소속이요, 「守祧」는 春官소속이다. 인용문은 이상 16職 모두 해당 職에서 奄人의 人員數만 표시한 것이다.

922) ‘사(士)’라고.....것이니: 鄭玄의 注이다. 다른 職의 奄人은 ‘士’라 칭하지 않는데 유독 「內小臣」에서 ‘士’라고 칭한 것은 賢行이 있어 命을 받아 특별히 ‘士’가 되었음을 표시한 것이라는 말이다.

923) 무릇.....것이다: 『後漢書』권78 「宦者列傳」의 序頭에 “易曰, ‘天垂象, 聖人則之.’ 宦者四星, 在皇位之側.”이라는 구절을 염두에 둔 것 같다.

司, 同歸于亂. 「說命」曰: “事不師古, 以克永世, 匪說攸聞.” 信矣!

한나라 문제 때 환관 조담(趙談)이 참승(駘乘)하자, 원앙(爰盎)이 수레 앞에 부복하여 말하기를 “천자가 6척의 어가를 함께 하는 자는 모두 천하의 호걸과 영웅입니다. 지금 한나라가 비록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홀로 어찌 환관과 함께 타십니까?”⁹²⁴⁾라고 하였다. 만약 천관(天官)을 주관하게 하였다면 또한 참승에 비할 것이 아니다. 정중(鄭衆)이 두헌(竇憲)을 주살할 것을 모의하여 대장추(大長秋)가 되고 후(侯)에 봉해지면서부터⁹²⁵⁾ 그 뒤 손정(孫程)은 순제(順帝)를 옹립하는 공을 정하였고, 조등(曹騰)은 환제(桓帝)를 세우는 책략에 참여하였으며, 계속하여 5후(五侯)⁹²⁶⁾가 함께 모의하자 양기(梁冀)가 부월(斧鉞)을 받았다.⁹²⁷⁾ 높은 갓을 쓰고 긴 칼을 차며 빨간 인끈을 휘감고 황금 도장을 품은 자가 궁중의 내전에 포진하여 가득차고, 띠[白茅]로 싸고 동호부(銅虎符)를 나누어⁹²⁸⁾ 신하와 인민에게 군림하는 자가 대개 열을 헤아렸다.⁹²⁹⁾ 그러므로 말하기를 “삼세(三世: 三代)는 폐색(嬖色)으로써 화를 취하였고, 영씨(嬴氏: 秦)는 사치와 학정으로써 재앙을 불렀으며, 서경(西京: 西漢)은 외척으로부터 천자의 자리를 잃었고, 동도(東都: 東漢)는 엄윤(閹尹: 宦官) 때문에 나라가 기울었다.”⁹³⁰⁾라고 하였으니 어찌 슬프지 아니한가? 당(唐)나라 때 북사(北司)⁹³¹⁾도 똑같이 혼란으로 돌아갔다.⁹³²⁾ 『

924) 한나라.....타십니까: 『漢書』권49 「爰盎鼂錯傳」.

925) 정중(鄭衆)이.....봉해지면서부터: 鄭衆은 和帝 때 中常侍로서, 당시 전권을 행사하던 大將軍 竇憲을 謀殺한 공으로 환관의 총책임 大長秋가 되었고, 국정에 참여하였으며 이후 鄴鄉侯에 봉해졌다. 范曄는 “中官用權, 自衆始焉.”이라고 하였다. 이 부분은 李觀가 『後漢書』권78 「宦者列傳」에서 鄭衆관련 기사를 요약한 것이다.

926) 5후(五侯): ‘5侯’는 順帝와 桓帝의 처남으로 ‘再世權戚’인 大將軍 梁冀를 誅殺한 공으로 侯에 봉해진 다섯 환관이다. 곧 新豐侯單超, 武原侯徐璜, 東武陽侯具瑗, 上蔡侯左悺, 汝陽侯唐衡이다.

927) 그 뒤.....받았다: 『後漢書』권78 「宦者列傳」의 序文에서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인용하였다.

928) 띠[白茅]로.....나누어: 제후를 봉할 때 각각 그 방면의 色土를 白茅로 싸고, 銅虎符를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한다.

929) 높은.....헤아렸다: 역시 「宦者列傳」을 옮겨 온 것인데, 앞 문장과는 사이에 생략된 부분이 있다.

930) 삼세(三世: 三代)는.....기울었다: 「宦者列傳」의 마지막 ‘論曰’에서 인용하였다.

931) 북사(北司): ‘北司’는 당나라 때 환관이 장악한 각종 기관을 의미한다. 宰相의 정부기구가 궁궐의 남쪽에 위치하여 ‘南衙’라 칭하였던 것에 대한 대칭으로, 주로 복문을 통해 출입하던 환관이 장악한 기관을 ‘北司’라고 한 것이다.

서경』「열명(說命)」에 “일이 옛날을 스승으로 삼지 않고서 능히 오랜 세월을 누렸다는 것은 열(說:傳說)이 들은 바가 아닙니다.”라고 하였으니, 진실하다!

932) 똑같이.....돌아갔다: 『書經』「蔡仲之命」에 “爲善不同, 同歸于治, 爲惡不同, 同歸于亂.”이라고 하였다.

제14장 『이구집』 권13 教道1-教道5

李觀集卷第十三

教道第一

立人以善，成善以教。教而不善邪，是堯舜之民鄙夫⁹³³)矣，不教而善邪，是桀紂之民可封矣。移風俗，斂賢才，未有不由此道也。故「大司徒」“以鄉三物，教萬民而賓興之。一曰六德，知仁聖義忠和，二曰六行，孝友睦婣任恤，三曰六藝，禮樂射御書數。”

교도 제1

사람을 세우는 것은 ‘선(善)’으로써 하고, ‘선’을 이루는 것은 ‘교(教)’로써 한다. 가르쳐도 선하지 않는다면 이는 요순의 백성 가운데 비부(鄙夫)요, 가르치지 않아도 선하다면 이는 걸주의 백성 가운데 봉할 만한 사람이다. 풍속을 옳기고 어진 인재를 거두는 것은 이 도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 있지 않다. 그러므로 「대사도(大司徒)」⁹³⁴)에 “‘향(鄉)’에 3물(三物)로써 만민을 가르쳐 국민으로 추천한다. 첫째는 가론 ‘6덕(六德)’이니 지(知)와 인(仁)과 성(聖)과 의(義)와 충(忠)과 화(和)요, 둘째는 가론 ‘6행(六行)’이니 효(孝)와 우(友)와 목(睦)과 인(婣)과 임(任)과 흠(恤)이요, 셋째는 가론 ‘6예(六藝)’니 예(禮)와 악(樂)과 사(射)와 어(御)와 서(書)와 수(數)이다.”라고 하였다.

物，猶事也。民三事教成，「鄉大夫」舉其賢者能者，以飲酒之禮，賓客之。既則獻其書於王矣。知，明於事。仁，愛人以及物。聖，通而先識。義，能斷時宜。忠，言以中心。和，不剛不柔。善於父母爲孝。善於兄弟爲友。睦，親於九族。婣，親於外親。任，信於友道。恤，振憂貧者。禮，五禮之義。樂，六樂之歌舞。射，五射之法。御，五御之節。書，六書之品。數，九數之計。

933) 原註: ‘夫’는 원래 ‘夫’로 되어 있었는데 正德本, 萬曆本, 光緒本에 근거하여 고쳤다.

934) 「대사도(大司徒)」: 『周禮』「地官司徒」.

‘물(物)’은 일과 같다. 백성에게 ‘3가지 일’로 가르침이 이루어지면 「향대부」는 그 가운데 현자(賢者)와 능자(能者)를 천거하여 「향음주」의 예로써 빈객으로 대우한다. 이미 예를 하였으면 왕에게 그 명단을 적은 것을 바친다. ‘지(知)’는 일에 밝은 것이다. ‘인(仁)’은 사람을 사랑하여 사물에 까지 미치는 것이다. ‘성(聖)’은 통하여 먼저 아는 것이다. ‘의(義)’는 능히 시의(時宜)를 판단하는 것이다. ‘충(忠)’은 말을 함에 속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화(和)’는 강하지도 않고 유하지도 않는 것이다.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효(孝)’가 된다. 형제에게 잘하는 것이 ‘우(友)’가 된다. ‘목(睦)’은 9족(九族)⁹³⁵⁾에게 친한 것이다. ‘인(媿)’은 외친(外親)에게 친한 것이다. ‘임(任)’은 우도(友道)에 신의가 있는 것이다. ‘恤(恤)’은 가난한 사람을 구원하고 근심하는 것이다. ‘예(禮)’는 5례(五禮)⁹³⁶⁾의 예의이다. ‘악(樂)’은 6악(六樂)⁹³⁷⁾의 가무이다. ‘사(射)’는 5사(五射)⁹³⁸⁾의 법이다. ‘어(御)’는 5어(五御)⁹³⁹⁾의 절차이다. ‘서(書)’는 6서(六書)⁹⁴⁰⁾의 품목이다. ‘수(數)’는 9수(九數)⁹⁴¹⁾의 계산이다.⁹⁴²⁾

“以鄉八刑，糾萬民，一曰不孝之刑，二曰不睦之刑，三曰不媿之刑，四曰不弟之刑，五曰不任之刑，六曰不恤之刑，七曰造言之刑，八曰亂民之刑。” 不弟，不事師長。造言，訛言惑衆。亂民，亂名改作，執左道以亂政也。

“‘향’에 ‘여덟가지 형벌’로써 만민을 규찰한다. 첫째는 가론 효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형벌이요, 둘째는 가론 동성(同姓) 친척과 화목하지 않는 것에 대한 형벌이요, 셋째는 가론 이성(異姓) 친척과 화목하지 않는 것에 대한 형벌이요, 넷째는 가론 공손하지 않는 것에 대한 형벌이요, 다섯째는 가론 친구들과 신의가

935) 9족(九族): 賈公彥의 疏에 “九族者，上至高祖，下至玄孫，旁及總麻之內也.”라고 하였다.

936) 5례(五禮): ‘五禮’는 鄭玄의 注에 의하면 吉禮, 凶禮, 賓禮, 軍禮, 嘉禮이다.

937) 6악(六樂): ‘六樂’은 鄭玄의 注에 의하면 雲門, 大咸, 大韶, 大夏, 大濩, 大武이다.

938) 5사(五射): ‘五射’는 鄭衆의 注에 의하면 白矢, 參連, 剡注, 襄尺, 井儀이다.

939) 5어(五御): ‘五御’는 鄭衆의 注에 의하면 鳴和鸞, 逐水曲, 過君表, 舞交衢, 逐禽左이다.

940) 6서(六書): ‘六書’는 鄭衆의 注에 의하면 象形, 會意, 轉注, 處事, 假借, 諧聲이다.

941) 9수(九數): ‘九數’는 鄭衆의 注에 의하면 方田, 粟米, 差分, 少廣, 商功, 均輸, 方程, 贏不足, 旁要이다.

942) ‘물(物)’은.....계산이다: 모두 鄭玄의 注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없는 것에 대한 형벌이요, 여섯째는 가론 가난한 사람을 근심하고 구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형벌이요, 일곱째는 가론 말을 지어내는 것에 대한 형벌이요, 여덟째는 가론 백성을 어지럽히는 것에 대한 형벌이다.”라고 하였다. ‘불제(不弟)’는 스승과 어른을 섬기지 않는 것이다. ‘조언(造言)’은 그릇된 말로 군중을 미혹하는 것이다. ‘난민(亂民)’은 관(官)과 물(物)의 이름을 바꾸고 법도를 변조하며 좌도(左道)를 잡아서 정사를 혼란케 하는 것이다.⁹⁴³⁾

大哉，先王之所以驅民而納之於善也！教以開其前，如得大路，終日行而弗迷失，刑以策其後，使不敢反顧。而況賓興以勸之哉！養天性，滅人欲，家可使得孝子，國可使得忠臣矣。學校不立，教法不行，人莫知何人可師，道莫知何道可學。耳何以爲正聲？目何以爲正色？口何以爲正言？身何以爲正行？明者幸而得之，昧者不幸而失之，將欲求腹心中林，訪忠信於十室，不易得矣。「小雅」「菁菁者莪」，孟氏君子三樂，善爲國者，可無意哉！

위대하다, 선왕이 백성을 몰아 선(善)으로 들어가게 함이여! 교육으로써 그 앞을 열어준 것은 마치 큰 길을 얻어 종일토록 행하여도 미혹되거나 잃지 않게 한 것과 같고, 형벌로써 그 뒤를 채찍질한 것은 감히 돌아보지 않게 한 것이다. 하물며 국빈으로 추천하여 권장함이야! 천성(天性)을 기르고 인욕(人欲)을 멸하여, 집안에서는 효자를 얻을 수 있게 하고 나라에서는 충신을 얻을 수 있게 하였다. 학교가 세워지지 않고 가르치는 법이 행하여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도(道)는 어떤 도를 배워야 할 것인지 알지 못하게 된다. 귀는 어떻게 바른 소리를 들을 것이며, 눈은 어떻게 바른 색을 볼 것이며, 입은 어떻게 바른 말을 할 것이며, 몸은 어떻게 바른 행동을 할 것인가? 밝은 자는 다행히 얻을 것이나 어두운 자는 불행하게도 잃을 것이니, 장차 복심(腹心)을 중림(中林)에서 구하고⁹⁴⁴⁾ 충신(忠信)을 10실(十室)에서 찾고자 하나⁹⁴⁵⁾ 쉽게 얻지 못할 것이다. 『시경』「소아」「청청자아(菁菁者莪)」⁹⁴⁶⁾와 맹씨(孟

943) ‘불제(不弟)’는.....것이다: 鄭玄의 注이다. 마지막의 ‘亂民’부분은 鄭玄이 『禮記』「王制」의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944) 복심(腹心)을.....구하고: 『詩經』「兔置」, “肅肅兔置, 施于中林. 赳赳武夫, 公侯腹心.”

945) 충신(忠信)을.....하나: 『論語』「公治長」 27장. “子曰, 十室之邑, 必有忠信, 如丘者焉, 不如丘之好

氏:孟子)의 군자삼락(君子三樂)⁹⁴⁷)을 나라를 잘 다스리려는 자는 뜻이 없으면 되겠는가!

敎道第二

「外饗」“邦饗耆老孤子，則掌其割亨之事。”謂養國老庶老者⁹⁴⁸)也。「酒正」“凡有秩酒者，以書契授之。”所秩者，謂老臣九十，日有秩也。夫養老之禮，自古帝王未始不隆之也。

敎道 제2

「외옹(外饗)」⁹⁴⁹)에 “나라에서 기로(耆老)⁹⁵⁰)와 고자(孤子)⁹⁵¹)를 대접하면 그 할평(割亨)의 일을 관장한다.”라고 하였으니, 국로(國老)와 서로(庶老)를 봉양함을 말한 것이다. 「주정(酒正)」⁹⁵²)에 “무릇 질주(秩酒)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서계(書契)로써 준다.”라고 하였다. ‘항상 주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은 ‘노신(老臣)이 90세가 되면 매일 항상 먹을 것을 공급한다’⁹⁵³)라는 것을 말한다. 무릇 양로(養老)의 예(禮)는 예로부터 제왕이 처음부터 응성하지 않음이 없었다.

「王制」曰：“凡養老，有虞氏以燕禮，夏后氏以饗禮，殷人以食禮，周人修而兼用之。五十養於鄉，六十養於國，七十養於學，達於諸侯。”“有虞氏養國老於上庠，養庶老於下庠，夏后氏養國老於東序，養庶老於西序，商人養國老於右學，養庶老於左學，周人養國老於東膠，養庶老於虞庠，虞庠在國之西郊。有虞氏皇而祭，深衣而養老。夏后

學也。”

946) 「청청자아(菁菁者莪)」: 毛序에 “「菁菁者莪，樂育材也，君子能長育人材，則天下喜樂之矣.”라고 하였다.

947) 군자삼락(君子三樂): 『孟子』「盡心上」 20장. “得天下英才而教育之，三樂也.”

948) 原註: ‘老者’는 원래 ‘老老’로 되어 있었으나 光緒本에 근거하여 고쳤다.

949) 「외옹(外饗)」: 『周禮』「天官冢宰」.

950) 기로(耆老): 賈公彥의 疏에 “云邦饗耆老者，謂死事者之父祖，兼有國老庶老.”라고 하였다.

951) 고자(孤子): 鄭玄의 注에 “孤子者，死王事者之子也.”라고 하였다.

952) 「주정(酒正)」: 『周禮』「天官冢宰」.

953) 노신(老臣)이.....공급한다: 『禮記』「王制」에 “九十，日有秩.”이라는 말을 풀이한 것이다. 『禮記正義』 鄭玄의 注에 “秩，常也，有常膳.”이라고 하였다.

氏⁹⁵⁴)收而祭, 燕衣而養老. 殷人昃而祭, 縞衣而養老. 周人冕而祭, 玄衣而養老.”

『예기』 「왕제」에 이르기를 “무릇 ‘양로’를 유우씨는 ‘연례(燕禮)’⁹⁵⁵로써 하였고, 하후씨는 ‘향례(饗禮)’⁹⁵⁶로써 하였고, 은나라 사람은 ‘사례(食禮)’⁹⁵⁷로써 하였고, 주나라 사람은 닦아서 검용하였다. 50세에 ‘향(鄉:鄉學)’에서 봉양하고, 60세에 ‘국(國:國中小學)’에서 봉양하고, 70세에 ‘학(學:大學)’에서 봉양하니, 제후들에게도 통하여 행하게 하였다.....유우씨는 ‘국로(國老)’를 상상(上庠:大學)에서 봉양하고 ‘서로(庶老)’를 하상(下庠:小學)에서 봉양하였으며, 하후씨는 ‘국로’를 동서(東序)에서 봉양하고 ‘서로’를 서서(西序)에서 봉양하였으며, 상나라 사람은 ‘국로’를 우학(右學)에서 봉양하고 ‘서로’를 좌학(左學)에서 봉양하였으며, 주나라 사람은 ‘국로’를 동교(東膠)에서 봉양하고 ‘서로’를 우상(虞庠)에서 봉양하였으니, 우상은 나라의 서교(西郊)에 있었다. 유우씨는 황(皇:冕屬)을 쓰고 제사를 지내며 심의(深衣:白布衣)를 입고 ‘양로’하였다. 하후씨는 수(收:冕屬)를 쓰고 제사를 지내며 연의(燕衣:黑衣)를 입고 ‘양로’하였다. 은나라 사람은 후(冏:冕屬)를 쓰고 제사를 지내며 호의(縞衣:白布深衣)를 입고 ‘양로’하였다. 주나라 사람은 면(冕)을 쓰고 제사를 지내며 현의(玄衣:緇衣)를 입고 ‘양로’하였다.”라고 하였다.

凡四代之制, 雖時有改, 然其道則莫之變也. 卿大夫之致仕者爲國老, 士爲庶老. 其餘非賢, 不可皆養, 亦引戶校年, 以行復除, “八十者, 一子不從政, 九十者, 其家不從政”也.

무릇 4대(四代)의 제도가 비록 시대에 따라 고친 것은 있었으나 그 도(道)는 변경하지 않았다. 경대부 가운데 치사(致仕:隱退)한 사람이 ‘국로’가 되고, 사(士)는 ‘서로’가 된다.⁹⁵⁸ 그 나머지는 어질지 않으면 모두 봉양할 수 없으나, 또한

954) 原註: ‘氏’는 원래 탈락되었었는데 『禮記』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955) 연례(燕禮): 『禮記正義』孔穎達의 疏에 “崔氏(崔靈恩)云, 燕者, 餞烝於俎, 行一獻之禮, 坐而飲酒, 以至於醉. 以虞氏帝道弘大, 故養老以燕禮.”라고 하였다.

956) 향례(饗禮): 『禮記正義』孔穎達의 疏에 “崔氏云, 饗則體薦而不食, 爵盈而不飲, 依尊卑而爲獻, 取數畢而已. 夏既受禪於虞, 是三王之首, 貴尙於禮, 故養老以饗禮, 相養敬也.”라고 하였다.

957) 사례(食禮): 『禮記正義』孔穎達의 疏에 “崔氏云, 不飲酒, 享大牢, 以禮食之, 恩人質素, 威儀簡少, 故養老以食禮.”라고 하였다.

호(戶)마다 나이를 비교하여 복제(復除:免役·免稅)를 행하니,⁹⁵⁹⁾ “80세가 되는 자는 한 아들의 정역(征役)을 면제하고, 90세가 되는 자는 그 집안의 정역을 면제한다.”⁹⁶⁰⁾라고 하였다.

養老之禮，有三老焉，有五更焉。天子無父矣，欲爲人子而不可得也，無兄矣，欲爲人弟而不可得也。是故父事三老，所以教天下之爲人子也，兄事五更，所以教天下之爲人弟也。親冕而總干，袒而割牲，執醬而饋，執爵而獻。祝饗在前，祝鯁在後，公卿奉杖，大夫進履。天子之尊，四海之內，其意⁹⁶¹⁾莫不爲臣。然而以父兄事人者，孝弟之心無所用之，因以教天下之孝弟也。天子之尊，且事他人爲父兄，天下之民，敢遺其親父親兄乎？是一舉而孝弟之風洋洋乎九州之外矣。噫，盛哉！

‘양로’의 예(禮)에 3로(三老)가 있고 5경(五更)이 있다.⁹⁶²⁾ 천자의 아버지가 안계실 때 자식이 되고자 하나 할 수 없고, 형이 없을 때 동생이 되고자 하나 할 수 없다. 이러하므로 ‘3로’를 아버지처럼 섬기는 것은 천하의 자식된 자를 가르치는 것이요, ‘5경’을 형처럼 섬기는 것은 천하의 동생된 자를 가르치는 것이다. 친히 면(冕)을 쓰고 간(干:盾)을 잡으며, 팔을 걸고 희생을 가르며, 마실 것을 잡아서 주며, 잔을 잡아서 드린다.⁹⁶³⁾ 축의(祝饗)는 앞에 있고 축경(祝鯁)은 뒤에 있으며,⁹⁶⁴⁾ 공경은 지팡이를 받들고 대부는 신을 올린다.⁹⁶⁵⁾ 천자의 존귀함으로 써 4해(四海)의 안이 그 뜻에 신하 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부형(父兄)으로써 섬기는 것은 효제(孝弟)의 마음을 쓸 곳이 없기에, 인하여 천하의 ‘효제’를

958) 경대부.....된다: 『禮記正義』孔穎達의 疏이다.

959) 그 나머지는.....행한다: 『禮記正義』鄭玄의 注이다.

960) 80세가.....면제한다: 『王制』의 문장이다.

961) 原註: ‘意’는 光緒本에 ‘衆’으로 되어 있다.

962) 3로(三老)가.....있다: 『禮記』「文王世子」鄭玄의 注에 “三老五更，各一人也，皆年老更事致仕者也。天子以父兄養之，示天下之孝悌也。名以三五者，取象三辰五星，天所因以照明天下者。”라고 하였고, 『禮記』「樂記」鄭玄의 注에 “三老五更，互言之耳，皆老人更知三德五事者也.”라고 하였는데 孔穎達의 疏에 “三德，謂正直·剛·柔。五事，謂貌·言·視·聽·思也.”라고 하였다.

963) 친히.....드린다: 『禮記』「樂記」의 문장을 편집한 것이다.

964) 축의(祝饗)는.....있으며: 『漢書』顏師古의 注에 ‘饗’는 ‘食不下’라고 하였다. ‘祝饗’는 음식이 목에 막힐까 염려하여 대비하고 있는 관원이요, ‘祝鯁’은 가시가 걸릴까 염려하여 대비하고 있는 관원이다.

965) 축의(祝饗)는.....올린다: 『漢書』권51 「賈鄒枚路傳」에서 인용하였다.

가르치는 것이다. 천자의 존귀함으로써 또한 타인을 섬겨 부형으로 삼는데, 천하의 백성이 감히 그 친부와 친형을 버리겠는가? 이 한 번의 거행으로 효제의 기풍이 구주의 밖에 까지 양양(洋洋)하였다. 아, 성대하다!

教道第三

「大司徒」“施十有二教”，“二曰：以陽禮教讓，則民不爭。”陽禮，謂鄉射飲酒之禮也.

교도 제3

「대사도(大司徒)」에 “12가지 가르침을 시행한다.....둘째는 가론 ‘양례(陽禮)로써 양보를 가르치면 백성이 다투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양례(陽禮)’는 향사례(鄉射禮)와 향음주례(鄉飲酒禮)를 말한 것이다.⁹⁶⁶⁾

「黨正」“國索鬼神而祭祀，則以禮屬民，而飲酒于序，以正齒位。一命齒于鄉里，再命齒于父族，三命而不齒。”國索鬼神而祭祀，謂歲十二月大蜡之時，建亥之月也。必正齒位者，爲民三時務農，將闕於禮，至此農隙，而教之尊長養老，見孝弟之道也。凡射飲酒，比⁹⁶⁷⁾鄉民雖爲卿大夫，必來觀禮。齒于鄉里者，以年與衆賓相次也。齒于父族者，父族有爲賓者，以年與之相次，異姓雖有老者，居於其上。不齒者，席於尊東，所謂僕也。

「당정(黨正)」⁹⁶⁸⁾에 “나라에서 귀신을 찾아 제사를 지내면 예(禮)로써 백성을 모으고, 서(序)에서 술을 마셔 치위(齒位)를 바로 잡는다. 일명(一命:下士)은 향리(鄉里)의 백성들과 나이로 자리를 정하고, 재명(再命:中士)은 부족(父族)과 나이로 자리를 정하고, 삼명(三命:上士)은 나이로 자리를 정하지 않는다.”라고 하였

966) ‘양례(陽禮)’는.....것이다. 鄭玄의 注이다.

967) 比: ‘比’는 『周禮』의 판본에 따라 ‘比’로 혹은 ‘此’로 되어 있다. 阮元の 校에 의거 ‘此’로 번역한다.

968) 「당정(黨正)」: 『周禮』「地官司徒」.

다. ‘국색귀신이제사(國索鬼神而祭祀)’는 12월 대사(大蜡)의 때, 건해(建亥)의 달을 말한 것이다. 반드시 치위(齒位)를 바로잡는 것은 백성이 3시(三時:春夏秋) 동안 농사에 힘쓰느라 또한 예에 빠뜨림이 있었으니, 이 농한기에 이르러 어른을 존경하고 노인을 봉양하는 것을 가르쳐 효제의 도를 보이는 것이다. 무릇 향사(鄉射)와 향음주(鄉飲酒)를 할 때, 이 향의 백성이 비록 경대부가 되었다더라도 반드시 와서 예를 참관한다. ‘치우향리(齒于鄉里)’라는 것은 나이로써 여러 빈객들과 함께 서로 차례를 하는 것이다. ‘치우부족(齒于父族)’이라는 것은 부족(父族) 가운데 빈객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나이로써 더불어 서로 차례를 하는 것이니, 다른 성씨라면 비록 연로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위에 거한다. ‘불치(不齒)’라는 것은 주준(酒樽)의 동쪽에 자리하는 것이니, 이른바 ‘준(僎)’⁹⁶⁹이다.⁹⁷⁰

大哉，先王之所以和鄉黨睦親戚有如此！夫彼一命者，天子之下士，公侯伯之上士，子男之大夫也，而與鄉里齒焉。再命者，天子之中士，公侯伯之大夫，子男之卿也，而與父族齒焉。三命者，天子之上士，公侯伯之卿也，雖云不齒，亦異席而已，非敢居其上也。然則貴而驕人，少而陵長者，不容於其間矣。

위대하다, 선왕이 향당을 화합하고 친척을 친목하게 함이 이와 같음이어! 무릇 저 ‘일명(一命)’이라는 것은 천자의 하사(下士)요, 공(公)·후(侯)·백(伯)의 상사(上士)이며, 자(子)·남(男)의 대부인데 향리(鄉里)와 더불어 나이로 자리한다. ‘재명(再命)’이라는 것은 천자의 중사(中士)요, 공·후·백의 대부이며, 자·남의 경인데 부족(父族)과 더불어 나이로 자리한다. ‘삼명(三命)’이라는 것은 천자의 상사(上士)요, 공·후·백의 경이니, 비록 ‘불치’라고 말하였으나 또한 자리가 다를 따름이지 감히 그 위에 거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귀하다고 남에게 교만하며, 젊은데 어른을 능멸하는 자는 그 사이에 용납되지 않았던 것이다.

「鄉飲酒義」曰：“六十者坐，五十者立侍，以聽政役，所以明尊長也。六十者三豆，七十者四豆，八十者五豆，九十者六豆，所以明養老也。民知尊長養老而后，乃能入孝

969) 준(僎): ‘僎’은 ‘遵’으로 쓰기도 하는데, 鄉人이 卿大夫가 되어 鄉飲酒禮를 참관하고 보살피는 사람을 말한다.

970) ‘국색귀신이제사(國索鬼神而祭祀)’는.....‘준(僎)’이다: 鄭玄의 注를 간추려서 옮긴 것이다.

弟, 民入孝弟, 出尊長養老而后, 成教, 成教而后, 國可安也.” 「經解」曰: “鄉飲酒之禮廢, 則長幼之序失, 而爭鬪之獄繁矣.”

『예기』 「향음주의(鄉飲酒義)」에 이르기를 “60세 되는 사람은 양고, 50세 되는 사람은 입시(立侍)하여 정역(政役)을 듣는 것은 ‘존장(尊長)’을 밝히는 것이다. 60세 되는 사람은 3두(三豆)요, 70세 되는 사람은 4두(四豆)요, 80세 되는 사람은 5두(五豆)요, 90세 되는 사람은 6두(六豆)⁹⁷¹⁾인 것은 ‘양로(養老)’를 밝힌 것이다. 백성들이 ‘존장’과 ‘양로’를 안 뒤에 곧 능히 들어가 ‘효제’를 하며, 백성이 들어가 ‘효제’를 하고 나와서 ‘존장’과 ‘양로’를 한 뒤에 교화가 완성되며, 교화가 완성된 뒤에 나라는 편안해질 수 있다.”라고 하였고, 『예기』 「경해(經解)」에 이르기를 “향음주의 예가 폐지되면 장유(長幼)의 질서가 상실되어 쟁투(爭鬪)의 옥(獄)이 번성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夫二人同居, 亦一長一幼, 如使幼皆順長, 則爭何由興? 推此以及千萬人, 宜乎其獄訟之寡也. 而況尊人之長以及吾長, 養人之老以及吾老, 則輕重可知矣. 輕重可知, 而不孝不弟者, 其唯禽獸之心乎! 若是, 則教焉得不成, 國焉得不安也哉!

무릇 두 사람이 함께 거하면 또한 한 명은 어른이요 한 명은 어린 사람이니, 만약 어린 사람이 모두 어른에게 순종할 수 있게 한다면 다툼이 어디로 말미암아 일어나겠는가? 이를 미루어 천 명과 만 명에 미친다면 마땅히 그 옥송(獄訟)은 적어질 것이다. 하물며 남의 어른을 존경함으로써 우리집 어른에 미치며, 남의 노인을 봉양함으로써 우리집 노인을 봉양함에 미치면 경중(輕重)을 알게 될 것이다. 경중을 뻔히 알면서도 효도하지 않고 공손하지 않는 자는 그 오직 금수의 마음일 뿐이다! 이와 같다면 교화가 어찌 완성되지 않으며, 나라가 어찌 편안하지 않겠는가!

971) 60세.....6두(六豆): 『禮記正義』 孔穎達의 疏에 “六十者三豆至九十者六豆者, 以其每十年加一豆, 非正禮, 故不得爲籩豆偶也. 其五十者, 亦有豆也, 但二豆而已.”라고 하였다. 원래 俎豆는 짝수로 올라가는데 여기는 나이에 따른 순서이므로 하나씩 올린 것이요, 이는 賓興賢能의 飲酒가 아니므로 正禮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教道第四

「大宰」“以九兩繫邦國之民”，“五曰宗，以族得民。”宗，繼別爲大宗，收族者也。大宗者，其先祖之負荷，族人之紀綱乎!

교도 제4

「대재(大宰)」⁹⁷²⁾에 “아홉 가지로써 방국(邦國)의 백성을 협우(協耦)하고 연계되게 한다.....다섯째는 가른 ‘종(宗)’이니 ‘족(族)’으로써 백성을 얻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종(宗)’은 별자(別子)를 이어 대종(大宗)이 되어서 일족을 거두는 것이다.⁹⁷³⁾ ‘대종(大宗)’이라는 것은 그 선조를 잇고 족인(族人)의 기강(紀綱)이 되는 것이다!

「大傳」曰：“別子爲祖，繼別爲宗，繼禰者爲小宗。有百世不遷之宗，有五世則遷之宗。百世不遷者，別子之後也。宗其繼別子之所自出者，百世不遷者也。宗其繼高祖者，五世則遷者也。”

『예기』「대전(大傳)」에 이르기를 “별자(別子)가 조(祖)가 되고, 별자를 잇는 것이 종(宗)이 되며, 아버지의 사당을 잇는 자가 소종(小宗)이 된다. 100세(百世) 동안 옮기지 않는 ‘종’이 있고, 5세(五世)가 되면 옮기는 ‘종’이 있다. 100세 동안 옮기지 않는 자는 별자의 후손이다. 그 별자의 유래한 바⁹⁷⁴⁾를 잇는 것을 ‘종’으로 하는 자는 100세 동안 옮기지 않는 자이다. 그 고조(高祖)를 잇는 것을 ‘종’으로 하는 자는 5세가 되면 옮기는 자이다.”라고 하였다.

別子，謂公子若始來在此國者，後世以爲祖也。別子之適子適孫，世世繼別子，爲大宗，百世不遷。族人五世外者，皆爲之齊衰三月，母妻亦然。故大宗有族食族燕之禮，

972) 「대재(大宰)」: 『周禮』「天官冢宰」.

973) ‘종(宗)’은.....것이다: 鄭玄의 注이다.

974) 유래한 바: 『禮記集說』에 의하면 朱熹는 ‘之所自出’ 4字를 衍文으로 보았다. 阮元은 鄭玄의 注에 언급이 없는 점을 들어 孔穎達이 疏를 작업할 때 잘못된 것으로 보았다.

所以收族也.

‘별자(別子)’는 공자(公子)가 처음 와서 이 나라에 있는 자를 말한 것이니, 후세에 ‘조(祖)’로 삼는다.⁹⁷⁵⁾ 별자의 적자와 적손이 대대로 별자를 이어서 ‘대종(大宗)’이 되어 100세 동안 옮기지 않는다. 족인(族人) 가운데 5세(五世) 이외의 자는 모두 위하여 자취(齊衰) 3월을 하고, 어머니와 아내도 또한 그러하다.⁹⁷⁶⁾ 그러므로 ‘대종’은 족식(族食)과 족연(族燕)의 예(禮)가 있으니 일족을 거두는 것이다.⁹⁷⁷⁾

夫五服者，人道之大治也。然而上盡於高祖，旁盡於三從。上盡於高祖，則遠者忘之矣，旁盡於三從，則疏者忘之矣。故立大宗以承其祖，族人五世外，皆合之宗子之家，序以昭穆，則是始祖常祀而同姓常親也。始祖常祀非孝乎？同姓常親非睦乎？

무릇 5복(五服)⁹⁷⁸⁾이라는 것은 사람 도리의 큰 다스림이다. 그러나 위로 고조(高祖)에 다하고 옆으로 3종(三從)에 다한다. 위로 고조에 다하면 먼 것은 잊을 것이고, 옆으로 3종에 다하면 뜬 것은 잊혀질 것이다. 그러므로 ‘대종’을 세워서 그 ‘조’를 잇게 하고, 족인 가운데 5세 이외는 모두 종자(宗子)의 집에 합하게 하여 소목(昭穆)으로써 순서하게 하였으니, 곧 이는 시조를 항상 제사하고 동성(同姓)이 항상 친하게 한 것이다. 시조를 항상 제사하는 것이 ‘효’가 아닌가? 동성이 항상 친한 것이 ‘목(睦)’이 아닌가?

「內則」曰：“適子庶子，祇事宗子宗婦，雖貴富，不敢以貴富入宗子之家，雖衆車徒，舍於外，以寡約入。子弟猶歸器衣服裘衾車馬，則必獻其上，而后敢服用其次也。若非所獻，則不敢以入於宗子之門。” “若富，則具二牲，獻其賢者於宗子，夫婦皆齊而助祭⁹⁷⁹⁾焉。終事而后敢私祭。” 然則族人之重宗子何如哉？重宗者，尊祖之義也。噫！所生猶或不孝，況遠祖乎？同產猶或不睦，況族人乎？是先王坊民有禮，而刑不足以齊

975) ‘별자(別子)’는.....삼는다: 『禮記正義』鄭玄의 注이다.

976) 별자의.....그러하다: 『禮記正義』孔穎達의 疏이다.

977) ‘대종’은.....것이다: 『周禮』「大宰」賈公彥의 疏이다.

978) 오복(五服): 斬衰, 齊衰, 大功, 小功, 緦麻의 다섯 가지 服制를 말한다.

979) 原註: ‘助祭’는 『禮記』「內則」에 ‘宗敬’으로 되어 있다.

之也.

『예기』 「내칙(內則)」에 이르기를 “적자(適者)와 서자(庶子)는 종자(宗子)와 종부(宗婦)를 공경히 섬겨야 하니, 비록 자신이 부귀하더라도 감히 부귀로써 종자의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비록 따르는 수레와 무리가 많더라도 밖에 두고 자기 몸만으로 들어간다. 자제는 공덕으로 하사받은 기물(器物)과 의복과 가족옷이나 이불과 수레와 말 같은 것을 곧 반드시 상등품(上等品)을 종자에게 올린 뒤에 감히 그 차등품(次等品)을 쓴다. 만약 (종자의 작위에 비추어) 올릴 수 없는 것이 라면 감히 자신이 사용하면서 종자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만약 부유하면 두 가지 희생을 장만하여 그 중에 좋은 것을 종자에게 올리고, 부부가 모두 재계하고 제사를 돕는다. 일을 마친 이후에 감히 사사로운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죽인들이 종자를 중히 여기는 것이 어떠하였겠는가? 종자를 중히 여긴다는 것은 조상을 존중한다는 의미이다. 아, 낳아준 부모에게도 혹 불효 하는데 하물며 먼 조상이야! 동기간에도 혹 화목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죽인이야! 이는 선왕이 백성을 방비함에 예(禮)가 있었던 것이니,⁹⁸⁰⁾ 형벌로 다스릴 수 없었던 것이다.⁹⁸¹⁾

敎道第五

“「小司徒」之職，掌建邦之敎法，以稽國中及四郊都鄙之夫家九比之數，以辨其貴賤老幼廢疾，凡征役之施舍，與其祭祀飲食喪紀之禁令。” 「鄧長」“各掌其鄧之政令，以時校登其夫家，比其衆寡，以治其喪紀祭祀之事。” 曾子曰：“慎終追遠，民德歸厚矣。” 喪祭之謂也.

교도 제5

980) 백성을.....것이니: 『禮記』 「經解」에 “夫禮禁亂之所由生，猶坊止水之所自來也.”라고 하였고, 『禮記』 「坊記」에 “君子禮以坊德，刑以坊淫，命以坊欲.”이라 하였다.

981) 형벌로.....것이다: 『論語』 「爲政」 3장. “子曰，道之以政，齊之以刑，民免而無耻. 道之以德，齊之以禮，有耻且格.”

「소사도(小司徒)」⁹⁸²에 “「소사도」의 직(職)은 건방(建邦)의 교법(教法)을 관장하여 국중(國中) 및 사교(四郊)와 도비(都鄙)의 부가(夫家)와 구비(九比)의 수를 고찰하며, 그 귀천(貴賤)·노유(老幼)·폐질(廢疾)과 무릇 정역(征役)의 시사(施舍) 및 그 제사·음식·상기(喪紀)의 금령(禁令)을 변별한다.”라고 하였고, 「찬장(贊長)」⁹⁸³에 “각각 그 찬(贊)의 정령(政令)을 관장하여 때로써 그 부가(夫家)에 오른 것을 세고, 그 중과(衆寡)를 비교하여 그 상기와 제사의 일을 다스린다.”라고 하였으며, 증자는 말하기를 “끝을 삼가고 멀리 추억하면 백성의 덕이 후한 곳으로 돌아간다.”⁹⁸⁴라고 하였으니 ‘상(喪)’과 ‘제(祭)’를 이룬 것이다.

哀哉，死者乎！爲其形之將敗也，而人惡之矣，爲其心之無知也，而人倍之矣。是故絞紵衾冒以周其內，棺槨牆鬻以文其外，爲使人勿惡也。朝夕之奠以繼其養，神明之器以備其用，爲使人勿倍也。君子過哀則幾毀滅，小人直情則將忽忘，是故哭之有節，服之有斷，此聖人所以制喪禮也。

슬프다, 죽은 이여! 그 형체가 부패 되었기에 사람들이 미워하고, 그 마음이 알지 못하기에 사람들이 배신한다. 이러하므로 교(絞)와 금(紵)과 금(衾)과 모(冒)로써⁹⁸⁵ 그 안을 두르고 관(棺)과 곽(槨)과 장(牆:棺飾)과 삼(鬻)⁹⁸⁶으로써 그 밖을 꾸민 것은 사람들이 미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아침 저녁으로 상을 차려 그 봉양을 계속하고神明(神明)의 기물로써 그 쓰임을 갖추는 것은 사람들이 배신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군자가 슬픔이 지나치면 거의 훼손(毀滅)에 이르고, 소인이 감정을 곧이곧대로 하면 장차 잊지 못하므로 곡(哭)이 절차가 있고 복(服)이 끊음이 있으니, 이는 성인이 상례(喪禮)를 제정한 까닭이다.

春履雨露而怵惕，秋履霜露而淒愴，孝子以天時之變，念其親之不得見也。是故散齋

982) 「소사도(小司徒)」: 『周禮』「地官司徒」.

983) 「찬장(贊長)」: 『周禮』「地官司徒下」.

984) 끝을.....돌아간다: 『論語』「學而」 9장.

985) 교(絞)와.....모(冒)로써: ‘絞’는 의복을 묶어서 견고하게 하는 것이요, ‘紵’는 홉이불이요, ‘衾’은 小斂과 大斂에 사용하는 이불이요, ‘冒’는 주검을 싸는 덮개이다. 모두 殮襲할 때 쓰는 것으로, 『禮記』「王制」와 「喪大記」에 상세한 절차가 나와 있다.

986) 삼(鬻): ‘鬻’은 ‘雲鬻’으로 發鞠할 때 상여의 양옆에 세우고 가는 제구이다.

七日, 致齋三日, 陰幽以思, 而祭者可見矣. 祭之日, 入室, 必有見乎其位, 出戶, 必有聞乎其聲. 事死者如事生, 思死者如不欲生. 蓋非牲醴肥膾, 粢盛豐備而已, 此聖人所以制祭禮也.

봄에 비와 이슬을 밟고 놀라며, 가을에 서리와 이슬을 밟고 슬퍼함은⁹⁸⁷⁾ 효자가 천시(天時)의 변화에 그 아버지를 볼 수 없는 것을 생각함이다. 이러하므로 7일을 산재(散齋)하고 3일을 치재(致齋)하며 그옥이 생각하여 제사지내는 분을 보는 것이다. 제사지내는 날, 방에 들어가 반드시 그 자리에서 보는 것이 있으며, 문을 나옴에 반드시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있다. (문왕의 제사는) 돌아가신 분 섬기기를 살아계신 분 같이 하고, 돌아가신 분 생각하기를 살고 싶지 않는 듯⁹⁸⁸⁾ 하였다.⁹⁸⁹⁾ 대개 희생[牲醴]이 살지고 자성(粢盛)이 풍비(豐備)할 따름 만이 아니었던 것이니⁹⁹⁰⁾, 이는 성인이 제례(祭禮)를 제정한 까닭이다.

人有貴有賤, 有富有貧, 而未有無親者也. 其禮雖異, 其情則同. 「王制」曰: 「庶人縣⁹⁹¹⁾封, 葬不爲雨止. 不封不樹, 喪不貳事.」亦其喪禮也. 「庶人春薦韭, 夏薦麥, 秋薦黍, 冬薦稻.」亦其祭禮也. 然冥冥之民, 勸於利而懲於威, 苟非上之所財成則末由也已. 故「小司徒」有其禁令, 而「鄮長」治之也.

사람이 귀(貴)가 있고 천(賤)이 있으며, 부(富)가 있고 빈(貧)이 있으나 아버지가 없는 자는 있지 않다. 그 예(禮)는 비록 다르더라도 그 정(情)은 같은 것이다. 『예기』「왕제」에 이르기를 “서인은 현봉(縣封)하며, 장사지낼 때 비 때문에 멈추지 않는다.⁹⁹²⁾ 봉분을 쌓지 않고 묘표를 세우지 않으며, 상중에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또한 그 상례인 것이요, “서인은 봄에 부추를 올리고, 여

987) 봄에.....슬퍼함은: 『禮記』「祭義」. “霜露既降, 君子履之, 必有悽愴之心, 非其寒之謂也. 春, 雨露既濡, 君子履之, 必有怵惕之心, 如將見之.”

988) 살고.....듯: 『禮記正義』孔穎達의 疏에 “思死者如不欲生者, 言文王思念死者, 意欲隨之而死, 如似不復欲生.”이라 하였다.

989) 7일을.....하였다: 『禮記』「祭義」의 글을 간추린 것이다.

990) 희생이.....것이냐: 『左傳』桓公 6年條. “公曰, 吾牲醴肥膾, 粢盛豐備, 何則不信.”

991) 原註: ‘縣’은 원래 ‘繩’으로 되어 있었는데 四庫本과 『禮記』「王制」에 근거하여 고쳤다.

992) 서인은.....않는다: 『禮記正義』鄭玄의 注에 “縣封, 當爲縣窆. 縣窆者, 至卑, 不得引紼下棺. 雖雨猶葬, 以其禮儀少”라고 하였다.

름에 보리를 올리고, 가을에 기장을 올리고, 겨울에 벼를 올린다.”⁹⁹³)라고 하였으니 또한 그 제례인 것이다. 그러나 무지한 백성은 이곳에 권면되고 위엄에 징계되니, 윗사람이 재성(財成)하는 바가 아니면 말미암지 못한다. 그러므로 「소사도」에게 그 금령(禁令)이 있었고, 「찬장」이 다스렸던 것이다.

「三年問」曰：“將由夫患邪淫之人與？則彼朝死而夕忘之矣！然而從之，則是曾鳥獸之不若也。夫焉能相與群居而不亂乎？”揚子曰：“人而不祭，豺獾乎！”是喪祭之禮廢，則人不如禽⁹⁹⁴，爲其上者，所宜憂也。

『예기』 「삼년문(三年問)」에 이르기를 “장차 저 사음(邪淫)을 앓는 사람으로 말미암을 것인가? 곧 저들은 (부모가) 아침에 죽어도 저녁에 잊는다! 그러한데도 따른다면 이는 일찍이 조수(鳥獸) 만도 못한 것이다. 무릇 서로 더불어 무리지어 거한다면 어찌 능히 문란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고, 양자(揚子:揚雄)는 말하기를 “사람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면 승냥이와 수달 만도 못한 것이다!”⁹⁹⁵)라고 하였다. 이는 상례와 제례가 폐지되면 사람이 금수 만도 못하게 된다는 것이니, 그 윗사람 되는 자는 마땅히 근심해야 할 것이다.

993) 서인은.....올린다: 『禮記』 「王制」의 문장이다.

994) 原註: ‘禽’은 正德本, 光緒本에 ‘獸’로 되어 있다.

995) 사람이.....것이다: 『法言』 「孝至」篇에 나온다. 豺獾과 관련하여 『禮記』 「王制」에 “獾祭魚, 然后虞人入澤梁, 豺祭獸, 然后田獵.”이라 한 것을 비롯하여 「月令」등에 언급되어 있다. 승냥이와 수달이 제사지낸다는 것은 당시인의 상식이었으므로, ‘승냥이와 수달 만도 못한 것이다’라고 의역하였다.

제15장 『이구집』 권14 教道6-教道9

李觀集卷第十四

教道第六

「鄉師」“正歲，稽其鄉器。比共吉凶二服，閭共祭器，族共喪器，黨共射器，州共賓器，鄉共吉凶禮樂之器。”

교도 제6

「향사(鄉師)」⁹⁹⁶에 “정세(正歲:建寅之月)에 그 향기(鄉器)를 고찰한다. 비(比:5家)에서 길복(吉服)과 흉복(凶服)을 이바지하고, 여(閭:25家)에서 제기(祭器)를 이바지하고, 족(族:100家)에서 상기(喪器)를 이바지하고, 당(黨:500家)에서 사기(射器)를 이바지하고, 주(州:2,500家)에서 빈기(賓器)를 이바지하고, 향(鄉:1만 2,500家)에서 길(吉)·흉(凶)·예(禮)·악(樂)의 기물을 이바지한다.”라고 하였다.

吉服者，祭服也，凶服者，吊服也，「比長」主集爲之。祭器者，簠簋鼎俎之屬，「閭胥」主集爲之。喪器者，夷盤素俎楛豆軼軸之屬，「族師」主集爲之。此三者，民所以相共也。射器者，弓矢楅中之屬，「黨正」主集爲之，爲「州長」或時射於此黨也。賓器者，尊俎笙瑟之屬，「州長」主集爲之。爲「鄉大夫」或時賓賢能於此州也。吉器，若閭祭器者也。凶器，若族喪器者也。禮樂之器，若州黨賓射之器者也。「鄉大夫」備集此四者，爲州黨族閭有故而不共也。此鄉器者，旁使相共，則無廢事，上下相補，則禮行而教成。

‘길복(吉服)’이라는 것은 제복(祭服)이요, ‘흉복(凶服)’이라는 것은 조복(吊服)이니, 「비장(比長)」의 주관하에 5가를 모아 마련한다. ‘제기(祭器)’라는 것은 보(簠)·궤(簋)·정(鼎)·조(俎)의 무리이니, 「여서(閭胥)」의 주관하에 25가를 모아 마련한다. ‘상기(喪器)’라는 것은 이반(夷盤)⁹⁹⁷과 소조(素俎)⁹⁹⁸와 갈두(楛豆)⁹⁹⁹와 공

996) 「향사(鄉師)」: 『周禮』「地官司徒」.

축(軼軸)¹⁰⁰⁰의 무리이니, 「족사(族師)」의 주관하에 100가를 모아 마련한다. 이 세가지는 백성이 서로 마련한다. ‘사기(射器)’라는 것은 ‘궁시복중(弓矢楅中)’¹⁰⁰¹의 무리인데, 「당정(黨正)」의 주관하에 500가를 모아 마련하니, 「주장(州長)」이 혹 때로 이 당에서 활 쏠 때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빈기(賓器)’라는 것은 ‘준조생슬(尊俎笙瑟)’¹⁰⁰²의 무리인데, 「주장」의 주관하에 2,500가를 모아 마련하니, 「향대부(鄉大夫)」가 혹 때로 이 주에서 ‘현(賢)·능(能)’을 추천할 때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길기(吉器)’는 여(閭)의 ‘제기’와 같은 것이다. ‘흉기(凶器)’는 족(族)의 ‘상기’와 같은 것이다. ‘예악(禮樂)의 기물’은 주와 당의 ‘빈기’와 ‘사기’ 같은 것이다. 「향대부」가 이 네가지를 준비하여 모아두는 것은 주와 당과 족과 여에서 연고가 있어 마련하지 못할 때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이 ‘향기’라는 것을 두루 서로 이바지하게 한다면 백성들은 일을 폐함이 없어지고, 상하가 서로 보완하면 예가 행하여지고 교화가 완성될 것이다.¹⁰⁰³

夫有其禮者，必有其財，而後可行也。由士以上，則田祿足矣，庶人農力¹⁰⁰⁴，或不免凍餒，而求其備禮不亦難乎？故“禮不下庶人”者以此。苟非乏財，則人無禮不立，何斯民之不得用哉？先王患之，乃使「比長」「閭胥」「族師」集罰物以爲服器，民有用者則共之。若有故而不共，則「鄉大夫」以公物補焉。民無傷財而可得服器，則夫能言者肯不行禮哉？如是而不行禮，則納之刑辟，其又何辭？宜乎其天下大服也。

무릇 그 예(禮)가 있는 자는 반드시 그 재물이 있고 난 뒤에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사(士)로부터 이상은 곧 전록(田祿)이 있으니 충분하나, 서인으로 농사에

997) 이반(夷盤): 『周禮』「凌人」鄭玄의 注에 “夷之言尸也。實冰于夷盤中，置之尸牀之下，所以寒尸。尸之盤曰夷盤。”이라 하였다.

998) 소조(素俎): ‘素俎’는 犧牲物을 올려 놓는 祭具이다. 흰 나무로 제작하므로 ‘素俎’라고 한다.

999) 갈두(楛豆): 『禮記』「明堂位」에 “夏后氏以楛豆，殷玉豆，周獻豆.”라고 하였는데, 鄭玄의 注에 “楛，無異物之飾也.”라고 하였다.

1000) 공축(軼軸): ‘軼軸’은 下棺할 때 관을 괴고 있는, 기다란 寢牀같은 工具이다.

1001) ‘궁시복중(弓矢楅中)’: 『儀禮』「鄉射禮」와 「大射儀」에 “執張弓，挾乘矢，楅在庭中.”이라 하였다.

1002) ‘준조생슬(尊俎笙瑟)’: 『儀禮』「鄉飲酒禮」에 “三年貢士之時，行飲酒之禮，卽有酒尊俎實，二人鼓瑟在堂，笙入在於堂下.”라고 하였다.

1003) ‘길복(吉服)’이라는.....것이다: 모두 鄭玄의 注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1004) 原註: ‘農力’은 廣서본에 ‘力農’으로 되어 있다.

힘쓰는 사람은 혹 열고 배고픔을 면치 못하는데 그 예를 갖추기를 요구한다면 또한 어렵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예는 서인에게 내려오지 않는다.”¹⁰⁰⁵⁾라고 한 것은 이 때문이었던 것이다. 진실로 재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은 예가 없으면 설 수 없으니, 어찌 이 백성들이 쓰려고 하지 않겠는가? 선왕이 근심하여 이에 「비장」과 「여서」와 「족사」로 하여금 벌물(罰物)을 모아 복식과 기물을 마련하게 하고, 백성 가운데 쓸 사람이 있으면 이바지하게 한 것이다. 만약 연고가 있어 이바지하지 못하면 「향대부」가 공물(公物)로써 보충하였다. 백성은 재물을 손상함이 없이 복식과 기물을 얻을 수 있다면 무릇 말을 능히 할 수 있는 자라면 기꺼이 예를 행하지 않겠는가? 이와 같이 하였는데도 예를 행하지 않는다면 형벌(刑辟)에 들인들 그 또한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 천하가 크게 복종함은 마땅하다.

任延爲九眞太守，駱越之民無嫁娶禮法，各因淫好，無適對匹，不識父子之性夫婦之道。延乃移書屬縣，各使男年二十至五十，女年十五至四十，皆以年齒相配。其貧無禮聘，令長吏以下各省俸祿以賑助之。同時相聚者二千餘人，其產子始知種姓。彼一郡守，猶能教人以禮而助之以財，況四海之富乎哉！

임연(任延)이 구진(九眞)¹⁰⁰⁶⁾의 태수가 되었을 때, 낙월(駱越)의 백성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예법이 없어서 각각 음호(淫好)로 인하였고, 배우자에게 가는 것이 없어서 부자(父子)의 성(性:姓)과 부부의 도를 알지 못하였다. 임연이 이에 각 속현에 글을 보내어, 각각 남자 나이 20세부터 50세까지, 여자 나이 15세부터 40세까지 모두 나이로써 서로 짝하게 하였다. 그 가난하여 예빙(禮聘)할 수 없으면 장리(長吏) 이하로 하여금 각각 봉록(俸祿)을 덜어서 부조하게 하였다. 동시에 서로 장가간 자가 2,000여 명이었고, 그렇게 하여 낳은 자식들은 비로소 성씨를 알게 되었다.¹⁰⁰⁷⁾ 임연은 일개 군수로서, 오히려 능히 사람들을 교화함에 예로써 하였고, 도움에 재물로써 하였는데 하물며 사해(四海)의 부를 둔 사람이야!

1005) 예는.....않는다: 『禮記』「曲禮上」에 “禮不下庶人，刑不上大夫.”라고 하였다.

1006) 구진(九眞): 九眞은 오늘날 越南의 北部에 있었던 郡의 이름이다.

1007) 임연(任延)이.....되었다: 『後漢書』권76 「循吏列傳」에서 任延의 사적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敎道第七

「典命」“上公九命爲伯，其國家宮室車旗衣服禮儀，皆以九爲節。侯伯七命，其國家宮室車旗衣服禮儀，皆以七爲節。子男五命，其國家宮室車旗衣服禮儀，皆以五爲節。王之三公八命，其卿六命，其大夫四命，及其出封皆加一等。其國家宮室車旗衣服禮儀，亦如之。”“公之孤四命，其卿三命，其大夫再命，其士一命，其宮室車旗衣服禮儀，各視其命之數。侯伯之卿大夫士，亦如之。子男之卿再命，其大夫一命，其士不命，其宮室車旗衣服，各視其命之數。”

교도 제7

「전명(典命)」¹⁰⁰⁸⁾에 “상공(上公) 9명(九命)은 백(伯)이 되는데, 그 국가(國家)·궁실(宮室)·거기(車旗)·의복(衣服)·예의(禮儀)를 모두 ‘9’로써 절차를 삼는다. 후(侯)·백(伯) 7명(七命)은 그 국가·궁실·거기·의복·예의를 모두 ‘7’로써 절차를 삼는다. 자(子)·남(男) 5명(五命)은 그 국가·궁실·거기·의복·예의를 모두 ‘5’로써 절차를 삼는다. 왕의 3공(三公)은 8명(八命)이요, 그 경(卿)은 6명(六命)이요, 그 대부는 4명(四命)인데, 그 출봉(出封)할 때는 모두 1등을 더한다. 그 국가·궁실·거기·의복·예의도 또한 같다.....공의 고(孤)는 4명(四命)이요, 그 경은 3명(三命)이요, 그 대부는 재명(再命)이요 그 사는 1명(一命)인데, 그 궁실·거기·의복·예의는 각각 그 명(命)의 수에 견준다. 후·백의 경·대부·사도 또한 같다. 자·남의 경은 재명이요, 그 대부는 1명(一命)이요, 그 사는 명이 없는데, 그 궁실·거기·의복은 각각 그 명의 수에 견준다.”라고 하였다.

夫宮室取以待風雨，是則蓬茨足矣，衣服取以禦寒暑，是則紵絮足矣，車馬取以代勞，是則柴轂足矣，器物取以利用，是則瓦釜足矣。然而耳目之欲，雖窮壯極麗，猶未足以厭之也。先王因人之情而制之，以爲貴賤等級，使貴者得以逞，賤者無所覩。則上下有體，而朝廷以尊，費用有節，而財力不乏。

1008) 「전명(典命)」: 『周禮』「春官宗伯」.

무릇 ‘궁실’은 비바람을 대비하는 것만 취한다면 이는 곧 솥과 띠로 얽어도 충분하며, ‘의복’은 추위와 더위를 막는 것만 취한다면 이는 곧 모시와 솜으로도 충분하며, ‘거마’는 수고로움을 대신하는 것만 취한다면 이는 곧 짐차로도 충분하며, ‘기물’은 이용하는 것만 취한다면 질솔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귀와 눈의 욕망은 비록 장려(壯麗)함의 궁극이라도 오히려 마음에 차지 않을 것이다. 선왕이 사람들의 욕망으로 인해 제재하여 귀천의 등급을 만들어서, 귀한 자는 욕망을 펼 수 있게 하고 천한 자는 넘겨다볼 수 없게 하였다. 곧 위아래에 체(體)가 있어 조정이 높아졌고, 비용이 절약되어 재력이 궁핍하지 않게 된 것이다.

至于庶民亦有以防之。故「大司徒」“以本俗六安萬民。”“六曰同衣服。” 謂民雖有富者，衣服不得獨異也，不然則人人可以僭上。上下一體則朝廷不尊。家家可以大費，費用無節，則財力乃乏。亂患所以作，禮讓所以衰也。仲叔于奚繁纓以朝，而仲尼惜之，庶人屋壁得爲帝服，倡優下賤得爲后飾，而賈誼長太息。無意乎民則已，苟有意哉，是所先急也。

서민에 이르러도 또한 방비가 있었다. 그러므로 「대사도」에 “본래의 풍속 여섯 가지로써 만민을 편안하게 한다.....여섯째는 가론 ‘의복을 같게 함’이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백성 가운데 비록 부자가 있더라도 의복을 혼자서만 달리할 수 없게 한 것이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사람마다 위를 참람하려고 할 것이다. 위아래가 일체가 되면 조정은 높아지지 않는다. 집집마다 큰 비용을 지출하려고 할 것이니, 비용이 절제가 없어지면 재력은 이에 궁핍해 질 것이다. 환란이 일어나는 까닭이요, 예양(禮讓)이 쇠하여지는 까닭이다. 중숙우해(仲叔于奚)가 반영(繁纓)으로써 입조하게 되자 공자가 애석해하였으며,¹⁰⁰⁹⁾ 서인의 집 담장에 황제만 입을 수 있는 비단을 걸쳐 놓고, 창우(倡優)는 하천(下賤)인데도 황후의 장

1009) 중숙우해(仲叔于奚)가.....애석해하였고: 『左傳』 成公 2年條에 “新築人仲叔于奚救孫桓子，桓子是以免。既，衛人賞之以邑，辭，請曲縣繁纓以朝，許之。仲尼聞之曰，惜也。不如多與之邑。”이라고 하였다. ‘繁纓’은 말의 ‘뱃대끈’과 ‘가슴걸이’이니, 제후의 말을 장식하는 것이다. 仲叔于奚가 요구한 것은 무례한 것인데, 이를 허락하였으므로 공자가 안타까워한 것이다.

식을 하고다니자 가의(賈誼)가 긴 한숨을 쉬었다.¹⁰¹⁰⁾ 백성들에게 뜻이 없으면 말거니와 진실로 뜻이 있다면, 이는 먼저 급히 하여야할 것이다.

敎道第八

「大司樂」凡建國，禁其淫聲過聲凶聲慢聲.” 淫聲，若鄭衛也. 過聲，失哀樂之節. 凶聲，亡國之聲. 若桑間濮上. 慢聲，惰慢不恭也.

교도 제8

「대사악(大司樂)」¹⁰¹¹⁾에 “무릇 새로 제후의 나라를 세울 때, 그 음성(淫聲)과 과성(過聲)과 흉성(凶聲)과 만성(慢聲)을 금한다.”라고 하였다. ‘음성(淫聲)’은 정(鄭)나라와 위(衛)나라의 음악과 같은 것이다. ‘과성(過聲)’은 슬픔과 즐거움의 절도를 잃은 것이다. ‘흉성(凶聲)’은 망국의 소리이니, 상간복상(桑間濮上)¹⁰¹²⁾과 같은 것이다. ‘만성(慢聲)’은 게으르고 공손하지 않은 것이다.¹⁰¹³⁾

「大胥」“掌學士之版，以待致諸子.” 版，籍也，「大胥」主此籍，以待當召聚學舞者，卿大夫之諸子，則案此籍以召之. 漢『大樂律』曰：“卑者之子不得舞宗廟之酎. 除吏二千石到六百石，及關內侯到五大夫子，先取適子高七尺¹⁰¹⁴⁾以上，年十二到年三十，顏色和順，身體修治者，以爲舞人.” 與古用卿大夫子同義也.

「대서(大胥)」¹⁰¹⁵⁾에 “학사(學士)의 판(版)을 관장하여 제자(諸子)를 초치하는 것을 대비한다.”라고 하였다. ‘판(版)’은 적(籍)이니, 「대서」가 이 적을 주관하여 춤을 배우려는 자, 곧 경대부의 제자를 불러 모을 때를 당하면 이 적을 살펴서

1010) 서인의.....쉬었다: 『漢書』권48 「賈誼傳」.

1011) 「대사악(大司樂)」: 『周禮』「春官宗伯下」.

1012) 상간복상(桑間濮上): 『禮記』「樂記」에 “桑間濮上之音，亡國之音也.”라고 하였는데, 鄭玄의 注에 “濮水之上，地有桑間者，亡國之音，於此之水出也.”라고 하였다.

1013) ‘음성(淫聲)’은.....것이다: 鄭玄의 注이다.

1014) 原註: ‘七尺’은 『後漢書』「百官」2의 注에 ‘五尺’으로 인용 되어 있다.

1015) 「대서(大胥)」: 『周禮』「春官宗伯下」.

부르는 것을 대비하는 것이다. 한나라 『대악률(大樂律)』에 이르기를 “낮은 자의 아들은 종묘의 주금(酎金)¹⁰¹⁶⁾에서 춤출 수 없다. 임용된 관리 2,000석부터 600석까지와 관내후(關內侯)부터 5대부까지의 아들 중에서 먼저 맏아들로 키 7척 이상, 나이 12세부터 30세까지, 안색이 화순(和順)하고 신체가 수치(修治)한 자를 취하여 무인(舞人)을 삼는다.”라고 하였으니, 옛날 경대부의 아들을 쓴 것과 같은 의미이다.¹⁰¹⁷⁾

深矣乎! 聲之感人也, 如水之激, 如草之偃, 自生民以來, 莫之能免也. 「樂記」曰: “志微噍殺之音作, 而民思憂, 曄諧慢易繁文簡節之音作, 而民康樂, 粗厲猛起奮末廣賁之音作, 而民剛毅, 廉直勁正莊誠之音作, 而民肅敬, 寬裕肉好順成和動之音作, 而民慈愛, 流辟邪散狄成滌濫之音作, 而民淫亂.” 先王慎所以感之者, 故禁其淫過凶慢之聲. 而舞者又取卿大夫子有中和祇庸孝友之德者, 是聲與人無不正也. 聲與人無不正, 則聞之且見之者, 焉得不正乎?

깊다! 소리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¹⁰¹⁸⁾은 물이 격동하는 것¹⁰¹⁹⁾과 같고 풀이 눕는 것¹⁰²⁰⁾과 같으니, 백성이 생겨날 때부터 능히 면할 수 없었다. 『예기』 「악기」에 “지미(志微)·초쇄(噍殺)한¹⁰²¹⁾ 음악이 일어나면 백성은 슬픈 생각과 근심에 젖어들고, 천해(曄諧)·만이(慢易)·번문(繁文)·간절(簡節)한¹⁰²²⁾ 음악이 일어나면

1016) 주금(酎金): ‘酎金’은 한나라 때 제도로서, 천자가 햇곡식으로 빚은 醇酒를 종묘에 올릴 때, 제후가 모두 자격에 따라 金을 올리고 그 술을 마시던 것을 말한다.

1017) ‘판(版)’은.....의미이다: 모두 鄭衆의 注이다.

1018) 깊다.....것: 『禮記』 「樂記」. “樂也者, 聖人之所樂也, 而可以善民心, 其感人深, 其移風易俗, 故先王著其教焉.”

1019) 물이 격동하는 것: 『孫子』 「勢」. “激水之疾, 至於漂石者, 勢也.”

1020) 풀이 눕는 것: 『論語』 「顏淵」 19장. “君子之德, 風, 小人之德, 草, 草上之風, 必偃.”

1021) 지미(志微)·초쇄(噍殺)한: 『禮記正義』 孔穎達의 疏에 “志微, 謂人君志意微細, 噍殺, 謂樂聲噍殺小. 如此音作, 而民感之, 則悲思憂愁也.”라고 하였다. 한편 陳澧의 『禮記集說』에서는 “志, 疑當作急. 急, 促. 微, 細. 噍, 枯. 殺, 滅也. 其哀心感者, 其聲噍以殺, 故作樂而有急微噍殺之音, 則其民心之哀思憂愁, 可知矣.”라고 하였다. ‘噍殺’의 사전적인 의미는 音調가 슬프고 낮은 것을 말한다.

1022) 천해(曄諧).....간절(簡節)한: 『禮記正義』 孔穎達의 疏에 “曄, 寬也. 諧, 和也. 慢, 疏也. 繁, 多也. 簡節, 易少也. 康, 安也. 言君若道德曄和疏易, 則樂音多文采, 而節奏簡略, 則下民所以安樂也.”라고 하였다.

백성은 편안하고 즐거우며, 조려(粗厲)·맹기(猛起)·분말(奮末)·광분(廣賁)한¹⁰²³⁾ 음악이 일어나면 백성은 굳세어지고, 염직(廉直)·경정(勁正)·장성(莊誠)한¹⁰²⁴⁾ 음악이 일어나면 백성은 엄숙하고 공경하며, 관유(寬裕)·육호(肉好)·순성(順成)·화동(和動)한¹⁰²⁵⁾ 음악이 일어나면 백성은 자애로워지고, 유벽(流辟)·사산(邪散)·적성(狄成)·척람(滌濫)한¹⁰²⁶⁾ 음악이 일어나면 백성은 음란해진다.”라고 하였다. 선왕이 감동시키는 것을 신중히 여긴 까닭으로 그 ‘음성’과 ‘과성’과 ‘흉성’과 ‘만성’을 금한 것이다. 그리고 춤추는 사람도 또한 경대부의 아들 가운데 중화(中和)·지용(祗庸)·효우(孝友)의 덕이 있는 자를 취하였으니, 이는 소리와 사람이 바르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소리와 사람이 바르지 않음이 없다면 듣고 또 보는 자가 어찌 바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子夏曰：“今夫新樂，進俯退俯，姦聲以濫¹⁰²⁷⁾，溺而不止，及優侏儒，獲雜子女，不知父子。樂終不可以語，不可以道古。此新樂之發也。”噫，舞者男女自相雜，子夏已疾之，而況粉白黛黑笑言於尊俎間乎！董仲舒所謂民之師師者，宜不宜也？然則天下多淫辟之罪有以矣夫。

자하가 말하기를 “지금 저 ‘신악(新樂)’은 나아갈 때 구부정하고 물러날 때 구부정하며, 간사한 소리로써 척람(滌濫)하여 빠져든 것이 오래되어서 금지할 수 없으며, 광대와 난쟁이가 원숭이처럼 남녀가 섞임에 미쳐서는 부모와 자식도 알 수 없을 지경입니다. 음악이 마치면 사벽(邪辟)함을 말로 다할 수 없으니, ‘고악(古樂)’에 관하여 논할 수도 없습니다. 이는 ‘신악’이 발동한 것입니다.”¹⁰²⁸⁾라고

1023) 조려(粗厲).....광분(廣賁)한: 孔穎達의 疏에 “粗厲, 謂人君性氣粗疏威厲, 猛起, 謂武猛發起, 奮末, 謂奮動手足, 廣賁, 謂樂聲廣大, 憤氣充滿, 如此音作, 而民感之, 則性氣剛毅也.”라고 하였다.

1024) 염직(廉直).....장성(莊誠)한: 孔穎達의 疏에 “君若廉直勁正, 則樂音矜莊嚴栗而誠信, 故民應之而肅敬也.”라고 하였다.

1025) 관유(寬裕).....화동(和動)한: 孔穎達의 疏에 “肉, 謂厚重者也, 君上如寬裕厚重, 則樂音順序而和諧動作, 故民皆應之而慈愛也.”라고 하였다.

1026) 유벽(流辟).....척람(滌濫)한: 孔穎達의 疏에 流辟, 謂君志流移不靜, 邪散, 謂違辟不正, 放邪散亂, 狄成, 滌濫, 皆謂往來速疾, 謂樂之曲折, 速疾而成, 疾速而止, 僭濫, 止謂樂聲急速, 如此音作, 民感之淫亂也.”라고 하였다.

1027) 原註: ‘濫’은 『史記』「樂書」에 ‘淫’으로 되어 있다.

1028) 지금.....것입니다: 『禮記』「樂記」에서 子夏가 魏文侯의 질문에 대답한 내용 중 일부분을 옮긴

하였다. 아, 춤추는 자, 남녀가 스스로 서로 섞이는 것을 자하가 이미 미워하였는데, 하물며 전조(奠俎) 사이에서 하얀 분칠을 하고 검정먹으로 눈썹을 그린 채¹⁰²⁹⁾ 웃고 떠듬이야! 동중서의 이른바 “백성의 사수(師帥)”¹⁰³⁰⁾라는 자는 마땅한가, 마땅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천하에 음벽(淫辟)의 죄가 많음은 까닭이 있는 것이다.¹⁰³¹⁾

敎道第九

「師氏」“掌以嫩詔王. 以三德敎國子, 一曰至德, 以爲道本, 二曰敏德, 以爲行本, 三曰孝德, 以知逆惡. 敎三行, 一曰孝行, 以親父母, 一曰友行, 以尊賢良, 三曰順行, 以事師長.”

교도 제9

「사씨(師氏)」¹⁰³²⁾에 “선도(善道)로써 왕에게 고하는 것을 관장한다. 3덕(三德)으로써 국자(國子)를 가르치는데, 첫째는 가론 ‘지덕(至德)’이니 도를 행하는 근본이 되며, 둘째는 가론 ‘민덕(敏德)’이니 행실의 근본이 되며, 셋째는 가론 ‘효덕(孝德)’이니 역악(逆惡)을 아는 것이다. 3행(三行)을 가르치는데, 첫째는 가론 ‘효행(孝行)’이니 부모를 친하는 것이요, 둘째는 가론 ‘우행(友行)’이니 어진 사람과 선량한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요, 셋째는 가론 ‘순행(順行)’이니 스승과 어른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保氏」“掌諫王惡. 而養國子以道, 乃敎之六藝. 一曰五禮, 二曰六樂, 三曰五射, 四曰五馭, 五曰六書, 六曰九數. 乃敎之六儀, 一曰祭祀之容, 二曰賓客之容, 三曰朝廷之容, 四曰喪紀之容, 五曰軍旅之容, 六曰車馬之容.”

것이다.

1029) 하얀.....채: 『楚辭』「大招」. “粉白黛黑, 施芳澤只.”

1030) 백성의 사수(師帥): 『李觀集』의 ‘師帥’는 ‘師帥’의 오류인 듯하다. 『漢書』권56 「董仲舒傳」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今之郡守縣令, 民之師帥, 所使承流而宣化也. 故師帥不賢, 則主德不宣, 恩澤不流.”

1031) 까닭이.....것이다: 『詩經』「旄丘」. “何其處也, 必有與也. 何其久也, 必有以也.”

1032) 「사씨(師氏)」: 『周禮』「地官司徒下」.

「보씨(保氏)」¹⁰³³⁾에 “왕의 악행을 간(諫)하는 것을 관장한다. 그리고 국자를 가르치 도(道)로써 하여 이에 ‘6예(六藝)’를 가르친다. 첫째는 가론 ‘5례(五禮)’¹⁰³⁴⁾요, 둘째는 가론 ‘6악(六樂)’¹⁰³⁵⁾이요, 셋째는 가론 ‘5사(五射)’¹⁰³⁶⁾요, 넷째는 가론 ‘5어(五馭)’¹⁰³⁷⁾요, 다섯째는 가론 ‘6서(六書)’¹⁰³⁸⁾요, 여섯째는 가론 ‘9수(九數)’¹⁰³⁹⁾이다. 또 ‘6의(六儀)’를 가르치니, 첫째는 가론 ‘제사(祭祀)의 용모’요, 둘째는 가론 ‘빈객(賓客)의 용모’요, 셋째는 가론 ‘조정(朝廷)의 용모’요, 넷째는 가론 ‘상기(喪紀)의 용모’요, 다섯째는 가론 ‘군려(軍旅)의 용모’요, 여섯째는 가론 ‘거마(車馬)의 용모’이다.¹⁰⁴⁰⁾”라고 하였다.

以嫩詔王，告王以善道也。諫者，以禮義正之。國子，公卿大夫之子弟，「師氏」教之而世子亦齒焉。養國子以道者，以「師氏」之德行審諭之，而後教之以藝儀也。師保詔王以善，諫王之惡，王者既立乎無過之地矣。又使教養國子，而世子與焉，是策之上也。「王制」曰：“樂正崇四術，立四教，順先王詩書禮樂以造士。春秋教以禮樂，冬夏教以詩書。王太子，王子，羣后之太子，卿大夫元士之適子，國之俊選皆造焉。”則古之教人者，世子無不在也。

‘이미조왕(以嫩詔王)’은 왕에게 선도(善道)로써 고하는 것이다. ‘간(諫)’이라는 것은 예의(禮義)로써 바로잡는 것이다. ‘국자(國子)’는 공·경·대부의 자제이니, 「사씨」가 가르치고, 세자도 또한 학생으로 참가한다.¹⁰⁴¹⁾ ‘양국자이도(養國子以

1033) 「보씨(保氏)」: 『周禮』「地官司徒下」.

1034) 5례(五禮): 鄭玄의 注에 “五禮, 吉, 凶, 賓, 軍, 嘉也.”라고 하였다.

1035) 6악(六樂): 鄭玄의 注에 “六樂, 雲門, 大咸, 大韶, 大夏, 大濩, 大武也.”라고 하였다.

1036) 5사(五射): 鄭衆의 注에 “五射, 白矢, 參連, 剡注, 襄尺, 井儀也.”라고 하였다.

1037) 5어(五馭): 鄭衆의 注에 “五馭, 鳴和鸞, 逐水曲, 過君表, 舞交衢, 逐禽左.”라고 하였다.

1038) 6서(六書): 鄭衆의 注에 “六書, 象形, 會意, 轉注, 處事, 假借, 諧聲也.”라고 하였다.

1039) 9수(九數): 鄭衆의 注에 “九數, 方田, 粟米, 差分, 少廣, 商功, 均輸, 方程, 贏不足, 旁要.”라고 하였다.

1040) 6의(六儀): 鄭衆은 “祭祀之容, 穆穆皇皇. 賓客之容, 嚴格矜莊. 朝廷之容, 濟濟踴踴. 喪紀之容, 涕涕翔翔. 軍旅之容, 闐闐仰仰. 車馬之容, 顛顛堂堂.”이라고 하였는데, 鄭玄은 “祭祀之容, 齊齊皇皇. 賓客之容, 穆穆皇皇. 朝廷之容, 濟濟翔翔. 喪紀之容, 纍纍顛顛. 軍旅之容, 暨暨諮諮. 車馬之容, 匪匪翼翼.”이라고 하였다.

1041) 세자도.....참가한다. ‘齒’는 ‘齒讓’을 말한다. ‘序齒相讓’, 곧 나이 순서로 서로 양보한다는 뜻이니, 세자도 일반 학생과 똑같이 학생자격으로 수업에 참가한다는 말이다.

道)’라는 것은 「사씨」의 ‘3덕’과 ‘3행’으로 깨우친 뒤에, ‘6예’와 ‘6의’로써 가르치는 것이다.¹⁰⁴²⁾ 「사씨」와 「보씨」가 왕에게 선으로써 고하고 왕의 악행을 간했을 때, 왕자(王者)는 이미 허물이 없는 곳에 서있게 된다. 또한 국자를 가르치고 기르며 세자까지 참여하게 하니, 이는 상책(上策)이다. 『예기』 「왕제」에 “악정(樂正)이 ‘4술(四術)’을 숭상하고 ‘4교(四敎)’를 세워서, 선왕의 시·서·예·악을 따라 선비를 키워냈다. 봄·가을에는 예·악으로써 가르치고, 겨울·여름에는 시·서로써 가르쳤다. 왕태자와 왕자와 제후의 태자와 경·대부·원사의 말아들과 일반백성의 준수한 자들이 다 수업하였다.”라고 하였다. 곧 옛날에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은 세자가 있지 아니함이 없었던 것이다.

「文王世子」曰: “行一物而三善皆得者, 唯世子而已, 其齒於學之謂也. 故世子齒於學, 國人觀之, 曰: ‘將君我而與我齒讓, 何也?’ 曰: ‘有父在, 則禮然.’ 然而衆知父子之道矣. 其二曰: ‘將君我而與我齒讓, 何也?’ 曰: ‘君有在, 則禮然.’ 然而衆著於君臣之義也. 其三曰: ‘將君我而與我齒讓, 何也?’ 曰: ‘長長也.’ 然而衆知長幼之節矣. 故父在斯爲子, 君在斯謂之臣, 居子與臣之節, 所以尊君親親也. 故學之爲父子焉, 學之爲君臣焉, 學之爲長幼焉. 父子君臣長幼之道得而國治.”

『예기』 「문왕세자(文王世子)」에 “한 가지 일을 행하여 세 가지 선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세자일 따름이니, (태)학에 ‘치양(齒讓)’함을 이룬 것이다.¹⁰⁴³⁾ 그러므로 세자가 (태)학에 ‘치양’할 때, 나라 사람들이 보고 말하기를 ‘장차 우리의 임금에 되실 분인데 우리와 치양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라고 하면, 말하기를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예가 그러하다.’라고 하였다. 그렇게 하여 모든 사람들은 부자(父子)의 도를 알게 된다. 그 두 번째 말하기를 ‘장차 우리의 임금이 되실 분인데 우리와 치양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라고 하면, 말하기를 ‘임금이 계실 때는 예가 그러하다.’라고 하였다. 그렇게 하여 모든 사람들은 군신(君臣)의 의(義)에 밝게 된다. 그 세 번째 말하기를 ‘장차 우리의 임금이 되실 분인데 우리와 치양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라고 하면, 말하기를 ‘어른을

1042) ‘이미조왕(以嬖詔王)은..... 것이다: 鄭玄의 注를 정리한 것이다.

1043) 한..... 것이다: 『禮記正義』 鄭玄注에 “一物, 一事也, 與國人齒讓之一事也. 三善, 謂衆人知父子君臣長幼之道也.”라고 하였다.

어른으로 여기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렇게 하여 모든 사람들은 장유(長幼)의 예절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계시면 아들이 되고, 임금이 계시면 신하라고 말하니, 아들과 신하의 자리에 거하는 예절은 임금을 높이고 어버이를 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르치면 ‘부자’가 되고, 가르치면 ‘군신’이 되며, 가르치면 ‘장유’가 된다. ‘부자’와 ‘군신’과 ‘장유’의 도를 얻으면 나라가 다스려진다.”라고 하였다.

夫將以宗廟社稷屬之, 可不教乎? 賈誼有言: “天下之命, 繫¹⁰⁴⁴於太子. 太子之善, 在於早諭教與選左右.” “三代之所以長久者, 以其輔翼太子有此具也.” 『文中子』曰: “儲后不訓而晉業墮矣!” 觀惠帝之失天下, 可無寒心也哉?

무릇 장차 종묘사직으로써 맡길 것인데, 가르치지 않으면 되겠는가? 가의(賈誼)는 말하기를 “천하의 명운이 태자에게 매어 있다. 태자의 선(善)은 ‘일찍 가르치는 것’과 ‘좌우에 (바른 사람을) 뽑는 것’에 있다.” “3대(三代:夏商周)가 장구(長久)할 수 있었던 것은 태자를 보익(輔翼)하는데 이러한 장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¹⁰⁴⁵라고 하였고, 『문중자(文中子)』는 말하기를 “저후(儲后:世子)를 가르치지 않아 진(晉)나라가 무너졌다!”¹⁰⁴⁶라고 하였다. 혜제(惠帝:259~306)가 천하를 잃는 것을 보면 한심(寒心)하지 아니한가?

荀卿曰: “聖王有百, 吾孰法焉? 欲觀聖王之跡, 則於其粲然者矣, 後王是也.” “道過三代, 謂之蕩, 法貳後王, 謂之不雅.” 然則舍周其何適哉? 孔子曰: “甚矣! 吾衰也. 久矣! 吾不復夢見周公.” 噫! 猶有望於今之世乎?

순경(荀卿)은 말하기를 “성왕(聖王)이 100명이나 있는데, 우리는 누구를 법하여야 하는가? 성왕의 자취를 보고자 한다면 그 찬란한 곳 이어야할 터인데, 후왕(後王:周王)이 이것이다.”¹⁰⁴⁷ “도(道)가 3대보다 지나치면 ‘방탕하다’라고 이

1044) 原註: ‘繫’는 『漢書』「賈誼傳」에 ‘繫’으로 되어 있다.

1045) 『漢書』권48 「賈誼傳」. 두 마디 모두 賈誼가 한 말인데, 李觀은 앞 뒤 순서를 바꾸었다. 마치 李觀가 당시의 왕에게 직접 말하는 듯 보인다.

1046) 저후(儲后:世子)를.....무너졌다!: 出處未詳.

1047) 성왕(聖王)이.....이것이다: 『荀子』「非相」.

를 것이요, 법(法)이 후왕과 다르면 ‘바르지 못하다’라고 이를 것이다.¹⁰⁴⁸⁾”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주나라를 버리고 그 어디로 갈 것인가? 공자는 말씀하기를 “심하다! 나의 쇠함이여. 오래 되었다! 나는 다시 주공을 꿈에 보지 못하였다.”¹⁰⁴⁹⁾라고 하셨다. 아! 오히려 지금 세상에서 바랄 수 있을까?

1048) 도(道)가.....것이다: 『荀子』「王制」.

1049) 심하다!.....못하였다: 『論語』「述而」 5장.

제16장 『이구집』 권16 富國策10首

李觀集卷第十六

富國策第一

愚竊觀儒者之論，鮮不貴義而賤利，其言非道德教化則不出諸口矣。然洪範八政，“一曰食，二曰貨。”孔子曰“足食足兵民信之矣。”是則治國之實，必本於財用。蓋城郭宮室，非財不完，羞服車馬，非財不具，百官群吏，非財不養，軍旅征戍，非財不給，郊社宗廟，非財不事，兄弟婚媾，非財不親，諸侯四夷朝覲聘問，非財不接，矜寡孤獨，凶荒札瘥，非財不恤。禮以是舉，政以是成，愛以是立，威以是行。舍是而克爲治者，未之有也。是故賢聖之君，經濟之士，必先富其國焉。所謂富國者，非曰巧籌算，析毫末，厚取於民以媒怨也，在乎強本節用，下無不足而上則有餘也。

부국책 제1

내가 가만히 보건대, 유자(儒者)들의 논의는 ‘의(義)’를 귀하게 여기고 ‘이(利)’를 천하게 여기지 않은 이가 적으며, 그 말이 도덕·교화가 아니면 입에 올리 지 않는다. 그러나 『서경』 「홍범」 8정(八政)에 “첫째가 먹을 것 [食], 둘째가 재물 [貨]”이라고 하였고, 공자는 “먹을 것을 만족스럽게 하고, 군사를 만족스럽게 하면 백성이 신뢰한다.”¹⁰⁵⁰⁾라고 하셨으니 이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실체는 반드시 ‘재용(財用)’에 근본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개 성곽과 궁실은 재물이 아니면 완비되지 못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 수레와 말은 재물이 아니면 구비되지 못하며, 백관과 군리(群吏)는 재물이 아니면 기르지 못하고, 군대와 정수(征戍)는 재물이 아니면 공급할 수 없으며, 교사(郊社)와 종묘는 재물이 아니면 섬길 수 없고, 형제와 혼인은 재물이 아니면 친할 수 없으며, 제후와 사(四夷)의 조근 빙문(朝覲聘問)은 재물이 아니면 접할 수 없고, 홀아비·과부·고아·자식없는 노인의 고통과 질병은 재물이 아니면 구원하지 못한다. 예가 이로써 거행되고, 정사

1050) 먹을 것을.....다: 『論語』 「顏淵」 편 7장.

가 이로써 완성되며, 사랑이 이로써 서고, 위엄이 이로써 행하여지니 이를 버리고 능히 다스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현성(賢聖)한 임금과 경제(經濟)의 선비는 반드시 먼저 그 나라를 부유하게 한다. 이른바 ‘나라를 부유하게 한다 [富國]’는 것은 ‘계산을 잘하고 털끝을 나누어서(작은 것까지) 백성에게 두터이 취함으로써 원망을 부르라’는 말이 아니다. ‘근본을 강하게 하고 쓰기를 절약하여, 아래에 부족함이 없고 위에 남음이 있게 해야 한다’는 말이다.

節用之說何如? 曰：凡言國計者，未嘗不以儉德藉其口也，而皆不得其說。必以茅茨土階，冬裘夏葛，爲帝王之德，是乃非聖無法，不近人情，宜乎人主之弗聽也。貴爲天子，富有四海，而使齷齪吝嗇，下同匹夫，不得自廣，則安用尊卑爲哉? 周制，王有六寢，后有六宮，內官百有二十人，女奴不在其數。食用六穀，膳用六牲，飲用六清，羞用百有二十品，珍用八物，醬用百有二十甕。衣有文繡，器有寶玉，次舍共具，所至無闕。用四代之禮，備四夷之樂。玩好有焉，匪頒有焉，好用有焉。王及后之用財，皆不會計，其所以自廣何如哉! 若是而從墨翟之道，晏嬰之學，以儉陋爲是，則周公之制作果非乎? 故曰“凡皆言儉德者，皆不得其說也。”

‘쓰기를 절약한다 [節用]’는 것은 무엇인가?

말한다. 무릇 나라를 위한 계책을 말한다는 사람들은 일찍이 ‘검덕(儉德)’을 입에 올리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모두 그 말의 의미를 터득하지 못하였다. 반드시 짚자리와 흙계단·겨울 갓옷과 여름 갓옷으로써 제왕의 덕목을 삼으라 한다면 이는 성인이 아니면 본받을 수 없으며 인정에도 가깝지 않으니 당연히 임금은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귀하게 천자가 되어 부(富)는 사해를 두었는데 잘달고 인색하게 하여 아래로 필부와 같게 만들어서 스스로 (쓰는 것을) 넓지 못하게 한다면 존비(尊卑)를 어디에 쓸 것인가? 주나라 제도에¹⁰⁵¹⁾ 왕은 육침(六寢)이 있고 후(后)는 육궁(六宮)이 있으며 내관(內官)은 120인이요 여노(女奴)는 그 수에 있지 않았다(많았다). 식(食)은 육곡(六穀)을 쓰고 선(膳)은 육생(六牲)을 쓰며 음(飲)은 육청(六淸)을 쓰고 수(羞)는 120품(品)을 쓰며 진(珍)은 8물(物)을 쓰고 장

1051) 주나라 제도: 『주례』와 『예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두루 인용한 것인데 해당서의 注疏와 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일일이 각주 처리하지 않았다.

(簪)은 120용(甕)을 쓴다. 의(衣)는 문수(文繡)가 있고 기(器)는 보옥(寶玉)이 있으며, 차사(次舍: 居處)와 공구(共具: 이바지)는 이르는 곳에 부족함이 없었다. 사대(四代)의 예를 썼고 사이(四夷)의 음악을 갖추었다. 완호(玩好)가 있고 비반(匪頒)이 있고 호용(好用)이 있었다. 왕과 후의 재물 쓰는 것은 다 회계처리하지 않았으니 그 스스로 (쓰는 것의) 넓음이 어떠한가! 이와 같은데도 목적(墨翟)의 도와 안영(晏嬰)의 학(學)을 따라서 ‘검루(儉陋)’함을 옳다고 한다면 주공이 예악을 제정한 것은 과연 잘못된 것인가? 그러므로 “무릇 검덕을 말한 사람들은 모두 그 말의 의미를 터득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한 것이다.

愚以爲時有不同，事有通變，用之不足，則禮從而殺，亦聖人之意也。有周而上，兵農未分，天子六軍，諸侯大國三軍，次國二軍，小國一軍，皆出於民。居則爲比閭族黨州鄉，行則爲伍兩卒旅師軍。必耕而食，必蠶而衣。國之經費，茲不與焉。故以九州之財，奉千八百君而有餘也。秦漢而下，兵農漸異。衣食縣官者，動數百萬。內嚴宿衛，外驅戎狄，轉運千里，賞賜鉅萬。國之經費，日以廣焉。故以九州之財，奉一君而不足也。當其有餘之時，用之可以盈禮，遇于不足之際，則宜深自菲薄。如周之制，尚當裁減，甚於周者，非敢聞也。小過曰“君子以，用過乎儉。”語曰“奢則不孫，儉則固。與其不孫也，寧固。”儉非聖人之中制，有時而然，不得已也。故孝文帝躬衣弋綈，革烏韋帶，所幸慎夫人，衣不曳地。欲爲一臺，度用百金，廢而不爲。夫豈不知說耳目，便身體，極至尊之用哉？蓋念不傷財，不害民，損上益下之道也。故其十二年而賜民租稅之半，明年遂除民田之租稅。孝景之時，乃令民半出田租，三十而稅一。至武帝之初，七十年間，人給家足，都鄙廩庾盡滿，而府庫餘財，京師之錢，貫朽而不可校，大倉之粟，陳陳相因。語後世之盛王，必稱文景，其故何哉？以能適時之變，過自菲薄而然也。

나는 ‘때 [時]’가 같지 아니함이 있고 ‘일 [事]’이 통변(通變)이 있는 것이니 ‘쓰쓰미 [用]’가 풍족하지 못하면 예는 바로 없어진다는 것이 또한 성인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주나라 이상은 병농(兵農)이 나누어지지 않아서 천자는 육군(六軍), 제후 가운데 대국은 삼군(三軍), 차국(次國)은 이군(二軍), 소국은 일군(一軍)이라는 것이 다 백성에게서 나왔다. 거주하면 비(比)·려(閭)·족(族)·당(黨)·

주(州)·향(鄉)이 되고 행하면 오(伍)·량(兩)·졸(卒)·려(旅)·사(師)·군(軍)이 된다. 반드시 쌀을 갈아 먹었고, 반드시 누에를 쳐서 입었다. 나라의 경비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므로 구주(九州)의 재물은 1,800군(君)을 받들어도 남음이 있었다. 진나라 한나라 이하는 병농이 점점 달라졌다. 국가가 의식을 보조하는 자가 백만을 헤아리게 되었다. 안으로 숙위(宿衛)를 엄하게 하고 밖으로 용적(戎狄)을 몰아내는데 전운(轉運)이 천리였고 상을 주는 것이 거만(鉅萬)이 되었다. 나라의 경비가 날로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구주의 재물은 한 임금을 받드는데도 부족하게 되었다. 여유가 있을 때 쓰는 것은 예를 감당할 수 있으나 부족할 때는 마땅히 깊이 스스로 검약해야한다. 주나라에서도 오히려 마땅히 재단하여 덜어내었는데 주나라보다 심한 나라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나는 감히 듣지 못하였다. 『주역』 소과(小過)괘¹⁰⁵²에 “군자는 씩씩이가 검소함에 지나친다(검소하다).”라고 하였고, 『논어』¹⁰⁵³에 “사치하면 불손하고 검소하면 고루하니 그 불손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고루해야한다.”라고 하였다. ‘검소함’은 성인의 중제(中制)는 아니나 그렇게 해야할 때가 있는 것이니 부득이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나라 효문제(孝文帝)는 검은 명주옷을 입고 가죽신을 신었으며 장식하지 않은 가죽칼집을 찼다. 총애하는 신부인의 옷도 땅에 끌지 아니하였다. 대(臺)를 하나 만들려다가 백금(百金)이 드는 것을 헤아려보고 멈추었다. 귀와 눈을 기쁘게 하고 몸을 편하게 하는데 지존(至尊)의 씩씩이를 다할 수 있다는 것을 어찌 알지 못하였겠는가? 대개 ‘재물을 상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해치지 아니하며’¹⁰⁵⁴, ‘위를 덜어서 아래를 더하는 도’¹⁰⁵⁵를 생각한 것이다. 그러므로 (재위) 12년째에 조세의 반을 백성에게 주었고, 다음해 드디어 민전(民田)의 조세를 없앴다. 효경제(孝景帝)때 백성들로 하여금 전조(田租)의 절반만 내게 하였으니 30분의 1세(稅)였다. 무제(武帝) 초년까지 70년간 백성의 삶이 풍족하여 서울과 시골의 창고가 가득차고 관부(官府)에 재물이 남아돌았다. 경사(京師)의 돈은 꾸러미가 헤어져 셀 수 없고 태창(太倉)의 곡식은 묵고 묵었다.¹⁰⁵⁶ 후세의 성왕(盛王)을 말할 때 반드시 문경(文景)을 일컬으니 그 이유는 무엇인가? ‘때 [時]’의 변화에 능히 적응하여 지나치리만큼 스스

1052) 『주역』 소과: 小過卦 大象傳. 象曰: 山上有雷小過, 君子以, 行過乎恭, 喪過乎哀, 用過乎儉.

1053) 『논어』: 「述而」편 35장. 子曰: 奢則不孫, 儉則固, 與其不孫也, 寧固.

1054) 재물을.....며: 『周易』 節卦 象傳. 天地節而四時成, 節以制度, 不傷財, 不害民.

1055) 위를.....도: 『周易』 益卦 象傳. 益, 損上益下, 民說無疆, 自上下下, 其道大光.

1056) 경사(京師)의.....다: 『史記』 「平準書」.

로 검소하여 그러한 것이다.

於惟一祖二宗，創業屬統，功德至矣。延洪于我后，靡不勤且儉矣。而今羌戎背惠，邊境暴師，勞費不息，帑藏不實，此其過自菲薄，損上益下之時也。伏惟日損之又損之，以文景之心爲心，則天下幸甚。

1조(송태조)와 2종(태종·진종)이 창업수통(創業垂統)¹⁰⁵⁷하신 공덕은 지극하다. 우리 임금(인종)에 크게 이르러 근검(勤儉)하지 아니함이 없으셨다. 그러나 지금 강융(羌戎)이 은혜를 저버리고 변경에서 군사를 일으켜 (우리의) 수고로움과 비용지출을 멈출 수 없는 지경이다. 국고가 비었으니 지금은 지나치리만큼 스스로 검약하여 위를 덜어서 아래를 더하여야 할 때이다. 삼가 옳드려 생각하옵건대 매일 덜어내시고 또 덜어내셔서 문경의 마음으로 마음을 삼으신다면 천하는 매우 다행일 것입니다.

富國策第二

民之大命，穀米也。國之所寶，租稅也。天下久安矣，生人既庶矣，而穀米不益多，租稅不益增者，何也？地力不盡，田不墾闢也。周制井田，一夫百畝，當今四十一畝有奇。人無易業而一心於農，農時不失，農功不粗，則地力可盡也。既又賦之以萊，或五十畝，或百畝，或二百畝，課其餘力，治其曠土，則田可墾闢也。經界既毀，王法弗復，然猶能者時出焉。李愷爲魏文侯作盡地力之教，以爲“地方百里，提封九萬頃，除山澤邑居參分去一，爲田六百萬畝。治田勤謹則畝益三斗，不勤則損亦如之。地方百里之增減，輒爲粟百八十萬石矣。”漢搜粟都尉趙過，能爲代田，一畝三剛，一夫三百剛，而播種於剛中，苗生葉以稍耨隴草，因隴其土，以附苗根，盛暑隴盡而根深，能風與旱，一歲之收，常過縵田一斛以上，善者倍之。此盡地力之效也。孝景詔曰“郡國或磽狹，無所農桑。或地饒廣，薦草莽水泉利，而不得徙，其議民欲徙寬大地，聽之。”此墾田之意也。

1057) 原註: '屬' 은 光緒本에 '垂' 로 되어 있음.

부국책 제2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쌀 [穀米]’이다. 나라가 보배로 여기는 것은 ‘조세’이다. 천하가 오랫동안 편안하고 인구는 많아졌는데도 쌀은 더 많아지지 아니하고 조세가 더 증가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지력(地力)을 다하지 못하였고 농토를 개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나라의 정전제는 한 농부당 100무(畝)였는데 오늘날로 치면 41무쯤 된다. 사람이 생업을 바꾸지 아니하고 농사에 전념할 경우 농사지을 시기를 잃지 아니하고 농공(農功)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지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목정밭, 혹은 50무·혹 100무·혹 200무를 부과하고 남은 힘을 할당하게 하여 공한지를 다스리게 한다면 농토를 개간할 수 있을 것이다. 경계(經界)가 이미 훼손되고 왕법이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유능한 자가 간혹 나타났다. 이회(李愷)는 위문후(魏文侯)를 위하여 지력을 다 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다. (그는) “사방 100리의 땅은 제봉(提封: 영지(領地))이 9만 경(頃)인데 산택(山澤)과 주거지 [邑居] 3분의 1을 빼고 나면 농토가 6백만 무(畝)이다. 농사에 부지런하게 하면 1무당 3두(斗)를 증산할 수 있는데 부지런하지 아니하면 손해도 또한 같다. 사방 100리를 증감할 때 곡식은 180만 석(石)이 된다.¹⁰⁵⁸⁾”라고 하였다. 한나라 수속도위(搜粟都尉) 조과(趙過)¹⁰⁵⁹⁾는 대전(代田)을 만들었다. 1무에 3개의 고랑 [耑] 을 만들면 한 농부당 300개의 고랑인데 고랑 가운데 파종한다. 싹에 잎이 나면 두둑의 풀을 조금씩 김을 매는데 그 흙을 무너뜨려가면서 싹의 뿌리를 덮어준다. 한여름에 두둑이 다 없어지면 뿌리가 깊어져 풍한(風旱)을 견딜 수 있다. 한해의 수확은 고랑이 없는 땅 [縵田] 에 비하여 항상 1곡(斛) 이상을 초과하는데 잘하는 사람은 갑절을 초과한다.¹⁰⁶⁰⁾ 이것이 지력을 다하게 했을 때의 효과이다. 효경제(孝景帝)의 조서에 “군국(郡國)이 혹은 척박하고 좁아 농사라든가 뽕나무를 심을 수 없거나¹⁰⁶¹⁾, 혹은 땅이 비옥하고 넓어 풀이 우거지고 수천(水泉)이 이로우나 옮길 수 없을 때 백성들을 크고 넓은 땅으로¹⁰⁶²⁾ 옮기기를 논의하는 것을 허락한다.”¹⁰⁶³⁾라고 한 것은 농토를 개간한

1058) 사방.....다: 『漢書』 「食貨志」.

1059) 조과(趙過): 漢武帝 末年에 搜粟都尉에 임명되어 代田法을 제안하고, 농기구를 발명한 공이 있었다.

1060) 1무에.....다: 『漢書』 「食貨志」.

1061) 原註: 『漢書』 「景帝紀」에는 ‘桑’ 아래에 ‘穀畜’ 두 글자가 있음.

다는 뜻이다.

今者天下雖安矣，生人雖庶矣，而務本之法，尚或寬弛，何者？貧民無立錫之地，而富者田連阡陌。富人雖有丁強，而乘堅驅良，食有梁肉，其勢不能以力耕也，專以其財役使貧民而已。貧民之黠者則逐末矣，冗食矣。其不能者乃依人莊宅爲浮客耳。田廣而耕者寡，其用功必粗。天期地澤風雨之急，又莫能相救，故地力不可得而盡也。山林藪澤原隰之地，可墾闢者，往往而是，貧者則食不自足，或地非已有，雖欲用力，末由也已。富者則恃其財雄，膏腴易致，孰肯役慮於災沴之事哉？故田不可得而墾闢也。地力不盡，則穀米不多，田不墾闢，則租稅不增，理固然也。

오늘날 천하는 비록 편안하고, 인구는 비록 많으나 무본(務本)의 법이 오히려 혹 느슨해진 것은 무엇 때문인가? 가난한 백성은 송곳 꽃을 땅도 없는데 부자는 농토가 천맥(阡陌)이 연이어진다. 부자는 비록 몸이 건강하더라도 좋은 차에 싹 째 말을 타고 다니며 좋은 음식을 먹지만 그 형세가 (이러하니) 힘써 경작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로지 그 재물로써 가난한 백성을 부릴 따름이다. 가난한 백성 가운데 약은 자는 말(末)을 쫓아 놓고 먹는다. 능력이 없는 자는 남의 장원에 의지하여 떠돌이가 될 뿐이다. 농토는 넓으나 경작하는 사람은 적으니 농공(農功)이 반드시 거칠어진다. 천기(天期)·지택(地澤)·풍우(風雨)의 급한 경우¹⁰⁶⁴⁾에 또한 능히 서로 구원하려하지 않으므로 지력을 다할 수 없는 것이다. 산림과 수택(藪澤)과 원습(原隰)의 땅은 개간이 가능한 곳이 왕왕(往往) 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먹는 것이 스스로 만족스럽지 못한데다가 혹 땅이 자기 소유가 아니니 비록 힘을 쓰고자 하여도 어떻게 할 수 없다. 부자는 그 재물이 많음을 믿고서 기름진 땅을 가지기도 쉬운 마당에 누가 기꺼이 버려진 땅을 개간하는 일에 신경이나 쓰겠는가? 그러므로 농토는 개간이 불가능한 것이다. 지력을 다 쓰지 아니하면 쌀은 많아지지 아니하고, 농토를 개간하지 아니하면 조세가 증가하지 않는 것은 사리가 진실로 그러하다.

1062) 原註: 『漢書』 「景帝紀」에는 '地' 아래에 '者' 가 있음.

1063) 군국(郡國)이.....다: 『漢書』 「景帝紀」.

1064) 천기(天期)..... 경우: 농사지을 때 변수를 말하는데 『周禮』 「地官」 「遂師」에 수사의 업무 중 “巡其稼穡而移用其民, 以救其時事”를 풀이하는 정현의 주에 나옴.

今將救之，則莫若先行抑末之術以驅游民，游民既歸矣，然後限人占田各有頃數，不得過制。游民既歸而兼並不行，則土價必賤，土價賤則田易可得。田易可得而無逐末之路，冗食之幸，則一心於農。一心於農，則地力可盡矣。其不能者，又依富家爲浮客，則富家之役使者衆。役使者衆，則耕者多，耕者多則地力可盡矣。然後於占田之外，有能墾闢者，不限其數。昔晁錯言於文帝，募天下入粟縣官，得以拜爵。今宜遠取秦漢，權設爵級，有墾田及若干頃者，以次賞之。富人既不得廣占田，而可墾闢因以拜爵，則皆將以財役傭，務墾闢矣。如是而人有遺力，地有遺利，倉廩不實，頌聲不作，未之信也。管子曰“與之在君，奪之在君，貧之在君，富之在君。”惟上所裁擇。

지금 바로잡으려 한다면 먼저 ‘억말(抑末)의 술책을 행하여 유민(游民)을 몰아내는 일’ 만한 것이 없다. 유민이 돌아온 뒤에, 백성의 농토 점유를 제한하고, 각각 경(頃)의 숫자를 두어 초과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유민이 돌아오고 검병을 행할 수 없게 하면 농토의 가격은 반드시 낮아질 것이다. 농토의 가격이 낮아지면 농토를 쉽게 구득할 수 있다. 농토를 구득하기 쉬워져 말(末)을 쫓는 길과 놓고 먹는 요행이 없어진다면 농사에 전념할 것이고, 농사에 전념하게 되면 지력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능력이 되지 못한 사람은 또 부잣집에 의지하여 고용이 되면 부잣집에서 부리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부리는 사람이 많아지면 경작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고, 경작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지력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뒤 점유할 수 있는 농토 이외에 개간이 가능하다면 그 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옛날 조조(晁錯, BC200~154)가 문제에게 “천하에 곡식을 가지고 오는 현관(縣官)을 모집하여 벼슬을 주어야 한다.”¹⁰⁶⁵⁾라고 말하였다. 지금 마땅히 멀리 진한(秦漢)의 법을 취하여 임시로 관작을 설치하고, 개간하여 약간의 경(頃)이 있는 사람은 상을 주어야 한다. 부자는 이미 농토를 널리 점유할 수 없는데 개간을 통해서 벼슬 받는 것이 가능하게 해준다면 모두 재물을 고용에 투자하여 개간에 힘쓸 것이다. 이와 같이 백성은 남은 힘이 있고 땅은 남은 이익이 있는데, ‘창고는 채워지지 아니하고 칭송하는 소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관자(管子)가 “주는 것도 임금에게 있고 뺏는 것도 임금에게 있으

1065) 천하에.....다: 조조(晁錯)의 「論貴粟疏」의 내용임.

며 가난하게 하는 것도 임금에게 있고 부유하게 하는 것도 임금에게 있다.”¹⁰⁶⁶⁾ 라고 하였으니 항상께서 재단하여 선택하실 일이다.

富國策第三

貨莫貴乎金，賄莫重乎帛。所貴乎金者，以其器成而可革，革之而不耗也。所重乎帛者，以其用功甚省，而有益於寒也。今茲乘輿之器，享燕之用，內賞賜群臣，外交通四夷，必不可毋用金銀。百官在位，六軍在籍，夏有暑，冬有寒，必不可毋用絲帛。何以使金多而足用，帛賤而易致哉!

부국책 제3

화(貨)는 금(金)보다 귀한 것이 없고, 회(賄)는 비단 [帛] 보다 중한 것이 없다.¹⁰⁶⁷⁾ 금을 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기물(器物)을 만든 뒤에도 (모양을) 바꿀 수 있고, 바꾸더라도 소모되지 않기 때문이다. 비단을 중하게 여기는 까닭은 소용되는 공력(功力)이 매우 떨어지면서도 추위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금 승여(乘輿)의 기물과 향연(享燕)의 비용이라든가 안으로 군신(群臣)에게 상을 주고 밖으로 사이(四夷)와 교통하는데 반드시 금은(金銀)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백관(百官)이 자리에 있고 육군(六軍)이 적(籍)에 있는데 여름 더위와 겨울 추위에 반드시 사백(絲帛)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왜 금을 늘려 사용이 편리하게 하지 아니하며 비단가격을 낮춰 이용이 쉽게 하지 아니하는가!

愚以爲東南之郡，山高者鮮不鑿，土深者鮮不掘。失職之民，網漏之奸，晝夜合作，足蹈重泉而不憂於陷，首戴川澤而不虞於壓。礦石雲湧，爐炭之焰未之有熄。一泥一沙，蔑遺利矣，是金非不出也。平原沃土，桑柘甚盛。蠶女勤苦，罔畏飢渴。急採疾食，

1066) 주는.....다: 『管子』 「國蓄」 편.

1067) 화(貨)는.....다: 『周禮』 「太宰」 에서 태재의 업무중 九職가운데 ‘六曰商賈，阜通貨賄’의 鄭玄注에 ‘金玉曰貨，布帛曰賄’ 라고 하였다. 이구는 『周禮』 를 적극 신뢰하는 입장에서 『周禮』 에 나오는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번역문에서는 가급적 『周禮』 의 용어는 우리말로 풀이하지 않고 그대로 표기하였다.

如避盜賊。繭簿山立，繰車之聲連薨相聞，非貴非驕，靡不務此，是絲非不多也。金盡出而用不足，蓋用之者衆也，絲雖多而帛不賤，蓋不專以爲帛也。

나는 동남의 군(郡)은 산이 높은 곳은 뚫지 않은 곳이 적고, 흙이 깊은 곳은 파지 않은 곳이 적다고 생각한다. 실직한 백성들과 법망에 누락된 간인(姦人)들이 밤낮으로 합작하여 발로는 중천(重泉)을 밟으면서도 빠지는 것을 근심하지 아니하고, 머리로는 천택(川澤)을 이면서도 압사하는 것을 근심하지 않는다. 광석은 구름이 솟구치듯 용광로의 화염이 꺼지지 아니하고, 진흙 한 점 모래 한 알도 온전한 것이 없으니 이는 금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다. 평원과 옥토에 뽕나무가 매우 성하다. 누에치는 여자가 부지런히 고생하여 굶주림과 목마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급히 캐고 빨리 먹는데 도적을 피하듯이 한다. 누에치는 채반은 산처럼 서있고 물레 돌아가는 소리는 집집마다 이어진다. 귀한 사람 잘난 사람 할 것 없이 이에 힘쓰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실[絲]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니다. 금은 다 나오는데 쓰기에 부족한 것은 쓰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요, 실은 비록 많으나 비단 값이 낮지 않은 것은 비단 짜는 것을 전문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古者以金銀爲幣，與泉布並行，既而稍用爲器飾，然亦未甚著也。今也翕然用之，亡有品制。守閭閻者，唯財是視，自飲食類沐之器，玩好之具，或飾或作，必以白金。連斤累鈞，以多爲愜。財愈雄者，則無所不至矣。舉天下皆然，故金雖盡出而用益不足也。

옛날에 금은으로 화폐를 만들어 천포(泉布: 화폐)와 병행하게 하였다. 이윽고 점점 기물의 장식이 되어 갔으나 또한 심히 두드러지지 않는 않았다. 지금은 모두 사용하여 제한이 없다. 작은 고을의 수령도 오직 재물만을 본다. 식기류나 세수하고 목욕하는 용구부터 기호품까지, 혹 장식하거나 혹 제작하는데 반드시 백금(白金)을 쓴다. 근균(斤鈞)이 많이 들어갈수록 만족한다. 재물이 더욱 많은 사람은 이르지 못할 곳이 없다. 온 천하가 다 그러하므로 금은 비록 다 나와도 쓰기에 더욱 부족한 것이다.

古者錦文不粥於市，不示民以奢也。今也庶民之家，必衣重錦厚綾，羅縠之衣，名狀百出，弗可勝窮。工女機杼交臂營作，爭爲纖巧，以漁倍息。其爲帛者，鹽工惡絲而已。故絲雖多而帛不賤也。

옛날에 수놓은 비단은 시장에서 팔지 않았으니 백성들에게 사치를 보이지 않은 것이다. 지금은 서민의 집에서 반드시 중후한 비단 옷을 입는데 비단 옷도 이름과 모양이 다양하여 헤아릴 수 없다. 베짜는 여자가 베틀에서 북을 왔다갔다 열심히 만드는데 섬세하고 기교로운 것 만들기를 다투어, 높은 가격을 낮으려 한다. 비단을 만드는 것은 염공(鹽工)과 악사(惡絲)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실은 비록 많아도 비단은 저렴하지 않는 것이다.

金不足則價騰躍，價騰躍則出邦布而市之，費日增焉猶不能登其數，則率民而買之。彼農民未嘗蓄金銀，一旦當具，則必資於豪黨。資於豪黨，則或壞其產焉。官增其費，民壞其產，此實弊之大也。帛不賤，則貧民弗可得。貧民弗可得，則紵絮不足以御冬，而凍者多矣。官之稅買，其價弗損，而唯行濫之得，帛行濫，則軍吏之衣莫能完固，而貧者多矣。官價弗損，人民多凍，軍吏多貧，此亦弊之大也。

금이 부족하면 가격이 뛰고 가격이 뛰면 방포(邦布)를 내서 사들인다. 비용은 날로 증가하는데 그 수를 맞추지 못하면 백성들에게 사들이게 한다. 저 농민들은 금은을 쌓아두지 못한다. 하루 아침에 할당받은 것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재력가 [豪黨]에게 의지해야 하는데 재력가에게 의지하면 혹 가산을 무너뜨리게 된다. 관(官)은 비용이 증가하고 민(民)은 가산이 파괴되니 이는 실로 큰 병폐이다. 비단 가격이 비싸면 가난한 백성은 얻을 수 없다. 가난한 백성이 얻을 수 없으면 솜 [紵絮]으로 겨울을 막을 수 없어 얼어 죽는 사람이 많아진다. 관에서 세금으로 사들이는데 그 가격을 낮출 수 없으니 오직 조악한 물건 [行濫]을 얻을 뿐이다. 비단이 조악하면 군리(軍吏)의 옷이 좋을 수 없어 가난한 사람이 많아진다. 관의 가격은 줄어지지 아니하고, 인민은 얼어 죽는 사람이 많고, 군리는 가난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이 또한 큰 병폐이다.

今將救之，則莫如明立制度。其用金銀，上下有等，多少有數，匹庶賤類，毋得僭擬，則金不可勝用也。君子小人，服章有別，民非布帛毋得輒衣，工機之功將復其本，則帛不可勝用也。果能此道矣，是宿弊之源可坐而塞也。孔子曰“爲政先禮，禮其政之本乎！”制度，禮之實也。善爲政者，得無留意哉！

지금 바로잡으려 한다면 ‘제도를 밝게 세우는 일’ 만한 것이 없다. 금은을 쓸 때 상하에 등급을 두고, 다소(多少)에 수를 두어야 한다. 필부와 서민과 미천한 사람들은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면 금을 이루 다 쓸 수 없을 것이다. 군자와 소인은 복장에 분별이 있다. 백성은 베와 비단이 아니면 옷을 입을 수 없다. 베짜는 공력이 그 근본을 회복한다면 비단은 이루 다 쓸 수 없을 것이다. 이 도를 과연 능히 쓴다면 해묵은 폐단의 근원을 가히 앗아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공자는 “정치를 하는데 예를 먼저 해야하니 예는 정치의 근본이다!”¹⁰⁶⁸⁾ 라고 말씀하셨다. 제도는 예의 실제이다. 정치를 잘하려는 자 유의하지 않을 것인가!

富國策第四

或曰：前所謂驅游民而歸之，謂逐末也，冗食也。末者何事？冗者何名？其所以驅之，請言其術。

曰：所謂末者，工商也。所謂冗者，不在四民之列者也。古者工不造瑯琢，商不通侈靡。僞飾之禁，在民者十有二，在商者十有二，在賈者十有二，在工者十有二。故工之所作，賈之所粥，商之所資，皆用物也。用物有限，則工商亦有數。今也民間淫侈無度，以竒相矚，以新相誇。工以用物爲鄙，而競作機巧，商以用物爲凡，而競通珍異。或旬月之功而朝夕敝焉，或萬里之來而墜地毀焉。物無益而利無算，故民優爲之，工商所以日多也。

부국책 제4

1068) 정치를.....다: 『孔子家語』 「大婚解」 편.

혹자가 말하였다. 전에 이른바 ‘유민(游民)을 몰아내서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은 말(末)을 쫓기 때문이고, 놓고 먹기 때문 [冗食] 이라고 하였다. ‘말’은 무슨 일이고, ‘용(冗)’은 무엇을 이르는 것인가? 그 몰아낸다는 것은 어떤 술책을 쓰다는 것인지 말해주길 청하노라.

말한다. 이른바 ‘말’이라는 것은 공상(工商)이다. 이른바 ‘용’이라는 것은 사민(四民)의 반열에 있지 않는 것이다. 옛날에 공(工)은 옥을 아로새기는 것 [瑠琢] 을 만들지 아니하였고, 상(商)은 사치품을 통용시키지 않았다. 위식(僞飾)을 금하는 것이 민(民)이 12가지, 상(商)이 12가지, 고(賈)가 12가지, 공(工)이 12가지가 있었다.¹⁰⁶⁹⁾ 그러므로 공이 만들고, 고가 팔고, 상이 유통시키는 것은 모두 실용적인 물건이었다. 실용적인 물건이 제한이 있으면 공상도 또한 정한 수(數)가 있었던 것이었다. 지금은 민간의 음란과 사치가 도수가 없어 기이한 것으로 써 서로 자랑하고, 새로운 것으로 써 서로 과시한다. 공은 실용적인 물건을 비루하다 여기고 경쟁적으로 기교한 것을 만들어 낸다. 상은 실용적인 물건을 평범하다 여기고 경쟁적으로 진이(珍異)한 것을 통용시킨다. 혹 만 한달 걸린 공력이 조석(朝夕)에 부서지고, 혹 만리 밖에서 온 것이 땅에 닿자마자 훼손되기도 한다. 물건은 유익함이 없는데 이익은 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모두가 하려고 하니 공상이 날마다 많아지는 것이다.

古者祀天神，祭地祇，享人鬼，他未聞也。今也釋老用事，率吾民而事之，爲緇焉，爲黃焉，籍而未度者，民之爲役者，無慮幾百萬。廣占良田利宅，嫩衣飽食，坐談空虛以誑曜愚俗，此不在四民之列者也。

옛날에 천신(天神)에 사(祀)를 하고 지기(地祇)에 제(祭)를 하고 인귀(人鬼)에 향(享)을 하였는데 다른 것은 듣지 못하였다. 지금은 ‘석(釋)·노(老)’가 권세를 떨쳐서 우리 백성들에게 섬기게 한다. 중이 되거나 도사가 되거나, 적(籍)이 있으면서 도첩받지 아니한 자, 백성중에 부림이 되는 자(신도)가 무려 수 백만이다. 좋은 농토와 집을 널리 차지하고 호의호식 한다. 앉아서 공허(空虛)를 말하여 어리석은 백성들을 속인다. 이는 사민의 반열에 있지 않았던 것이다.

1069) 위식(僞飾)을.....다: 『周禮』 「司市」.

古者府史胥徒，官有定數。今也郡縣之治，未免寬貸，冒名待闕，傭書雇納，請囑之流，動以千計。內滿官府，外填街陌，交相贊助，招權爲奸，狗偷蠶食，竭人膏血，此又不在四民之列者也。

옛날에 부사(府史: 書記)와 서도(胥徒: 아전)는 관에 정한 수가 있었다. 지금은 군현을 다스리는데 관대(寬貸)·모명(冒名)·대궐(待闕)·용서(傭書)·고납(雇納)·청촉(請囑)의 종류를 피할 수 없는데 움직였다하면 (그 수가) 천(千)을 헤아린다. 안으로 관부(官府)에 가득차고 밖으로 거리를 메운다. 서로 서로 도와 가면서 권력에 들러붙어 간사한 일을 한다. 개처럼 훔치고¹⁰⁷⁰⁾ 누에처럼 먹어들면서 사람들의 고혈을 고갈시킨다. 이 또한 사민의 반열에 있지 않았던 것이다.

古者執左道以亂政，殺，假於鬼神時日卜筮以疑衆，殺。周禮有醫師掌疾醫瘍醫，以治萬民之疾病疔瘍，其員不過十數。今也巫醫卜相之類，肩相摩，鞞相擊也。或托淫邪之鬼，或用亡驗之方，或輕言天地之數，或自許人倫之鑿，迂怪矯妄，獵取財物，人之信之若司命焉。此又不在四民之列者也。

옛날에 좌도(左道)를 잡고 정치를 혼란케 하는 자는 죽었다. 귀신(鬼神)·시일(時日)·복서(卜筮)에 가탁하여 군중을 의혹되게 하면 죽었다. 『주례(周禮)』에 의사(醫師)는 질의(疾醫)와 양의(瘍醫)를 관장하여 만민의 질병을 다스렸는데 그 인원이 십수(十數)에 불과하였다. 지금은 무의(巫醫)와 복상(卜相)의 무리가 어깨를 서로 어루만지고 수레가 서로 부딪칠 지경이다. 혹은 음사(淫邪)의 귀신에게 가탁하기도 하고, 혹은 증험이 없는 처방을 사용하기도 하며, 혹은 천지의 수(數)를 가벼이 말하기도 하고, 혹은 스스로가 인륜의 귀감이라고 자처하기도 한다. 괴이하고 망녕되게 재물을 엿취(獵取)하는데 사람들이 믿기를 사명(司命: 명을 관장하는 신)처럼 한다. 이 또한 사민의 반열에 있지 않았던 것이다.

古者，天子諸侯大夫士用樂，庶人無用樂之文。況新樂之發，子夏所不語，匹夫熒

1070) 原註: '偷'는 光緒本에 '盜'로 되어 있다.

惑諸侯，孔子誅之。今也里巷之中，鼓吹無節，歌舞相樂，倡優擾雜，角抵之戲，木革革鞠，養玩鳥獸，其徒亡數，群行類聚，往來自恣，仰給於人。此又不在四民之列者也。

옛날에 천자·제후·대부·사는 음악을 썼지만 서인이 음악을 썼다는 글은 없다. 하물며 새로운 음악의 발명은 자하도 말하지 아니하는 것 이었다.¹⁰⁷¹⁾ 필부가 제후를 현혹하면 공자가 죽었다. 지금은 향간에 고취(鼓吹)함이 절도가 없다. 가무를 서로 즐기고, 광대가 시끄러우며, 씨름하고, 바둑 두고, 가죽 공 놀이하며, 조수(鳥獸) 기르기를 즐기는데 그 무리를 셀 수 없다.¹⁰⁷²⁾ 무리짓고 어울려 오고 가기를 마음대로 하면서 사람들에게 급여를 받는다. 이 또한 사민의 반열에 있지 않았던 것이다.

一夫不耕，或受之飢，一女不織，或受之寒。而不耕者凡幾夫？不織者凡幾女？奈何民不飢且寒也？百姓不足，君孰與足？民飢寒而上不匱者，未之有也。

한 농부가 경작하지 아니하면 혹 굶주림을 받고, 한 여자가 베를 짜지 아니하면 혹 추위를 받는 것인데 경작하지 아니하는 자 무릇 몇 명이며, 베 짜지 아니하는 여자가 무릇 몇 명인가? 어떻게 백성이 굶주리고 춥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백성이 풍족하지 못하면 임금은 누구와 더불어 풍족할 것인가? 백성이 굶주리고 추운데 윗사람이 궁핍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

欲驅工商，則莫若復樸素而禁巧僞。樸素復，則物少價，巧僞去，則用有數。利薄而不售，則或罷歸矣。如此則工商可驅也。

공상(工商)을 몰아내고자 한다면 ‘소박함을 회복하고 사치품을 금하는 일’ 만한 것이 없다. 소박함을 회복하면 물건 가격이 내려가고, 사치품을 없애면 실용적인 물건이 다수가 있게 된다. 이익이 박하고 팔리지 아니하면 혹 파하고 돌아올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공상을 몰아낼 수 있다.

1071) 새로운.....다: 『禮記』 「樂記」 편.

1072) 原註: ‘亡’은 원래 ‘之’로 되어 있으나 光緒本에 근거하여 고쳤다.

欲驅緇黃，則莫若止度人而禁修寺觀，止度人，則未度者無所待而皆罷歸矣，禁修寺觀則已度者，不安其居而或罷歸矣。其不歸者，後數十年物故盡矣。如此則緇黃可驅也。

‘치(緇)·황(黃)’을 몰아내고자 한다면 ‘사람들에게 도첩 내리는 것을 중지하고 절과 도관 수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 만한 것이 없다. 사람들에게 도첩 내리는 것을 중지하면 도첩을 받지 못한 자들은 기대할 것이 없어 모두 파하고 돌아올 것이다. 절과 도관 수리하는 것을 금지하면 이미 도첩을 받은 자들도 그 거처가 편안치 아니하여 혹 파하고 돌아올 것이다.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수 십년이 지나면 사라질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치·황을 몰아낼 수 있다.

欲驅官府之奸，則莫若申明憲令，慎擇守宰。法嚴而吏察，則無所措手。無所措手，則不得不罷歸矣。如此則官府之奸可驅也。

관부의 간인(姦人)을 몰아내고자 한다면 ‘법령을 거듭 밝히고, 수령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일’ 만한 것이 없다. 법이 엄하고 관리를 감찰하면 손을 놀릴 곳이 없을 것이다. 손을 놀릴 곳이 없으면 파하고 돌아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관부의 간인을 몰아낼 수 있다.

欲驅方術之濫，則莫若立醫學以教生徒，制其員數，責以精深，治人不愈，書以爲罪，其餘妖妄托言禍福，一切禁絕，重以遴募，論之如法。爲之既艱，則不得不罷歸矣。如此則方術之濫可驅也。

방술(方術)이 범람하는 것을 몰아내고자 한다면 ‘의학(醫學)을 설립하여 생도를 가르치는 일’ 만한 것이 없다. 그 인원 수를 제정하여 정밀하고 깊게 책임을 지게 하고, 사람을 치료하되 낫지 아니하면 적어서 죄를 삼는다. 그 나머지 요망하여 화복을 핑계짓는 사람들은 일체 금절(禁絶)한다. 거듭 걸려들면 법대로 논한다. 하기가 어려워지면 파하고 돌아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방술의 범람을 몰아낼 수 있다.

欲驅聲伎之賤，則莫若令民家毋得用樂，衣冠之會，勿納俳戲，申命關防，呵其過往，用之既少，則不得不罷歸矣。如此則聲伎之賤可驅也。

성기(聲伎)의 천함을 몰아내고자 한다면 ‘민가에서 음악을 쓸 수 없게 하는 일’ 만한 것이 없다. 의관을 갖춘 사람들의 모임에서는 광대를 들이지 말아야 한다. 거듭 명하여 막고, 지나친 것을 꾸짖어야 한다. 불려갈 일이 줄어들면 파하고 돌아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성기(聲伎)의 천함을 몰아낼 수 있다.

驅之有術，復之有業，然而不力於農者，未之信也。

몰아내는데 술책이 있고, 회복하는데 업적이 있다. 그렇게 하고도 농사에 힘 쓰지 않는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富國策第五

或曰：釋老之弊，酷排者多矣。然以修心養真，化人以善，或有益於世，故聖賢相因，重其改作。今欲驅緇黃而歸之，無乃已甚乎？

曰：夫所謂修心化人者，舍吾堯舜之道，將安之乎？彼修心化人而不由於禮，苟簡自恣而已矣。昔孟子之闢楊墨曰“楊氏爲我，是無君也，墨氏兼愛，是無父也。”今山澤之靡，務爲無求於世，呼吸服食，謂壽可長，非爲我乎？浮屠之法，棄家違親，鳥獸魚鱉，毋得殺伐，非兼愛乎？爲我是無君，兼愛是無父，無父無君，不忠不孝，況其弗及者，則罪可知矣。故韓愈曰“釋老之弊，過於楊墨”也。然而曰“人其人，火其書，廬其居”則言之太暴，驅之無漸。何者？飽食安居，其習已久，一旦斂數十百萬人而冠之，則驚擾甚矣。故前所謂止度人而禁修寺觀者，漸而驅之之術也。

부국책 제5

흑자가 말하였다. 석(釋)·노(老)의 폐단은 흑독하게 비판한 사람이 많다. 그러나 마음을 닦고 진(眞)을 길러 사람들을 선(善)으로 교화하니 흑 세상에 유익한 측면도 있다. 그러므로 성현이 서로 인하여 거듭 고쳐 나갔다. 지금 ‘치·황’을 몰아내어 돌려보내고자 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말한다. 저 이른바 ‘수심화인(修心化人)’이라는 것은 우리 요순의 도를 버리고 장차 어디로 간다는 것인가? 저들이 ‘수심화인’ 한다면 예로 말미암지 않는다 면 진실로 ‘간(簡)’을 하면서 스스로 방자할 따름이다. 옛날 맹자가 양주와 목적을 물리치면서 “양씨는 나를 위하는 것이니 이는 임금이 없는 것이다. 목씨는 겸애를 말하니 이는 아버지가 없는 것이다.”¹⁰⁷³⁾라고 하였다. 지금 산택(山澤)의 야원 사람이 세상에 구함이 없는데 힘을 써, 호흠과 복식으로 수명을 연장한다고 말하니 ‘위아(爲我)’가 아닌가? 부도(浮屠)의 법은 가정을 버리고 어버이를 어기며 조수어벌(鳥獸魚鼈)을 죽이지 말라고 하니 ‘겸애’가 아닌가? ‘위아’는 ‘무군(無君)’이요, ‘겸애’는 ‘무부(無父)’이니 ‘무부’와 ‘무군’은 ‘불효(不孝)’와 ‘불충(不忠)’이다. 하물며 그 미치지 못하는 자는 죄를 가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유(韓愈)가 “석(釋)·노(老)의 폐단은 양주와 목적보다 지나치다.”¹⁰⁷⁴⁾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백성으로 만들고¹⁰⁷⁵⁾, 그 책을 불사르고, 그 거처를 민가로 만들자.”¹⁰⁷⁶⁾ 라고 하였다. 그 말이 너무 과격하고, 몰아내는 것이 급진적이니 어떻게 되겠는가? 배불리 먹고 편안히 거처하여 그 습관이 이미 오래라. 하루 아침에 수십백만의 사람을 거두어 갓을 쓰게 한다면 놀라고 동요되는 것이 심할 것이다. 그러므로 앞에 이른바 도첩을 중지하고 사관(寺觀) 수리를 금하게 하는 것이 점진적으로 몰아내는 술책이 될 것이다.

緇黃存則其害有十，緇黃去則其利有十．男不知耕而農夫食之，女不知蠶而織婦衣之，其害一也．男則曠，女則怨，上感陰陽，下長淫濫，其害二也．幼不爲黃，長不爲丁，坐逃繇役，弗給公上，其害三也．俗不患貧而患不施，不患惡而患不齋，民財以

1073) 양씨는.....다: 『孟子』 「滕文公下」 9장.

1074) 석(釋)·노(老)의.....다: 『昌黎先生集』 「與孟簡尙書書」.

1075) 原註: ‘人’은 응당 ‘民’으로 해야 하는데 당태종을 피휘하여 고친 것이다.

1076) 그 사람들을.....자: 『昌黎先生集』 「原道」.

殫，國用以耗，其害四也。誘人子弟，以披以削，親老莫養，家貧莫救，其害五也。不易之田，樹藝之圃，大山澤藪，跨據畧盡，其害六也。營繕之功，歲月弗已，驅我貧民，奪我農時，其害七也。材木瓦石，兼收並採，市價騰踊，民無室廬，其害八也。門堂之飭，器用之華，刻畫丹漆，末作以熾，其害九也。惰農之子，避吏之猾，以傭以役，所至如歸，其害十也。

‘치·황’이 존재하면 그 해로움이 열 가지이고 치·황이 사라지면 그 이로움이 열 가지이다. 남자가 경작을 알지 못하는데 농부가 먹여주고 여자가 누에치는 것을 모르는데 직녀가 입혀주니 그 해(害)가 하나이다. 남자는 장가를 안가고 여자는 시집을 안가서 위로는 음양을 느끼고 아래로는 음람(淫濫)을 조장하니 그 해가 둘이다. 어려서는 어린이로 적에 올리지 아니하고 자라서 장정(壯丁)에 등록되지 않으며 앉아서 요역을 도피하여 공상(公上)에 바치지 않으니 그 해가 셋이다. 풍속이 가난을 근심하지 아니하고 보시 못하는 것을 근심하며, 악행은 근심하지 아니하고 재(齋)를 못하는 것을 근심한다. 백성의 재물은 고갈되고 국용(國用)은 소모되니 그 해가 넷이다. 남의 자제를 꺾어 (승복·도복을) 입히고 머리를 깎게 한다. 아버이 늙어서 봉양을 못하게 하고 집이 가난해도 구원하지 못하게 만드니 그 해가 다섯이다. 갈지 않는 농토와 심고 가꿀 포전(圃田), 큰 산과 택수(澤藪)를 넓게 차지하니 그 해가 여섯이다. (절과 도관을) 경영하고 수선하는 공력이 해와 달을 쉬지 아니하여 우리의 가난한 백성을 몰고 우리 농사지를 때를 빼앗으니 그 해가 일곱이다. 목재와 기와와 돌을 검병하여 거두어 들인다. 시장 가격이 뛰어서 백성들은 살 집이 없으니 그 해가 여덟이다. 문당(門堂)을 꾸미고 기물이 호화로워 새기고 그리고 단청을 칠하는데 상공업 [末作] 을 번성하게 하니 그 해가 아홉이다. 게으른 농부의 아들이나 관리를 피하는 교활한 자들이 고용되고 부림을 당하여 이르는 곳에 (자기집) 돌아가는 것처럼 여기니 그 해가 열이다.

果去之，則男可使耕，而農夫不輟食矣，女可使蠶，而織婦不輟衣矣，其利一也。男則有室，女則有家，和氣以臻，風俗以正，其利二也。戶有增口，籍有增丁，繇役乃均，民力不困，其利三也。財無所施，食無所齋，民有羨餘，國以充實，其利四也。

父保其子，兄保其弟，冠焉帶焉，沒齒弗去，其利五也。土田之直，有助經費，山澤之富，一歸衡虞，其利六也。營繕之勞，悉已禁止，不驅貧民，不奪農時，其利七也。良材密石，亦既亡用，民得築蓋，官得繕完，其利八也。淫巧之工，無所措手，棄末反本，盡緣南畝，其利九也。宮毀寺壞，不傭不役，惰者狷者，靡所逋逃，其利十也。

과감하게 제거하면 남자는 경작을 시켜 농부가 먹는 것을 그치지 아니할 것이며, 여자는 누에를 치게 하여 베 짜는 여자가 옷 짓는 것을 그치지 아니할 것이니 그 이로움이 하나이다. 남자는 아내가 있고 여자는 가정이 있어 화기(和氣)가 이르고 풍속이 바로잡아질 것이니 그 이로움이 둘이다. 호구(戶口)가 증가하고 장정이 증가하여 요역이 고르고 민력(民力)이 곤궁하지 아니할 것이니 그 이로움이 셋이다. 재물을 보시하는 것이 없고 음식을 공양하는 것이 없어 백성에게는 남은 것이 있고 국고는 채워지니 그 이로움이 넷이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전하고 형은 그 동생을 보전하여 관례를 하고 띠를 돌려 죽을 때까지 떠나가지 아니하니 그 이로움이 다섯이다. 토전(土田)¹⁰⁷⁷이 곧 경비를 도우는 것이 있고, 산택의 부유함이 하나같이 국고로 돌아오니 그 이로움이 여섯이다. 건축하고 수리하는 수고로움이 모두 금지되면 가난한 백성을 동원하지 아니하고 농사 지을 때를 빼앗지 아니할 것이니 그 이로움이 일곱이다. 좋은 재목과 돌을 또한 이미 쓸 곳이 없어지니 백성들은 건축할 수 있고 관에서도 완전하게 쓸 수 있으니 그 이로움이 여덟이다. 음란한 곳에 기교를 부리던 장인들이 손을 놀릴 곳이 없어 말(末)을 버리고 근본으로 돌아와 모두 논밭에 정착할 것이니 그 이로움이 아홉이다. 도관과 절이 없어지면 고용되고 부리는 일이 사라져 게으른 자와 교활한 자가 도망갈 곳이 없어질 것이니 그 이로움이 열이다.

去十害而取十利，民人樂業，國家富強，萬世之策也，何憚而不爲哉？將以存而勿論乎？則董仲舒以爲“諸不在六藝之科，孔子之術者，皆絕其道，勿使並進。邪闢之說滅息，然後統紀可一，而法度可明，民知所從矣。”將以爲民祈福乎？則詩云“豈弟君子，求福不回。”此皆賢人之至論，先聖之法言也。少留神明，孰禦焉！

1077) 原註: ‘土田’은 正德本, 萬曆本, 光緒本에 ‘田土’로 되어 있다.

열 가지 해를 없애고 열 가지 이로움을 취하면 백성들은 생업에 즐거워 하고 국가는 부강하여 만세의 계책이 될 것인데 무엇을 꺼려 하지 아니하는가? 장차 남겨두어 (더 이상) 거론치 못하게 할 것인가? 동중서가 “육예(六藝)의 과(科)와 공자의 술(術)에 있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그 도를 끊고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사벽(邪辟)한 말들이 멸식된 뒤에 통기(統紀)를 하나로 할 수 있고 법도가 밝아져 백성들이 따를 바를 알게 될 것이다.”¹⁰⁷⁸⁾ 라고 하였다. 장차 백성들이 복을 비는 곳이 되게 할 것인가? 시에 “개제(豈弟: 樂易)한 군자(君子: 文王)여! 복을 구함이 간사하지 않다.”¹⁰⁷⁹⁾ 라고 하였으니 이는 다 현인의 지론이요, 선성(先聖)의 법언이다. 조금이라도 신명을 머무른다면 누가 막을 것인가!

富國策第六

古人有言曰“穀甚賤則傷農，貴則傷末。”謂農常糶而末常糶也，此一切之論也。愚以爲賤則傷農，貴亦傷農。賤則利末，貴亦利末。蓋農不常糶，有時而糶也，末不常糶，有時而糶也。以一歲之中論之，大抵斂時多賤，而種時多貴矣。夫農勞於作，劇於病也，愛其穀，甚於生也。不得已而糶者，則有由焉。小則具服器，大則營昏喪。公有賦役之令，私有稱貸之責，故一穀始熟，腰鎌未解而日輸於市焉。糶者既多，其價不得不賤，賤則賈人乘勢而罔之，輕其幣而大其量，不然則不售矣。故曰：斂時多賤，賤則傷農而利末也。農人倉廩既不盈，寶窖既不實，多或數月，少或旬時，而用度竭矣。土將生而或無種也，耒將執而或無食也，於是乎日取於市焉。糶者既多，其價不得不貴。貴則賈人乘勢而閉之，重其幣而小其量，不然則不予矣。故曰：種時多貴，貴亦傷農而利末也。

부국책 제6

옛사람이 말하기를 “곡물가격이 매우 낮으면 농(農)을 상하게 하고 높으면 말(末)을 상하게 한다.”¹⁰⁸⁰⁾ 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농’은 항상 내다 팔고 ‘말’은

1078) 육예(六藝)의.....다: 『漢書』 「董仲舒傳」.

1079) 개제(豈弟: 樂易)한.....다: 『詩』 「大雅」 「旱麓」 편.

1080) 곡물가격이.....다: 『漢書』 「食貨志」.

항상 사들인다는 것인데 일체의 논의가 그러하다. (그러나) 나는 곡물가격이 낮아도 ‘농’을 상하게 하고 높아도 또한 ‘농’을 상하게 하며, 낮아도 ‘말’을 이롭게 하고 높아도 또한 ‘말’을 이롭게 한다고 생각한다. 대개 ‘농’은 항상 내다 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사들이기도 하며, ‘말’은 항상 사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내다 팔기도 한다. 일년으로 논해보면 대저 수확철에는 낮고 파종할 때는 높다. 무릇 농부가 경작할 때의 수고로움은 병들 때 보다 심하니 그 곡식 아끼기를 목숨보다 심하게 여긴다. 부득이 내다 파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작게는 의복과 기물을 장만하는 것이고 크게는 혼례와 상례를 위해서이다. 공적으로 부역의 명령이 있고 사적으로 이자를 감당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므로 곡식이 익자마자 허리에 두른 낫을 풀기도 전에 그 날로 시장에 실어 나른다. 내다 파는 사람이 많으니 그 가격은 낮아지지 않을 수 없다. 낮아지면 장사치는 그 때를 틈타 이익을 망라한다.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을 구매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팔 수 없다. 그러므로 “수확철에 가격이 낮아지고, 낮아지면 ‘농’을 상하게 하고 ‘말’을 이롭게 한다.”고 말한 것이다. 농부는 이미 창고가 바닥나고 광이 채워지지 아니한 채 많게는 혹 몇 달 적게는 혹 열흘 남짓에 용도(用度)가 고갈된다. 땅은 장차 생산하려해도 혹 심을 것이 없고, 쟁기는 장차 쥐었어도 혹 먹을 것이 없다. 이에 날로 시장에서 취하게 된다. 사들이려는 사람은 많으니 그 가격은 높아지지 않을 수 없다. 높아지면 장사치는 이 때를 틈타 (창고를) 닫아버리고 고가에 소량을 판매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파종할 때 가격이 올라 가니 올라도 또한 ‘농’을 상하게 하고 ‘말’을 이롭게 한다.”고 말한 것이다.

農之糶也，或闔頃而收，連車而出，不能以足用。及其糶也，或倍稱賤賣，毀室伐樹，不能以足食。而坐賈常規人之餘，幸人之不足，所爲甚逸而所得甚饒，此農所以困窮而末所以兼恣也。易繫辭曰“何以聚人？曰財。理財正辭，禁民爲非曰義。”財者，君之所理也。君不理，則蓄賈專行而制民命矣，上之澤於是下流而人無聊矣。此平糶之法有爲而作也。管仲行於齊，李悝行於魏，耿壽昌行於漢，國不失實，人獲其利。自晉迄隋，時或興廢，厥聞未昭。唐天寶中，天下平糶，殆五百萬斛，茲全盛之事也。大宋受命將百年矣，穀入之藏，所在山積，平糶之法，行之久矣。

농부가 내다 팔 때 온 경(頃)을 다 거두어 들이고 수레를 연이어 내어도 쓰기에 부족하다. 사들일 때는 흑 낮을 때 판 가격의 배를 주고, 집을 헐고 나무를 베어도 먹기에 부족하다. 그런데 앓은 장사치는 항상 사람들이 남을 때를 살피고 사람들이 부족할 때를 요행으로 여기니, 하는 일은 매우 편하면서도 소득은 매우 크다. 이것이 바로 농사짓는 사람은 곤궁한 까닭이고 ‘말’은 이익을 겸하여 방자해지는 까닭이다. 『주역』 「계사(繫辭)」에 “무엇으로 사람을 모으는가? 재물이다. 재물을 다스리고 말을 바르게 하며 백성이 그릇된 일 하는 것 금하는 것을 의(義)라고 한다.”¹⁰⁸¹⁾ 라고 하였다. 재물이란 것은 임금이 다스리는 것이다. 임금이 다스리지 아니하면 장사치가 마음대로 행하여 백성의 목숨을 마음대로 통제할 것이다. 위의 혜택이 이에 아래로 흐르지 아니하여 백성은 하릴없어진다. 이에 평적법(平糶法)이 만들어진 것이다. 관중이 제나라에서 시행하였고 이회가 위나라에서 시행하였고 경수창(耿壽昌)이 한나라에서 시행하여 나라는 실익을 잃지 않고 백성은 실리를 얻었다. 진(晉)나라에서 수(隋)나라까지 때로 흥폐(興廢)가 있었으나 자세하지 않다. 당나라 천보(天寶:玄宗,742~756) 연간에 천하의 평적이 자못 500만 곡(斛)이었으니 이것이 전성기 때의 일이다. 대송(大宋)은 천명을 받은 지 100년이다. 곡식을 거두어 저장하여 쌓아 둔 것이 산 같고 평적법을 행한 지 오래되었다.

蓋平糶之法行，則農人秋糶不甚賤，春糶不甚貴，大賈蓄家不得豪奪之矣。而官之出息，常什一二，民既不困，國且有利，茲古聖賢之用心也。然其所未至，則有三焉，數少也，道遠也，吏奸也。一郡之糶不過數千萬，其餘畢入於賈人。至春當糶，寡出之則不足於飢也，多出之則可計日而盡也。於是賈人深藏而待其盡，盡則權歸於賈人矣，是數少之弊也。倉儲之建，皆在郡治，縣之遠者，或數百里，其貧民多糶則無資，少糶則非可，朝行而暮歸也，故終弗得而食之矣。是道遠之弊也。舉掌之人，政或以賄，槩量不均，行濫時有。及其出也，或減焉，或雜焉，名曰裁價，實則貴矣，是吏奸之弊也。今若廣置本泉，增其糶數，則蓄賈無所專利矣，倉儲之建，各於其縣，則遠民可以得食矣，申命州部，必使廉能，則奸吏無以侵刻矣。如此，利國使人，事可經久，是謂通輕

1081) 무엇으로.....다: 『易』 「繫辭下」 1장.

重之權，不可不察。

대개 평적법이 행하여지면 농부는 가을에 매우 낮은 가격에 팔지 않게 되고 봄에 매우 높은 가격에 사들이지 않게 된다. 큰 장사치들은 크게 약탈할 수 없게 된다. 관에서는 항상 10의 1이나 2를 이자 물게 하니 백성은 곤궁하지 않고 국가는 이익이 있다. 이는 옛 성현들의 마음 씀이다. 그러나 그 이르지 못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으니 수가 적고, 길이 멀고, 관리가 간악한 것이다. 한 군(郡)에서 사들이는 것이 수천만이 안되는데 나머지는 다 장사치에게 들어간다. 봄에 내다 팔 때 적게 내놓으면 기근에도 부족하고 많이 내놓으면 곧 다하게 된다. 이에 장사치는 깊이 저장하여 그 다할 때를 기다린다. 다하게 되면 권세가 장사치에게 돌아가니 이는 수가 적기 때문에 생긴 폐단이다. 창고를 세우는 것이 다군의 치소에 있다. 현(縣)이 먼 곳은 혹 수백리이니 가난한 백성이 많이 사들이려고 하나 도움 받을 곳이 없고 적게 사들인들 의미가 없다. 아침에 갔다 저녁에 돌아오게 되므로 마침내 먹을 수가 없다. 이는 길이 멀어서 생긴 폐단이다. 관장하는 사람이 업무에 혹 뇌물을 받거나 양을 고르게 하지 아니하여 때로 횡령한다. 내놓을 때 혹 덜거나 섞어 버리면서 ‘가격을 조정했다’라고 이름하지만 사실은 높은 가격이다. 이는 관리가 간악하기 때문에 생긴 폐단이다. 지금 만약 그 본전을 증액하여 그 사들이는 수를 늘린다면 쌓아둔 장사치들은 이익을 오로지할 곳이 없을 것이다. 창고 세우는 것을 각 현에 두면 먼 백성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주부(州部)에 거둬 명하여 반드시 청렴하고 능력있게 한다면 간사한 관리는 침탈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국가는 편리하고 백성은 이로워 일이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경중의 권도를 통한다’고 이르는 것이니 살피지 않을 수 없다.

富國策第七

水旱之憂，聖王所不免。堯湯之事，賢愚嘗共聞也。故君人者，務多蓄積，以爲之備。王制曰“三年耕必有一年之食，九年耕必有三年之食，以三十年之通，雖有凶旱水溢，民無菜色。”周禮“遺人掌邦之委積，以待施惠。鄉里之委積，以恤民之艱厄，

門關之委積，以養老孤，郊里之委積，以待賓客，野鄙之委積，以待羈旅，縣都之委積，以待凶荒。”此皆計國用之餘，隨便蓄積，以須乏困。故時可災，物可夭，苗可槁，地可赤，而人不可飢也。自井田法壞，軍國務煩，政取一切，或未猶遠。兵有儲，邊有備，則國之幸矣，吏之能矣，元元之民自爲之而已矣。

부국책 제7

홍수와 가뭄의 근심은 성왕(聖王)도 면할 수 없었다. 요(堯)와 탕(湯)의 일은 어진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일찍이 함께 들었다. 그러므로 임금은 많이 쌓아두는 것에 힘써 대비하여야 한다. 「왕제(王制)」에 “3년을 경작하면 반드시 1년 먹을 것이 있고, 9년을 경작하면 반드시 3년 먹을 것이 있다. 30년을 통하면 비록 홍수와 가뭄이 있어도 백성은 굶주린 낮빛이 없게 된다.”라고 하였다. 『주례』에 “유인(遺人)은 나라의 위자(委積: 저축)를 관장하여 시혜(施惠)를 대비한다. 향리(鄉里)의 위자로서 백성의 간액(艱阨: 年穀不熟)을 구휼하고 문관(門關)의 위자로서 노인과 고아를 기르며, 교리(郊里)의 위자로서 빈객을 대비하고 야비(野鄙)의 위자로서 기려(羈旅)를 대비하며, 현도(縣都)의 위자로서 흉황(凶荒)을 대비한다.”¹⁰⁸²⁾ 라고 하였다. 이는 다 국가예산의 남은 것을 계산하여 편의에 따라 비축해 두었다가 곤궁할 때를 대비한 것이다. 그러므로 시절에 재앙이 있거나 물자가 부족하거나 싹이 고사하거나 땅이 황폐해지는 경우가 있어도 백성들은 굶주리지 않는 것이다. 정전법이 무너진 뒤 군국(軍國)이 번잡함에 힘써 일체 세금을 취한 것이 혹 오히려 멀지 않다. 병(兵)이 쌓아둔 것이 있고 변방에 대비가 되어 있으면 국가는 다행이요 관리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백성은 스스로 할 따름이다.

夫民之無知，靡衣偷食，豐歲粒米狼戾有不愛也。食之亡節，用之亡度，或委於糞土，或腐於甑甗，或以飴狗馬，或以肥雞鶩。計口論費，幾何而不倍蓰也？及其凶年，則家不素蓄，人不豫備，室如罄矣，突不黔矣。草木之根實，不足以飽矣。於是強者爲盜賊，弱者轉而死溝壑，父母妻子不能相保。此禍亂之階，善爲國者，所宜留意也。

1082) 유인(遺人)은.....다: 『周禮』 「遺人」.

백성이 무지하여 먹는 것 입는 것을 사치하고 안일하여 풍년든 해에 곡식이 길거리에 낭자해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먹는 것이 절제가 없고 쓰는 것이 정도가 없어 흑 흙에 버려두거나 흑 시루에서 썩히거나(술을 빚음) 흑은 개와 말의 먹이로 주거나 흑은 닭과 오리를 살찌운다. 식구를 계산하여 비용을 논해보면 얼마인가 2배나 5배쯤? 흉년이 닥치면 집안에 평소 저축한 것이 없고 사람들은 미리 대비하지 않았으니 집은 텅 빈 것 같고 굴뚝은 검은지지 않는다. 풀과 나무의 뿌리와 열매로는 배부르지 않는다. 이에 강한 자는 도적이 되고 약한 자는 구렁과 골짜기에 구르다 죽으니 부모처자가 능히 서로 보호하지 못한다. 이는 화란(禍亂)의 사다리이다. 나라를 잘 다스리려는 사람은 마땅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嚮者，天地嘗有災矣，百姓嘗有飢矣．使以安撫爲號者，擁節而宵征，吏以勸誘爲辭者，弗絕於耳．或出御府之金，或下鬻爵之令．君心勤止，不翅慈母．然而穀生有時，不可以坐而待也，儲峙有數，不可以從天降也．求之甚至，得之幾希．以此振民，不亦難矣！

예전에는 천지가 일찍이 재앙이 있었고 백성이 일찍이 기근이 있었다. 안무(安撫)로써 호칭하던 사자(使者)들은 임명장을 받고 밤에 길을 갔고, 권유(勸誘)로써 말하던 관리들은 귀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다. 흑 어부(御府)의 금을 내기도 하였고 흑 관직을 파는 명령을 내리기도 하였다. 임금 마음의 부지런함이 자모(慈母)일 뿐만 아니었다. 그러나 곡식의 생장은 때가 있으니 앞서서 기다릴 수 없었다. 쌀아 두는 것도 수가 있으니 하늘로부터 내려올 수도 없다. 구하는 것이 매우 지극하여도 얻는 것은 거의 드물었다. 이로써 백성을 진작하는 것이 또한 어렵지 아니한가!

患竊跡古制之宜於時者，莫若義倉之爲愈也．蓋豐年損其有餘，儉年救其不足，事至纖悉，功垂無窮．故隋開皇中始立社倉，終於文皇，得無飢饉．唐太宗曰“既爲百姓先作儲貯，官爲舉掌，以備凶年．非朕所須，橫生賦斂．利人之事，深足可嘉．”今宜

於天下縣治，各建倉廩，踵唐之制，以義爲名。然唐之用心固善矣，斂散之法，則未盡得宜。彼計民稼種，以畝稅之，及無田者，亦各有差，則能入粟之人，非窮民也。至凶年，則入粟之家，或自有貯備，不當賑救，於是窮民享之矣。出此而入彼，有喪而無得，奚以異於厚斂乎？

내가 가만히 옛날 제도 가운데 오늘날에 적합한 것을 추적해보니 ‘의창(義倉)’만한 것이 없었다. 대개 풍년에는 그 남은 것을 덜어내었다가 흉년에 그 부족한 것을 구원한다. 일이 지극히 섬세하고 공은 무궁하였다. 그러므로 수나라 개황(開皇: 581~600) 연간에 사창(社倉)을 처음 세워 문황(文皇)때 마치도록 기근이 없었다. 당태종이 “이미 백성을 위하여 먼저 곡식을 쌓아두고 관에서 관장하여 흉년에 대비하였다. 짐이 필요한 것도 아니요 세금을 더 걷은 것도 아니나 백성을 이롭게 하는 일이 깊어 매우 가상한 일이다.”¹⁰⁸³⁾ 라고 하였다. 지금 마땅히 천하 현(縣)의 치소에 각각 창고를 세우고 당나라 제도를 본받아 ‘의(義)’로 이름 해야 한다. 그러나 당나라의 마음 씀은 진실로 선하나 거두어 들이는 방법에 있어서 마땅함을 다하지 못하였다. 당나라는 백성이 심고 수확하는 것을 계산하여 무(畝) 단위로 세금을 매겼고, 전토가 없는 사람은 또한 각각 차등이 있었으니 곡식을 들여놓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은 궁한 백성이 아니었다. 흉년이 닥치면 곡식을 들여놓는 집안은 혹 스스로 저축이 있어 마땅히 구원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야 궁한 백성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 빼내어 저기로 들어가니 없어지는 것만 있고 얻어지는 것은 없다. ‘후렴(厚斂)’과 무엇이 다른가?

今莫若以農末之民，各分戶等，每於秋成，以次入粟，謂之寄留。至凶年，則下戶之乏食者，準數給還，其上戶則轉以給窮民。書其轉給之數，積以歲年，數登若干者，拜以爵級，以寵異之。則富人樂輸，窮民受賜矣。與夫臨事而鬻爵，無粟而虛求，不可同日而語也。

오늘날은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좋다. ‘농’과 ‘말’을 각기 호(戶)의 등급을 나

1083) 이미 백성을.....다. 『新·舊唐書』 「食貨志」.

누고 매양 가을 수확기에 차등에 따라 곡식을 들이게 한다. ‘기류(寄留)’라고 부른다. 흉년이 닥치면 ‘하호(下戶)’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는 자는 수에 기준하여 도로 공급하고, ‘상호(上戶)’는 돌려서 궁한 백성에게 공급하게 한다. 그 돌려서 공급한 숫자를 적고, 매년 적립해 두었다가 수가 정한 등급에 이른 자는 벼슬을 주어 우대한다면 부자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실어나를 것이고, 궁한 백성은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일이 닥치면 벼슬을 팔아 곡식도 없으면서 헛되이 구하는 것과 같은 수준에서 논할 일이 아니다.

富國策第八

昔在神農，日中爲市，致民聚貨，以有易無。然輕重之數，無所主宰。故後世聖人，造幣以權之。其始，以珠玉爲上幣，黃金爲中幣，白金爲下幣。但珠玉金銀，其價重大，不適小用。惟泉布之作，百王不易之道也。根周苗漢，蔓於隋唐，或因或革，模法無常。獨開元之號，最得中制，相承遂至於今。斯固先史商之久矣。

부국책 제8

옛날 신농(神農)시절에 해가 중천에 이르면 시장을 개설하여 백성을 이르게 하고 재물을 모이게 하여 ‘있는 것 [有]’으로 ‘없는 것 [無]’을 바꾸었다. 그러나 경중(輕重)의 수는 주재(主宰)하는 것이 없었다. 그러므로 후세의 성인이 화폐를 만들어 균형을 맞추게 하였다. 처음에는 주옥(珠玉)으로 상폐(上幣)를 삼고, 황금(黃金)으로 중폐(中幣)를 삼고, 백금(白金)으로 하폐(下幣)를 삼았다. 다만 주옥과 금은은 그 가치가 커서 작은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았다. 오직 천포(泉布)를 만든 것은 백왕(百王)이 바꿀 수 없는 방도였다. 주나라에서 뿌리를 내리고 한나라에서 싹이 났으며 수·당에서 넉쿨을 뻗었다. 혹 물려받고 고치기도 하면서 방법이 일정하지 않았다. 유독 개원(開元)의 호칭은 가장 적합한 제도를 얻어 서로 이어서 지금에 이르렀다. 이처럼 선사(先史)를 근거로 보면 상거래(商去來)는 오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大抵錢多則輕，輕則物重，錢少則重，重則物輕。物重則用或闕，物輕則貨或滯，一重一輕，利病存乎民矣。至以國計論之，莫若多之爲貴。何者？用有常數，不可裁減故也。朝家治平日久，泉府之積，嘗朽貫矣。而近歲以來，或以虛竭，天下郡國亦罕餘財。夫泉流布散，通於上下，不足於國則餘於民，必然之勢也，而今民間又鮮藏緇之家，且舊泉既不毀，新鑄復日多，宜增而卻損，其故何也？錢非溫也，不可衣而弊之也，非脆也，不可食而盡之也。然而安在哉？是有奸人銷之也。奸人所以得銷者，以惡錢容於市，銅像銅器容於寺觀也。竊觀人間，或銷法錢，淆雜他巧，以爲惡錢，其作，必於重湖大江，窮山深谷，風濤所阻，猛獸所在，人不得見，吏不得呵，是法令無由而勝也。銷一法錢，或鑄四五，市人易之，猶以二三，則常倍息矣。民既蓄惡錢，不可使勿用，利之所在，是法令亦無由而勝也。國失法錢，而民得惡錢，惡錢終不可爲國用，此錢所以益少也。又緇黃之家，競禮銅像，易模變巧，動必滿堂，饒鉦鐘磬之器，所在雷震。謂取於官，則有害冶鑄，其私，則以錢爲之耳。新故渾淆，公私莫辨，是法令亦無由而勝也。用之廣矣，利數倍矣，故橐焉而焰，鍛焉而聲者，徃徃而是。披榛而行，表甲而商者，不絕於道。緩則恣所爲，急則鬥而死，是法令亦無由而勝也。像則日新，器則日長，其所銷者，寧有紀極？此錢所以益少也。

대저 화폐 [錢] 가 많아지면 (화폐의 가치는) 내려가고 [輕], 가벼워지면 물건의 가치는 올라간다 [重]. 화폐가 적어지면 (화폐의 가치는) 올라가고, 올라가면 물건의 가치는 내려간다.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면, 쓰는데 흑 모자라게 되고, 물건의 가치가 내려가면, 화폐가 흑 막히게 된다. 한번 오르고 내림에 따라 이로움과 병통은 백성에게 남게 된다. 국가를 위한 계책으로 논하자면 (화폐는) 많을수록 좋다. 왜 그러한가? 쓰는 것이 일정한 수가 있어 줄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나라가 태평한 지 오래이고 천부(泉府)에 쌓아 둔 것이 많았었는데 근세 이래 흑 텅 비어 고갈되었고, 천하와 군국(郡國)에 또한 남은 재물이¹⁰⁸⁴⁾ 드물게 되었다. 무릇 '천포(泉布)'는 (샘물처럼) 흐르고 퍼져 상하에 통용되라는 것이니 나라에 부족하다면 백성에게 남아있는 것은 필연의 형세이다. 그런데 지금 민간에 또 돈궤미를 저장한 집이 적다. 또한 구폐가 이미 훼손되지 않았는데 새로 주조한 날이 많았으니 마땅히 증가 해야하는데 도리어 줄어들었다. 그 이유는

1084) 原註: '財'는 원래 '見'으로 되어 있었는데 四庫本에 근거하여 고쳤다.

무엇인가? 화폐는 따뜻한 것이 아니니 입어서 닳는 것도 아니요, 취약한 것도 아니니 먹어서 없앤 것도 아니다. 그러면 어디로 갔는가? 이는 간악한 자들이 녹여버린 것이다. 간악한 자들이 녹여버리는 까닭은 ‘악전(惡錢)’이 시장에서 수용되고, 동상(銅像)과 동기(銅器)가 사관(寺觀)에서 수용되기 때문이다. 민간을 가만히 보면 흑 법전(法錢)을 녹여 다른 것을 재주있게 섞어 악전을 만든다. 그 제작하는 곳은 반드시 큰 호수와 강이거나 깊은 산골짜기여서 풍랑에 막혀있고 맹수가 사는 곳이라 사람들은 볼 수 없고 관리는 금지하지 못하니 이는 법령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이다. 법전 하나를 녹이면 흑(악전) 너덧개를 주조할 수 있는데 시장 사람이 두세개로 바꾸어 준다면 항상 두 배의 이문이 남는다. 백성이 이미 악전을 쌓아두었는데 사용하지 말라 할 수 없다. 이익이 있는 곳에 법령은 또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국가는 법전을 잃어버리는데 백성은 악전을 얻는다. 악전은 마침내 국가에서 쓸 수 없는 것이니 이것이 화폐가 더욱 부족해지는 까닭이다. 또한 절과 도관에서 다투어 동상에 예를 올리니 모양을 바꾸고 기교를 변하여 움직였다하면 반드시 당(堂)을 가득 채운다. 많은 징·종·풍경 소리는 우리가 진동하는 듯하다. 이를테면 관에서 취하게 되면 주조하는데 해가 되니 사사로이 동전으로 만들 뿐이다. 새로운 것과 현 것을 혼효하고, 공사(公私)를 변별할 수 없으니 이는 법령이 또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이다. 쓰임이 넓고 이익은 여러 갑절이다. 그러므로 풀무에 불꽃이 일고 단련하는 소리가 종종 일어나는 것이다. 가시나무를 헤집고 다니며 감옷을 속에 입고 장사하러 다니는 자 길에 끊이지 않는다. 느슨하게 하면 마음대로 설치고 금박하게 하면 싸우다 죽으니 이는 법령이 또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이다. 상(像)은 날로 새로워지고 기물은 날로 늘어난다. 녹이는 짓거리가 어찌 끝이 있겠는가? 이것이 화폐가 더욱 부족해지는 까닭이다.

今欲絕盜鑄，莫若去惡錢。去惡錢非急誅之謂也。欲辨銅像銅器，莫若一取而銷之，勿得復用也。何謂絕盜鑄莫若去惡錢？夫盜鑄之人，散在幽遠，卒以法繩之，則吏必苛察，獄必冤濫，閭里之間，將不安居焉。苟有利矣，雖死而必求，苟無用矣，雖縱之弗爲。惡錢去則盜鑄者無用，無用則盜鑄自絕矣。故曰：絕盜鑄莫若去惡錢也。何謂去惡錢非急誅之謂也？今人間既多惡錢，一旦急之，則莫敢出，莫敢出則是銷法錢之

銅而積之無用之地. 國既失實, 民且傷財, 固莫若下令收惡錢而銷之, 除其淆雜, 償以銅價, 示之期日, 要之重典, 民既畏法, 而喜於得直, 將畢入於官, 官挾其銅, 因以資冶鑄, 則法錢益增, 惡錢盡去矣. 故曰: 去惡錢非急誅之謂也. 何謂欲辨銅像銅器, 莫若一取而銷之, 勿得復用也? 今寺觀櫛比, 像器之設, 遽數不終, 必詰之曰: 作之新乎? 因之故乎? 取之官乎? 得之私乎? 則是增吏員不足以按, 廣獄城不足以繫. 令愈急而奸愈生, 非術之善也. 若一取而銷之, 勿得復用, 則銅積足以資冶鑄, 工巧無所措其手, 銷錢之弊不禁而止. 故曰: 欲辨銅像銅器, 莫若一取而銷之, 勿得復用也.

지금 ‘도주(盜鑄)’를 단절시키고자 한다면 ‘악전을 없애는 일’ 만한 것이 없다. 악전을 없앤다는 것은 급히 주살하자는 것이 아니다. 동상과 동기를 가려내고자 한다면 ‘한 번 취하여 녹인 후 다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일’ 만한 것이 없다. 왜 ‘도주’를 단절시키는 일이 악전을 없애는 방법 만한 것이 없다 이르는가? 몰래 주조하는 사람들은 깊고 먼 곳에 흩어져 있다. 마침내 법망으로 구속하고자 하면 관리는 반드시 가혹하게 살펴야 하고 옥사는 반드시 원통함으로 넘칠 것이며, 마을은 장차 거처가 편안치 못할 것이다. 진실로 이익이 있다면 비록 죽더라도 반드시 구하지만, 진실로 쓸모가 없어진다면 비록 마음껏 하라고 해도 하지 않을 것이다. 악전을 없애버리면 ‘도주’는 쓸모가 없고, 쓸모가 없어지면 ‘도주’는 저절로 단절될 것이다. 그러므로 “‘도주(盜鑄)’를 단절시키고자 한다면 악전을 없애는 일 만한 것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다. “악전을 없앤다는 것은 급히 주살하자는 것이 아니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지금 백성들이 이미 악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루 아침에 급히 서두르면 감히 내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감히 내놓으려 하지 아니한다면 이는 법전을 녹인 구리가 쓸모 없는 곳에 쌓이게 된다. 나라는 이미 내실을 잃고 백성은 또한 재물을 상실하니 진실로 다음 방법 만한 것이 없다. 명을 내려 악전을 회수하고, 녹여서 그 섞인 것을 제거하고 구리 값으로써 보상해준다. 기일을 제시하고 엄벌을 시행한다고 하면 백성들은 이미 법을 두려워한데다 가치를 보상받을 수 있어 기쁘니 관에 다 바칠 것이다. 관은 그 구리를 모아 주조를 하면 법전이 더욱 증가하고 악전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악전을 없앤다는 것은 급히 주살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동상과 동기를 가려내고자 한다면 한 번 취하여 녹

인 후 다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일 만한 것이 없다.”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 사관이 즐비하고 동상과 동기가 수를 셀 수 없는데 반드시 “새로 만든 것이냐? 옛 것이냐? 관에서 취했느냐? 사사로이 얻은 것이냐?”라고 캐묻고자 한다면 관리를 증원하더라도 다 조사할 수 없고, 옥사를 넓히더라도 다 구속할 수 없다. 법령이 더욱 급박할수록 간사한 자는 더욱 생겨나니 좋은 방법이 아니다. 만약 일체 취하여 녹여버리고 다시 쓸 수 없게 한다면 구리를 쌓아둔 것이 충분히 주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기술자들이 손을 놀릴 곳이 없어지면 동전을 녹이는 폐단은 금하지 않아도 그쳐질 것이다. 그러므로 “동상과 동기를 가려내고자 한다면 한 번 취하여 녹인 후 다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일 만한 것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다.

至於蠻夷之國，舟車所通，竊我泉貨，不可不察。

오랑캐의 나라, 차와 배로 갈 수 있는 곳(먼 곳)에서 우리의 화폐를 훔치는 것도 살피지 않을 수 없다.

古之人曰 “錢者亡用器也，而可以易富貴. 富貴者人主操柄也.” 果慎斯術，則操柄無失而群下服從，有國之急務也.

옛사람이 “돈 [錢] 이란 쓸모 없는 기물이지만 부귀를 바꿀 수 있다. 부귀라는 것은 군주가 자루를 잡고 있는 것이다.”¹⁰⁸⁵⁾라고 말하였다. 과연 이 술책을 신중히 한다면 자루 잡는 것을 잃지 않을 것이고 아랫사람이 복종할 것이니 국가의 급선무이다.

富國策第九

縣官食租衣稅，古之道也. 自漢而下，兵益興，經費益不足，日生他名，猶罔克濟，勢不可已，非上失也.

1085) 돈 [錢] 이란.....다: 『漢書』 「賈山傳」.

부국책 제9

현관(縣官)이 조세로 먹고 입는 것은 옛날 제도이다. 한나라때부터 병화(兵禍)가 더욱 일어나 경비가 더욱 부족하게 되었다. 날마다 다른 이름으로 생겨나 오히려 능히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형세가 멈출 수 없게 된 것이지 위에서 실수한 것이 아니다.

山澤之富，天地所以養人者，鬻鹽之利博矣。故東郭咸陽致生累千金，吳王濞富埒天子。孝武因置鹽鐵官。是時國用饒給，而民不益賦，未必不由此也。朝家酌古鹽法，有因有革，或引之池，或汲之井，或熬之海，一出公上，人不能私，此其因者也。東南列郡，官自斥賣，舟運銜尾，倉儲如坻。商旅之行，斂手無措，此其革者也。然先王之制，未有始善而末不弊者，蓋作法之時，上心切至，吏皆圖功，人皆畏法，而奸謀未生，始以是善也。累世之後，事同凡常，吏或解弛，人或慣習，而奸謀日生，末以是弊也。

산택(山澤)의 풍요 속에 천지가 사람을 기르는 것 (가운데) 소금 판매의 이득이 크다. 그러므로 동곽함양(東郭咸陽)¹⁰⁸⁶이 누천금(累千金)¹⁰⁸⁷을 이루었고, 오왕비(吳王濞)¹⁰⁸⁸는 부가 천자와 같았다. 효무제는 그 때문에 염철관(鹽鐵官)을 두었다. 이 때 국용(國用)은 넉넉하였으나 백성의 세부담이 더 늘지 않은 것은 아마도 이 때문이었다. 조정에서 옛날 염법(鹽法)을 참작, 물려받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여 못 [池] 과 우물 [井] 과 바다 [海] 에서 나오는 일체를 공상(公上)에서 나오게 하고, 사사로이 운영할 수 없게 하였으니 이것이 그 원인이었다. 동남의 열군(列郡)이 관에서 (전매하여) 저가로 파니 선박의 운행이 꼬리를 물었고 창고에 쌓아둔 것은 모래톱 같았다. 상단의 행차는 손을 거두고 놀릴 곳이 없었으니 이는 일대 혁신이었다. 그러나 선왕의 제도가 시작은 선하나 마지막에 폐

1086) 동곽함양(東郭咸陽): 西漢시대 제나라 사람. 본래 鹽商이었다가 한무제 元狩5년(BC118) 大農丞이 되어 鹽鐵專賣를 주관하여 富商大賈에게 타격을 입혔음.

1087) 原註: '生'은 光緒本에 '産'으로 되어 있다.

1088) 오왕비(吳王濞): 한고조의 조카로 오초7국의 난의 주동자.

단이 생기지 않은 것은 없었다. 법을 만들 때 윗사람의 마음은 절실하고 지극하였으며, 관리는 모두 공을 도모하였고 백성은 모두 법을 두려워하여 간사한 모의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니 처음은 이 때문에 선한 것이었다. (그러나) 여러 세대가 지난 뒤 일은 범상(凡常)한 것이 되고 관리는 혹 해이해지며, 사람들은 혹 관습에 몰들 때 간사한 모의가 날로 생겨 끝에 가서는 이 때문에 폐단이 발생하였다.

官初糶鹽時，操其贏甚厚，而郡國鹽積常不足於糶。今之郡國，昔之郡國也。戶口蕃息，則倍蓰矣。而糶益少，鹽益滯者，何也？是奸謀入焉耳。彼鹽之來，遠者逾江湖，歲於波，月於風焉。近者亦百數十里，維堤堰，宿葭茨焉。軍之窮，吏之狡者，家於是，食於是，私賣其什之幾，而足以他物，固其常也。既輦而倉，則舉掌之人又私賣其什之幾，而足以他物，無慮公鹽常失其半，而半他物焉。民之食鹽既多私賣者矣，而公鹽之出不可賒賞，故坐肆占賣者，郡纔數十。以數萬家之食，仰數十戶之鹽，一銖一兩，不可與官爲市，必取於斯人之徒，其勢必小其權量，增以糞土，常不啻以倍價取半鹽矣。公鹽貴而污，私鹽賤而潔，山澤之氓，城邑之豪，競食之，而竊販者，亦交馳焉。是則民雖衆多，或食私鹽，或食糞土。利輸於奸，而官之糶益少，鹽益滯矣。令非緩也，法非輕也，利之所誘，雖日刑人，號痛之聲動乎天地，弗能禁也。故今日之宜，莫如通商。商通則公利不減而鹽無滯也。何謂商通則公利不減？夫官自糶鹽，利信厚矣。然舟有壞，倉有墮，官有俸，卒有糧，費已多矣。若官鬻鹽而糶與商人，使自行之，既權其息，因取關市之稅，而費省焉，是公利不減也。何謂商通則鹽無滯？夫商人衆而務售，則鹽不淆雜。所至之地又以賁於市人，則列肆多得斥賣。賣者多而務售，則鹽亦不淆雜。昔啖糞土者，今皆食鹽，昔喜竊販者，今皆公行。鹽之用益廣，是以無滯也。公利不減而鹽無滯，財用以足，刑罰以清，治世之懿也。

관에서 처음 소금을 내어 팔 때 남은 이익이 매우 많아 군국(郡國)의 소금 쌓아 둔 것은 항상 팔기에 부족할 지경이었다. 오늘날의 군국은 옛날의 군국이다. 호구의 증가는 두 배에서 다섯 배인데 내다 파는 것은 더욱 적고 소금이 더욱 적해진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는 간사한 모리배들의 개입일 뿐이다. 저 소금이 오는 것은 멀리는 강과 호수를 건너 풍파의 세월을 건넌 것이고 가까이는

또한 백 수십리 독방을 넘고 갈대와 억새밭에서 지새운 것이다. 궁한 일꾼과 간교한 아전이 여기에서 살고 여기에서 먹어 사사로이 심분의 열마를 팔아먹고, 다른 물건으로 채워넣는데 그것이 일상이다. 이미 창고에 다다르면 담당자가 또 사사로이 심분의 열마를 팔아먹고, 다른 물건으로 채워넣는데 무려 ‘공염(公鹽)’이 항상 태반을 잃고 절반은 다른 물건이다. 백성들이 먹는 소금은 이미 사사로이 파는 것이 많은데 ‘공염’은 외상거래 [賒賞] 가 불가능하므로 전포에 앉아 파는 자가 군(郡)에 겨우 수십이다. 수만 가구의 먹을 것이 수십호의 소금만 우려러볼 지경이니 일수(一銖)와 일량(一兩)도 관에서 유통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반드시 이 우리들에게 취하게 되니 그 형세가 반드시 그 저울 양(量)을 작게 하고 분토(糞土)를 더한다. 항상 가격은 배를 주면서도 소금은 반만 취할 뿐이다. ‘공염’은 비싼데 질이 낮고 사염(私鹽)은 저렴한데 질이 좋다. 산택의 백성과 성읍의 호가(豪家)에서 다투어 먹으니 훗쳐 파는 자들이 또한 서로 달려든다. 이와 같으니 백성은 비록 많아도 혹 ‘사염’을 먹거나, 혹 ‘분토’를 먹는다. 이곳이 간사한 자들에게 들어가니 관에서 내다 파는 것이 더욱 적고 소금은 더욱 정체되는 것이다. 법령이 느슨하거나 가벼운 것이 아니다. 이곳이 유혹하는 곳에는 비록 날마다 사람에게 형벌을 더하여 호통(號痛)하는 소리가 천지에 진동하더라도 능히 금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마땅함은 ‘통상(通商)’만한 것이 없다.

상거래를 통하게 하면 공공의 이익은 줄지 않으면서 소금의 적체도 없어진다. “상거래를 통하게 하면 공공의 이익이 줄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관에서 소금을 팔면 이익은 참으로 많다. 그러나 선박이 파괴될 수도 있고, 창고는 무너질 수도 있고, 관리에게는 봉급을 주어야 하고 일꾼들에게도 식량을 주어야 하니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만약 관에서 소금을 팔되 상인에게 내다 팔아, (그들) 스스로 돌아다니게 한다면 이미 그 이문을 맞추었고, 거기에 관시(關市)의 세금을 부과하면 비용이 덜어질 것이니 이는 공공의 이익이 줄지 않는 것이다. “상거래를 통하게 하면 소금의 적체가 없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상인이 많아져 팔기에 힘쓰다면 소금에 섞지 않을 것이다. 이르는 곳 마다 또한 시장 사람들에게 외상거래를 할 수 있게 하면 줄지어선 가게들이 저렴하게 파는 곳이

많아질 것이다. 파는 사람이 많고 팔기에 힘쓰다면 소금은 또한 섞지 않을 것이다. 예전 ‘분토’를 먹던 사람들이 오늘 모두 소금을 먹게 되고, 예전 훔쳐팔기를 즐기던 사람들이 오늘 모두 공적으로 팔게 될 것이다. 소금의 용처는 더욱 넓어지니 이로써 적체가 없어질 것이다. 공공의 이익은 줄지 아니하면서도 소금의 적체는 없어져 재용(財用)은 풍족해지고 형벌은 맑아지는 것은 치세(治世)의 아름다움이다.

或曰：官鬻鹽而糶與商人，有息焉，有稅焉。息寡而稅薄，則公利損，息多而稅厚，則商不來。何如？

曰：不若寡薄之爲愈也。

寡薄則何以使公利不損？

曰：東南和糶，幾二百萬，轉漕之費，不爲不多矣。今糶鹽與商，以米權折，則數百萬斛可坐致淮海，是於公利豈少也哉？易曰“通其變，使民不倦。”此通變之時，不可忽也。

흑자가 말한다. 관에서 소금을 파는데 상인에게 내다 팔면 이문도 남고 세도 받는다. 이문이 적고 세가 박(薄)하면 공공의 이익이 손해요, 이문이 많고 세가 후(厚)하면 상인이 오지 않을 것인데 어떠한가?

이문이 적고 세가 박한 것이 낫다.

이문이 적고 세가 박하면서 어떻게 공공의 이익이 줄어들지 아니하는가?

동남에서 쌀 사들이는 것이 거의 200만이니 운반비용이 적지 않다. 지금 소금을 상인에게 내다 팔 때 쌀로 치르게 하면 수백만 곡(斛)을 앗아서 회수(淮水)와 바다로 이르게 하는 것이니 이는 공공의 이익이 어찌 적다고 할 것인가? 『역』에 “변통(變通)하여 백성을 게으르지 않게 하였다.”¹⁰⁸⁹⁾라고 하였다. 이것은 통변(通變)의 시기에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富國策第十

1089) 변통(變通)하여.....다: 『易』 「繫辭下」 2장.

或曰：天下之貨，茶最後出，而國用賴焉。今茲有說乎？

曰：茶非古也，源於江左，流於天下，浸淫於近代。君子小人靡不嗜也，富貴貧賤靡不用也。有國者從而籠之，利一孔矣。而世之所貴，家之所蓄，則非有公茶者何？公茶濫惡，不味於口故也。

부국책 제10

혹자가 말한다. 천하의 화(貨) 가운데 ‘차(茶)’가 가장 나중에 나왔는데 국용이 힘입는다. 지금 할 말이 있는가?

말한다. 차는 옛것이 아니다. 강좌(江左: 江東)에서 기원하여 천하에 흘러 근대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군자와 소인이 즐기지 않는 사람이 없고, 부귀빈천(富貴貧賤) 할 것 없이 쓰지 않는 사람이 없다. 국가에서 전매하여 한 곳에서 이익이 나오는데, 세간에 귀한 것과 가정에 비축한 것이 ‘공차(公茶)’가 아닌 것은 무엇 때문인가? ‘공차’가 조악하여 맛이 없기 때문이다.

每歲之春，芽者既掇，焙者既出，則吏呼而買之，民挽而輸之矣。民之淳或以利而奸也，吏之察或以賄而闇也，於是乎行濫入焉。草邪，木邪，唯恐器之不盈也。麈邪，煤邪，唯恐衡之不昂也。商算而行，或不售也，則販者鮮矣，倉儲之久，或腐敗也，則水火乘之矣。是以邦之泉布竭於市，估而積之亡用之地，息未收而本或喪矣。若東南列郡則吏自斥賣，課不甚多，時或不登焉，而民之自用，常數倍矣。來有甚遠，價有甚貴，而人爭取之者，味美也。塗有甚險，法有甚重，而人爭販之者，利厚也。巡按之使，逐捕之卒，日馳於野，黥額之吏，鞭背之人，日滿於庭。愁怨愈多而奸不可禁，督責愈重而財不可阜。勢之所運末如之何也已。

매년 봄 차잎을 채취하여 불에 찢 것이 나오면 관리는 부르짖어 구매하고 백성은 수레로 실어나른다. 백성의 순박함은 이곳으로 혹 간악해지고, 관리의 꼼꼼함은 혹 뇌물로 어두워지니 이에 조악한 물건이 끼어든다. 풀이건 나무건 오직 그릇이 가득차지 아니할까 염려될 뿐이고, 티끌이건 검댕이건 오직 저울이¹⁰⁹⁰⁾

1090) 原註: ‘衡’은 원래 ‘行’으로 되어 있었는데 光緒本에 근거하여 고쳤다.

올라가지 아니할까 염려할 뿐이다. 상인은 타산이 맞아야 돌아다니는데 혹 팔리지 않는다면 판매하는 사람이 적을 것이다. 창고에 저장하는 것이 오래되어 혹 부패하면 불에 태워지거나 물에 버려진다. 이 때문에 나랏돈은 시장에서 사라지고, 사들여 쓸모 없는 곳에 쌓아두니 이자는 회수하지도 못하고 본전도 혹 까먹는다. 동남의 여러 군 같은 경우는 관리들이 스스로 쌓아둔 것을 파는데 과세도 많이 하지 않고 때로는 혹 장부에 올리지도 않는다. 백성들이 스스로 쓰는 것은 항상 여러 갑절이다. 매우 먼 곳에서 오고 매우 높은 가격인데도 사람들이 다투어 찾는 것은 맛이 좋기 때문이고, 길이 매우 험하고 법이 매우 엄해도 사람들이 다투어 팔려고 하는 것은 이문이 많기 때문이다. 순찰하고 살피는 관리와 쫓아가 잡는 나졸이 날마다 들에 달려가고, 이마에 자자(刺字)한 아전과 등에 채찍질 당한 사람들이 날마다 법정에 가득찬다. 원성이 더욱 많아지는데도 간악한 짓은 멈추게 할 수 없고, 독책이 더욱 중해지는데도 재물은 쌓이지 않는다. 형세가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이다.

今日之宜，亦莫如一切通商．官勿賣買，聽其自爲．而籍茶山之租，科商人之稅，以此校彼，殊塗一致．且商人自市，則所擇必精，所擇精，則債之必售，債之售，則商人衆，商人衆，則入稅多矣．又昔之所以披草莽，懷兵刃務私販者，禁嚴故也．既已通商，則當安行．夷路自實，官府亦入稅多矣．況不滯本泉，不煩威獄，利國使人，莫善於此．

오늘날의 마땅함은 또한 ‘일체 상거래를 통하게 하는 일’ 만한 것이 없다. 관에서 매매(賣買)하지 말고 (민간이) 스스로 하게 놔둬야 한다. 차 생산지와 차 상인에게 조세를 부과하여 이것과 저것을 따져보면 길은 달라도 한 곳에 다다르게 된다. 또한 상인이 스스로 팔게 되면 반드시 정밀한 제품을 선택할 것이다. 정품(精品)을 가려서 팔면 반드시 팔릴 것이고, 팔리면 상인은 많아진다. 상인이 많아지면 세(稅) 수입도 는다. 또한 예전 풀숲을 헤집고, 칼을 품은 채 사판(私販)에 힘썼던 것은 엄금했기 때문이니 상거래를 통하게 하면 당연히 편히 다닐 것이다. 평탄한 대로가 채워지면 관부의 세 수입도 늘어날 것이다. 하물며 본전도 적체되지 않고, 옥사도 번거롭지 않으니 나라와 백성의 편리함이 이보다 좋

은 것은 없다.

或曰：子謂通茶鹽之商，其如逐末何？

曰：昔之未通商也，文峻而網密。富厚重慎之子，罔游其間，故蚩蚩細民以身易財者入焉。若法通商，則大賈蓄家，射時而趨，細民何利焉？非逐末之路也。

혹자가 말한다. 그대는 차상(茶商)과 염상(鹽商)을 통하게 하라고 하는데 ‘축말(逐末)’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한다. 예전 통상(通商)을 못하게 했을 때 법조문이 준엄하고 법망이 치밀하였으니 부유하고 신중한 사람들은 그 사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무지한 세민(細民: 빈민) 가운데 몸으로 재물을 바꾸려는 자 끼어들었다. 만약 법으로 상거래를 가능하게 해준다면 대고(大賈)와 축가(蓄家: 자본가)가 시기를 노렸다가 달려갈 것이니 세민이 무슨 이익을 얻겠는가? ‘축말’의 길이 아니다.

於戲! 鹽始於漢, 茶始於唐, 取以濟時, 事非師古. 異日邦財饒衍, 王道寔昌, 棄之於民, 不勝大願.

오호라! 소금은 한나라에서 시작되고 차는 당나라에서 시작되어 시대를 구제하였던 것이니 일이 옛날을 사표로 삼은 것이 아니었다. 다른 날 나라의 재물이 넉넉히 불어나고 왕도가 점점 창성해 지는 것이 백성에게 버려져 있으니 답답한 마음을 누를 길이 없다.

제17장 『이구집』 佚文 「常語」

佚文常語 - 據宋余允文尊孟辨補

1

堯傳之舜，舜傳之禹，禹傳之湯，湯傳之文武周公，文武周公傳之孔子，孔子傳之孟軻。軻之死不得其傳焉。如何？曰：孔子死，不得其傳矣。彼孟子者，名學孔子而實偕之者也。焉得傳？敢問何謂也？曰：孔子之道，君君臣臣也。孟子之道，人皆可以爲君也。天下無王霸，言僞而辯者不殺，諸子得以行其意。孫吳之智，蘇張之詐，孟子之仁義，其原不同，其所以亂天下，一也

일문 「상어」

송 여윤문(余允文)¹⁰⁹¹의 「尊孟辨」¹⁰⁹²에 근거하여 보충함.

1.

요는 순에게 전하고, 순은 우에게 전하고, 우는 탕에게 전하고, 탕은 문 · 무 · 주공에게 전하고, 문 · 무 · 주공은 공자에게 전하고, 공자는 맹가에게 전하였다. 맹가가 죽음에 그 전함을 얻지 못하였다.¹⁰⁹³ (이에 관한 견해는) 어떠한가?

말한다. “공자가 죽고 그 전함을 얻지 못하였다. 저 맹자라는 사람은 이름은 공자를 배운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공자를 등진 사람이니 어찌 전했겠는가?”

감히 묻노니 무슨 말인가?

말한다. “공자의 도는 ‘임금은 임금 · 신하는 신하’¹⁰⁹⁴인 것인데, 맹자의 도는

1091) 余允文 : 생몰연대 미상. 建安人. 북송 혹은 남송의 주자와 동시대로 추정되고 있다. 安炳周, 「朱子の 尊孟辨의 意味」, 『儒敎思想研究』 1, 1986. 참고.

1092) 『朱熹集』 권73 「雜著」에 「讀余隱之尊孟辨」이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1093) 韓愈, 『昌黎先生集』 「原道」 堯以是傳之舜, 舜以是傳之禹, 禹以是傳之湯, 湯以是傳之文武周公, 文武周公傳之孔子, 孔子傳之孟軻, 軻之死, 不得其傳焉.

1094) 『논어』 「顏淵」 齊景公問政於孔子, 孔子對曰: 君君臣臣父父子子.

‘사람은 다 임금이 될 수 있다.’¹⁰⁹⁵⁾라는 것이다. 천하에 왕자와 패자가 없어 거짓을 말하고 변론하는 자들을 죽이지 않으니 제자(諸子)들이 그 뜻을 행할 수 있었다. 손빈과 오기의 지혜 · 소진과 장의의 속임(詐) · 맹자의 인의(仁義)가 그 근원은 같지 아니하나 그 천하를 어지럽히는 것은 하나이다.”

2

孟子曰：五霸者，三王之罪人也。吾以爲，孟子者，五霸之罪人也。五霸率諸侯事天子，孟子勸諸侯爲天子。苟有人性者，必知其逆順耳矣。孟子當周顯王時，其後尚且百年而秦并之。嗚呼！孟子忍人也，其視周室如無有也。

2.

맹자는 “오패는 삼왕의 죄인이다.”¹⁰⁹⁶⁾라고 말하였는데 나는 “맹자는 오패의 죄인이다.”라고 여긴다. 오패는 제후를 거느려 천자를 섬겼는데, 맹자는 제후에게 천자가 될 것을 권하였다. 진실로 인성(人性)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역(逆)과 순(順)을 알 것이다.¹⁰⁹⁷⁾ 맹자는 주나라 현왕(顯王: 재위 BC368-BC321) 때이고, 그 뒤 오히려 또한 백년이 지나 진나라가 병합하였다. 오후라! 맹자는 잔인한 사람이다. 주나라 왕실 보기를 없는 듯이 하였다.

3

孔子曰：桓公九合諸侯，不以兵車，管仲之力也。如其仁！如其仁！又曰：管仲相桓公，霸諸侯，一匡天下，民到于今受其賜，微管仲，吾其被髮左衽矣。而孟子謂以齊王，猶反手也。功烈如彼其卑。故曰：管仲，曾西之所不爲。嗚呼！是猶見人之鬪者而笑曰：胡不困而殺之，貨可得也。雖然，他人之鬪者耳。桓公管仲之於周，救父祖也，而孟子非之，奈何！

3.

공자는 “환공이 제후를 규합할 때 병거(兵車)로 아니한 것은 관중의 힘이었다.

1095) 『맹자』「告子下」 曹交問曰：人皆可以爲堯舜，有諸？孟子曰：然。

1096) 『맹자』「告子下」 五霸者，三王之罪人也。

1097) 必知其逆順耳。原註：‘耳’는 『宋元學案』에 ‘爾’로 되어있다.

누가 그 인(仁)과 같은가! 누가 그 인과 같은가!”¹⁰⁹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관중이 환공을 도와 제후에 패권하여 한번 천하를 바로잡아 백성들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주는 것을 받았으니 관중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그 머리터럭을 둘러쓰고 웃기를 왼쪽으로 여미었을 것이다.”¹⁰⁹⁹⁾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맹자는 “제나라를 가지고 왕하는 것은 손을 뒤집는 것과 같거늘 공렬(功烈)이 저와 같이 낮았다. 그러므로 ‘관중은 증서(曾西)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다.”¹¹⁰⁰⁾라고 하였다. 오호라! 이는 싸우는 사람을 보고 웃으면서 “왜 죽어서 재물을 취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비록 그러하나 타인의 싸우는 자일 뿐이다. (하물며) 환공과 관중은 주나라에게는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구한 (은인)인데 맹자는 그르다고 하였으니 왜 (그랬는가)!

4

或曰：然則湯武不爲歟？曰：湯武不得已也。契相土之時，詎知其有桀哉？后稷公劉古公之時，詎知其有紂哉？夫所以世世種德，以善其身，以及其國家而已。湯武之生，不幸而遭桀紂，放之殺之而莅天下，豈湯武之願哉？仰畏天，俯畏人，欲遂其爲臣而不可得也。由孟子之言，則是湯武修仁行義以取桀紂爾。嗚呼！吾乃不知仁義之爲篡器也。又仲虺之誥：成湯放桀於南巢，惟有慙德，曰：予恐來世以台爲口實。孔子謂武盡美矣，未盡善也。彼順天應人，猶艱脆如此，而孟子固求之，其心安乎哉！

4.

흑자가 물었다. “그렇다면 탕 · 무는 하지 않았는가?”

말한다. “탕 · 무는 부득이한 것이다. 설(契)과 상토(相土)의 시대에¹¹⁰¹⁾ 걸(桀)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는가? 후직(后稷) · 공류(公劉) · 고공(古公)의 시대에¹¹⁰²⁾ 주(紂)가 나올 줄 누가 알았겠는가? 무릇 대대로 덕을 심어 그 자신을 선

1098) 『논어』「憲問」子曰：桓公九合諸侯，不以兵車，管仲之力也，如其仁，如其仁。

1099) 『논어』「憲問」子曰：管仲相桓公霸諸侯，一匡天下，民到于今，受其賜，微管仲，吾其被髮左衽矣。

1100) 『맹자』「公孫丑上」 1장의 내용임.

1101) 契은 夏의 제후인 商의 시조이고, 相土는 契의 손자이다.

1102) 后稷은 周의 시조인 棄이고, 公劉는 棄의 증손이다. 古公은 公劉의 9세손이며 周太王으로 추존된 亶父인데 周文왕의 할아버지이다.

하게 하여 그 국가에 미칠 따름이다. 탕·무가 살았을 때 불행하게도 걸·주를 만나 내치고 죽여서 천하에 군림한 것은 어찌 탕·무가 원하는 것이었겠는가? 우러러 하늘을 두려워하고 숙여 사람을 두려워하여 신하됨을 이루고자 하였으나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이다. 맹자의 말에 따르면 이는 탕·무가 인의를 닦고 행하여 걸·주를 취할 뿐이라고 한다. 오호라! 나는 인의가 찬탈하는 도구가 될줄 몰랐다. 또 「仲虺之誥」에 ‘성탕이 걸을 남소(南巢)에 내치고서 부끄러워 하면서 [나는 내세에 나로써 구실을 삼을까 두렵다.]’¹¹⁰³⁾ 라고 말하였다.’¹¹⁰³⁾ 라고 하였다. 공자는 ‘무(武: 무왕의 음악)는 다 아름다우나 다 선하지 않다.’¹¹⁰⁴⁾라고 하셨다. 저 하늘과 사람에 순응하고서도 오히려 두려워 마음을 놓지 못함이 이와 같았는데 맹자는 굳이 구하고자 하니 그 마음에 편안하였던가!”

5

三分天下有其二，以服事殷，周之德，其可謂至德也已矣，又曰：有君民之大德，有事君之小心。書序：伊尹既醜有夏，復歸於亳。孟子亦曰：五就湯，五就桀，伊尹也。夫周顯王未聞有惡行，特徵弱爾，非紂也，而齊梁不事之，非桀也，而孟子不就之，嗚呼！孟子之欲爲佐命，何其躁也！

5.

천하를 셋으로 나누어 그 둘을 두었으나 은나라에 복종하고 섬겼으니 주나라의 덕은 지극한 덕이라 이를만 하다.¹¹⁰⁵⁾ 또 가로대 “백성에게 군림하는 대덕(大德)이 있었고, 임금을 섬기는 소심(小心)이 있었다.”¹¹⁰⁶⁾라고 하였다. 『書序』에 “이윤이 이미 하나라를 추하게여겨 다시 박(亳)으로 돌아왔다.”¹¹⁰⁷⁾라고 하였다. 맹자도 또한 “다섯번 탕에게 나아가고, 다섯 번 걸에게 나아간 것은 이윤이다.”¹¹⁰⁸⁾라고 하였다. 주나라 현왕(顯王)은 악행이 있었다고 들리지 않는다. 미약했

1103) 『書』「仲虺之誥」: 成湯放桀於南巢，惟有慙德，曰：予恐來世以台爲口實。

1104) 『논어』「八佾」 子謂韶，盡美矣，又盡善也。謂武，盡美矣，未盡善也。

1105) 『논어』「泰伯」에는 “三分天下，有其二，以服事殷，周之德，其可謂至也已矣.”라고 되어 있는데

佚文「常語」에는 “周之德，其可謂至德也已矣.”라고 되어있다.

1106) 『禮記』「表記」 有君民之大德，有事君之小心。

1107) 『書序』 및 『史記』「殷本紀」 伊尹去湯適夏，既醜有夏，復歸於亳。

1108) 『맹자』「告子下」 五就湯，五就桀，伊尹也。

을 뿐이었다. 주(紂)가 아닌데 제(齊)나라와 양(梁)나라는 섬기지 않았다. 걸(桀)이 아닌데 맹자는 나아가지 않았다. 오후라! 맹자는 천명을 보좌하려고함이 어찌 그리 조급하였던가!

6

大哉! 孔子之作春秋也, 援周室於千仞之壑, 使天下昭然知無二王. 削吳楚之葬, 辟其僭號也. 諱賀戎之戰, 言莫敢敵也. 微孔子, 則春秋不作, 微春秋, 則京師不尊. 爲人臣子不當如是哉? 嗚呼! 孟子其亦聞之也哉! 首止之會, 殊會王世子, 尊之也. 其盟復舉, 諸侯尊王世子而不敢與盟也. 洮之盟, 王人微者也, 序乎諸侯之上, 貴乎王命也. 美哉齊桓! 其深知君臣之禮如此. 夫使孟子謀之, 則桓公偃然在天子之位矣. 世子王人爲亡虜之不暇, 孰與諸侯相先後哉.

6.

위대하다. 공자가 『춘추』를 지음이어. 천길의 골짜기에서 주나라 왕실을 건져내어 천하로 하여금 밝게 두 임금(二王)이 없음을 알게하였다. ‘오나라와 초나라의 장례를 지워버린 것’¹¹⁰⁹⁾은 그 참람한 호칭을 벌한 것이요, ‘무용(賀戎)의 패전을 숨긴 것’¹¹¹⁰⁾은 감히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공자가 없었다면 『춘추』는 지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춘추』가 없었다면 서울(京師)은 높아지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의 신하되는 자는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되지 않겠는가? 오후라! 맹자는 그 또한 들어는 보았는가? 수지(首止)의 모임¹¹¹¹⁾에 특별히 ‘회왕세자(會王世子)’라고 한 것은 (왕세자를) 높인 것이다. 그 회맹이 다시 거행되었으나 제후들은 왕세자를 존중하여 감히 (세자와) 회맹할 수 없었다.¹¹¹²⁾ 조(洮)의

1109) 削吳楚之葬: 공자는 『춘추』에서 오나라와 초나라의 장례를 기록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삭제하였는데 이는 두 나라가 참람하게 ‘왕’이라 칭하였기에 오랑캐로 여기고 누락시킨 것이었다.

1110) 諱賀戎之戰: 『춘추』 成公 元年條에 ‘秋, 王師, 敗績于茅戎(賀戎)’이라고 되어있는데 ‘敗戰’이라 기술하지 아니하고 ‘敗績’이라고 한 것은王者는 지존이므로 오랑캐와 대등하지 않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오랑캐가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시 실수했다는 의미이다.

1111) 首止之會: 『춘추』 僖公 5年條에 ‘公及齊侯宋公陳侯衛侯鄭伯許男曹伯, 會王世子于首止.’라고 되어있는데 세자의 이름(鄭)을 쓰지 않고 특별히 ‘會’라고 한 것은 왕세자를 높인 것이다. 사실이 회합은 제환공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주나라 惠王이 큰아들 ‘鄭’을 폐하고 왕자 ‘帶’를 세우려 하자 제환공이 큰아들을 불러 세자의 자리를 안정시키고자한 것이었다.

1112) 그해 가을 한 차례 더 모이는데 제환공은 왕세자를 왕과 동격으로 귀하게 여겼다. 왕세자는

회맹¹¹¹³)에 왕인(王人)이 미천한 사람이지만 제후의 위에 순서한 것은 왕명을 귀하게 여긴 것이다. 아름답다. 제나라 환공이여! 군신의 예를 깊이 아는 것이 이와 같았다. 맹자로 하여금 모의하게 하였다면 환공은 거만하게 천자의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 세자와 왕인은 망한 포로가 되기에다 겨를이 없었을 것이니 누가 제후와 더불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 있었겠는가!

7

孟子曰：盡信書則不如無書。仁人無敵於天下，以至仁伐至不仁，而何其血之流杵也？曰：紂一人惡耶？衆人惡耶？衆皆善而紂獨惡，則紂亡久矣。不待周也。夫爲天下逋逃主萃淵藪，同之者可遽數耶？紂亡則逋逃者曷歸乎？其欲拒周者又可數耶？血流漂杵，未足多也。或曰：前徒倒戈，攻于後，以北。故荀卿曰：殺者皆商人，非周人也。然則商人之不拒周審矣！曰：如皆北也，焉用攻？又曰：甚哉！世人之尚異也。孔子非吾師乎？衆言謹謹，千徑百道，幸存孔子，吾得以求其是。虞夏商周之書，出於孔子，其誰不知？孟子一言，人皆畔之，畔之不己，故今人至取孟子以斷六經矣。嗚呼！信孟子而不信經，是猶信他人而疑父母也。

7.

맹자는 “『書』를 다 믿는다면 『書』가 없는 것만 못하다. 어진사람은 천하에 적이 없다. 지극히 어진사람이 지극히 어질지아니한 사람을 쳤는데 어찌 그 피가 절구공이(혹은 방패)를 흐르게 하였겠는가?”¹¹¹⁴)라고 말하였다.

제후와 맹을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1113) 洮之盟: 『춘추』 僖公 8年條에 ‘公會王人齊侯宋公衛侯許男曹伯陳世子款，盟于洮.’라고 되어있다. 왕인은 미천한 사람인데 제후들보다 앞에 서술한 것은 왕명을 귀하게 여긴 것이다. 주나라惠王이 죽고 즉위한 襄王(제환공에 의해 인정받았던 전날의 왕세자 鄭)은 동생인 ‘帶’가 반란할까 두려워 해를 넘기도록 發喪도 못하고 즉위하지도 못하였다. 이 어려움을 제환공에게 호소하자 제환공이 회맹을 소집하였는데 왕의 심부름꾼(王人)을 앞에 둔 것은 왕명을 귀하게 여긴 것이었다.

1114) 『맹자』「盡心下」 盡信書，則不如無書。吾於武成，取二三策而已矣。仁人無敵於天下，以至仁，伐至不仁，而何其血之流杵也。

말한다. “주(紂) 한 사람만 악(惡)하였는가? 여러 사람(衆人)이 악하였는가? 여러 사람이 다 착한데 주(紂)만 홀로 악하였다면 주(紂)가 망한 것¹¹¹⁵⁾은 진작 오래되었을 것이니 주(周)나라를 기다릴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천하에 죄를 짓고 도망친 군주가 되어 소굴(淵藪)에 모여있는데¹¹¹⁶⁾ 함께한 자들을 헤아릴 수 있는가? 주(紂)가 망하면, 죄를 짓고 도망간 자들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그 주(周)나라에 항거하려고 했던 자들을 또한 헤아릴 수 있는가? ‘피가 흘러 공이를 띄웠다.’는 것은 족히 많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혹자가 말한다. “앞에 가던 무리가 창을 거꾸로 들어 뒤를 공격하여 패하였다.¹¹¹⁷⁾ 그러므로 순경이 ‘죽인 자는 다 상(商)나라 사람이고 주나라 사람이 아니었다.’¹¹¹⁸⁾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상나라 사람이 주나라에 항거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말한다. “만약 모두 패하였다고 한다면 (굳이) 왜 공격하였을까?”

또 말한다. “심하다! 세상 사람들이 이상한 것을 숭상함¹¹¹⁹⁾이여. 공자는 우리의 스승이 아닌가? 여러 사람이 시끄럽게 떠들어 대고 천갈래 백갈래 길이 있어도 다행히 공자가 계시니 나는 그 옳음(是)을 구할 수 있다. 우(虞) · 하(夏) · 상(商) · 주(周)의 서(書)가 공자에게서 나온 것을 그 누가 알지 못하는가? 맹자의 한 마디에 사람들이 다 배반하였다. 배반함을 그치지 아니함으로 지금 사람들은 『맹자』를 취하여 『六經』을 마름질(斷)하기에 이른 것¹¹²⁰⁾이다. 오호라! 『맹자』는 믿고 『經』은 믿지 않는다. 이는 타인을 믿고 부모를 의심하는 것과 같다.”

8

或曰：然則舜避堯之子於南河之南，禹避舜之子於陽城，何如？曰：堯不聽舜讓，舜

1115) 原註：‘紂亡’은 『宋元學案』에 ‘去紂’로 되어있다.

1116) 『書』「武成」爲天下逋逃主，萃淵藪.

1117) 『書』「武成」前徒倒戈，攻於後以北，血流漂杵，一戎衣，天下大定.

1118) 『荀子』「儒效」蓋殺者非周人，因殷人也.

1119) 原註：‘尙’은 『宋元學案』에 ‘好’로 되어있다.

1120) 原註：‘至’은 『宋元學案』에 ‘之’로 되어있다.

受終于文祖. 舜不聽禹讓, 禹受命于神宗. 或二十有八載, 或十有七年, 歷數在躬, 既決定矣, 天下之心, 既固結矣, 又何避乎? 禹舜未相避也. 由孟子之言, 則古之聖人作僞者也, 好名者也. 王莽執孺子手流涕歔歔, 何足哂哉!

8.

혹자가 말한다. “그렇다면 순(舜)이 요(堯)의 아들을 피하여 남하(南河)의 남쪽으로 갔고, 우(禹)가 순의 아들을 피하여 양성(陽城)으로 간 것¹¹²¹⁾은 어떠한가?”

말한다. “요는 순의 사양을 허락하지 아니하여 순이 문조(文祖: 堯의 시조의 사당)에서 (堯가) 마친 제위(帝位)를 받았다.¹¹²²⁾ 순은 우의 사양을 허락하지 아니하여 우가 신종(神宗: 堯의 사당)에서 명을 받았다.¹¹²³⁾ 혹 28년, 혹 17년. 역수(曆數)가 몸에 있으니 이미 결정된 것이다. 천하의 마음이 이미 굳게 결정되었는데 또한 어찌 피하겠는가? 우(禹)와 순은 서로 피하지 않은 것이다. 맹자의 말에 따르면 옛 성인은 거짓을 지은 자이고, 명예를 좋아하는 자가 된다. 왕망이 젓먹이¹¹²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다는 것¹¹²⁵⁾이 어찌 족히 비웃을 만한 거리가 되겠는가!”

9.

혹자가 말한다. “(맹자는) 덕(德)으로써 인을 행하는 사람은 왕이 된다. 왕은 클 필요가 없다. 탕은 70리로써 하였고, 문왕은 100리로써 하였다.’고 한다.¹¹²⁶⁾ 어떠한가?”

말한다. “다 맹자의 잘못이다. 『詩』「大雅」에 ‘치밀한 저 옥찬(玉瓚: 술 뜨는 국

1121) 『맹자』「萬章上」 5장과 6장의 내용임.

1122) 『書』「舜典」 正月上日, 受終于文祖.

1123) 『書』「大禹謨」 正月朔旦, 受命于神宗.

1124) 孺子: 漢宣帝의 현손인 劉嬰. 왕망은 AD5년 平帝를 독살하고 당시 2살이었던 劉嬰을 세웠다
가 AD8년 劉嬰을 몰아내고 황제가 되었다.

1125) 『漢書』「王莽傳」 莽親執孺子手, 流涕歔歔.

1126) 『맹자』「公孫丑上」 以德行仁者, 王. 王不待大, 湯以七十里, 文王以百里.

자)에 황류(黃流: 울창주)가 그 속에 있다.’¹¹²⁷⁾라고 하였다. 구명(九命: 方伯)이 된 뒤에 옥찬과 울창주를 준다. 제을(帝乙: 商紂의 아버지)의 때에 왕계(王季: 周文王의 아버지)가 서백(西伯)이 되었는데 공(功)으로 이 하사를 받은 것이다. 주나라는 왕계때부터 천하를 중분(中分)하여 다스렸다. 어찌 100리일 뿐이었겠는가? 『詩』「商頌」에 ‘현왕(玄王: 契)이 굳세게 다스리니 작은 나라를 받아도 이에 통달하였고, 큰 나라를 받아도 이에 통달하였다. 예(禮)를 따라 넘지 아니하니 드디어 백성을 봄에 이미 호응하였다. 상토(相土: 契의 손자)가 열렬하니 해외(海外)가 절연(截然: 整齊된 모양)히 정제되었다. 상제의 명이 어겨지지 아니하여 탕에 이르렀다.’¹¹²⁸⁾라고 하였다. 설(契)의 시대에 이미 대국을 받았고, 상토가 승계하였다. 들어가 왕관백(王官伯)이 되어 제후들의 장이 되었다. 위무(威武)가 열렬하여 사해의 밖이 모두 복종하여 절연히 정제되었던 것이다. 상나라는 상토때부터 위엄이 해외에 행하여졌으니 어찌 70리일 뿐이었겠는가? 오호라! 맹자가 사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을 가르치되 그 양(量)을 모르는 것¹¹²⁹⁾이었구나!

9

或曰：以德行仁者王，王不待大，湯以七十里，文王以百里，何如？曰：皆孟子之過也。大雅曰：瑟彼玉瓚，黃流在中。九命然後錫以玉瓚秬鬯。帝乙之時，王季爲西伯，以功得受此賜。周自王季中分天下而治之矣，奚百里而已哉？商頌曰：玄王桓撥，受小國是達，受大國是達。率履不越，遂視既發。相土烈烈，海外有截。帝命不違，至於湯齊。契之時已受大國，相土承之，入爲王官伯，以長諸侯，威武烈烈，四海之外率伏，截爾整齊。商自相土威行乎海外矣，奚七十里而已哉？嗚呼！孟子之教人，教人以不知量也哉！

10

或曰：父母使舜完廩，捐階，瞽瞍焚廩。使浚井，出，從而揜之。象曰：謨蓋都君咸我

1127) 『詩』「大雅」「旱麓」 瑟彼玉瓚 黃流在中, 豈弟君子, 福祿攸降. 주나라 문왕의 덕을 읊은 시이다.

1128) 『詩』「商頌」「長發」 玄王桓撥, 受小國是達, 受大國是達. 率履不越, 遂視既發. 相土烈烈, 海外有截. 帝命不違, 至于湯齊.

1129) 不知量: 分數를 모른다는 말. 『논어』「子張」 仲尼, 日月也, 無得而踰焉, 人雖欲自絕, 其何傷於日月乎! 多見其不知量也.

績, 牛羊父母, 倉廩父母, 干戈朕, 琴朕, 瓠朕, 二嫂使治朕棲. 象往入舜宮, 舜在牀琴. 象曰: 鬱陶思君爾. 忸怩. 舜曰: 惟茲臣庶, 汝其予於治. 有諸? 曰: 書云, 瞽子, 父頑, 母嚚, 象傲, 克諧以孝, 烝烝乂, 不格姦. 又曰: 負罪引慝, 祇載見瞽瞍, 夔夔齊栗, 瞽瞍亦允若. 瞽象未嘗欲殺舜也, 瞽象欲殺舜, 刃之可也, 何其完廩俊井之迂, 其亦有所慮矣. 象猶能慮, 則謂二嫂者, 帝女也, 奪而妻之可乎? 堯有百官牛羊倉廩以備, 事舜於畎畝之中, 而不能衛其女乎? 雖其見奪, 又無吏士無刑以治之乎? 舜以父母之不愛, 號泣於旻天, 父母欲殺之, 幸而得脫, 而遽鼓琴, 何其樂也? 是皆委巷之說而孟子之聽不聰也.

10.

혹자가 말한다. “(맹자는) 부모가 순에게 창고를 수리하게 하였는데, 사다리를 치우고 고수(瞽瞍)가 창고에 불을 질렀다. 우물을 파게하였다. (순이) 나왔는데 (우물을) 메워버렸다. 상(象: 순의 이복동생)이 ‘도군(都君: 舜)을 물어버린 것은 다 나의 공적이다. 소와 양은 부모님, 창고도 부모님, 간과(干戈)는 나, 거문고도 나, 활도 나, 두 형수는 내것.’이라 말하였다. 상이 순의 집에 들어가니 순이 평상에서 거문고를 치고 있었다. 상이 ‘울컥(鬱陶) 형생각이 났다.’라고 말하고는 얼굴이 붉어졌다. 순이 ‘내 신하와 서민을 네가 다스려라.’라고 말하였다.¹¹³⁰⁾ (라고 하였다.) 이런 일이 있었는가?”

말한다. “『書』에 ‘(사악 [四嶽: 大臣] 이 말하였다. 순은) 고(瞽: 소경, 즉 瞽瞍)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완악하고, 어머니는 사나우며, 상(이복동생)은 오만하였는데, 능히 효로써 화목하게하여, 나아가고 나아가감에 다스려서 간악함에 이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¹¹³¹⁾라고 하였다. 또 ‘(부모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부모의) 사특함을 (자기에게) 끌어당겼다. 자식된 도리를 공경히 하여 고수를 보았다. 조심하고 조심하며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니 고수가 또한 믿고서 순하여졌다.’¹¹³²⁾라고 하였다. 고와 상은 일찍이 순을 죽이려 하지 않았다. 고와 상이 순을 죽이려 하였다면 칼을 쓰면 될터인데 어찌 그 창고를 수리하고 우물을 파라는 우활

1130) 『맹자』「萬章上」 2장의 내용임.

1131) 『書』「堯典」 岳曰: 瞽子, 父頑, 母嚚, 象傲, 克諧以孝, 烝烝乂, 不格姦.

1132) 『書』「大禹謨」 負罪引慝, 祇載見瞽瞍, 夔夔齊慄, 瞽瞍亦允若.

한 일을 했겠는가. 그 또한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상도 오히려 생각했을 것이다. 곧 두 형수는 제(堯)의 딸인데 빼앗아 아내로 삼겠다는 것이 가당한가? 요가 백관·우양·창름을 갖추어 논두렁 가운데 있는 순을 섬기게 하였는데 그 딸을 호위하지 않았겠는가? 비록 침탈을 당하더라도 또한 법관이 없었을 것이며, 형벌로써 다스리지 않았겠는가? 순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써 하늘에 울부짖었는데, 부모는 죽이려 하였고, 다행히 벗어나자마자 문득 거문고를 쳤다(?) 무엇이 그리 즐거웠을까? 이는 다 거리에 떠도는 말들인데 맹자의 들음이 귀박지 못한 것이다.”

11

舜誕敷文德，舞干羽于兩階，七旬有苗格，則孟子之譏武成，宜矣哉？曰：以天下征一國，以天子征諸侯，如孟賁搏童子，遲速在我，修文德以待其來可也。大雅曰：以爾鉤援，與爾臨衝，以伐崇墉，臨衝閑閑，崇墉言言，執訊連連，攸馘安安。文王以諸侯伐諸侯，固有訊有馘，武王以諸侯伐天子，奚不用戰哉？詩云：牧野洋洋，檀車煌煌，駟騶彭彭，維師尚父，時維鷹揚，涼彼武王。是也。

11.

“순이 문덕(文德)을 크게 펴서 방패와 깃으로 두 계단에서 춤을 추니 70일만에 유묘(有苗)가 (복속하러) 왔다.’¹¹³³⁾는데 맹자는 「무성(武成: 서경 편명)」을 비웃었으니 마땅한가?”

말한다. “천하로써 한 나라를 치고, 천자로써 제후를 치는 것은 맹분(孟賁:力士)이 어린아이를 치는 것과 같다. 천천히 하거나 빠르게 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니 문덕을 닦아 그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옳다. 「大雅」에 ‘(上帝께서) 너(文王)의 구원(鉤援: 성에 오르는 기구)과 너의 임충(臨衝: 성을 공격하는 기구)으로 송(崇: 나라이름)의 성을 치라 하셨다. 임충은 느릿느릿하고, 송의 성은 높고 크다. 신문할 자 잡기를 계속하며, 귀를 베는 것이 경솔하고 포박하지 않았다.’¹¹³⁴⁾ 라고 하였다. 문왕이 제후로써 제후를 칠 때¹¹³⁵⁾ 신문이 있었고, 귀를

1133) 『書』「大禹謨」帝乃誕敷文德，舞干羽于兩階，七旬，有苗格。

1134) 『詩』「大雅」「皇矣」以爾鉤援，與爾臨衝，以伐崇墉。臨衝閑閑，崇墉言言。執訊連連，攸馘安安。 주

베는 것이 있었다. 무왕은 제후로써 천자를 쳤는데 어찌 전쟁하지 않았겠는가? 『詩』에 이르기를 ‘목야(牧野: 지명)는 넓디 넓고,¹¹³⁵⁾ 박달나무 수레는 황황(煌煌: 鮮明)하며 네 필의 원마(駟馬)는 방방(彭彭: 強盛)하였다. 태사(太師)인 상보(尙父: 강태공)는 이때 매처럼 날아 저 무왕을 도왔다.’¹¹³⁷⁾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12

或曰: 孟子之言, 諸侯實不聽之也. 謂迂闊者乎? 曰迂闊有之矣, 亦足憚也. 孟子謂諸侯能以取天下矣, 位卿大夫, 豈不能取一國哉? 爲其君不亦難乎? 然滕文公嘗行孟子之道矣, 故許行陳相目之曰仁政, 曰聖人. 其後寂寂, 不聞滕侯之得天下也, 孟子之言固無驗也.

12.

흑자가 말한다. “맹자의 말은 제후들이 사실 듣지 않았다. 우활하다는 말인가?”

말한다. “우활한 것이 있다. 또한 꺼릴만 하다. 맹자가 ‘제후는 천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말했으니, 경 · 대부의 자리에 있다면 어찌 한 나라를 취하지 못하겠는가? 그 임금되기가 또한 어렵지 아니한가? 그러나 등문공은 일찍이 맹자의 도를 행하였다. 그러므로 허행과 진상의 무리가 지목하여 ‘인정(仁政)’이라하고 ‘성인(聖人)’이라고 하였다. 그 뒤 고요하여(寂寂) 등후(滕侯)가 천하를 얻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 맹자의 말은 진실로 증험이 없다.”

13

孔子與賓牟賈言大武曰: 聲淫及商, 何也? 對曰: 非武音也. 有司失其傳也. 若非有

문왕이 密을 치고 崇을 친일을 기록한 詩이다.

1135) 原註: ‘伐諸侯’ 세 글자는 원본에 없다. 『朱熹集』권73 「雜著」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1136) 原註: ‘詩云牧野洋洋’은 원래 ‘牧野詩云’이었는데 글뜻과 『詩』 「大雅」 「大明」에 근거하여 정정하였다.

1137) 『詩』 「大雅」 「大明」 牧野洋洋, 檀車煌煌, 駟駟彭彭. 維師尙父, 時維鷹揚. 涼彼武王. 주무왕이 상나라를 친 것을 말한 詩이다.

司失其傳，則武王之志荒矣。武王之志猶不貪商，而孟子曰：文王望道而未之見。謂商之祿未盡也，病其有賢臣也。文王貪商如此其甚，則事君之小心安在哉？豈孔子之妄言哉？孔子不妄，孟子之誣文王也。

13.

공자가 빈모가(賓牟賈)에게 대무(大武: 무왕의 음악)에 관하여 말씀하셨다.¹¹³⁸⁾ “소리의 탐욕됨이 상나라에 미쳤다. 왜 그러한가?” “무의 음악이 아닙니다. 유사(有司)가 전(傳)함을 잃은 것입니다. 진실로 유사가 그 전함을 잃은 것이 아니라면 무왕의 뜻은 황폐한 것입니다.” 무왕의 뜻은 오히려 상나라를 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맹자는 문왕이 “도를 바라보았으되 보지 못한듯하였다.”¹¹³⁹⁾ 라고 말하였다. 말하자면 상나라의 녹이 다하지 아니하여 그 어진 신하가 있음을 근심하였다는 말이다. 문왕이 상나라를 탐하는 것이 이와 같이 그렇게 심하였다면 임금섬기는 작은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것인가? 어찌 공자는 망언하였던가? 공자가 망녕된 것이 아니라 맹자가 문왕을 무고한 것이다.

14

或曰：孟子之心，以天下積亂久矣，諸侯皆欲自雄，苟說之以臣事周，孰能喜也？故揭仁義之竿，而湯武爲之餌，幸其速售以拯斯民而已矣。曰：孟子不肯枉尺直尋，謂以順爲正者，妾婦之道，其肯屑就之如此乎？夫仁義又豈速售之物也？子嚙不得與人燕，子之不得受燕於子嚙，固知有周室矣。天之所廢，必若桀紂，周室其爲桀紂乎？盛之有衰，若循環然，聖王之後不能無昏亂，尚賴臣子扶救之爾。天下之地，方百里者有幾？家家可以行仁義，人人可以爲湯武，則六尺之孤，可託者誰乎？孟子自以爲好仁，吾知其不仁甚矣。

14.

혹자가 말한다. “맹자의 마음은 ‘천하가 어지러움이 쌓인지 오래라. 제후들이

1138) 『禮記』「樂記」賓牟賈侍坐於孔子，孔子與之言及樂曰：夫武..聲淫及商，何也？對曰非武音也。子曰：若非武音則何音也？對曰：有司失其傳也。若非有司失其傳，則武王之志荒矣. 무왕은 상나라를 탐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1139) 『맹자』「離婁下」文王，視民如傷，望道而未之見.

다 스스로 영웅이 되고자 하는데 진실로 신하로써 주나라를 섬기라고 말하면 누가 능히 기뻐하겠는가? 그러므로 인의의 장대(竿)를 들고 탕·무를 미끼로 하면 행여 빨리 행하여져(售) 이 백성을 건져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말한다. “맹자는 ‘한자를 굽혀 여덟자를 펴는 것(枉尺直尋)’을 기꺼워하지 않는다.1140) 말하기를 ‘순종함으로써 정도를 삼는 것은 부녀자(妾婦)의 도리이다.’1141)라고 하였다. 그런 사람이 기꺼이 이와 같은 마음을 먹었겠는가? 인의가 또한 빨리 행하여지는 물건인가? ‘자괘(子嚙)도 연나라를 남에게 줄 수 없고, 자지(子之)도 자괘에게 연나라를 받을 수 없다.’1142) 라고 하였으니 진실로 주나라 왕실이 있는 것을 안 것이다. 하늘이 폐(廢)하는 것은 반드시 ‘걸·주’ 같아야 하는데, 주나라 왕실이 ‘걸·주’ 였는가? 성(盛)한 것이 쇠함이 있는 것은 순환과 같다. 성왕(聖王)의 뒤에 혼란이 없지 아니하나 오히려 신하의 부축하고 구원함에 힘입었다. 천하에 땅이 사방 백리인 자 몇인가? 집집마다 인의를 행하고 사람사람마다 탕·무가 된다면, 6척의 아이(어린 임금)1143)를 맡아줄 사람은 누구인가? 맹자는 스스로 인(仁)을 좋아한다 하였으나 나는 그가 불인(不仁)이 심함을 아노라.”

15

孟子曰：紂之去武丁未久也，其故家遺俗，流風善政，猶有存者。又有微子微仲王子比干箕子膠鬲，皆賢人也，相與輔相之，故久而後失之也。尺地，莫非其有也，一民，莫非其臣也。然而文王猶方百里起，是以難也。齊人有言曰：雖有智慧，不如乘勢，雖有鎡基，不如待時。今時則易然也。今之學者曰：自天子至於庶人，皆得以行王道。孟子說諸侯行王道，非取王位也。應之曰：行其道而已乎，則何必紂之失也？何憂乎善政之存？何畏乎賢人之輔？尺地，一民，皆紂之有，何害諸侯之行王道哉？齊宣王問曰：人皆謂我毀明堂，毀諸？已乎？孟子對曰：夫明堂者，王者之堂也。王欲行王政，則勿毀之矣。行王政而居明堂，非取王位而何也？君親無將，不容纖芥於其間，而學

1140) 『맹자』「滕文公下」且夫枉尺而直尋者，以利言也。如以利則枉尋直尺而利，亦可爲與。

1141) 『맹자』「滕文公下」以順爲正者，妾婦之道也。

1142) 『맹자』「公孫丑下」子嚙不得與人燕，子之不得受燕於子嚙。

1143) 『논어』「泰伯」曾子曰：可以託六尺之孤，可以寄百里之命，臨大節而不可奪也，君子人與？君子人也。

者紛紛強爲之辭，過矣.

15.

맹자는 말하였다. “주(紂)는 무정(武丁)에서 오래지 않았다. 그 고가(故家)와 남긴 풍속, 유풍(流風)과 선한 정치가 오히려 남아있는 것이 있었다. 또 미자 · 미중 · 왕자비간 · 기자 · 교격이 다 어진 사람이었다. 서로 더불어 도왔으므로 오래지난 뒤에 잃은 것이다. 한 자의 땅도 그 소유가 아닌 것이 없었고, 한 백성도 그 신하가 아님이 없었다. 그런데 문왕이 오히려 사방 백리로 일어났으니 이 때문에 어려웠던 것이다. 제나라 사람 말에 ‘비록 지혜가 있어도 세(勢)를 타는 것만 못하고, 비록 농기구가 있어도 때를 기다리는 것만 못하다.’ 라고 하였다. 지금 이 때가 쉬운 것이다.”¹¹⁴⁴⁾ 오늘날의 학자들은 말한다. “천자부터 서인까지 다 왕도를 행할 수 있다. 맹자는 제후들에게 왕도를 행하라고 말하였지 왕위를 취하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

응답하여 말한다. “그 도를 행할 따름’이라면 하필 주(紂)가 잃었을 때인가? 어찌 ‘선정이 남아있음’을 근심하는가? 어찌 ‘어진이의 보좌’를 두려워하는가? 한 자의 땅도, 한명의 백성도 다 주(紂)의 소유였다면 제후가 왕도를 행하는 것이 무엇이 해로운가? 제선왕(齊宣王)이 물었다. ‘사람들이 다 나더러 명당(明堂)을 헐어라고 말하는데 헐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맹자가 대답하였다. ‘명당이라는 것은 왕자의 당입니다. 왕께서 왕정을 행하고자 하신다면 헐지 마십시오.’¹¹⁴⁵⁾ 왕정을 행하고 명당에 사는 것이 왕위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임금과 어버이에게는 무장(無將: 弑逆이 없어야함)이다. 그 사이에 검부러기도 용납함이 없는 것인데, 학자들은 분분하게 억지로 말을 해대니 잘못된 것이다.”

16

學者又謂：孟子權以誘諸侯，使進於仁義. 仁義達則尊君親親，周室自復矣. 應之曰：言仁義而不言王道，彼說之而行仁義，固知尊周矣. 言仁義可以王，彼說之則假仁義

1144) 『맹자』「公孫丑上」 1장의 내용임.

1145) 『맹자』「梁惠王下」 齊宣王，問曰：人皆謂我毀明堂，毀諸？已乎？孟子對曰：夫明堂者，王者之堂也，王欲行王政則勿毀之矣.

以圖王，唯恐行之之晚也。尚何周室之顧哉？嗚呼！今之學者，雷同甚矣。是孟子而非六經，樂王道而忘天子。吾以爲天下無孟子可也，不可無六經，無王道可也，不可無天子。故作常語以正君臣之義，以明孔子之道，以防亂患於俊世爾。人知之非我利，人不知非我害，悼學者之迷惑，聊復有言。

16.

학자들은 또 말한다. “맹자는 권도(權道)로 제후를 유인하여 인의에 나아가게 하였다. 인의에 통달하면 임금을 높이고 어버이를 친할 것이니 주나라 왕실은 저절로 회복될 것이다.”

응답하여 말한다. “‘인의를 말하되 왕도는 말하지 아니한다.’ 저렇게 달래어 인의를 행한다면 진실로 ‘주나라 높일 것(尊周)’을 알 것이다. ‘인의를 하면 왕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저렇게 달래면 인의를 빌려 왕을 도모할 것이니, 오직 행함이 늦을까 걱정할 것이다. 오히려 어찌 주나라 왕실을 돌아보겠는가? 오호라! 오늘날의 학자들은 뇌동이 심하다. 이는 맹자이지 육경이 아니요, 왕도를 즐기되 천자를 잊는 것이다. 나는 ‘천하에 맹자는 없어도 좋으나 육경이 없으면 안되며, 왕도는 없어도 좋으나 천자가 없으면 안된다.’고 여긴다. 그러므로 「常語」를 지어 ‘군신의 의’를 바로잡고, ‘공자의 도’를 밝히며, ‘후세의 혼란과 근심’을 예방하려한 것이다. 사람들이 알아주어도 나에게 이로울 것이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에게 해로울 것이 없다. 학자들의 미혹됨이 슬퍼 애오라지 다시 말할 뿐이다.”

참고문헌

1. 原典資料

- 『論語』
『孟子』
『書』
『宋史』 卷432 『儒林傳』
『荀子』
『詩』
『周禮』
『周易』
孔穎達, 『周易正義』
歐陽脩, 『歐陽脩全集』
董仲舒, 『春秋繁露』
范仲淹, 『范文正公集』
司馬光, 『溫國文正司馬文集』
蘇軾, 『蘇東坡全集』
王安石, 『臨川集』
李觀, 『直講李先生文集』
李觀, 『李觀集』 王國軒 點校, 中華書局, 1981.
張載, 『張載集』
程顥, 程頤, 『二程集』
朱熹, 「讀余隱之尊孟辨」 『朱子文集』 卷73
黃宗羲, 全祖望, 『宋元學案』 卷3 『高平學案』

2. 한국어

- 姜吉仲, 「李觀의 現實認識과 이치법 改革論」 『東洋史學研究』120, 2011.
구범진, 「李觀經濟思想의 構造와 性格」 『서울大東洋史學科論集』15, 1991.

- 孫正民, 「李靚의 孟子비판」 『宋代孟子論辨研究』成均館大 碩士論文, 2014.
- 심경호, 역 『주역철학사』 예문서원, 1994: 廖名春, 康學偉, 梁韋弦, 『周易研究史』, 1991.
- 安炳周, 「朱子の 尊孟辨의 意味」 『儒敎思想研究』1, 1986.
- 李範鶴, 「王安石 改革論의 形成과 그 性格」 『東洋史學研究』18, 1983.
- 李範鶴 譯, 제임스 류 著, 『왕안석과 개혁정책』, 지식산업사, 1991.
- 이상선, 「李靚의 通變思想」 『東洋哲學』18, 2002.
- 鄭炳碩, 「李靚의 經世論의 易解釋」 『東洋哲學研究』22, 2000.
- 馮友蘭, 『중국철학소사』 이문출판사, 1994.
- 馮友蘭, 『중국철학사』 까치글방, 1993.
- 한성구, 「李靚의 義利思想 및 禮論과 의의」 『한국철학논집』31, 2011.
- 김광민, 「李靚의 國用論과 富國策」 『歷史學研究』61, 2016.

3. 中國語

- 葛榮晉, 『中國哲學範疇通論』 首都師範大學出版社, 2001.
- 姜國柱, 「論李靚의 經濟思想」 『撫州師專學報』 21, 2002.
- 姜國柱, 『李靚思想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研究所, 1984.
- 姜國柱, 「李靚의 禮論思想」 『中國哲學史』, 北京: 中國人民大學, 1983.
- 姜國柱, 『李靚評傳』 南京大學出版社, 1996.
- 姜國柱, 朱葵菊, 『中國歷史上의 人性論』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9.
- 金 霞, 「論李靚의 經世思想」 『蘭臺世界』, 2007.
- 藍云大, 「李靚의 哲學思想初探」 『中國哲學史』 北京: 中國人民大學, 1983.
- 賴功歐, 「一代通儒李靚論」, 『撫州師專學報』 21, 2002.
- 廖名春, 康學偉, 梁韋弦, 『周易研究史』, 湖南出版社, 1990.
- 馬振鐸, 「論李靚의 哲學思想」 『中國哲學史研究』 北京: 社會科學出版社, 1987.
- 付勝國, 羅伽祿, 「李靚의 人才思想」 『撫州師專學報』 3, 1990.
- 謝 謙, 『中國古代宗教與禮樂文化』 成都四川人民出版社, 1996.
- 謝善元, 『李靚』, 臺北, 東大圖書公司, 1990.
- 謝善元, 『李靚之生平及思想』 中華書局, 1988.
- 薛 寧, 「簡論李靚의 土地思想」 『重慶工商大學學報』 28, 2011.
- 蕭公權, 『中國政治思想史』 遼寧教育出版社, 1998.

- 樂文華, 「李觀管理思想的現代意義」 『江西教育學院學報』 24, 2003.
- 樂文華, 「李觀的革新思想述評」 『江西教育學院學報』 24, 2003.
- 樂文華, 「李觀和王安石的哲學思想比較」 『撫州師專學報』 21, 2002.
- 楊安邦, 陳凌, 周秀斌, 「李觀教育思想探析」 『撫州師專學報』 21, 2002.
- 楊柱才, 「李觀的禮論及現實意義」 『中國哲學史』, 2002.
- 呂振羽, 『中國政治思想史』 北京: 人民出版社, 1981.
- 吳可, 「李觀的經濟管理思想」 『孔子研究』 濟南: 孔子基金會, 1996.
- 王曉薇, 「李觀的性命論及其排佛思想」 『亞細亞文化研究』 9.
- 饒國賓, 陳大勇, 饒國順 等 「論李觀的治國構想」 『南昌航空工業學院學報』 2003.
- 柳肅, 『禮的精神-禮樂文化與中國政治』 吉林教育出版社, 1989.
- 李澤厚, 『中國古代思想史論』 天津社會院出版社, 2003.
- 張巨岩, 「李觀, 王安石法學思想比較研究」 『中華文化論壇』 21, 2004.
- 張國鈞, 『先秦義利論及其現代意義』 中國人民大學, 1995.
- 張祥云, 「論李觀的教育思想」 『撫州師專學報』 21, 2002.
- 張熙惟, 「論李觀的憂患意識及其政治改革思想」 『撫州師專學報』 21, 2002.
- 趙靖, 「北宋時期批判土地兼併的卓越思想家-李觀」 『中國古代經濟思想史講話』
北京: 人民出版社, 1986.
- 馮友蘭, 『中國哲學史新編』 人民出版社, 1988.
- 夏長樸, 『李觀與王安石研究』 臺北: 大安出版社, 1989.
- 胡寄窓, 「李觀的富民思想」 『中國經濟思想史』 下, 上海人民出版社, 1981.
- 胡寄窓, 「『周禮』的經濟思想」 『中國經濟思想史論』 北京: 人民出版社, 1985.
- 胡適, 「記李觀的學說」 『胡適文存』 卷2, 1919.
- 胡適, 『胡適文集』 北京大學出版社, 1998.
- 侯外廬 主編, 「李觀的平均土地思想及其哲學思想」 『中國思想通史』 卷4 上,
北京: 人民出版社 1962•1963.

4. 日本語

- 近藤一成, 「北宋『慶曆の治』小考」 『史滴』 5, 1984.
- 麓保孝, 「北宋に於ける正學の成立」 『北宋に於ける儒學の展開』 東京: 書籍文物
流通會, 1967.
- 本田濟, 「李觀について」 『石濱先生古稀紀念東洋學論叢』 1957.

寺地邊, 「李靚の禮思想とその歴史的意義」『史學研究』118・119, 1973・1974.
市川安司, 「朱子文集に見える李靚の常語について-宋儒孟子靚の一斑」
『支那學報』1, 東京, 1955.

5. 英語

Etienne Balazs, “A Forerunner of Wang An-shih”, Chinese Civilization and Bureaucracy, trans. by H.M. Wright, New Haven and London, Yale U.P., 1974.

James T.C. Liu(劉子健) “Reform in Sung China: Wang An-shih(1021~1086) and His New Policies”, Harvard East Asian Studies 3, 1959. 이범학 역, 『왕안석과 개혁정책』, 지식산업사, 1991.

〈부록〉 직강이선생연보

直講李先生年譜

宋 魏峙 撰

眞宗皇帝 大中祥符2년(1009) 己酉, 태어남.

祥符3년(1010) 庚戌, 2세.

祥符4년(1011) 辛亥, 3세.

祥符5년(1012) 壬子, 4세.

祥符6년(1013) 癸丑, 5세.

祥符7년(1014) 甲寅, 6세.

祥符8년(1015) 乙卯, 7세.

선생이 「上蘇祠部書」에 “6,7세에 聲韻을 맞추고, 字書を 익혀, 부지런히 힘써 잊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한 것을 보면, 1,2년간 向學한 것을 알 수 있다. 蘇祠部는 蘇舜欽이다.

祥符9년(1016) 丙辰, 8세.

天禧元年(1017) 丁巳, 9세.

天禧2年(1018) 戊午, 10세.

선생이 「上余監丞書」에 “10세에 聲律을 알았습니다.” 고 말한 것을 보면, 이 해에 과거공부를 익힌 것을 알 수 있다. 余監丞은 당시 南城의 宰였다.

天禧3年(1019) 己未, 11세.

선생이 지은 「疑仙賦序」에 “어머니는 아들이 없어, 기도하러 가지 않은 곳이 없으셨다. 祥符元年(1008) 꿈에 두명의 도사가 문밖에서 바둑을 두고 있었다. 가서 보니 그 중에 한 명이 바둑 돌 하나를 주었는데, 드디어 임신하였다.” 라고 하였고, 또 “열살 무렵 아버지를 따라 들에 가다 동쪽

교외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꿈에 어떤 사람이 글을 표구하여 주면서 ‘王狀元文集’ 이라고 하였다. 꿈결에 沂公(王曾)의 글로 여겼었다. 就學해서 심히 魯鈍하지 않았다. 혹 때로 책을 펴면 놀랍게도 생각이 나서, 전에 이 글을 읽었나, 싶다가 다시 생각해 보면 안 본 것이었다.” 라고 하였다. 이 두 꿈을 보면 타고난 賢哲로써 斯文의 氣脈을 이은 것이 어찌 우연일까?

天禧4年(1020) 庚申, 12세.

선생이 「上余監丞書」에 “12세에 文章을 가까이 하였습니다.” 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이 해에 文을 능히 하였음을 알 수 있다.

天禧5年(1021) 辛酉, 13세.

乾興元年(1022) 壬戌, 14세.

이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鄭夫人墓誌」에 “14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고 하였고, 또 “아버지는 학문을 하였으나 과거에 응하지 않으셨다. 아들에게 詩賦짓는 것을 가르치셨다. 또한 베풀기를 즐기셨으며, 더욱 정직하고 신의가 있으셨다.” 라고 한 것을 보면 선생의 家學을 알 수 있다.

仁宗皇帝 天聖元年(1023) 癸亥, 15세.

天聖2年(1024) 甲子, 16세.

天聖3年(1025) 乙丑, 17세.

이 해에 아버지 상을 마쳤다. 「鄭夫人墓誌」에 “조금 나가 교유하였고, 師友를 구하였다.” 고 한 것을 보면 선생이 나가 교유한 것은 반드시 아버지 상을 마치고 난 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天聖4年(1026) 丙寅, 18세.

天聖5年(1027) 丁卯, 19세.

天聖6年(1028) 戊辰, 20세.

天聖7年(1029) 己巳, 21세.

天聖8년(1030) 庚午, 22세.

이 해에 陳氏부인을 맞았다. 慶曆7년(1047 ; 39세) 선생이 지은 「亡室墓誌」에 “진씨는 지금 南城사람이다. 태어난지 5년만에 伯父에게 길러졌다. 또 11세에 시집왔는데 시집온지 17년 되던 해 죽었다.” 하였고, 또 “다시 옛집으로 돌아와 부인을 맞았다.” 고 하였으니 아마도 선생이 이에 앞서, 나가 교유하다가 이 해에 비로소 집에 돌아온 것이다. 또 「上余監丞書」에서 “10세에 聲律을 알았고, 12세에 문장을 가까이 하였습니다. 생각이 미쳐 날뛰고(猖狂), 귀와 눈이 병들어 고생한 것이 이미 10년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이 글은 이 해에 지은 것이다.

天聖9년(1031) 辛未, 23세.

이 해에 「潛書」 15편을 지었다. 또 「上孫寺丞書」에서 “23살에 닭이 울면 일어나, 孔·孟 여러 성인의 글을 읽고 문장을 지었습니다. ‘나라를 편하게하고 백성을 살리는 것(康國濟民)’으로써 뜻을 삼았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文章’은 「潛書」를 가리킨 것이다. 孫寺丞은 당시 南城의宰였다.

明道元年(1032) 壬申, 24세.

이 해에 「禮論」 7편을 지었다. 그 뒤에 余襄公이 선생에게 주는 글(外集권2;余侍郎3書)에 “보여주신 「禮論」 7편은 禮經을 밝혀 世敎의 표준이 되었고, 仁義를 담당하고, 刑政을 도왔으니, 어찌 강남(江表)의 獨步일 뿐이겠습니까? 聲名이 후세 준걸들과 다를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선생이 禮經에 공이 있는 것이 이와 같다. 또 「陳仲溫進士墓誌」를 지었다. 진중온의 휘는 구(璆)인데 선생의 伯丈(처의 큰아버지)이다. 墓誌序의 끝에 “처음에 君(진중온)의 동생(李觀의 장인)이 그 아내와 함께 죽었다. 딸이 막 젖을 떼었는데, 君이 자기 자식처럼 사랑으로 길렀다. 자라서 이씨(李觀)에게 시집갔다.” 고 하였다.

明道2年(1033) 癸酉, 25세.

景祐元年(1034) 甲戌, 26세.

이 해에 「邵氏神祠記」가 있다. 그記에 “建昌城 북쪽에 소씨가 살았는데, 대대로 ‘五通(질병을 치료한다는 귀신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수백이었다. 景祐元년에 마을에 큰 역병이 돌아 우리 집에 미쳤다. 오직 ‘오통’을 마음에 생각하며 해가 없기를 바랐다. 기약한 날에 질병이 물러갔다. 우리 집안에 공이 있는데 그것을 없애고 記載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으니 記를 지은 것이 아마 이 해인 것 같다.

景祐2年(1035) 乙亥, 27세.

「上蘇祠部書」에 “6,7세부터 聲韻을 맞추고, 字書를 익혀, 부지런히 힘써 잊지 않았습시다. 지금 나이가 27세입니다”라고 한 것을 보면 이 편지는 이 해에 쓴 것이다.

景祐3年(1036) 丙子, 28세.

이 해에 「明堂定制圖並序」, 「平土書」, 「上聶學士書」, 「上李舍人書」, 「上宋舍人書」, 「太平院住持記」, 「冬至夜酒醒詩」, 「甘露亭詩」, 「野記」를 썼다.

「上聶學士書」에 “行年 28입니다.”라고 하였으니 이 해이다. 「上李舍人書」에 “평소 쓴 글 24편을 삼가 모아서 한 책을 이루었습니다, 아울러 明堂定制圖를 한 부 갖추어 보내드립니다.”라고 하였고, 「上宋舍人書」에 “일찍이 明堂定制圖並序를 지었습니다. 그 뜻은 經義를 도와 밝히고, 冢의 盛禮를 돕는데 있습니다. 삼가 한 부를 필사하여 보내드립니다.”라고 하였으니 명당도를 지은 것도 또한 이 해이다. 「平土書」는 지은 해를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선생은 다음 해 范公(범중엄)을 보았는데, 범공이 다른 날 선생을 추천할 때, 반드시 「禮論」, 「易論」, 「明堂定制圖」, 「平土書」등을 함께 바쳤다. 틀림없이 이 한 두해 사이에 함께 지었을 것이다. 선생이 남으로 돌아올 때 張宗古가 전송하며 쓴 글에(外集권3; 張學士送李君南歸序) “주나라로부터 지금까지 천여년인데 이 禮가 폐지되

고 단절되었다. 학자들이 각자의 견해를 옳다고 하며, 다투어 스승의 말을 끌어들이므로 다시 泰伯(李觀)이 나와 그 근본을 밝혔다.” 라고 하였으니 명당도를 가리킨 것이다. 이 해 서울에 들어가 宋修撰(宋庠), 李修撰(李淑), 聶記注(聶冠卿), 葉集賢(葉清臣) 등을 만났는데 다 許可하였다. 貢擧가 끝나 돌아왔다.

景祐4年(1037) 丁丑, 29세.

이 해에 鄗陽에 가서 范文正公을 만났다. 그 글에 “29세에 일찍이 서울에 왔으나 방황하다 귀향하였습니다. 또 鄉擧에서 내쳐졌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 뒤 범공이 선생에게 주는 글에 “鄗陽에 있을 때 수고롭게 찾아주셨습니다. 곧 다른 군으로 옮겨 만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였으니, 선생이 이 해 鄉擧에 들지 못하고 파양으로 가서 범공을 방문한 것이다.

寶元元年(1038) 戊寅, 30세.

이 해에 「廣潛書」 15편, 「命箴」, 「野記」, 「鄧公儀傷辭」, 「緣概師詩」, 「惜雞詩」를 지었다.

「廣潛書」自序에 “辛未年(1031 ; 23세) 나는 ‘潛’으로 책을 이름 짓고, 7년뒤 山巖을 다니다가 넓혀서 다시 15편을 만들었다.” 라고 하였으니 이 글은 이 해에 쓴 것이다. 「命箴」에 “30을 ‘壯’이라고 하는데 성인(孔子)은 ‘立’하였다.” 라고 하였으니 이 箴도 역시 이 해에 쓴 것이다. 「廣潛書」에 “山巖을 다니다가” 라고 하였으니 「野記」 또한 이 해에 쓴 것이다.

寶元2年(1039) 己卯, 31세.

이 해 선생이 꿈을 꾸었는데 집에 큰 비와 지진이 일어났다. 紫衣에 갓을 쓴 사람이 있어 ‘雷神’이라고 하였다. 선생을 불러 나오게 한 뒤 시제를 주었는데 ‘春社詞’였다. 붓을 들어 8句를 썼다. 깨어나 그 첫머리 3句를 기억하였는데 자못 괴이하고 아름다웠다. 7년뒤 5句를 채웠다. 이 꿈과

「疑仙賦序」의 두 꿈을 보면, 하나는 탄생의 상서로움이요, 또 하나는 신이 斯文의 印을 준 것이니 하늘이 賢哲을 낼 때 어찌 그 증좌가 없겠는가. 이 세가지 꿈은 다 기록할만 하다. 선생이 康定 2년 制科에 응시하는데 「富國」, 「彊兵」, 「安民」 30策을 이 해에 썼다.

康定元年(1040) 庚辰, 32세.

이 해 아들 參魯를 낳았다. 「上江職方書」가 있다. 또 越州로 가서 范高平公의 부름에 나아가 「登越山」詩가 있다. 丁亥年(1047 ; 39세) 선생이 지은 「亡室墓誌」에 “큰 아이 參魯가 겨우 이가 빠졌다.” 라고 하였으니 庚辰년부터 丁亥까지 8년 이므로 겨우 이가 빠졌다고 한 것이다. 선생의 「上江職方書」에 “行年30여에 겨우 가까이 吳越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였다. ‘30餘’ 라고 하였으니 이 해이고, ‘吳越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고 하였으니 범공을 방문한 것이다. 江鎬공이 보원 원년 직방으로 旰守였다.

康定2年(1041) 11월 改慶曆元年 辛巳, 33세.

이 해에 「建昌郡集賓亭記」, 「重修麻姑殿記」, 「麻姑山重修三清殿記」, 「修梓山寺殿記」, 「上吳舍人書」, 「上王內翰書」, 「上富舍人書」, 「上劉集賢書」, 「上愼殿丞書」, 「日出詩」, 「感事詩」, 「和愼史君出城見梅詩」를 지었다.

「集賓亭記」에 “康定2년 여름 6월 태수 愼公이 軍門의 남쪽에 새 정자를 지었는데 孟秋에 완성되었다. 郡사람 李觀가 記를 썼다.” 라고 하였다. 「三清殿」, 「麻姑殿」記에 다 康定연호가 있고, 「梓山寺殿記」에 또한 ‘康定二年秋九月’ 이라고 하였다. 이 여러 記는 다 康定改元 전의 것이다. 「上愼殿丞書」는 愼鈞公이 그 때 殿中丞으로써 旰江군수였으니 이 글은 서울에 들어가기 전에 쓴 것이다. 「上吳舍人書」, 「上王內翰書」, 「上富舍人書」, 「上劉集賢書」는 吳肅公, 王堯臣公, 富弼公, 劉敞公이 그 때 모두 조정에 있었으니 이 글들은 서울에 들어간 날 지은 것이다. 그러나 이 해

郡에서 선생을 천거하여 茂材異等科에 응하였다. 시험에 부르는 교지가 있어 서울에 들어갔다. 위 여러공들에게 올린 글과 또 「寄祖祕丞無擇詩」에 과거에 응한 본말을 서술하며 ‘근심으로 세월을 보내었다.’ 라고 하였으니 선생은 이 해 1년을 서울에서 머물렀다.

慶曆2년(1042) 壬午, 34세.

이 해 선생은 試制科第一로 부름을 받았다. 長沙 蕭注가 선생에게 보낸 글에 “어제 동생 永과 함께 서울에 과거 응시하려고 왔는데 足下께서 賢良에 응하여 第一召試에 참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얼굴이라도 한 번 뵙기를 마음으로 생각하지 아니한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가을 7월 試制科에 급제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南康을 지나다 郡守 祖祕丞을 보았다. 「皇祐類稿」에 祖祕丞에게 주는 詩에 “廬山 남쪽을 지나다 / 君(祖祕丞)이 처음 다스림을 펼친다고 들었네.” 라고 하였고, 또 “높은 모임 비록 잠시 기뻐으나 / 고향에 빨리 돌아가야 하네.” 라고 하였으니 선생이 南康과 廬山에 잠시 머물렀다 돌아온 것이다.

이 해에 또 「寄小兒詩」, 「送余疇若南豐掌學序」, 「與章祕校書」, 「上楊屯田書」 楊文公 億의 아들, 「麻姑山賦」, 「寄周寺丞詩」, 「惜才詩」, 「送侯殿直知吉州詩」가 있다. 「寄小兒詩」注에 ‘이 아이 겨우 3살.’ 이라고 하였으니 庚辰(1040 ; 32세)에 낳아 壬午에 3살이 된 것이다. 「送余疇若南豐掌學序」와 「寄周寺丞詩」는 周燮이 이 해 南豐宰를 하여 余疇若에게 學을 주관하라 하였기에 선생이 序로 전송한 것이다. 楊屯田은 그 때 筠州 守이므로 글을 보낸 것이다. 「麻姑山賦」는 높은 臺와 층층의 옥돌, 둘러쳐진 담장과 채색의 아름다움을 서술한 것인데 반드시 마고전을 수리한 뒤 지은 것이므로 이 해이다. 「送侯殿直知吉州詩」는 ‘일찍이 滁州를 얻어 고향에 있었다.’ 고 하였는데, 國史 歐公은 慶曆2년에 滁州를 맡았으니 이 시는 이 해 지은 것이다. 「惜才詩」는 아마도 과거에 낙제한 뒤 지은 것 같다.

慶曆3년(1043) 癸未, 35세.

이 해에 「退居類稿」 12권, 「慶曆民言」 30편을 편집했고, 「周禮致太平論」 50편, 「撫州菜園院記」, 「雪中贈柳枝」, 「柳枝答詩」, 「寄周寺丞詩」, 「送錢寺丞知白州詩」, 「三賢詠」, 「上蔡學士書」, 「寄祖祕丞詩」를 지었다.

선생은 지은 글을 모아 「退居類稿」라고 이름하였는데 “弱冠부터 지금까지 15년, 草稿 235수를 얻어 12권으로 만들었다.”라고 하였다. 이 해 冬至에 南康 守 祖無擇이 선생을 위하여 序를 지었으니 선생은 이 해에 낙제하여 退居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退居類稿」를 모으고 또 「周禮致太平論」이 있었다. 그 뒤 陳次公이 先生墓誌를 지었는데 “退居하여 「周禮致太平論并序」를 썼다.”라고 하였으니 실제 이 해에 지은 것이다. 「上蔡學士書」에서 鄒子房의 일을 언급했는데 蔡公은 慶曆3년에 諫官이 되었으니 이 글은 또한 이 해에 쓴 것이다. 周寺丞 燮은 이 때 南豐 宰였고, 錢寺丞 得臣은 南城 宰로써 白州를 맡고 있었으므로 선생이 詩를 보낸 것이다. 또 「寄祖祕丞詩」에 “郡守는 어질고 / 學宮은 성대히 修理되었네. / 학생은 정성을 다하고 / 나에게 經藝를 말하라 명하였네.”라고 하였고, 余襄公 薦章에 “낙제하여 退居할 제 喪에서 生徒가 따르며 강습하였다.” 하였고, 鄧溫伯이 “慶曆3년 南城에 처음 학교가 설립되고 선생이 사부가 되었다. 喪에서 배우러 오는 사람이 일찍이 수백인 이었다.”라고 하였으니 선생이 이 해에 집에 退居하였으므로 郡守가 學事를 주관하게 청하였던 것이다. 「雪中贈柳枝」는 이 해 2월 서울에 들어갈 때 눈을 만나 지은 것이다.

이 해에 딸이 태어났다. 丁亥年(1047 ; 39세) 선생이 지은 「陳夫人墓誌」에 “딸이 다섯 살인데 어려서 품을 벗어나지 못하였다.”라고 하였으니 딸은 이 해에 태어난 것이다. 선생이 「周禮致太平論」 50편을 지었는데 「內治」 7편이 그 첫 부분이다.

內宰는 陰禮로써 六宮을 가르친다. 六宮은 后이다. 또 陰禮로써

九嬪을 가르친다. 九嬪은 婦學의 법을 맡아 九御를 가르친다. 后는 높으니 교육을 받지 않을 수 없으나, 女御는 낮은데 교육이 또한 미치는 것은 王宮에 있는 사람은 禮를 알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이 편을 살펴보고서 ‘成王,周公이 태평을 이룬 書’가 그 정신과 心術이 다 여기에 있음을 세 번이나 탄식하였다. 선생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하였다면 ‘만약 나를 써 준다면 이것을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 어찌 王河汾(王通)만 말할 수 있었겠는가? 이루지 못한 것이 애석하다.

선생은 「慶曆民言」 30편을 지었는데 「開諱」이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藥石이요, 한글자 한글자가 規戒이다. 선생은 이 때 벼슬이 없고, 言責을 지켰으며, 강직함을 드러냄이 적었다. 1,2년 사이에 杜, 富, 韓, 范, 歐, 余, 王, 蔡등 임금은 밝고 신하는 충성하였으니 태평세상이었다. 공은 이미 ‘三諫의 詩’로써 君謨(蔡襄)을 본받지도 못하였고, 또 ‘濃墨의 頌’으로써 石介를 본받지도 못하였다. 미록 초야에 있으나 정성스러운 충심을 능히 스스로 그칠 수 없어 이 편을 지었다. 천자는 聖明하여 나무꾼의 말이라도 널리 취하였다. 이것을 가지고 올렸으니 말하는 자 죄 없었다. 42년의 다스림(仁宗治世 ; 1022 ~ 1063)이 실로 아름다움은 이에 힘입은 것이다. 祖無擇이 “진실로 나라를 고치는 글(醫國之書)이다.” 라고 하였다.

慶曆4년(1044) 甲申, 36세.

이 해에 富公, 范公에게 글을 올렸고, 「麻姑山眞君殿記」, 「李子高墓表」, 「陳伯英墓表」, 「寄祖祕丞書」, 「除夜感懷詩」, 「南塘觀魚詩」를 지었다. 두 시는 모두 陳殿丞肅을 차운했다.

富公, 范公에게 올린 글은 「慶曆民言」을 바치며, 國事를 말한 것이다.

「李子高墓表」에 “慶曆4년에 죽었다.”고 했으니 묘표는 생각건대 또한 이 해에 쓴 것이다.

「陳伯英墓表」에 “내 일찍이 陳仲溫의 葬禮에 銘文을 썼는데, 그 아들

漢公, 字 伯英이 12년 뒤 죽었다. 또 表를 짓는다.” 라고 하였다. 仲溫은 선생의 伯丈(처의 큰아버지)이니, 伯英은 郎舅(처남)이다. 仲溫의 葬禮는 壬申年(1032 ; 24세)이었고, 伯英은 甲申年에 죽었으므로 ‘12년뒤’ 라고 하였으니 墓表 또한 이 해에 지은 것이다. 「寄祖祕丞詩」에 “가르치는 길은 또한 행하기 어려운데 / 한갓 휘방만 뉘을 뿐이네 / 책은 상자에 담아 집 다락에 넣어두니 / 학교의 문은 묵어버렸네.” 라고 말했는데, 선생의 이 말은 대개 「上蔡學士書」에 鄒子房의 일을 언급함으로 인한 것이다. 鄒가 무고로 인하여, 선생을 엮어 함께 郡囿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일은 이미 (무고임이) 밝혀졌지만, 선생은 이에 學事를 버리고 다시 집에 머물렀다.

慶曆5년(1045) 乙酉, 37세.

이 해에 「與胡先生書」, 「寄祖祕丞詩」, 「南城縣署記」, 「處士陳君墓誌銘」, 및 「祭文」, 「白石暹師塔銘」 등이 있다.

「與胡先生書」에 “康定初 錢塘에서 이별후 2년, 서울에서 돌아왔습니다. 중도에 일찍이 글을 보내드린 것이 지금 또 4년입니다.” 라고 하였으니 이 글은 이 해에 쓴 것이다.

이 해에 余襄公이 선생을 조정에 추천했다. 그 章에 “李觀는 博學하고 식견이 통달하며, 고금을 포괄하였습니다. 著書에 마음을 두고 治亂을 연구하여 강남의 儒士가 모두 師法으로 여깁니다.” 라고 하였다.

閩지방 名士, 黃通이 范文正公에게 글을 보내어 “李觀는 37세입니다. 그 德行과 文學, 그 智識과 材術은 三代之 英靈이 지금 다시 태어난 듯 합니다. 강남에서는 다 ‘先生’ 이라 부릅니다. 부르심을 받고 서울에 다녀온 뒤로 지금 副樞 富公, 諫省 歐陽公, 紫微 余正言, 三班 田紫微, 淮南 祖提刑등이 모두 當世의 名儒인데 그 문에 다투어 나아가 예우하지 않은 이가 없습니다. 우리 公(范文正公)께서는 泰伯(李觀)을 아신 것이 가장 깊습니다. 오직 그 아시는 것이 깊으므로 일찍이 태백을 논하여 추천하시려는 마

음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慶曆6년(1046) 丙戌, 38세.

이 해에 「長江賦」를 지었고, 「皇祐續稿」를 모아 序를 지었으며, 「足成夢中春社詩」, 「上王刑部書」, 「和王刑部遊仙都觀詩」, 및 「唱和詩序」, 「進士傅君墓銘」가 있다.

선생이 乙未年(1055 ; 47세)에 다시 富公에게 올린 글에 “慶曆4년 글로 써 南方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2년후 長江賦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였으니 이 賦는 이 해에 쓴 것이다. 王刑部는 漕使 達이다.

이 해에 信州를 유람하여 「弋陽縣學銘」, 「聞女子瘡疾寄示」, 「弋陽縣學北堂見夾竹桃」2詩, 「題靈陽宮」, 「龜峰精舍」, 「葛陂懷古」詩, 「葛陂逢何道士」詩를 지었다.

선생이 皇祐3년(1057 ; 43세) 「新城院記」를 지었는데 “이에 앞서 나는 信州에서 돌아왔다.” 고 하였고, 또 “이미 5,6년전” 이라고 하였다. 이 해부터 皇祐3년 까지 약 5,6년이니 信州 유람은 이 해이다. 銘과 詩도 모두 信州에 있을 때 지은 것이다.

慶曆7년(1047) 丁亥, 39세.

이 해에 「禮論後語」, 「刪定易圖序論」, 宋屯田 「延平集序」, 「亡室墓誌」, 「處士饒君墓表」, 「建昌知軍廳記」, 「景德寺重修大殿并造彌陀閣記」, 「邵武軍學置莊田記」, 「小女詩」, 「謝宋屯田見示永平錄海南編詩」, 「題韓偓詩後」, 「答黃著作書」를 지었다.

「禮論」은 明道元年(1032 ; 24세)에 지었는데 「後語」에 “내가 「禮論」을 지은 뒤 15년, 章望之의 ‘論一篇’을 가지고 와, 나더러 ‘괴이한 것을 좋아한다.’ 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라고 하였으니 「禮論後語」는

이 해에 지은 것이다. 「刪定易圖序論」은 「答宋屯田書」에 보이니 또한 이 해에 지은 것이다. 宋屯田 「延平集序」는 閩 땅에 들어가 福帥 蔡學士를 방문하고, 길이 昭武를 지나감으로 인하여 지은 것이다. 宋屯田 咸의 字는 貫之이다. 그 때 延平의 倅였는데, 昭武를 임시로 맡고 있었다. 「海南編詩」는 宋屯田이 「海南編」을 보여주어 지은 것이다. 「題韓偓詩後」는 閩 땅을 유람함으로 인하여 지었다. 漢傑이 글을 보내 ‘「景德寺記」와 「邵武軍學記」에서 浮屠의 일을 말하였다.’ 하므로 선생이 漢傑에게 답하는 글에 “내가 浮屠를 배척함은 진실로 오래되었다. 「潛書」와 「富國策」에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데, 어찌 나이 40이 다되어 문득 변하겠는가? 오직 漢傑이 그 두 記를 보는 것이 심히 익숙치 못해서일 뿐이다. 나는 이 글에서, 儒者를 眞望함이 깊다는 것을 말하려함이었지, 浮屠를 높이려한 것이 아니었다.” 라고 하였다. 선생이 ‘나이가 40에 가깝다.’ 고 말하였으니 「答黃著作書」는 이 해에 지은 것이다.

이 해에 부인 陳氏가 죽었다. 陳次公이 지은 先生墓誌에 ‘饒氏를 再娶했다.’ 라고 하였는데 어느 해인지 알 수 없다.

慶曆8년(1048) 戊子, 40세.

이 해에 딸이 죽었다. 「哭女」詩에 “처가 죽고 딸이 이미 병들었는데 / 해를 넘겨 두 번의 喪을 치렀네.” 라고 하였다. ‘踰年’이라는 것은 작년에 陳夫人이 죽고, 금년에 딸이 죽은 것이다.

겨울 11월에 「建昌軍儀門記」, 「太平院浴室記」, 「寄祖祕丞詩」를 지었다.

皇祐元年(1049) 己丑, 41세.

이 해에 「宋中舍」 및 「夫人江氏墓碣銘」, 「送李山甫詩」를 지었다.

이 해에 范文正公이 조정에 천거하였다. 그 후에 “李觀는 著書와 立言

이 맹자와 양웅의 風義가 있습니다.” 라고 하였고, 또 “臣은 지금 그가 지은 「禮論」 7편, 「明堂定制圖序」 1편, 「平土書」 3편, 「易論」 13편 총 24편을 엮어 10권으로 만들어 올리오니 御覽하시면 이 사람의 才學이 非常함을 아실 겁니다. 그는 어머니가 연로하여 벼슬을 원치 아니하오나, 관직을 제수하시어 봉양을 편히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라고 하였다.

皇祐2年(1050) 庚寅, 42세.

이 해에 「周醫博士墓表」, 「迴向院記」, 「謝授官表」, 「謝范咨政啓」, 「怡山長慶寺詩」를 지었다.

이 해에 范文正公의 부름을 받아 杭州에 갔다. 范公이 다시 조정에서 천거했다. 그 章에 “臣이 작년에 李觀가 지은 10권을 올렸습니다. 그 「明堂圖序」 한권은 오늘이 조정에서 이 大禮를 행할 千載一遇의 때입니다. 이 사람의 學古의 마음은 위로 성인이 지으신 것과 합쳐집니다. 다시 올리오니 獎勵를 더하사 儒林을 勸勉하시옵기를 빕니다.” 라고 하였다. 聖旨로 將仕郎太學助教를 제수하였다. 誥詞에 “學業이 우수하고 議論이 바르며, 立言의 體가 있다. 또한 履行이 修正하니 진실로 薦章과 같다. 특별히 一命을 너에게 내리노니, 그 더욱 道에 정진하라. 조정이 알아주지 않는다 근심하지 말라.” 라고 하였다.

皇祐3年(1051) 辛卯, 43세.

이 해에 「廣文陳生墓銘」, 「承天院記」, 「麻姑山仙都觀御書閣後記」, 「新城院記」, 「送知軍曹比部移虔州詩」를 지었다.

「盱志」는 曹觀公이 皇祐3년에 盱守를 맡았으니, 이 시는 이 해에 쓴 것이다.

이 해 어머니 鄭夫人이 돌아가셨다. 12월 아버지 묘의 東南에 장사하였으니, 建昌 鳳凰山 기슭이다. 墓誌에 “어머니를 모시고 서쪽으로 유람하고

자하여 허락하셨으나, 미처 출발하지도 못하여 돌아가셨다.” 라고 하였다.

皇祐4年(1052) 壬辰, 44세.

이 해에 「皇祐續稿」 8권을 모으고 序를 지었으며, 「周禮致太平論」 10권을 간행하였고, 「上孫寺丞書」, 「酬陳屯田詩」를 썼다.

「續稿」 序에 “行年44, 병이 때때로 發作하니 文字사이에 오히려 능히 나아갈 수 있었다.” 라고 하였고, 또 “慶曆癸未(1043 ; 35세)에 「退居類稿」를 모은 3년뒤, 다시 100여편을 모았다.” 라고 하였다. 이 해에 孫寺丞에게 글을 올렸다. 이 해에 儂志高가 廣西를 노략질했다. 觀文 孫沔이 황명을 받고 토벌했는데, 선생이 글을 보내 10가지 利害를 말하였다. 孫公의 답서에 “가르쳐 주신 백성의 병고는 博愛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면 어찌 이에 미치지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酬陳屯田詩」에 “큰 돼지와 긴 구렁이같은 놈이 嶺南에서 싸운다.” 고 하였는데 儂志高를 가리킨 것이다. 이 시도 또한 이 해에 쓴 것이다.

皇祐5年(1053) 癸巳, 45세.

이 해에 「常語」 상중하3권, 「承天院羅漢閣記」, 「柏林溫氏書樓記」, 「進士傅君墓銘」을 지었다.

皇祐6年(1054) 甲午 4월 改至和元年, 46세.

이 해에 어머니 鄭夫人의 喪을 벗었다. 「常語後序」, 「袁州學記」, 「淸話堂詩」, 「送嚴介序」, 「聶夫人」, 「徐夫人」, 「張都官」墓誌, 「袁州雜詩」 3수를 지었다.

선생이 「袁州學記」를 짓고, 河東 柳淇가 쓰고, 京兆 章友直이 새겼는데, 천하에 三絶이라 불렀다. 「袁州學記」에 “4대의 學은 여러 經을 참고하면 볼 수 있다.” 또 “천하가 다스려지면 禮樂으로 우리 백성을 단련하여, 한 번 불행이 닥칠 때 오히려 마땅히 큰 절개를 가지고서, 신하는 忠에

죽고 자식은 孝에 죽는다.” 라고 하였다. 이 말을 자세히 음미하면 이것이 어찌 袁州 학교에만 重할 뿐이겠는가! 또한 장차 천하국가를 위하여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의 化民成俗은 반드시 學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袁州雜詩」는 郡守 祖無擇이 다 그 韻을 이었다. 「淸話堂詩」는 周伯達과 景德寺에 숙박하며 지은 것이다. 그 시에 “마음 속 끝없는 불평한 일들이 / 하룻 밤 맑은 대화에 또한 空을 이루었네.” 라고 하여 그 곳을 淸話堂이라 지목하고서, 또한 8句를 지었다.

至和2年(1055) 乙未, 47세.

이 해에 富公에게 편지와 「長江賦」 1수를 보냈는데, 다 東南의 利害를 논하였다. 「寄祖祕丞詩」, 「送春2絶」, 「送陳司理序」, 「江屯田墓誌」, 「陳都官墓碣銘」, 「鄒夫人墓誌銘」, 「鄭助教母陳氏墓銘」, 「陳府君夫人聶氏墓誌銘」이 있다.

至和3年(1056) 丙申 9월 改嘉祐元年, 48세.

이 해에 「鉛山縣尉陳君墓銘」이 있다.

嘉祐2年(1057) 丁酉, 49세.

이 해에 國子監에서 태학조교 李觀를 太學說書로 薦원할 것을 상주하였다. 聖旨로 太學說書에 나아가게 하였다. 奏劄에 “비록 名儒의 論薦으로 인하여 一官을 명하셨으나, 政祿을 더하지 아니하고 丘壑에서 道를 수양했습니다. 조정에서 태학설서를 薦원하는데 희망하고자 하니 학교의 風化에 도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

嘉祐3年(1058) 戊戌, 50세.

이 해에 通州海門主簿 太學說書에 제수되었다. 「太學議」 1편, 「景德寺新院記」를 지었다.

誥詞에 “너는 순수하고 밝고 무성하고 아름다우며, 經術에 통하여 東南의 선비들이 으뜸으로 추대하였다. 學政을 도운 것이 해를 넘겼다. 부지런

하고 성실하게 그 직책에 정성을 다하였다. 祭酒司業이 ‘博士의 職은 너보다 마땅한 이가 없다.’ 한다. 특별히 通州海門主簿를 제수하고, 太學說書는 전과 같이 한다.” 라고 하였다. 太學제도를 상세히 연구하라고 하였으므로 「太學議」를 썼다.

嘉祐4년(1059) 己亥, 51세.

이 해에 임시로 太學을 管掌하였다. 胡瑗이 병으로 휴가를 청하였기에 이러한 명이 있었던 것이다. 얼마 후 祖母를 선영에 합장하지 못하였으므로, 휴가를 얻어 돌아가 천장할 것을 청하였다. 한 달 휴가를 얻어 선생이 드디어 돌아왔다. 8월에 집에서 죽었다. 12월에 鳳凰山 아버지 선영에 장사했다. 陳次公이 지은 先生墓誌에 “임종에 다른 말씀은 없으셨다. 오직 나의 손을 잡고 明堂定制圖를 부탁하셨다. 三禮를 완성하지 못한 것을 한으로 여기셨다.” 라고 하였으니, 선생은 또 三禮論을 지으려 하였으나 성취하지 못하고 絶筆하였던 것이다.